2022

법무 연감

정의와 상식의 법치

2023

法務年鑑

법무부

2022

법무 연감

정의와 상식의 법치

2023

국 가 비 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국 정 목 표

-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법무행정비전

정의와 상식의 법치



법무부 기(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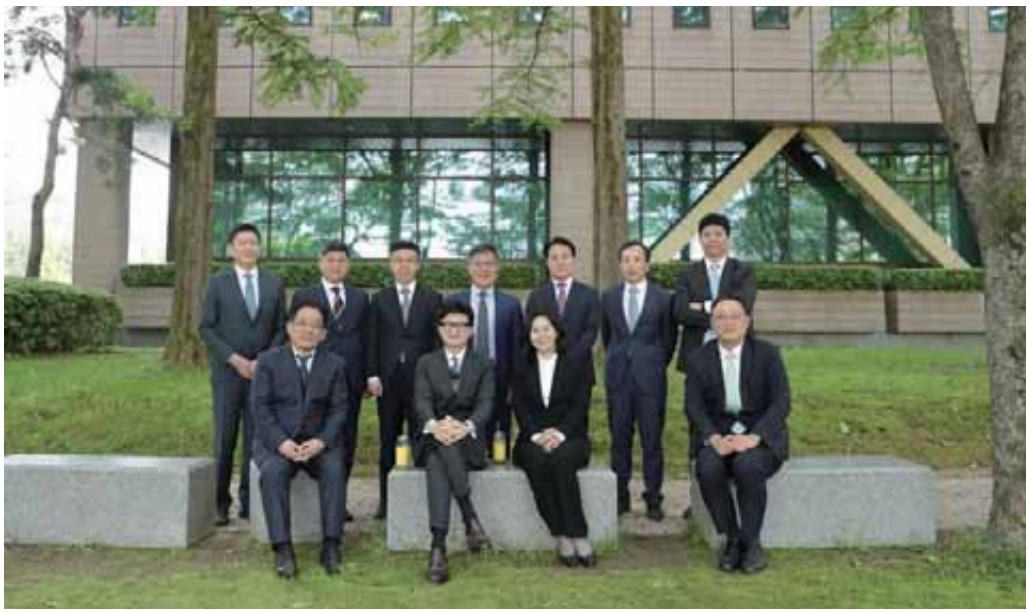


법무부장관 한동훈



법무부 전경





법무부 간부 일동

정의와 상식의 법치

2022년 한 해 동안 법무부의 주요 활동과 성과를 담아 서른다섯 번째 법무연감을 발간하였습니다.

지난 해 법무부는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목표로 '상식의 회복'과 '정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첫째,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잘못된 의도와 절차로 제·개정된 형사법령으로 인한 국민 피해와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검찰 조직과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정비하였습니다.

금융·증권범죄, 보이스피싱범죄,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을 설치하여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주요 민생침해범죄인 마약, 조직폭력,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등에 엄정 대응하였습니다.

둘째,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법제를 마련하였습니다.

고위험 성범죄자의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등 취업 제한, 1:1 전자감독과 '신속수사팀' 확대 및 강화형 전자장치 개발, 소아성기호증 성범죄자에 대한 사후적 치료감호를 도입하는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또, 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스토킹 처벌 확대, 스토킹 범죄자 전자장치 부착 등 「스토킹처벌법」,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국민의 일상을 파괴하는 흉악범죄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날로 흉포화하는 소년범죄 대응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여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고, 교육·교정 강화, 피해자보호 및 인권보호 개선, 인프라 확충을 포함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셋째, 오래도록 고통받은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른바, '낙동강변 살인 누명 피해자 사건', '故장준하 유족 사건', '화성연쇄살인 누명 피해자 사건' 등 국가배상 사건에서 상소를 포기하고, '인혁당 사건' 관련 '지연이자 면제' 화해권고를 수용하였습니다.



또, '제주 4·3사건'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직권재심을 확대하는 등 국민들이 오래도록 고통받은 사건들에 대해서는 진영논리를 초월하여 상식과 공정의 관점에서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넷째,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고, 미래번영을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을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론스타 사건' 등 국제투자분쟁 사건에 철저히 대응하여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냈고, '만 나이' 통일, 미성년자의 빚 대물림 방지 규정 신설 및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법무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 경제성장과 미래번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신설, 외국인 계절근로자 증원, 첨단분야 인턴 비자 도입,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실시 등 유연한 비자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섯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법률구조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산불·집중호우·전세사기 등 불의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한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였으며,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나아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한 수용공간 확충 및 시설 현대화와 동시에 대국민 교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현장 교정공무원의 처우 개선으로 수용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친화적 개방형 외국인보호시설 운영과 공항 출국대기실의 국가 운영 전환 등을 통해 외국인에 대한 인권 보호도 강화하였습니다.

2022년을 돌아보는 법무연감 발간을 계기로 그간 법무부가 국민들께 약속드린 주요 정책들이 얼마나 이행되었는지 점검하고, 앞으로 정의와 상식을 바탕으로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법무부장관

2022 법무행정일지

1월

1. 1.
- 장관, 국립현충원 참배

1. 3.
- 2022년 법무부 시무식
- 장관, 과천지식정보타운 정책현장 방문

1. 5.
- 장관, 소년원 학생을 위한 스포츠용품 기증식 참석
-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출범식

1. 6.
- 장관, 강원대학교·춘천지검 속초지청 정책현장 방문

1. 7.
- 장관, 강원북부교도소·춘천지검 강릉지청 정책현장 방문
- 차관, 연세대·중앙대 변호사시험 시험장 정책현장 방문

1. 13.
- 차관, 서울소년원 정책현장 방문

1. 19.
- 차관, 코로나19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참석
- 아동인권 영화 상영회 및 간담회 개최
- 1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개최

1. 20.
- 장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참석
- 차관, 법학전문대학원 발전 방안 세미나 참석
- 아프간 특별기여자 사회정착지원 서포터즈 출범식
- 법무협력관 귀국보고회의 개최

1. 21.
- 차관, 제주 4·3사건 직권재심권고 합동수행단·제주교도소 정책현장 방문

1. 24.
- 장관, 신임검사 대상 강화
- 양성평등정책위원회 개최
-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개최

1. 26.
- 차관, 안양의 집 사회복지시설 위문

1. 27.
- 장관, 대한상사중재원 방문
- 차관,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대응 실태 현장 점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

1. 28.
- 법무부·과천시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1. 31.
- 장관,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대응 실태 현장 점검
- 차관, 인천구치소 코로나19 대응 실태 현장 점검

2월

- 2. 3.
  - 장관,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대응 실태 현장 점검
- 2. 4.
  - 장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참석
- 2. 7.
  - 아프간 특별기여자 울산 현대중공업 취업 환송식 개최
- 2. 8.
  -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자문단 회의 개최
- 2. 9.
  - 장관, 대전교도소 이전 예정 부지 정책현장 방문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대구지방검찰청 정책현장 방문
- 2. 10.
  - 장관, 대구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대구교도소 정책현장 방문
  - 차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참석
- 2. 11.
  - 장관, 글로벌 인재 비자센터 설치 유공 감사패 전달식 참석
  - 차관,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참석
  - 제17기 정책위원회 1차 회의 개최
- 2. 14.
  - 장관, KTV '생방송 대한민국' 출연 및 인터뷰
    국립법무병원 정책현장 방문
  - 차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참석
- 2. 15.
  - 장관,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참석
    제20대 대선 관련 공동담화문 발표
  - 스타트업 법무플랫폼 오픈 행사 개최
- 2. 16.
  - 장관,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대응 실태 현장 점검
  - 차관, 안양교도소 코로나19 대응 실태 현장 점검
  - 공증인징계위원회 개최
- 2. 17.
  - 청렴문예대전 시상식 개최
- 2. 18.
  - 장관, 한·독상공회의소 이사회 참석
- 2. 21.
  - 장관, 화성외국인보호소·평택항만출장소 정책현장 방문
- 2. 22.
  - 차관, 2022년도 재난관리평가 인터뷰
- 2. 23.
  - 장관, 아프간 특별기여자 정부합동지원단 방문
- 2. 24.
  - 장관, KTV '생방송 최일구의 정말' 출연
  - 특별공로자 국적증서 수여식 개최
  - 대전교도소 이전사업 협약 체결

3월

- 3. 4. • 차관, 정책홍보 전략 실무 협의회 참석
- 3. 7. • 차관,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 발표
  • 부패방지 유공 대통령표창 수상 기념 '신문고 타고식'
  • 본부배상심의회 개최
- 3. 8. • 장관, 제62주년 3·8 민주의거 기념식 참배 참석
  대전보호관찰소 정책현장 방문
- 3. 18. • 법무부-특허청-벤처기업협회 업무협약 체결
- 3. 22. • 차관, 중앙통합방위회의 참석
- 3. 23. •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감사패 수여식 개최
- 3. 25. • 제1차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개최
- 3. 28. • 차관, 법무연수원 정책현장 방문
  •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개최
- 3. 29.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법무부 업무보고
- 3. 30. •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개최
- 3. 31. • 차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참석

4월

- 4. 1.
  - 장·차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정책현장 방문
  - 신임검사 임관식
- 4. 3.
  - 장관, 제73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참석
- 4. 4.
  - 2022 외국인 스타트업 간담회 개최
- 4. 5.
  - 장관, 소망교도소 정책현장 방문
  - 차관, 목포교도소 정책현장 방문
- 4. 6.
  - 차관, 광주지검 목포지청 정책현장 방문
- 4. 7.
  - 장관, 화성외국인보호소 정책현장 방문
- 4. 8.
  - 제17기 정책위원회 2차 회의 개최
- 4. 11.
  - 검찰업무 수행유공 포상식 개최
  -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감사패 수여식 개최
- 4. 12.
  - 장관, 울산 현대중공업·교육청 정책현장 방문
    울산 거주 아프간특별기여자 정착가정 방문
- 4. 13.
  - 우수활동 교정위원 감사패 수여식 개최
- 4. 14.
  - 혁신을 위한 교정정책 토론회 개최
- 4. 18.
  - 법무행정지원유공 포상식
- 4. 20.
  -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개최
- 4. 21.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유공자 감사패 수여식 개최
- 4. 25.
  - 제59회 법의 날 기념식 개최
- 4. 26.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단 간담회 개최
- 4. 28.
  - 미래시민법 포럼 제2차 회의 개최
- 4. 29.
  -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기관장 토론회 개최
  - 아프간 특별기여자 정착 관련 수기 공모전 및 서포터즈 간담회 개최

5월

- 5. 2.
  -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자문단회의 개최
  - 국가송무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 신임검사 임관식
- 5. 6.
  - 장관, 안양·서울소년원 정책현장 방문
  - 제68대 법무부장관 이임식
- 5. 9.
  - 장관, 김천소년교도소 정책현장 방문
  - 차관, 대한상사중재원 방문
    아프간 특별기여자 정부합동지원단 방문
- 5. 10.
  - 차관,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참석
- 5. 11.
  - 차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정책현장 방문
- 5. 12.
  - 차관, 제47대 국무총리 이임식 참석
    의정부교도소 정책현장 방문
- 5. 13.
  - 제64대 법무부차관 이임식
  - 제65대 법무부차관 취임식
- 5. 17.
  - 장관,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 제69대 법무부장관 취임식
  - 차관, 제8회 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참석
    제8회 지방선거 대비 공동담화문 발표
- 5. 18.
  - 장관, 제42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 5. 20.
  - 제15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 5. 23.
  - 장관, 제48대 국무총리 취임식 참석
- 5. 24.
  - 장관, 규제혁신 장관회의 참석
- 5. 30.
  - 장관, 대법원장 예방

6월

- 6. 3.
  - 차관, 한국법학원 사무소 이전 개소식 및 회의 참석
- 6. 8.
  - 장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관계장관 간담회 참석
- 6. 9.
  - 장관, 제1회 현안조정회의 참석
  - 차관, 차관급 임명장 수여식 참석
- 6. 10.
  - 장관, 청주교도소·청주외국인보호소 정책현장 방문
  - 제9회 다링안심캠페인 개최
- 6. 13.
  - 장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접견
  - 차관,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 면담
- 6. 16.
  - 제40회 교정대상 시상식 개최
- 6. 20.
  - 차관, 배상금 환수 관계기관 회의 참석
  -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 위원회 개최
- 6. 21.
  - 제2기 교정개혁위원회 위촉식 및 1차 회의 개최
- 6. 22.
  - 장관, 안양소년원 정책현장 방문
  - 제2차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개최
- 6. 27.
  - 신규 대검검사급 검사 임용장 전수식
- 6. 30.
  - 차관, 제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참석

7월

- 7. 4. • 차관, 주일대사 접견
- 7. 11. • 범죄예방 자원봉사 유공 정부포상식 개최
- 7. 13. • 경제형벌 규정 개선 TF 회의 개최
- 7. 14. • 차관, 제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참석
- 7. 15. • 책임수사시스템 정비 협의회 위원 위촉식 개최
  •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개최
- 7. 18. • 장관, 긴급관계장관회의 참석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담화문 발표
  • 국립법무병원 비전선포식 개최
- 7. 21. • 법무부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 7. 22. •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 참석
  • 장관, 대우조선해양 협상 타결 관련 공동 브리핑
  • 차관,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참석
  • 국제사법 전부개정 학술대회 개최
  • 법무부 청렴라이브 개최
- 7. 24. • 장관, 관계장관 현안간담회 참석
- 7. 25. • 장관, 주한 영국대사·영국 변호사협회장 접견
- 7. 26. • 법무부 새정부 업무계획 보고
- 7. 27. • 차관, 국민통합위원회 출범식 참석
- 7. 29. • 장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접견

8월

8. 1. • 신임검사 임관식

8. 4. • 차관,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참석

8. 5. • 광복절 기념 가석방심사위원회 개최

8. 10. • 장관, 전라남도지사 접견

8. 11. •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 개최
•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 입법예고 브리핑

8. 12. • 장관, 2022년 광복절 특별사면 브리핑
• 을지연습 준비보고 회의 개최

8. 17. • 장관, 대한법무사협회장 접견
•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제9차 회의 개최

8. 18. • 장관, 한국법학원장 접견
• 안양법무시설 현대화 및 안양교도소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8. 22. •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개최

8. 23. • 을지연습 일일 상황보고회의 개최

8. 25. • 차관, 불법 사금융 척결 TF 회의 참석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차관 면담

8. 26. • 장관, 규제혁신 전략회의 참석

8. 31. • 장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사건 판정 선고 관련 언론브리핑
서울지방변호사협회장 접견

9월

- 9. 1. • 장관, 정기 국회 개회식 참석
- 9. 2. • 난민위원회 개최
- 9. 6. • 장관, 신임 교정본부장 임용장 전수
- 9. 7. • 변호사징계위원회 개최
- 9. 8. • 차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참석
- 9. 14. • 장관,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접견
- 9. 15. • 장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 확대추진방안 발표
- 9. 21. • 차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김천소년교도소 정책현장 방문
- 9. 22. • 차관, 스토킹 범죄 대책 관련 당·정 협의회 참석
- 9. 23. • 장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참석
  • 2022년도 을지연습 사후강평회의
- 9. 26. • 고위직 대상 폭력예방 세미나 개최
- 9. 27. • 장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변론
  • 제3차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개최
- 9. 30. • 보호·교정·출입국관리직 임명장 전수식 개최

10월

- 10. 6. • 2022년도 법무부 국정감사
- 10. 11. • 장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서울보호관찰소 정책현장 방문
- 10. 12. • 차관, IOM(국제이주기구) 부사무총장 접견
- 10. 13. • 장관, 소망교도소 정책현장 방문
- 10. 17. • 차관,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개강행사 참석
- 10. 19. • 장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등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
  •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촉식 개최
- 10. 20. • 차관, 납품단가 연동제 관계부처 간담회 참석
- 10. 24. • 2022년도 법무부 종합감사
- 10. 25. • 차관, 농촌지원 사회봉사명령 집행 관련 정책현장 방문
  •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 10. 26. • 장관, 한국여성변호사회장 접견
  •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TF, 소년범죄 종합대책 발표
  • 제12회 주택임대차위원회 개최
- 10. 27. • 장관, 한국법률가대회 참석
- 10. 28. • 제77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개최
  • 제51회 교정작품 전시회 개최
  • 기업과 인권 세미나(1부) 개최
- 10. 31. • 장·차관, 이태원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 조문

2022 법무행정일지

11월

- 11. 1.
  - 장관, 경제현안 관계장관 간담회 참석
- 11. 4.
  - 기업과 인권 세미나(2부) 개최
- 11. 7.
  - 장·차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참석
- 11. 9.
  - 장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사무국장 접견
- 11. 11.
  - 장관,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 접견
  - 차관,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당정협의회 참석
- 11. 14.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별 심사
- 11. 17.
  - 2022년 범죄예방대상식 개최
- 11. 18.
  -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 현판식 개최
- 11. 22.
  - 차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장관회의 참석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 11. 24.
  - 장관, 화물연대 운송거부 철회 촉구 정부 담화문 발표
- 11. 25.
  - 차관,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참석
  - 이민정책위원회 위촉식 개최
- 11. 28.
  - 장관, 우즈베키스탄 법무·고용노동부장관 접견
- 11. 29.
  - 장관, 화물연대 운송거부 철회 촉구 정부 담화문 발표
  - 제15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

12월

12. 2.
- 차관, 미래사회를 위한 민법개정 세미나 참석
- 난민위원회 개최

12. 5.
- 상법특별위원회 위촉식 개최

12. 9.
- 적극행정 우수부서 포상식 개최
- 제2기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위촉식

12. 15.
- 장관, 국정과제 점검회의 참석

12. 19.
- 장관, 신임 대법관 접견
- 선진법제포럼 개최
- 변호사징계위원회 개최

12. 20.
- 장관, 서울동부구치소 “따손 cafe” 개점식 방문

12. 21.
- 차관, 제5차 국민통합위원회 참석

12. 22.
- 장관, 춘천지검 속초지청·제18전투비행단 정책현장 방문

12. 23.
- 사면심사위원회 개최

12. 26.
- 장관,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접견
- 마을변호사 9주년 기념식 개최

12. 27.
- 장관, 신년 특별사면·복권 관련 언론 브리핑
-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개최
- 제4차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개최

12. 28.
- 차관,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 참석

12. 30.
- 2022년도 법무부 종무식

2022년 법무부가 만든 '정의와 상식의 법치'

2022년 법무부는 '정의와 상식의 법치' 구현을 위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다양한 법무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국민과 소통하고 정의를 지켜온 법무부의 2022년 활동들을 사진과 함께 소개합니다.

2022. 01.



2022년 법무부 시무식



아동인권 영화 상영회 및 간담회



아프간 특별기여자 사회정착지원 서포터즈 출범식



신임검사 대상 강화



소년원 학생을 위한 스포츠용품 기증식



양성평등정책위원회

2022. 02.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대응 실태 현장 점검



글로벌 인재 비자센터 설치 유공 감사패 전달식



대전교도소 이전 예정 부지 정책현장 방문



제17기 정책위원회 위촉식



스타트업 법무플랫폼
오픈 행사



청렴문예대전 시상식



특별공로자 국적증서
수여식

2022. 03.



부패방지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기념 신문고 타고식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감사패 수여식

2022. 04.



제17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회의



검찰업무 수행유공 포상식



2022 외국인 스타트업 간담회



화성외국인보호소 정책현장 방문



울산 거주 아프간 특별기여자 정착가정 방문



우수활동 교정위원 감사패 수여식



혁신을 위한 교정정책
토론회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유공자
감사패 수여식



제59회 법의 날 기념식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단 간담회



미래시민법 포럼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기관장 토론회

2022. 05.



국가송무 자문위원회 회의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자문단회의



서울소년원 정책현장 방문



제68대 박범계
법무부장관 이임식



제65대 이노공 법무부차관
취임식



제69대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식



제15회 세계인의 날



김명수 대법원장 예방

2022. 06.



청주교도소 정책현장 방문



청주외국인보호소 정책현장 방문



제40회 교정대상
시상식



한국법학원 사무소 이전 개소식 및 회의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 면담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 위원회



교정개혁위원회



안양소년원
정책현장 방문



신규 대검검사급 검사 임용장 전수식

2022. 07.



국립법무병원 비전선포식



책임수사시스템 정비 협의회 위원 위촉식



범죄예방자원봉사 유공 정부포상식



법무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촉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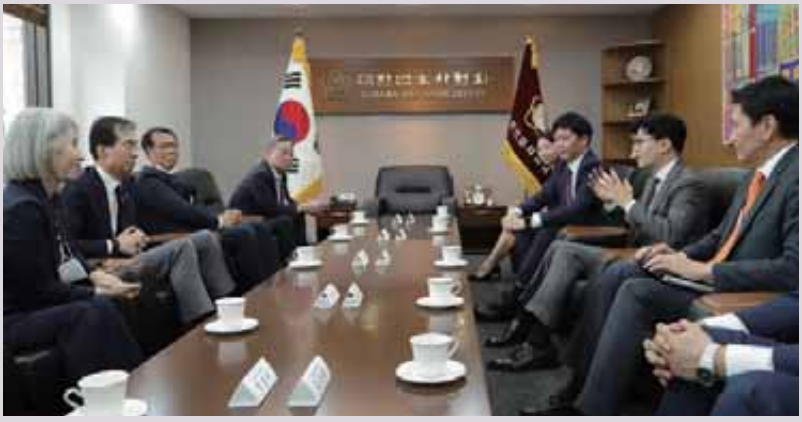
국제사법 학술대회



주한 영국대사·변호사협회장 접견



법무부 새정부 업무계획 보고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접견

2022. 08.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관한 규정」 개정안 관련 브리핑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



긴급수해복구 국민공모제 사회봉사



화성외국인보호소 을지연습



광복절 특별사면 브리핑



대한법무사협회장 접견



안양법무시설 현대화 및 안양교도소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론스타 국제투자분쟁사건 선고 관련 브리핑

2022. 09.



난민위원회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접견



신임 교정본부장 임용장 전수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 확대 추진방안 발표



고위직 대상 폭력예방 세미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변론



감시정 승선검색

2022. 10.



2022년도 법무부
국정감사



IOM(국제이주기구)
부사무총장 접견



소망교도소 정책현장 방문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정책현장 방문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개강행사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촉식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등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



12회 주택임대차위원회



소년범죄 종합대책 발표



농촌지원 사회봉사명령
집행 정책현장 방문



전국 청소년비행예방
센터장 간담회



제13회 한국법률가대회



제51회 교정작품 전시회



제77회 교정의 날 기념식

2022. 11.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사무국장 접견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 접견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 현판식



이민정책위원회 위촉식



우즈베키스탄 법무·
고용노동부장관 접견



제15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마음이음 회복적 사법지원센터 개소



2022년
범죄예방대상식

2022. 12.



상법특별위원회 위촉식



신임 대법관 접견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위촉식



선진법제포럼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접견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신청사 준공식



서울동부구치소 “따손 cafe”
개점식 정책현장 방문



제18전투비행단 정책현장 방문



마을변호사 9주년 기념식


신년 특별사면 브리핑


2022년도
법무부 종무식

2022
법무연감

CONTENTS

제1장 총 설

제1절 법무행정의 기본방향 58
제2절 기구·인원 65
제3절 예산·시설 84

제2장 업무실적

제1절 기획조정업무 96
1. 국정과제 추진 등을 위한 조직 신설 및 효율적인 정원 관리 96
2. 국민이 체감하는 법무부 정부혁신 추진 98
3. 더 나은 법무행정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 102
4. 법무행정개선 추진 106
5. 민원행정 서비스 강화 109
6. 규제혁신 적극 추진 111
7. 성과중심의 법무행정 추진 112
8.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 119
9. 비상대비 및 재난안전 관리 강화 120
10. 법무정보화 추진 및 사이버 안전 강화 125
11. 형사사법공통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대국민 서비스 확대 130
12.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133
13. 법무연수원 교육 및 연구 내실화 136

제2절 정책홍보 업무 150
1. 기관장 소통활동 150
2. 언론 홍보활동 151
3. 홍보 기획 152
4. 디지털 소통활동 155
5. 법무부 국민기자단 운영 160

제3절 법무업무 163
1.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한정승인 제도 정비 163

2.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 164
3. 공문서 제출 간이화를 위한 민사법 정비 166
4. 나이 기준 통일을 위한 민법 개정 167
5. 인격권 도입을 위한 민사법 정비 168
6. 인격표지영리권 도입을 위한 민사법 정비 169
7. 리걸테크 제도 연구 171
8. 국가기관 법률사무종사(실무수습) 변호사 통합 선발 172
9. 법의 문턱을 낮추는 마을변호사 제도 173
10. 차세대 전자공증시스템 도입 등 177
11. 국제법무 협력 및 교류 179
12. 국제민상사규범 성안 참여 183
13. 국제법무 역량 강화 185
14.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 189
1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 및 국가배상 업무의 지휘·감독 195
16. 인민혁명당 재건위 관련 초과지급된 국가배상금 환수 사건 해결 198
17. 판례 변경된 과거사 사건에 대한 전향적 배상 결정 200
18. 수사기관 과오가 명백히 확인된 사건에 대한 배상 및 사과 201
19. 국고손실 환수송무 적극 추진 202
20. 선진적인 국가송무 수행을 위한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의 지속적 개선 204
21. 행정소송 및 헌법재판 대응 업무의 효율적 수행 205
22. 통일 대비 법적·인적 기반 구축 212
23. 북한주민의 재산권 보호 216
24. 위기 북한이탈주민 발굴·지원 중심 법률지원 217
25. 상사법의 체계적 정비 등 기업법제 개선 220
26. 기업환경지수 개선 사업 추진 223
27. 스타트업 법률지원제도 운영 및 활성화 추진 226
28. 경제 형벌규정 개선 229
29. 전자어음제도 운영 230
30. 전자증권제도 시행 232
31. 중재산업 활성화 234
32. 공익신탁 제도 활성화 235
33. 선진상사법률연구 발간 237
34. 선진법제포럼 개최 239
35. 공정한 법조인 선발 및 양성 제도 운영과 제도 개선 도모 240

제4절 검찰업무 246

1. 검찰 역량의 강화 246
2. 검찰업무의 추진방향 250
3. 사회·경제질서의 엄정 확립 257
4. 국민의 권익 보호 271
5. 미래형 선진수사시스템 구축 275

6. 테러 등 국가안보위해 세력 엄정대처 및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장 301
7. 과거사 사건 진실규명 및 침해된 인권 회복 노력 302
8.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 303
9. 노사 간 균형 있고 공정한 법집행 306
10.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에 기여 308
11. 국제공조를 통한 사회·경제 질서의 엄정 확립 309
1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 추진 316
1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 318
14.「소년법」,「형법」개정 추진 319

제5절 범죄예방업무 321

1. 보호관찰 내실화·전문화를 통한 실효성 제고 321
2. 전자감독 등 고위험사범 관리 330
3. 감호제도 개선 336
4. 정신질환 범죄자 관리 강화 342
5. 청소년 비행 예방 강화 346
6. 소년재비행방지 역량 강화 351
7.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법교육 전개 354
8.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법질서 실천운동 359
9. 출소자 사회복귀 역량강화를 위한 갱생보호사업의 추진 363

제6절 감찰·감사업무 372

1. 감찰업무 372
2. 감사업무 374

제7절 인권업무 377

1. 국가인권정책 총괄·선도 377
2. 범죄피해자보호·지원 강화 384
3.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구조 강화 394
4. 자체 인권보호시스템 구축을 통한 국민의 인권보호 강화 409
5. 여성·아동의 권익 보호 강화 412
6.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417

제8절 교정업무 418

1. 인권을 존중하는 교정행정 구현 418
2. 국민 중심 교정행정 서비스 제공 423
3. 미래를 지향하는 교정행정 구현 429
4. 재범방지 실효성 향상을 위한 교정정책 추진 436

제9절 출입국·외국인정책업무 441

1. 편리하고 안전한 출입국 국경관리 체계 구축 441

2.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개방적이고 인권친화적인 체류환경 조성 452
3.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절차 강화 및 보호시설 환경 개선 465
4.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의 효율화 제고를 통한 이민자 권익 증진 469
5. 국민이 공감하고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국적정책 추진 476
6.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난민정책 추진 482
7. 공정하고 전문적인 난민 이의신청 심의 체계 구축 489
8.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개방과 포용의 외국인 정책 추진 및 국제협력 강화 493
9. 디지털플랫폼 구축을 통한 원스톱 이민행정 서비스 제공 501
10.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표준화 및 데이터분석을 통한 외국인정책 수립 지원 504
11.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해외유입차단TF 운영 509

제10절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 512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512
2. 주요내용 513
3. 향후계획 515

제11절 소년범죄 대응 업무 516
1.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TF 구성 및 운영 516
2.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 517

제12절 인사정보관리단 522
1.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522

제3장 법령정비

제1절 개관 526
제2절 법률 527
제3절 대통령령 543
제4절 총리령 및 법무부령 560

제4장 국회업무

제1절 국회업무 584

제5장 통 계

제1절 법무업무 통계 590
제2절 검찰업무 통계 604
제3절 범죄예방업무 통계 626
제4절 인권업무 통계 663
제5절 교정업무 통계 665
제6절 출입국·외국인정책업무 통계 687

자 료

제1절 직제 706
제2절 훈령·예규 및 주요지시 737
제3절 장관 연설문 751
제4절 역대 법무·검찰 간부 명단 801
제5절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 명단 819
제6절 인사 869
제7절 국외훈련·출장 870
제8절 국제교류 현황 871
제9절 상훈 880
제10절 위원회 현황 901
제11절 소속기관 및 단체 현황 908

부 록

법무부 본부 기구 변천표

법무부 및 소속기관 기구표

法務年鑑

01



총 설

제1절 법무행정의 기본방향

제2절 기구·인원

제3절 예산·시설

제1절 법무행정의 기본방향

1. 국정방향

혁신행정담당관실 사무관 유재륜

윤석열정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비전으로 제시하고, 국정비전 하에 6대 국정목표, 23대 약속을 설정하여 국정전략별 핵심정책을 '12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였다.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대통령실-국무조정실-부처 간 유기적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이행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매월 자체 점검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정부 출범 첫 해인 2022년에는 '국익', '실용', '공정', '상식'의 관점에서 성과 창출을 위해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위한 법무행정에 역량을 집중하였다. 이와 관련한 윤석열정부의 국정비전과 6대 국정목표(〈표 1-1〉) 및 우리 부에서 추진한 2022년도 국정과제 현황(〈표 1-2〉)은 다음과 같다.

| 표 1-1 | 국가비전 – 6대 국정목표 – 23대 국민께 드리는 약속

국정비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6대 국정목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나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23대 국민께 드리는 약속	①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① 경제체질을 선진화하여 혁신성장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①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①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①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①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습니다.
	②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	② 핵심전략 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②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②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②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	② 혁신성장 기반 강화를 통해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③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③ 중소·벤처 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④ 디지털 변환기의 혁신금융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⑤ 하늘·땅·바다를 잇는 성장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③ 국민과 함께하는 일류 문화매력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④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⑤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③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④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③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③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20대 국정과제	15개 과제	26개 과제	32개 과제	19개 과제	18개 과제	10개 과제

| 표 1-2 | 윤석열정부 법무부 국정과제 현황

국정 목표	국민께 드리는 약속	국정과제 (주관 4개)	주관 (협조)	주요내용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①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1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법무부 (권익위 문체부)	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② 검찰 독립 예산편성 ③ 국민 피해구제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 ④ 공수처 정상화 등 부패대응 공백 방지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⑨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 하겠습니다	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협조)	금융위 (법무부)	⑤ 수용자 인권보호 강화 ⑥ 이주민 인권보호 강화
	⑫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공정위 (법무부)	① 권력형 성범죄 근절 및 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 구축 ②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 ③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및 주취범죄 엄정대응 ④ 무고·위증·사기 등 거짓말범죄 피해자 특별 구제책 마련 ⑤ 서민·소상공인 울리는 경제범죄 엄단
		6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공정위 (법무부)	① 원스톱 범죄피해자 솔루션 시스템 구축 ② 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치유지원 강화 ③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 보장 ④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증거보전 제도 마련 ⑤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사회적 취약계층 우선 지원

2. 법무행정의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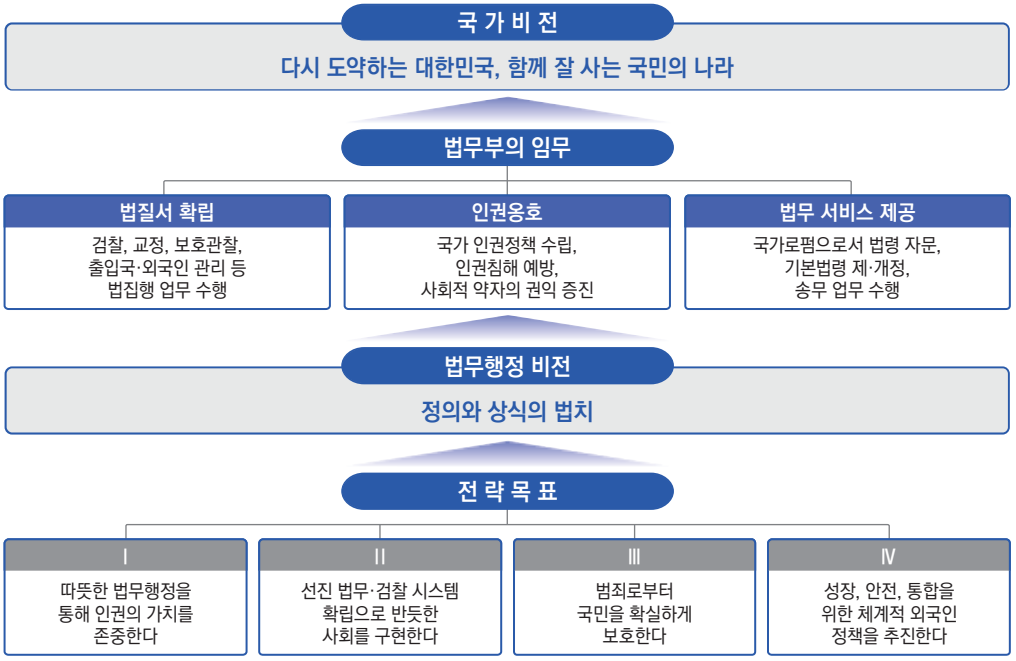
혁신행정담당관실 사무관 이강채

가. 개요

법무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가비전 및 국정목표 등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법질서 확립', '인권옹호', '법무서비스 제공' 등 법무부 3대 임무를 기본 바탕으로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법무행정 비전으로 삼아 국정과제 등 국정기조와 관련된 주요 정책사항 등을 반영하여 2022년도 법무부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본부 각 부서에서는 '따뜻한 법무행정을 통해 인권의 가치를 존중한다' 등 4대 전략목표 아래 '인권 보호체계 강화를 통해 법무행정의 인권수준을 향상한다' 등 9개 성과목표 및 '인권보호체계 구축 및 국제인권 대응' 등 49개의 관리과제를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선정하고 이를 추진하였다. 2022년도 우리 부 성과관리 전략·시행계획 목표체계 및 전략목표에 따른 성과목표와 관리과제는 다음과 같다.

| 표 1-3 | 2022년 성과관리시행계획 목표체계



| 표 1-4 | 2022년 성과관리시행계획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현황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명	주요내용
Ⅰ. 따뜻한 법무행정을 통해 인권의 가치를 존중한다	1. 인권 보호체계 강화를 통해 법무행정의 인권 수준을 향상한다	① 인권보호체계 구축 및 국제인권 대응	• 종합적·체계적인 국가 인권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추진 •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제도화와 이행 노력
		② 인권침해자체예방 및 조사구제 시스템 강화	• 구금·보호시설 실태점검·개선조치 등 인권침해 자체예방 및 인권보호 시스템 강화
		③ 능동적 범죄 대응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실효적 형사사법체계 구축	• 젠더기반 폭력범죄에 대응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개선 추진 •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등 시대변화를 반영한 형사사법체계 정비 추진
	2.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 범죄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②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피해 지원 및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 강화	• 여성·아동 관련 법령 지속 점검을 통한 개선 방안 마련 •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성 제고 교육 및 진술조력인 추가양성 통한 아동·장애인 범죄피해자 지원 내실화
	3. 국민에게 수준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마련	• 임차인의 주거 안정, 임대인의 재산권,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주택임대차 제도의 개선 방안 마련
		② 과태료 기본법 전부개정안 마련	• 과태료 집행 절차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고 공정과 신뢰의 가치 실현
		③ 중소·벤처기업 법률지원 강화	•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종합 법률 서비스와 창업지원 법률정보 제공
Ⅱ. 선진 법무·검찰 시스템 확립으로 반듯한 사회를 구현한다	1. 중립적이고 공정한 형사사법시스템을 확립한다	① 검찰의 중립성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 장관의 구체적 사건 수사지휘권 폐지를 통한 검찰의 중립성 및 공정성 제고
		② 서민·소상공인 울리는 경제범죄 엄단	• 관계기관과 수사·조사 협력을 통한 범죄수익 환수 및 경제 범죄 집중 단속
		③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	• 사경 송치 후 새롭게 실체가 확인된 사건 수사절차 간소화, 보완수사 효율성 제고
		④ 성폭력, 가정폭력 등 젠더폭력 및 아동학대 사범 처벌 강화	•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전담검사 지정·운영 통한 내실있는 사건처리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범죄유형별 세분화된 사건처리기준 마련
		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	• 제20대 대선 및 제8회 지방선거 대비, 「선거전담수사반」을 설치하고 단계별 비상근무 체제하에 신속·엄정하게 대응
		⑥ 국제형사협력 강화를 통한 부정축재 사범 엄단	• 특별관리 국외도피사범을 중심으로 맞춤형 집중 송환 추진 및 형사사법공조망 확충 노력
		⑦ 부패대응 공백 방지	•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폐지 법안 관련 국회 입법논의 지원 등 관련 법제 정비를 통한 부패범죄대응 공백 방지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명	주요내용
	2.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법무시스템을 운영한다	① 데이터·디지털콘텐츠계약법 도입	• 데이터·디지털콘텐츠·서비스·플랫폼 거래 일상화를 반영하여, 계약관계에 적용될 기본 규범 도입
		② 경제플랫폼 개선을 위한 「민법」 개정안 마련	• 채권 일반소멸시효기간 단축 및 소멸시효기간 통일,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 퍼블리시티권 도입 추진
		③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선진 변호사 제도 구축	• 리걸테크TF 및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운영을 통해 리걸테크산업과 변호사단체가 상생하는 법·제도 개선 추진
		④ 선진형 공증제도 정착	• 기존 전자공증 시스템을 개선하여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역량을 강화한 차세대 전자공증시스템 구축 추진
		⑤ 국제 민사상 규범 생안·도입 및 법률 ODA	• 법무 관련 국제기구의 국제규범협상, WTO·FTA 등 통상협상 참여 및 법률자문 제공
		⑥ 국제투자분쟁(ISDS)대응 및 예방강화	• 국제투자분쟁(ISDS) 담당자의 전문성·역량을 강화하여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예방
		⑦ 부패·비리,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국고손실 철저 환수	• 부패·비리, 입찰담합 등으로 인한 부당이득 환수 및 국고투입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손해배상소송 등으로 환수하도록 법률적 자문 및 지원
		⑧ 선진화된 행정소송 송무 체계 실현	• 변화된 국가송무체계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 행정소송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추진
		⑨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법률업무 강화	•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제의 선제적 정비 추진 및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법률지원 강화 노력
		⑩ 변호사시험 및 법조윤리시험 관리	• 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Ⅲ. 범죄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한다	1.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실효적인 범죄예방 체계를 구축한다	① 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 방지 대책 강화	•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확대 및 수사역량 제고, 훼손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성능 개선 및 시스템 고도화 등 고위험자 관리·감독 강화
		② 학교폭력 등 청소년 비행예방기능 강화	• 초기비행 청소년에 대한 개별상담, 상담전문 민간자원 멘토링 연계, 학교·검찰·법원 등 관계기관 연계 강화를 통한 비행예방 교육 활성화
		③ 소년원 교육 내실화를 통한 안정적 사회복귀지원	• 소년원생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처우 및 비행예방 교육을 통해 성공적인 사회정착 도모
		④ 치료환경 개선을 통한 치료감호 내실화	• 정신과 전문의 등 의료인력 확충,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병상 수 축소 및 병상 간 이격거리 확보 등 치료환경 개선
		⑤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전문처우 프로그램 강화	•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및 정신건강 선별검사 등을 활용하여 맞춤형 전문 처우프로그램 운영
		⑥ 법무보호대상자 사회정착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 취업지원 수혜자 확대, 전담인력 전문화 교육 등 통한 지원 역량 강화, 법무보호사업 활성화 추진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명	주요내용
	2. 다양한 교정정책을 통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① 수용자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수용환경 개선	• 교정시설 신·증축 및 수용동 증·개축으로 추가 수용공간을 확보하고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수용자 인권 보호 노력
		② 교정정책의 국민소통 강화	•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홍보전략으로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여 교정 행정의 이미지 제고 도모
		③ 교정 온라인 민원 서비스 활성화	• 스마트접견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민원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여 민원인 편의 증진 도모
		④ 재범고위험군 수형자 집중관리 체계 강화	• 재범고위험군 수형자를 대상으로 정밀분류심사 및 재범유발 요인을 감안한 개인별 처우를 통해 재범 위험성 관리체계 구축 추진
		⑤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수형자 취업 역량 강화	• 교도작업과 직업훈련으로 수형자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직업훈련 연계 취업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출소 후 경제적 자립 도모
		⑥ 맞춤형 교정·교화 프로그램 내실화	• 자기통제, 가족관계 회복 등 다양한 주제의 집중인성교육 운영, 귀휴·가족접견 등 수형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처우 실시
		⑦ 수용자 의료처우 내실화	• 코로나19 백신접종 등 감염병 예방활동 및 건강검진, 의료장비 현대화, 원격의료시스템 운영확대 등 수용자 의료처우 향상 추진
		⑧ 성폭력·중독사범 등 재범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강화	• 성폭력 사범의 재범 위험성, 중독사범의 중독 정도 등에 따라 맞춤형 치료프로그램 실시
Ⅳ. 성장, 안전, 통합을 위한 체계적 외국인 정책을 추진한다	1. 미래지향적 이민행정을 구현한다	① 편리하고 안전한 출입국 국경관리 체계 구축	• 승객정보 사전분석, 자동심사 확대, 생체 인식 등 안전한 출입국 심사방안 마련, 제주무사증 제도 및 지방공항 이용 활성화 정책 추진
		②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개방적이고 인권친화적인 체류환경 조성	•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제도 개선 및 계절근로자 제도 활성화로 산업현장 및 농어촌 인력부족 해소, 우수인재 확보 위한 적극적인 비자정책 추진
		③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절차 강화 및 보호시설 환경 개선	• 출입국 사범 단속 시 주거권자 및 관계자 사전동의 절차 추가로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절차 강화 및 새로운 모델의 보호시설 도입 추진
		④ 디지털플랫폼 구축을 통한 원스톱 이민행정서비스 제공	•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 구축, 이민행정 온라인 민원시스템 고도화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등 효율적인 이민행정 서비스 제공
		⑤ 이민행정 홍보 강화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	• 디지털매체를 적극 활용한 홍보로 국민 및 외국인과 직·간접 및 쌍방향 소통 추진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명	주요내용
	2. 국격에 걸맞은 외국인 정책을 통해 사회통합 기반을 구축한다	①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개방과 포용의 외국인정책 설계 및 추진	•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출입국 관리법령 등 소관 법령 제·개정 등 추진
		② 국민이 공감하고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국적정책 추진	• 과학·기술 분야 등 외국 우수인재 유치, 특별공로자 및 독립유공자 후손 대상 국적증서 수여, 예외적 국적 이탈 허가제도 도입 등 국적제도 개선
		③ 이민자 권익증진을 위한 실효적 사회통합정책 추진	• 재한외국인을 위한 사회통합 교육프로그램 인프라 구축 및 '권익증진협의회',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등을 운영하여 외국인 사회적응 지원
		④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난민 정책 추진	• 난민법령·지침 개정 및 난민인정자·인도적 체류자 등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개발 등 추진
		⑤ 공정하고 전문적인 난민 이의신청 심의 체계 구축	• 난민조사관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심사 전문성 강화, 난민 이의신청 제도의 이의신청인 의견진술 기회 확대 등 특별행정심판 기능 강화

나. 국정과제 등 관리체계

법무부는 국정과제별 세부 이행계획 수립, 주기적 이행점검 회의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평가위원회의 자체평가 등을 통해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제2절 기구·인원

제1항 본 부

1. 기구

본부 기구는 2022. 12. 31. 현재 2실 3국 2본부 11관 56과로 편성되어 있다.

가.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은 정책기획관, 비상안전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시설담당관, 정보화데이터담당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을 두고 있으며 법무부 주요 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예산의 편성 및 결산, 당정협의, 국회업무, 부내 행정개선 총괄·지원 및 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사무, 조직 및 정원의 관리, 법무시설 조성, 법무행정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과 국가 비상사태 대비업무,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의 총괄·조정, 법무행정 분야 양성평등정책 수립·시행,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 국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민원·정책 피드백 서비스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장관 직속으로 있던 정책기획단을 기획조정실 소속으로 재편(2021. 6. 8.)하여 법무행정의 개혁 과제 발굴 및 연구, 정책위원회 운영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나. 법무실

법무실은 법무심의관, 송무심의관, 법무과, 국제법무과, 국제분쟁대응과, 국가소송과, 행정소송과, 통일법무과, 상사법무과, 법조인력과를 두고 있으며, 대통령·국무총리·행정각부에 대한 법령자문 및 유권해석, 국내외 법무자료의 조사연구와 국제법무 관계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변호사 및 공증인 업무의 감독, 공익법무관의 관리,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지휘·감독, 국가배상·헌법재판 관련 업무, 국고손실 환수송무 업무, 남북대화·교류협력 관련 법적지원, 변호사시험·법조윤리시험 관장, 법조인 양성 제도의 조사·연구 및 개선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다. 검찰국

검찰국은 검찰과, 형사기획과, 공공형사과, 국제형사과, 형사법제과를 두고 있으며, 검찰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검찰권 행사에 대한 일반적 지휘·감독, 검찰공무원의 인사, 검찰청 정원 배정, 검찰예산의 편성 및 배정, 형사사건 관련 검찰업무 및 범죄의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형 집행 및 압수물 처리의 지휘·감독, 형사보상금 지급사무의 지휘·감독, 마약류보상금 및 국가보안유공자 상금 지급 심의 및 결정 사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사무, 주한미군 지위협정에 의한 재판관할권 행사문제,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사무,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집행 및 피보안관찰자에 대한 사후관리, 형사관계법령의 입안 등의 업무도 맡고 있다.

라.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정책국은 범죄예방기획과, 보호정책과, 치료처우과, 보호관찰과, 소년보호과, 전자감독과, 범죄예방데이터과, 소년범죄예방팀을 두고 있으며, 범죄예방 기획·조직·인사·예산·복무관리 등 범죄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법질서 준수의식 고양을 위한 캠페인 전개, '이로운법(법사랑 사이버랜드)' 운영, 법교육 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 법교육 교재·프로그램 보급, 법교육 전문인력 양성 연수지원, 법질서 실천운동 등을 통해 국민의 법의식을 함양하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법교육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치료감호 정책 기획 및 집행 감독,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운영 및 결정 집행, 법원의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이수명령·위치추적 전자감독·성충동 약물치료·성폭력범죄자의 등록·관리 및 임시퇴원·가석방된 보호관찰 대상자를 지도·원호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재범방지 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소년원생에 대한 적정한 개별처우와 교과교육, 인성교육 및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고, 소년범 사회 내 처우 전담, 소년 보호관찰·조사·수강·사회봉사 등 청소년 비행예방대책을 총괄하고 있으며, 출소자·보호관찰대상자·퇴원생에 대한 숙식제공·주거지원·직업훈련·취업지원 등 사회 복귀를 돕는 갱생보호 업무, 데이터분석 기반의 강력범죄자 재범억제 통합플랫폼 구축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2022. 8. 4.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소년범죄예방팀을 신설(2025. 6. 30.까지 존속)하여 소년 범죄예방정책 수립 및 소년보호관찰 제도 운영 등 소년사법정책 및 집행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마. 감찰관실

감찰관실은 감찰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을 두고 있으며, 감찰관은 장관을 보좌하여 사정업무,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법무부 및 검찰청에 대한 감사(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소추·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제외), 법무부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다른 기관에 의한 법무부 및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의뢰받은 사항에 관한 조사·처리,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에 관한 사항, 병역사항의 신고 및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운영 지원,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를 담당하고 있다.

바. 인사정보관리단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권한을 기존 대통령비서실장 외에 법무부장관에게도 위탁하는 것으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2022. 6. 7.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여 인사정보1담당관실, 인사정보2담당관실을 두고 있으며, 인사정보관리단장은 장관을 보좌하여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사무를 담당하고 있다.

사. 인권국

인권국은 인권정책과, 인권구조과, 인권조사과, 여성아동인권과를 두고 국가인권 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국가인권정책의 수립·총괄·조정업무와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정부보고서 및 답변서의 작성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범죄피해자지원법인 및 법률구조법인의 관리·감독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법무행정 수행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 법무부 공무원의 인권 교육, 검찰국·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교정본부·범죄예방정책국 산하기관에 대한 인권보호 상황평가, 법무부 내 여성·아동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 여성·아동 관련 시책의 추진을 위한 다른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 아동학대 관련 법령정비 및 대응인력 역량 강화교육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아. 교정본부

교정본부는 교정정책단에 교정기획과, 직업훈련과, 사회복귀과, 복지과를 두고 있으며, 보안정책단에 보안과, 분류심사과, 의료과, 심리치료과를 두고 있다. 교정본부는 교정행정 기획, 조직·인사·예산·복무 감독·상훈·홍보·국제관계업무, 교정관련 법령정비, 대체복무요원 복무 및 교육, 교도작업 운영, 취업·창업 지원, 수용자 교육 기획, 출소예정자 사회 적응 지원, 수용자 수용·처우·석방·접견, 참관, 이송, 가석방, 분류처우, 수용자 보건위생, 의료 및 약제, 질병예방, 수용자 청원, 인권 및 소송, 수용자 심리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2022. 12. 19. 차관 직속의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팀을 신설(자율기구, 존속기간 2023. 6. 18.까지, 연장 가능)하여 수용시설 내 의료 정책의 발전적 변화를 모색하고 마약류의약품 오남용 예방, 의료인력 부족 문제 등에 대한 실질적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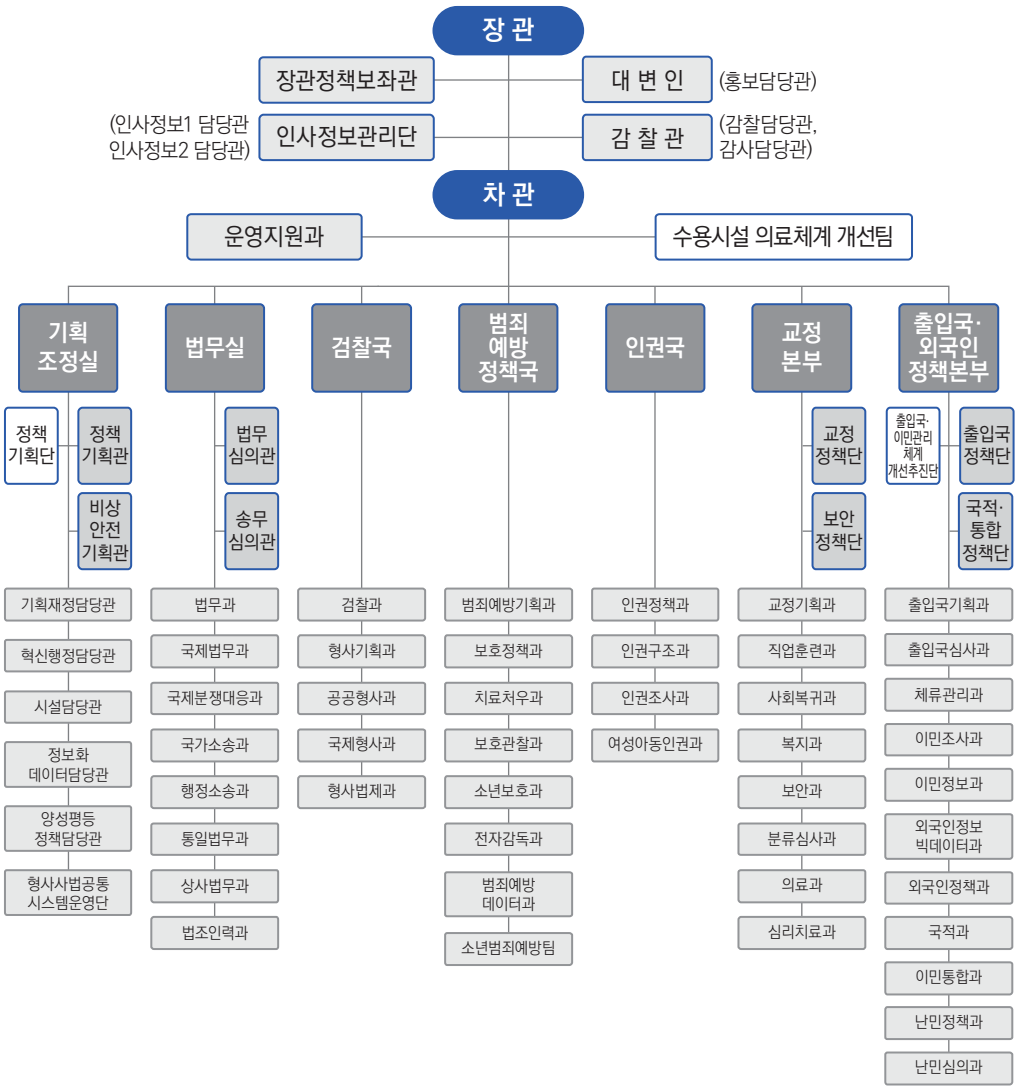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출입국정책단과 국적·통합정책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출입국정책단은 출입국기획과, 출입국심사과, 체류관리과, 이민조사과, 이민정보과, 외국인정보빅데이터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적·통합정책단은 외국인정책과, 국적과, 이민통합과, 난민정책과, 난민심의과로 구성되어 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출입국관리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출입국관리 조직·인사·예산·복무관리, 소관법령의 입안 및 외국인정책 계획 수립 및 총괄, 외국인 신원정보 표준화 플랫폼 구축, 내·외국인 출입국심사 및 남북 왕래자의 출입심사, 사증 및 사증발급 인정서의 발급심사, 출입국 규제, 외국인의 체류자격부여 등 각종 체류허가, 외국인등록, 출국권고·출국명령·강제퇴거명령 및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출입국관리법령 위반 관련 조사, 외국인 동향조사, 귀화·국적회복 등 국적취득, 국적상실 및 이탈, 국적판정, 난민인정심사 업무 및 출입국항 난민신청 회부심사 업무, 난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재정착희망난민의 수용 및 국내 정착지원,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급 등 난민의 처우 관련 정책, 재한 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정책 총괄, 다문화(多文化)의 이해 증진에 관한 정책, 외국 국적동포의 입국·체류·취업자격부여에 관한 정책 총괄, 외국의 출입국·외국인 정책 담당기관과 협력강화를 통한 재외국민의 출입국·체류 지원, 출입국·외국인정책 행정에 관한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외국인정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2022. 11. 7.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속의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을 신설(자율기구, 존속기간 2023. 11. 6.까지)하여 출입국·이민관리체계개편 공론화 및 법제 마련, 인구감소·이민사회 대비 신규정책 발굴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차. 기 타

그밖에 대변인실은 법무부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 수립 및 조정,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법무정책에 관한 각종 홍보상황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운영지원과는 보안, 예산의 집행 및 국유재산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2. 12. 31. 현재 법무부 기구는 〈표 1-5〉와 같다.

| 표 1-5 | 본부 조직도



2. 인원

중대 아동학대조사 인력, 교정시설 감염병 대응 인력,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인력, 법률구조기구 관리 연계 강화 전담 인력 등 9명을 증원하여 2022. 12. 31. 현재 본부 정원 772명, 현원 752명으로 직종별 정원 및 현원은 〈표 1-6〉과 같다.

| 표 1-6 | 본부 직종별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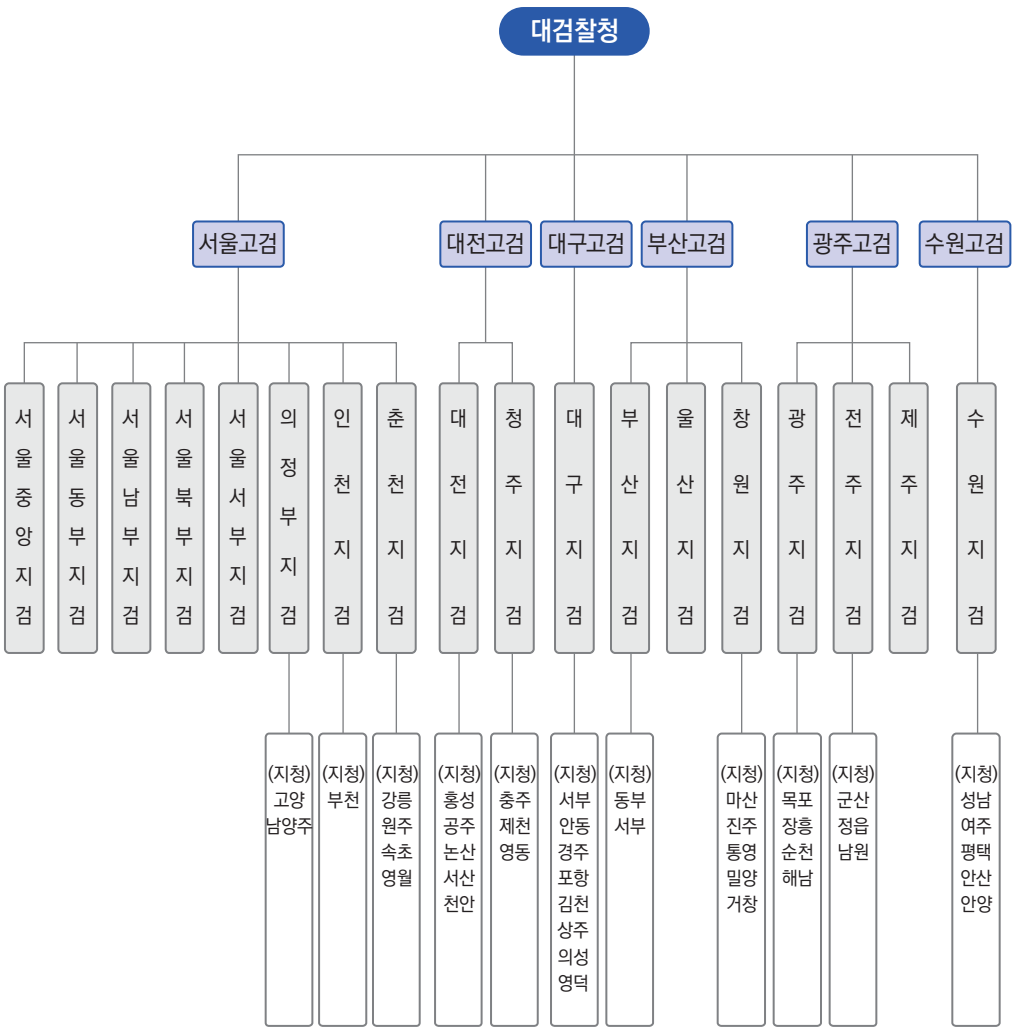
구 분	계	정무직	검사	일반직	별정직
정원	772	2	29	737	4
현원	752	2	37	713	0

제2항 소속기관

1. 검찰청

검찰기구는 2022. 12. 31. 현재 대검찰청과 6개 고등검찰청, 18개 지방검찰청, 42개 지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검찰청 조직 정원 및 현원은 아래와 같다.

| 표 1-7 | 검찰청 조직도



| 표 1-8 |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정원

(단위 : 명)

구 분	계	검 사	일반직
인 원	10,745	2,292	8,453

| 표 1-9 | 검사의 직위별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직 위	정 원	현 원
계	2,292	2,086
검찰총장	1	1
고등검사장급	7	4
대검검사급	31	31
검사	2,253	2,050

| 표 1-10 | 검사 외의 검찰청소속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및 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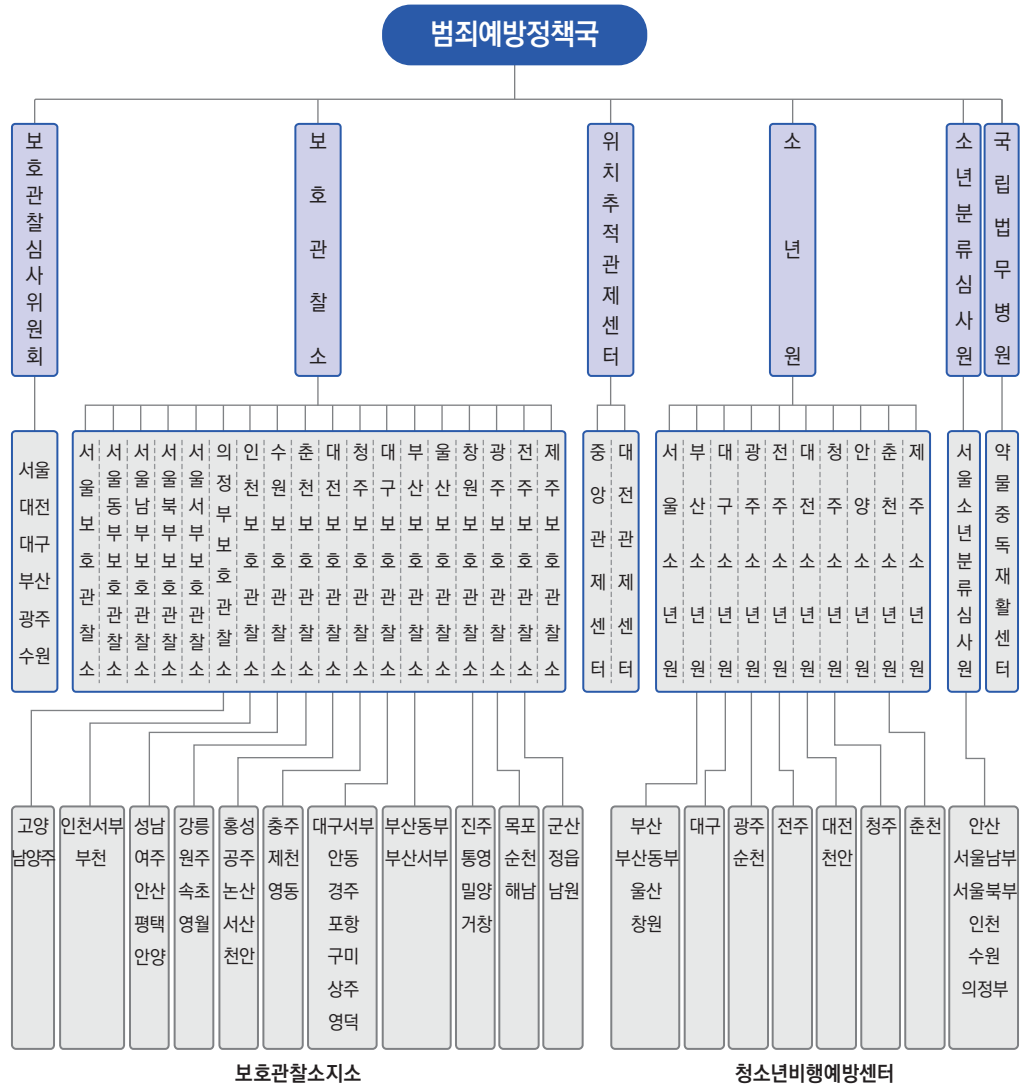
(단위 : 명)

직 급	정 원	현 원
계	8,453	8,391
고위공무원단	26	20
검찰부이사관	17	17
검찰수사서기관	183	172
임기제서기관	1	1
서기관	4	4
검찰사무관·수사사무관	451	410
검찰사무관·마약수사사무관	6	5
검찰주사	1,459	1,453
검찰주사보	1,850	1,883
검찰주사보(속기사)	28	23
검찰서기	1,091	1,092
검찰서기보	852	804
마약수사직	305	265
통계직	1	1
전산·방송통신직	233	216
시설·공업직	94	93
사서직	4	4
임업직	2	2
운전직	274	267
방호직	159	153
위생직	1	1
관리운영직	1,335	1,434
연구직	72	67
전문경력관	5	4
별정직	0	0

2. 보호기관

보호기관은 2022. 12. 31. 현재 18개 보호관찰소, 40개 보호관찰지소, 2개 위치추적 관제센터, 6개 보호관찰심사위원회, 10개 소년원, 1개 소년분류심사원, 18개 청소년 비행예방센터, 1개 국립법무병원, 1개 약물중독재활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및 현원은 〈표 1-11〉 내지 〈표 1-14〉와 같다.

| 표 1-11 | 보호관찰·소년보호기관 조직도



| 표 1-12 | 보호관찰심사위원회·보호관찰소·위치추적관제센터 소속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직 급	정 원	현 원
계	2,079	2,015
고위공무원단	1	1
고위공무원단(임기제)	2	2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4	4
서기관	29	29
서기관(임기제)	4	4
서기관 또는 보호사무관	6	5
보호사무관	191	185
보호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1
보호주사	352	335
보호주사·보건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	1	0
전산주사	2	2
보호주사보	491	475
보호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4	4
보호서기	489	471
보호서기 또는 전산서기	1	1
공업서기	4	4
운전서기	2	15
보호서기보	414	410
보호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	1
공업서기보	2	2
운전서기보	60	46
방호서기보	15	15
관리운영직군	3	3

| 표 1-13 |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소속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직 급	정 원	현 원
계	984	961
고위공무원단	2	2
서기관	16	15
기술서기관	9	7
서기관 또는 보호사무관	9	8
기술서기관 또는 의무사무관	1	1
기술서기관·보호사무관 또는 의무사무관	1	1
보호사무관	46	40
의무사무관	12	7
보호사무관 또는 의무사무관	1	0
보호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1
보호주사	106	104
공업주사	1	1
시설주사	1	1
간호주사	4	3
보호주사·보건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	1	0
보호주사보	191	191
공업주사보	4	4
의료기술주사보	1	1
간호주사보	19	18
약무주사보	1	0
보호서기	193	192
보호서기 또는 간호서기	1	1
공업서기	5	5
간호서기	4	6
시설서기	2	2
식품위생서기	7	7
보호서기 또는 식품위생서기	2	2
조리서기	1	1
의료기술서기	1	1
방호서기	1	1
보호서기보	172	171
보호서기보 또는 식품위생서기보	3	3
공업서기보	16	15
식품위생서기보	4	4
운전서기보	23	23
조리서기보	56	56
방호서기보	19	19
관리운영직군	10	12
전문경력관나군(직업훈련담당)	21	21
전문경력관나군(교과교육담당)	13	12
전문경력관나군(특수교육담당)	3	2

| 표 1-14 | 국립법무병원 소속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직 급	정 원	현 원
계	453	416
고위공무원단	2	2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	1
부이사관 또는 기술서기관	1	0
서기관	1	1
기술서기관	13	9
기술서기관 또는 의무사무관	3	0
보호사무관	2	2
보호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1	1
의무사무관	2	0
약무사무관	1	1
간호사무관	2	2
보건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	1	1
보호주사	4	4
보호주사 또는 행정주사	5	4
약무주사	2	2
간호주사	25	24
간호조무주사	2	2
보건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	4	3
공업주사	1	1
의료기술주사	1	1
방호주사	1	1
보호주사보	5	5
보호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	4	4
약무주사보	3	2
간호주사보	58	48
간호조무주사보	7	5
보건주사보 또는 의료기술주사보	2	2
의료기술주사보	2	2
시설주사보	1	1
전산주사보	1	1
공업주사보	1	1

직 급	정 원	현 원
방송통신주사보	1	1
조리주사보	1	1
기계운영주사보	1	1
보호서기	3	4
보호서기 또는 행정서기	5	5
공업서기	2	2
간호서기	62	58
의료기술서기	4	4
간호조무서기	16	18
전기운영서기	1	1
기계운영서기	2	2
보호서기보	2	2
보호서기보 또는 행정서기보	2	2
식품위생서기보	1	1
시설서기보	1	1
공업서기보	2	2
운전서기보	2	3
간호조무서기보	138	130
조리서기보	17	16
방호서기보	12	12
관리운영직군	2	3
전문경력관가군(의료시설담당)	1	1
전문경력관나군(작업치료담당)	1	1
전문경력관나군(사회사업담당)	4	3
전문경력관나군(재활치료담당)	1	1
전문경력관나군(직업훈련담당)	5	4
전문경력관다군(작업치료담당)	2	1
전문경력관다군(사회사업담당)	1	1
전문경력관다군(직업훈련담당)	2	2

3. 교정기관

2022. 12. 31. 현재 법무부 산하 전국의 교정기관은 중간 감독기관인 4개의 지방 교정청과 39개의 교도소, 12개의 구치소, 3개의 지소 등 총 58개소에 이르고 있다. 또한 2010. 12. 1. 개청한 국내 최초 민영 교도소가 운영되고 있다. 교정기관의 교정공무원 정원은 16,668명이며, 2022. 12. 31. 현재 15,946명의 교정공무원이 수용관리와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2022년 소속 교정기관 및 교정공무원 현황은 아래와 같다.

| 표 1-15 | 교정기관 조직도



| 표 1-16 | 교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직급·직렬별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직급별 / 직렬별	정원	현원	고위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록연구사	전문경력관
계	16,668	15,946	15	9	117	66	372	1,563	2,026	5,853	6,522	4	121
교정	15,460	14,842	15	5	58	34	331	1,443	1,819	5,636	6,119		
의무	117	82		4	59	30	24						
약무	16	14					13	3					
간호	186	155					1	38	62	85			
의료기술	36	35						15	14	7			
식품위생	89	79						13	35	24	17		
행정	0	0											
시설	73	72				2	2	29	24	11	5		
전산	11	11					1	2	5	3			
공업	228	216						17	57	68	86		
방송통신	4	4						3		1			
운전	271	262							5	5	261		
보건	1	1								1			
관리운영	51	54							5	12	34		
기록연구사	4	4										4	
전문경력관(가군)	10	9											10
전문경력관(나군)	111	106											111

4. 출입국기관

2022. 12. 31. 현재 법무부 소속 출입국기관은 6개 출입국·외국인청, 14개 출입국·외국인사무소, 2개 외국인보호소, 1개 센터 및 23개 출장소로 구성되어 있다. 출입국기관의 공무원 정원은 2,576명이며, 현원은 2,566.5명이고, 세부현황은 아래와 같다.

| 표 1-17 | 출입국기관 조직도



(6개청, 14개 사무소, 2개보호소, 1개센터, 23개 출장소)

| 표 1-18 | 출입국기관 소속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구 분	정 원	현 원
계	2,576	2,566.5
고위공무원	3	3
부이사관	3	3
서기관	27	26
출입국관리사무관	116	109
출입국관리주사	425	412
출입국관리주사보	692	705.5
출입국관리서기	686	677
출입국관리서기보	512	522
전산직	43	41
의무직	3	2
간호직	3	3
관리운영직군 등	63	63

5. 법무연수원

법무연수원은 검사, 검찰·보호·출입국관리직 공무원 교육을 담당하는 기획부, 교정직 공무원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교정연수부,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위원, 원내 일반 운영을 총괄하는 총무과, 신임검사 교육, 로스쿨 지원, 국제교류,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 특별사법경찰·국가송무수행자 등의 교육을 맡고 있는 용인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직급별 정·현원은 아래와 같다.

| 표 1-19 | 법무연수원 소속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구 분	정 원	현 원
계	138	130
검 사	19	13
고 위 공 무 원	6	6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등	7	6
행정사무관·교정관 등	23	21
행 정 주 사 · 교 감 등	26	26
행정주사보·교위 등	21	32
검 찰 서 기 · 교 사 등	25	24
행정서기보·운전서기보 등	11	2

6.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주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의 보존·관리 등을 수행하며, 2022. 12. 31. 현재 직급별 정·현원은 아래와 같다.

| 표 1-20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속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구 분	정 원	현 원
계	12	12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	1	1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행정사무관·검찰사무관 또는 검사	3	3
행정사무관 또는 검찰사무관	2	2
행정주사 또는 검찰주사	2	2
행정주사보 또는 검찰주사보	2	2
전산주사보	1	1
기록연구사	1	1

제3절 예산·시설

1. 예 산

가. 개요

2022년도 법무부 예산은 법무행정의 비전인 '정의와 상식의 법치' 구현을 위해 정신질환·약물중독 범죄자 관리 강화, 사회적 약자 법률지원 및 인권보호, 첨단기술을 활용한 전자법무행정 구현, 출소자 등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및 검찰개혁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교도작업특별회계를 합하여 세입이 전년보다 28.6% 감액된 1조 4,773억 2,700만 원, 세출이 2.7% 증액된 4조 2,408억 5,500만 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수입·지출이 1,001억 1,400만 원으로 회계별 내역은 〈표 1-21〉과 같다.

| 표 1-21 | 2022년도 예산 및 기금

○ 총 규 모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21 예산		2022 예산 (B)	2021 대비	
		본예산	추경(A)		증△감 (B-A)	%
예산	세 입	2,068,995	2,068,995	1,477,327	△591,668	△28.6
	세 출	4,127,713	4,127,713	4,240,855	113,142	2.7
기금	수 입	109,985	109,985	100,114	△9,871	△9.0
	지 출	109,985	109,985	100,114	△9,871	△9.0

○ 일반회계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21 예산		2022 예산 (B)	2021 대비	
	본예산	추경(A)		증△감 (B-A)	%
세 입	1,930,623	1,930,623	1,355,756	△574,867	△29.8
세 출	3,989,341	3,989,341	4,119,284	129,943	3.3

○ 교도작업특별회계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21 예산		2022 예산 (B)	2021 대비	
	본예산	추경(A)		증△감(B-A)	%
세 입	138,372	138,372	121,571	△16,801	△12.1
세 출	138,372	138,372	121,571	△16,801	△12.1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21 예산		2022 예산 (B)	2021 대비	
	본예산	추경(A)		증△감(B-A)	%
수 입	109,985	109,985	100,114	△9,871	△9.0
지 출	109,985	109,985	100,114	△9,871	△9.0

나. 일반회계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세입이 전년보다 29.8% 감액된 1조 3,558억 원, 세출이 전년보다 3.3% 증액된 4조 1,193억 원으로 정부 일반회계 예산 421조 4,160억 원에 대한 점유율은 세입이 0.5%, 세출이 1.0%이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4조 1,193억 원을 프로그램별로 보면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으로 구성된 법무 및 검찰 행정지원이 67.2%인 2조 7,667억 원, 교정활동이 10.1%인 4,175억 원, 검찰활동이 8.1%인 3,336억 원, 법무활동이 4.1%인 1,698억 원이며, 기타 인권활동·출입국관리·범죄예방활동·법무교육훈련 등 6개 프로그램이 10.5%인 4,317억 원이다. 주요 경비별·사업비별·프로그램별 예산 내역은 〈표 1-22〉 내지 〈표 1-23〉과 같다.

| 표 1-22 | 주요 경비별 예산내역(세출)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21 예산		2022 예산 (B)	2021 대비	
	본예산	추경(A)		증△감 (B-A)	%
계	3,989,341	3,989,341	4,119,284	129,943	3.3
인 건 비	2,450,784	2,450,784	2,475,578	24,794	1.0
기 본 경 비	152,541	152,541	153,073	532	0.3
사 업 비	1,279,962	1,279,962	1,396,433	116,471	9.1
기금전출금	106,054	106,054	94,200	△11,854	△11.2

| 표 1-23 | 사업비 예산내역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2021 예산		2022 예산 (B)	2021 대비	
	본예산	추경 (A)		증△감 (B-A)	%
계	1,279,962	1,279,962	1,396,433	116,471	9.1
• 국가송무수행 및 공익법무관운영	2,434	2,434	2,337	△97	△4.0
• 국가배상금지급	150,000	150,000	150,000	-	-
• 정부법무공단운영지원	355	355	319	△36	△10.1
•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법률지원	1,022	1,022	805	△217	△21.2
• 개발도상국 법제정비지원(ODA)	168	168	162	△6	△3.6
• 기업환경지수 개선	283	283	248	△35	△12.4
• 국제투자분쟁중재수행 및 대응	4,882	4,882	5,219	337	6.9
• 국민편익증진법제정비	1,225	1,225	1,197	△28	△2.3
•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업법제선진화	3,409	3,409	3,249	△160	△4.7
• 공증제도운영 및 활성화	731	731	730	△1	△0.1
• 변호사제도의 선진화	715	715	667	△48	△6.7
• 변호사시험 및 법조윤리시험관리	3,388	3,388	4,150	762	22.5
• 통일대비법률통합 실질화	732	732	691	△41	△5.6
• 법률구조	53,516	53,516	62,402	8,886	16.6
•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4,570	4,570	4,703	133	2.9
• 인권교육	219	219	214	△5	△2.3
• 아동인권 증진	218	218	258	40	18.3
• 국제인권역량강화	159	159	188	29	18.2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195	195	237	42	21.5
• 이민정책개발지원	395	395	429	34	8.6
• 이민정책연구원 운영	2,024	2,024	2,004	△20	△1.0
• 출입국외국인관서시설 운영	41,222	41,222	43,843	2,621	6.4
•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입대체경비	4,438	4,438	3,986	△452	△10.2
• 출입국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20,980	20,980	17,864	△3,116	△14.9
• 외국인보호관리	16,665	16,665	18,200	1,535	9.2
• 외국인사회통합지원	13,631	13,631	14,569	938	6.9
•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6,622	6,622	9,740	3,118	47.1
•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 운영	10,789	10,789	10,482	△307	△2.8
• 검찰청시설운영	70,057	70,057	74,095	4,038	5.8
•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	7,291	7,291	8,014	723	9.9

사 업 명	2021 예산		2022 예산 (B)	2021 대비	
	본예산	추경 (A)		증△감 (B-A)	%
• 과학수사인프라구축	8,088	8,088	8,676	588	7.3
• 국제형사협력지원(ODA)	2,641	2,641	2,509	△132	△5.0
• 형사사법 증거 검증체계 고도화 및 프런티어기술 연구개발 사업(R&D)	2,420	2,420	2,624	204	8.4
•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	28,416	28,416	24,795	△3,621	△12.7
• 검찰업무정보화(정보화)	34,191	34,191	32,778	△1,413	△4.1
•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정보화)	10,856	10,856	10,919	63	0.6
• 형사부 등 수사지원	88,508	88,508	87,425	△1,083	△1.2
• 공공수사	4,899	4,899	4,441	△458	△9.3
• 국민생활침해범죄 수사	13,912	13,912	12,121	△1,791	△12.9
• 마약수사	4,876	4,876	4,385	△491	△10.1
•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수사	3,410	3,410	3,849	439	12.9
•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7,150	7,150	6,220	△930	△13.0
• 공판활동지원	2,010	2,010	2,175	165	8.2
• 형집행 및 범죄수익 환수	4,056	4,056	8,260	4,204	103.6
• 형사보상	40,000	40,000	40,000	-	-
• 형사법정비	295	295	292	△3	△1.0
• 교도소행정지원	43,095	43,095	42,156	△939	△2.2
• 교정시설장비운용 및 현대화	79,655	79,655	106,108	26,453	33.2
• 대체복무 시설 개선 및 운영	19,786	19,786	17,854	△1,932	△9.8
• 교정시설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229,255	229,255	240,940	11,685	5.1
• 교정교화	9,775	9,775	10,491	716	7.3
• 범죄예방기관 시설운영	9,168	9,168	10,940	1,772	19.3
• 소년원생수용	21,796	21,796	23,518	1,722	7.9
• 청소년비행예방	5,611	5,611	5,750	139	2.5
• 갱생보호활동	40,565	40,565	40,505	△60	△0.1
• 치료감호자수용관리	8,641	8,641	9,845	1,204	13.9
• 보호관찰활동	12,780	12,780	13,277	497	3.9
• 전자감독	22,215	22,215	27,449	5,234	23.6
• 법질서 준수 및 법교육 활동	4,463	4,463	8,430	3,967	88.9
• 특별감찰활동	364	364	399	35	9.6
• 연수원시설관리 및 운영	4,675	4,675	4,612	△63	△1.3
• 법무·검찰공무원등 교육운영 및 개선	1,445	1,445	1,749	304	21.0

사 업 명	2021 예산		2022 예산 (B)	2021 대비	
	본예산	추경 (A)		증△감 (B-A)	%
• 법무연수원 수입대체경비	159	159	151	△8	△5.0
• 신임검사양성 및 교육지원	890	890	1,188	298	33.5
•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613	613	613	-	-
•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정책 피드백	120	120	120	-	-
• 행정서비스지원인력경비	8,741	8,741	9,223	482	5.5
• 정보기획지원	31	31	33	2	6.5
• 양성평등정책 지원	253	253	253	-	-
• 정책연구개발사업(R&D)	48	48	42	△6	△12.5
• 법무행정정보화(정보화)	36,099	36,099	38,227	2,128	5.9
•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	821	821	829	8	1.0
•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정보화)	8,308	8,308	7,374	△934	△11.2
•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19,659	19,659	61,948	42,289	215.1
• 기타법무시설개보수 및 확충	12,869	12,869	19,938	7,069	54.9

| 표 1-24 | 프로그램별 예산내역(세출)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21 예산		2022예산 (B)	2021 대비	
	본예산	추경 (A)		증△감 (B-A)	%
계	3,989,341	3,989,341	4,119,284	129,943	3.3
• 법무활동	169,344	169,344	169,774	430	0.3
• 인권활동	58,877	58,877	68,002	9,125	15.5
• 출입국관리	116,766	116,766	121,117	4,351	3.7
• 검찰활동	333,076	333,076	333,578	502	0.2
• 교정활동	381,566	381,566	417,549	35,983	9.4
• 범죄예방활동	125,239	125,239	139,714	14,475	11.6
• 특별감찰관활동	1,073	1,073	998	△75	△7.0
• 법무교육훈련	7,169	7,169	7,700	531	7.4
• 법무 및 검찰 행정지원	2,690,178	2,690,178	2,766,652	76,474	2.8
• 기금전출금	106,054	106,054	94,200	△11,854	△11.2

다. 교도작업특별회계

2022년도 세입과 세출예산은 동일하게 1,215억 7,100만 원이며, 세입예산은 작업생산품 판매수익 643억 4,300만 원, 전년도 세계잉여금 98억 4,000만 원, 작업부산물 판매수입 등 잡수입 3억 6,900만 원, 기금예탁원금회수 450억 원, 기금예탁이자수입 20억 1,9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본경비 5억 7,900만 원, 교도작업 552억 1,300만 원, 직업훈련 41억 7,300만 원, 시설보완 69억 900만 원,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546억 9,700만 원으로 〈표 1-25〉와 같다.

| 표 1-25 | 교도작업특별회계 세부내역

가. 세 입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21 예산		2022예산 (B)	2021 대비	
	본예산	추경(A)		증△감 (B-A)	%
계	138,372	138,372	121,571	△16,801	△12.1
교 도 소 수 입	89,383	89,383	64,343	△25,040	△28.0
기 타 잡 수 입	359	359	369	10	2.8
전년도세계잉여금	9,849	9,849	9,840	△9	△0.1
기금예탁원금회수	37,000	37,000	45,000	8,000	21.6
기금예탁이자수입	1,781	1,781	2,019	238	13.4

나. 세 출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2021 예산		2022 예산 (B)	2021 대비		내 역	
	본예산	추경 (A)		증△감 (B-A)	%		
계	138,372	138,372	121,571	△16,801	△12.1		
교 도 작 업	56,111	56,111	55,213	△898	△1.6	• 작업재료비 • 기타보전금 • 일반수용비 등	23,051 24,095 8,067
직 업 훈 련	4,045	4,045	4,173	128	3.2	• 훈련재료비 • 자산취득비 • 일반수용비 등	1,740 1,105 1,328
시 설 보 완	8,909	8,909	6,909	△2,000	△22.4	• 작업장 신축 등 • 작업장비구입비	5,456 1,453
기 본 경 비	568	568	579	11	1.9	• 운영비 등	579
공 공 자 금 관 리 기 금 예 탁	68,739	68,739	54,697	△14,042	△20.4	• 예탁액	54,697

라. 범죄피해자보호기금

2022년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수입 및 지출은 동일하게 1,001억 1,400만 원이며, 수입은 기타재산수입 4억 1,700만원, 변상금 15억 5,200만 원, 기타경상이전수입 20억 2,900만 원,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19억 1,6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942억 원이며, 지출은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 433억 500만 원, 여성가족부 범죄피해자보호 361억 7,200만 원, 경찰청 범죄피해자보호 31억 6,400만 원, 운영비 4,800만 원, 예수원금상환 25억 원, 예수이자상환 1억 2,000만 원, 여유자금 148억 5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표 1-26〉과 같다.

| 표 1-26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세부내역

가. 수 입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21 기금		2022 기금 (B)	2021 대비	
	본예산	추경(A)		증△감 (B-A)	%
계	109,985	109,985	100,114	△9,871	△9.0
기타재산이자수입	426	426	417	△9	△2.1
변 상 금	1,556	1,556	1,552	△4	△0.3
기타경상이전수입	1,949	1,949	2,029	80	4.1
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	-	1,916	1,916	순증
일반회계전입금	106,054	106,054	94,200	△11,854	△11.2

나. 지 출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2021 기금		2022 기금 (B)	2021 대비		내 역
	본예산	추경(A)		증△감 (B-A)	%	
계	109,985	109,985	100,114	△9,871	△9,0	
법무부범죄피해자보호	42,513	42,513	43,305	792	1.9	•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범죄피해 구조금 등 5개 사업
여가부범죄피해자보호	32,366	32,366	36,172	3,806	11.8	• 성폭력 피해자 지원
보건복지부 범죄피해자보호	28,736	28,736	-	△28,736	순감	※ '22년부터 일반회계 이관
경찰청 범죄피해자보호	1,664	1,664	3,164	1,500	90.1	• 신변보호장치 및 임시숙소 지원
운 영 비	50	50	48	△2	△4.0	
예수원금상환	2,500	2,500	2,500	-	-	
예수이자상환	240	240	120	△120	△50.0	
여 유 자 금	1,916	1,916	14,805	12,889	672.7	

2. 시 설

시설담당관실 사무관 정민수

가. 개요

법무시설이란 법무행정을 구현하는 청사시설로 검찰청과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보호관찰소, 출입국관리사무소, 법무연수원 등을 말하며 법무부에는 검찰청사 67개, 보호관찰소 66개, 소년원 및 비행예방센터 31개, 교정시설 58개, 출입국관리사무소 46개 등 총 271개의 법무시설이 있다.

법무부에서는 5년 단위 중기사업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신설되는 기관과 노후하고 협소한 법무시설을 우선으로 확충하여 매년 5~6개 정도의 법무시설을 개청해 나가고 있다.

나. 국민과 함께하는 법무시설 조성

법무시설 조성 시 지역주민 및 수요기관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TF팀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협의를 하였으며, 법무시설 청사 외곽 담장 낮추기, 체육시설 주민개방, 교정시설의 청사 미관 개선 및 아름다운 주벽과 녹지 가꾸기 등으로 주민친화형 법무시설을 조성하였고, 사용자 및 외부전문가 만족도 조사, 소속기관 정책체험 등을 통한 관련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으며, 공사관계자 간담회, 시기별 안전점검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였다. 또한, 지열 및 태양광 발전설비를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 도입 확대, 고효율 에너지기기 적용 등 에너지 1등급의 친환경 법무시설을 조성하였다.

다. 법무시설 조성사업 단계별 추진상황

2022년 신규사업은 원주교도소 이전신축, 안산보호관찰소 재건축, 인천보호관찰소 재건축,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별관 증축, 춘천소년원 재건축, 영월교도소 여성수용동 증축, 여주교도소 대체복무 생활관 증축, 서울소년원 생활관 리모델링, 통영구치소 대체복무 생활관 증축, 인천구치소 대체복무 생활관 증축, 춘천교도소 대체복무 생활관 증축,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대체복무 생활관 증축 총 10개 사업을 착공하였다. 계속사업은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신축, 법무부 기록관 신축, 춘천지검 속초지청 신축, 치료감호소 중증환자 치료병동 신축,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신축, 속초법무합동청사 신축, 광주솔로몬로파크 신축, 영월 대체복무교육센터 및 생활관 신축,

거창구치소 신축, 서울서부지검 별관 증축, 용인분원 국제검사협회 트레이닝센터 설치, 천안교도소 수용동 증축, 목포교도소 수용동 증축, 강릉교도소 수용동 증축, 부산소년원 생활관 리모델링 총 15개 사업을 계속 추진 중이다.

법무시설 조성사업에 투입된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비는 총 1,808억 원으로 검찰시설에 490억 원(27.1%), 보호시설에 326억 원(18.0%), 교정시설에 622억 원(34.4%), 출입국외국인시설에 182억 원(10.1%), 기타 시설에 185억 원(10.2%)을 집행하였다.

2022년도에 시행한 주요 법무시설 조성사업 추진실적은 아래와 같다.

| 표 1-27 | 2022년도 주요 법무시설 조성사업 추진실적

(단위 : 억 원)

구 분	공 사 명	규 모(㎡)		소요예산 (총사업비)	공 사 기 간
		부 지	건 물		
신규 (12)	원주교도소 이전신축	200,319	41,709	1,535	'22. 6월 ~ '25. 8월
	안산보호관찰소 재건축	-	5,034	154	'22. 10월 ~ '24. 10월
	인천보호관찰소 재건축,	-	999	27	'22. 9월 ~ '23. 12월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별관 증축	-	2,843	84	'22. 10월 ~ '24. 9월
	서울소년원 생활관 리모델링	-	3,648	87	'22. 12월 ~ '24. 6월
	춘천소년원 재건축	-	7,795	164	'22. 12월 ~ '25. 1월
	영월교도소 여성수용동 증축	-	1,775	63	'22. 10월 ~ '24. 1월
	여주교도소 대체복무 생활관 증축	-	1,648	46	'22. 12월 ~ '23. 12월
	통영구치소 대체복무 생활관 증축	-	773	22	'22. 12월 ~ '23. 12월
	인천구치소 대체복무 생활관 증축	-	1,456	40	'22. 12월 ~ '23. 12월
	춘천교도소 대체복무 생활관 증축	-	965	27	'22. 12월 ~ '23. 12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대체복무 생활관 증축	-	1,553	40	'22. 11월 ~ '23. 10월
계속 (15)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신축	18,000	17,455	835	'20. 6월 ~ '22. 5월
	법무부 기록관 신축	7,048	18,031	464	'20. 12월 ~ '23. 11월
	춘천지검 속초지청 신축	11,091	6,612	188	'19. 12월 ~ '22. 12월
	치료감호소 중증환자 치료병동 신축	303,393	13,857	433	'20. 12월 ~ '23. 10월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신축	11,244	6,876	165	'20. 12월 ~ '23. 4월
	속초법무합동청사 신축	4,455	2,700	62	'20. 11월 ~ '22. 3월
	광주솔로몬로파크 신축	18,946	7,492	187	'19. 12월 ~ '22. 3월
	영월 대체복무교육센터 및 생활관 신축	11,213	3,768	86	'20. 12월 ~ '22. 6월
	거창구치소 신축	160,818	19,844	912	'15. 11월 ~ '23. 1월
	서울서부지검 별관 증축	5,638	2,249	63	'21. 10월 ~ '23. 1월
	용인분원 국제검사협회 트레이닝센터 설치	-	3,975	67	'21. 10월 ~ '22. 11월
	천안교도소 수용동 증축	143,654	1,800	54	'21. 10월 ~ '23. 3월
	목포교도소 수용동 증축	264,564	1,497	47	'21. 10월 ~ '23. 1월
	강릉교도소 수용동 증축	102,651	1,429	52	'21. 9월 ~ '22. 12월
	부산소년원 생활관 리모델링	-	3,332	52	'21. 10월 ~ '22. 11월

法務年鑑

02



업무실적

제1절 기획조정업무
제2절 정책홍보 업무
제3절 법무업무
제4절 검찰업무
제5절 범죄예방업무
제6절 감찰·감사업무
제7절 인권업무
제8절 교정업무
제9절 출입국·외국인정책업무
제10절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
제11절 소년범죄 대응 업무
제12절 인사정보관리단

제1절 기획조정업무

1. 국정과제 추진 등을 위한 조직 신설 및 효율적인 정원 관리

혁신행정담당관실 사무관 김승권

가. 개요

'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이 국정과제로 선정되었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 등 추진을 위한 조직·인력 수요에 원활히 대응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이를 위해 조직진단을 통해 축소·쇠퇴기능 등을 발굴하여 매년 공무원 정원의 일정 비율을 통합활용정원으로 감축함과 동시에 새 정부 국정과제 등 추진을 위해 「인사정보관리단」,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팀」 등 기구를 신설하고, 수시직제를 통해 전자감독 인력 등 핵심 현안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였다.

나. 추진경과

1) 조직신설 및 인력 증원

'22. 6월 인사혁신처장에게서 위탁받는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에 관한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관 밑에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고, 그 하부조직으로 인사정보1담당관과 인사정보2담당관을 신설하였으며(6.7.), 법무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부 법무연수원에 두는 연구위원 5명(검사 5명)을 증원하였다.(6.27.)

또한, '22년 11월, 12월에는 국정과제와 장관 중점추진 사항 추진을 위해 자율기구인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11.7.)」 및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팀(12.19.)」을 신설하였다.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은 중장기 출입국·이민관리정책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출입국·이민관리 컨트롤타워 신설에 대한 신속한 이행을 추진하고,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팀」은 검찰·보호·교정직으로 구성되어 차관 직속으로 신설된 조직으로 정신질환·발달장애 수용자 치료체계 개선, 수용시설 의료인력 확충, 치료감호 활성화, 마약류의약품 오남용 방지 대책,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DUR) 연계 등 수용시설 의료정책 개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새정부의 국정과제 수행 등을 위해 수시직제를 요구하여 전자감독 인력, 수용자 인권처우 향상을 위한 야간 교대인력, 수용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인력, 교도소·구치소 가석방 심사인력 등 101명을 증원하고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자여행허가센터를 신설하였다.(12.29.)

2) 조직진단 및 인력 감축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이라는 국정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 쇠퇴·업무 효율화·기능 외부화 등 분야에서 통합활용정원 관리 대상으로 정원의 5%인 548명을 발굴하였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민관합동 정부조직진단반의 확인진단을 거쳐 이를 확정하고 5년간 매년 1%씩 감축할 예정이다. '22년 12월에는 본부 7명, 소속기관 103명 등 모두 110명을 1차로 감축하였다.(12.29.)

다. 향후 계획

조직진단을 통해 기능·인력 적정성을 점검하여 교정·보호관찰 등 법무행정 분야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기직제 및 수시직제를 통해 필요한 조직·인력을 요구하여 확보함으로써 국정과제 및 법무부 중점추진 과제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 국민이 체감하는 법무부 정부혁신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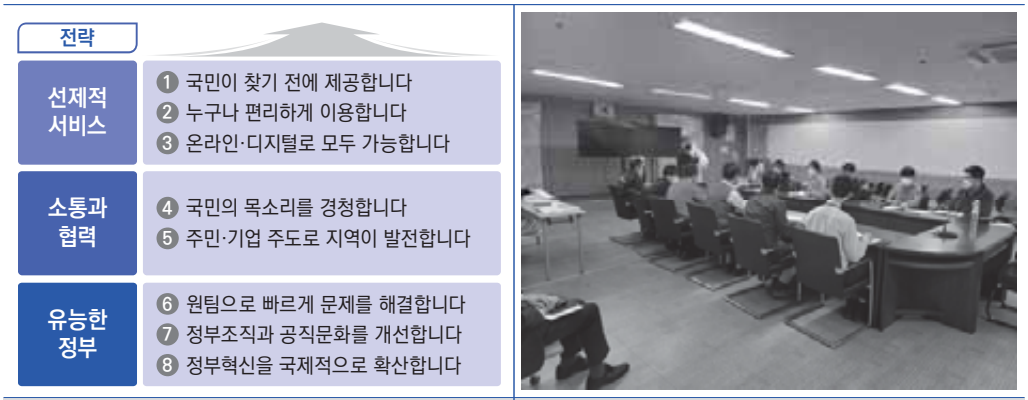
혁신행정담당관실 사무관 김승권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정부의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에 따라, 법무부에서는 자체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혁신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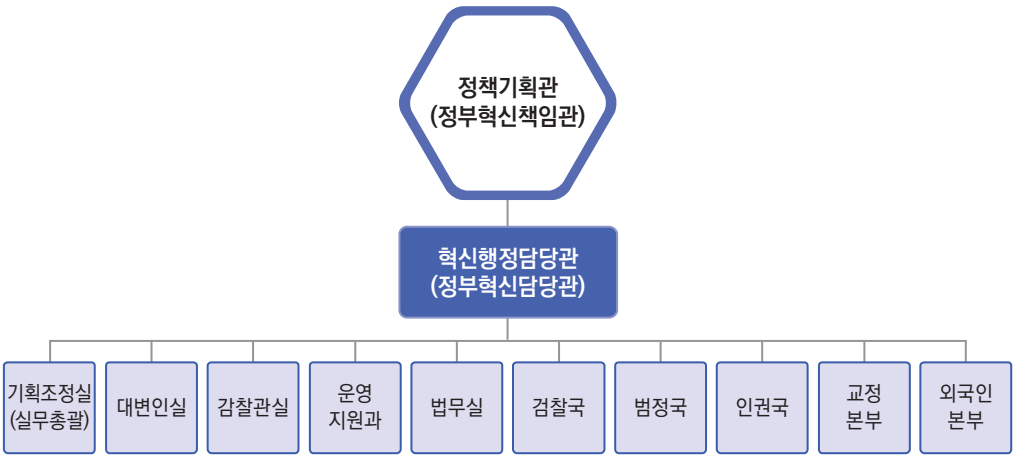
법무부는 2022. 2월 각 실·국·본부와 협력하여 법무부 「정부혁신 실행계획」을 수립 하였고, 체계적인 정부혁신 추진을 위해 정부혁신책임관인 정책기획관을 중심으로 실·국·본부 실무진이 참여하는 '정부혁신 추진 실무단'을 구성·운영하였다. 또한 혁신행정담당관이 주재하고 실·국·본부 담당 사무관이 참석하는 '정부혁신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법무부 정부혁신 추진현황 전체를 점검하는 등 혁신성과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 그림 2-1 | 정부혁신 3대 전략 및 정부혁신 추진 현황 점검회의



정부혁신 3대 전략 | 정부혁신 추진현황 점검 회의

| 그림 2-2 | 정부혁신 추진 실무단 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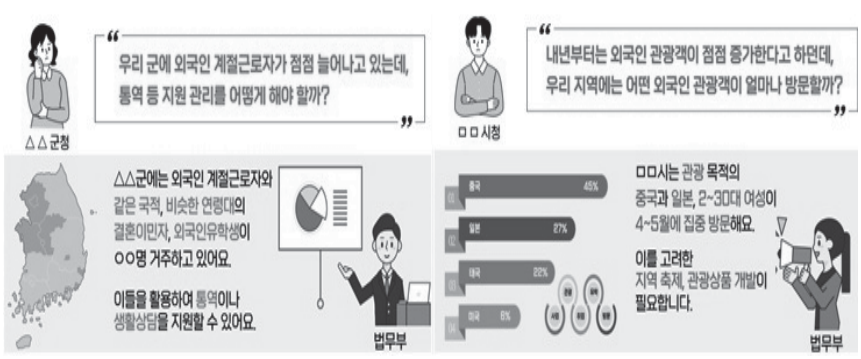


나. 주요 혁신 성과

1) '법무부-지자체 맞춤형 외국인행정 데이터 분석 협력' 추진

시군구별 거주 외국인의 국적, 연령, 체류자격별 분포현황과 인구 이동현황 등을 분석·시각화한 '지역별 외국인 거주현황 분석'을 통해 지역 맞춤형 외국인정책 추진을 지원하였고, K-ETA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의 여행목적, 국내 방문예정지, 국적·성별·연령대별 분포 등을 분석·시각화한 '우리 동네 외국인 방문객 일일현황' 분석자료를 홈페이지에 제공하여 관광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 그림 2-3 | '법무부-지자체 맞춤형 외국인행정 데이터 분석 협력'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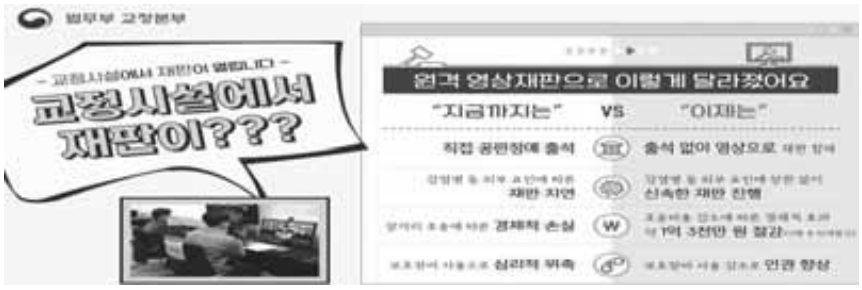
제 도	내 용
법무부-지자체 맞춤형 외국인 행정 데이터 분석 협력 추진	

2)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원격영상재판' 시행

교정본부는 교정시설 내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수용자의 법원 출석을 최소화하는 영상재판 도입을 추진하여, 2021. 4월에 각급 법원 재판부별 '영상 법정'을 개설하였고, '21. 11. 18. 전국 교정기관과 법원 간 영상재판 전면 시행을 계기로,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과 수용자의 인권 및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2022년 5개 기관에 영상재판실 증설을 완료하고 11개 기관에 추가로 증설을 진행 중에 있는 등 영상재판의 안정적인 운영과 확대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그림 2-4 |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원격영상재판' 시행

제 도	내 용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원격영상재판' 시행	

3) 민생에 힘이 되는 농촌지원 사회봉사 확대

코로나19로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입국이 제한되고 자원봉사자 인력마저 급감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촌을 위해 지역별로 단위농협을 협력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역 영세·고령 및 일손 부족 농가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사회봉사 대상자를 적극 투입하였다.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긴급 재해 복구, 농가 주거환경개선 등을 국민공모제를 통해 지원하여, 실질적으로 농민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실천하였다.

※ '22. 1. ~ 12.까지 186,592명 지원, 약 186억원 상당의 경제적 지원 효과 발생

| 그림 2-5 | 민생에 힘이 되는 농촌지원 사회봉사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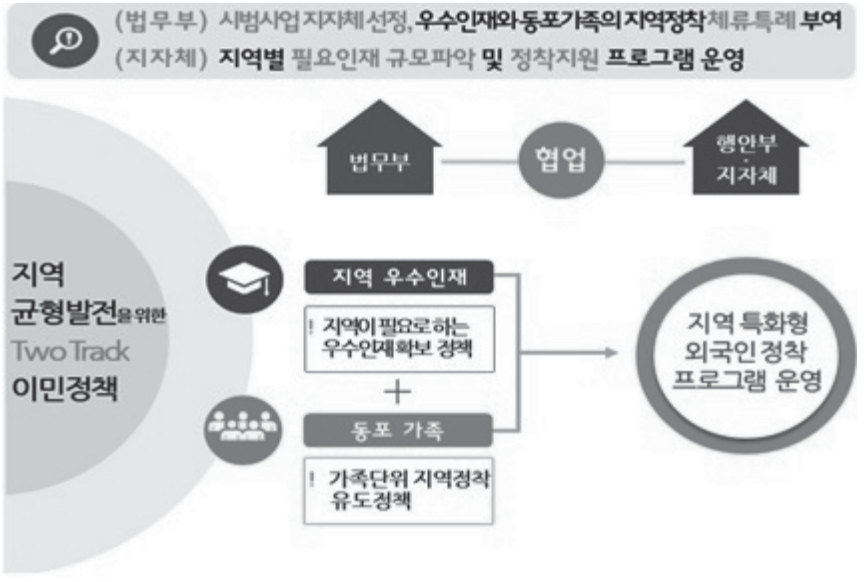
제 도	내 용
민생에 힘이 되는 농촌지원 사회봉사 확대	

4)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시행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우수인재와 외국국적동포에게 체류 특례를 부여하여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신설하여 '22. 10. 4.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였으며, 동 제도는 지역 인구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는다.

※ '22. 12. 31. 기준 총 55명에게 지역특화형 비자를 발급

| 그림 2-6 |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추진

제 도	내 용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추진	

다. 향후 추진계획

앞으로도 법무부는 법무행정의 혁신을 적극 추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펼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3. 더 나은 법무행정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

혁신행정담당관실 사무관 김승권

가. 추진배경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전문적·창의적 발상을 통해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현장의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해졌다. 또한 경기침체 등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법무부는 '2022년 법무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확대 등을 통해 부(部)내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노력

아동학대 피해자, 저소득·한부모 가정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취약계층 지원체계 구축 및 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취약계층이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고, 재난 등으로 피해를 받은 국민들의 일상회복을 지원하여 국민 불편 해소에 기여하였다.

| 그림 2-7 | 아동학대 사건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 늘어나는 아동학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순·일회성 지원이 아닌, 아동보호기관·지역사회 등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다각적이고 통합적인 문제해결 방식의 필요성 대두

☞ 학대 피해 아동 상시 긴급구호를 위한 24시간 안심전화 서비스 운영, 아동학대 가정의 가족 치유 프로그램 기획 및 추진, 경제적 지원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 시스템 구축으로 아동학대 근절 및 가족관계 회복에 기여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

| 그림 2-8 |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법 교육 프로그램 개발·실시

-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법 교육 프로그램이 전무하고, 법 교육 프로그램 실시에 대한 청소년 시설의 부정적 인식으로 법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법 교육 필요성 설명 및 프로그램 운영 형태 관련하여 지속적 협의, YES21청소년 재단 등과 협업, 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법 교육 프로그램 '로티즌'을 개발하여 청소년의 법 이해도 증진과 현대사회 시민성 함양에 기여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법 교육 프로그램 개발·실시

| 그림 2-9 | 사회봉사대상자 재난 현장에 긴급투입, 피해주민의 빠른 일상회복 지원

- 여름철 서울 강남지역에 기록적 폭우가 쏟아져 주변 가옥 및 상가가 침수되어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경북지역에서는 태풍 힌남노로 인해 인명피해와 많은 농작물 피해가 발생

☞ 지자체, 각 부처 재난관리부서 등과 유기적입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봉사대상자를 긴급 투입하여 주택 및 상가의 토사물 제거, 배수로 정비, 낙과 수거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빠른 일상회복에 기여



재난현장에 사회봉사대상자를 긴급 투입하여 국민 불편 해소

2) 적극행정 국민 소통창구 마련

법무부 적극행정 추진 공감대 확산 및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무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행정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하였다. 법무행정 분야별 정책고객 및 일반국민 등으로 구성된 '적극행정 모니터링단'은 적극행정 아이디어 제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심사 및 개인 SNS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적극적 홍보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법무부 적극행정 추진의 국민 체감도 제고에 일조하였다.

3)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발굴 확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적극**행**정)직원 선발 등을 통해 적극행정 직원 18명을 선발하고, 발굴된 적극행정 우수직원에게는 특별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공직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정착을 적극 추진하였다.

| 표 2-1 | 2022년도 법무부 적극행정 우수사례(18개 사례)

구분	순위	우수사례명	기관(부서)
'22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자동 출입국 심사대 웹 표준화를 통한 예산 절감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아프간특별기여자 복지지원을 통한 안정적 정착지원 도모	아프간합동지원단
	우수상	아동학대 사건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운영	광주보호관찰소
		전자경비 울타리 감지 시스템 개선을 통한 예산 절감	대구교도소
		홈페이지 '대기열 서비스' 도입을 통한 국민 불편 해소	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법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실시	보호정책과
	장려상	민·관 협업을 통한 '희망커피' 개업·운영으로 소년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	사회복귀과
		범죄예방 목적 CCTV 설치 등 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미성년대상 성범죄자 재범 예방	의정부보호관찰소
		이민행정시스템의 업무 환경(심사, 체류 등) 분리 구축 개선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특기 보유자 발굴 등 능동적 업무 처리로 소외계층(장애인, 독거노인) 지원	의정부보호관찰소
		보호직 지원 처우개선을 위한 '심리치료 지원체계' 등 구축	범죄예방기획과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국가안보 위기 상황 적극 예방	인천보호관찰소
'22년 소·확·행 직원	범죄예방정책국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협업체계 구축으로 치료명령대상자 재범 예방	광주보호관찰소
		디지털 성범죄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상담치료 프로그램 실시	수원보호관찰소
		선제적 집중관제정보 대응 및 야간귀가 지도를 통한 재범 방지	인천보호관찰소
	교정본부	차세대 보라미 시스템 교정장비 매뉴얼 제작	경북제2교도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유창한 어학능력과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보호외국인의 신속환 본국 송환에 기여	청주외국인보호관찰소
		전자여행허가제(K-ETA) 제주도 도입·적용 관련 업무 수행	제주출입국·외국인청

4) 적극행정 주요성과 사례 발굴·포상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정착과 국민체감 확대를 위해 매월 법무부 전 분야의 업무 중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성과가 발생한 사례를 '주요성과'로 선정, 선정부서에 포상금 지급, 부서평가 시 가산점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여 부(部) 내 적극행정 동기부여 및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 표 2-2 | 2022년도 법무부 적극행정 주요성과 사례(10개 사례)

분야	선정월	주요성과 사례명	기관(부서)
선제적조치	3월	동포와 동포가족에 대한 적극적 포용정책 추진	체류관리과
		불법체류 외국인 백신접종 인센티브 제도 시행	이민조사과
		국내 장기불법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이민조사과
관행극복	4월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시스템 구축	인권구조과
선제적조치	5월	'홈페이지 대기열 서비스' 도입을 통한 국민불편 해소	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
관행극복	6월	교정기관 영상재판 도입 및 전면 시행	보안과
기타	7월	초과지급 국가배상금 환수 관련 법원 화해권고결정 수용	국가소송과
선제적조치	8월	농·어촌 현실을 반영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대폭 개선	체류관리과
기타	9월	수용자 자녀지원팀 운영	사회복귀과
기타	10월	사회봉사대상자 재난 현장에 긴급투입, 피해주민의 빠른 일상회복 지원	보호관찰과

5) 적극행정 문화 확산

가) 적극행정 인식 제고

적극행정 우수사례·성과 등을 공유하여 적극행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전 직원 대상으로 '적극행정 표어 공모전'을 개최, 우수표어를 활용하여 자체 포스터를 제작하는 등 부(部) 내 직원들의 적극행정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 그림 2-10 | 적극행정 자체 포스터



나) 적극행정 홍보 확대

적극행정 우수사례 카드 뉴스를 제작, 모니터링단 개인 블로그 및 SNS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국민들에게 적극행정에 관하여 전달하고 소속기관 청사 전광판을 활용한 적극행정 홍보 등 다양한 홍보 방식을 통해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관심 확대를 위한 활동을 하였다.

| 그림 2-11 | 전광판을 통한 적극행정 홍보 및 적극행정 카드뉴스





다. 향후 추진계획

앞으로도 법무부에서는 우수사례 발굴·홍보를 통해 적극행정을 확산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다 나은 법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4. 법무행정개선 추진

혁신행정담당관실 사무관 김승권

가. 추진배경

「정의와 상식의 법치」 실현 지원을 목표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무행정서비스 제공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국민·현장 중심의 행정제도 개선', '국민눈높이를 충족하고 조직의 변화를 주도할 창의적 인재육성', '소통·조화·배려의 조직문화 조성'을 추진하였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창의 및 직무역량 강화, 조직문화 향상을 위한 변화관리 교육과정 운영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법무 행정능력 강화를 위해 사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2022년 변화관리 교육과정을 '창의 역량 강화', '조직문화 향상', '직무역량 강화' 3개 분야 7개 교육과정으로 개설·운영하여 9,295명의 직원이 참여하였다.

| 표 2-3 | 2022년도 변화관리 교육과정 운영(3개 분야 7개 과정, 9,295명 참여)

구 분		과 정 명	대 상	인원	시기	비고
창의역량 강화		① 오디오북	전 직원	2.400	6~11월	6회
		② 전자도서관(e-book)	전 직원	2,401	연중	
		③ 독서증진	전 직원	1,000	5~10월	6회
조직문화 향상		④ 정부정책소통	소속기관	930	6~11월	40회
직무역량 강화	교육	⑤ 전화외국어	전 직원	240	5~10월	3회
	연구모임	⑥ 학습동아리지원	우수 학습동아리(6팀)	1,989	5~11월	6팀
	워크숍	⑦ 워크숍	전 직원	335	5~11월	5회
합계		7개 과정		9,295		

※ 우수학습동아리 활동회원(1,989명)

- 바른급식 사랑방: 399명, 전자감독: 819명, APIS 정보분석: 422명, 심리치료 연구회: 239명, 신상정보제도 학습마당: 84명, 빅데이터연구회: 26명

2) 국민·현장 중심의 행정제도 개선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가) 행정제도 개선 활성화

현장직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하여 자체 '행정개선 관리시스템'을 운영, 2022년 908건의 행정개선 제안을 접수하여 총 165건을 채택하였으며, 제안자의 소속기관에 행정개선 마일리지 부여 등 우수기관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직원들의 관심과 지지를 유도하여 행정제도개선 활성화에 성과를 거두었다.

나) 행정개선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통한 창의적 분위기 조성

2022년 자체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교정기관과 법원 간 원격영상재판 도입 및 활성화', '전자감독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광역시·도 CCTV과거 영상 연계' 등 우수사례

8건을 선정하여 포상함으로써 행정제도 개선 추진력 확보 및 조직 내 창의적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였다.

| 그림 2-12 | 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



| 표 2-4 | 자체 우수사례 내용

번호	분야	우수사례	등급	기관(부서)
1	교정	교정기관 법원 간 원격영상재판 도입 및 활성화	최우수	보안과
2	범죄예방	전자감독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광역시·도 CCTV과거 영상 연계	우수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
3		민간자원 멘토링을 통한 초기 비행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개입 추진	장려	서울남부청소년 비행예방센터
4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법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행		보호정책과
5	출입국	불법체류 외국인 백신접종 인센티브 제도 시행 및 외국인 밀집시설 방역 점검 계도	우수	이민조사과
6		보호외국인 전담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 및 자체 관리를 통한 코로나 확산 방지	장려	출입국기획과
7		우크라이나 고려인 동포에 대한 적극적 포용 정책 추진		체류관리과
8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국내 정착지원		정부합동지원단

3)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보람있고 행복한 직장만들기 추진

조직과 구성원이 함께 성장하는 보람있고 행복한 직장분위기 및 생산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실국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조직문화개선 활동을 스스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기관방문, 정부정책 소통교육', '육아시간 등 가족친화제도 적극 활용', '연가사용 활성화로 쉼표 있는 삶 추구' 등이 있다.

다. 향후 추진계획

법무부는 조직의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각종 불합리한 제도 개선, 구성원의 창의역량 강화 및 자기개발 등 지속적인 변화관리 추진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법무행정서비스를 실현해 나갈 것이다.

5. 민원행정 서비스 강화

혁신행정담당관실 행복민원센터 주무관 윤영신

가. 추진배경

최근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개인 권익 보호의 중요성 및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이고 정형화된 민원서비스로는 국민의 다양하고 수준 높은 요구에 효과적인 대응이 곤란해지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국민 개개인의 요구와 현장의 목소리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직접 듣고 소통하는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국민신문고 민원 등 신속하고 내실있는 민원 처리

법무부에 접수·처리된 민원은 총 33,947건으로, 그 중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처리된 민원이 전체 민원의 73.9%를 차지하는 등 온라인을 통한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표 2-5 | 법무부 유형별 민원처리 현황

(2022. 1. 1. ~ 2022.12.31. 기준)

구분	계	국민신문고 접수·처리	우편, FAX, 방문접수 접수·처리	장관과의 대화 접수·처리
건수	33,947	25,104	8,336	507

법무부는 민원의 접수·배부·이송·처리 등 전 단계마다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요지에 맞는 정확한 답변을 하는 한편, 처리기간 준수 여부 등 민원처리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민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2) 불합리한 민원제도 개선

지역사회단체·대학교 등 민원사무와 관련된 정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민원 제도 및 정책을 발굴하고, 국민신문고 등 인터넷을 통해 접수된 개선 가능한 민원을 찾아 해결하는 '민원 끝까지 챙기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6건의 국민 불편사항을 개선하였다.

| 표 2-6 | 국민불편 주요 개선사례

연번	발굴경로	개선사항
1	국민신문고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홈페이지 자동 로그아웃 개선
2	국민신문고	법무부 홈페이지 '제안합니다' 게시판 개선
3	현장방문	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FINE) 개선
4	국민신문고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홈페이지 본인인증방식 추가
5	국민신문고	출입국사실증명 서식 개선
6	국민신문고	한국소년보호협회 홈페이지 안내 개선

3) 국민제안 활성화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 및 의견을 법무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국민제안 제도를 활성화하였다. 2022년 접수된 총 1,690건의 국민제안 중 '온라인민원서비스 자동로그아웃 기능 개선' 등 21건을 채택, 6건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였고, 국민제안 공모 등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제안활성화 유공 공무원」 심사 결과 법무부에서 추천한 직원이 제안활성화 유공공무원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4) 법무부 민원행정서비스 점검

본부 및 소속기관의 민원서비스 제공 수준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피드백을 위해 '2022년도 법무부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및 전화민원응대 친절도 점검'을 실시하였다.

법무부 민원행정서비스 종합만족도는 10점 만점에 8.76점으로 전년도 대비 0.8점 상승하였으며, 일반민원에서는 신청편리성(8.74점)이, 인터넷민원에서는 신속정확성(7.39점)이 가장 낮게 나와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민원응대 친절도는 100점 만점 기준 87.4점으로 전년도 대비 2.6점 상승하였으며, 단계별 친절도는 수신단계 90.3점, 응대단계 86.7점, 종료단계 85.5점 순으로 나타났다.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장관 표창을 수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으며, 미흡한 기관은 자체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토록 하였다.

또한 본부 및 소속기관에 결과를 공유하여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게 하고 미흡사례는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다. 향후 추진계획

법무부는 민원·정책현장 방문을 확대하여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는 한편, 국민신문고·국민제안 등 온라인 창구를 통한 국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민원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등 국민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6. 규제혁신 적극 추진

혁신행정담당관실 행복민원센터 주무관 김남주

가. 추진배경

법무부는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고 국민·기업과 함께하는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여, 국가 경제발전과 미래 번영을 위한 규제의 개선 및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의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나. 추진내용과 성과

1) 경제 활력에 이바지하는 법무 분야 각종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추진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외국인 투자유치에도 악영향을 주는 경제 관련 법률의 과도한 형벌 규정 개선을 위해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를 출범('22. 7.)하여, 서민·자영업자·기업 등 국민이 체감 가능한 생활밀착형 개선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하였으며,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방 농·어촌, 조선업 등 다양한 경제 현장의 일손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 실시」, 「조선업·구내식당업·물류 및 택배 외국인 고용 허용 업종 확대」 등 외국인 비자관련 각종 규제 개선을 추진하였다.

2) 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법률서비스 개선으로 국민불편 해소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 이용 시 간편인증 서비스 실시, 변호사시험 컴퓨터 작성 방식(CBT) 도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추진, '범죄피해자지원법인', '법률구조법인'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 등 법률서비스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여 민생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3)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제 개선 추진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한정승인제도, 미성년 자녀의 권리와 복리를 강화하기 위한 「가사소송법」,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등의 개정을 추진하고, 일부 비공개 지침으로 처리되던 난민 이의신청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공개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령을 마련하여 국민생활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다.

다. 향후 추진계획

법무부는 앞으로도 불합리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각종 법령, 제도 등을 적극 개선함으로써 신산업 지원,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지원, 생활의 걸림돌이 되는 불편·부담해소 등 규제혁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7. 성과중심의 법무행정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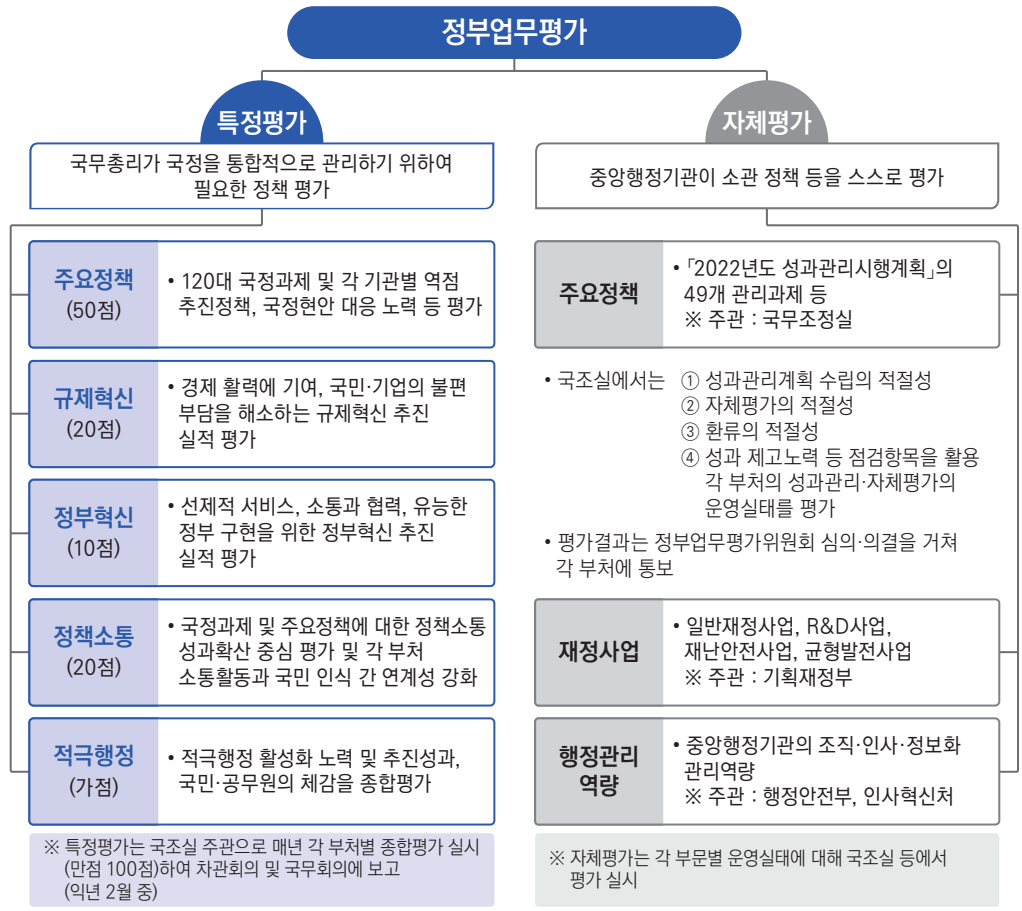
혁신행정담당관실 사무관 유재륜

가. 정부업무평가

국무조정실에서는 국정운영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재정성과, 인사, 조직 등 주요업무 분야에 대하여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매년 정부업무평가에 관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정부업무평가는 국무총리가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평가하는 특정평가와 기관이 소관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자체평가 부분으로 구분되며, 평가부문별 세부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그림 2-13 | 정부업무평가 체계도



1) 특정평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국무조정실에서는 2022년도 평가부문 등을 확정한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처에 통보하였고, 이에 법무부에서는 평가방향, 부문별 평가방법 등을 검토한 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가) 주요정책 부문

과제명	주요성과	보완사항
1.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 금융·증권범죄 합수단(5월),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수단(7월), 국가재정범죄 합수단(9월) 출범을 통한 관련 범죄 적극 수사 • 마약사범, 불법사금융·공정거래법사범 엄정 대응 • 검찰 수사의 효율성·독립성 강화를 위해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제도 폐지(6월) 및 검찰청 직제를 정비하여 '형사未부만 수사 허용', '수사팀 설치 시 법무부장관 승인' 제도 등 폐지(7월) • 「수사개시규정」 개정하여 검찰 직접수사 대상인 부패·경제범죄 범위 명확화(9월) • 검·경 책임수사시스템 구축을 위한 「수사준칙」 개정안 마련(11월)	• 반법치행위 강력 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2.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방지 대책 마련 –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등 취업제한(10월), 사후적 치료감호 도입(11월) 등 • 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스토킹 처벌 확대, 스토킹 범죄자 전자장치 부착 등 「스토킹처벌법」,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 마련(10월) •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10월) – 형사미성년자 연령 합리화(14세 ⇨ 13세), 소년원 송치 보호처분에 보호관찰 병과, 소년범에 대한 맞춤형 가석방 제도 도입, 외출제한명령 대상자 감독방식을 스마트워치 방식으로 개선 • 전자장치에 위험 감지 기능 탑재(7월), 스트랩 내장재 강화, 금속프레임 기반의 고위험자용 전자장치 개발(12월) • 전세사기 등 주요 민생범죄 엄정 대응	• 고위험 성범죄자(Sexual Predator) 출소에 따른 국민 불안 해소
3.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	• '범죄피해자가 빠짐없이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 협의체' 구성·운영(10월) • 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등을 통한 사회적 취약계층 법률서비스 지원 강화 • 교정시설 인권보호 철저 –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한 수용공간 확충 및 시설 현대화, 급식비·특수건강검진비 인상 등 현장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 모범수형자 자율처우 시범운영, 수용자 자녀 및 출소자 지원 강화 • 외국인 인권보호 강화 – 창살 제거 등 인권친화적 개방형 외국인 보호시설 운영(4월), 공항 출국대기실 국가운영 전환(8월), 보호장비 종류, 사용요건 명확화 등 「외국인보호규칙」 개정(12월)	•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
4. 미래 번영을 이끄는 선진 법치행정	• '만 나이' 통일(12월),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규정 신설(11월) 등 민생과 밀접한 「민법」 정비 • 인격권, 디지털콘텐츠계약법, 인격표지영리권 등 변화하는 미래 사회를 대비한 「민법」 개정 추진 • 첨단분야 인턴 비자(8월), 외국인 계절근로자 증원(9월), 인구감소 지역 정착을 장려하는 지역특화형	• 출입국·이민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 신설

과제명	주요성과	보완사항
	비자 신설(10월) •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시범 실시 및 이공계 특성화기관 핫라인 구축(12월) • '범정부 경제 형벌규정 개선TF'를 통한 1차 개선과제 발표(8월)	

나) 규제혁신 부문

주요성과	보완사항
• 규제정비 종합계획에 따른 규제개혁과제 10건 중 10건 완료 • 법무·인권 및 출입국·외국인 정책 분야 민생불편 해소를 위한 과제 40여건 자체 발굴하여 개선 •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상가임대차법 개정 등 각종 규제 완화 • 전자여행허가제도 등 업무시스템 혁신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감축하여 국민 불편 해소에 기여 • 스타트업계에 대한 법률지원의 일환으로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을 구축하여 추진	• 규제샌드박스 운영 및 신산업 현장애로 개선 과제 발굴 노력 필요 •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수용률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다) 정부혁신 부문

주요성과	보완사항
• 선제적 서비스, 소통과 협력,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시행 – 정부혁신 실행계획 : 다른 부처와 차별화되는 우리 부만의 혁신과제 발굴(공통자율과제 3개 분야 14개 과제) – 국민체감도 : 지역특화형 비자 신설, 교정기관 원격영상재판 활성화, 지자체 맞춤형 외국인행정 데이터분석 및 협력체계 구축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사업 추진	• 법무행정 전반에 걸친 국민 체감 정책 발굴 필요 • 기관 간·부서 간 협업 추진체계 강화 필요 •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참여 활성화 노력 필요

라) 정책소통 부문

주요성과	보완사항
• (언론 및 현장 홍보) 기관장 언론 인터뷰 및 브리핑을 적극 실시하고 특히 현장 소통 중심의 홍보 강화 • (외신 홍보) 외신 대상 영문보도자료 배포 강화, 브리핑 시 외신 초청, 통일 법제 관련 외신기자 간담회 등 외신 홍보 대폭 강화 • (민관 협업) 민간 영화사 협업 시사회 개최, 뉴질랜드 대사관 협업, 인플루언서 협업 등 다양한 민관 협업을 통한 홍보콘텐츠 다각화	• 정책에 대한 국민 만족도 인지도 조사 부족 – 정책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 및 인지도 조사가 정기적으로 실시되지 않음

2) 자체평가

가) 주요정책 평가

법무부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성과관리전략계획'에 기초하여 당해 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국정과제, 대통령 업무보고 등을 종합 반영하여 '따뜻한 법무행정을 통한 인권의 가치 존중' 등 4개 전략목표와 '인권 보호체계 강화를 통한 법무행정의 인권수준 향상' 등 9개의 성과목표 및 49개의 관리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하였다.

수립된 정책의 이행상황 점검 및 목표달성을 위하여 '정책 효과성', '정책 소통의 충실성' 등 4개 평가항목과 12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각 관리과제별 추진실적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였다. 자체평가결과 매우우수 2개(4%), 우수 8개(16%), 다소우수 7개(14%), 보통 15개(31%), 다소미흡 7개(14%), 미흡 7개(14%), 부진 3개(6%)로 나타났으며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임대인의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하였다.

또한 사법(*私法*)의 일반법인 「민법」에 인격적 권리와 인격 표지의 영리적 이용권을 명문화하고, 그 구제수단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격적 권리 보장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범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한편, '고위험군 전담제' 정착, 1:1 전자감독 확대 실시 등 고위험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을 지속 실시하고,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확대 및 수사역량 제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전자감독대상자의 재범률을 크게 개선하였다.

그리고, 인력난으로 인한 농어촌 및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를 확대하고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외국인력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첨단분야 인턴비자(D-10-3)를 신설하는 등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비자정책을 추진하였다.

나) 재정사업 자율 평가

재정사업 자율 평가는 사업 수행부처가 소관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평과결과를 재정운영에 활용하는 제도로 원칙적으로 예산,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재정사업이 해당된다.

우리 부는 35개의 세부사업에 대해 평가지표별 점수를 종합하여 상대평가로 실시하고 있으며, 우수 7개(20%), 보통 23개(65%), 미흡 5개(15%)로 3단계 등급화하였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실효성과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기준·절차 및 평가결과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하여 대외에 공개하였고, 미흡사업은 부진원인을 분석하고, 성과관리 개선대책 및 지출구조 조정안을 마련하였다.

다) 행정관리역량 평가

행정관리역량에 대한 평가는 조직, 인사, 정보화 3개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조직분야에서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이라는 국정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 쇠퇴·업무 효율화·기능 외부화 분야에서 통합활용정원 관리 대상으로 정원의 5%를 발굴하여 5년간 매년 1%씩 감축할 예정이고, 내·외부 환경 분석 및 SWOT 분석 등을 통해 재배치 계획 등을 수립, 한정된 기구와 인력 범위 내에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인사 분야에서는 정기적인 실적 점검을 통해 국정과제 교육 이수시간이 우수한 실적을 달성하였고 필수보직기간을 엄격히 유지하였으나, 법무부 업무 특성상 인사교류 제도 운영성과와 개방형 및 공모직위 운영 부문의 지표 추진실적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정보화 분야에서는 정보화업무 전단계별 체계적인 성과관리·공공데이터 표준 체계 확립 및 국민에게 선제적·맞춤형 서비스 제공·공공서비스 민간 개방 추진 등을 통해 유능한 디지털정부 구현 노력을 인정받았으며, 상시 정보보안 점검체계 수립·이행 및 법무정보시스템 전체 영역에 대한 보안취약 요소 사전 점검·제거 활동 등을 적극 추진하여 사이버안전수준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라)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이란 제도 운영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부처의 자율적인 관리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각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자체평가 계획 수립단계부터 자체평가 및 평가결과 환류에 이르기까지의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하는 것으로, 주요정책 부문(국무조정실 주관)과 행정관리역량 부문(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주관)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나. BSC 및 성과중심 조직문화 구축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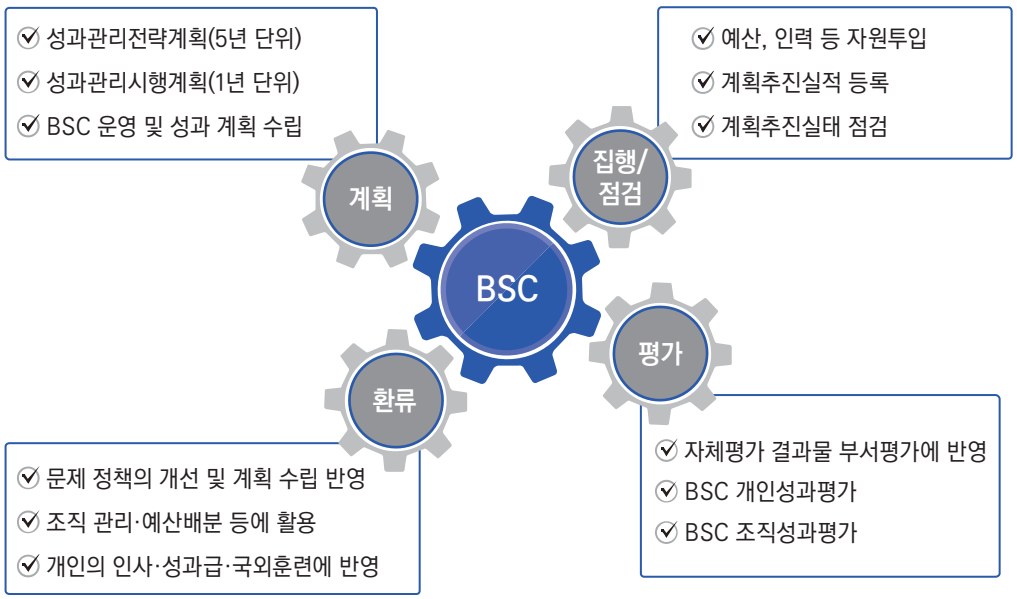
BSC(Balanced Score Card, 균형성과평가제도)는 조직의 임무, 비전, 전략·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을 설정하고 그 달성 정도를 고객, 정책, 행정개선 등 다양한 관점에서 조직·개인의 성과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인사, 성과급 등에 환류하는 제도이다. 법무부는 2006년부터 BSC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정책 수립, 실적 관리, 성과평가 및 환류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성과를 관리하고 있으며, 조직 및 개인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평가하기 위하여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의 BSC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2) 추진내용

법무부(본부 및 소속기관) 주요 정책 업무 추진을 위해 358개의 BSC 성과지표를 설정하였고, 이를 통해 총 918개 부서 및 2만 4천여 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직 및 개인 성과평가를 실시하였다.

법무부는 이러한 평가결과를 승진에 10%, 성과급에 20%~30%, 교육훈련에 10% 각각 반영함으로써 성과중심 조직문화 구축과 국민이 만족하는 법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 그림 2-14 | 성과관리와 BSC 체계



8.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

혁신행정담당관실 사무관 이강채

가. 개 요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는 대통령이 회의·행사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행한 지시를 정리·분류·전달하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함으로써 국정 최고책임자의 지시와 의견이 정책과 업무추진 과정에 차질 없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다. 지시사항 시달 시 소관부서에 신속하게 전달하고, 지시사항별 추진계획 수립 및 분기별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기한 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현재 법무부에 시달되어 추진되고 있는 대통령 지시사항은 2022. 12월 말 기준, 총 12건으로 법무부 주관 지시사항은 8건으로 1건을 이행 완료하고 7건은 추진 중이며, 타부처 협조 지시사항은 4건으로 4건 모두 추진 중이다.

나. 지시사항 현황

1) 법무부 주관 지시사항(8건)

연번	지시일자	지 시 사 항	이행상황
1	2022. 7월	비자정책의 유연화	종 료
2	2022. 7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법제 정비	추진중
3	2022. 7월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규정 개선	추진중
4	2022. 7월	인권 보호 행정 추진	추진중
5	2022. 7월	부정부패 등에 대한 엄정 대응	추진중
6	2022. 7월	흉악범죄와 여성 및 아동에 대한 범죄 예방	추진중
7	2022. 9월	스토킹 관련 피해자 보호 강화	추진중
8	2022. 10월	마약 범죄 관련 종합대책 추진	추진중

2) 타부처 협조 지시사항(4건)

연번	지시일자	지 시 사 항(주관부처)	이행상황
1	2022. 7월	성희롱 피해자 등 보호에 만전 (여가부)	추 진 중
2	2022. 8월	불법사금융 척결 (국조실)	추 진 중
3	2022. 9월	대통령 순방(영미캐) 후속조치 만전 (외교부)	추 진 중
4	2022. 10월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과제 적극 발굴·추진 (기재부)	추 진 중

9. 비상대비 및 재난안전 관리 강화

가. 비상대비 태세 확립

비상안전기획관실 사무관 하헌

1) 을지연습 실시

2022년에는 북한의 30여 차례에 걸친 80여 발의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가 고조되었다. 북한의 국방5대과업 중 하나인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가 2회 이루어졌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유예(모라토리엄)의 파기,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12·15·17형 발사, 핵무기 사용 공언 등으로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계속되었다. 철저한 비상대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로, 지난 5년간 축소시행되었던 을지연습의 정상화와 함께 정부의 비상대비태세를 새롭게 정비하는 출발점으로써 비상대비 훈련이 실시되었다.

법무부는 군사연습과 연계하여 전쟁 이전 위기관리연습과 전시전환연습, 전면전 대응연습을 포함한 을지연습을 실시(2022. 8. 22. ~ 8. 25.)하였다. 전시 법무기능 수행의 심장부로서 전시종합상황실의 기능을 정립하였으며, 중앙통제단 및 자체 사건을 처리하는 도상연습과 전시 현안과제 토의를 실시하였다. 전시 우발상황 대응능력 숙달을 위해 전 소속기관에서 유관기관 합동실제훈련을 실시하였다.

법무부는 을지연습을 통해 충무계획의 실효성을 다시 한 번 검증하였고,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전시 법무행정을 안정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춰 국가 안보태세 강화의 한 축을 담당하였다.

| 그림 2-15 | 2022년 비상대비 훈련



장관 주재 일일상황보고



중앙통제단 사건 처리 도상연습

2) 비상대비 계획 수립·실시

북한의 군사위협 등 안보환경의 변화와 을지연습 시행간 도출된 법무·검찰·보호·인권·교정 및 출입국관리 전시 업무 수행계획의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충무3600 법무부 집행계획」, 「충무6000 자체충무계획」 등 법무부 비상대비 계획을 개정하였고, 본부 및 소속기관, 유관기관 등에 배부함으로써 안보 위협에 대한 비상 대비태세를 강화하였다.

3) 소속 국가중요시설 지도·감독 강화

법무부 소관 총 52개 국가중요시설의 관리를 위해 충무계획 시행태세 및 방호실태를 점검하여 대상 소속기관의 충무계획 미비점을 보완하고, 방호실태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또한, 신규 개청 기관을 통합방위본부와 협의하여 국가중요시설로 추가 지정하여 법무부 방호태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된 소속기관을 지역 내 인근 부대 등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굳건한 통합방위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나. 재난 안전관리 효율성 강화

비상안전기획관실 사무관 하헌

1) 법무시설 위기관리 매뉴얼 관리

법무시설 내 재난발생에 대비한 법무시설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21.)하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및 실제 재난 상황 대응 과정에서 발굴한 보완사항을 매뉴얼에 반영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1개의 표준매뉴얼과 3개의 실·국·본부 실무매뉴얼, 그리고 199개 소속기관에서 행동매뉴얼을 보유하여 향후 법무시설 재난에 대한 총체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다.

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법무시설 재난 발생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법무시설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교정본부-범죄예방정책국-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순환훈련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은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서 '지진에 의한 시설붕괴 및 화재 발생과 이로 인한 보호외국인 매몰 상황'을 가정하여 법무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재난발생 현장의 지자체, 소방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통합상황조치능력을 배양하는 한편, 매뉴얼의 현장 작동성을 점검하였다. 2023년도는 교정기관을 대상으로 훈련을 진행하여 수용자 탈주 등 복합재난에 대한 대응역량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 그림 2-16 |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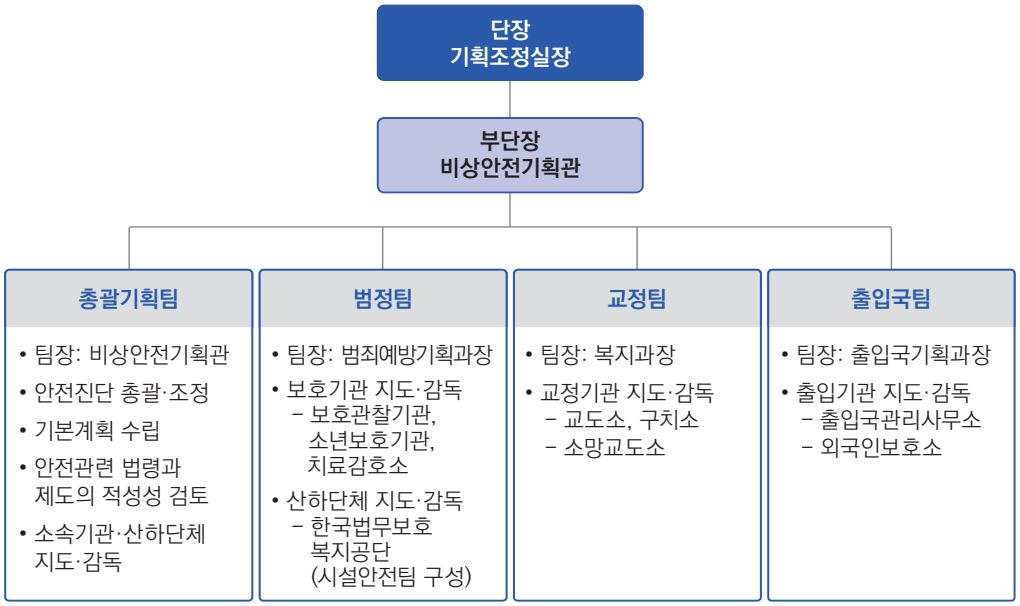


부산출입국·외국인청 현장 훈련

3)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집중안전점검 실시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년 27개 중앙부처, 243개 지자체, 안전 관련 공사 등을 대상으로 사고발생 가능성과 국민 관심이 높은 분야에 대해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법무부는 C등급 이하 위험시설과 취약시설 위주 166개소를 선정하여 점검하였다. 200여 명의 민간전문가가 동원된 민관합동점검으로 전문성 있는 진단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국립법무병원 등 일부 기관에서는 드론을 활용하여 경사지붕과 같이 평소 인력으로 접근이 어려운 취약 장소까지 점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수용동 지반침하 및 보 균열여부 점검, 구조체 균열 확인, 건축마감 확인, 옥상 방수 점검 등이었으며, 재난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선제적으로 재난에 대비하였다.

| 그림 2-17 | 법무부 집중안전점검 추진단 구성



4) 일일재난안전결산 제도 운영

매월 시의적절한 재난안전 점검 테마를 선정하여 전 소속기관이 일일자체점검을 통해 평시 재난을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일일재난안전결산 점검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6월 중점점검 테마로 '집중호우 대비 시설물 및 장비 점검'을 선정하여 침수·누수 대비 시설 보강 및 산사태 및 붕괴 대비 점검을 실시하였고, 11월은 '폭설·한파 대비 시설물 및 장비 점검'을 선정하여, 동파대비 시설을 점검하고 제설장비를 구비하였다. 이를 통해 매년 반복되던 여름철 집중호우와 겨울철 대설로 인한 기관의 피해를 최소화하였다. 또한, 지정된 테마 외에도 일반 시설물·장비점검 및 매뉴얼 점검을 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5) 일일 재난안전 상황판단회의 시행 및 일일 재난안전위험 신호등 운영

재난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비상안전기획관실 자체적, 일일 단위로 재난담당 전문기관 및 부서, 언론보도 등 재난과 관련한 각종 징후를 수집하고 이를 평가하는 일일 상황판단회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동 회의결과를 토대로 일일 재난안전위험 신호등을 작성하여 소속기관에 전파하는 활동을 통해 소속기관의 재난예방 및 대비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상황판단회의 결과 위기징후가 심각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실·국·본부 관계관을 포함한 확대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법무부 재난안전 비전인 「인명사고 ZERO화」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그림 2-18 | 일일 상황판단회의 및 일일 재난안전위험 신호등



일일 상황판단회의 실시



일일 재난안전위험 신호등

다. 코로나19 대응 체계 운영

비상안전기획관실 사무관 하헌

1) 본부 및 소속기관 방역강화를 통한 코로나19 재유행 방지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에 취약한 수용시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2022년도 한 해 3회에 걸쳐 생활방역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소속기관 방역 정책을 논의·수립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2022년 6월에는 수용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소속기관 방역강화 방안을 수립하여 매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하는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매우 낮음-낮음-중간-높음-매우 높음)에 따른 소속기관의 위험도 단계별 방역조치 기준 설정을 통해 집단감염 확산 사전 방지에 최선을 다하였다. 그 결과 수용자 처우 개선 및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모두 고려한 단계적 방역조치 수립을 통해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면서 수용자 인권을 고려한 대응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2022년 1월 본부 오미크론 방역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코로나19 확산 최소화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보다 강화된 기조로 확진자 발생 시 즉시 비상안전기획관실 주관 초기대응회의를 실시하여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를 선제적으로 선별하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후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여 본부 내 코로나19 방역 선제조치를 통해 확진자 접촉에 따른 추가감염 사례를 최소화하였다.

그동안의 코로나19 대응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방역취약 요인 등을 분석하고 대응체계를 미리 점검해 동부구치소 집단감염과 같은 사고를 방지하고, 본부 핵심업무 57개 및 수용관리 등 소속기관 주요업무에 대한 업무연속성 계획(BCP)을 수립하여 코로나19에도 빈틈없이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방역과 업무공백 방지를 동시에 실천하였다.

2) 코로나19 방역점검 실시 및 감염확산 지속 대비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직원들의 방역긴장감 이완을 방지하기 위해 본부 및 소속기관 코로나19 방역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2022년 초 동절기 기간 중에는 범정부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총력대응의 일환으로 3밀 환경으로 인해 감염확산 위험도가 높은 소관 수용시설을 대상으로 특별방역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교정기관과 출입국·외국인기관, 범죄예방기관 등 법무시설과 외국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장관을 방역책임관으로, 소관 실·국·본부장을 방역전담관으로 지정하여 주1회 의무점검을 시행하였다. 또한, 본부는 비상안전기획관실 및 운영지원과 합동 불시점검을 실시하여 마스크 착용과 소독, 환기 여부 등을 점검 및 계도하였고, 실·국·본부장 방역책임제를 실시하여 방역 관심도를 끌어올렸으며, 장관 명의의 방역을 강조하는 서신을 전파하는 등 방역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데 노력하였다.

2022년 4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단계적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 발표에 따라 타 기관보다 강화된 기조의 본부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본부 내 추가감염을 차단하였다. 확진자 발생 시 비상안전기획관실 주관 초기대응회의를 개최하여 밀접접촉자는 외부식당 동행자 등을 대상으로 당일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음성 시 접촉일로부터 3일간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동거인이 확진된 경우 확진동거인 7일 격리해제 전까지 재택근무를 실시하였으며, 실·국·본부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여 긴급한 업무 수행 필요시 밀접접촉자 및 동거인 확진자도 출근은 가능하되, 2일 단위 선제적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 후 출근하도록 하는 세부적 방역대응전략을 시행하였다. 또한, 2022년 6월 안착기 전환 시점에는 대응전략 조정을 통해 추가적 조치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소속기관의 위험도 단계별 방역조치 기준 설정을 통해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방역 공백을 제거하였다. 또한 2022년 동절기 7차 대유행 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통해 법무시설 내에서는 대규모 확산 없이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적절히 대응하였다.

10. 법무정보화 추진 및 사이버 안전 강화

가. 「법무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구축 ISP 수립

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 사무관 김종철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범정부 차원의 지능형 정부 구현 가속화 추세에 맞춰 데이터 기반 법무행정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법무·인권·범죄예방·교정·출입 등 실국본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분석·연계·활용하여 법무행정 효율화, 대국민 서비스 혁신, 과학적·객관적 정책결정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추진내용과 성과

올해는 '법무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ISP(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정보화전략계획)를 수립하여 빅데이터 수집·분석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분석·활용 체계 설계, 분석주제 개발, 빅데이터 포털 및 정보보호 체계 구축, 전담 추진 조직 신설 방안 등 데이터 기반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또한, '법무행정 지능화를 위한 데이터 중심의 법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이라는 비전을 설정함과 동시에, 실효성 있는 빅데이터 서비스 발굴을 위해 실국본부 데이터의 종합적 분석

및 업무담당자 심층 면담 등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목표 모델을 수립하였다. 더불어, 실국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 및 제도개선 과제를 분석하여 교정업무 데이터와 범죄예방업무 데이터를 융합한 '세부 유형별 재범 영향 요인 분석' 등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과제를 도출하였다.

3) 발전방향

향후에는 ISP를 통해 법무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법무행정에 AI(인공지능)·데이터 등 다양한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혁신적인 근무 방식으로 개선하고, 선제적·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하며,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을 수립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나. 선제적·맞춤형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 제공

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 사무관 김시은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계층이 함께 하는 국민 중심의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책 중심형 온라인 콘텐츠 개발, 신속·정확한 법무정책정보 제공, 국민 개선 의견 적극 반영 등 홈페이지 서비스 품질 및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2) 추진내용과 성과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첫째, 활용도가 높은 정보(주요 법무정책, 공공데이터, 통계, 보고서 등)의 개방을 확대하여 대국민 알권리를 보장하였고, 국민이 보다 쉽게 법무부와 소통하고 법무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관·본부장·기관장과의 대화 창구를 운영하고, 맞춤형 관심분야 메뉴와 국민참여(제안) 메뉴를 개편하는 등 온라인 소통 창구를 지속적으로 확대 개선하였다.

둘째, 홈페이지에 '대기열 서비스'를 도입하여 사회적 이슈, 합격자 발표 등 일시적인 사용자 폭증으로 발생하는 서비스 중단 및 이용 불편사항을 사전 예방하였고, 이에 법무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부서로 선정되었다.

셋째, 홈페이지 방문자가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법무부 대표,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메인화면을 전면 개편하였을 뿐만 아니라 '변호인 인터넷편지 기능 개선', '변호사 석차공개 서비스 도입', '간편인증 서비스 확대', '게시글 담당자 정보 표기 시행', '개방형 문서뷰어 적용' 등의 선제적·맞춤형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넷째, 장애인·노약자 등 정보 접근 소외계층이 불편함 없이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표 및 실국본부 7개 홈페이지의 웹접근성 품질인증마크를 갱신하였고 이런 노력으로 '홈페이지 품질관리 수준' 평가에서 95점(중앙부처 평균 81점)을 획득하여 웹사이트 관리 우수 평가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더불어, 국민의 공공정보 접근성 향상 및 홈페이지 운영 효율성 제고를 인정받아 행정관리역량평가 '웹사이트 관리 우수성' 분야에서 만점을 받는 성과를 이루었다.

| 그림 2-19 | 법무부 대표 홈페이지 메인 개편



| 그림 2-20 | 홈페이지 대기열 서비스 도입



3) 발전방향

2023년도에도 안정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법무행정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온라인민원 서비스('출입국현장투어 개인정보 동의절차 개선', '국립법무병원 인터넷편지 일괄출력' 등)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등 홈페이지 서비스 품질을 더욱 향상시켜 지속적으로 대국민 신뢰도를 높일 것이다.

다. 고품질 법무지식 생산·활용으로 법무행정 역량 제고

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 사무관 김시은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노하우·보고서·연구논문·수범사례 등 고품질의 법무지식[1]을 등록·검증·활용하여 법무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성과를 창출하는 등 지속적으로 법무지식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 법무지식 : 법무행정 업무수행 과정에서 체득한 개인 또는 부서의 경험, 노하우 등 유·무형의 실천적 정보

2) 추진내용과 성과

2022년 1월 지식행정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법무부 지식행정의 정책방향을 명료하게 제시하고, 지식 활성화 정책('지식등록 주간', '최초 등록 시 마일리지 점수 상향' 등)을 발전시킴으로써 법무지식 등록건수가 전년대비 9.3%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분기별 우수지식인 및 연말 지식행정 우수직원 선정 시 '최초 지식등록 직원'을 포함하는 등 신규 참여를 장려하고, 고품질 지식활동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였다.

아울러, 지식활동에 대한 관심 및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법무지식 콘테스트'를 개최하여 입상자를 선정하고 인사 가점, 응모자 지식마일리지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더불어, 우수 학습동아리 6개를 자체 선정하고 운영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공무원 연구모임 운영비 지원' 경진대회에 2개 학습동아리가 입상하는 등 수준 높은 집단 지식 창출을 위해 노력하였다.

3) 발전방향

앞으로도 업무 효율성 제고와 성과 창출을 목표로 고품질 법무지식을 지속 발굴·활용하는 등 지식행정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지식사회에 적합한 양질의 법무지식을 발굴하고 활용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라.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로 안전한 업무환경 제공

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 사무관 배재민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2022년도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에 따른 IT환경 변화(재택근무, 클라우드 전환 등)를 악용한 공격, 국가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글로벌 해킹조직의 활동, 디지털 사회를 마비시키는 랜섬웨어, 디도스 공격 등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였다.

법무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전년 대비 2.6% 증가하여 중요 정보와 자산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한층 높아졌다. 특히, 법무부는 범죄예방, 교정행정, 외국인 관리, 출입국심사 등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국가사회에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 정보보호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해킹 등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법무행정 정보 유출 등의 보안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법무정보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조치, 보안관제 통합분석 시스템 운영 등 정보보호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였다.

2) 추진내용과 성과

법무사이버안전센터에서는 365일 24시간 무중단 보안관제를 실시하여 사이버 위협에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한편, 법무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시스템의 보안취약점을 분석·제거하였고, 대민 홈페이지 위변조 및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해킹 공격과 정보 유출을 예방·차단하였다. 또한, 법무정보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및 정보시스템의 보안취약점을 진단·조치하는 등 보안사고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특히, 법무부 홈페이지와 국가송무시스템을 대상으로 긴급취약점 점검을 수행하고, 최신 해킹기법을 이용한 모의해킹을 실시하여 보안성을 높였다.

법무부 직원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보안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이버보안 소식지를 발송하고 보안담당자를 대상으로 보안뉴스를 발송하여 최신 보안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법무연수원 사이버 교육 중 정보보호 과정을 개설·운영하고,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리플릿을 제작·배포하여 직원들의 관심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더불어 반복적이면서 표준화된 '위협 정보 수립·분석 및 관제 대상기관 상황전파' 업무에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기술을 적용하여 자동화하는 등 사이버 보안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3) 발전방향

앞으로도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담 조직 및 인력 확보 추진, 정보시스템 보안 취약점 및 정보보안 관리실태 점검 개선, 노후 정보보호시스템 교체 등 보안 취약요인 사전 제거 활동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더불어, 중요 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하는 등 변화하는 사이버 공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마. 법무정보통신망 고도화 및 국가융합망 성공적 전환

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 사무관 유재두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정보통신망은 본부 및 소속기관의 업무망, 인터넷망, 백업망, 대외연계망 등 다양한 정보통신 회선을 연결하고 있으며, 계속 늘어나는 정보화 업무로 인하여 네트워크 트래픽 또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빠르게 변화하는 법무행정 업무환경에 대비하고 향상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품질의 법무부

국가정보통신망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네트워크 트래픽을 분석하여 회선 대역폭을 높이고, 전송장비, 통신장비 등 노후장비를 교체하여 생존성과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2) 추진내용과 성과

법무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생존성 강화를 위해 회선사업자를 이원화하여 통신재난 상황 또는 장애 발생 시에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구축하였다. 또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기관별 통신회선의 대역폭을 약 3배 이상 증속하여 업무환경을 개선하였고, 전송장비, 통신장비, 보안장비 등 노후 장비를 전면 교체하여 서비스 품질 및 보안성을 향상시켰다. 한편, 실시간 통신상황 모니터링 및 빠른 장애 대응 처리를 위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장거리 회선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 주요 거점기관 통신회선을 국가융합망[1]으로 전환하였다.

3) 발전방향

앞으로도 업무망, 인터넷망, 백업망, 대외연계망 등 영역별로 나누어진 각 전용회선에 대한 특성을 수시로 점검·보완하여 법무정보통신망에 대한 최적의 전송환경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관 신설 및 이전 등 내·외부 환경변화를 효율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기반을 꾸준히 발전시키고, 인공지능·빅데이터·클라우드 등 신규 융합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발생하는 대용량 통신수요에 맞춰 효율적인 정보통신망 운영·관리 환경을 구축하고 이에 따른 서비스 품질을 개선할 예정이다.

11. 형사사법공통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대국민 서비스 확대

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공동활용정보 항목 확대 및 공통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사무관 오은정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은 법무부·법원·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해양경찰 등 6개 형사사법기관이 각종 형사사법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한 공통 표준의 전자

1)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국가정보통신망과 48개 정부 부처별로 구축·운영하는 개별통신망을 하나의 통신망으로 통합하는 형태

업무시스템(형사사법정보시스템, 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이하 'KICS') 중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통시스템을 운영하며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및 대국민 서비스 확대를 꾸준히 추진해왔다.

2022년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KICS 구축에 따른 형사사법기관 간 연계, 차세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구축 관련 연계, 검찰 범죄피해재산환부시스템 연계, 경찰-국토부 건축행정시스템 연계, 경찰 범죄통계시스템 고도화 관련 연계, 검찰 수사기록자동추적처리시스템 고도화 관련 연계 등 기관 간 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연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공통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형사사법 전자문서 서비스를 개선하고, 피싱사이트 탐지 솔루션을 구축하여 형사사법포털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법무부·법원·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해양경찰 간 530여 종의 정보를 하루 평균 210만 건 처리하고 있으며 2022년 말 기준으로 74억 5,820만 건(전자문서 약 7,820만 건, 사건정보 약 73억 8,000만 건)에 달하는 정보를 공유하여 형사사법절차와 관련된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였다.

또한 인터넷 접속 환경의 변화에 따라 모바일 기기 사용자가 늘면서 법무부는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 행정안전부에서 공공기관 웹사이트에 제공하는 전자서명 공통기반(간편인증) 서비스를 도입하였고, 모바일 형사사법포털의 디자인을 개선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도모하는 등 모바일 기반의 서비스를 강화하였다.

특히 신생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KICS 운용상의 어려움으로 국민들에게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형사사법포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 조회 서비스를 신속하게 설치하였다.

| 표 2-7 | 형사사법포털 운영 현황

구 분	'22 운영 현황	누적 건수('10. 7. ~ 22. 12.)
포털 접속	5,096만 건	3억 9,909만 건
모바일 앱 다운로드	75만 건	426만 건
사건진행 상황 조회	1,564만 건	1억 586만 건
벌과금 조회	248만 건	2,256만 건
민원서비스	7만 건	67만 건

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및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 사업 추진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사무관 조윤주

현재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KICS”)은 2010년 구축 이후 12년이 경과된 노후 시스템으로, 눈부신 정보통신기술 발전의 결과물들을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갈수록 높아지는 민원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검찰·경찰·해양경찰과 함께 첨단 지능정보기술을 형사사법 업무에 적용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차세대 KICS 구축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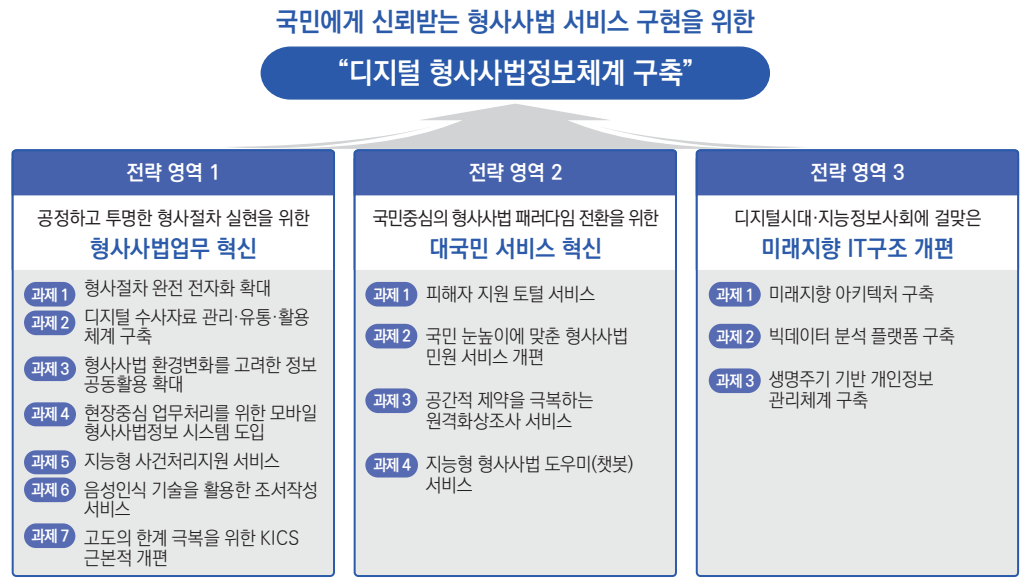
차세대 KICS 구축사업은 ‘공정하고 투명한 형사절차 실현을 위한 형사사법 업무 혁신’, ‘국민 중심의 형사사법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대국민 서비스 혁신’, ‘디지털시대 지능정보사회에 걸맞은 미래지향 IT구조 개선’을 전략목표로, 기존에 종이문서로 진행되던 형사절차를 전면 전자화하여 형사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증대함과 동시에 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시스템 및 모바일 현장조사 서비스 등을 도입하고,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확대·개선함으로써 대국민 형사사법서비스의 편의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진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2021년 12월 사업자 선정을 시작으로 총 3단계에 걸쳐 구축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1단계 사업은 2021년 12월에 착수하여 2022년 8월에 완료하였으며, 2단계 사업은 2022년 8월에 착수하였다.

1단계 사업에서는 현행 KICS 시스템 분석 및 기본 설계를 수행하여 총 162,159개의 TO-BE 대상을 도출하였고, 2,118건의 기관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최종 2,087건을 반영하기로 확정하면서 ‘1단계 사업 공정률 100%’라는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2022년 8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2단계 사업에서는 1단계 사업에서 확정된 요구사항을 토대로 시스템을 개발하고 형사사법포털 개선에 필요한 시스템 분석 및 상세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차세대 KICS가 구축되면 온라인 민원 서비스가 확대되어 민원인이 직접 형사사법기관을 방문하는 불편함이 해소되고,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각종 통지·지원제도 안내 및 지원 결과 등을 제공받게 되어 국민들이 보다 더 편리하게 형사사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조서 작성 지원 서비스 등이 도입되어 조사 시간이 단축되고, 조사과정이 투명해지면서 형사절차에서의 인권 보호 기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림 2-21 | 사업 목표



12.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주무관 이윤혜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19. 5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조직 신설 이후,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매년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였다. 추진계획에서는 직원 성인지 감수성 제고, 법무행정 정책의 성주류화 추진,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속 가능한 추진기반 조성의 4가지를 핵심 과제로 선정하였다.

2022년에는 '21년도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과 「법무부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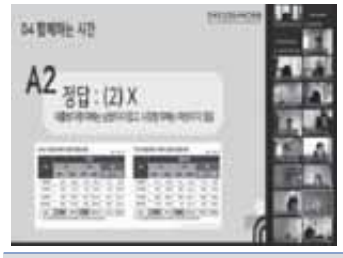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의식 개선 분야

양성평등교육 실시 및 성인지 콘텐츠 제작·배포를 통해 조직 구성원의 양성평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양성평등의식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양성평등교육의 경우 집합교육(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탁), 법무연수원 연계교육, 소속기관 대상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의 3가지를 기본적인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집합교육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실시간 온라인교육(관리자 과정 4회)과 소규모합숙교육(소규모토론교육으로 진행, 6급이하 과정 6회, 양성평등정책담당자 과정 3회)의 형태를 병행하여 총 13회, 280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법무연수원 연계교육'의 경우 승진자 및 신규자 과정 등에 양성평등 과목을 편성하여 총 9회, 315명을 교육하였다.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은 기관장 등 간부 대상 교육 69회와 영화교육 9회를 포함하여 총 169회, 4,228명에 대해 이루어졌다.

| 그림 2-22 | 양성평등교육



실시간 온라인교육


합숙교육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한편, '양성평등의 날'을 총 5회(1월, 5월, 9월, 11월, 12월) 운영하여 양성평등문화 조성 및 여성폭력 예방을 주제로 한 콘텐츠를 법무샘에 게시, 구성원들의 관심을 제고하였다.

2) 정책·제도 분야

법무부 내 양성평등 실현과 성인지적 업무 수행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 마련 등에 대한 자문기구인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제1기 위원 임기('20.4.27.~'22.4.26.)가 만료됨에 따라 제2기 위원회 발족식('22.12.9.)을 개최하였다.

| 그림 2-23 | 양성평등정책 및 제도 추진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운영



양성평등 공모전 시행

한편, 직원들의 다양한 양성평등정책 아이디어 수렴을 위해 법무샘 게시판을 운영하고, '정책 아이디어 및 작품' 공모전을 개최하여 직원 의견을 수렴, 우수 정책제안 및 작품 6건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였다.

한편, 대국민 홍보물 및 우리부 소관 행정규칙에 대한 성차별적 요소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하였다. 『법무부 홍보물 제작 양성평등 가이드라인』을 발간·배포('22.5.)하여 홍보물에 대한 성차별 여부 사전점검 체계를 구축했으며, 행정규칙 314개를 성인지 관점에서 점검하여 성평등이 취약한 분야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하는 용역(『법무부 소관 행정규칙에 대한 성인지적 개선방안 연구』)을 실시하였다. 용역 결과에 따른 개선안은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민간위원의 자문을 거쳤으며 향후 관련부서에 권고할 예정이다.

3)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 분야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등 폭력예방교육의 다양화, 소속·산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으로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다.

「법무부 성희롱·성폭력 실태연구」('21) 결과를 반영한 맞춤형 자체 폭력예방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하여 교육효과의 제고에 기여하였으며, 폭력예방 관련 주제 영화 상영, 간부 대상 별도교육을 실시하였고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였다.

또한, 폭력예방교육은 코로나-19에 따라 소규모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폭력예방교육을 통하여 왜곡된 성인식 및 문화개선과 안전한 직장환경 조성에 기여하였다.

아울러 소속·산하기관에 대한 폭력예방교육 및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업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에 대한 이해 및 연습을 통해 실제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건 처리를 위한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

| 그림 2-24 |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폭력예방 관련 주제 영화상영



간부급 대상 별도교육

다. 평가 및 향후 추진계획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대면교육은 제한적으로 실시하되, 사이버 교육 콘텐츠 개발, 실시간 쌍방향(ZOOM) 교육, 맞춤형 소규모 교육 등을 통해 구성원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양성평등의 날 운영, 공모전 실시 등 다양한 형태로 양성평등 정책을 홍보하여 법무부 직원의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

향후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홍보하고, 그간의 업무추진 과정과 실태조사 등에서 도출된 개선점 등을 양성평등 정책 수립·추진 시 반영하여 양성평등 문화가 조직 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양성평등 추진 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13. 법무연수원 교육 및 연구 내실화

가. 교육훈련 개요

법무연수원 기획과 주무관 정영인

2022년, 법무연수원은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는 법무·검찰 인재 양성」이라는 교육 목표와 함께 '교육생들의 직무 전문성 강화 및 올바른 공직 가치관 확립'이라는 교육기관으로서의 근본적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였다.

검사, 검찰직, 보호직, 출입국관리직, 교정직 등 법무·검찰공무원, 유관기관,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총 826개 과정, 7,050회, 432,522명(집합교육 167개 과정, 304회, 11,335명 / 사이버교육 659개 과정, 6,746회, 421,187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교육 인원 기준 전년 대비 12% 증가(집합교육 1,330명, 사이버교육 56,630명 증가)한 수치이다.

연간 교육 실적을 살펴보면, 집합교육의 경우 연초 계획 대비 달성률이 약 94.5%로, 전년(약 85%) 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됨에 따라, 화상교육 및 집합교육을 교육훈련계획대로 안정적으로 운영한 결과이다.

교육 내용 측면에서는 우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운영을 위해 다양한 교육수요와 교육생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였다. 다양한 교육수요를 교육과정에 반영함으로써 교육생이 변화하는 업무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실무에 필요한 직무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예술, 인문학 등 다양한 문화 향유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교육생의 융·복합적 역량을 향상하고 교육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직렬별 교육을 살펴보면 검사 교육의 경우 경력에 상응하는 단계별 교육을 예년과 같이 실시하되, 저년차 검사 역량강화(선택) 과정의 경제 분야를 통합하여 「경제 심화 전문」 교육과정을 개설함으로써 대형 재산범죄 사건처리 역량 제고와 전문성을 요하는 조세·관세, 특허·지재 분야 및 신종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역량 강화를 도모하였다. 일반직 교육의 경우, 맞춤형 단계별 교육과 다양한 타겟형 교육을 적절히 운영하였으며 특히 직렬별로 별도 실시하던 「과장 후보자 역량 개발」과정을 통합함으로써 교육대상자들에게 더욱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직렬 간 상호 이해도를 높이는 정보 공유의 장을 조성하였다. 교정직 교육은 신규자를 대상으로 이론 중심의 실시간 화상교육과 사례 및 실무 위주의 대면 교육을 적절히 조화롭게 추진하였으며 교정기관 「특별사법경찰관리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수사 요원의 체계적인 양성을 도모하는 등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타겟형 교육 또한 안정적으로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법무·검찰 구성원 외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특사경, 국가송무 소송수행자 등 타 부처 대상 직무역량 교육 또한 내실화하여 부처 간 협업을 증진하고 국가 전반의 법집행 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나. 검사 교육과정 개편

● 법무연수원 기획과 주무관 구민경

1) 저년차 검사 역량강화 과정 개편 및 양성평등 등 주요 교과목 교육 강화

가) 추진배경

2022년 진행한 전국 검사 교육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생의 참여율을 제고하고 교육

참여에 따른 일선 청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년차 검사(선택) 4개과정을 2개 과정으로 통합하여 진행하였다. 또한 교육 대상의 기준을 확대하여 보다 다양한 교육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동학대 및 성폭력 사건에 대한 수사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성폭력 범죄 과정을 신설하였다.

'저년차 검사 역량강화(필수)' 과정 등에 「양성평등」, 「조직문화 개선 및 토의」 등 주요 교과목을 편성하고 '부장검사 리더십' 과정에 통일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노근리 평화공원 견학 등 인권 현장학습을 편성하여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였다.

나) 상세내용

'경제범죄 심화', '서민다중 피해범죄', '조세·관세', '특허·지재' 등 각 4개의 과정으로 실시하였던 저년차 검사(선택) 과정을 '조세·관세, 특허·지재', '경제범죄심화, 서민다중 피해범죄'로 통합하여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던 과목들로 '통합 전문 교육과정'을 편성하였고, 4개의 과정을 2개의 전문 속성 과정으로 편성함으로써 교육생들의 교육 참석에 대한 부담감을 경감할 수 있도록 기존의 4일 4회 일정의 교육에서 5일 2회 일정의 교육으로 변경하여 진행하였다.

저년차 검사 역량강화 교육은 필수과정(경력 3~4년차 검사)과 선택과정(경력 5~7년차 검사)으로 나누어 저년차 검사의 충실한 기초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형사부·공송부 업무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개정 형사법령의 이해」 과목을 계속 편성하여 '21년부터 시행되는 법 개정으로 인한 업무 혼란을 해당 교육을 통해 예방하였다.

각 리더십 과정에 「미래 산업과 소프트파워」, 「마음을 사로잡는 스피치」, 「고전에서 배우는 리더십」등 다양한 분야의 강의를 통해 소통 능력과 인권 감수성 등을 함양하고 국가관, 공직관, 리더십 및 인권의식 등을 제고하였다.

다) 평가 및 발전방향

'저년차 검사 역량강화 과정(필수, 선택)'의 교육생 평가분석 설문 결과, 교육 내용 및 주제가 관심이 있거나 배우고 싶은 분야가 많았고, 평소 전담해보지 않았던 분야에 대해 새롭게 접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5일로 변경된 교육기간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높았다.

과목 당 배정된 시간이 짧아 주어진 시간내에 유익한 내용을 다 전달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어 추후 교과목 편성 시 교육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진행할 예정이고 교육생들의 수사 역량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각 교육과정에 실무 위주의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2) 신임검사 통합 교육 실시

법무연수원 법무교육과 주무관 임유정

가) 추진배경 및 경과

법무연수원은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으로 이원화된 교육과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신임검사 교육과정을 8주에서 5개월로 확대·개편하고,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출신 신임검사의 통합교육('18. 최초 신설)을 실시하고 있다.

통합교육 시 예상되는 출신 간 격차 해소를 위해 변호사시험 출신 검사 예비합격자를 대상으로 결정문 작성방법 등의 사법연수원 과정을 3~4월 집중 교육하고 있다.

다양한 조서 작성 방법, 각종 영장 작성 등 수사·조사기법 교육, 일선 기록 연습 및 첨삭, 각종 보고서 작성 등을 통한 실전 훈련 강화 등 통합 교육을 통해 직무역량을 향상하고 출신과 기수 등이 다양한 신임검사들이 함께 교육받음으로써 교류를 통해 연대감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신임검사 통합교육은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출신 신임검사 총 89명을 대상으로 2022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4쿼터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이 중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경력 신임검사 5명은 2022년 9월 2쿼터까지 5개월 간의 교육을 이수하였다. 변호사시험 11회 신임검사 및 변호사시험 8회(법무관 출신) 신임검사, 총 84명은 2022년 10월 3쿼터 종합직무교육을 마친 뒤,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일선 청 실무교육을 마친 후, 2023년 1월 1주간 마무리 교육을 거쳐 수료하였다.

기존의 법리·판례 암기 및 결정문 작성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체험형 실습 교육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여 직무역량 강화를 도모하였다. 특히 직무교육 분야에서는 실무 기록을 적극 발굴하여 사례 중심 기록실습 교육을 통해 실무역량을 증대에 중점을 두었다.

사기 등 민생범죄 사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현직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를 강사로 섭외하여 민사집행법, 보전소송 등 민사법 실무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회계 수사역량 강화를 위하여 대검 반부패·강력부 소속 회계지원팀의 교육지원을 받아 총 15시간의 회계원리 강의 등을 진행하였다.

인권 및 양성평등 교육에서 대학교수, 변호사 등 실무가를 통한 사례 중심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스토킹범죄 등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을 확대하여 인권감수성을 배양하고자 하였다.

「롤플레잉 조사실습」, 「국민참여재판 롤플레잉 실습」 등 체험형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사건 쟁점 파악능력 및 조사역량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특히 롤플레잉 조사실습을 통해 신임검사가 피조사자 역할을 담당해 봄으로써 조사능력 제고뿐만 아니라 조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세상을 보는 안목과 인간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인문학 강의 영역을 과학기술, 사회 분야 등 다양한 주제로 확대하였다. 이와 함께 인문학 토론 등의 소양교육, 멘토-멘티 방식으로 직무교육, 생활 전반을 밀착 지도하는 1:1 튜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직무역량뿐만 아니라 인품까지 갖춘 신임검사를 배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교육 실시

법무연수원 법무교육과 주무관 임유정

가) 추진배경

2022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소속직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신규 교육과정 개설 요청에 따라 법무교육과에서는 공수처 검사교육을 진행하였다.

나) 상세내용

10.31. ~ 11.4. 1주간의 기간동안 공수처 검사 9명을 대상으로, 결정·조사·수사실무 등의 '신임검사 교육' 교과목을 기준으로 금융·입법·교육·공직 비리에 대한 특별수사 직무과목을 일부 추가하여 교과목을 편성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공수처 신임검사들은 실제 사건기록을 통한 강제·임의수사 방법 및 영장작성 등 실무교육을 받았으며, 조사 롤플레잉 실습을 통해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등의 조사기법을 습득하였다. 또한 특별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현직 검사를 섭외하여 실무대응 능력을 함양하였다.

다) 향후계획

이번 교육은 각종 조사기법 실습뿐만 아니라 특별수사 사례 및 이론습득을 통해 공수처 신임검사들의 직무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앞으로도 연수원은 공직사회 특혜·비리 근절 및 국가 투명성·신뢰성 제고라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공수처의 교육 요청에 따라 적합한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다. 법무·검찰공무원 교육과정 개편 및 제도개선

1) 과학수사 및 IT 기술 접목 선도적 교육 확대

법무연수원 기획과 주무관 정영인

가) 추진배경

IT 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디지털·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시대의 흐름에

따른 전문화된 과학수사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IT 기술 발전에 따른 교육을 검찰뿐만이 아닌 교정, 보호, 출입국 등 법무행정 전반에 확대하고자 하였다.

나) 추진 내용

과학수사 역량 강화를 위하여 우선 통합디지털증거분석시스템, 모바일포렌식분석시스템 등 첨단 과학수사 기법을 연마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신설하였다. 검찰수사관을 대상으로 「현장용 디지털포렌식 도구 및 D-NET 사용 역량 강화」과정을 신설하였으며, 디지털수사지원 절차의 전반적인 이해와 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 모바일포렌식 도구 등 여러 디지털 수사기법에 대한 이해와 활용에 대해 교육하였다. 또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와 함께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양성」과정도 신설하여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및 분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디지털포렌식 요원을 양성하였다.

또한 신임검사를 대상으로 과학수사 이론과 실무를 포괄하는 종합적 교육을 통해 과학수사 전문역량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함양하였고, 이외 검사 및 검찰수사관 대상 단계별 교육과정에도 '디지털 포렌식의 이해' 등 과학·디지털 수사 교과목을 편성하여 교육하였다.

일반직 등 법무부 전 직렬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기본·심화)」과정을 운영하여, 데이터 기반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능력을 배양하였다. 이외에도 일부 단계별·타겟형 교육과정 내 '디지털 리터러시', '데이터 분석' 등 관련 교과목을 편성하여 기본적 과학·데이터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평가 및 발전방향

다양한 과학·IT 기술 접목 교육을 통해 변화하는 업무 상황에 필요한 직무역량을 배양함으로써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발전하는 법무행정의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앞으로도 과학수사, 빅데이터 등 다방면의 과학·IT 기술 접목 교육을 통해 관련 역량을 효과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하여, 변화를 선도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2) 실무 체계변화 등을 반영한 일반직 사이버교육 콘텐츠 신설 및 개편

법무연수원 일반연수과 주무관 김유리

가) 추진배경

2021. 1. 1. 개정·시행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2021. 10. 12. 설치된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등 급변하는 형사사법제도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제도의 조속한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직 사이버교육 콘텐츠를 신설 및 개편하였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법령개정 및 이에 따른 실무 체계 변화 등 최신 자료를 반영하기 위하여 일반직 사이버교육 콘텐츠 29개 과정을 신규제작 및 업그레이드를 실시하였다.

| 표 2-8 | 사이버교육 콘텐츠 신규 제작 및 업그레이드

직 렬	신규 제작	업그레이드
검찰	• '기업회계실무' 25차시	• '민법총칙' 30차시 • '물권법' 35차시 • '채권각론' 25차시
보호	• '심리생리검사의 이해'3차시 •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직무개론' 6차시 •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업무지침의 이해' 6차시 • '전자감독 훼손사건 대응 절차' 3차시 •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사건 관련 주요 판례' 3차시 • '소년보호 담임역할 및 문제학생 지도' 5차시 • '보호소년 처우 관련 법령' 6차시 • '소년재범위험성 평가도구의 이해' 5차시 • '보호관찰 실전체포술' 4차시 • '성폭력사범의 이해' 5차시	• '보호관찰 법률 이해 제도론' 3차시 • '보호관찰 법률 이해 총칙' 3차시 • '보호관찰 법률 이해 지도감독' 5차시 • '보호관찰 법률 이해 사회봉사 등 2차시 • '보호관찰 상황관리' 5차시 • '치료감호법의 이해' 2차시 • '소년보호 생활지도 실무' 10차시 • '소년보호 교무 실무' 10차시 • '보호관찰지침의 이해' 6차시
출입국관리	• '출입국관리직 공보 책임자 언론 대응 및 홍보 기획' 5차시 • '난민 판례 및 케이스 스터디'12차시	• '국적법의 이해' 18차시 • '선박심사 실무' 14차시 • '외국인 보호실무 및 고충처리 유형' 6차시 • '사회통합정책의 이해' 10차시

다) 평가 및 발전방향

급변하는 법무검찰 관련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일선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정법령 및 실무 절차 변화 등을 시의적절하게 교육함으로써 제도 변화로 인한 일선 현장에서의 혼선을 줄이고 안정적인 법무 행정 구현에 기여하였다. 또한 바쁜 업무 환경으로 대면교육을 참여할 수 없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교육을 내실화하여 교육효과를 증대하였다.

2023년도에는 기 편성된 개정 형사법령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제도 개선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사회·제도 변화를 주시하여 수요 발생 시 적극 교육계획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3) 교정공무원 인권 교육 활성화

법무연수원 교정훈련과 교감 강인원

가) 추진배경

수용자 인권을 중시하는 교정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교정직 공무원들의 수용자에 대한 인권 보호 의식을 강화하고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실습 위주 교육프로그램 편성, 사례형 교육 실시 등을 통해 보다 전문화·체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나) 추진내용

인권교육을 확대·심화하기 위해 2022년도에는 사례 위주 교육인 「보호장비 적정 사용법」 교과목을 도입하여 현장 직원들이 업무 수행 과정 중 수용자 인권에 대해 철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보호장비 사용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례 및 형집행법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교안을 개발하여 2022년 재직자 과정인 「현장근무자 인권의식 향상」, 「수용자 처우 향상(인권)」과정을 편성하여 「보호장비 적정 사용법」 교과목을 총 5회에 걸쳐 교육하였으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총 300명이 교육을 수료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례 분석 및 수용자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행정 처리 운영 방안을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수용자에 대한 소극적인 인권 침해 방지에서 적극적인 인권 존중으로 기본적 사고를 전환하도록 하였다. 수용자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행정 처리 운영 방안 교육의 주요 내용은 보호장비 사용 시 소장의 사전 허가 원칙 탄력 적용, 보호장비 착용자 대상 신체 활력 징후 측정,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 기록·유지, 보호장비 사용 시 '사전 소장 명령' 원칙에서 '사후 지도·감독' 중심으로 변경 등이다.

다) 평가 및 발전방향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이 주로 화상수업으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론 수업 후 실제 보호장비 착용 동영상 시청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육효과를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향후에는 신규자 교육 과정에서도 「보호장비 적정 사용법」 교육을 실시하고 재직자에 대한 실습 교육을 확대하여 수용자 인권 향상을 위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4) 직무 전문성 배양을 위한 교육운영 확대

법무연수원 교정연수과 교사 김우겸

가) 추진배경

정신질환 수용자 증가 등 업무 환경 변화 대응, 처우의 과학화를 위한 전문 교육 수요 증대, 과학적 분류심사를 통한 개별처우, 성폭력 및 가정폭력 이수명령, 각종 심리치료, 2022년도 교정기관 특사경 운영체계 구축 등과 관련한 업무수행을 위한 교정기관 전문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 교육과정의 개편·신설을 추진하였다.

나) 추진내용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수용관리 중심 상담에서 문제해결 중심 상담체계 개편으로, 전문

인력을 위한 「전문 상담실무」, 「상담사례 지도자양성」교육과 현장근무자를 위한 「교정상담실무」교육을 구분하여 업무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분류검사 전문화」, 「내부강사 양성」, 「이수명령(가정폭력, 스토킹 등) 실무과정」을 신설하여 직무역량 강화를 통해 교정현장에서 다양한 기법을 적용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별사법경찰관리」과정 확대를 통해 특별사법경찰관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수사활동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다) 향후계획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 증가 및 감염병 발생 상황에서 전문 업무수행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정신질환 수용자 위기상황조정 과정」 및 「감염병 담당자 양성 과정」을 신설하여 정신질환 수용자 수용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의 전문성 및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실시간 화상교육 위주로 진행된 2021년~2022년 9급 신규직원 대상으로 실습형 보안 업무 보완교육을 1회에서 4회로 증설 실시하여 실습 위주의 체계적인 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라. 법무행정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추진

법무연수원 기획과 주무관 이정대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행정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사업 추진을 위해 법무연수원은 자체적으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정책연구용역 심의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자 선정의 투명성과 연구과제 심의기능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 표 2-9 | 2022년 정책연구용역 심의소위원회 위원 명단

구분	소속	직위/직급	성명	비고
위 원 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직무대리	김남순	
위 원	법무연수원	법무교육과장	윤경원	
위 원	법무연수원	기획과장	김영미	
위 원	법무연수원	검사교수	김지영	
위 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효원	
위 원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성우	
위 원	가천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박형관	
위 원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이 옥	

2) 평가 및 향후계획

법무연수원은 정책연구용역 심의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2022년『중대재해법의 시행에 따른 수사 환경 변화 예측과 대응방안』등 법무·행정 발전을 위한 주제 3건을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2022년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은 강의자료와 새로운 교육과정의 개발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연수원은 외부전문가를 포함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자 선정 투명성과 연구과제 심의기능의 전문성을 높일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법무정책 발전에 도움이 되는 주제를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 표 2-10 | 2022년 정책연구용역 추진 현황

구분	용역 과제명	책임연구원
1	중대재해법의 시행에 따른 수사 환경 변화 예측과 대응방안	가천대 이근우 교수
2	신임검사 디지털증거 교육 표준교재 개발	충북대 박재평 교수
3	외국의 신임검사 양성 교육제도 비교연구	형정원 승재현 박사

마.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법무·검찰행정 구현

1) 법무연수원 체육시설 지역사회 개방 운영

법무연수원 총무과 주무관 안효준

가) 추진배경

법무연수원 진천본원의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건강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소통과 협력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법무·검찰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개방 운영 중이다.

나) 상세내용

2021년을 시작으로 충북혁신도시 및 진천군 지역주민과 진천군 소재 단체, 직장, 학교 등에 소속된 사람에게 대운동장(축구장), 테니스장 2면, 풋살장 2면, 야구장, 부대시설(주차장)을 주말·공휴일 오전 09:00 ~ 12:00, 오후 13:00 ~ 17:00 개방하고 있다. 진천군체육시설 유지·관리업무 지원협의에 따라 사용료는 100% 감면 중이며, 2022년 테니스장 50회, 풋살장 30회, 야구장 39회 개방을 하였고 특히 진천군 유소년 야구단의 경기 및 연습장으로 본원 야구장을 적극 활용 하는 등 코로나-19가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보다 많은 개방과 협력을 통하여 지역주민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그림 2-25 | 법무연수원 체육시설 지역사회 개방



〈다목적 구장〉



〈테니스 코트〉

바. 법무한류 확산 및 국제협력 강화

법무연수원 기획과 주무관 신유나

1) 추진배경

법무연수원은 1997년부터 국제연수과정을 운영하여 형사사법분야에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제 형사사법 공조체계를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2) 추진내용 및 주요성과

비상임 연구위원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미국 등 선진국 법제와의 형사사법제도 비교·연구를 통해 법무·검찰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비상임 연구위원을 종전 아세안 국가 검사에서 미국, 호주 등 한인검사로 위촉변경하여 연구지원하였다. 2022년 위촉 비상임 연구위원은 아래와 같다.

| 표 2-11 | 2022년 비상임 연구위원 위촉내역

	비상임 연구위원	국가	위촉기간
18대	땅 억 김 미(Tang Ngoc Kim My)	베트남	'21.11.01 ~ '22.02.07
19대	수잔 박(Susan Park)	미국	'22.08.08 ~ '23.02.07

위촉된 비상임 연구위원들은 신임검사를 대상으로 자국의 사법제도를 강의하는 한편, 법무부 국제형사과, 전자감독과, 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실,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및 수원지검 검사실, 디지털포렌식팀 등을 방문하는 등 대한민국의 선진 법·제도들을 경험하고 연구하였다.

2022년 법무연수원은 '팔레스타인 검찰 역량강화('20 ~ '22)', '케냐 NCRC 보안시스템 체계 구축 및 범죄수사 역량강화 사업('21 ~ '23)', '라오스 ASEAN 출입국관리 행정역량강화('20 ~ '22)', '몽골 검찰 사법 역량강화('22 ~ '24), 튀니지부패방지수사 역량강화('22 ~ '24) 등의 국제연수과정을 진행하여 99명의 국제연수생을 배출하고, 이들에게 국내 법무행정제도를 바탕으로한 자국의 제도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2022.09.25. 국제검사협회(IAP)와 국제 검사 역량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 및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2022.11.10. UNODC의 장룩 레마휴 정책분석과장의 방문을 통해 UNODC와 개발도상국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공동프로젝트 사업 진행 등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3) 향후 계획

법무연수원은 KOICA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제연수과정에 IAP 검사를 강사로 초청(온라인, 오프라인) 기획하고, 2022.10월 설치된 '국제검사연수센터'(IAP Training Center)를 국제연수과정의 분임토의 장소 및 MOU를 체결한 프랑스, 중국, 일본,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외국 법무연구기관과의 상호 교류 협력 시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카자흐스탄 검찰 법집행아카데미와 교육프로그램 교류협력을 위한 멘토십 제공 및 MOU 체결을 논의 중에 있는 등 풍부한 국제연수 연수프로그램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해외법무·검찰 등 형사사법기관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여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법무·검찰 교육 관련 상호 교류·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사. 교육 몰입도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법무연수원 기획과 주무관 정영인

1) 추진배경

법무연수원은 교육 만족도 제고와 교육생들의 힐링 및 재충전을 위해 매년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며, 전 황철규 연구위원의 국제검사협회(IAP) 회장 취임 이후 추진하고 있는 '국제검사 트레이닝 센터' 설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자 하였다. 또한 「친환경자동차법」의 시행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 설치 의무조항 이행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 추진내용 및 주요성과

202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진천본원 난방 시스템 교체 작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생활관 6개동(537실)에 바닥난방 설치 예정이며, 2021년 1차

공사(생활관 2개동, 131실) 이후 2022년에는 생활관 2개동(220실)에 대해 2차 공사를 진행하였다. 2023년에는 생활동 2개동(186개실)에 대하여 3차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완공 시 기존 천장형 온풍난방 시스템으로 인해 제기되었던 불충분한 난방, 실내 습도 저하 등 교육생 불편 사항 문제가 해소되고, 겨울철 교육생 건강 증진과 교육시설 만족도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자립도 향상, 탄소 배출량 감소 등 정부 에너지정책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태양광발전 설비를 도입하였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였으며, 주차장 등 총 9곳에 설치 완료하였다.

더불어, 「친환경자동차법」상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조항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및 주차구역을 설치함으로써, 교육생의 편리성을 증대하였다.

| 그림 2-26 | 진천본원 교육환경 개선



〈태양광 발전설비〉



〈전기차 충전시설〉

용인분원은 국제검사협회(IAP)와의 국제 교류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해온 '국제검사협회 트레이닝 센터' 설치를 완료하였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개년에 걸쳐 생활관 등 노후화된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1인실 92개, 휴게실(분임토의실) 4개, 체력단련실 1개 등 교육, 휴식, 체력단련을 위한 쾌적한 교육시설을 조성하였다.

또한, 30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고 미관 개선 및 교육생 이용 편의를 위하여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생활관 및 후생관 옥상 방수 공사, 기계실 노후 보일러 교체 등을 실시하였다. 특히, 옥상 방수 공사를 통해 금년 기록적인 폭우 상황에서도 누수 피해 없이 정상적인 시설 사용을 유지하였으며, 앞으로도 안전한 교육 운영을 위한 시설 및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그림 2-27 | 용인분원 교육환경 개선



〈IAP 트레이닝센터 숙소 전경〉



〈1인실 침실〉

3) 향후 계획

진천 본원은 2023년까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추가로 확충하여 법적기준을 충족하고 생활관 6개동(537실)에 바닥난방을 설치 완료할 예정이며, 용인분원은 노후화된 시설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원내 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지속적인 교육환경 개선으로 법무연수원은 교육생들에게 직무역량 향상뿐만 아니라 심리적 치유의 공간을 제공하여 교육생들의 만족도와 교육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는 법무·검찰 공무원을 양성해 나갈 것이다.

제2절 정책홍보 업무

1. 기관장 소통활동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한정진

가. 법무부장관 인터뷰(총 37회)

법무부장관은 법무정책 홍보를 위해 서울신문(2022. 8. 29.)과 취임 100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또한 정부과천청사 출·퇴근 및 국회 출석 시 다수 언론을 상대로 즉석 일문일답 방식의 언론 인터뷰를 수시로 진행하여 주요 법무정책 현안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주요 법무정책 이슈에 대한 법무부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 효율적으로 소통하였다.

| 그림 2-28 | 법무부장관 인터뷰


서울신문

한동훈 "조작과 선동으로 내가 감옥 갈 수 있겠구나 생각"

서울신문 지면인터뷰 (2022. 8. 29.)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공개 변론 인터뷰(2022. 9. 27.)

나. 법무부장관 언론 브리핑(총 14회)

기관장의 언론 브리핑을 통해 주요 현안 및 법무정책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였다. 법무부장관이 △대우조선해양 파업 관련 합동브리핑(2022. 7. 18. / 7. 22.) △정부업무보고 사후브리핑(2022. 7. 26.) △수사개시규정 개정안 발표(2022. 8. 11.) △광복절 사면 브리핑(2022. 8. 12.)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사건 판정 결과 브리핑(2022. 8. 31.)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브리핑(2022. 9. 15.)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브리핑(2022. 10. 19.) △소년범죄 종합대책 브리핑(2022.

10. 26.) △화물연대 파업 철회 촉구 합동브리핑(2022. 11. 24. / 11. 29. / 12. 4. / 12. 8.) △신년 특별사면 브리핑(2022. 12. 27.) 등으로 이슈에 적극 대처하고, 법무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효율적으로 홍보하였다.

| 그림 2-29 | 법무부장관 언론브리핑



수사개시규정 개정안 브리핑(2022. 8. 11.)



론스타 사건 판정 결과 브리핑(2022. 8. 31.)

2. 언론 홍보활동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한정진

가. 실국본부장 언론 브리핑(총 5회)

법무부 주요정책 및 현안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장 이외 법무부 간부 브리핑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각 실·국·본부·과장이 2022년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정책들에 대하여 법조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총 5회의 브리핑을 개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1인 가구 관련 법제도 개선 성과 및 사공일가 TF 마무리 회의 결과 발표(법무심의관, 2022. 1. 27.) △민법상 인격권 신설(법무심의관, 2022. 4. 5.)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법무실장, 2022. 5. 3.) △정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기획조정실장, 2022. 7. 25.) △미성년자 빚 대물림 관련 민법 일부개정안(법무심의관, 2022. 8. 9.) △주택임대차 관련 브리핑(법무심의관, 2022. 11. 21.) △민법 개정 관련(법무심의관, 2022. 12. 26.) 등이 있다.

나. 보도자료 및 설명자료 배포(총 366건)

법무정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실질적인 홍보역량 강화를 위해 언론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 법무정책에 대한 언론의 취재 요청 1,044건에 응대하였고, 보도자료 328건을 배포하여 법무정책 및 장·차관 참여 행사, 실·국·본부의 다양한 행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언론의 왜곡 보도·비판 보도에 대해 38건의 보도 설명자료를 배포하여 법무부 입장을 신속·상세히 전달하였다.

다. 오보 대응(총 98건)

법무부는 대변인실 및 각 실·국·본부별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오보 및 과장·왜곡 보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사실관계 오류에 대해서는 언론사와 협의하여 즉시 수정 조치하는 등 잘못된 보도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3. 홍보 기획

대변인실 홍보기획팀장 최상혁

가. 대·내외 홍보협의체 운영 및 대응

법무부는 정책 홍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매주 대변인 주재의 '주간 홍보 기획회의'(이하 '회의')를 꾸준하게 실시하였다. 회의는 대변인 주재로 홍보기획 관련 사무관, 주무관 등이 참석하여 법무정책 홍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 이루어진 논의를 통해 △검수완박 시행령 개정 △스토킹처벌법 △만나이 통일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 △비자제도 개선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과제에 대한 전략적인 홍보가 이루어졌다.

또한 대외 홍보협의체인 국정홍보점검회의(정책홍보전략회의), 대변인협의회, 온라인대변인협의회, 외신대변인협의회 등을 통해 국정과제 및 법무부 주요 추진 정책에 대한 타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입체적 홍보를 진행하였다.

| 표 2-12 | 대내·외 홍보협의체

구분	홍보협의체	참석 대상	주재
외부	국정홍보점검회의 (정책홍보전략회의)	각 부처 차관	국무조정실장
	대변인협의회	각 부처 대변인	문체부 2차관
	온라인대변인협의회	각 부처 온라인대변인, BH디지털소통센터장(행정관)	문체부 차관보
	외신대변인협의회	각 부처 외신대변인, BH해외언론비서관(행정관)	해외문화홍보원장
내부	홍보기획회의	홍보기획 관련 사무관, 주무관 등	대변인

나. 정책소통평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국무조정실 주관 특정평가 중 「정책소통」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2022년도에는 국정기조에 맞추어 정책소통부문 전체의 평가비중이 확대되었고(15점 → 20점) 세부적으로는 새 정부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에 대한 정책소통 성과확산 중심의 평가, 범정부 소통협력과 외신소통 강화, 각 부처 소통활동과 국민 인식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한 국민체감도 평가가 강화되었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평가방향, 부문별 평가방법 등을 검토하여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였고, 주기적으로 대국민 소통활동에 대한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등 소통노력을 강화한 결과 지난 3년 연속 C등급(미흡)에서 2022년 B등급(보통)으로 상향되었다.

지표별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 표 2-13 | 정책소통평가 지표별 주요성과(5.10. ~ 12.14.)

평가항목	평가지표	주요성과
정책 소통 활동	부처협업 활동	• 대변인협의회, 온라인대변인 협의회, 외신대변인 협의회 참석을 통한 부처협업 강화 • 타부처 협업이 필요한 정책이나 우수 홍보사례를 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함으로써 법무정책에 대한 전 부처 공감대 형성
	보유자원 활용	• 타 부처 공유협조 영상 송출을 위한 보유매체 2건 증가(34건 → 36건) • 「KTV 나누리포털」에 우수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공유 • 국민기자단이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인천공항 출입국관리 시스템을 직접 체험하고 랜선투어 형식으로 취재함으로써 법무부의 국경관리가 철저하고, 빠르고,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효과적으로 홍보
정책 소통 성과	주요정책 소통성과	•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 옥외광고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컨설팅 의견에 따라 실제 범죄피해가 많이 발생한 장소를 선정하고 , 전달 메시지를 명확화 하여 홍보 효과 극대화 • '스토킹처벌법 개정 추진' 에 대한 지속적이고 다양한 방법의 홍보를 통하여 정책에 대한 관심 및 신뢰도 제고 • 부처 내 협업 추진체계 강화를 통한 사전협의 활성화 필요

평가항목	평가지표	주요성과
	현안대응 성과	• 오보, 왜곡보도, 가짜뉴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 – 온·오프라인 오보대응 80건 – 컨텐츠 제작 대응 7건 – 신속대응 약 91%
	온라인 소통성과	• 홍보매체의 다양화를 위해 '22년 인스타그램 페이지 신설(팔로워 2만) • 장관, 인플루언서를 적극 활용한 홍보영상 제작으로 법무부 유튜브 구독자수 약 345% 증가 – 장관이 직접 '수사개시 규정 개정안' 시행령에 대하여 국민들께 설명 – 국민에게 친숙한 VJ특공대 박기량 성우를 활용하여 법무부 주요정책 홍보 • 타 부처와의 협업을 통한 캠페인 추진 필요
	기관장 소통성과	• 등청길 인터뷰, 브리핑, 현장방문 등 장·차관 소통활동 증가(전년비 36% 증가)
	외신 소통성과	• 영문보도자료 23건 배포, 외신 취재지원 37건, 외신기자 간담회 4건 등 외신과의 소통 노력
체감도	소통만족도	•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국민소통 노력 및 성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온라인 체감도	• 국정현안 및 부처 정책에 대한 주요 키워드를 바탕으로 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정책 홍보에 활용
가감점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	• 보도자료, 보고서, 누리집 화면에 공공언어를 쉽고 바르게 사용

다. 외신 소통활동

2022년에는 국내 상주 외신과의 소통활동을 강화하여 출입국·외국인정책, 론스타 판결, 뉴질랜드 범죄인 인도 사건 등 외신에서 관심 있는 법무부 주요정책을 영문 보도자료로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외신기자 및 법무부 영문 홈페이지에 총 23회 배포하였고, 외신 취재요청에 대한 취재지원 37건, 외신대변인 간담회 4건 등 외신기자와 소통활동을 적극 전개하였다.

또한, 해외문화홍보원에서 주최하는 외신대변인협의회, 외신대변인 연수에 꾸준히 참석하여 타 부처 외신대변인과 협업을 강화하고 외신기자와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었다.

라. 홍보 콘텐츠 광고 강화

법무부는 디지털 콘텐츠 중 중요도에 따라 SNS 광고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더 많은 국민에게 법무부 정책을 홍보하였다. △법무부 새 정부 업무보고 주요정책 영상(2022. 9월), △보이스피싱 근절 소재 웹툰(2022. 10월), △소년범죄 종합대책 카드뉴스(2022. 11월) 등 국민에게 필요한 객관적 정보를 활발히 전파하였다.

또한 2022년에는 온라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소외계층을 고려하여 옥외 광고 또한 2021년 대비 확대 추진하였다. 2022년 10월~12월 약 두 달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을 담은 4개의 영상을 지하철 2호선, 9호선 행선안내기 및 KTX(서울역), SRT(수서역) 전광판으로 광고해 '범죄피해 구호전화(1577-1295)'와 같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폭넓게 확산하였다.

| 그림 2-30 | 옥외 광고



지하철 9호선 행선안내기(2022. 10월)



KTX 전광판(2022. 10월)

4. 디지털 소통활동

대변인실 홍보기획팀장 최상혁

가. 디지털 콘텐츠 질적 향상

2022년은 질적인 면에서 법무부 디지털 콘텐츠가 크게 도약하였으며, 그 결과 법무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한층 더 높아졌다. 특히 기관장이 직접 법무부 정책을 국민에게 소개하는 영상에 대한 국민 호응도가 높았다. 그 결과 2022년 법무부 유튜브 영상 개당 평균 조회수는 78,350회로 2021년 대비 380%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법무부가 꾸준히 추진한 주요정책을 "달라지는 법무정책" 웹툰 시리즈물로 제작, 쉽고 재미있게 내용을 전달해 국민에게 믿음직한 법무부의 이미지를 강화하였다.

그 외에도 보도자료 배포 시 당일 또는 익일 안에 긴 문장을 신속히 호소력 있는 내용으로 재구성,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법무부 메시지의 재확산에 기여하였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2022. 8. 12.)' 보도자료 기반 카드뉴스가 대표적 사례이다. 디지털

콘텐츠 품질의 꾸준한 제고에 힘입어 SNS 사용자가 게시물을 얼마나 열람하였는지 나타내는 지표인 도달률의 경우 페이스북은 전년 대비 190%, 트위터는 전년 대비 275%로 증가하였다.

| 그림 2-31 | 보도자료 기반 우수 카드뉴스(법무부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 그림 2-32 | 웹툰 "달라지는 법무정책" (법무부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나. 영상 콘텐츠의 양적·질적 성장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과 더불어 법무부는 완벽한 정책 중심의 영상 콘텐츠로 양적·질적 성장을 도모하게 되었다.

「정의와 상식의 법치」라는 법무부의 비전을 필두로 민생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였는데, 특히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콘텐츠를 강화하였고 '국민의 알권리 향상'을 위한 실시간 유튜브 생중계도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 결과, 법무부 유튜브(법tv)는 높은 수준의 유튜브 채널로 정착하였고 이는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와 SNS 채널의 팬수의 증가로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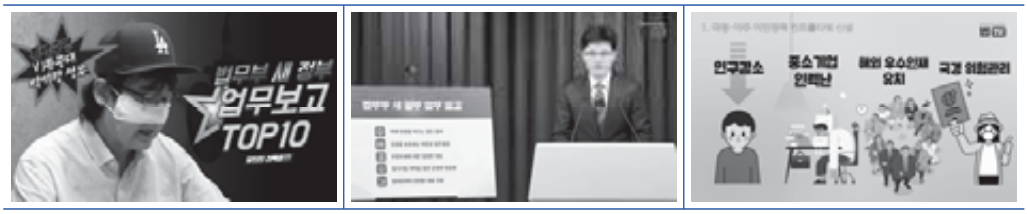
특히, 소위 '검수완박'이라 불리는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위헌성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업무보고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입법예고 등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정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담은 영상 콘텐츠는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법무부에 대한 국민의 호감과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2) 법무부 새정부 업무보고 영상콘텐츠 제작

이해하기 쉬운 그래픽 작업을 바탕으로 한 영상에 VJ특공대의 대표 성우인 박기량 성우의 목소리를 입혀 '법무부 새정부 업무보고' 내용을 설명하는 영상을 제작 하였다. 친근한 성우가 가볍고 경쾌하게 설명해 주는 '법무부 새정부 업무보고'는 2022년 법무부의 주요정책 8개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친근함을 무기로 조회수 96,883회(2022. 9. 18. ~ 2022. 12. 31.)를 기록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단순히 업무보고의 내용을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한 유튜브 Poll을 실시하여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는 콘텐츠를 만들기도 하였다. 유튜브 Poll에는 7,200여명의 국민이 참여하여 새정부의 법무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응원을 표시하였다.

| 그림 2-33 | 법무부 새 정부 업무보고 당신의 선택은? (법TV 유튜브)



3)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의 위헌성 설명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공개 변론에 심판청구인 자격으로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공개변론 전 언론 인터뷰 영상을 강조·재편집한 인터뷰 영상을 제작 업로드 하였다.

영상 내 핵심 단어를 자막으로 강조하여 관련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고, 핵심 내용만을 짧고 굵게 전달하기 위해 재생시간이 1분을 넘지 않고 모바일 접근성이 높은 쇼츠 콘텐츠로 제작하여 조회수 136,701회(2022. 9. 27. ~ 2022. 12. 31.)를 기록하면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내었다.

| 그림 2-34 | 법무부장관이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 앞서 남긴 말은?(법TV 유튜브)



4) 정책 브리핑의 실시간 생중계

국민의 알권리와 빠른 정책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법무부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생중계를 확대 하였다. '소아성기호증 치료감호 확대추진 관련 브리핑',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 '소년범죄 종합대책 관련 브리핑'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브리핑 3회,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판정 선고' 관련, '신년 특별사면' 등 정책 이슈 관련 브리핑 3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실시간 생중계 등 법무부 주요 행사 1회로 새정부 출범 이후 총 7회의 자체 실시간 생중계를 진행하였다.

| 그림 2-35 | 법TV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



다. 유튜브 법TV 채널 활성화

법무부 공식 유튜브 채널 '법TV'는 2022년 새롭게 유입되는 구독자들의 성향을 분석하고, 법무부의 정책 방향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유튜브만의 홍보전략을 수립하였다.

텍스트 중심의 썸네일 보다는 호기심을 유발하는 대표적 타이틀과 함께 유튜브 트렌드에 맞는 썸네일을 제작하였고, 플랫폼 특성을 활용하여 썸네일과 연결성이 높은 형태의 영상 콘텐츠를 개발하여 시청자의 시청 편의를 높였다. 또한, 유튜브 설문조사와 구독자 알림, 태그 작성 등 시청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다양한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채널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특히 올해는 구독자 증가세가 뚜렷하였다. 전년 59,829명이었던 누적 구독자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 84,964명으로 전년 대비 연간 구독자 25,135명의 상승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2021년 증가치인 7,015명 보다 358% 높은 증가 수치였다. 조회수 역시 2021년 2,616,588회보다 191% 증가한 5,008,055회를 기록하였다.

라. 디지털 매체(SNS)의 효율적인 운영

법무부 SNS 채널은 상대적으로 딱딱하고 어려운 내용을 전달하고 있기에 정보 전달력이 높은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고, SNS에 게시할 때도 쉽고 정확한 언어로 설명하는데 주력 하였다. 또한 신속한 운영체계를 구축, 시의성 있는 콘텐츠 제작의 경우 시차 없는 콘텐츠 게시로 주요정책의 홍보 효과를 제고 하였다.

그 결과 법무부 공식 SNS 채널인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모두 구독자 수가 작년(2021년)과 비교하여 가시적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유튜브 구독자의 경우 작년 대비 358% 증가하였고, 페이스북과 트위터도 110%로 증가하여 꾸준한 상승 추세를 보였다.

마. 디지털 소통 플랫폼(SNS) 확장

법무부는 국민 접점 극대화를 위해 페이스북 개통(2012. 10. 24.) 이후 10년 만에 신규 온라인 플랫폼인 '법무부 인스타그램'을 2022년 4월 22일 정식으로 개설·개통하였다. 인스타그램은 10~30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 플랫폼으로, 법무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더 많은 국민께 확산해 기관과 정책 호감도를 제고 하고자 하였다.

인스타그램 개통 직후 국민 참여 이벤트를 추진하였으며 특히 법무부가 꾸준히 추진하는 정책을 카드뉴스 시리즈물로 제작하여 국민 호응을 이끌어냈다. 국민에게 익숙한 카드뉴스(웹툰)·숏영상을 활발히 제작, 140개(2022. 12. 31. 기준)의 콘텐츠를 게시하였으며, 그 결과 개통 후 운영 기간이 1년 미만임에도 팔로워 1.9만 명을 달성하였다.

5. 법무부 국민기자단 운영

대변인실 사무관 이상우

가. 국민기자단 운영

어려운 법무정책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고 재미있게 전달함과 동시에 국민의 정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2008년 8월부터 현재까지 '법무부 국민기자단'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제14기 법무부 국민기자단은 중등부(3), 고등부(5), 대학부(22), 성인부(10) 총 40명을 선발하여 총 12개월 간 활동하였다.

제14기 법무부 국민기자단은 2022년 한 해 총 626건의 기획기사, 현장 취재기사, 카드뉴스, 동영상을 제작·업로드 하였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잠시 중단되었던 정책현장 팸투어 행사를 다시 시작하여,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팸투어(2022. 7. 29.)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 팸투어(2022. 11. 23.)를 진행하면서 국민기자단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나.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팸투어

총 40명의 국민기자 중 14명의 국민기자가 참가하여 8편의 텍스트기사, 2편의 카드뉴스, 4편의 영상을 제작·배포하였다. 국민기자단은 자동심사대, 입국심사 및 재심 업무, 감식 등 출입국 관련 전반적인 정책 설명을 듣고 각 보안구역을 다니며 현장을 경험하였다.

| 그림 2-36 |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팸투어 모습



이후 체험한 출입국 관련 업무를 기사화 하여 본인 블로그 및 법무부 대표블로그, 법무부 유튜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SNS 등을 통해 확산 하였고, '자동출입국심사', '출입국투어' 검색어에 따른 기사가 다수 상위 노출 되었고 관련 영상 역시 '유익한 정보를 얻었다'는 긍정적 댓글을 얻으며 높은 조회수를 기록 하였다.

이번 팸투어는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대한민국 최고 보안 시설인 인천공항 출입국관리 시스템을 직접 체험하고 이 보안구역을 국민기자단을 통해 랜선투어 하는 형식으로 취재 하였다. 법무부의 국경 관리가 첨단 시스템을 통해 철저하고 빠르고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홍보함과 동시에 국민기자단이 자긍심을 가지고 법무정책 홍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사기를 진작케 하는 계기가 되었다.

| 그림 2-37 | 인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 팸투어 관련 영상 조회수 및 댓글





다.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 팸투어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스토킹 범죄자 전자발찌 부착 등 최근 그 중요성이 더 커진 전자감독제도를 이해하기 위해 총 40명의 법무부 국민기자 중 9명의 국민기자가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를 방문 취재하였다.

전자발찌의 원리 및 전자감독 제도의 설명을 듣고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 내 관제실 모습을 참관 하였으며 고위험 성범죄자의 관리방법 등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다양한 질의가 오고 갔다. 참가한 국민기자는 7편의 텍스트기사, 2편의 카드뉴스를 생산하였고 기사는 기자단 개인블로그, 법무부 공식블로그, 정책브리핑 누리집 등에 게재·배포 되었다.

| 그림 2-38 |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 팸투어 모습



제3절 법무업무

1.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한정승인 제도 정비

법무심의관실 검사 홍현준, 공익법무관 이승기

가. 추진배경

현행법상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있다.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위 3가지 방법 중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상속인에게 유리하다. 그런데 개정 전 민법은 상속인이 미성년자일 때, 법정대리인이 제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했다. 이로 인해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아 지급되는 기초생활 급여 중 대부분이 부채 상환에 사용되거나, 개인 파산에 이르러 성년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이에 빚 대물림의 고리를 끊고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경제생활을 시작하는 데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한정승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나. 주요 개정 내용

기존「민법」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하였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때 한정승인 등을 하지 못하면 미성년자에게 빚이 대물림되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개정「민법」제1019조 제4항은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한정승인 제도를 정비했다.

한편, 법의 적용 시점에 관해서는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했다. 다만,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더라도 ① 법 시행 당시 미성년자이거나, ② 법 시행 당시 성년이 되었더라도 아직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모두 개정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소급효의 범위를 넓혀 더 많은 국민들이 개정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 평가 및 발전방향

법무부는 미성년 상속인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2022. 8. 10.「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했다. 그 결과 국회를 통과한 개정「민법」은 이를 토대로 마련된 수정안으로서, 미성년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것이다.

2022. 12. 13.부터 시행된 개정「민법」을 통해 미성년자와 청년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빚 대물림으로 인한 부담을 덜고 정상적이고 공정하게 경제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

법무심의관실 서기관 임성택, 공익법무관 이재상

가. 추진배경

최근 이른바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원룸이나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등에 사는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약자들의 고통이 크다. 이러한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 선순위 보증금 정보와 같이 추후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 임차권등기를 마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어야 하는데, 임대인 사망 후 상속관계가 정리되지 않거나, 임대인의 주소불명 또는 송달 회피 등의 경우 임차권등기가 신속히 이루어지기 어려워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주택임대차보호법」 및「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임차인의 정보열람권한 강화, 임차권등기 신속화,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범위 및 그들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확대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나. 주요 개정 내용

1) 선순위 보증금 등 정보확인 동의 요구권 신설

현행법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임대차 보증금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임대인이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이 임대인에게 정보열람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고, 임대인은 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요구에 따르게 했다.

2) 납세증명서 제시 요구권 신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전에 세금을 체납해 발생한 국가의 조세채권은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우선하므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실현 여하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현행법상 임대인이 자신의 세금체납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세금체납 사실을 모르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다. 이에 개정안은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의 납세증명서 제시 요구권을 신설하고, 임대인은 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요구에 따르게 했다.

3) 임차권등기 신속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에, 가압류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이라도 집행할 수 있게 하는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이 준용되도록 개정해 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기만 하면 그 명령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이라도 즉시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지게 했다.

다. 평가 및 발전방향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임차인은 계약체결 이전 단계에서 선순위 보증금액, 임대인의 체납여부 등을 확인함으로써 보증금 회수에서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인식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후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이라도 즉시 임차권등기를 촉탁할 수 있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 보장 및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공문서 제출 간이화를 위한 민사법 정비

법무심의관실 서기관 임성택, 전문위원 윤세교

가. 추진배경

현재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국민이 소송에 필요한 각종 공문서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이를 발행하는 행정·공공기관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하여 필요 공문서를 종이로 발급받고, 당사자가 이를 직접 전자문서화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법원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국민이 따로 행정·공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소송시스템에서 바로 공문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하는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2024년 오픈 예정)을 수행 중에 있고, 법무부는 이를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여 '22. 12. 국회에 제출하였다.

나. 주요 개정 내용

1) 전자소송에서의 공문서 제출의 간편화

전자소송 이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행정·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공문서의 등재를 신청하면, 법원행정처장은 공문서를 기관으로부터 전자문서로 제공 받아 시스템에 등재하고, 이 등재로써 이용자가 법원에 해당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전자문서의 접수 시기의 명확화

전자소송 이용자의 신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공된 공문서를 법원행정처장이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한 경우, 이용자가 등재를 신청 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다. 평가 및 발전방향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민사소송법」, 「가사소송법」, 「행정소송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절차에 적용된다(「민사소송 이용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이에 따라,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국민들은 공문서 준비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행정·공공기관은 공문서 발급에 대한 업무부담의 감소로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첨단 기술의 활용을 통한 원스톱(ONE-STOP) 행정서비스로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 나이 기준 통일을 위한 민법 개정

법무심의관실 서기관 윤지원

가. 나이 계산법 통일을 통한 사회적 혼란과 분쟁 예방

1) 추진배경 및 경과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연령의 계산과 표시 방법이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등으로 통일되지 않아 일상생활이나 계약 체결 시 혼란과 분쟁이 발생해왔다. 예컨대 단체협약에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으로 기재된 '56세'의 해석을 두고 법적 분쟁이 발생해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서야 해당 단체협약상의 나이 기준이 결정된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불편 속에서 국민들의 법 개정 요구도 높아져 국민의견조사('22. 9.)에서 응답자의 81.6%가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민법」 개정을 추진해 '22. 5. 의원입법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22. 12.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대안을 마련하였다. 이어서 같은 달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3. 6. 28. 시행될 예정이다.

2) 주요 개정 내용

「민법」 제158조를 개정하여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나이의 계산과 표시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3) 평가

개정 민법이 시행되면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나 특약이 없는 경우 법령·계약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되고 국제적 나이 기준에도 부합하게 된다. 이에 따라 나이 계산법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적·공적 영역에서의 혼란과 분쟁이 감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

5. 인격권 도입을 위한 민사법 정비

법무심의관실 서기관 윤지원, 공익법무관 홍인기

가. 추진배경

최근 디지털성범죄, 학교폭력, 온라인 폭력, 불법촬영, 개인정보 유출 등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로 인한 범죄나 법적 분쟁이 대폭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는 재산 침해 외에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 역시 법적으로 위법한 행위이며 인격적 이익도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다.

이에 「민법」 개정을 추진하여 인격권 조항을 신설하고, 그 구제수단인 침해제거·예방청구권을 도입하여 인격적 가치를 갈수록 중시하는 우리사회의 법의식을 법제도에 반영하고, 시민들의 인격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다.

나. 주요 개정 내용

그동안 인격권은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에서 그 존재가 인정되어 왔으나, 그 적용 범위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격권을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음성, 개인정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라고 정의함으로써 어떤 인격적 이익이 인격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지를 예시하였다.

인격권은 그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의 금전배상이나 명예회복 처분 등과 같은 구제수단만으로는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나 손해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는 사전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의 제거·예방청구권도 인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법무부는 「민법」 제3조의2 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인격권 침해의 중지를 청구하거나 필요시 사전적으로 그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평가 및 발전방향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판례로만 인정되던 인격권이 「민법」에 명문화됨으로써,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도 인격권이 법의 보호를 받는 권리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디지털성범죄, 학교폭력, 온라인 폭력, 불법촬영, 개인정보 유출 등 기존보다 넓고 다양한 분야에서 인격권 침해로 인한 법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침해제거·예방청구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격권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효적인 구제수단이 확보될 것이다.

6. 인격표지영리권 도입을 위한 민사법 정비

법무심의관실 서기관 윤지원, 공익법무관 홍인기

가. 추진배경

SNS와 비디오 플랫폼의 발전으로 사람들 사이의 직접소통이 활성화됨에 따라, 이제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고 또 그렇게 유명해진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인격표지 영리적 이용의 증가로 인해 인격표지영리권을 대상으로 하는 분쟁 역시 크게 늘었다. 특히 인격표지영리권자가 사망한 경우 인격표지영리권이 상속되는지 여부나 상속된 경우 권리가 언제까지 존속하는지가 불분명해 분쟁이 유발되는 등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민법」에 모든 개인들의 보편적 권리로서의 인격표지영리권을 명문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인격표지영리권의 상속 여부, 상속 후 존속기간 및 침해 시 구제수단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분쟁을 예방하고자 한다.

나. 주요 개정 내용

1) 인격표지영리권 명칭

'인격표지영리권'은 그동안 우리나라 판례와 학설에서 미국에서 사용하던 용어인 '퍼블리시티권'

(the Right of Publicity)으로 지칭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인격표지영리권'이라는 우리말로 대체하였다.

2) 인격표지의 영리적 이용

인격표지영리권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인격표지의 영리적 이용을 허락할 수 있도록 하여 인격표지의 영리적 활용 가능성을 확대하였다. 다만, 인격표지가 개인의 신념이나 가치관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인격표지영리권자 본인의 신념에 반하는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용허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인격표지영리권의 제한

스포츠 경기 생중계 중 일반 관중의 얼굴 등이 화면에 비추어지거나, 언론에 시민의 인터뷰가 사용되는 등, 정당한 활동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타인의 인격표지를 활용하는 경우, 인격표지영리권의 제한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타인의 인격표지 이용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인격표지영리권자의 허락 없이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인격표지영리권의 상속성 및 존속기간

법원이 인격표지영리권의 존재를 긍정한 경우에도, 그 권리의 상속 여부 및 상속 시 존속기간이 불확실하여 문제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인격표지영리권자가 사망한 경우 인격표지영리권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재산권처럼 상속됨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30년이 한 세대에 해당하는 기간으로서 어떤 사람의 명성이나 유명세가 희박해지고 그 인격표지에 대한 영리적 권리가 소멸하는데 충분한 시간임을 감안하여, 인격표지영리권의 상속 후 존속기간을 30년으로 설정하였다.

5) 인격표지영리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마련

인격표지영리권은 인격권에서 유래하는 권리이므로, 그 성질상 권리가 침해된 경우 사후적 손해배상청구권만으로는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본 개정안은 지난 4월 입법예고를 마친 「민법」 개정안 제3조의2 제2항, 제3항에서 규정하는 '인격권 침해에 대한 침해제거·예방청구권'을 인격표지영리권에 준용하도록 하였다.

다. 평가 및 발전방향

인격표지영리권을 규정하는 내용의 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유명인이 될 수 있는 시대적 변화를 법 제도에 반영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인격표지 자체를 영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며, 인격표지영리권자 사망 시 법률관계에 대한 혼란과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7. 리걸테크 제도 연구

법무과 서기관 설기석·법무관 이계민

가. 추진배경

최근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과 법률서비스의 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리걸테크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리걸테크 산업의 발전은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법률시장 규모를 확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한편으론 전문성 및 공공성을 바탕으로 하는 변호사제도의 취지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리걸테크 산업이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제고하면서도 변호사제도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각계 전문가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나. 추진내용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면 기존 산업과의 제도적·법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리걸테크 산업과 관련하여 변호사단체와 리걸테크 업체 간 갈등이 심화되어 사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2021년 9월부터 학계·실무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리걸테크 TF를 운영하였으며, 해외 입법례, 규제 동향 등을 종합하여, 리걸테크 산업이 변호사제도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정책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변호사검색플랫폼, AI·빅데이터 활용 법률서비스 등 리걸테크 산업 분야의 법적 규제를 검토하여 리걸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다. 기대효과

리걸테크 산업이 변호사제도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8. 국가기관 법률사무종사(실무수습) 변호사 통합 선발

법무과 행정사무관 유희원

가. 추진배경

현재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6개월 이상 법률사무소·법무법인·국가기관·지자체 등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대한변협에서 주최하는 연수를 마쳐야만 개업·사건 수임 등 변호사로서의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변호사법 제21조의2, 제31조의2).

그런데 매년 약 300명~700명의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법률사무종사기관을 구하지 못하여 대한변협에서 연수를 받고 있었다.

한편, 법률구조·국가소송·법률사무에 종사하는 공익법무관 인원이 대폭 감소하여 공익법무관 업무공백에 대한 정부부처의 우려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국가기관에서 실무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익법무관 감소에 따른 업무공백을 대체하기 위해 '국가기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통합 선발'을 추진하였다.

나. 추진내용

법무부는 2020년 1월경 국가기관 대상 2021년도 법률사무종사 변호사(이하 '실무수습 변호사') 수요조사를 진행하였고, 2020년 6월경 기획재정부와 2021년도 실무수습 변호사 선발 예산 관련 협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법무부는 2021년 5월경 13개 국가기관 실무수습 변호사 선발 절차를 진행하였고(총 72명, 법무부 39명), 2022년에는 국가기관의 수 및 선발 인원을 확대하여 2022년 5월경 18개 국가기관 실무수습 변호사 선발 절차를 진행하였다(총 130명, 법무부 43명).

나아가 법무부는 실무수습 변호사 역량 강화를 위해 실무수습 변호사의 재판 참관, 세미나 참석 등 각종 연수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다. 기대효과

국가기관에서 실무수습 변호사를 적극 선발하여 실무수습 변호사에게 실무역량 함양의 기회를 부여하고, 공익법무관 인원 감소로 인한 업무 공백을 효과적으로 대체하여, 법치행정의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9. 법의 문턱을 낮추는 마을변호사 제도

법무과 행정사무관 유희원

가. 개요

법무부는 전국의 변호사가 2만여 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개업 변호사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85% 이상이 서울 및 6개 광역시에 각 편중된 문제점을 인식하고, 무변촌(無辯村) 등 법률서비스 소외지역의 법률안전망을 제고할 목적으로 2013년 6월 대한변호사협회·행정자치부(現 행정안전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마을변호사 제도를 출범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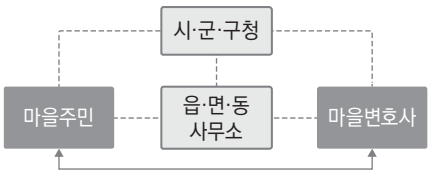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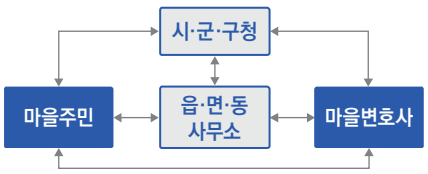
다만, 제도 출범 이후 ① 마을변호사가 위촉된 사실을 모르는 주민이 많고, ② 주민이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더라도 공무원이 제도를 모르거나 담당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법무부는 2020년 7월 제도 도입 후 최초로 마을변호사가 위촉된 모든 지역에 마을법률담당공무원을 배치함으로써 마을주민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되는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나. 제도의 의의

1)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 제고

마을주민이 시·군·구청, 읍·면·동 사무소에 근무하는 마을법률담당공무원을 통해 마을변호사 정보 및 현장상담 가능 여부 등을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게 되어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강화되었다.

| 표 2-14 | 마을변호사 제도 도입 성과

구 분	마을법률담당공무원 지정 전	마을법률담당공무원 지정 후
도식		
마을주민	• 마을변호사 정보 알기 어려움 • 주로 전화·이메일 등 유선상담만 가능	• 시·군·구청, 읍·면·동 사무소에서 마을변호사 정보 편리하게 안내받음 • 현장상담 기회 확대
마을변호사	• 제도를 잘 모르는 마을 주민들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음 • 마을에 찾아가 현장상담 하고 싶어도 마을의 협조가 부족	• 지역 단위의 적극적 제도 안내·홍보로 변호사 재능기부 기회 확대 • 상담 장소 마련되어 마을변호사 희망 시 정기적인 현장상담 가능

2) 변호사의 공익활동 장려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 공익활동에 종사할 의무가 있으나 실제 변호사가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변호사의 순수한 재능기부 활동으로 운영되므로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창구가 되었다.

3) 민·관의 모범적 협력 모델

행정안전부·대한변호사협회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국내 최대 규모의 변호사 재능기부 활동으로 정착했고, 그 결과 범정부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우수등급' 평가를 받고(2019년),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범정부 협업과제'로 선정(2020년)되는 등 민·관의 모범 협력모델 사례로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 성과를 이루었다.

4) 맞춤형 법률서비스 제공

2019년 4월 강원도 산불피해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였고, 2019년 8월에는 교육부와 협업하여 전국 14개의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한 마을변호사를 위촉하였으며, 2020년 4월에는 코로나19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는 등 틈새 없는 법률복지를 실현하였다.

나아가 2022년 8월에는 호우피해 주민을 위한 마을변호사를, 11월에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 법률지원단을, 12월에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위한 법률지원단을 각 구성하여 국가재난, 사회범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한 법률지원을 신속히 제공하였다.

다. 마을변호사 배정·상담 현황

마을변호사 제도는 2013년 6월 전국 250개 읍·면에서 제1기 마을변호사 415명을 위촉하며 출범하였다. 이후 마을변호사 인원 수 및 배정 지역을 확대하고 마을법률담당공무원 제도를 도입한 결과, 2022년 12월 기준 전국 1,414개 읍·면·동에서 제6기 마을변호사 1,228명이 활발히 활동 중이다.

| 표 2-15 | 마을변호사 배정 현황

구 분	제1기 ('13. 6. ~ '14. 6.)	제2기 ('14. 6. ~ '16. 6.)	제3기 ('16. 6. ~ '18. 6.)	제4기 ('18. 6. ~ '20. 6.)	제5기 ('20. 7. ~ '22.7.)	제6기 ('22.8. ~ '24.8.)
배정 지역수	250개 읍·면	1,412개 읍·면	1,413개 읍·면	1,442개 읍·면·동	1,491개 읍·면·동	1,414개 읍·면·동
마을 변호사수	415명	1,455명	1,519명	1,444명	1,371명	1,228명

| 표 2-16 | 마을변호사 상담실적 현황

연 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상담 건수	232	311	811	2,060	1,125	1,323	1,607	2,120	2,650	2,290

제도 출범 이후 현재까지 집계된 누적 상담건수는 15,000여 건에 달하고, 매년 상담실적을 제출하는 변호사의 수가 전체 마을변호사 수의 약 20%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실제 마을변호사와 마을주민 간 진행되는 상담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라. 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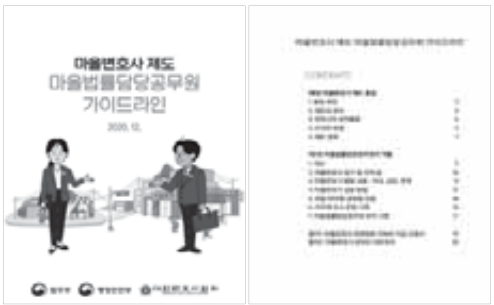
1) 마을변호사·마을법률담당공무원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

제6기 마을변호사의 활동을 돕고, 읍·면·동 간 서비스 편차를 줄이기 위해 마을변호사를 위한 '마을변호사 활동 가이드라인'과 마을법률담당공무원을 위한 '마을변호사 담당공무원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행정안전부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관계자들에게 배포하였다.

| 그림 2-39 | 마을변호사·마을법률담당공무원 가이드라인



마을변호사 가이드라인



마을법률담당공무원 가이드라인

2) 마을변호사 제도 홍보 다각화

법무부는 마을변호사 캐릭터를 활용한 포스터, 달력, 우수상담사례집, 활동물품 등 전통적인 홍보수단에도 충실하면서 동시에 영상을 비롯한 뉴미디어 중심의 홍보컨텐츠 제작에도 힘썼다.

특히 2022년 6월에는 마을변호사 제도를 홍보할 '마을변호사 서포터즈' 1기를 위촉·운영하여, 온·오프라인(마을변호사 SNS, 무변촌 행정복지센터 및 대학교 캠퍼스 등)을 통해 마을변호사 제도를 다각적으로 홍보하였다.

3) 마을변호사 기념식 개최

법무부는 매년 12월 마을변호사 기념식 및 제도 개선 세미나를 개최하여, 제도 발전에 기여한 마을변호사·공무원·지자체를 표창하고, 제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2022년도 제9주년 기념식에서는 마을변호사 제도 시행 9주년을 기념하고, 마을변호사 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한 모범마을변호사,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하였다.

| 그림 2-40 | 마을변호사 9주년 기념식





마을변호사 9주년 기념식

4) 마을변호사 화상상담창구 시범사업 시행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마을변호사들의 현장상담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국민의 제도 이용 보장을 위해 경기도 광주시와 적극 협력하여 마을변호사 화상상담창구 시범사업을 시행하였다. 경기도 광주시 민원실에 마을변호사들과 화상으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태블릿과 헤드폰 등 기기를 설치하였고,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ZOOM 프로그램을 이용한 화상상담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022년 5월에는 경기도 광주시를 직접 방문하여 화상상담창구 시범사업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사업 진행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마을변호사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자체와 소통하였다.

| 그림 2-41 | 마을변호사 홍보 컨텐츠



홍보포스터



마을변호사 상담사례집

10. 차세대 전자공증시스템 도입 등

법무과 행정사무관 김홍정

가. 추진배경

법무부는 2010년부터 전자문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는 전자공증제도를 시행하였으나, 전자공증을 이용하더라도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반드시 공증사무소에 출석해 공증인을 직접 대면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2018년 6월 인터넷 화상 장치를 통해 비대면으로 전자문서를 인증할 수 있는 화상공증기능을 추가하였다. 이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화상통화로 공증인을 대면해 전자공증을 받을 수 있어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공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2021년에는 본인인증수단에 여권 등을 추가하면서 재외국민의 전자공증서비스 접근이 한층 용이해졌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선진화된 공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시스템의 근본적인 한계들을 넘어서기 위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법무부는 현행 전자공증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전자공증이 일반 대면공증과 완전히 동일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차세대 전자공증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게 되었다.

나. 추진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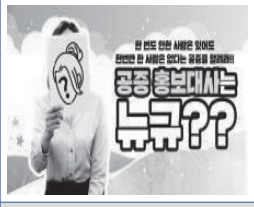
법무부는 2022년 3월, 차세대 전자공증시스템 도입을 위한 BPR/ISP(정보화 전략 계획) 사업을 시작하여 6월 전략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그에 따라 7월부터 기획재정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실을 대상으로 19회에 걸쳐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9월부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블록체인 지원사업에 응모, 자문회의 및 심사위원회 대상 최종 제안서 발표 등을 통해 지원사업으로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더불어 법무부는 전자(화상)공증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였다. 한국공영방송(KBS) 아나운서를 모델로 하여 공증주간 홍보 포스터를 제작·배포하고,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법무부 공식 유튜브 채널(법무부TV)에 게시하였으며, 교대역 등에 공증제도를 홍보하는 조명광고를 게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언론보도를 통해 전자공증시스템의 실제 활용사례를 소개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홍보를 위해 힘썼다.

| 그림 2-42 | 화상공증제도 홍보영상 제작 및 가이드북 배포



공증제도 홍보 포스터



공증제도 홍보영상



전자공증시스템 관련 언론 보도



지하철역 조명광고

다. 평가 및 발전방향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제도 홍보에 힘쓴 결과 전자(화상)공증 건수는 예년에 이어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으며, 예년 말 전자공증시스템 개선의 결과 공증인을 직접 만나기 어려운 국민이나 재외국민들의 편의성이 증진되었다.

법무부는 향후 사서증서와 공정증서를 가리지 않고 전자공증을 받을 수 있고, 공증문서를 온·오프라인에서 자유롭게 활용하며,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설계된 차세대공증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선진화된 법무행정을 통해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공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을 기대한다.

11. 국제법무 협력 및 교류

가. 법무 관련 국제회의 참가 및 법률지원

● 국제법무과 행정사무관 최승은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사법 분야의 국제적 통일규범 마련을 위한 국제회의와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분야 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 과정에 참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법무부는 2022년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본회의 및 실무작업반(Working Group) 회의 11회, OECD 경쟁위원회 3회, 국제해사기구(IMO) 법률위원회 1회,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관할권 작업반 회의, 특별위원회, 아태지역 컨퍼런스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통일규범과 국내규범의 조화 및 발전을 도모하였다.

뿐만 아니라 2022년 한-EU(1회),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2회),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2회), 한-에콰도르(4회), 한-GCC(5회) 등 여러 국가와의 FTA 및 다자 협정 체결 및 개정을 위한 서비스, 지식재산권 분과 등 협상에 참여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다.

| 표 2-17 | 2022년도 법률자문 현황(24회)

연번	월일	제 목	요청기관	담당자
1	1. 31.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6실무작업반 회의 의제 검토	외교부	최승은 사무관
2	3. 15.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2실무작업반 회의 의제 검토	외교부	임세영 전문위원
3	3. 17.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4실무작업반 회의 의제 검토	외교부	공보영 법무관
4	3. 17.	국제해사기구 제109차 법률위원회 의제 검토	해수부	임세영 전문위원
5	4. 26.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1실무작업반 회의 의제 검토	외교부	최승은 사무관
6	6. 20.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본회의 의제 검토	외교부	최승은 사무관
7	7. 7.	WTO 전자상거래 협정문 초안 검토	산업부	임세영 사무관
8	9. 8.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1실무작업반 회의 의제 검토	외교부	강윤성 법무관
9	9. 16.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지식재산권 챕터 협정문안 검토	산업부	김희은 전문위원
10	10. 5.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2실무작업반 회의 의제 검토	외교부	임세영 사무관
11	10. 13.	한-에콰도르 SECA 지식재산권 챕터 협정문안 검토	산업부	김희은 전문위원
12	10. 17.	한-걸프협력회의(GCC) FTA 일반규정 챕터 협정문안 검토	산업부	김희은 전문위원
13	10. 17.	한-GCC FTA 일반규정 챕터 협정문안 검토	산업부	김희은 전문위원
14	10. 21.	한-GCC FTA 일반규정 챕터 협정문안 검토	산업부	김희은 전문위원
16	10. 24.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4실무작업반 회의 의제 검토	외교부	최승은 사무관
17	11. 1.	한-GCC FTA 분쟁해결 챕터 협정문안 검토	산업부	김희은 전문위원
18	11. 8.	한-GCC FTA 일반규정 챕터 협정문안 검토	산업부	김희은 전문위원
19	11. 9.	한-에콰도르 SECA 지식재산권 챕터 협정문안 검토	산업부	김희은 전문위원
20	11. 15.	한-GCC FTA 일반규정 챕터 협정문안 검토	산업부	김희은 전문위원
21	11. 17.	한-에콰도르 SECA 법률서비스 분야 유보안 검토	산업부	임세영 사무관
22	11. 21.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6실무작업반 회의 의제 검토	외교부	김희은 전문위원
23	12. 6.	한-GCC FTA 투명성 챕터 협정문안 검토	산업부	김희은 전문위원
24	12. 23.	한-GCC FTA 법률서비스 분야 양허안 검토	산업부	임세영 사무관

2) 평가 및 발전방향

앞으로도 법무부는 통상, 국제거래 등 다양한 국제법무 분야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주요 국제회의에 정부대표단으로 참가하여 우리 정부의 입장을 충실히 전달하고, 관계부처의 검토의견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FTA 체결 협상 및 기체결 협정에 관한 분쟁 예방 및 대응 등 국제법적 쟁점이 점차 강조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는 통상 분야에 대한 전문 대응 역량을 바탕으로 적시에 법률자문을 제공할 것이다.

나. 국제법무교류 및 개발도상국 법제정비 지원

국제법무과 사무관 임세영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국가 간 협력 강화 및 국익 증진이라는 목표 하에 외국 법조인들과의 교류 및 법무협력협정, 상호 자료교환협정 체결과 같은 실무적 교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나아가 주요 개발도상국에 국제거래규범 및 우리나라의 선진적인 법제도를 소개하여 입법 작업을 지원하는 '개발도상국 법제정비 지원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UN과 같은 주요 국제기구의 활동 및 발전에 기여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요 교역대상국과 우리나라 법제의 간극을 최소화함으로써 향후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시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보다 유리한 통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등 여러 국가들과 체결한 법무협력 양해각서에 따라 양국간 법무 협력 및 인적 교류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9년 홍콩과 양해각서 체결 이후 현재 이라크 및 사우디아라비아와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 법제정비지원사업(ODA)의 일환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캄보디아의 대체적 분쟁해결(ADR) 관련 법제 정비를 지원하고 있다. 나아가 캄보디아를 비롯하여 여러 아태지역 개발도상국의 국제규범 도입 및 활용 촉진을 위해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와 손잡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해오고 있다. 특히 2022년 11월에는 UNCITRAL 아태지역사무소(Regional Centre for Asia and the Pacific) 개소 10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여 지난 10여년 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선진국제규범의 역내 정착을 위한 양 기관간 협력 강화 및 역할 확대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같은 시기에 제11회 ADR 스페셜 세션을 UNCITRAL 아·태지역사무소와 공동으로 개최(하이브리드 방식)하여 아태지역 개도국 공무원 및 법률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중재·조정 및 디지털경제에서의 분쟁해결 등에 관한 UNCITRAL 상거래규범을 전파하고 관련 실무 경험을 공유하였다.

2022년 7월에는 한국을 방문한 태국 사법연구원 국제연수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형사사법공통시스템(KICS) 및 국제거래규범 성안 등을 중심으로 법무부의 주요 활동을 소개하고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2022년 12월에는 한국조정학회, 대한상사중재원, 한국형사·정책법무연구원과 함께 제7회 아시아태평양 국제조정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싱가포르조정협약의 이행 현황과 향후 과제, 조정인의 역량 강화 및 윤리규범 확립, 조정제도 운영 개선 방안 등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편, 2022년 하반기에는 캄보디아의 조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후속 교육 프로그램 등을 준비할 예정이다.

| 그림 2-43 | 법무협력사업 및 법제정비지원사업



제11회 UNCITRAL ADR 스페셜 세션



태국 사법연구원 초청 워크샵

2) 평가 및 발전방향

2022년은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됨에 따라 대면 방식의 프로그램이 서서히 증가하였다. 동시에 최근 2년간 자리잡은 비대면 또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개도국 측 참여 범위를 확대할 수 있어 참석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였으나 비대면 방식을 적극 활용하여 개도국의 법제 정비 지원에 대한 차질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형태의 사업 수행방식을 정착시켰다.

이를 토대로 국제법무교류와 개발도상국 법제 정비 사업은 우리 국민과 기업의 해외 진출에 편의를 더하고 주요 개도국 법제의 현대화로 현지인들의 인권 및 법률 복지 향상을 꾀함으로써 보편적인 인류애와 국제공동체 정신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주요 국제기구와의 협업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의 개발도상국 법제 정비 지원 사업에 대한 관심과 노력, 우수성 등을 홍보하고 지원 사업 대상 국가 및 법제 분야를 확대하여 아태지역 국가들의 법제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글로벌 중추국가의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중앙당국 역할 수행

국제법무과 행정사무관 최승은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우리나라는 2012. 12월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다른 국가로 이동되거나 유치된 아동(탈취아동)의

신속한 반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약칭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가입하였다. 위 협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 절차와 재판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이행법률이 제정·시행되었고, 위 법률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협약의 이행 업무를 총괄할 중앙당국으로 선임되었다. 이에 법무부는 피탈취부모와 해외 중앙당국의 연결, 탈취아동의 한국 입국 사실 확인 및 소재 파악 등 탈취아동의 신속한 반환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은 기존 가입국이 신규 가입국의 가입을 수락해야 양국 간 발효되는데, 2022. 12월 현재 기존 가입국 103개국 중 63개국이 우리나라의 가입을 수락하였고, 지속적으로 수락국의 확대를 추진 중이다. 2013년부터 누적된 지원 신청 접수 건수는 2022. 12월 현재 총 91건을 기록하고 있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국제결혼의 증가에 따라 일방 배우자에 의한 아동의 국외 무단탈취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사전에 방지할 제도가 없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 국민과 결혼하는 사람이 많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등과 같은 나라의 경우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가입하지 않거나 우리나라와 상호 수락국이 아닌 경우가 많아서 협약상 지원이 불가능한 사례가 적지 않다. 따라서 법무부는 부부 일방이 아동을 국외로 무단 탈취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법원의 심판절차 도입을 연구하여 2020. 8월 「헤이그 아동탈취협약 이행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12. 국제민상사규범 성안 참여

국제법무과 행정사무관 최승은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국제교류 증대와 민·상사 규범의 세계적 통합 양상에 따라 각종 규범의 통일화 작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고, 이러한 현상은 중재, 도산, 운송, 담보, 정부조달, 전자상거래 등 각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국제 신인도 제고, 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내 법제 선진화를 위해서 국제규범의 도입 및 수용이 필요하다. 법무부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민·상사 통일규범 관련 국제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협상과정에서 우리 의견을 반영하고, 논의 결과를 분석하여 국내에

전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법무부는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와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등 사법 분야의 국제통일규범 성안 회의에 활발하게 참석하고 있는 바, 2022년에는 총 13회의 UNCITRAL 본회의 및 실무작업반 회의에 참석하고, HCCH 관할권 작업반 회의에 참석하여 국내 법제의 관점과 국제적 표준규범의 조화를 도모하고 선진적 글로벌 통일규범 마련 작업에 일조하였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002년부터 UNCITRAL 6개 실무작업반 회의에 정부대표를 지속적으로 파견하는 등 국제적인 논의 동향에 능동적으로 대응한 결과, 전 세계 최초로 UNCITRAL의 지역사무소를 인천에 유치하였고, 이를 통하여 아·태지역에서 국제거래규범의 연구·전파의 중심지로서의 지위를 견고히 확보해 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 법무부, UNCITRAL,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상업회의소(ICC) 등 기관이 공동으로 대체적 분쟁해결 관련 국제회의(SAF, Seoul ADR Festival)를 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해 비대면으로 개최하였고, 위 회의에는 국내·외 전문가 200여 명이 참여하여 국제중재의 최신 경향과 주요 쟁점을 공유하였다. 특히 법무부는 SAF 기간 중 제11회 아시아·태평양 ADR 컨퍼런스(2022. 11. 9. ~ 10.)를 개최하여 한국의 국제중재 분야 성과에 대하여 공유하고 국제적 석학·실무가들과 국제중재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법무부는 이러한 국제적 회의의 주요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그 결과를 국내 법제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2002. 2월 변호사, 교수, 판·검사 등 각 계의 전문가를 망라한 '국제거래법 연구단'을 발족하여 여러 분과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이들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위 연구단은 이미 제정된 국제규범의 도입을 위한 연구뿐 아니라 새로운 규범의 제정을 위한 각종 국제회의에도 적극 참석하여 우리의 입장이 반영된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국제규범의 제정단계에서부터 우리의 국익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평가 및 발전방향

앞으로도 법무부는 대한민국 법과 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국제적 교류와 협업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국제거래규범의 조화 및 통일화 과정에 국내 법체계의 입장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기여를 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뿐만 아니라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사법통일국제연구소(UNIDROIT) 등 다양한 국제기구의 국제통일규범 협상에 참여하는 등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활동폭을 넓혀갈 예정이다.

13. 국제법무 역량 강화

가. 법률시장 개방 법제화 및 관리·감독제도 구축

국제법무과 사무관 임세영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위한 개정 외국법자문사법은 2016. 3. 2. 공포된 이후 2016. 7. 1. 유럽연합(EU)을 대상으로 최초로 적용되었다.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통하여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이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합작법무법인은 국내 변호사를 고용하여 외국법 사무 및 일부 국내법 사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3단계 개방은 이후 2017. 3. 15. 미국, 2018. 12. 20. 베트남, 2019. 12. 12. 호주, 2020. 1. 1. 캐나다, 2021. 1. 1. 영국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2022년 12월 현재 자격승인심사를 신청한 외국변호사는 226명, 설립인가심사를 신청한 외국로펌은 37개이며, 그 중 자격승인을 받은 외국법자문사는 222명(미국법자문사 162명, 영국법자문사 37명, 프랑스법자문사 1명, 호주법자문사 10명, 중국법자문사 9명, 뉴질랜드법자문사 1명, 싱가포르법자문사 2명),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로펌은 36개(미국 로펌 21개, 영국 로펌 4개, 중국 로펌 2개, 호주 로펌 1개)이다. 특히 2022년 11월에는 국내 로펌과 외국(영국) 로펌 간 최초의 합작법무법인이 설립인가를 받음으로써 3단계 시장 개방이 현실화되었다.

2016 ~ 17년에 걸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총 27곳을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2018년 이후에도 꾸준히 개별 사무소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갖는 등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나갔다. 2019년에는 연구용역을 통해 각국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및 합작법무법인 관련 법제를 연구하였으며, 싱가포르·호주·뉴질랜드를 방문하여 법률시장 개방 정책 및 협의 과정 등을 조사하는 등 향후 법률시장 개방의 범위가 더욱 확대될 우리나라의 추세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법률시장을 모니터링하고 각국의 사례를 수집하였다.

2020년에는 그동안의 법률시장의 변화를 반영하고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2021년에는 법률시장 개방 10주년을 맞아 관리감독시스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2022년에는 합작법무법인이 출범하는 등 법률시장 개방에 큰 변화가 있었던 바, 추후 달라진 시장 현황에 맞추어 적합한 법률시장 개방 정책을 실행할 예정이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앞으로 법률시장 개방 법제 관련 세계 동향을 꾸준히 살펴 우리나라의 법제를 개선하고, 심사업무의 처리 속도 및 정확성을 높여 더욱 완성된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또한 이미 승인된 외국법자문사 및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대하여도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이로써 안정적인 법률시장 개방 제도를 구축하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에게 제공되는 법률서비스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법률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나. 국내 법률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국제법무과 공익법무관 강윤성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국내 법률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12. 5월과 2015. 4월에는 중국 상해에서, 2012. 12월과 2014. 4월에는 홍콩에서, 2016. 5월에는 UAE에서 각각 국내 로펌 합동 해외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청년법조인 및 예비법조인들을 해외 로펌, 국내 로펌 해외사무소 및 국제기구 등에 인턴으로 파견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2012년 하반기에 14명, 2013년 46명, 2014년에 84명, 2015년에 47명, 2016년에 46명, 2017년에 38명, 2018년 38명, 2019년 45명을 선발·파견함으로써 국내 신규 법조인들이 해외에서 업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 업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하여 인턴을 파견하지 않음).

2014. 9월부터는 청년법조인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세계한인변호사회와 공동으로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O.K. Academy)'를 개설하여 국제법무에 정통한 변호사들을 강사진으로 섭외해 청년법조인들을 교육하고 있다. 2022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온라인 아카데미(제8기)를 개설하여 운영하였으며, 23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특히, 올해 아카데미부터 국제법무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교육 내용을 국제법무 실무와 사례 중심으로 개편하고, 활동이 활발한 중진 실무가들을 초빙하여 강사진을 보강하였다. 또한 외국 로펌, 국제기구 등 해외에서 활약하고 있는 변호사들을 섭외하여 온라인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한편, O.K. 아카데미 수료생을 대상으로 2015년 하반기부터 해외 로펌, 국내 로펌·해외사무소 등 여러 기관에 장기(3개월 ~ 1년) 인턴으로 파견하여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였고, 2015년 7명, 2016년 5명, 2017년 3명, 2018년 2명, 2019년 1명을 선발 파견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청년법조인 및 예비법조인들은 O.K. 아카데미 및 해외 인턴 파견을 통해 국제법무 관련 전문지식을 배우고, 실무 경험을 쌓았다. 이는 대한민국 법률서비스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청년법조인의 취업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법조인들에게 유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아카데미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 추진하는 등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아카데미 수료를 통해 해외로펌 또는 국제기구 진출의 발판을 마련한 성공 사례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청년법조인 및 예비법조인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대한민국 법률서비스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다.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

국제법무과 공익법무관 강윤성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이 확대되면서 국제 법률자문 수요가 증가하고, 중소기업 법률지원을 통하여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가 필요해짐에 따라, 법무부는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교수, 변호사 등 자문위원 242명)의 운영을 통하여 중소기업들에게 영문계약서 검토, 현지 법령 해석 등의 무상 자문을 제공하고, 『국제투자·비즈니스 가이드』와 『알기 쉬운 수출계약서 작성 실무』 등 총 26종을 발간·배포하고 있다.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의 법률자문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총 2,198건을 기록하였다.

또한, 무역협회 '스타트업 브랜치'와 공동으로 해외진출 중소기업 등 대상 1:1 온라인 법률상담회를 매달 진행하였는바, '22년에는 총 159개 기업이 참여하였다. 나아가 '22년 4월부터 매월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실무자 등을 위한 온라인-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법률세미나를 실시하였다.

한편 '22년 10월 베트남 호찌민에서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설명회를 개최하고 1:1 현지 법률상담 부스를 운영하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해외 현지 법률설명회 및 법률상담회 행사를 재개하였다.

나아가, 우리 중소기업의 준법경영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세계은행과 「중소기업을 위한 준법경영 가이드북」을 공동 발간하기로 2020년 1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23년 9월 발간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그림 2-44 |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을 위한 설명회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제도 활용 안내('22.11.1.)



법무부-무역협회 1:1 온라인 법률상담회('23.1.20.)

2) 평가 및 발전방향

법무부는 웹사이트 법률 자문, 온라인 및 오프라인 1:1 법률상담, 법률세미나 등 다각화된 방식으로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다양한 법적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법률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더 많은 진출 기업이 법률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률자문과 1:1 법률상담 사례를 정리한 사례집 및 투자·비즈니스 가이드의 현행화를 통해 진출 기업들이 신흥국가의 복잡다변한 외국인 투자 관련 법제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 전문학술지 및 연구자료 발간

국제법무과 사무관 임세영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1995. 2. 1. 국제통상 전문학술지인 『통상법률』을 창간하여 연 4회 발간해오고 있는 바, 매 권호마다 국제법 전문가들의 수준 높은 논문을 게재하고 있다. 1995년 제1호부터 2022년 12월 현재 통권 제157호에 이르기까지, 『통상법률』은 국제통상법 및 국제거래법, 국제투자법 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다룸으로써 국제법무 분야의 연구에 기여해오고 있다. 특히 2020년에는 기획논단을 신설하여 시의성 있는 연구 논문을 집중적으로 게재하였고, 2021년에는 게재 논문의 집필진 및 연구주제의 다양성

| 그림 2-45 | 통상법률 통권 제157호



및 균형성에 중점을 두고 발간하였다.

그 결과 2021년 실시된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평가 결과, 등재후보지로 재선정되었다.

또한 법무부는 2010. 7. 13. 영문 법률 계간지 『Recent Trends of Law & Regulation in Korea : 한국법령의 최신 동향』을 창간한 이래로 2022년 통권 39호까지 지속적으로 발행을 해오고 있다. 본 저널은 '한국의 법동향', '법무부 정책소개', '외국투자자를 위한 출입국 정보' 코너를 통해 기업·투자 활동과 관련된 법령 재·개정 사항, 판례 동향, 정부 정책과 외국투자자들에게 유용한 출입국 정보를 영문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투자관련 법규, 정책을 해외에 알리는 영문 정기간행물로서 외국투자자들로 하여금 우리나라 법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법무부는 자체 학술지 및 영문 저널의 발간뿐만 아니라, 국제규범의 도입 및 이행에 관한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그 결과물을 공개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발행하여 실무자 및 국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통상법률은 학술지로서 위상을 제고하여 국제법무 분야 연구자들이 논문을 게재할 공간을 확대함으로써 해당 분야 연구 활성화에 기여하고, 영문저널은 편집 노트, 법무부 소관 개정 법령의 소개를 추가하는 등 개편을 통해 국내외 독자에게 법무부 관련 다양한 정보를 충실히 홍보하고 전달하려 한다.

14.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

가. '론스타 사건' 판정선고 및 후속 대응

국제분쟁대응과 사무관 박소영·공익법무관 신승민

1) '론스타 사건'의 경과 및 판정선고

LSF-KEB v. Republic of Korea, 일명 '론스타 사건'은 2012. 11. 21. 미국 사모펀드인 론스타 펀드(Lone Star Fund)의 8개의 자회사(이하 '청구인')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이하 'BIT') 위반을 주장하며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이하 'ISDS')' 사건이다.

청구인은 외환은행 매각 당시 금융당국이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지연하고, 외환은행 매각가격을 인하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등 매각과정에 과도하게 개입하여 BIT상 공정·공평의무를 위반하였으며, 국세청이 자의적·차별적으로 한-벨기에 조세조약 상 면세혜택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과세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총 46.8억 달러(한화 약 5.6조 원[1])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무부는 국조실, 기재부, 외교부, 금융위,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국제투자분쟁대응단(단장 : 법무부 법무실장)을 구성하고 효율적·체계적 의사결정 절차를 마련하는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을 기반으로 국내·외 대리로펌과의 협의, 서면검토, 증인 등 확보, 자료수집 및 정리, 대응논리 개발 등 사건 대응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였다.

론스타 사건은 2016. 6. 2.~3. 진행된 최종 심리기일 등, 총 4회의 심리기일을 거쳐 2022. 6. 29. 절차종료가 선언되었으며, 중재가 제기된 지 약 10년 만인 2022. 8. 31. 중재판정부의 판정이 선고되었다.

중재판정부는 본 사건에서 문제된 관할·금융·조세 3가지 주요쟁점에 관하여 일부 금융 쟁점을 제외한 관할과 조세 쟁점에 대하여 정부 측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구체적인 판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할 쟁점과 관련하여, 중재판정부는 정부 측 관할 항변을 모두 인정하여 1976년 한-벨기에·룩셈부르크 BIT 위반 및 2011년 한-벨기에·룩셈부르크 BIT 발효(2011. 3. 27)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중재판정부가 관할을 갖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금융쟁점(금융당국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과 매각가격 인하 개입 관련)과 관련해서는, 중재판정부 다수의견은 금융당국이 자의적·차별적으로 론스타의 하나금융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심사를 지연하고, 가격인하를 압박하는 등 부당한 개입을 하였다고 보아 일부 책임을 인정하였다. 다만, 소수의견은 청구인이 주가조작 사건의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다면 매각 승인이 보류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한국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세 쟁점과 관련하여, 중재판정부는 조세당국이 청구인에게 최대 과세할 목적으로 한-벨기에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반하여 부당하게 면세혜택을 거부하고, 론스타의 양도 및 배당소득에 자의적·차별적 기준을 적용하여 과세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전부 기각하였다. 중재판정부는 2011년 한-벨기에·룩셈부르크 BIT 체결 이전의 과세처분에 대해서는 관할을 부정하였으며, BIT 체결 이후 정부가 실질과세주의 원칙에 따라 청구인에 내린 과세처분은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BIT를 위반한 자의적·차별적 대우가 있었다고 볼 수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중재판정부는 청구인 측 주장 손해액 중 4억 3,300만 달러를 손해로 인정하되, 헐값매각·주가조작 사건 등을 통해 확인된 청구인의 형사책임이 손해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여 금융당국과 청구인 과실을 동등하게 분배(50%)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고, 결과적으로 정부에 2억 1,650만 달러 및 2011. 12. 3.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1) 환율 1달러당 1,200원 기준

따른 이자를 배상할 것을 명하였다.

2) 평가 및 후속대응

정부는 2012. 5. 22. 청구인으로부터 중재의향서를 접수한 직후 외교부, 금융위, 국세청 및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 공동 대응체제를 구성하고 분쟁대응단을 설치하여 사건에 적극 대응하였다.

또한 법무부는 대국민 브리핑 개최,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론스타 사건의 주요 진행 경과 및 쟁점, 대응 현황 등을 대국민 공개하였고 판정 후에는 법률상 공개가 불가능한 최소한의 내용[1]을 제외한 판정문 원문을 공개하고 국문 판정요지서를 배포하는 등 국민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신속히 정보를 공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결과적으로 판정상 청구인 측이 손해배상을 주장한 금액 약 46.8억 달러 중 4.6%에 해당하는 2억 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부분 만이 인정되었으며, 나머지 95.4%에 해당하는 44.6억 달러에 대한 부분은 정부가 승소하였다.

법무부는 론스타 ISDS 사건 판정문에 ① 배상금 과다 산정, ② 이자의 중복 계산 등 '오기, 오산으로 인한 잘못'이 있음을 확인하여, 2022. 10. 15. ICSID 협약 제49조 제2항에 의거 배상금 중 48만 1,318달러의 감액을 구하는 정정신청을 제기하였다.

또한, 정부는 론스타가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매각할 당시 승인 심사 과정에서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 차별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하였다는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이러한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중재판정부 다수의견의 판단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표명하였고, 후속절차의 필요성 및 합리적인 신청 사유[2]를 검토하여 향후 취소 및 집행정지 등을 적극 검토 및 추진할 예정이다.

나. 지자체·해외진출 우리기업 국제투자 분쟁 예방과 해결 적극 지원

국제분쟁대응과 행정주사 이상하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주요 ISDS 사건들이 접수 및 진행되면서 우리 정부에 대한 ISDS 제기 및 그 결과에 대한 대응능력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 및 경제자유구역청들이 대규모 해외투자를

1) 외교기밀에 관한 사항 및 공무원을 제외한 사인의 개인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6호)
2) ICSID 협약 제52조 제1항의 5가지 취소신청 사유 : ① 중재판정부 구성 흠결, ② 중재판정부의 명백한 권한 유월, ③ 중재인의 부패, ④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⑤ 이유 불기재

다수 유치함에 따라 사업과정에서 분쟁 발생 시 외국인 투자자의 ISDS 제기 위험성이 상당하므로, ISDS 예방을 위해 투자유치 MOU 작성단계부터 중앙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해결책 마련에 대한 중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공기업·지자체 및 기업에 대한 ISDS 대응방안 교육, 홍보활동 강화를 통하여 투자유치 단계에서부터 분쟁을 예방하려 노력하고 있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등과 연계하여 해외진출 국내기업을 찾아가 ISDS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현지 법령 이해를 돕기 위한 법적 지원활동을 추진해왔다.

법무부는 2009. 10월부터 2022. 12월까지 총 128회에 걸쳐 중앙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경제자유구역청 및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ISDS 제도 소개, 발생 경위 및 사례 검토, 예방 및 대응 전략을 교육하는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2022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축소되었던 유관기관 대상 ISDS 예방교육 참여도 제고를 위해 주기적 과정 홍보 등 활성화 노력 결과 2020, 2021년도 각 3회에 불과하였던 교육횟수가 11회[1]로 증가하였다. 교육 이후에는 교육 대상 기관에 대하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앞으로의 교육방향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3년에도 분기별 ISDS 예방 교육 안내 공문 발송 등 주기적으로 홍보를 실행하여 국제 소송으로 인한 대외 신인도가 하락하거나 막대한 소송비용이 발생하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법무부는 외국인 투자 관련 정책을 시행하는 부처에 대한 국제투자분쟁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 관련 정책·조치 시행, 기타 분쟁 발성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국제투자법 일반 원칙 및 관련 투자협정의 위반가능성을 검토하여 관련 기관에 의견을 제공하고 있다. 2022년에는 총 4건[2]의 투자협정 위반 및 ISDS 제기 가능성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공하였다. 또한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 예방·협력 강화를 위하여 법무부-KOTRA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정례회의('22.1.)을 통해 옴부즈만 기업들의 고충, 민원 중 FTA·BIT 의무 위반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여 ISDS 제기 위험 사례 공유 및 공동 대응을 하였으며, 정부관계자·공기업·해외진출기업 등의 ISDS에 대한 이해도 및 대응역량 제고를 위하여 「국제투자분쟁대응단 업무 매뉴얼」을 발간(6. 1.)하고, 「국제투자중재 실무」를 발간·배포(10. 4.)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앞으로 법무부는 지속적으로 정부부처·공기업·지자체·해외진출기업을 대상으로 ISDS 예방 및 대응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관계자, 공기업, 해외진출기업 등의 ISDS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선제적으로 국제투자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ISDS 예방 및 대응 관련 서적을

1) 충남도청(3. 11.), 경남도청(3. 2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3. 28.), 한국공항공사(4. 8.), 한국철도공사(4. 19.), 부산항만공사(5. 10.), 한국전력공사 해외투자실(5. 25.), 경기경제자유구역청(6. 10.), 한국도로공사(8. 11.), 한국전력공사 법무실(9. 1.), 한국지역난방공사(9. 29.)

2) ①녹지국제병원 동향, ②중고차업계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의 FTA 등 위반 및 ISDS 제기 가능성, ③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ISDS 가능성, ④제주투자자 ISDS 제기 가능성 사전검토

지속적으로 발간·개정할 예정이고, 외국인투자옴부즈만에 접수된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 민원 중 ISDS 제기 위험 사례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ISDS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각 공공기관의 ISDS 예방 및 대응역량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 법무 관련 국제회의 참가 및 법률지원

국제분쟁대응과 전문위원 김아주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및 투자보장협정(BIT) 회담에 참석하고 법률자문을 제공하여 우리나라 내 외국인투자 증대와 외국에 투자하는 우리 국민의 이익 보호를 위한 국제규범 마련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제3실무작업반 및 ICSID 회의에 정부 대표로 참석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여 ISDS 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의견을 제공하고 있다. 법무부는 2022년 UNCITRAL 본회의 및 제42차·제43차 제3실무작업반 회의에 정부 대표로 참석하였고, 총 3회의 정부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표 2-18 | 2022년도 회의 참석, 검토의견 및 정부 의견서 제출 현황

연번	월일	제 목	요청기관	담당자
1	1. 12. ~1. 13.	한-멕시코 투자보장협정 제4차 회담 참석	외교부	서기관 이현송
2	2. 14. ~2. 18.	UNCITRAL 제3실무작업반 제42차 공식회의 참석	외교부	서기관 엄영신 사무관 문희조
3	2. 21.	한-조지아 투자보장협정 제3차 회담 참석	외교부	서기관 이현송 사무관 조규현
4	4. 27. ~4. 28.	한-투르크메니스탄 BIT 회담 참석	외교부	사무관 조규현
5	5. 20.	UNCITRAL 제3실무작업반 항소체제 관련 정부의견서 제출	외교부	서기관 엄영신 사무관 문희조
6	5. 31.	한-멕시코 투자보장협정 제5차 회담 참석	외교부	서기관 이현송
7	6. 30.	UNCITRAL 제3실무작업반 상설투자법원 관련 정부의견서 제출	외교부	서기관 엄영신 사무관 문희조 전문위원 박소영
8	7.	한-멕시코 투자보장협정 검토의견 송부	외교부	서기관 이현송

연번	월일	제 목	요청기관	담당자
9	7. 11., 7. 13. ~7. 14.	UNCITRAL 본회의 참석	외교부	서기관 엄영신 사무관 문희조
10	8. 16.	UNCITRAL 제3실무작업반 제43차 공식회의 의제 검토의견I 제출	외교부	서기관 엄영신 사무관 문희조 전문위원 김아주 전문위원 박소영
11	8. 23.	UNCITRAL 제3실무작업반 제43차 공식회의 의제 검토의견II 제출	외교부	서기관 엄영신 사무관 문희조 전문위원 김아주
12	9. 4. ~9. 17.	UNCITRAL 제3실무작업반 제43차 공식회의 참석	외교부	서기관 엄영신 사무관 문희조 전문위원 김아주
13	9. 22. ~9. 23.	한-멕시코 투자보장협정 제6차 회담 참석	외교부	서기관 이현송
14	10. 14.	UNCITRAL 제3실무작업반 행동규범 해설서에 대한 정부의견서 제출	외교부	서기관 엄영신 전문위원 김아주
15	11. 21.	한-조지아 투자보장협정 검토의견 송부	외교부	검사 오흥세 전문위원 김아주
16	11. 29. ~11. 30.	한-조지아 투자보장협정 제4차 회담 참석	외교부	검사 오흥세 전문위원 김아주
17	12. 15.	한-바레인 투자보장협정 검토의견 송부	외교부	검사 오흥세 전문위원 김아주

2) 평가 및 발전방향

앞으로도 법무부는 한-중 FTA 서·투 후속협상, 한-러 FTA 협상에 정부대표단으로 지속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며, 특히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비하여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가입 결정 시 협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한-오만, 한-UAE, 한-멕시코, 한-나이지리아, 한-이라크 BIT 개정 및 한-조지아, 한-투르크메니스탄 BIT 제정 등 투자보장협정 회담에 참석하여 적극적으로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고, UNCITRAL 본회의 및 제45차·제46차 제3실무작업반 회의에 정부 대표로 참석하여 의견을 제공하고, 신규 사무국 문건 발행 시 정부 의견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하는 등 우리 국민의 이익 보호를 위한 국제 규범 마련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1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 및 국가배상 업무의 지휘·감독

가. 국가소송 및 국가배상 신청사건 현황

국가소송과 행정사무관 강형광, 배정범

1) 국가소송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이하 '국가소송')의 수행은 국가 전체의 공익을 수호하면서도 개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무부장관은 국가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 국가소송의 지휘 권한을 각급 검찰청의 장에게 위임하는 한편, 소가 2억 원 이상 사건의 소 제기 및 취하, 상소의 포기 및 취하 등 주요 소송행위에 대하여 통일적인 승인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2022년 국가소송 사건 수는 12,006건으로 전년 대비 4.09% 증가하였고, 총 청구금액은 약 7조 3714억 원이었다. 이러한 국가소송의 증가 추세 및 전문성을 요하는 사건의 비중 확대는 국가정책의 수립·시행과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력 증대로 이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국가소송의 승인·지휘 업무의 중요성 역시 더욱 강조되고 있다.

국가소송 패소율은 검사·변호사 자격을 가진 공무원 및 공익법무관 등 법률전문가에 의한 국가소송 수행, 소송수행자 교육, 소송총괄관 회의, 송무지도점검 등 송무수행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을 통해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2022년에는 전년보다 1.5%p 감소한 9.7%를 기록하였다.

특히 2022년에는 국가의 상고율이 전년 대비 7.4% 감소한 20.6%로 나타나는 등 정의와 상식에 입각한 적정한 상소권 행사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었는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한다.

국가소송 접수 및 처리현황은 〈제5장 통계 : 표 5-12〉와 같다.

2) 국가배상 신청사건

국가배상법에서는 국민들이 소송보다 간이한 국가배상절차를 통하여 신속한 손해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배상심의회를 통한 국가배상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본부배상심의회를 설치하여 개산(槪算)액 5,000만 원 이상 사건 및 전국 고·지검에 설치된 지구심의회에서 심의한 사건의 재심사건에 대하여 심의·처리하고 있다.

국가배상신청사건(「한·미주둔군 지위 협정」 사건 포함)은 1992년 이후 다소간의 증감을 보이다가 2000. 12. 29. 「국가배상법」 개정(필요적 전치주의에서 임의적 전치주의로) 이후

대폭 감소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7,132건을 접수하여 그 중 691건을 인용하고, 2,126건을 기각하는 등 총 2,899건을 처리하였다.

나. 소송수행청과의 소통 강화 및 소송수행자의 역량 제고

국가소송과 행정사무관 강형광

1) 전국 소송총괄관 회의 개최

2022. 12. 21. 전국 중앙행정기관 소송총괄관 및 송무담당 실무자 34명이 참석하여 일선 소송수행청의 송무업무 현황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소송총괄관 회의를 진행하였다. 법무부에서는 구 농지개혁법상 미분배 토지 사건, 행정소송 지휘절차 및 소송비용 회수업무 안내, 공익소송비용 감면 및 국고손실 환수송무 등의 주제에 관하여 설명하고 각 기관 소송총괄관들의 질의에 답하였다. 또한 국가송무 수행 관련 애로사항·건의사항을 기탄없이 논의하여 법무부와 일선 소송수행청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 그림 2-46 | 소송총괄관 회의



인사말씀



주제 발표 및 질의응답 진행

2) 국가송무 수행자 교육 실시

법무부는 국가송무 수행자의 송무 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송수행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기존 집합교육 방식을 온라인 기반으로 전환하여 교육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발빠르게 대응하였고, 2022년에는 이러한 교육방식 전환이 안정화되어 코로나 상황 이전 수준으로 교육 횟수를 회복할 수 있었다. 특히,

법무연수원 뿐만 아니라 우정공무원교육원, 해양수산부 등과 협의하여 유관 기관의 교육과정으로 범위를 넓혀 활발한 국가송무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국고손실 환수소송 매뉴얼과 국가송무 현황 등 출판물을 개정하여 교육 교재로 활용하고, 소송수행자들이 국가송무 수행 실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송무지도점검 실시

법무부는 국가송무 및 국가배상 업무 수행실태 등을 점검하여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 및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송무지도점검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2022년에는 의정부지검(3월), 창원지검(4월), 제주지검(5월), 부산고검(6월), 춘천지검(7월), 전주지검(9월), 수원고검(11월), 서울고검(12월) 총 8개 검찰청의 국가소송·국가배상 업무에 대한 지도점검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가소송 수행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4월)이 이루어졌다.

지도점검을 통하여 각 고·지검이 국가소송 지휘 및 국가배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법무부의 훈령·예규 및 지시·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 살피고 미비점을 찾아내어 개선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수검대상 기관의 건의사항을 적극 청취하여 향후 국가송무 수행에 참고하는 기회로 삼았다. 수검대상 기관은 법무부의 지적 사항을 수용, 개선하여 조치결과를 보고함으로써 소송업무 수행의 적정성을 제고하였다.

4) 송무담당 공익법무관 워크숍 개최

2022. 12. 22. 전국의 송무담당 공익법무관 50명이 모여 국가송무의 발전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3년만에 개최된 이번 워크숍에서는 각 고·지검 및 수행청 파견 공익법무관들이 국가·행정·헌법소송의 수행 현황 및 개선 방안 등을 비롯하여 공익법무관이 수행하는 국가송무 전반에 걸친 송무역량 강화방안을 논의하였다. 그밖에 법무부와 일선 수행청간 원활한 소통채널 확보, 공익법무관의 역할증대 방안 논의 등을 통하여 공익법무관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성취동기를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5) 송무업무유공자 포상

각급 행정청 소송수행 공무원을 격려하고 소송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라 송무 기여도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송무업무유공자 101명(국가소송 55명, 행정소송 46명)에 대하여 총 3,03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라. 정부법무공단 운영 지원

국가소송과 행정사무관 윤경식

2008년 출범한 정부법무공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행정기관 및 공공단체로부터 위임받은 국가·행정·민사소송 및 헌법재판 사건과 법률자문 수행을 통하여 국가재정 손실방지 및 정책의 순조로운 추진에 기여하는 등 '국가로펌'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법무부와 공단의 홍보노력 등으로 공단의 2022년 수임사건은 1,516건으로 출범 초기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2008년 수임사건 377건). 특히, 2022년에는 국유건물 폭발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국가가 공작물소유자책임을 진다는 점이 충분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국가 승소판결을 이끌어내는 등 다수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결과 본안 사건 평균 승소율 74%라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합법성을 확보하는 데 일조하였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공단의 전문적인 경쟁력 강화와 적극적인 홍보활동 등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16. 인민혁명당 재건위 관련 초과지급된 국가배상금 환수 사건 해결

국가소송과 검사 김영준

가. 추진배경

1975년 경에 있었던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이하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이 2002년 경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하여 위법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2007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인하여 기소되어 유죄를 선고받았던 피해자들에 대하여 법원에서 재심무죄가 선고되었고, 위 피해자들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하였다. 2009년 위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승소하여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 및 불법행위시부터 기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지급하였으나, 2011년 대법원이 국가배상에서의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을 '불법행위시'에서 '사실심 변론종결시'로 변경함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가지급된 배상금 중 '불법행위시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시 사이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을 피해자들이 국가에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이에 국가는 2013년 경 피해자들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2017년 피해자들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는데, 최초 배상금의 지급일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지급된 손해배상금의 원금보다 반환하여야 할 지연손해금이 더 커지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고, 위 피해자들 및 유족들 중 3명은 2019년 과도한 청구액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가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추진경과

법무부는 당사자가 예상할 수 없었던 법원 판결의 변경으로 1심 판결 후 피해자에게 가지급된 국가배상금 중 일부를 국가가 다시 환수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장기간 진행된 소송으로 환수해야 할 초과지급 국가배상금의 지연이자가 원금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누적되어 피해자에게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가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에 2022. 6. 20.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법무부 차관의 주재 하에 법무부(승인청), 서울고등검찰청(지휘청), 국가정보원(소송수행청) 관계자(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인권국장,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장 직무대행, 국가정보원 심의관)들이 참석한 '초과지급국가배상금 환수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 결과 법무부는 피해자가 예측할 수 없었던 판례 변경으로 초과지급된 배상금 원금 외에 다액의 지연손해금까지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잘못을 배상한다는 국가배상의 취지, 정의관념과 상식에 비추어 가혹할 수 있는 점, 「국가채권 관리법」상 채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없는 부당이득반환의 경우 원금 상당액을 변제하면 지연손해금을 면제하는 것이 가능한 점, 재판부의 종국적 분쟁해결 노력 존중 필요성, 관계기관 회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가 초과지급된 배상금 원금을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동안 누적된 지연손해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법원 화해권고를 모두 수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성과 및 향후 계획

이번 결정으로 당사자가 예측할 수 없었던 판례의 변경으로 인하여 장기간 고통을 겪어온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의 책임 있는 결단으로써 소위 '빚 고문'에서 해방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향후 참고할 수 있는 선례를 남겼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정의와 상식에 입각하여 진영논리를 초월하여 민생을 살피고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하는 국가의 임무를 다할 예정이다.

17. 판례 변경된 과거사 사건에 대한 전향적 배상 결정

국가소송과 검사 김영준

가. 추진배경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대통령 긴급조치에 기반한 일련의 수사·기소·재판 등 형사절차에 따라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한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 대하여, 대법원은 유죄 판결의 전제가 된 긴급조치가 위헌·무효라고 하더라도 당시 시행 중이던 긴급조치에 따른 수사·기소·재판이 당연히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수사 과정에서의 위법행위와 유죄 판결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별도 심리하여 그에 따라 국가배상책임 유무를 결정하여야 하며,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 역시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하여 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2. 8. 30.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종래의 해석론을 변경하고, 긴급조치 제9호에 따라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한 사람이 청구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긴급조치 제9호가 당시 시행되던 유신헌법에 의하더라도 발령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 내용상으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헌법상 기본원칙인 영장주의를 전면 배제하는 등 위헌적 규정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은 긴급조치의 발령 및 적용·집행에 따른 재판까지의 일련의 국가작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통령 긴급조치에 기반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한 피해자들이 제기하여 진행중인 국가배상소송에 대한 국가의 대응기조를 변경할 필요성이 발생하였다.

나. 추진경과

법무부는 변경된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을 분석하여 이번 긴급조치 제9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 대한 판결로 영향을 받는 사건의 범위를 검토하였는데, 판결 이유에서 유신헌법에 의하더라도 당시 발령된 긴급조치가 발령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영장주의를 전면 배제하는 등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 점이 위헌성이 인정되는 핵심적인 원인으로 제시된 사정을 고려하면 긴급조치 제1호와 긴급조치 제4호 역시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법무부는 긴급조치 제1호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민주화운동가 고 장준하

선생의 유족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전향적으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로 하고 2022. 11. 2.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약 9년 이상 진행된 소송을 조속하게 종결짓고 피해를 회복시키기로 결정한 것을 비롯하여, 동일한 쟁점으로 계속 중인 사건들에 대하여 국가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기계적 상소를 지양하고, 법원의 화해·조정에도 적극적으로 임하였다.

다. 성과 및 향후 계획

변경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쟁점이 동일한 사건들 중 상식과 정의의 관점에서 국가가 항쟁함이 적절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들의 고통, 신속한 피해 회복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분쟁을 조속히 종결하기로 전향적인 결정을 하였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법무부는 현재 계속 중인 긴급조치 위반 관련 국가배상소송에서도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여 나갈 예정이며, 한편 법무부는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 종래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미 원고 패소로 확정된 당사자들에 대하여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국가배상을 받게 된 당사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구제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 구제방안에 대한 모색도 계속하여 나갈 예정이다.

18. 수사기관 과오가 명백히 확인된 사건에 대한 배상 및 사과

국가소송과 검사 김영준

가. 추진배경

유죄가 확정된 사건들 중, 수사기관의 불법구금, 가혹행위 등 수사기관의 과오가 명백하게 밝혀져 이를 이유로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거나, 추후 진실이 밝혀지는 사건들이 존재한다. 특히 근래에는 과거 화제가 되었던 사건 중 억울한 피해자가 누명을 쓰고 중형을 선고받은 뒤 장기간 복역하였는데 뒤늦게 진범이 밝혀진 사안에 대하여 신속한 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상황이었다.

나. 추진경과

법무부는 수사기관의 재수사,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등을 통하여 수사기관의 과오가 명확하게 밝혀진 사안에 대하여는 사실관계를 다투지 아니하고, 적정한 배상금이 책정되었다면 신속하게 항소를 포기하여 피해를 회복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일명 '낙동강변 살인사건(1990. 1.경 부산 사상구에서 발생한 강도살인 등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담당 경찰관들의 가혹행위로 허위자백한 뒤 누명을 쓰고 기소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해자 및 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하여 2022. 10. 13. 항소를 포기하였고, 일명 '이춘재화성연쇄살인사건(1986~1991년경 이춘재가 경기도 화성시 일원에서 총 14명의 피해자를 성폭행·살해한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들의 불법 체포·구금 및 가혹행위로 허위자백한 뒤 누명을 쓰고 기소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해자 및 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2022. 12. 1. 항소를 포기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국가를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공표하였다.

다. 성과 및 향후 계획

국가의 명백한 잘못으로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사건에 대하여, 법무행정의 책임자인 법무부장관이 공식적인 사과의 메시지를 냄으로써 국가의 과오를 소상하게 알렸고,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당사자들에게 신속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에도 법무부는 오직 상식과 정의를 기준으로 법무행정을 추진함으로써 국가기관의 명백한 과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19. 국고손실 환수송무 적극 추진

국가소송과 행정사무관 강형광

가. 추진배경

국고손실 환수소송이란 국가를 상대로 한 재산범죄, 국가가 발주한 시설공사·물품구매 관련 입찰담합 등으로 인해 국고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원고가 되어 제기한 민사소송을 의미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소송으로서 수행·관리된다. 국가는 국고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 과징금 등의 수단을 통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으나, 손실액의 완전한 환수를 위해서는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민사적 환수방안, 즉 국고손실 환수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가 수행하는 국고손실 환수송무는 각 소관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환수소송을 적극적·체계적으로 수행하여 국고손실 환수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2015. 9. 22. 법무실 국가소송과에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을 출범한 바 있다.

나. 추진경과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은 출범 이래 국가 상대 입찰담합 사건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등 의결서 및 부패비리 사건에 대한 형사판결문 등을 검토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환수가능 사례를 발굴하는 등, 국고손실 환수소송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20년 법무부의 국가소송 승인권한이 확대된 이후, 중요 소송행위에 대한 적절한 승인을 통해 소 제기 및 환수 뿐만 아니라, 소송수행 전(全) 단계에 걸쳐 실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다. 추진성과

2022년,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은 환수가능 사례 발굴 및 소송 수행 지원을 위해 환경부 등 유관기관 및 환수소송 대리인 등과 실무자 협의회를 개최하고 업무협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각급 검찰청 등의 업무협조를 통해 부패·비리, 입찰담합 사건 관련 의결서·판결문 및 형사판결문 등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총 15건의 환수소송 제기를 승인하였다.

또한, 국군재정관리단 건설공사 입찰담합 사건, 4대강 사업 입찰담합 사건, 문화재청 건설공사 입찰담합 사건, 우체국 보험사기 사건 등에서 2022년 한 해 동안 총 87억 5,929만 원을 환수하였다.

라. 향후 계획 및 기대 성과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은 더욱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환수사례 발굴과 환수소송 수행을 위해 소관부처, 관계기관 및 각급 검찰청과 상시적 협업을 통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보다 효율적인 환수가 이루어지도록 학계 등과의 교류를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환수소송 전 단계에 걸친 종합적 대응체계를 갖춰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여 국가기능의 정상적 작동에 기여하고, '부패와 비리로 얻은 수익은 반드시 환수된다'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한다.

20. 선진적인 국가송무 수행을 위한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의 지속적 개선

국가소송과 검찰사무관 유영걸

가. 국가송무정보시스템 개요

법무부는 국가송무의 규모 증대 및 전문화, 전자소송 활성화, 교통·통신수단 발달 등 현대의 급변하는 송무환경에에 대응하여 국가송무 관련 정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국가송무정보시스템(National Database System on Litigation, NDSL)'을 구축하고, 2016년 9월 전체 행정기관을 수행청으로 확대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다.

| 그림 2-47 | 국가송무정보시스템 개요



나. 추진 성과

법무부는 201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전문업체와 국가송무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계약을 체결,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소송수행자 지원서비스를 강화하여 소송수행 역량을 제고하여 왔고, 2020년 12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행정소송 지휘 권한을 각급 검찰청의 장에서 법무부장관으로 이관함에 따라 2021년 국가송무정보시스템

데이터 현행화(검찰 사건번호→법무부 사건번호) 및 지역관할에서 사건유형으로 배당체계를 개편하고, 2022년에는 수행청 시스템의 Non-ActiveX 전환 등 주요기능 개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2022년 말까지 행정기관(수행청)은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172,856건의 소송사무 보고서를 전자문서로 작성·처리하였고, 72,079건의 소송문서를 등록하여 지휘청과 공유하였다.

다. 기대 효과

법무부는 국가송무정보시스템에 대한 지속적 유지·보수, 고도화 사업 등을 통해 이용자 편의적으로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이용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시스템의 오류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를 즉각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이용자의 활용률을 제고하는 등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송무행정의 질을 꾸준히 높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휘청은 물론 전체 수행청에 걸친 국가송무의 통일적·효율적·체계적 관리가 가능하게 하고, 국가송무 관련 판례 등 정보·지식 관리·공유를 통하여 소송 대응 및 수행 능력 향상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법무부 등 승인·지휘청은 시스템을 통해 수행청의 국가송무 수행실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그에 따른 적절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1. 행정소송 및 헌법재판 대응 업무의 효율적 수행

● 행정소송과 행정사무관 차유진·법무관 이주승

가. 개요

행정소송은 공권력의 행사가 법령에 부합하고 공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행정소송은 소송의 형태가 다양하고 소송유형별 독자적 법리가 적용되는 등 다른 법률 분야에 비해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나아가 행정법이 규율하는 대상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행정소송 사건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2020년 12월 28일 국가 송무행정의 컨트롤타워로서 송무심의관실을 신설하고 전국 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에 위임된 행정소송 지휘 권한을 법무부로 이관하였으며, 변호사 자격자인 송무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2022년에는 기존 지역별 업무 분담을 공정거래, 조세, 노동·인사징계, 금융, 건설·부동산, 특허·일반행정의 6개 전문분야로 나누어 팀별로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소송 지휘 및 수행에 있어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가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인 중요사건에 대한 집중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법무부는 향후 국가 송무행정 시스템의 고도화·체계화를 통해 소송수행청에 대한 보다 실질적·효율적인 소송지휘를 추진하고 전문성에 기반하여 소송수행청의 송무역량 강화를 지원하며, 소송 진행 과정에서 소송수행청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적극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

나. 집중적인 중요사건 지휘·관리 방안 마련

2022년 8월 국가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 또는 국가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등에 관해 일반 행정소송과 달리 행정소송 제기 단계부터 집중 관리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중요사건 지휘·관리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하였다.

'중요사건 지휘·관리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소송 제기 단계부터 중요사건 여부를 판단하여 지정하고, 중요사건의 행정소송 절차 전반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것이다.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중요사건 198건을 지정하여 집중 관리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공정거래, 조세, 금융 등 각 전문분야별로 매주 중요사건 기일 등 진행상황을 현행화하고, 현행화된 목록을 토대로 담당자는 기일 전 서면 및 증거자료 등을 검토하여 점검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담당자가 점검표 작성 과정에서 소송수행자에 대한 유선 지휘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소송수행자가 지휘받은 사항을 이행하도록 점검하고 있다.

다. 송무업무 수행(효율적·통일적 행정소송 지휘·감독, 직접수행)

1) 개관

국가송무체계 개선으로 전국 검찰청에 위임되어 있던 행정소송 승인·지휘 권한이 모두 법무부로 일원화됨에 따라 행정소송 지휘, 중요 사건 지정·관리 등 행정소송 업무 전반을 법무부가 직접

수행하고 있다.(10. 국가송무의 효율적·통일적 수행 – 가. 국가송무체계 개선 추진 부분 참고)

행정소송 지휘 권한이 법무부로 일원화된 이후 공정거래, 조세, 노동·인사징계, 금융, 건설·부동산, 특허·일반행정 6개 전문분야별로 공통적인 법리적 쟁점이 문제 되는 행정소송 사건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기준에 의한 행정소송 지휘·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

2022년 12월 말 기준 진행 중인 행정소송 사건은 42,736건으로, 전년 대비하여 약 4.3% 증가하였다. 행정소송 신건 접수 건수는 2014년 및 2020년 소폭 감소한 것 외에는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22년 12월 말 기준 사건 처리 건수는 15,561건이다.

행정소송 접수 및 처리현황은 〈제5장 통계 : 표 5-16〉과 같다.

2) 주요 행정소송 직접수행·지휘 사례

가) 박○○ 취업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직접수행

(1) 사건 개요

원고는 ○○석유화학 회장으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으로 2018년 11월 29일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형이 확정되어 같은 법 제14조에 의해 관련 기업 취업이 제한되었고, 2020년 5월 26일 피고 법무부장관에게 취업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원고는 집행유예 기간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취업제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위 취업불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2) 소송 진행 경과

- 2020. 6. 16. 원고 소 제기
- 2021. 2. 18. 1심 판결선고 **[피고 승소]**
- 2022. 5. 19. 2심 판결선고 **[피고 패소]**
- 2022. 5. 31. 피고, 상고 제기
- 2022. 10. 27. 상고심 판결선고 **[피고 승소]**
  *** (상고심 판결 요지) 피고의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함**
- 파기환송심 진행 중

(3) 법무부 직접수행 사항

2심 판결의 요지는 취업제한 기간의 시기(始期)는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이므로 집행유예 기간이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해석 범위를 벗어나고 이를 전제로 한 취업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문언적·체계적·합목적적으로 해석하는 경우 취업제한 기간의 시기(始期)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이므로 원심판결은 취업제한 기간의 시기(始期)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고, 상고심은 피고의 상고가 이유 있음을 이유로 피고 승소 취지로 판결하였다.

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 지휘

(1) 사건 개요

원고는 2021년 4월 29일 코로나-19 예방접종(아스트라제네카)을 한 후 양 하지 온도 감각 이상 및 어지러움 등 증상으로 2021년 5월 28일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등을 진단받았다. 이에 원고 측은 2021년 5월 28일 피고 질병관리청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진료비 및 간병비 피해보상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백신의 접종과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2) 소송 진행 경과

- 2022. 2. 10. 원고 소 제기
- 2022. 8. 19. 1심 판결선고 **[피고 패소]**
  *** (1심 판결 요지) 예방접종 외 다른 원인 가능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점 등 고려할 때 인과관계 인정됨**
- 2022. 9. 5. 피고 항소 제기
  *** (항소 제기 이유) 접종 외 다른 원인에 의하여 증상이 발현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투기 위함**
- 2022. 11. 9. 피고 항소 취하 및 확정

(3) 법무부 지휘 사항

2022년 9월 5일 항소 제기 이후, 질병관리청은 인과관계를 재검토하기 위하여 신경과 분야 자문회의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증상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관련성 의심질환(길랑바레증후군)으로 추정가능하다는 자문의견이 새로이 제시되었으며,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재처분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변경을 고려하여 법무부는 분쟁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수행청(질병관리청)에 대해 항소를 취하할 것을 지휘하였다.

다)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지휘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4년 11월 24일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20년 2월 12일 약 14억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하면서,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납부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 외에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대치동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9년 9월 8일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으로 대치동 주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틀 후인 2019년 9월 10일 곧바로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대치동 주택의 내부 수리 및 인테리어 공사 진행을 이유로 이 사건 주택의 잔금지급 및 인도일을 위 대치동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48일 후로 정하였다.

이에 피고 삼성세무서장은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아 양도차익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0년 9월 11일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서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며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2) 소송 진행 경과

- 2021. 9. 28. 원고 소 제기
- 2022. 12. 7. 제1심 판결선고 **[피고 패소]**
  - * **(1심 판결 요지) 원고는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으로서 대치동 주택을 취득하여 이사하였으므로 투기목적이 없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 2022. 12. 28. 피고 항소 포기 및 확정

(3) 법무부 지휘 사항

수행청은 최근 하급심이 '특별한 사정' 여부를 엄격히 해석하고 있다는 이유로 항소 제기 의견이었으나,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위 대치동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거주자에게 투기목적이 없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는 명백한 대법원 판례 법리가 존재하므로,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 방지, 소송비용 절감, 납세자의 권리 구제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수행청 의견과 달리 항소 포기할 것을 지휘하였다.

3) 소송수행청에 대한 송무 지도·점검 강화

소송수행청의 송무업무 수행의 적정성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소송수행청을 정기적으로 현장 방문하여 소송업무 처리의 적법성·적정성을 제고하고 있다. 주요 소송수행청을 방문하여 소송업무 수행 실태(기록관리상황, 소송대리인 선임현황, 소송비용 회수현황 등)를 조사·점검하고, 소송수행청의 건의사항 및 의견을 청취하여 송무행정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22년도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64개 기관에 대한 송무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향후 주요 소송수행청, 소송수행해태가 빈번한 기관 등을 중심으로 하되, 점진적으로 송무 지도·점검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상시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소송수행청과의 긴밀한 협력뿐만 아니라 더욱 내실 있는 송무업무 관리·감독이 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라. 헌법재판 업무 수행

1) 개요

헌법재판제도는 헌법의 해석·적용상 분쟁이 발생하거나 헌법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헌법규범을 기준으로 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확립해 오고 있는바,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법무부는 헌법소송 주무부처로서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사건에서 의견서를 작성·제출하고 필요 시 공개변론에 참석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권한쟁의심판에서 정부가 당사자인 경우 정부를 대표하고 있다. 또한 의견서 작성 과정에서 회의 개최 등을 통해 유관부처와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금까지 법무부는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헌법재판에서 입법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정책적 필요성 등 정부의 입장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가정책의 수립·시행에 앞서 그것이 헌법과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들에게 정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는 노력 또한 지속할 예정이다.

2) 주요 헌법소송 대응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개정 형사소송법 등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2022헌라4)에서는 법무부 내 TF를 구성하여 심판청구서부터 변론요지서, 답변서 등 각종 서면을 작성·제출하는 등 권한쟁의심판에 적극 대응하였다. 또한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41조 제1호 등에 대한 위헌소원(2019헌바59),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 등에 대한 위헌소원(2017헌바42 등) 사건에서는 이해관계인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수차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형제 및 국가보안법 위헌소원 등에서는 공개변론에 참석하여 충실히 대응하였다. 2022년 12월 말 기준 법무부의 의견서 제출 건수는 총 77건이다.

3) 위헌법률심판 수행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당해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제도이다. 법무부는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법무부 소관 법령뿐만 아니라 타 부처 주요 법령의 위헌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으로서 심판대상 법령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2022년에는 총 37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이 처리되었는데 그 중 합헌 7건, 각하 2건, 위헌 17건, 헌법불합치 8건이 선고되었으며, 주요 사건은 다음과 같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주취운전금지 2회 이상 위반에 대한 벌칙) 위헌제청 (2022. 8. 31. 2022헌가18 등 3건 병합) : 위헌
- 「구 공무원연금법」 제59조 제1항 제2호 (재혼 시의 유족연금 등 수급권 상실) 위헌제청 (2022. 8. 31. 2019헌가31) : 위헌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2항(아동학대 행위자 등의 인적사항·사진 등의 방송 금지) 위헌제청 (2022. 10. 27. 2021헌가4) : 합헌
-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의 공무원 당연퇴직) 위헌제청 (2022. 12. 22. 2020헌가8) : 위헌

4) 헌법소원 수행

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과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된 경우에 제청신청 당사자가 제기하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으로 나눌 수 있다.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이해관계인으로 지정된 사건 등에 관하여 의견서를 작성·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하였다. 2022년에는 총 2,634건의 헌법소원 사건이 처리되었는데, 그 중 합헌 등 330건, 각하 등 2,237건, 위헌 등 31건이 선고되었으며, 주요사건은 다음과 같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절차 종료결정 (가습기 살균제 사건) 위헌확인 (2022. 9. 29. 2016헌마773) : 일부 위헌
- 「민법」 제809조 제1항 등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 금지 및 그 위반 시의 혼인 무효) 위헌소원 (2022. 10. 27. 2018헌바115) : 합헌/헌법불합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등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 청구권자) 위헌확인(2022. 11. 24. 2021헌마130) : 합헌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호 (대통령 관저 인근 옥외집회·시위 금지) 위헌제청 (2022. 12. 22. 2018헌바48 등 2건 병합) : 헌법불합치

22. 통일 대비 법적·인적 기반 구축

가. 통일 대비 법제연구 강화

통일법무과 서기관 한경태

1) 추진배경

비록 남북관계의 정체 국면이 계속되고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남북간 교류협력이 진행되지 못하였지만, 어려운 상황일수록 남북대화의 재개와 남북관계의 발전을 준비하고 주도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선제적인 법제 정비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2) 추진내용

2022년 6월, 법무자문위원회 산하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후 심층적인 통일법무 자문 및 연구 활동을 진행하였다. 2022년 11월에는 '북한 민사법의 최근 동향'을 주제로 제50차 학술회의를 개최하였으며, 12월에는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안전망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51차 학술대회 개최하여 위원회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였다.

| 그림 2-48 | 2022년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구성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위촉식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위촉식

| 그림 2-49 |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학술회의, 학술대회



제50차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학술회의



제51차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학술대회

2022년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등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관련 법령 제·개정안 63여건을 검토하였으며, 나아가, 북한의 체제전환 및 통일 대비 연구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베니스위원회(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 The 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의 2021년 활동내역을 검토하여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 2021년 연례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또한 통일법무과에서는 남북관계의 현황, 남북합의서와 공동보도문, 통일방안,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제 등을 상세히 담아 「통일법무 기본자료(남북관계)」라는 자료집을 발간해오고 있다. 2022년에는 2017년 이후 이루어진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남북합의서와 그 이행을 위한 세부합의서, 남북교류협력 법제의 개정내용을 보완하여 「2022 통일법무 기본자료(남북관계)」를 발간하였다.

| 그림 2-50 | 연구자료 발간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 2021년 연례보고서



2022 통일법무 기본자료(남북관계)

한편, 2010년 2월 창간한 통일법 전문 학술지(계간지) 「통일과 법률」을 2022년 2월 제49호부터 11월 제52호까지 발행하여 통일법제 연구의 법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였다.

호당 연구논문 3~4편과 실무연구, 남북관계 동향 등을 게재하였으며, 특히 제51호에는 통일부장관 축사와 이종석 헌법재판관의 특별기고를 실어 통일법제에 관한 관심을 환기하고 원고의 다양성을 제고하였다.

| 그림 2-51 | 「통일과 법률」 발간



「통일과 법률」 제51호



통일부장관 축사



이종석 헌법재판관 특별기고

3) 주요성과 및 평가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운영, 남북관계 관련 법령 제·개정안 검토, 「통일과 법률」 발간 등을 통하여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을 대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나. 통일법제 전문가 양성

● 통일법무과 행정사무관 장윤정, 행정주사 박보경

1) 추진배경

남북관계의 변화와 통일에 대비하여 관련된 다양한 법적 쟁점을 다룰 수 있는 법률전문가를 양성하고 신진 연구인력을 발굴하여 통일법제 연구의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통일법무과는 매년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와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을 진행하며 통일법제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2) 추진내용

2022년에는 「제12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를 운영(10.17.~12.5.)하여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생, 공무원 등 수강생 90여 명을 대상으로 통일법제 교육을 실시하였다.

총 6강으로 준비된 제12기 아카데미에서는 미래 통일법제의 주요 법적 쟁점과 방향에 대한 최고 전문가들이 강연하였다. 강연은 '바람직한 대북정책과 한반도의 미래'(김병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북한의 법체계와 법률 통합'(이효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남북한 분쟁 해결방안 및 사례'(권은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한반도 평화체제와 법'(도경옥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장) 등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특히, 권영세 통일부장관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방향과 법조인들의 역할'을 강연하였고, 2023년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정전협정의 과거, 현재 및 미래'(남성욱 고려대학교 통일외교학부 교수) 주제가 신규 편성되었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온라인 교육만 실시해 왔으나 제12기 아카데미는 대면교육과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을 도입하여, 강연자와 수강생 간 소통의 통로를 다양화하였다.

그 결과 제12기 아카데미 수료생은 총 75명으로 역대 최다 인원이며, 강연별 수강생 만족도 평균은 전년 대비 7.25점 상승한 92.30점을 기록하였다.

※ 역대 아카데미 수료 인원 : 1기 61명, 2기 67명, 3기 53명, 4기 52명, 5기 50명, 6기 30명, 7기 33명, 8기 26명, 9기 35명, 10기 68명, 11기 72명

| 그림 2-52 |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운영



제12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포스터



제12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법률신문 광고



제12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법무부차관 축사



제12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통일부장관 강연

2022년 6~10월에는 '제4회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통일법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신진 연구인력을 발굴하기 위한 취지로 매년 1회 개최되는 논문 공모전은 통일·남북관계법제 및 북한법제 관련 자유 주제로 응모가 가능하다.

약 4개월간의 공고 및 홍보를 거쳐 20여 편의 논문들이 접수되었고, 심사를 거쳐 2022년 11월 최우수상 1편("북한 자금세탁방지 법제의 개선방안 검토")과 우수상 2편("통일 대비 남북한의 행정상 불복방법에 관한 연구", "북한법령 관련 우표의 연혁과 상징전략 연구")에 대하여 시상하였다. 수상작들은 「통일과 법률」 제53호(2023년 2월호)에 게재할 예정이다.

| 그림 2-53 |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 개최



제4회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 포스터



제4회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 시상식

3) 주요성과 및 평가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운영,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 개최 등을 통하여 통일 대비 법률전문가를 꾸준히 양성하고 통일법 연구의 저변을 확대하여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을 대비한 인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였다.

23. 북한주민의 재산권 보호

통일법무과 행정사무관 김태희

가. 추진배경

북한주민이 상속·유증 등으로 취득한 남한 내 재산을 효율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 2012년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최근 관리재산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북한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충실한 감독조치의 필요성이 커졌다.

나. 추진내용

2012년 설치한 '북한주민 재산관리 민원접수센터'를 통해 북한주민 재산관리인의 선임·사임·변경 신고 및 북한주민 재산목록 신고 등을 접수하여 충실히 점검하고 있다. 관리재산 규모의 증가에 대응하여 재산관리인의 각종 허가신청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으며, 특히 대규모 금융재산의 인출·보관을 실시간으로 점검하여 현금자산의 유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다. 주요성과 및 평가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른 재산관리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 재산관리인의 각종 신고·허가신청에 대한 엄격한 감독과 법리검토를 진행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용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하고 있다.

24. 위기 북한이탈주민 발굴·지원 중심 법률지원

통일법무과 사무관 이예은

가. 추진배경

북한이탈주민은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며 문화적 차이, 경제적 어려움, 각종 정보 부족 등으로 한계 상황에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는 위기 상황에 놓인 북한이탈주민을 적극 발굴하고 손을 내밈과 동시에, 법률지원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는 촘촘한 법률지원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나. 추진내용

1) 생활밀착형 법률지원 강화

경제적 곤란, 질병, 고립 등에 더불어 법적 문제로 인해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변호사를 1:1로 매칭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제도를 적극 시행하였다.

2022년 9월에는 그간의 운영결과를 검토하고 관계기관 및 지원변호인들과의 간담회를 거쳐 지원변호인 매칭을 보다 전문화하고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편을 진행하여, 보다 실효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하였다.

더불어 개인회생·파산, 의료분쟁 등의 매칭가능한 전문분야의 확대와 지원변호인 분포의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변호인 추가 모집 절차를 진행하였다(2023년 초 위촉 예정). 2022년 12월 기준 35명의 지원변호인이 위촉되어 있으며 북한이탈주민 13명이 매칭되어 있다(종결 건 포함 총 46명 지원).

〈지원사례〉

- 계약 분쟁의 원만한 해결과 일상 지원(9개월 지원)
  - 지원대상자의 계약 해지 관련 상당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업체와 직접 연락하여 대상자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점, 계약관계에 대해 무지한 점 등을 설명하여 위약금 없이 원만하게 계약해지
  - 이후 일상 공유를 통해 지원대상자의 수술 및 의료비 지원 조력, 코로나 확진 및 후유증에 따른 생활비 및 진료비 지원 신청, 자녀 중학교 진학 및 탈선행위 관련 법적 자문 제공, 가족 탈북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계약 검토 등 생활 전반에 걸친 법적 조력 진행
- 가정사건 지원(7개월 지원)
  - 지원대상자가 양육비 지급 및 면접교섭 관련 2심 및 폭행치상 가해자로 형사 1심을 홀로 진행 중이었으나, 지원변호인이 직접 사건들을 무료 수임
  - 직접 전처와 자녀들을 만나 중재하며 가사소송의 경우 1심보다 지원대상자에 유리한 결론을 도출하였고 폭행치상의 경우 폭행부분만 유죄 판결(벌금형)로 마무리
  - 이 과정 중 지원변호인과의 지속적인 대화 및 가족간 식사활동을 통해 자녀 양육비 지급 및 면접교섭의 중요성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지원대상자가 아빠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 중

'북한이탈주민 전담 법률상담관'*은 전화 및 통일법제 DB 홈페이지를 통한 법률상담을 상시 진행, 2022년 12월 기준 총 206건의 법률상담을 진행하였다.

나아가 2022년 10월부터는 카카오톡 상담과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방문상담을 새로이 실시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법률지원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원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방문상담의 경우 정기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주요 거주지역 및 법률상담이 저조한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방문할 예정이다.

* 기존 '북한이탈주민 전담 법무담당관'에서 명칭 변경

| 그림 2-54 |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법률상담



경기동부하나센터 방문상담



서울남부하나센터 방문상담

한편,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변호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2022년 11월 지원변호인, 하나센터 담당변호사 등 법조인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교육'을 실시하였다. 현장강의와 함께 온라인 동시중계로 실시된 해당 교육에는 209명의 변호사가 참여하였다.

| 그림 2-55 |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교육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교육 현장

2) 적극적인 제도 홍보를 통해 취약 북한이탈주민에 손내밀기

2022년 11월, 남북하나재단이 발간하여 북한이탈주민에게 배포하는 「동포사랑」(정착사례·지원제도 등을 소개하는 격월간지)에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제도와 실제 지원사례, 법률상담 신청방법을 소개한 기고문을 게재하였다(2023년 1/2월호까지 게재 예정).

더불어, '북한이탈주민 전담 법률상담관' 상담방법을 소개한 포스터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법률상식과 법률지원제도를 소개한 리플릿을 제작하여 전국 하나센터와 북한이탈주민에게 배포하였다.

| 그림 2-56 |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제도 홍보



「동포사랑」 기고문



'북한이탈주민 전담 법률상담관' 홍보 포스터



법률지원 홍보 리플릿

다. 주요성과 및 평가

위기 북한이탈주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여 취약계층 북한이탈주민 대상 법률안전망을 확충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법률지원 기반을 강화하였다. 위기 북한이탈주민을 먼저 발견하고 선제적으로 지원의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률상담의 접근성을 보강하고 법률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25. 상사법의 체계적 정비 등 기업법제 개선

상사법무과 행정사무관 김택현

가. 주요 추진사항

1) 물적분할 시 주주보호 강화 방안 마련

2)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3) 개정 상법의 취지에 따라 배당절차 개선

나.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1) 물적분할 시 주주보호 강화 방안 마련 추진

근래 핵심사업부를 물적분할 방식으로 분사 및 동시상장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분할회사 주주의 주식가치 및 투자자 신뢰 훼손 논란이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물적분할 시 주주보호 강화 방안 마련이 국정과제(『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중 '물적분할 관련 주주 보호')로 지정되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하여 상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2022년에 입법연구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한편 대학교수,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총 11인의 상법 전문가로 구성된 '상법 특별위원회'를 통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2)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추진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환경에서의 주주총회 필요성이 부각되었고, 현행 주주총회 제도가 글로벌 스탠더드('22년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 개정안은 주주총회 내실화 및 개최 비용 절감을 위해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권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의 상황에서 법무부는 전자주주총회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22년에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주제로 한 다수의 세미나 및 포럼을 개최하고 입법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상법 특별위원회'를 통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3) 개정 상법의 취지에 따라 배당절차 개선

우리나라는 배당률이 저조하고 先배당기준일/後배당결의 관행에 따라 배당 예측가능성도 낮아, 주주권리 보호가 부족하고 매매차익을 노린 단기투자가 다수인 실정이다. 법무부는 2020년 개정 상법(배당기준일을 결산기 말일로 전제한 구 상법 제350조 제3항 삭제 등)의 취지에 따라 先배당결의/後배당기준일 방식이 확산되고 현물배당이 활성화되도록 배당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며, 그 일환으로 2023. 1. 31.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그림 2-57 | 상법특별위원회 위촉식 및 「주주총회 프로세스의 전자화」를 위한 선진법제포럼 개최



상법특별위원회 위촉식



「주주총회 프로세스의 전자화」를 위한 선진법제포럼 개최

다. 평가 및 발전방향

1) 물적분할 시 주주보호 강화 방안 마련 추진

물적분할 시 주주보호 강화 방안에 관한 상법 개정 추진은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경제 기본법인 상법에 주주 보호방안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최근 주식투자 인구가 급속히 증가한 만큼 상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다수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우리나라의 기업환경, 상법의 규정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주주의 이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2)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추진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에 관한 상법 개정 추진은 '이에스지(ESG)' 경영이념 하에서 요구되고 있는 '주주가치 극대화'에서 '주주복지 극대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도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국내기업 중 약 90%가 주식회사인 상황에서, 자유시장경제의 법질서 인프라를 선진화시키기 위하여는 주주총회 등 주식회사의 주요 요소에 관한 법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하며, 법무부는 그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3) 개정 상법의 취지에 따라 배당절차 개선

배당절차 개선 추진은 우리나라의 배당실무 관행이 장기간에 걸쳐 공고화된 관계로 상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처럼 운영되고 있던 배당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기업들의 정관개정 등을 거쳐 이르면 2024년부터 배당실무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이 시장에 안착하여 기업의 배당성향이 제고되고 장기 배당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할 것이다.

26. 기업환경지수 개선 사업 추진

상사법무과 검사 정성두

가. 기업환경지수 개선 목적 및 필요성

세계은행(World Bank)은 매년 190개국의 기업환경지수를 평가하여 국가별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기업환경지수는 기업의 경영 환경을 소수투자자보호, 계약분쟁해결절차, 자금조달 등 10개 분야로 나누어 지수화 한 것으로 매년 10월 경 분야별 순위 및 종합 순위가 발표된다. 법무부는 10개 분야 중 4개 분야(소수투자자보호, 계약분쟁해결절차, 자금조달, 도산)를 담당하고 있다. 기업환경지수는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국 선택과 관련한 주요 참고 자료로 해외 자금의 유치를 위해서 지속적인 관리 및 개선이 필요하다.

2019. 10.까지 발표된 세계은행 기업환경지수 평가대상 190개국 중 6년 연속하여 종합순위 5위를 기록하였다. 특히 법무부가 담당하고 있는 분야인 '계약분쟁 해결절차'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제도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되어 세계 190개국 중 2위를 지켰다. 이는 법무부가 2011년부터 기업환경 개선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세계은행에 개선 내용을 설명하는 등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이다.

한편, 세계은행은 2021. 9. 기업환경 평가(EoDB) 관련 업무를 중단하고 2022년 새로운 평가체계인 신기업환경평가기준(Business Enabling Environment, BEE)의 개요를 새롭게 발표하였다. 이에 법무부는 2022. 11. 워싱턴 D.C.에 위치한 세계은행을 방문하고 현지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여 세계은행 관계자 및 국내외 전문가들과와 교류하였다. 또한 2022. 12. 서울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여 각국의 법률가 및 유관부처의 실무자와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연구와 의견교환을 하였다. 이러한 노력이 기업활동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이어져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마련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표 2-19 | 2020년 기업환경지수 주요 국가 종합순위

국 가	뉴질랜드	싱가포르	홍콩	대한민국	미국	영국	일본
순위	1위	2위	3위	5위	6위	8위	29위

| 표 2-20 | 2020년 기업환경지수 계약분쟁 해결절차 분야 주요 국가 순위

국 가	싱가포르	대한민국	노르웨이	미국	러시아	영국	일본
순위	1위	2위	3위	17위	21위	34위	50위

* 2021년 이후 기업환경지수 결과 미발표

나. 워싱턴 D.C. 현지세미나를 통한 기업환경 개선 내역 홍보

세계은행은 2022년 신기업환경평가기준(BEE)을 새롭게 발표하고 기존 기업환경평가기준(EoDB)와 평가방식을 달리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새로 출범한 신기업환경평가기준(BEE)에 의하면 법무부는 4개 분야(기업 입지, 금융 서비스, 분쟁해결, 기업 도산)을 담당한다. 세계은행은 2023년 1차로 50여개 국가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신기업환경평가기준(BEE)에 의한 평가 대상을 확대할 예정으로 우리나라는 2024년부터 평가가 예정되어 있다.

이에 법무부는 세계은행이 위치한 워싱턴 D.C.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여 세계은행 관계자와 기존 기업환경 사업내역을 공유하는 한편, 신기업환경평가기준(BEE)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법제개선사업(Technical Assistance)제도를 운영하는 ILI를 방문하여 기업환경개선 사업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례를 학습하는 등 기업환경지수를 개선하기 위한 역량을 확충하였다. 현지의 전문가들과 교류하면서 기업환경 개선 내역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BEE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고 있다.

| 그림 2-58 | 2022 워싱턴 D.C. 세미나 개최



워싱턴 D.C. 세미나 개최



워싱턴 D.C 세미나 법무부 발표

다. 국제 컨퍼런스 개최를 통한 기업환경 개선 방안 모색

법무부는 우리나라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2022. 12. 8. 서울 호텔 나루에서 2022년도 기업환경개선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기업환경개선 국제 컨퍼런스는 세계은행이 평가하는 기업환경지수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활력 넘치는 기업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회의이다.

본 회의에는 유엔상거래법위원회 관련 전문가, 세계은행그룹 전문가와 일본·인도네시아·필리핀 등 세계 각국의 기업환경 관련 법제 전문가 및 국내 전문가 등 총 40여 명이 현장 및 화상으로 참석하여 기업환경 현황과 신기업환경평가기준(BEE)에 대하여 논의하고 각국의 대응방안을 공유하였다. 회의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은 각국의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될 것이며, 법무부는 이를 토대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 그림 2-59 | 2022 기업환경개선 국제 컨퍼런스 개최



기업환경개선 국제 컨퍼런스 개최



기업환경개선 국제 컨퍼런스 기획조정실장 축사

27. 스타트업 법률지원제도 운영 및 활성화 추진

상사법무과 검사 정성두·서기관 김진원·법무관 김영근

가. 법무부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법무부는 경제 주체들이 현장에서 겪는 법률적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9. 1. 21. 상사법무과장을 단장으로 하여 검사 1명, 사무관(변호사) 1명, 공익법무관 3명으로 구성된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을 발족하였다. 그 후 법무부는 2009. 3. 12. 중소기업청(現 중소벤처기업부) 및 대한변호사협회와 중소기업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로 구성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을 구성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법률지원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법무부는 2020. 7.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여러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의 도산 관련 법률자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산 사건에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 25명을 추가 위촉하였다. 그리하여 법무부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은 2009년 법률상담 484건을 시작으로, 매해 전화·인터넷을 통한 법률상담을 처리해오고 있다. 그 중 실제 변호사 선임을 통해 처리가 필요한 사건은 자문단에 의뢰하고 관련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최근 3년 11건의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든든한 법률지원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무부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이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수동적 법률지원이라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법무부는 2010. 1. 부터는 중소기업의 일선 경영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중소기업에 필요한 법무지식 강연 및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현장방문 강연 및 법률상담'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들이 법률분쟁 상황에서 상시 참고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강연』 단행본, 9988법률지원단 절차 안내 리플렛, 『법률분쟁 상황에서 점검해야 하는 체크리스트』 소책자들을 꾸준히 개정하여 발간하고, 이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및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등 유관기관에 배포하였다.이처럼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의 활동은 기업의 경영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나.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중소·벤처기업들은 일반적으로 법률리스크에 대한 인식 정도가 낮고 대응 능력이 떨어져 법률분쟁 발생 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17개 광역시·도에 설치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이용하는 창업 초기 중소·벤처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법률서비스를 체계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2015. 8.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을 발족하였다. 특히 2021. 9. 스타트업 관련 법무에 능통한 전문변호사 21명을 추가 위촉하여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맞춤형 법률지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2022. 12. 법률지원단 소속 전문변호사의 법률지원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률지원 기여도가 높은 2명의 변호사를 선정하여 장관 표창을 수여하는 등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자문단의 질 높은 법률지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중이다.

우수지원 사례로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을 통해 스타트업 기업이 경영 초기 단계에서 창업자간 동업 계약서 및 주주간 계약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받아 이후 경영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 위험을 최소화하여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경우를 들 수 있다.

다.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스타트 LAW)

최근의 제4차 산업혁명·디지털 경제 전환을 위해 스타트업 육성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중소 스타트업의 규모는 날로 커지는 중이지만 이와 비례하여 스타업을 경영하며 발생하는 법률문제 또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법무부도 스타트업 육성에 적극 조력하여 스타트업 창업과 성장을 통한 경제발전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자 스타트업 법률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 일환으로 먼저 2022. 2. 15. 법무부 창업지원 법무플랫폼(스타트 LAW)의 대국민 서비스 개시와 함께 법무부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의 업무도 플랫폼 내에서 지원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법률지원방식의 변경 필요성 또한 발생하여 이를 반영한 법무부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법률지원단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였다.

또한, 법무부 창업지원 법무플랫폼은 2022년 87건의 법률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든든한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무부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제도를 널리 소개하기 위하여 소책자를 발간하고 이를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설치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배포하였으며 네이버 해피빈 광고를 진행하여 약 3만 7천여건의 캠페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등 법무플랫폼 제도의 정착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대표적인 우수지원 사례로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를 통해 초기 스타트업 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사안이 포함되도록 정관의 재·개정에 관한 자문 등 스타트업 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법률지원을 한 경우를 들 수 있다.

| 그림 2-60 | '22. 2. 15.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스타트 LAW) 홈페이지 오픈〉



| 그림 2-61 | '21. 8. 23.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스타트 LAW) 네이버 광고 개최〉



28. 경제 형벌규정 개선

상사법무과 검사 정성두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종래 경제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형사벌로 해결하려는 관행이 있어 과도한 형벌규정이 마련되고 국민들, 특히 기업인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되어 왔다는 비판이 존재하여 온 측면이 있다. 이에 2022. 7. 13. 법무부 차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이 공동단장을 맡고, 관계부처 차관급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TF」가 출범하여 경제 형벌규정에 대하여 행정제재 등 다른 수단으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지, 유사한 법률과 형평성에 맞는지, 해외사례에 비하여 과도한지 등을 검토하는 등 종합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TF」는 2022. 8. 26. 제1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1차 과제(32개 형벌규정) 개선방안을 발표하였고, 현재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경제 형벌규정에 대한 개선 및 서민·자영업자·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을 포함한 2차 과제 개선방안을 검토 중으로, 법무부는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TF」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작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그림 2-62 | 1차 과제 개선방안 중 주요내용

❶ (비범죄화·형벌폐지) 기존 행정제재로 충분히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해당 형벌을 폐지

물류시설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국토부

기존	개선
공사 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류터미널 건설 공사를 시행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형벌규정 삭제 →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사업정지로 제재**

❷ (비범죄화 과태료 전환)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인 경우 질서위반행위로 보아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

공정거래법 제126조 제1~3호 공정위

기존	개선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해 형벌(1억원 이하 벌금)부과 *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의무, 지주회사 사업내용 보고의무, 주식소유·채무보증현황 신고의무	**형벌규정,을 1억원(동일인 등)/ 1천만원(임직원 등) 이하 과태료(행정제재)로 전환**

❸ (합리화: 先행정제재-後형벌전환) 형벌 존치가 불가피하더라도 행정제재를 우선 부과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형벌을 부과

하도급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공정위

기존	개선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도가 비교적 낮은 내국 신용장 미개설 행위 및 계약이행·대금지급 보증 위반 시 벌금형	**형벌부과에 앞서 행정제재 (하도급 대금의 2배 이하 과징금 및 시정명령) 부과**

❹ (합리화: 형벌 형량조정) 처벌이 과도하거나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지 않는 불합리한 형량을 조정하여 합리화

불공정무역조사법 제40조의2 산업부

기존	개선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의 수출·수입 관련 미수범을 본범에 준하여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미수범을 기수범에 준하여 처벌하는 조항을 폐지하고 미수와 기수간 형량 차등화**

| 그림 2-63 |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TF」1차 회의 및 제1차 규제혁신 전략회의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TF」1차 회의



제1차 규제혁신 전략회의

나. 평가 및 발전방향

경제 형벌규정 중 개선이 필요한 규정을 합리화하고, 특히 활용도가 떨어지거나, 기업 뿐 아니라 서민·자영업자 등 국민들의 경제 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규정들을 합리화한다면 국민경제 발전과 기업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TF」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하여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29. 전자어음제도 운영

상사법무과 행정사무관 김택현

가. 전자어음제도 개관

전자어음제도는 약속어음의 발행·유통 및 어음상의 권리행사 등이 모두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제도로서, 전자어음의 발행인은 전자어음을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하여야 하고 배서, 보증, 지급제시 등이 모두 전자어음관리기관이 구축한 전자적 방식의 온라인 시스템상에서 이루어진다.

법무부는 2005년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전자어음제도를 도입한 이래 전자어음의 정착 및 이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기존의 어음은 실물종이

어음으로 발행·유통되어 거래 안전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위·변조 위험 및 보관 문제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였다. 이에 2009. 5. 법률 개정으로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에 대하여 전자어음 발행의무를 부과하였고, 2014. 1. 및 2022. 2. 두 차례의 시행령 개정으로 전자어음 의무발행사업자의 범위를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억 원 이상의 법인사업자로까지 확대함에 따라 종이어음의 전자어음으로의 대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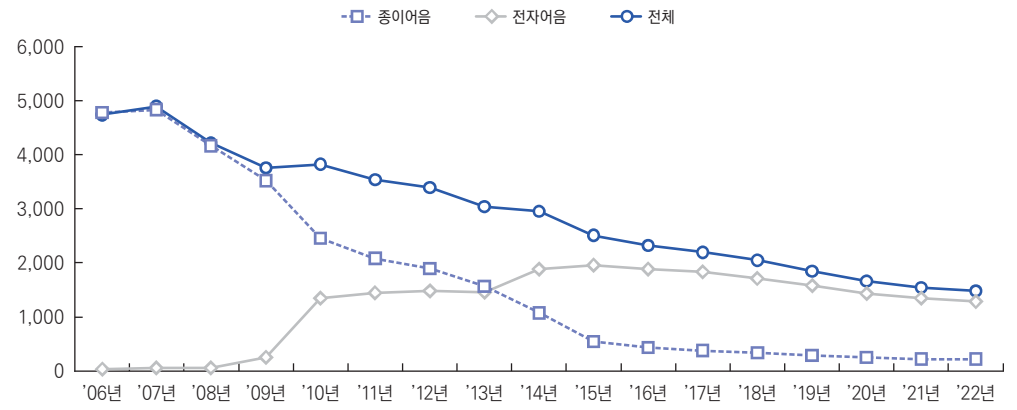
나. 2022년도 전자어음 관련 통계

2022년도에 전체 전자어음은 127만 8,000건(전년대비 약 4.5% 감소), 1,024조 원(전년대비 28.5% 감소) 상당액이 발행되었고, 종이어음을 포함한 전체 약속어음 중 전자어음이 차지하는 비중은 건수 기준 86.5%(전년과 같은 수준), 금액 기준 62.53%(전년 대비 11.8% 감소)의 추이를 보였다. 종이어음은 20만 건(전년대비 4.7% 감소), 613조원(전년대비 4.2% 증가)이었다. 전자어음 전체 발행 건수 중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이 발행한 전자어음의 비중은 82.8%를 기록하였다.

정부가 상생경제, 매출채권보험 등 어음 대체 결제수단 확대를 추진함에 따라 약속어음의 전체 발행규모가 감소하는 추세에서 전자어음의 활용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자어음의 부도율도 최근 5년간 건수 기준 1.12%에서 0.43%로, 금액 기준 0.35%에서 0.05%로 감소하였다. 전자어음이 종이어음을 대체 및 보완하는 안정적인 금융 및 결제수단의 하나로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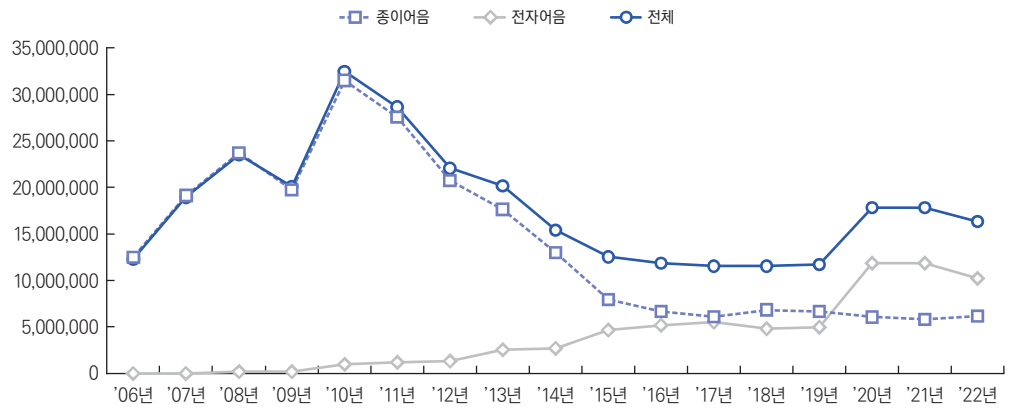
| 그림 2-64 | 종이어음·전자어음 발행건수 추이

(단위:천 건)



| 그림 2-65 | 종이어음·전자어음 발행금액 추이

(단위:억 원)



다. 평가 및 발전방향

전자어음제도의 도입 취지에 따라 전자어음은 중소기업이 상거래 대금 결제를 위하여 발행하는 실물어음(종이어음)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상당 부분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법무부는 향후 전자어음 의무발행사업자의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하고 현행 전자어음제도 자체에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 전자어음의 유통성 및 거래의 안정성을 함께 제고해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30. 전자증권제도 시행

상사법무과 행정사무관 김택현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2019. 9. 16. 기술 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식·사채 등에 관하여 종이 실물을 전제로 한 법률관계 및 거래현상을 선진화하기 위해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였다. 전자증권제도는 주식·사채 등 증권을 전자등록하여 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법무부는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2016. 3. 22.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을 제정하였고, 2019. 6. 25. 동법 시행령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전자증권법이 시행된 2019. 9. 16.부터 상장주식·사채 등은 전면 전자증권으로 전환되었고 신규 발행 시에도 전자증권으로 발행할 의무가 부과됨으로써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었다.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현재 전자등록 관리자산 및 발행회사가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3년 간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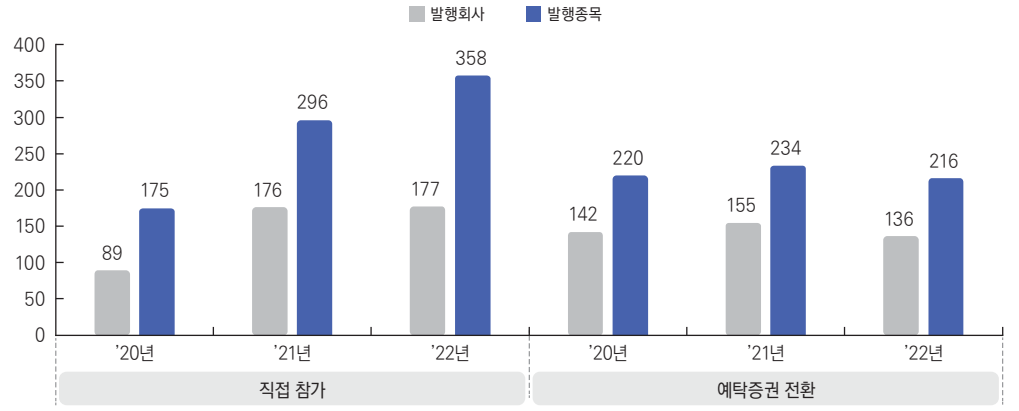
■ **제도 도입('19.9.) 후 3년 간 성과(출처: 한국예탁결제원)**
① 전자등록 자산규모 5,782조 원('22. 9. 16. 기준)
- 전자증권제도 시행일 대비 1,002조 원 증가(증가율 21.0%)

② 전자증권제도 이용 발행회사(주식) 총 3,099개사('22. 9. 16. 기준)
- 상장회사 2,524개사(유가증권 822개, 코스닥 1,577개, 코넥스 125개), 비상장회사 575개사
- 비상장회사(주식)의 전자증권제도 참가 지속적 증가(전자증권제도 시행일 대비 참여율 14.4% 증가)

③ 상장주식 실물주권 발행률 감소('21. 9. 기준 2.8억 주 감소; 발행주식총수대비 0.68% ➜ 0.33%)
⑤ IPO 및 주주총회 등 절차 단축에 따른 비용 감소('21. 9. 16. 기준 약 58억 원 감소)
⑥ 실물주권 발행 절감액 약 185억 원 절감('21. 9. 16. 기준)

| 그림 2-66 | 연도별 전자증권제도 신규 이용 실적

(단위:개사, 개)



나. 평가 및 발전방향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현재 전자등록 관리자산 및 발행회사가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분기별 소유자명세 작성*을 신청한 회사 수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등 동 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제도 시행 이전에는 권리행사 관련 기준일이 있는 경우에만 실질주주명세 작성이 가능(통상 연 1회)하였

으나, 전자증권제도는 발행회사가 전자등록기관(예탁결제원)에 신청하는 경우 분기 단위로 소유자명세 작성이 가능하여 주주관리의 편의성이 제고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전자증권제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며, 신청 시에 전자증권제도에 참가할 수 있는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제도 이용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할 것이다.

31. 중재산업 활성화

상사법무과 행정사무관 김경모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국내 및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 중재를 활성화하고, 국제중재사건을 유치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중재산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법무부는 2016년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2017년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여 중재산업 진흥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2018년 대한상사중재원에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을 하여 세계적 규모의 분쟁해결시설인 서울국제중재조정센터를 개소하였다. 또한 법무부는 중재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19. ~ '23.)」을 수립해 2019. 1. 1.부터 시행하였다.

| 표 2-21 |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 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세계 5대 중재 강국 실현
목표	중재산업 진흥을 통한 동북아시아 중재 중심국가로의 도약
4대 추진전략	**9대 추진과제**
1. 중재산업 기반 강화	1. 중재 전문인력 양성 2.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
2. 국내중재 활성화	1. 중재제도 인식 개선 2. 중재제도 이용률 제고
3. 중재산업 경쟁력 확보	1. 세계적 수준의 분쟁해결시설 운영 2. 중재기관 역량 강화 3. 신규 중재분야 발굴·육성
4. 국제중재 유치 확대	1. 국제중재 유치 전략 수립 2. 국제중재 유치 지원

나. 평가 및 발전방향

'19년도에 개소한 중재교육원은 전문중재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21년부터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을 활성화하여 중재 전문인력 양성 교육 저변을 확대하였고 '22년에는 9개 교육과정을 개설하였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온라인 홍보를 더욱 강화하였고, 당사자들의 중재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중재판정 강제집행매뉴얼'을 발간하였다. '22년 접수된 중재사건은 342건으로 이 중 국제중재사건은 38건이다. 향후에도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우리나라가 동북아시아 중재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고, 중재산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32. 공익신탁 제도 활성화

상사법무과 서기관 김진원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나눔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2014. 2. 29.「공익신탁법」을 제정하여, 2015. 3. 19.부터 시행하였다.「공익신탁법」은 공익신탁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법무부 장관의 권한으로 일원화하여 관리·감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공익신탁의 설정을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여 누구나 쉽게 공익신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신탁은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여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법무부는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익신탁 활성화를 위해 TV·웹툰·해피빈 공익신탁 캠페인·라디오 광고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를 꾸준히 실시하였다.

이에 2022년 말까지 아동학대 피해 어린이 지원, 환경보호, 생활 SOC 등 다양한 목적의 공익신탁이 총 34개 설정되었다. 한편 법무부는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공익신탁제도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9. 11. 14.「법무부 공익신탁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였고, 2019. 12. 6. 학계·실무계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공익신탁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나. 평가 및 발전방향

공익신탁제도는 보다 간이한 절차로 보다 투명하게 공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에 법무부의 적극적인 홍보 및 제도 개선 노력으로 보다 다양한 공익신탁 사업이 준비되고 있다. 이러한 공익신탁 제도로써 기부문화가 활성화하고 결국 사회계층간 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그림 2-67 | 공익신탁 홍보 관련



| 그림 2-68 | 2022 공익신탁자문위원회



33. 선진상사법률연구 발간

상사법무과 행정주사 김승혜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상사법 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선진상사법제 마련을 위하여 전국의 상사법 연구자와 실무가들에게 관련 원고를 모집하고 이를 심사하여 1·4·7·10월 네 번에 걸쳐 『선진상사법률연구』 학술지(KCI 등재지)를 발간하였다.

2022년의 경우 1월에 발간한 통권 제97호는 홍복기(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2021년 회사법 관련 대법원 판례회고』와 김상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상속된 전자등록주식에 대한 강제집행 -일본 판례를 소재로-』 등 논문 4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4월에 발간한 통권 제98호에는 권재열(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미국 회사법상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에 관한 소고 -열람 목적의 구체성을 중심으로-』 논문 등 10편의 논문이 수록되었고, 7월에 발간한 통권 제99호에는 김경일(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의 『일본의 ESG 정보공시와 그 시사점』 논문을 비롯하여 총 4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마지막으로 10월에 발간한 통권 제100호에는 김순석(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상법상 감사 제도의 과제와 개선방향』 기고를 포함하여 7편의 글이 수록되었다.

나. 평가 및 발전방향

선진상사법률연구는 발간 시 법무부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고, 각 대학도서관, 경제단체·경제부처, 국회, 로펌 등에 약 600여부를 배포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상사법 연구 및 제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그림 2-69 | 선진상사법률연구



선진상사법률연구 제97호



선진상사법률연구 제98호



선진상사법률연구 제99호



선진상사법률연구 제100호

34. 선진법제포럼 개최

상사법무과 행정사무관 김경모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선진법제포럼'은 경제법령의 입법에 관한 아이디어와 신속한 법제정보 수집을 위해 2007. 11. 결성된 전문가 그룹으로, 학계·시민단체·언론계·경제계 전문가 8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무부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비대면 전자주주총회 등 관련 입법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2022. 12. 19. 「주주총회 프로세스의 전자화」라는 주제로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하였다.

나. 평가 및 발전방향

이번 포럼에서는 송종준 명예교수(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주주총회 프로세스의 전자화'에 대한 권재열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주제발표, 박철영 전무(한국예탁결제원), 송영훈 상무(한국거래소), 김춘 박사(한국상장회사협의회), 황현영 박사(자본시장연구원)의 토론이 있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전자주주총회 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전자주주총회 운영을 계기로 검토해야 할 고려사항 및 입법과제에 대하여 모색하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 그림 2-70 | 2022 선진법제포럼 개최



선진법제포럼 법무부장관 개회사



선진법제포럼 주제 발표

35. 공정한 법조인 선발 및 양성 제도 운영과 제도 개선 도모

법조인력과 행정사무관 홍진희

가. 제11회 변호사시험 실시

1) 시험 문제 합숙 출제 및 시험 시행

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의 문제출제를 위하여 2021. 12. 29.부터 2022. 1. 15.까지 18일간의 합숙출제를 실시하였다. 변호사에게 필요한 지식과 능력의 유무를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 출제를 위하여 교수, 실무가 등으로 시험위원을 위촉하고 적합한 합숙환경 및 보안을 위한 합숙시설·보안업체를 선정하였다. 현행 출제시스템 보완·개선 일환으로 과목별 총괄위원장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여 문형별 쟁점 중복 방지, 난이도 조정 및 출제오류 차단 등 문제의 완성도 제고에 노력하였다.

코로나19 제4차 대유행 기간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확진자의 응시를 위해 수도권·지방거점별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를 확보하였고, 격리자의 응시를 위해 법전원 내 별도 시험장을 준비하여 관련 인력 및 시험용품을 배치하였으며, 시험용 법전은 응시자가 개별 사용하되 매 시험시작 전·후 회수하여 방역관리와 시험관리의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하였다. 아울러 시험관리인력 근무요령을 보완·정비하고 시험장 책임관·보좌관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사전교육을 시험관리관까지 확대하였으며, 2022. 1. 7. 차관이 장애인 시험실이 설치되어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대학 2곳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관리 체계 단계별 진행 상황과 장애인 시험실 보조장비 설치 등 시험 준비상황 전반을 점검하였다.

2022. 1. 11.부터 1. 15.까지 4일간(1.13. 휴식일 1일 제외) 제11회 변호사시험을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시험장에서 시행하였으며 총 3,528명이 원서를 접수하였으나, 실제 3,197명이 응시하여 응시율은 90.6%를 기록하였다.

| 그림 2-71 | 제11회 변호사시험 시험장 방문



법전원장 등 간담회



장애인 시험실 준비 상황 등 점검

2) 채점 및 합격자 결정

2022년도에도 채점위원별 채점편차의 최소화, 채점기준의 객관화를 위해 세트반복형 가채점 방식의 채점기준표 작성회의를 3일간 개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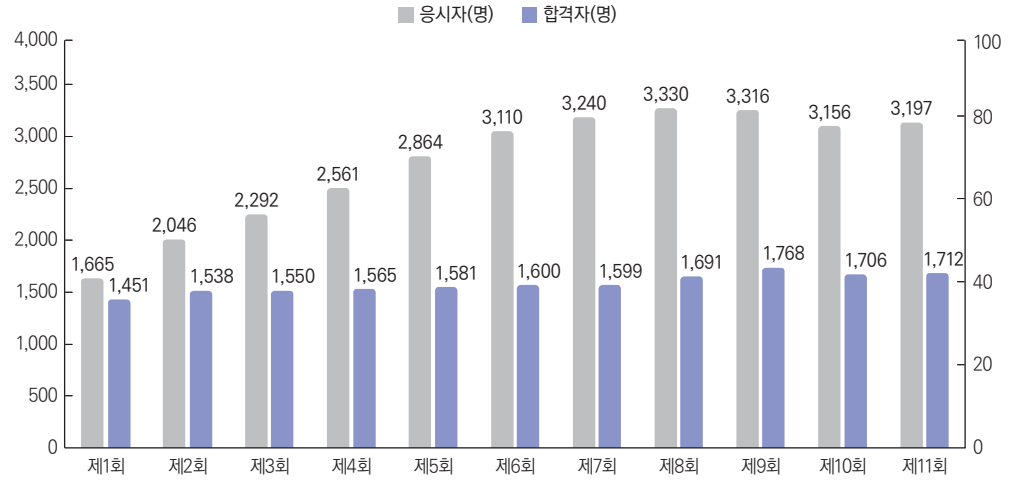
그 외에 출제 과정에서 시험위원을 상대로 한 출제오류 사례 교육, 출제위원과 검토위원의 분리를 통한 상호검증, 시험 정답 가안(假案)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정답확정회의를 통해 최종 정답을 공개하는 등 문제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022. 4. 20.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그대로 수용하여 법무부장관은 제11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를 1,712명(총점 896.8점 이상)으로 결정하였다. 제22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총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 범위에서,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합격률,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 응시인원 증감, 법조인의 수급 상황, 해외 주요국의 법조인 수, 인구 및 경제 규모 변화, 학사관리 현황 및 채점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으로, 3년간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응시생들의 합격가능성을 보장하고 기수간의 형평성을 제고하였다.

| 표 2-22 | 역대 변호사시험 현황

변호사시험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제5회	제6회	제7회	제8회	제9회	제10회	제11회
응시자(명)	1,665	2,046	2,292	2,561	2,864	3,110	3,240	3,330	3,316	3,156	3,197
합격자(명)	1,451	1,538	1,550	1,565	1,581	1,600	1,599	1,691	1,768	1,706	1,712

| 그림 2-72 | 역대 변호사시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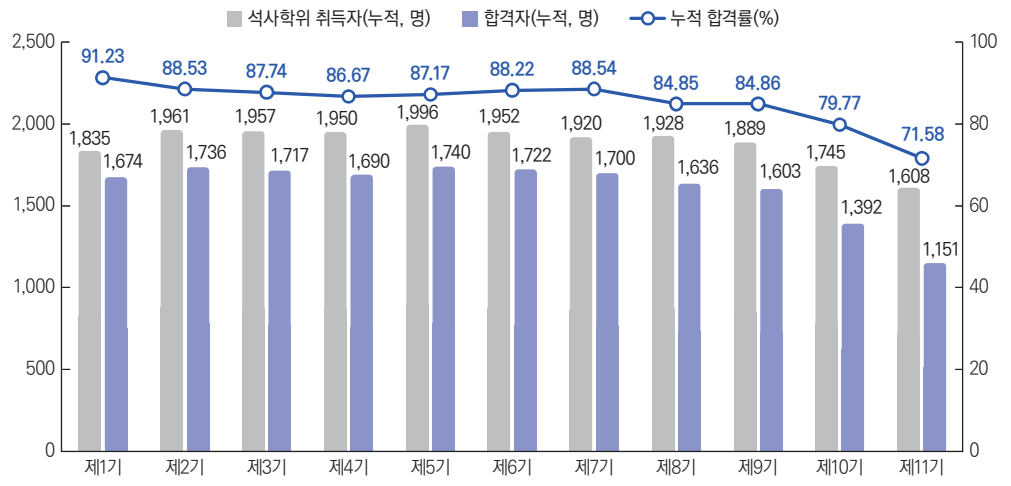


| 표 2-23 | 법학전문대학원 입학기수별 석사학위 취득자 대비 누적 합격률

입학기수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7기	8기	9기	10기	11기	합계
석사학위 취득자 (누적, 명)	1,835	1,961	1,957	1,950	1,996	1,952	1,920	1,928	1,889	1,745	1,608	20,741
합격자 (누적, 명)	1,674	1,736	1,717	1,690	1,740	1,722	1,700	1,636	1,603	1,392	1,151	17,761
누적 합격률 (%)	91.23	88.53	87.74	86.67	87.17	88.22	88.54	84.85	84.86	79.77	71.58	85.63

※ 법전원 8기('16년 입학) 이후 기수는 아직 추가 응시기회가 남아 있어 향후 누적 합격인원 증가 예상

| 그림 2-73 | 법학전문대학원 입학기수별 석사학위 취득자 대비 누적 합격률



나. 제13회 법조윤리시험 실시

2022년도 제13회 법조윤리시험은 2022. 8. 6. 전국 법전원 소재 대학 10개 시험장(서울5,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제주)에서 실시되었다. 코로나19 제5차 대유행 상황 속에서 방역관리에 역량을 집중하여 확진자와 격리자가 모두 법전원 소재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가 가능하도록 편의를 도모하였다.

충실히 구축된 문제은행 및 검토 시스템을 통해 오류 없는 문제를 출제하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내실화를 위해 응시자가 정규 수업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면 무난히 합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출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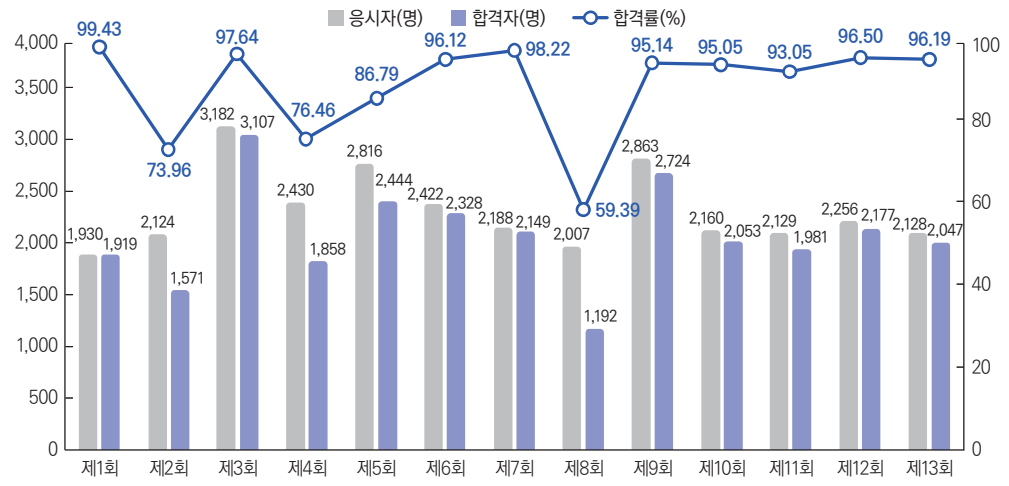
변호사윤리, 법관윤리, 검사윤리 등 법조인에게 요구되는 기초적 직무윤리뿐만 아니라, 법조인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법령(변호사법, 법관징계법, 변호사 윤리장전 등)에 관한 실질적인 평가를 통하여 직역윤리를 검증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총 2,171명이 출원하여 2,128명이 응시(응시율 98.02%)하고, 2,047명(합격률 96.19%)이 합격하였다.

※ 2021년 제12회 법조윤리시험 : 2,256명 응시, 2,177명 합격(합격률 96.50%)

| 표 2-24 | 역대 법조윤리시험 현황

	1회 (2010)	2회 (2011)	3회 (2012)	4회 (2013)	5회 (2014)	6회 (2015)	7회 (2016)	8회 (2017)	9회 (2018)	10회 (2019)	11회 (2020)	12회 (2021)	13회 (2022)
응시인원(명)	1,930	2,124	3,182	2,430	2,816	2,422	2,188	2,007	2,863	2,160	2,129	2,256	2,128
합격자(명)	1,919	1,571	3,107	1,858	2,444	2,328	2,149	1,192	2,724	2,053	1,981	2,177	2,047
합격률(%)	99.43	73.96	97.64	76.46	86.79	96.12	98.22	59.39	95.14	95.05	93.05	96.50	96.19

| 그림 2-74 | 역대 법조윤리시험 현황



다. 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 전개

1) 변호사시험 컴퓨터 작성 방식(CBT) 도입 추진

첨단 IT 법률서비스 활용을 통한 선진화된 법조인 양성 제도 마련, 변호사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응시자·시험위원 등의 편익 증진, 종이 없는 시험을 통한 자원 절약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시험에 대한 컴퓨터 작성 방식(CBT)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선택형(객관식)·논술형(주관식) 변호사시험 중 논술형 시험에 대하여 현행 수기(手記) 방식에 컴퓨터 이용 작성 방식(CBT)을 추가하고, 응시자의 선택에 따라 컴퓨터로 답안을 작성하는 방식으로도 응시가 가능하며 일정 기간 경과 후, 적용 과목 확대 및 전면 전환 등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2022. 7. 19. 개최한 「변호사시험 CBT 추진 관계기관 실무 간담회」에 이어, 8. 10.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변호사시험 CBT 도입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공개토론회에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및 재학생, 변호사, 일반 국민 등 다양한 분야의 참석자들이 참여하여 컴퓨터 작성 방식(CBT) 도입에 대한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다.

공개토론회에서 그동안의 정책 추진 경과와 토론 주제를 설명하였고, 토론자들은 ① 컴퓨터 작성 방식(CBT) 도입 여부, ② 수기(手記) 방식의 병행 여부, ③ 노트북 제공 방식, ④ 답안 제출 방식, ⑤ 시험시간 조정, ⑥ 추가비용 등 세부적 쟁점들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토론회에서 특히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였고, 논의한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컴퓨터 작성 방식(CBT) 도입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수기(手記) 방식에 대한 응시자, 시험위원 등의 불편에 공감하고 있고, 보다 선진화되고 공정한 채점을 담보할 수 있는 시험제도 마련의 필요성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응시자 등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선진화된 첨단 IT 법률서비스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컴퓨터 작성 방식(CBT) 도입을 추진하여 2024. 1.경 제13회 변호사시험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나아가 컴퓨터 작성 방식(CBT)을 도입함으로써, 변호사시험이 모두가 납득하는 공정한 시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그림 2-75 | 변호사시험 CBT 도입 대국민 공개토론회 개최



2)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변호사시험 '석차' 조회 서비스 시행

2022. 8. 29.부터 변호사시험 응시자에 대한 '석차'를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조회하는 시스템을 시행하였다.

민원인은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석차'를 확인하고, 이를 출력하여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존의 정보공개청구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조회하던 불편이 해소되었다.

2020. 10. 15.부터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변호사시험 석차를 본인에게 공개하고 있으나, '성적' 공개와 달리 별도의 정보공개청구 또는 국민신문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신청 후 공개까지 7 ~ 10일이 소요되어 많은 불편이 있었다. 향후에도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선진화된 행정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3) 장애 응시자 전원 희망 시험장 배정

그동안 장애 응시자를 가급적 희망 시험장으로 배정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으나, 일부 장애 응시자에 대해서는 시설, 장비, 인력 등의 문제로 희망을 반영하지 못한 사례들이 있었다. 2022. 9. 경 장애 응시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법학전문대학원들과 협의를 진행해 왔고,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에 최초로 중증 장애인 7명을 포함한 장애 응시자 25명 전원을 희망하는 시험장으로 배정하였다.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시험시간 연장, 장애인용 컴퓨터, 책상, 보조인력 등을 제공하고 보조공학기기 사용 승인 등의 필요한 편의를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도 장애 응시자들의 시험 형평성을 보장하고 변호사시험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4)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 마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2022. 12. 27. 제24차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2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는 1,700명 내외로 하고 동점자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는 기준을 심의·의결하였다.

기존에는 변호사시험의 채점이 종료된 이후에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합격인원을 결정하였고, 시험 실시 이전에 합격자 규모를 의결하지 아니하여 응시자의 예측 가능성과 알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측면도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22. 7.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산하에 「법조인 선발·양성 개선 TF」를 구성하여 논의를 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이번에 처음으로 ① 시험 실시 이전에 합격자 규모를 결정하고, ② 시험 실시 직후 이를 발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제4절 검찰업무

1. 검찰 역량의 강화

검찰과 검사 이승주

가. 검사 인사제도의 합리적 운영

1) 개요

2022년도 검사 인사는 검찰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실력과 전문성 등을 기준으로 적재적소에 검사를 배치하였고, 정의와 공정에 대한 의지를 갖고 묵묵히 소임을 다하여 온 검사들을 우대하는 한편, 출산·육아 목적 장기근속제 확대 적용 등 개선된 인사 제도를 폭넓게 적용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검사들의 인사 고충과 희망 사항을 적극 고려하여 실시하였다.

2) 주요내용 및 성과

2022. 2. 7. 상반기 검사 인사 시 형사·공판부에서 인권보호, 사법통제, 수사협력, 제도개선, 공익대변 등 업무를 우수하게 수행하여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정착에 기여한 검사 및 우수 여성검사를 주요 보직에 적극 발탁하였고, 출산·육아 목적 장기근속제, 동일 고검 권역 장기근속제, 중점 검찰청 장기근속제 등 법제화된 인사제도를 폭넓게 적용하는 등 인사 고충을 적극 반영하였다.

2022. 6. 10.「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법무부 예규 제1238호)을 폐지하여 검찰의 독립성·중립성을 강화하였다. 위 지침은 2019. 10.부터 제정·시행하여 왔으나,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및 검찰청간 직무대리 등 '검사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가 이미 운영되고 있고(검찰청법 제35조 제4항),「검찰근무규칙」에 따라 1개월을 초과하는 검사 직무대리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고 있으며, 검찰 수사·공판팀 구성에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의결을 필요로 하는 것은 검찰 수사에 과도한 제약이 될 우려가 있는 등 제도의 효용이 낮아진 상황을 고려하여 폐지한 것이다.

2022. 7. 4. 하반기 검사 인사 시 인사원칙과 기준을 준수하여 각 업무 분야에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검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였고, 국민을 위해 검찰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산적한 주요 현안 업무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검찰 조직 개편

1) 추진배경

그간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줄이고, 수 차례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검찰청 직접수사부서 및 전문부서를 감축하고 형사부에서 수사개시 할 수 없도록 형사부 분장사무를 개편하는 등 검찰 직접수사 총량의 축소에만 치중함으로 인해 민생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하고, 긴급한 현안에 신속히 대처할 수 없는 등 검찰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실무상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신속하게 검찰 기능을 정상화하고, 검찰의 독립성·중립성을 확보해, '장관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등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원활히 이행하기 위한 동력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면서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추가로 설치하고, 부산지방검찰청의 업무수행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 조직과 기능을 조정하는 한편, 정부의 통합활용정원 운영계획에 따른 자체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검찰청 기구 및 정원 재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2) 추진경과

2022. 7. 4. 신속하게 검찰 기능을 정상화하고, 검찰 수사의 독립성·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2752호)을 개정·시행하였다.

2022. 12. 29.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및 부산지방검찰청의 기구 및 분장사무 정비와 통합활용정원에 따른 정원 감축,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인력 증원 등을 반영하기 위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171호)을 개정·시행하였다.

3) 주요내용과 성과

2022. 7. 4.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마지막 순위 형사부에서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을 없애는 등 형사부 분장사무를 정비하고, 각급 검찰청의 장이 수사를 위한 임시조직을 설치하려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한을 없애 검찰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급 검찰청에 설치된 일부 부서의 명칭을 '국제범죄수사부', '정보기술범죄수사부', '조세범죄조사부', '중요범죄조사부' 등으로 변경하여 전문 수사의 기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여 검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특별히 전문성을 활용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전문부서에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하도록 하여 국민의 권리구제를 강화하였다.

또한, 2022. 12. 29.「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개정을 통해,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뿐만 아니라, 노인 및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범죄 대응이 가능하도록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여성아동범죄조사제2부를 추가 신설하고 분장사무를 정비하였으며, 부산지역의 조직·마약범죄 등 강력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부산지방검찰청에 반부패수사부와 강력범죄수사부를 분리 신설하였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활용정원 운영에 따라 검찰청 직원 정원 76명을 감축하면서, 국정과제와 정책현안 수행 등을 위한 인력 54명을 증원하는 등 정원 재배치를 통해 검찰청 인력운용을 효율화하였다.

4) 평가 및 기대효과

2022. 7. 4. 조직개편을 통해 검찰청에 수사를 위한 임시조직 설치 시 '법무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여 법무부 장관의 부당한 수사개입 논란을 차단함과 동시에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독립성·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중요사건의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형사부 분장사무 정비와 전문부서 기능 강화를 통해 모든 형사부에서 중요범죄 단서를 발견한 경우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형사末부에서 중요범죄 수사개시할 경우 검창총장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여 수사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하였으며, 형사부로 전환되었던 직접수사·전문부서 중 전문성을 활용한 수사가 필요한 부서는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을 부여하고, 부서의 전문성을 드러낼 수 있는 적절한 부서명을 사용함으로써 전문분야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겠다는 메시지 전달, 전문부서 기능을 강화하여 고도화·첨단화되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조직개편은 부서별 전담사건에 대한 수사전문성과 인력을 각 기관장이 적재적소에 활용함으로써 검찰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시급한 상황에서 실무상 발생하고 있는 여러 비효율성과 문제점을 해소하여 형사부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동안 검찰이 축적해 온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검찰 기능을 정상화하였고, 정권이나 진영을 가리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 비리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검찰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검찰의 범죄대응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형사부에서도 민생범죄에 대해 수사개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수사를 통해 서민을 울리는 민생범죄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2022. 12. 29. 조직개편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면서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추가로 설치하고 분장사무를 확대하며,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산지방검찰청의 조직과 기능을 일부 조정하는 한편, 정부의 통합활용정원 운영 계획에 따른 자체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등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인력 수요를 고려하여 마약수사직 증원 등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등 국정과제의 실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 인권 친화적 환경 조성 및 검찰 구성원 복지 증진 예산 지원

법무부는 검찰이 인권보호 및 법질서 수호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인권 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해 범죄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검찰 구성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방안도 꾸준히 마련하고 있다.

1) 장애인 인권 보호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예산 반영

사회적으로 장애인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검찰청에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 및 제도가 미흡하여 장애인 인권 보호 및 권익 보장에 취약한 측면이 존재하였다. 이에 승강기가 없는 구치감에 승강기를 설치하고, 청사 내 노후 승강기를 교체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장애가 있는 사건관계인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장애인의 진술권을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 수어 통역인 등 통역비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등 인권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노력하였다.

2) 검찰 구성원 복지 증진 및 근무환경 개선

검찰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을 사전에 예방·진단하여 업무능률을 제고하고, 직무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하여 건강검진비 지원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아울러 기록을 운반하기 위한 전동카트 도입, 수사·민원 업무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웨어러블 카메라, 무선 도청탐지장치를 도입하는 등 검찰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3) 검찰 수사역량 강화

법무부는 검찰의 수사역량 강화를 위하여 가상화폐 거래추적 등 분석도구 도입, 알뜰폰 가입자조회 시스템 구축, 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 시스템 재구축,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범죄 대응 역량 강화 예산 증액 등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검찰의 수사역량을 강화·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검찰업무의 추진방향

형사기획과 검사 문호섭

가. 사회적 약자의 권익 향상

법무부는 그동안 여성, 장애인, 아동,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형사절차에 관한 제반 법령을 정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사회 양극화의 심화로 인한 부작용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법치주의 구현이 요구되어 수사과정에서 여성·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여성·아동 전용조사실 설치, 수사과정에서의 녹음·녹화제 활용도 증대, 신뢰관계자의 동석 범위 확대 등을 각종 법령·지침 등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2004. 12월 서울중앙지검·서울남부지검·인천지검·수원지검 등 4대 지검에 녹음·녹화실, 편면경(one-way mirror) 등을 완비한 영상녹화조사실을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전국 검찰청에 여성·아동 조사실을 설치하였고, 2013. 7월 종전의 '성폭력피해자 조사지침'과 '성폭력범죄 사건 처리지침'을 통합하여 성폭력사건 처리 관련 세부내용과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절차 및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2차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기 위하여 사건의 성격 및 피조사자에 따라 적합한 조사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인권보호와 프라이버시 친화적 조사 환경을 구축하였다. 아울러 법무연수원에도 여성·아동관련 범죄 수사실무 교육 프로그램 및 성폭력피해자 조사기법 강좌를 개설하여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였다.

한편, 사회문제로 대두된 아동 성폭력문제에 더욱 강력히 대응하기 위하여 2012. 12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개정하여,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를 폐지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법정형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13세 미만자 등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였다. 아동성범죄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9. 10월부터 전국 검찰청에 아동성폭력 전담검사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2013. 7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전문가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 조회 및 법정 증언 관련 절차 및 내용 등 세부사항을 정하는 「성폭력범죄전문가 의견조회 및 활용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2014. 4월부터 다년간 성폭력 관련 심리상담 또는 치료 업무에 종사하여 온 소아정신과 전문의, 임상심리전문가, 범죄심리전문가, 사회복지사 등을 대검찰청 성폭력범죄 전문가로 선정, 위촉하여 피해아동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해 진단하고 진술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피해아동의 2차 피해 및 중복조사를 방지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1. 9월 서울중앙지검에, 2016. 1월

대구·광주지검, 2017. 2월 대전·부산지검, 2018. 2월 수원·인천·서울 동부·남부·북부·서부지검 등 현재 총 11곳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신설하여 각 지역의 여성·아동 대상 범죄 대응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여 피해자 인권보호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2015. 11월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검사 지정·운영 및 조사 시 유의사항 등을 규정하는 「발달장애인 사건조사에 관한 지침」을 마련·시행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결혼이민 여성을 상대로 여성 범죄예방위원과의 결연사업, 지방자치단체와의 다문화가족 보호지원 업무협약 등을 추진함으로써 이주 여성들이 국내 연고 부족 등으로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가정폭력과 국내정착 등에 대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2018. 12월 법률 개정에 따라 업무상위력간음·추행 사건처리기준을 개정하였고, 특히 새롭게 사회문제로 대두된 불법촬영·유포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자 2018. 10월 카메라 등 이용촬영·유포 사건처리기준을 세분화 하는 등 개정·시행하였고, 2018. 12월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사건처리 기준을 재개정하여 불법촬영·유포 사범을 엄단하였다.

이와 더불어 '18. 12월 여성·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공동 대처 및 연구를 위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는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실효적 대응을 강화한 이후, 이 협약에 따라 2018. 12월 「가정폭력 가해자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2019. 7월에는 「성폭력 무고의 젠더분석과 성폭력 범죄 분류의 새로운 범주화」를 주제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각 공동포럼을 개최, 2019. 11월에는 「가정폭력 상해 사건 분석을 통한 연구 결과」 관련 공동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2020. 4월 대검찰청은 소위 'n번방' 사건과 같이 각종 성범죄·폭행·협박 등의 범행과 결부하여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제작하거나, 이를 SNS 대화방 등에 공유하는 범죄 유형을 '성착취 영상물 사범'으로 유형화하고, 이러한 범죄군에 대하여 기존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등의 처리기준보다 대폭 강화한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또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벌과 재발방지를 위해 정부와 시민단체, 여성계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검찰의 신종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2020. 5월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2020. 6월 불법동영상 유포 차단·삭제 지원 매뉴얼 배포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후 성폭력범죄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21. 2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사건처리기준」, 「카메라등 이용 촬영 등 관련 사건처리기준」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건처리기준을 개정·시행하여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였고, 2021. 7월부터 디지털 성범죄,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신속하고 충실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아동범죄 대응 TF'를 구성하였으며, 그 결과로 2021. 12월 성폭력, 가정폭력 수사매뉴얼을 개정하고 아동학대 수사매뉴얼을 제정, 일선 청에 배포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수사 대응 역량을 강화하였다. 2021. 7월 대검찰청은 사법경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관내 학대 아동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전국 청에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를 활성화할 것을 지시하였고, 2021년 12월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였다.

2022. 6월, 9월, 10월 대검찰청은 사건처리기준 및 매뉴얼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는 것은 물론, 대검 사이버수사과 및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불법 동영상, 사진을 삭제·차단하는 등 성착취물의 확산을 방지하며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법률지원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일선 청에 지시하였다. 또한 2022. 12월 지역 거점 검찰청인 각 지방검찰청(18개)에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를 지정하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보다 전문성 있는 수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권역별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서울중앙지검에 여성아동범죄조사제2부를 신설하여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성·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전문적인 수사역량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2022. 12월 피해자별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피해자 보호·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지원 QnA 및 우수사례」 자료를 제작하고, 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사례를 연구한 책자를 만들어 일선 청에 배포하였다.

검찰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인 가정폭력사건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3. 7월에는 흉기 휴대 또는 상습적 가정폭력의 경우 구속을 원칙으로 하는 등 가정폭력사건의 처리기준을 강화한 「가정폭력사건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였고, 2015. 9월에는 친족간 성폭력·가정폭력 등 가정 내 범죄에 대해 기 시달된 사건처리기준 및 지침을 엄격히 적용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범행 동기 및 경위, 재범의 위험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지시하였다. 2019. 6월에는 가정폭력사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관련, 보호관찰소를 통해 위탁 절차와 상담 관리를 함으로써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사건의 사후 관리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가정폭력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 지침을 개정하여 시행하였다.

법무·검찰은 서민 다중 피해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왔고, 더 나아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다. 특히 보이스피싱, 불법다단계, 유사수신행위 등 다수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특정 사기범죄들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을 국가가 범인으로부터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및 그 시행령이 개정되고 이에 맞춰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2020. 11.부터 시행됨으로써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회복 절차 규정이 완비되었는바, 개정 취지에 따라 시민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각도로 진행하였다.

정부는 2022. 8. 25.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사금융에 강력 대응하기로 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대검찰청에서는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 ▲ 불법사금융 범죄단속 강화, ▲ 불법사금융 사건처리기준 철저 준수, ▲ 책임에 상응한 수사와 재판의 결과 실현을 위한 양형자료 수집, ▲ 범죄수익 환수, ▲ 피해자에 대한 지원 철저 지시를 하는 등 불법사금융 범죄에 엄정 대응 방침을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대검찰청은 「소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21. 6. 소년사건의 수사와 처분에 관한 기준 등을 규정한 「소년사건 처리지침(대검예규)」을 개정하였고, '21. 9. 소년원생 인권보호 및 신속·적정한 소년사건 조사 및 처분을 위해 검찰청과 소년보호기관(전국 11개) 간 원격화상조사시스템 구축계획을 수립·추진하였으며, 시범실시 후 관련 지침 개정 등을 거쳐 '21. 11. 전국 확대시행하였다.

'22. 1. 대검찰청은 소년범의 재범을 방지하고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연계한 「법무보호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활성화를 추진하였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면선도활동 위축화 극복방안으로 청소년 선도·범죄예방 우수사례」를 발굴, 일선청에 전파하였다.

나.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및 효율성 확보

법무·검찰은 수사과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법 집행의 엄정성·효율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먼저, 진술에 의존하는 기존의 수사기법이나 조사방법을 탈피하여 물적 증거 수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사방법을 개선하는 한편, 날로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과학수사역량 강화 및 수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6. 12월경부터 총 144억 원을 투입, 2008. 10. 31.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지상 6층, 지하 1층, 연면적 7,844㎡ 규모)를 완공하여 그동안 분산되었던 디지털증거 수집·분석 및 감정·감식 업무를 한 곳에 집중시켜 효율적인 증거 수집 및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문서감정 등 범죄수사 관련 감정·감식, DNA 및 법생화학 감식, 전자적 증거의 수집·분석, 사이버범죄 대응 등 전방위적인 과학수사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및 효율성 확보에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2007. 4월 서울중앙지검, 2008. 6월 부산고검, 2009. 9월 대구고검, 2010. 4월 광주고검, 2010. 12월 대전고검, 2011. 5월 인천지검, 2012. 6월 수원지검(2019. 3월 수원고검으로 이전), 2014. 11월 서울고검·서울남부지검·창원지검, 2017. 12월 서울북부지검·춘천지검 등 일선 청에 디지털포렌식팀을 설치·운영하여 급증하는 디지털증거 수집·분석업무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다음으로, 인권존중 수사관행을 정착하고 과학수사 역량 강화 및 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2. 12월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제정, 2006. 6월 전면적으로 이를 개정하여 시행하였으며, 2019. 12. 1. 위 준칙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법무부령으로 승격하여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제정·시행하였다.

대검찰청은 수사절차 변론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20. 10. 「형사사건 변호활동에 관한 업무지침」을 공개예규로 전환하여 새롭게 제정하고, 변론을 포함한 모든 변호활동 내역 입력 및 관리를 전산화하였으며, 수사담당자 상호간 입력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함으로써 사건처리 절차에 있어서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대검찰청은 '20. 12. 변호인에 대한 사건진행 상황 문자통지를 당사자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KICS 기능개선을 완료하고 대한변협과 문자통지 수신용 변경된 변호인선임서 적극 활용 홍보에 관하여 협력하면서 변호인 문자통지 확대에 따른 업무매뉴얼을 일선에 전파하였다. 이로써 검찰 수사절차에서의 변호인의 조력권과 피의자의 방어권이 한층 강화되었다.

대검찰청은 '20. 10. KICS에 '변호활동 관리부'를 신설하여 변호활동의 전산 입력 기능을 구현한 이래 '변호활동 관리부' 입력 사건 확대, 업무담당자 및 기관장 등 간 변호활동 내역의 공유 기능 구현 등 지속적으로 변호활동 관리 투명화를 추진하여 왔고, '22. 12. 업무시스템에 '변호활동' 메뉴를 신설하고 모든 변호활동을 전산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23. 1. 변호활동 관리 전면 전산화를 시행하였다. 이로써 검찰 수사절차에서 모든 변호활동 내역의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게 되어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을 제고하였다.

수사과정의 투명성과 인권보장의 일환으로 2004. 6. 1. 4개 검찰청 12개 검사실에 영상녹화시설 설치를 시작으로 2022. 12. 31.까지 전국 66개청에 총 899실로 확대 설치하여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의 소지를 최대한 불식시키고 수사 인력 및 조사시간 단축을 통해 효율적인 수사체계를 확립하였다.

한편, 대검찰청에서 2006. 6월 「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수사는 '불구속 수사 원칙'으로 구속 수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위 지침은 그동안 각급 검찰청에서 관행적·개별적으로 운영하던 기준을 집대성하여 최초로 지침화하고 전국적으로 적용할 기준을 정립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2011. 12월 구속수사의 일반적 기준과 범죄유형별 기준을 좀 더 세분하여 위 지침 제정 이후 구속수사 실무 기준을 반영하였다.

대검찰청은 2022. 7월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 제1437호)」 개정으로 형사사건의 예외적 공개 여부 및 범위 등을 심의·의결하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을 폐지하였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2752호)」의 시행으로 지검·지청 형사未부의 수사개시 시 검찰총장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검사의 중요 범죄 등에 대한 수사개시

절차에 관한 지침」을 폐지함으로써, 검찰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22. 9월 검사가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개정 검찰청법이 시행됨에 따라 「검사 수사개시 범죄의 공소제기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시행하여, 실무상 혼란을 방지하였다.

대검찰청은 2008. 6월 형법범(208개 조문, 293개 범죄유형), 가중사범(4개 법률, 101개 범죄유형), 특별법범(232개 법률, 1,149개 범죄유형) 등 총 1,543개 범죄유형별로 구속기준, 구공판기준, 구형기준, 벌금기준 등을 규정한 '검찰사건처리기준'을 수립·시행하였으며, 2011. 12월에는 시행 3년을 맞아 그간 폐지되거나 변경된 법령과 변화된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여 '검찰 사건처리기준'을 재정비 하였다. 또한 2012. 9월에는 지역적 범죄 특성과 당해 사건의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선 청에서 사건처리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월, 포항 등 9개청에서 산지관리법위반, 수산업법위반 등 19개 특별법범에 대해 지역의 특수성과 경제적 사정 등을 반영한 자체 사건처리기준을 수립·시행하였다.

2016. 9월 '검찰사건처리기준' 개정 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고하고, 사건 및 피의자 관련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죄에 상응하는 형 구형 원칙을 「검찰 구형 및 항소에 관한 업무지침」에 반영하였으며, 3차례 개정된 형법 개정 사항 〈유사강간죄 신설, 혼인빙자간음죄 등 삭제('13. 6월 시행), 범죄단체조직죄, 약취와 유인의 죄 등 정비('14. 4월 시행), 특수상해·강요·공갈죄 등 신설, 간통죄 삭제 등('16. 1월 시행)〉을 반영하였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추가하여 가중사범을 총 6개 법률로 확대함과 동시에, 총 42개 특별법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교통사고·음주운전 등 대검의 강화된 신병 및 구형 기준을 반영하였다. 2019. 6. 2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 12. 18. 시행), 도로교통법('19. 6. 25. 시행) 등의 개정에 맞추어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 주요 교통범죄군에 대한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제정, 전면 시행하였고, 2020. 4. 9. 기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등의 처리기준 보다 대폭 강화한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기준을 제정, 시행하였다.

2021. 5월 '검찰사건처리기준' 3차 개정 시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관련 형법 및 특별법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가중사범'을 6개 법률로, '특별법범'을 260개 법률로 정비하였으며 신병 및 구형과 관련된 대검의 최근 주요 지침·지시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42개 범죄군에 대해서는 이를 반영하였다.

2022. 6. 3. '헌법재판소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결정'에 따라 「교통범죄 사건처리 기준 개정안」을 시행하였고, 2022. 8. 19. 보이스피싱 지능화에 따라 신종수법을 이용한 사례 급증에 따른 「보이스피싱 사건처리기준」을 개정, 시행하였으며, 2022. 10. 5. 폭력범죄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처벌강화를 위하여 「폭력범죄 엄정 대응을 위한 사건처리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한편, 대검찰청은 검사의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등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0. 7. 2. 전국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검찰시민위원회를 도입하여, 2013. 5. 22. 전국 5대 고검에 추가 설치 현재 전국 65개청에서 확대 시행하고 있다.

고·지검 및 지청 소속 위원회의 경우 11명 이상 6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분담·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안에 상설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탄력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들의 경우에는 지방검찰청 등의 장이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건전한 상식과 균형감을 갖춘 일반 시민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되,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직업, 연령, 성별,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위촉하고 있다.[1)]

아울러 2004. 7월부터 항고심사회를 설치·운영해 왔으나,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대상과 사실상 동일하여 위원회 중복 운영으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 제기로, 기존의 항고심사회 기능을 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위원회는 검사의 요청에 따라 ① 공소제기의 적정성, ②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 ③ 구속취소의 적정성, ④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이외에도 최근 심의대상의 확대를 통하여 일반 시민들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5년 검찰시민운영위원회 운영실적은 〈표 2-25〉와 같다.

| 표 2-25 | 최근 5년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실적

구 분 / 연 도	개최횟수	심의건수						
		합계	기소	불기소	재청구	구속취소	영장청구	항고
2017년	956	2,086	557	971	66	5	390	70
2018년	1,078	2,324	618	1,180	277	1	277	94
2019년	1,082	2,324	587	1,341	26	1	167	110
2020년	376	701	186	420	19	0	33	26
2021년	178	347	89	211	4	0	12	14
2022년	291	586	107	387	8	1	26	24

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위촉 배제

3. 사회·경제질서의 엄정 확립

형사기획과 검사 문호섭

가. 개요

법무·검찰은 권력형 비리 등 사회지도층 비리를 중점 단속하고,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및 지방공기업과 관련된 지역토착비리와 보조금 비리·조세포탈 등 국가재정 관련 범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부패유발요소에 대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정책수립에 반영하였다. 또한 불법수익의 철저한 박탈로 부패범죄에 대한 동기를 차단하기 위하여 대검 반부패부·강력부 범죄수익환수과를 통해 일선청의 범죄수익환수 업무를 지원하여 범죄수익환수 기능을 제고하였다.

법무·검찰은 국민생활 안정의 위협요소를 차단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과 동시에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방위사업 분야의 고질적·구조적 비리와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고위공직자,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의 권력형 비리, 국가 경쟁력·투명성을 저해하는 공기업·공공기관 민관유착 비리, 법조 브로커 등 법조비리, 언론비리, 교육비리, 경제 질서 저해 사범 등 금융·증권비리, 조세포탈 비리, 재벌총수일가의 횡령·배임 범죄 등의 근절에도 총력을 기울여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하였으며,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범죄에 대한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2. 5. 18. 서울남부지검에 검사, 검찰수사관, 특별사법경찰 및 전문인력 등 총 48명의 인원으로 구성되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출범시켰다.

그리고 국가재정범죄의 근절 및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22. 9. 30. 검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범정부 전문인력 30여 명으로 구성된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을 출범시켜 조세 포탈, 재산국외도피 등 세입 관련 탈세범죄부터 각종 보조금·지원금 부정수급 등 세출 관련 재정비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국가재정범죄에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하였다.

또한 불법다단계·유사수신, 불법사금융, 가상통화·P2P 관련 사기, 재개발·재건축 비리, 유해화학물질 등 불특정 다수 서민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양산하는 범죄에 대한 대응을 담당하고 있던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팀'을 2020. 8. 대검찰청 형사부 형사3과로 제도화하여, 일선 검찰청의 서민다중피해범죄 사건 수사 및 범죄피해재산 환수·회복 업무 관련 지휘·지원의 컨트롤 타워 역할에 주력하고 있다.

법무·검찰은 최근 폐기물 불법투기·매립, 배출가스·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오염, 가습기살균제

피해 등 환경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환경범죄 수사매뉴얼 T/F를 구성하였고, 2019. 7월 환경범죄 일반론,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총 5개 분야에 대한 매뉴얼 작성하여 배포하였고, 2020. 10월 대표적인 환경범죄에 대한 일선청의 우수수사사례를 참고자료로 제작하여 전국청에 배포함으로써 환경 분야 범죄에 대한 전문성과 수사역량을 강화하였다.

대검찰청은 2022. 5.「동물학대 행위 등 처벌관련 비교법적 연구 - 미국, 영국, 독일,일본 등 주요국가의 처벌사례를 중심으로」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연구책자를 일선청에 배포하여 동물보호법 관련 수사역량 강화를 도모하였다.

나. 부정부패사범의 척결

1) 부정부패 척결 지속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부정부패 척결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2022년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작년(23위)보다 4단계 하락한 27위를 기록하며 2011~2013년까지 기록한 역대 최고치인 22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정부효율성 분야에서 순위가 2단계 하락했으며,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 Index)는 2022년 기준 180개국 중 31위(OECD 38개국 중 22위)에 그치고 있어, 부패척결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 법무부는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더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먼저 검찰에서는 공공분야 구조적 비리, 재정·경제분야 고질적 비리, 전문직역 숨은 비리를 중점 수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왔다. 특히 2021년에는 부정부패사범 척결에 대한 국민적 기대 등을 반영하여 기존 주요 수사대상이었던 부정부패 범죄와 함께 국가경쟁력·투명성을 저해하는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강화된 검찰 사건처리기준을 엄정 적용하여 5대 중대 부패범죄 사범 213명을 기소(87명 구속)하였고, 전국 검찰청의 부패범죄수사 전담부를 중심으로 지역 토착비리 단속, 보조금 비리 수사,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증권·금융범죄 관련 수사 등 각종 부정부패 수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또한 전국 검찰청의 범죄수익환수 전담반을 중심으로 철저한 자금추적을 통해 부패범죄로 인한 수익 1,612억 6천 6백만 원을 환수 조치함으로써 부패범죄 사범에 대한 범죄유발동기 차단에 주력하였다.

2022년도 부정부패사범 단속실적은 〈표 2-26〉 내지 〈표 2-27〉과 같다.

| 표 2-26 | 2022년 부정부패사범 단속실적

(단위 : 명)

구분 / 유형	단속인원	구속인원
인사	4(3)	1(0)
건축	6(1)	2(0)
토지	4(0)	2(0)
공사	0(0)	0(0)
보건·환경	3(0)	0(0)
교통	0(0)	0(0)
소방	2(2)	1(1)
노동	12(1)	3(0)
수사	5(5)	3(3)
세무	16(0)	1(0)
교육	1(0)	0(0)
병무	0(0)	0(0)
금융	90(1)	46(1)
법조주변	8(1)	2(0)
납품	2(0)	2(0)
사이비언론	2(0)	2(0)
기타	94(15)	33(10)
합계	249(29)	98(15)

( )는 공무원

| 표 2-27 | 2022년 공직자비리 단속실적

(단위 : 명)

죄명 / 직급별	뇌물수수 뇌물공여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	기타	계
3급 이상	0(0)	6(0)	0(0)	0(0)	6(0)
4급 이하	7(2)	17(0)	3(0)	9(1)	36(3)
합 계	7(2)	23(0)	3(0)	9(1)	42(3)

( ) 구속인원

2) 부패 유발요소에 대한 제도적 개선사항 발굴

부패 관련 수사과정에서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클린피드백 유관부처 회의를 통해 관계 기관에 다음과 같이 2건의 제도개선을 건의하였다.

제도개선 발굴, 건의 실적	• 클린피드백 회의 건의 실적 – 전입세대 열람내역 발급 시스템 상의 허점을 담보대출 사기범행에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전입세대 열람내역 시스템' 개선(행정안전부 주민과, 2022. 2.) – 처벌 규정의 미비로 지방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받은 자에 대한 처벌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지방보조금법 벌칙 규정' 개정(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 2022. 3.) –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기술인 배치 의무 관련 처벌규정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양벌규정' 개정(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2022. 4.)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무거래 온누리상품권 환전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형벌 규정으로 개정(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 2022. 4.)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등 모집 방지를 위한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2022. 7.) [2022. 12. 31. 기준 5건]

다. 엄정한 사회질서의 확립

1) 교통사범 엄정 대응

검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상습 음주 운전자 등에 대한 원칙적 구속수사」, 「음주 사망 교통사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또는 3년 이상 구형 등」, 「음주운전 동승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 몰수」,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 적용」, 「음주 교통사고에 대해 법정형이 중한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적극 의율」 등 다양한 사건처리 방안을 각 검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다.

2018. 9월 故 윤창호 군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에 법무부 장관은 2018. 10. 19.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 철저 이행 및 상습 음주 운전자 등에 대한 원칙적 구속수사를 내용으로 하는 「음주운전사범 엄정 대처」, 2019. 3. 18. 음주운전사범에 대한 재범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검찰에 「음주운전사범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 구형 및 치료감호 적극 청구」를 지시하였고, 2019. 3. 29. 대검찰청은 각 검찰청에 음주운전사범에 대하여 집행유예 구형 시 보호관찰 및 그에 따른 음주 금지 등의 특별 준수 조건이 부과될 수 있도록 구형하고, 실형 구형 시에도 예비적으로 집행유예 선고 시 보호관찰 부과 의견 개진토록 하고, 알코올 습벽 있는 자에 대한 치료감호 적극 청구 등을 지시하여 각 검찰청에서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및 재범방지를 위해 지속하고 있다.

또한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8. 12. 18. 시행], 도로교통법['19. 6. 25. 시행](일명 '윤창호 법')에 따라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 교통 범죄군에 대한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 강화, 음주운전 재범방지의 실효적 방안 등을 마련하여 각 검찰청에 전면 시행하였고,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의 실현을 위해 음주운전 관련 범행에 엄정한 기준으로 신병처리, 구형, 적극적 항소 등으로 대처하였다.

'20. 10월 ~ '21. 12월 기간 동안 음주운전사범 총 120,257명 중 37,286명을 구공판하여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8. 12. 18. 시행], 도로교통법['19. 6. 25. 시행](일명 '윤창호 법') 시행 후 구공판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 표 2-28 | 음주운전 관련 사건의 구공판율

통계산출 기간	음주운전 관련 사건 전체 피의자 수	구공판 피의자 수(구속)	구공판율 (구속구공판율)
'18. 10월 ~ '19. 12월	148,609명	26,525(615)명	17.84(0.41)%
'19. 10월 ~ '20. 12월	132,103명	40,132(453)명	30.37(0.34)%
'20. 10월 ~ '21. 12월	120,257명	37,286(251)명	31.01(0.21)%

한편, 2021. 11. 25.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위헌 결정함에 따라 신속히 각 검찰청에 조치사항을 시달('21. 11. 26)하고,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후속조치('21. 12. 6)를 지시하는 등 상습 음주 운전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각 검찰청에 조치하였다.

2)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관련 사건 엄정 대응

2020. 1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확진자가 국내에 최초로 발생하고, 국내외 확산이 급증함에 따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코로나19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대검찰청은 2020. 2월 「감염병 확산방지 및 수사 등 단계별 대응 매뉴얼 등 수사참고 자료」 및 「코로나19 관련 사건처리기준」을 전파하면서 엄단 지시하였고, 2020. 3월 ~ 9월 「코로나19 역학조사 정부합동지원단」에 2차에 걸쳐 검사, 수사관 및 포렌식 요원을 파견하여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적극 지원하였고, 2020. 8월 코로나19 재확산 직후 대검찰청 형사부 주관으로 방역당국 등 담당자 핫라인 구축 및 방역저해사범 엄정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 화상회의를 개최하였고, 2020. 8. 25.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시행 2020. 4. 5.] 내용을 반영하고 방역저해 사범 구공판 원칙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하여 각 검찰청에 전면 시행하였다.

또한, 대검찰청은 2021. 3. 18.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대응 방역조치 행정명령과 관련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집합제한조치와 방역지침의무화조치를

명확히 구분(법적근거, 위반시 제재 등)하여 행정명령 발령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3) 강력범죄, 스토킹범죄 엄정 대응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는 국가의 최우선적 사명 중 하나이므로 강력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범죄의 실체를 규명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과 재범방지 노력이 필요하다.

대검찰청은 살인(변사) 사건의 암장 방지 및 사인 규명을 위해 2021. 1. 법의학 교수, 법의관 등 전문가 31명으로 구성된 제3기 법의학 자문위원회를 출범하였고, 전담수사 체계 확립, 범행동기 및 공범관계 철저 수사를 통해 살인범죄에 엄정 대응하도록 2021. 8. 각 검찰청에 '살인범죄 철저 수사 등 엄정 대처' 지시를 하였다.

한편, 스토킹범죄는 2021. 10.「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형사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스토킹과 그에 이은 보복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엄정 대응 및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대검찰청은 스토킹범죄에 대한 실효적 대응을 위해 2021. 10. 73명을 '스토킹범죄 전담검사'로 지정한 후 2022. 12.말 기준 92명까지 전담검사를 추가·지정하였고, 2021. 12. 및 2022. 8. '스토킹 전담검사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 주요 업무사례 공유, 업무상 유의사항 전파 등을 하였다.

또한, '검·경간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형사절차의 전과정'에서 스토킹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2. 9. 대검찰청과 경찰청 간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2022. 9. ~ 2022. 10. 전국 60개 검찰청과 관할 경찰서 간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2022. 12.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제2부를 신설하여 스토킹범죄 수사역량을 강화하였다.

라. 쾌적하고 안정된 국민경제생활의 확보

1) 조직폭력사범 엄정 대응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반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여 폭력조직에 대한 전면적인 단속을 실시한 이래 조직폭력 세력이 상당히 위축되었으나, 점차 그 세력을 회복하여 최근에는 조직폭력배 간 공개장소에서의 난투극 등 집단 폭력, 흉기 난동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기업인 행세를 하는 조직폭력배가 무자본 M&A, 주가조작 등의 경제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며,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거나, 마약 밀수·유통,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등 민생에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범죄행위까지 활동 영역을 확대하는 조직폭력배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검찰청은 '22. 7. 26. 전국 18대 지검 마약·조직범죄 전담 부장·검사 화상회의 개최, '22. 8. 16. 전국 6대 지검 마약·조직범죄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하여 조직폭력배, 마약밀수조직에 대한 DB 구축 및 국제공조체제 강화, 경찰청·관세청·국정원 등 유관기관과의 수사협의체 구축, 전담검사 책임처리제 실시, 처벌강화 및 범죄수익 박탈 등을 통해 조직폭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하였다.

'22년도 주요 조직범죄 수사 사례로 ▲ 급격히 세력을 재확장하려는 인천 최대 규모 폭력조직 '간석식구파'를 선제적으로 단속하여 신규조직원 24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등으로 기소한 사례, ▲ 조직적으로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유통시킨 조폭 출신 지역 선·후배 3명을 기소한 사례, ▲ '이천연합파'를 구성하여 인근 유흥업소 등 이권을 장악하고, 경쟁조직과의 '전쟁'을 위해 집결하는 등 범죄단체로 활동한 사건에서 두목을 비롯한 핵심조직원 7명을 구속 기소하고 부두목, 고문 등 조직원 30명을 불구속 기소한 사례, ▲ '충장오비파'와 '국제PJ파' 조직원 간의 폭력사건에서 비롯된 국제PJ파의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사건을 수사하여 '국제PJ파' 조직원 12명 구속 기소, 17명 불구속 기소 등 총 36명을 사법처리한 사례, ▲ 군산지역 폭력조직 '그랜드파'와 '백학관파' 사이 연쇄 보복 폭력사건에서 그랜드파 소속 조직원 5명을 구속 기소하고, 백학관파 소속 조직원 2명 구속 기소, 1명 불구속 기소한 사례 등이 있다.

범죄단체 등 기소현황은 〈표 2-29〉와 같다.

| 표 2-29 | 범죄단체 등 기소현황

(단위 : 명, 괄호 안은 구속구공판 인원)

연 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기소	363(87)	278(119)	278(107)	345(91)	178(43)	226(33)	291(72)

2) 전세보증금 사기 사범 엄단

'22. 7.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을 계기로 대검에서 「전세보증금 사기 엄정 대응」 지시를 하는 등 전세사기 수사가 본격화되었다. '19년 ~ '21. 8.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보험)에 접수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8,130건, 총액 1조 6천억 원 상당으로 미반환 사고 건수 및 액수가 증가 추세에 있고, 그 중에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건수는 89%에 이르고 있었다. 전세보증금 사기는 대표적 서민주거지인 '빌라(다가구, 다세대 주택)'를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가 주로 '서민'과 '2030 청년'인 경우가 많고, 사실상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과 삶의 터전인 주거지를 상실하게 되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입게 되므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검찰은 '22. 7. 11. '서민을 울리는 전세보증금 사기 범죄'에 대하여, ①

「검찰사건처리기준」에 따라 기망수법이 계획적·적극적인 경우 등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②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전세금을 마련한 경위, 전세금이 피해자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피해 회복 여부 등 구체적 양형사유 수집 및 제출, ③ 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 항소, ④ 은닉재산 추적을 통한 피해회복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엄정 대응방안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하였다.

또한, 검찰은 '22. 10. 14. '일상생활의 평온'과 '삶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대표적인 '민생침해범죄'를 중점적으로 엄단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면서 그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 증가에 따라 ① '실질적 피해규모'와 '피해회복 여부'를 '구속수사'와 '양형'의 최우선 요소로 고려하고, 다수 피해자 발생 시 '경합범 가중'에 따라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하며, ② 전국 청에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하여 경찰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③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직접수사'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였다.

한편, 소위 '세 모녀 전세사기', '빌라왕', '건축왕' 등 주요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규모·조직적 범행이 드러나고 추가 피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전세사기 엄단을 위한 유관기관 총력 대응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23. 1. 18. 검찰·경찰·국토부가 참여하는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검찰총장은 협의회 참석자들에게 "전세사기는 청년과 서민이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노린 범죄로서,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므로 특단의 각오로 엄정하게 대응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종래 전세사기 범행은 임대인 개인이 임차인이나 금융기관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의 전세사기 범행은 전문 조직이 무자력자를 바지 임대인으로 내세우고, 다수의 임차인을 타겟으로 삼아 범죄 전(全) 과정을 설계하고, 임대인·임대사업자뿐 아니라 공인중개사, 분양대행업자까지 가담하는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전세사기의 주요 유형으로는 ① '무자본갭투자' 방식으로 실제 분양·매매대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보증금을 받는 소위 '깡통전세' 사기, ② 조직적으로 허위 임차인들을 모집한 후 허위 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금' 등을 편취하는 사기, ③ 부동산을 담보신탁으로 제공하여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음에도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임대차 계약을 하는 '신탁부동산 이용' 사기, ④ 대출금, 건물의 전월세 계약 현황 등을 속여 충분히 자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권리관계 기망' 사기 등이 확인되고 있다.

위와 같이 전세사기에 엄정 대응한 결과, 주요 수사사례로는 ① 검찰 보완수사로 피해자 219명, 보증금 497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 무자본갭투자자와 분양대행업체 대표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기소한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총 피해자 355명, 편취금 795억 원)', ②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263명의 임대보증금, 분양대금 등 내집마련 자금 73억 원을 편취한 임대사업자 직접 구속기소 사건 등, 주요 공소유지 사례로는 ① 무자본갭투자로 세입자

110명을 상대로 123여 억 원을 편취한 전세사기 주범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 선고, ② LH·SH 협력업체 사칭·계약서 위조 등 수법으로 피해자 3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76억 원 편취한 사범에 대해 징역 9년 선고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22. 7.부터 12.까지 전세보증금 사기 사범 주요 단속 실적은 〈표 2-30〉과 같다.

| 표 2-30 | 전세보증금 사기 사범 단속 실적

구분 ('22. 7. ~ 12.)	'22. 7~9.	'22. 10.	'22. 11.	'22. 12.	합계
기소 인원	61	32	28	24	145
구속 인원	18	12	7	9	46

3) 서민다중피해범죄 엄정 대처

최근 인터넷과 기술 발전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서민 대상 범죄가 늘어나고, 경제적 상황 변화로 어려움에 처한 사회 취약층을 상대로 한 '불법 사금융' 범죄가 증가하였다.

이에 대검찰청은 불법다단계·유사수신, 불법사금융 등 불특정 다수 서민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양산하는 서민다중피해범죄에 대한 집중 대응을 위해 전국 28개 차치지청 이상 검찰청에 전담검사를 지정하는 등 서민다중피해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다수 서민들에 대한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가상통화 범죄 근절을 위해 ① 경찰 신청 영장 신속·엄정 처리 및 송치 사건에 대한 신속·철저 수사, ② 관련 사범에 대한 강화된 사건처리기준 적용, ③ 범죄수익의 근원적 박탈, ④ 정보보고 및 공보 철저 등을 일선청에 전파하였다.

서민다중피해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 별로 피해 액수, 거주지, 신고시기 등이 서로 달라, 수사 초기에는 사건이 흩어져 있다가 검찰 수사로써 범행 전모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 특화된 수사기법 공유 등을 통한 수사·공판 역량 강화를 필수로 판단하였는 바,

가상자산 5대 범죄 유형과 주요 불법사금융 범죄 유형을 선정하고 ▲ 양대 범죄의 철저한 수사, ▲ 범죄수익 환수, ▲ 피해자 지원, ▲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를 일선 검찰청에 지시하는 한편, 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실제 수사사례를 바탕으로 제작한 수사 모범기록 및 수사 착안사항 등 참고서적을 제작·배포하였고, 불법 사금융 단속 관련 우수사례를 서로 공유하는 등 수사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4) 불법 사행행위 관련 범죄 집중 단속

검찰은 인터넷 사행행위를 대표적인 서민생활침해범죄로 간주하고, 해외에 서버를 두고 막대한 이익을 취득하며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등 국제화·거대화·첨단화되고 있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대해 전문적·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조직범죄 등 강력사건을 전담하는 수사부서가 사건을 담당하여 기업형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고, 범죄단체로서의 요건(조직구조, 통솔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규명하여 범죄단체구성·가입·활동죄로 적극 의율하는 등 단순 도박공간개설죄로 기소하는 것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특히, 관련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하기 위해 불법 소득에 대한 조세포탈 혐의도 적용하여 징역형뿐만 아니라 포탈세액에 상응하는 벌금형까지 선고받게 한 뒤 강제체납 절차를 통해 벌금액을 징수하고, 벌금 미납 시 장기간 환형유치하는 등 실질적인 범죄수익 박탈 효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였다.

주요 수사사례로 ▲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의뢰를 받아 통장 등 접근매체 수백 개를 매수하여 도박자금 3,334억 원 상당을 관리하며 수수료를 취득한 도박자금 세탁조직을 적발, 핵심가담자 5명을 구속(14명 인지)하고, 범죄수익 17억 원 상당을 환수한 사례, ▲ 중국 청도에서 2년에 걸쳐 약 320억 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자를 검거하여 구속한 사례, ▲ 태국에서 41개의 국내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도박자금 약 966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자를 검거하여 구속한 사례, ▲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1,400억 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폭 등 운영진 6명을 엄단하고, 구속된 주범 3명의 재산을 신속하게 추적하여 8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환수한 사례 등이 있다.

사행행위사범 단속 현황은 〈표 2-31〉과 같다.

| 표 2-31 | 사행행위사범 단속 현황

(단위 : 명)

죄명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도박 등	29,031	27,462	26,239	28,119	20,582	17,441	18,568	19,243	12,814	10,971
게임산업법	11,003	9,682	11,771	12,403	10,233	7,837	7,580	6,226	4,434	4,562
국민체육진흥법	1,391	4,032	4,742	15,467	8,342	4,757	7,658	7,889	1,088	607
사행행위규제법	2,559	2,082	1,815	1,321	757	493	473	359	205	267
한국마사회법	859	1,122	1,049	1,266	906	1,127	1,210	852	393	567
합계	44,843	44,380	45,616	58,576	40,820	31,655	35,489	34,569	18,934	16,974

5)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단속

가상세계와 가상자산,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등장과 함께 디지털 전환이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지식재산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인식과 함께 지식재산의 보호쟁점이 크게 부각되고,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요구된다.

전통적인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인 상표 도용, 서적·음반·컴퓨터프로그램 무단복제 등의 범죄는 ① 일반인이 SNS에 일상공유와 상업활동을 위한 홍보를 병행하면서 타인의 사진도용 행위에 대해 사진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사례, ② 영상물 스트리밍 사이트·불법 웹툰 사이트·유투버 등의 리뷰 콘텐츠 불법공유 등을 통한 저작권 침해 사례, ③ '병행수입정품'을 가장한 위조품 판매 사기 사례, ④ SNS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위조품 유통 사례 등으로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

그동안 검찰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하여 신속한 권리구제와 분쟁해결의 필요성을 충족하고 검찰 수사역량을 전문화·집중화하기 위해 '15. 11월 대전지검을 「특허범죄 중점검찰청」, '17. 12월 수원지검을 「첨단산업보호 중점검찰청」으로 지정·운영하고, '18. 2월 대전지검에 「특허범죄조사부」를 신설하여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힘쓰고 있다.

또한, '17. 10.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에 기술유출·특허법위반 등 고도의 기술적 쟁점이 포함된 사건에 대하여 사건관계인 및 변호인이 직접 쟁점 기술을 시연·설명하고, 검사가 기술적 쟁점 등을 신문하며 특허수사자문관이 자문할 수 있는 '특허기술변론절차'를 도입하였다. 전문성과 투명성이 담보되고 충분한 변론 및 기술적 공방 기회가 부여되는 특허범죄 수사에 특화된 원스톱(One-Stop) 특허기술변론절차를 도입하여,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특허권을 보호하면서도 특허범죄에 연루된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검찰은 지적재산권 침해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허청·문체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①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 중국에서 들여온 위조 명품 15,965점(정품가격 약 53억원)을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중국동포를 구속기소한 사건, ② 문체부 특별사법경찰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 안테나로 수신한 K-방송 콘텐츠를 실시간 녹화·송출하는 설비를 구축한 뒤 불법 스트리밍 서버 운영자에게 판매해 미국·중국·싱가포르 등에 방송송출한 중국국적 해외동포를 구속기소한 사건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기술유출' 범죄는 국가안보와 국가경쟁력, 기업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이며, 장기간의 대규모 투자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그 피해 회복이 어려워, 강력한 처벌과 경제적 이익 박탈을 통해 사전차단 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기술유출' 범죄의 치밀성·은밀성으로 암수범죄가 많고, 증거확보와 피해액 산정 등 양형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있으며, 기소 이후 실제 법원에서 선고되는 형량이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대검찰청은 '22. 10. 종래 반부패·강력부에서 담당하던 '기술유출' 범죄 수사지휘를, 전문 과학수사지원 인력을 보유한 과학수사부(사이버수사과)로 이전하고 과학수사부 내에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하였으며, 이를 중심으로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지휘 및 지원, 첩보분석,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검찰은 기술유출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여, ① 반도체 초순수시스템 관련 기술자료를

취득해 중국 회사로 이직하여 사용한 엔지니어 2명을 구속기소한 사건, ② 경쟁업체인 미국 회사로 이직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파운드리 공정 관련 국가핵심기술 자료를 몰래 촬영한 핵심 연구원 1명을 구속기소한 사건, ③ 중국 내 반도체 소재 업체와 동업을 약정한 뒤 연구원들을 포섭해 중국으로 이직시키고 그 과정에서 반도체 공정 소재 국가핵심기술 등을 유출한 연구원 3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6명을 기소한 사건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현황은 〈표 2-32〉와 같다.

| 표 2-32 |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단속실적

(단위 : 명)

죄명 / 연도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저작권법 위반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위반	게임산업진흥법위반, 영화및비디오진흥법위반, 음악산업진흥법위반	디자인보호법위반, 특허법위반, 실용신안법위반	계
2013	6,316 (106)	37,182 (4)	3 (0)	25,068 (641)	1,827 (0)	70,396 (751)
2014	6,611 (110)	41,900 (9)	9 (0)	21,935 (518)	1,624 (0)	72,079 (637)
2015	7,398 (144)	52,196 (4)	2 (0)	23,262 (586)	1,390 (1)	84,248 (735)
2016	8,012 (104)	33,808 (2)	1 (0)	24,598 (491)	1,481 (0)	67,900 (597)
2017	6,293 (73)	24,533 (4)	1 (0)	21,817 (322)	1,513 (0)	54,157 (399)
2018	5,861 (47)	18,638 (13)	0 (0)	16,805 (259)	1,354 (0)	42,658 (319)
2019	7,941 (24)	16,285 (12)	2 (0)	16,532 (195)	1,382 (0)	42,142 (231)
2020	6,207 (26)	13,747 (7)	0 (0)	12,759 (147)	1,427 (3)	34,140 (183)
2021	4,636 (7)	5,695 (7)	0 (0)	10,992 (84)	884 (2)	22,207 (100)
2022	4,272 (4)	6,070 (8)	1 (0)	11,471 (70)	761 (0)	22,575 (82)

( )은 구속

6) 국내·외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 방안 수립

보이스피싱 범죄는 서민을 울리는 대표적인 민생침해범죄이자 조직범죄로써, 범행수법이 지속적으로 고도화되면서 범죄 태양이 다양해지고, 범죄조직 규모가 커졌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피해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피해자가 삶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등 커다란 사회악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결국 보이스피싱 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등 관계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대응하는 범정부적 차원의 합동수사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22. 7. 29. 검찰청 주도하에 경찰·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범정부 전문인력 50여 명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출범하게 되었다.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수단은 출범 5개월 만에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급 20명, 중간간부급 조직원 78명을 포함하여 합계 111명을 입건하고, 그 중 총책 3명, 중간간부급 조직원 16명 등 24명을 구속하는 수사성과를 올렸다.

합수단에서 구속 기소한 피의자들 중에는 직접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조직폭력배와 마약사범뿐만 아니라,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통장 수십 개를 만들어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한 조직폭력배들도 여럿 있었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대응 범부처 TF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석하여 유관기관과 최신 범죄 수법 등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였으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가담 방지를 위한 직업안정법시행령 개정, 보이스피싱 정부 통합신고센터 설립,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스팸 문자 차단, ATM기기를 이용한 현금인출 및 입금 제한 등 예방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대검 및 일선청 보이스피싱 전문 검사 등으로 구성된 「대검찰청 보이스피싱 대응 TF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사건처리 기준 강화 등 각종 수행 과제를 발굴·추진하였다.

'22. 4. 대검찰청은 필리핀 검찰청·국가수사국·이민청 등 국가기관을 방문하여 각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보이스피싱 등 한·필 국제수사공조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22. 7.부터 보이스피싱 조직 해외 거점 타격을 위해 필리핀 국가수사청에 검찰수사관을 출장 근무하도록 하여, 현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현지 수사기관과의 합동수사를 위한 협정 체결을 진행 중이다.

국제공조를 위한 세계 각국과의 핫라인 구축을 위해 '22. 4. 美 주관 「초국가적 조직범죄 및 테러리즘 관련 국제회의(ICTOCT)」에 참가하여 보이스피싱 등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최근 동향을 파악하고, 각국 수사기관 관계자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주요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 사례로는 ▲ 단순 현금수거책만 불구속 송치된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여 마약사범과 조직폭력배가 연루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모를 규명하여 국내외 총책 등 총 30명을 입건하고 9명을 구속한 사례, ▲ 유령법인 16개를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수십개의 대포통장을 만들고 약 13억 원의 보이스피싱 사기를 방조한 조직폭력배 출신 대포통장 유통총책 등 4명을 구속한 사례, ▲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 약 78억 원 상당을 무역업체를 통해 수출입 대금으로 가장하여 자금세탁 후 중국으로 반출한 해외 반출책을 구속한 사례, ▲ 인천, 중국, 캄보디아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설치하고 대출을 빙자하여 10억 원 이상을 편취한 뒤 11년간

도피생활을 이어온 보이스피싱 콜센터 총책을 추적·체포하여 구속 기소한 사례 등이 있다.

보이스피싱 발생건수 및 검거현황은 〈표 2-33〉과 같다.

| 표 2-33 | 보이스피싱 발생건수 및 검거현황

(출처 : 경찰청)

구분 \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발 생 건 수	24,259	34,132	37,667	31,681	30,982	21,832
검 거 건 수	19,618	29,952	39,278	34,051	27,647	24,522
검 거 인 원	25,473	37,624	48,713	39,713	26,397	25,030
피해금액(억원)	2,470	4,040	6,398	7,000	7,744	5,438

마. 형집행 지휘·감독

1) 벌과금 집행

가) 집행실적

2022년 세입예산액은 1조 2,714억 9,680만 원이었고, 세입예산액의 93.85%인 1조 1,933억 4,453만 원을 집행하였다. 2022년 말 현재 전국의 벌과금집행 미제액은 총 33조 494억 4,604만 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전년 보다 1.93% 증가되었다.

2022년말 현재 벌과금집행 및 집행 미제현황은 〈제5장 통계 : 표 5-48〉과 같다.

나) 벌과금집행 우수기관 등 포상

2022. 12. 31. 벌과금 집행실적이 우수한 청을 선정하여 수원지방검찰청 등 6개청을 집행유공기관으로 표창하였고, 집행유공공무원 18명에 대하여 법무부장관표창을 수여하였다. 집행유공기관으로 표창을 받은 검찰청은 다음 〈표 2-34〉와 같다.

| 표 2-34 | 2022년도 벌과금 집행 유공 표창기관 현황

순 위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5그룹	6그룹
1위	수원지검	광주지검	청주지검	춘천지검	강릉지청	장흥지청

※ 실적산출 방법 : 현년도 집행률(40%) + 과년도 집행률(30%) + 세입예산액 달성도(20%) + 강제집행실적(10%)

2) 사형 확정자 관리

2017년 말 현재 미집행 사형수는 총 57명(군형법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미집행자 제외)이며, 1997. 12. 30. 23명을 집행한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3) 형 또는 구속집행정지자, 보석자 관리

형집행정지자 또는 구속집행정지자 및 보석자 관리에 대해 분기별로 일제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다.

2022년 한 해 동안 형집행정지자 972명 중 261명에 대하여 잔형집행 등을 하였고, 구속집행정지자 864명 중 798명에 대하여 구속집행 등을 하였으며, 보석으로 석방된 1,721명 중 251명에 대하여 보석취소를 청구하여 구속집행 하였다.

4. 국민의 권익 보호

형사기획과 검사 문호섭

가. 개요

법무부는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위하여 인권보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 제·개정 및 사회적 약자의 권익 향상,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등을 정책과제로 삼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법무부는 2003년부터 시행된 「인권보호수사준칙」이 국민의 변화된 인권의식에 미흡하다는 판단 하에 약 2년여 동안 개정작업을 추진하여, 2006. 6월 동 준칙을 전면 개정하여 2006. 7. 1.부터 시행 중에 있다. 또한 위 준칙에 따른 일선 검찰의 인권보호 실태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2007. 8월 검찰인권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07년부터 전국 검찰청에 대한 인권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청을 포상하고 있다.

나. 인권존중의 수사시스템 정착

법무부는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03. 1월 법무부 훈령으로 「인권보호수사

준칙」을 제정·시행하여 왔으나, 준칙의 내용에 구체성이 부족하여 실제 수사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고, 준칙 시행 이후 제·개정된 법령이나 각종 제도개선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작업에 착수, 다양한 내·외부 의견수렴 절차 및 법무부 정책위원회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2006. 6. 26. 동 준칙을 전면 개정하였다.

동 준칙은 개정 전과 달리 준칙이 단순히 선언적인 규정에 그치지 않고 규범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검 지침 등을 참조하여 가급적 구체화하였으며, 그 내용에 따라 장·절을 세분화하였다. 그 결과, 개정 전에는 총 3장 35개 조문에 불과하였으나 개정 후 3장 8절 73개 조문으로 전면 개편되었다. 또한 일반 국민이 준칙의 인권보호적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제 및 조문내용을 수요자 관점으로 재구성하였다.

또한, 2018. 2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인권보호수사준칙」 개정 권고에 따라, 2018. 4. 16. 출석요구 시 죄명 및 피의사실 사전고지, 조서 미작성시에도 변호인 참여 배제 불가, 피의자에게 메모 허용, 심야조사 시 심야조사 허가내역을 대검찰청 인권보호관에게 분기별 보고를 하게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여 발령·시행하였다. 이에 법무부장관은 2018. 7. 23.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이 공표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인권보호수사준칙」 및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철저준수 등을 지시하였다.

그 이후, 법무부는 2019. 12월 부당한 수사방식 제한, 중요 수사 관련 보고, 압수수색 시 준수사항, 피의자 출석조사 최소화, 장시간조사·심야조사 제한, 충분한 휴식시간 부여, 피해자·참고인 출석요구 및 조사시 유의사항,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전용조사실 이용, 규칙 위반행위에 대한 보고의무 등을 규정한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 제9611호)」 제정안을 마련하여 발령·시행하였다.

참고로 2022년 중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27,566명 중 23.2%에 해당하는 6,389명을 기각하였다.

또한 사법경찰관리에 의한 인권침해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체 구속 장소가 없는 수사관서를 포함하여 2022년에 모두 2,443회에 걸쳐 구속 장소 감찰을 실시하였다.

「인권보호수사규칙」 시행 이후, 대검찰청 인권감독담당관실은 점검반(인권감독담당관을 반장으로 총 4명으로 구성)을 편성하여 시행 중인 각종 인권보호제도의 조기 정착 및 직원들의 인권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일선 청의 인권보호 업무에 대한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2019년 4분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전국 59개 검찰청(지검 및 지청)에 대한 인권업무 이행실태 점검을 완료하였다. 2022년 하반기부터는 고검 인권보호관의 역할 확대 및 보다 내실있는 점검을 위해 5개 고검(수원고검 제외, 관할 단독지청 없음) 인권보호관이 관할 단독지청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토록 역할을 분담하였고,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결과를 해당 청에 송부하여 인권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선청에서 보완 후 조치내역을 대검찰청에 보고토록 하였다. 인권업무 이행실태 점검은 인권보호수사규칙,

심야조사 개선 방안, 인권보호수사규칙 고지 표준화 방안, 인권 관련 실태조사 표준화 방안, 수용자 출석요구 시 인권 개선방안 등을 기준으로 그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매년 새롭게 시행되는 지시·지침 등을 반영하고 점검사항을 확대하여 2021년에는 기존 점검사항에 더하여 '반복 출석조사 적정성, 수용자 출석 후 수사과정의 기록, 압수수색 관련 인권보호관 기록 열람 및 의견 제시' 등을 추가하여 점검하였고 2022년에는 '통역인 운영규정 준수 여부' 등을 추가하여 점검하였다.

또한, 대검찰청은 2021. 9. 1.부터 인권보호관이 배치된 전국 34개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이 검찰 직접수사 개시사건에 대해 영장, 출국규제, 기소의 각 단계에서 수사절차의 적법성·적정성을 점검하도록 하는 「검찰 직접수사 개시 사건 인권보호관 점검 지침」(대검 예규)을 제정·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한 사건의 영장 청구, 출국금지 및 정지, 공소제기의 결정 등 각 단계에서 수사팀과는 별도로 수사를 담당하지 않는 인권보호관이 증거와 자료를 검토하여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관련 각종 법령 등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검찰의 직접수사가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엄격한 통제 하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대검찰청은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에서 검찰업무의 패러다임을 '인권보호'로 전환하고, 인권중심의 수사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수사 관련 제도와 실무관행을 점검·개선하기 위하여 2020. 6. 16. 검찰인권위원회 산하 연구조직으로 '인권중심 수사TF'를 발족하였다. 위 TF 발족 이후 법무부의 '인권수사 제도개선TF'와 총 7회 연석회의를 개최하였고, 2020. 10. 12. '인권중심 수사관행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으로서 수용자 출석요구 개선, 반복 출석조사 점검 강화, 참고인 조사방식 다양화, 일선 인권교육 강화, 압수수색 영장청구 및 절차 개선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개선방안 1차 시행계획'을 일선에 전파하였다.

대검찰청은 '21. 1. 종전 지시로 시행하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을 사전 영장까지 확대 실시하고, 요건과 절차를 규범화하여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검사의 사경 인신구속에 대한 사법통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게 되었다.

대검찰청은 '21. 3. 검찰 직접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별건범죄 수사단서의 수사개시 요건·승인절차·수사주체의 분리 등을 규정하여 직접 수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검찰 직접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별건범죄 수사단서의 처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였다.

대검찰청은 '21. 6. 검찰-교정시설 KICS 개선으로, 수용자용 출석요구서를 KICS로 발송, 수용자에게 직접 전달하고 법령상 출석의무가 없는 피의자가 아닌 수용자의 임의 출석권을 보장하기 위해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교도관을 통해 검사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하였다.

다. 형사보상의 신속·적정 도모

구속 후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거나,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형사보상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동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신속한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구속 피의자·피고인의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였다.

2022년 피고인 보상은 858건에 357억 3,396만원, 무죄비용 보상은 2,068건에 54억 2,653만원이 지급되었고, 피의자 보상은 57건에 11억 6,255만원이 지급된 바, 피고인 보상금 및 무죄비용 보상금 지급현황은 〈표 2-35〉와 같고, 피의자 보상금의 지급현황은 〈표 2-36〉과 같다.

| 표 2-35 | 2022년 피고인 보상금 및 무죄비용 보상금 지급현황

(단위 : 천 원)

구 분	피고인 보상			무죄비용 보상	합계
	소계	구속사건 무죄	재심사건 무죄 (양벌규정 및 과거사 등)		
건수	858	232	626	2,068	2,926
금액	35,733,960	7,604,395	28,129,565	5,426,534	41,160,490

※ 피고인 보상(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 구금에 대한 보상

※ 무죄비용 보상(형사소송법 제194조의 2) : 재판에 소요되는 비용(변호사비용, 여비, 일당 등) 보상

| 표 2-36 | 2022년 피의자 보상금 지급현황

(단위 : 천 원)

구 분	접 수 (신수+구수)	처 리			처리중 (미결정)	지급
		인 용	기 각	계		
건수	57	57	·	57	·	57
금액	1,162,554	1,162,554	·	1,162,554	·	1,162,554

※ 피의자 보상(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7조) : 구금에 대한 보상

5. 미래형 선진수사시스템 구축

형사기획과 검사 문호섭

가. 기본방향

고도의 산업화와 정보화로 특징지어지는 현 시대에서, 우리 사회는 과거와 달리 사이버범죄 등 다양한 신종 범죄가 급증하고, 범죄의 성격도 지능화·흉포화·조직화·광역화되어가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복잡하고 다양한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수사과정에서의 투명성·공정성 확보와 인권보장을 위해 조직·인원 정비, 시설 확충, 첨단 과학수사장비 도입 등 다각적으로 과학수사 운영체제를 확충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를 첨단화하는 등 검찰 수사업무의 과학화와 정보화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나. 과학수사 운영체제의 확충

검찰수사의 과학화는 1978. 3월 중앙수사부에서 거짓말탐지기 2대를 도입한 이래로 1984. 7월 중앙수사부 과학수사운영과 설치, 1991. 8월 과학수사지도과 설치, 1998. 2월 두 과를 통합한 과학수사과를 설치하여 과학수사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2004. 12. 31.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에 의해 기존의 과학수사과는 폐지되고, 2005. 4월 과학수사기획관 및 과학수사제1담당관, 과학수사제2담당관이 신설되어 과학수사 담당부서가 확대 개편된 후 2007. 3. 8. 과학수사제1담당관을 과학수사담당관으로, 과학수사제2담당관을 디지털수사담당관으로 변경하였고, 2010. 7. 26.「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010. 8. 4.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 디엔에이수사담당관이 추가 신설됨으로써 과학수사기획관 산하에 과학수사담당관, 디지털 수사담당관, 디엔에이수사담당관 등 3담당관 체계로 전환되었다.

이후 2015. 2. 11. 종전 3담당관 체계로 운영되던 과학수사기획관 체제를 검사장 중심의 '과학수사부'로 승격시키면서 문서감정 등 범죄수사 관련 감정·감식을 담당하는 과학수사1과, DNA·법생물·법화학 감식 등을 담당하는 과학수사2과, 전자적 증거의 수집·분석을 담당하는 디지털수사과, 사이버범죄 수사지원을 담당하는 사이버수사과와 이를 총괄·관리하는 과학수사기획관 등 1기획관, 4과로 조직 체계를 확대·개편으며, 2018. 2월 과학수사1과를 법과학분석과로, 과학수사2과를 디엔에이·화학분석과로 과명칭을 개정하여 담당업무가 명칭에 반영되도록 하였다.

2018. 6. 21.「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이 발표된 이후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 2020. 2. 4. 검찰청법, 형소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이에 개정 법 시행(2021. 1. 1.) 등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 사무분장 조정과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의 일부 조직 개편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공포·시행(2020. 9. 3.)됨에 따라 과학수사기획관을 폐지, 4과 조직 체계로 개편되었다.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법과학분석과는 총괄운영실을 별도로 설치함으로써 기존 과학수사기획관실의 행정통합 관리·운영 업무의 공백이 없이 계속 운영·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비 하였다.

뿐만 아니라, 2011. 4월 부산고검에 마약감식팀을 신설하여 영남지방의 마약범죄 수사에 대한 현장 지원을 강화하였고, 디지털 포렌식 수사 지원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및 원거리 압수수색 지원에 따른 수사지원의 적시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과 부산고검, 대구고검, 광주고검, 대전고검, 인천지검에 이어 2012년도에 수원지검, 2014년도에는 서울고검, 서울남부지검, 창원지검, 2017년도에 서울북부지검, 춘천지검에 디지털 포렌식팀을 신설하였고, 2019. 3월 수원고검 개청으로 수원지검 포렌식팀이 수원고검 포렌식팀으로 이전하였다. 또한, 디지털증거 압수 절차의 적법성이나 증거 자체의 무결성 등에 대한 법정 공방이 점점 더 치열해짐에 따라, 2021년에는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에 공판업무 지원을 위한 공판지원팀을 신설하였다.

전자정보 선별과정에 대한 사건관계인·변호인 등의 참여 증가, 선별 소요기간의 장기화 등에 따라 날로 증가하는 참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22년도 서울중앙지검 등에 참관실 4개를 추가로 설치하였다. 나아가 디지털포렌식 수사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계획 중 하나로 2026년까지 포렌식수사관 2배 증원, 서울동부지검 등 거점청 2개 신설 및 참관실 총 18개 증설을 추진하기로 하고, 2023년 1월 첫 추진과제로 서울중앙지검 등 거점청 3개에 포렌식수사관 6명을 증원하고, 참관실 2개를 증설하였다.

또한 법화학·마약·DNA·문서감정 분야에서 2007. 10월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인정을 받은 이래로 2009. 2월 국내 최초로 문서감정 인정 획득, 2011년, 2015년 공인시험기관 갱신평가 통과, 2019년 국제공인시험기관 갱신평가 및 전환평가 통과 등 과학수사부에서 수행되는 감정결과에 대한 신뢰성 제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수사 분야에 있어서도 2020. 11월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받음으로써 국내외적으로 공인된 전문 감정기관으로서의 그 위상을 공고히 하였으며, 2021. 11월 정기검사를 통과함으로써 내실을 다져나가고 있다.

2014. 5월경에는 현대 범죄 수사에 있어서 CCTV 등 멀티미디어 증거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삭제 또는 손상된 멀티미디어 파일을 복구하여 제대로 재생될 수 있도록 하는 멀티미디어 복원 업무를 새롭게 도입하였고, 포렌식 오디오 신호 처리 장비, 음성 자동식별 시스템, 음질 특성 분석 시스템, 포렌식 영상분석 시스템, 영상아카이빙 시스템 등 감정 장비와 수사지원장비 총 1,052점(멀티미이더 복원실 88점)을 새롭게 도입, 배정하는 등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문서감정 분야는 필적감정, 인영감정, 지문감정 및 문서의 각종 위·변조 식별여부, 잠재지문현출과 관련된 감정뿐만 아니라 각종 연구 등을 통해 지질감정, 출력기기 동일여부 감정 등 관련 감정 분야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CA훈증챔버(CyanoAcrylate Fuming Chamber, 2021년), 분광비교측정장비(VSC-8000, 2022년) 등 첨단 감정장비를 도입함으로써 지능화·첨단화되는 문서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심리 분석 분야와 관련하여 2014. 12월에는 급증하는 묻지마 범죄 및 살인, 아동학대 등의 강력사건에 대응하고자 임상심리평가를 도입하여, 피의자의 인지적·성격적 특성, 사이코패스 여부,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2016. 5월부터는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자를 상대로 '판결 후 성범죄자 심리생리검사(Post-Conviction Sex Offender Testing, PCSOT)'를 실시하여 성범죄자 재범 방지에 앞장서고 있으며, 2020. 11월에는 1:1 전자감독 대상자, 2021. 11월에는 고위험 피부착자로 PCSOT 대상자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심리생리검사관 양성 교육의 국제 규격화 및 표준화를 통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미국 폴리그래프협회(APA)의 교육기관 인가를 추진, 2015. 9. 7. 대검찰청 심리분석실(Korean Supreme Prosecutor's Office Polygraph Academy)은 아시아 비영어권 최초로 APA 교육기관 인가를 취득하고, 2018. 4. 2.(1차) 및 2021. 8. 17.(2차) 인가를 갱신함으로써 국제 수준의 심리생리검사관 교육기관으로서 선도적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진술 분석 분야와 관련하여 2021. 8. 27. 진술분석 규정(대검 예규 1225호)을 개정하여 기존 13세 미만 아동과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외에도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자에게까지 분석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다.

2022. 3. 16. 진술분석 규정(대검 예규 1267호)을 개정하여 진술분석 대상인 성폭력 피해자의 연령 상한을 13세에서 18세로 상향하고, 아동학대사건의 18세 미만 피해자를 진술분석 대상에 포함시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였다. 또한 나날이 증가하는 진술분석 수요 현실을 반영하여 2022. 5월 진술분석관 6명을 증원하였고, 신규 진술분석관 양성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여 분석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음성 분석 분야와 관련하여 2016. 11월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전화 사기 등 증거 녹음자료에 대한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인 표본 음성 데이터베이스 수집을 완료하였고, 2018. 11월 신원 미상 음성의 성, 연령, 지역을 추정하는 자동 화자 프로파일링 소프트웨어 개발을 완료하였다.

2019. 11월에는 '자동화자 확인 시스템 고도화 연구' 및 '녹음 채널별 화자 내부 음성 변이 연구'를 완료하여 연구결과를 업무에 활용 중이며, 2020. 11월에는 AI를 이용한 한국인 표본 음성 데이터베이스 검색 및 자동 화자프로파일링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2021. 12월에는 '스마트폰 녹음파일의 위변조 여부 분석 기법 연구'를 통해 스마트폰 녹음파일의 위변조 여부를 자동으로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2022. 11월에는 'AI를 이용한

자동 화자 확인 기법 고도화 연구'를 완료하여, 기존 시스템에 비해 향상된 분석 능력을 확보하였다.

영상 분석 분야와 관련하여서는 2017. 11월 영상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 범죄 현장의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동일인 식별을 위한 얼굴 표지점 자동 추출 및 분석 기법 연구를 완료하였고, 2021. 12월 저화질의 자동차 번호판을 확인할 수 있도록 AI를 이용한 차량번호 인식 기법을 개발하였다.

또한, 차량 번호판 분석의 감정 역량 강화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 2022. 6월 '차량의 번호판 인식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 및 장치'를 특허출원하였고, 2022. 12월 특허결정되었다.

멀티미디어 복원 분야와 관련하여 차세대 표준 영상 코덱인 H.265 코덱의 보급이 증가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18. 11월 자체연구를 통해 H.265 영상 복원 기법을 개발하였다.

또한 2020. 4월에는 데이터가 손상된 증거 동영상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손상된 압축 파일에서 동영상 데이터를 복원하는 기법을 개발하였으며, 2021. 12월에는 소형 디지털 카메라, 녹음기 등에서 사용하는 FAT32 파일시스템에서 삭제된 파일의 생성시간, 수정시간, 파일이름, 파일 크기 등과 같은 메타데이터를 복원하는 기법을 개발하였다. 2022. 2월에는 신속한 속기업무 지원을 위해 표준 규격이 아닌 녹음파일을 일반 재생프로그램에서 재생가능한 형태로 변환하는 기법을 개발하였다.

2022년도 감정처리실적은 법화학감정 54,125점, DNA감식 24,027점, 심리분석 1,818명(전국), 진술분석 222명, 문서감정 3,333점, 음성분석 2,594점, 영상분석 3,500점, 멀티미디어복원 4,024점으로 전년 대비 13.1%가 증가하였다.

2016. 1월경부터는 성충동 억제약물 투여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약물치료 확인검사(호르몬 및 상쇄약물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분야는 2010. 1월 디스크분석도구인 CFT 1.0을 개발하여 지속적인 고도화를 통해 현재 네트워크 공유 폴더 수집 기능, 윈도우 10메일 분석 기능, Virtual Box 가상 디스크 분석 기능 등을 반영하여 국세청·관세청·해양경찰청 등 30개 법집행기관에 배포된 CFT 3.10.2.1을 운용 중이고, 2012. 11월 이메일 전용 압수도구인 라이브 e-mail 압수도구를, 2015. 2월 손상파일 복구도구를 개발하였으며, 2015. 12월 급증하는 모바일 분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대검에서 자체 개발한 모바일 포렌식 도구인 MFA를 전국청에 보급하였다. 또한 포렌식어카운팅 기반의 회계데이터 수집·분석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여 2016년 중소기업 대상 회계 도구 FAST를 개발하고, 2017년에 중견기업 대상으로 연구를 추가 진행하여 118개의 부정적발 시나리오기능을 가진 통합 회계 분석도구인 FAAT을 개발, 2018. 5. 최종검증 후 배포하였고, 세계 최초로 개발 적용한 데이터베이스 삭제 레코드 복구 도구인 MSR, MYR을 지속적으로 안정화 하여 활발히 활용 중에 있다. 2019년도에는 포털사에 대한 이메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신속하게 선별압수가 가능한 eFA를 개발하고, 사물인터넷(IoT)과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접목시켜 구축하고 있는 인공지능비서 서비스에 대한 저장 데이터 체계를 연구 및 분석

가이드를 제작 및 배포하였다. 2020년에는 디지털포렌식 분석기법의 표준화에 의한 디지털 증거분석결과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국제표준에 맞춘 인정 시스템을 마련하고,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디스크 이미징기법, 모바일데이터 획득기법에 대하여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을 획득하였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와 함께 개발한 차세대 디지털 현장 압수수색 프로그램인 DFT의 성능진단과 시험사용을 계속 진행하고, 국세청, 특허청 등 2022년 한해 동안 37개 유관기관에 221점을 배포하였다.

또한, 자동차 인포테인먼트시스템 등 자동차 내부의 전자장치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연구하는 등 자동차포렌식 수사 역량을 강화하였다. 검찰 등 법집행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조직 설계 및 발전 로드맵 수립을 위한 디지털포렌식 표준랩 구축 모델을 개발·공유하는 등 검찰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였다.

2022년에는 공개정보 수집 대상 확장 및 방법 다각화 연구, 스마트홈 시스템 모델링 및 획득 데이터 분류 연구 등을 통해 다양한 디지털기기 또는 획득 대상으로부터의 데이터 수집·획득을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고, 일선용 디지털포렌식 도구 기능 개선 개발 사업을 통해 자체개발한 해시값생성도구인 해시젠(HashGEN, Hash value GENerator) Ver. 2.1을 국토교통부, 환경부, 관세청 등 23개 유관기관에 총 231점을 배포하였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디지털 증거분석기법에 대한 연구·개발 등으로 2022년도에는 2,688건의 현장 압수수색과 6,918건의 증거분석(법정증언·기술자문 포함)등 총 9,606건을 지원하였다.

또한 2010. 7. 26.부터 시행된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살인, 강도, 성폭력범 등 강력사범에 대한 DNA감식시료 채취·감식과 DNA-DB 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강력미제사건 해결 및 범죄예방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2016. 5월 무학산 여성 등산객 살인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장갑 등에서 DNA형을 검출하고 DNA-DB검색을 통하여 피의자를 특정함으로써 6개월 이상 일선 경찰에서 밝히지 못하였던 진범을 밝히는 성과를 이루었고, 2018. 5월 국과수 감정결과 DNA 및 혈흔이 불검출된 범행도구 바벨봉에서, 대검찰청의 재감정을 통해 피의자 혈흔 및 DNA형을 검출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강도살인사건 피의자를 구속기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18. 10월 2003 ~ 2006년 사이에 광주 및 대전 일대에서 총 10회에 걸쳐 발생한 연쇄특수강도강간 피의자와 2001년 4세, 10세의 여아를 연속적으로 성폭행한 미제사건 피의자를 DNA데이터베이스 검색으로 특정하고 구속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2019년에는 화성연쇄살인범이 수형인등 DNA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치하여 범인을 특정하여 국내 최장기 미제사건의 진범을 밝히는 데 일조하는 등 큰 성과를 나타내었다.

2021년 9월에는 2001년 발생된 강간사건에서 정액이 묻은 수건으로부터 확보된 피의자의 DNA형이 20년 만에 대검 수형인등 DNA DB 일치로 확인됨에 따라 공소시효를 불과 5개월가량 앞두고 피의자를 구속 기소하였고, 2001년 서귀포시에서 발생한 강도강간 사건의 피의자가 별건으로 수형인등 DNA DB에 수록되면서 2019년에 검색 일치가 통보된 사건은 수사가 개시되어

공소시효가 임박한 2021년 3월에 구공판 후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또한, 18년 전 거제시의 초등학교 교실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혔으나 미제로 남아있던 사건에서, 피의자의 별건 범죄로 DNA정보가 수형인 등 DNA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었고, DNA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여 구속 기소하는 큰 성과를 내었다.

한편 DNA·화학분석과에서는 검찰의 식·의약품 수사 및 다양한 수사영역의 지원을 위해 2015년부터 법생물 감정실 및 화학감정 파트를 신설하여 '가짜 백수오 사건' 과 같은 가공식품, 한약재, 식물성 마약 원료의 진위여부 판단 및 강력사건 현장의 비인체 유래물에 대한 종판별을 통해 인간 DNA 외에 다양한 대상들에 대한 증거분석으로 관련 범죄 수사를 적극 지원하였고, 2020년에는 대검이 보유한 'DNA를 이용한 마약성 양귀비 판별방법' 특허 기술 및 마약성 대마 분석법을 관세청에 기술 이전함으로써 법생물DNA 감식업무의 저변 확대에 노력하였으며, 2021년에는 관세청으로부터 성분 불상의 수입물품에 대한 성분확인 검사를 요청받아 NGS를 이용한 첨단분석기법을 적용하여 환각버섯 및 다양한 식물 성분의 혼합 여부를 확인하였다.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 '중국산 발암성 항생제 닭꼬치 사건', 불법 발기부전치료제, 체중감소제 등 건강기능식품에 불법적으로 첨가될 수 있는 식품관련 화학물질에 대한 감정 지원 및 환경사건과 관련하여 폭발성 휘발물질, 산·염기성 물질에 의한 토양·수질오염, 기름유출 사건과 가습기살균제 사건, 미술품 위작 사건, 성충동 억제약물 투여 대상자에 대한 확인검사(호르몬 및 상쇄약물 검사)를 실시하였고, 2018. 5월 경 허위 신기술 낙뢰보호기를 조달청 등에 납품하여 28억 원 상당을 편취한 내용으로 총 7회 고소·고발 되었으나 모두 혐의없음으로 처분되었던 사건에 대하여 압수품에 대한 화학감정 등을 지원함으로써 피의자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5억 원이 선고되어 확정되는 등 사건 처리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2021년에는 한국전력으로부터 연구비 187억 원을 받아 진행한 차세대 CO2분리막 개발 사업의 재료비 124억 원을 편취한 사건과 관련하여, 개발된 시제품 내에 함유되어 있어야 할 팔라듐이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음을 중금속 분석을 통해 밝혀낸 것을 포함하여, 금세공 관련 사기사건과 관련한 순금 함량 측정, 특허출원한 액정보호필름의 특허 등록 내용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점도 측정 등 다양한 감정 기법을 활용하여 범죄 수사를 지원하였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2018. 12월부터 약물치료 집행명령에 대한 확인 검사 기법개발에 착수하여, 2019. 1월 서울, 수원, 부산 지역 보호관찰소의 관리 대상자를 대상으로 복약검사를 시범 실시하였으며, 2019. 9월부터 권역별로 복약검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이러한 복약검사는 치료명령이 부과된 정신장애범죄자가 처방받은 약물을 정상적으로 복용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인 약물 검사를 통해 치료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치료명령 대상자의 소변 시료에서 항정신성 약물(antipsychotic drug)을 주기적으로 검사함으로써 치료 도중 임의로 약물 복용을 중단하는 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되고 있다.

DNA감정실은 긴급한 시일을 다투는 긴급 DNA감정이나 기존에는 DNA 확보가 어렵다고 여겨졌던 감정물에 대한 정밀 재감정을 통해 사건 수사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에 이바지하고 있다. 2019년 목격자나 CCTV 등의 증거가 없는 살인사건에서 흉기인 과도에서 피의자와 그 가족의 DNA를 검출함으로써 피해자가 칼을 준비하여 공격하는 것을 방어하다가 살인하게 되었다는 피의자의 변소를 탄핵함으로써 구속 기소한 사건이나, 흉기살인 사건에서 피해자의 손톱에서 피의자의 DNA를 검출하여 48시간 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등 사건의 실마리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긴급 감정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금전을 살포한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제보자가 제출한 지폐 및 선거공보 등에서 피의자의 DNA를 검출함으로써 지문으로 신원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도 DNA 정밀감정을 통해 증거물에서 피의자의 연관성 입증이 가능함을 밝혀냈다. 뿐만 아니라, 필로폰에 대한 DNA감정을 통해 제보자 진술에 의존하던 마약수사 관행에서 벗어나 필로폰 소지 범행을 규명하고 마약사범을 체포할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였으며, 2020년 '구리선관위 잔여투표용지 은닉 등 사건'에서는 주요 증거물인 찢어진 서류봉투의 흔적에서 피고인의 DNA를 효과적으로 검출하여 선거범죄 실체 규명의 근거를 제공하였다. 2020. 9월부터 법무부(이민통합과)와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신청자들의 혈연관계 확인 업무 지원을 시작하였다. 이로써 기존 2011년 법무부(국적과)의 '국적 취득 신청자등에 대한 DNA검사 협조체계' 구축 이후 혈연관계 확인 업무가 추가로 확대되었다. 2021년 '구미 3세 여아 사건' 관련 DNA 감정을 통해 피의자(할머니)와 사망한 여아(손녀)의 친모녀 관계를 규명하였고, '제주 조천읍 10대 중학생 살인 사건' 관련 피해자(15세)를 목졸라 살해한 범행도구인 허리띠에서 피의자 2명의 DNA를 검출해냄으로써 혐의 규명에 기여하였다.

과학수사부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90.4억 원의 예산으로 「형사사법 증거 검증체계 고도화 및 프런티어 기술 연구개발」이라는 명칭의 국가연구개발사업(R&D)을 추진하게 되었다. 본 사업은 '법과학 증거의 증명력 검증체계 고도화' 연구를 통해 법과학 증거의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증명력을 제고함으로써 형사사법 최종 단계로서 기소여부 결정 및 공소유지, 재판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며, 데이터의 대량화, 스마트기기 확대에 따른 압수대상의 다양화, 암호화 등 보안기술 강화, 5G, AI기술로 인한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 등 과학수사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최신 분석기술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또한, 과학수사부는 '법과학분야 기술수준 분석 및 중·장기 기술로드맵 수립' 정책연구를 통해 현재 과학수사부의 기술수준이 선진국 대비 동등(영상분석 분야)하거나 20 ~ 30% 이내의 기술격차로 진단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 기술로드맵을 수립하는데, 2022년부터 수행하게 될 3단계 연구에서는 2단계 연구에서 추진된 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고도화함으로써 검찰 과학수사 기술의 도약과 '객관적 증거 분석체계 구축을 통한 인권보호' 달성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한편, 2011. 10월 일선 검사 및 수사관의 과학수사 활용 증대와 과학수사 활성화를 통한 SMART 수사 구현을 위하여, 전국 지방검찰청과 지청에 과학수사책임관(부장검사급), 부책임관(검사), 책임수사관을 지정하여 과학수사 관련 교육과 자문을 담당하게 하는 '과학수사책임관' 제도를 시행하였고, 2015년부터 분기별(연4회)로 과학수사기법을 활용한 우수 수사사례를 발표하고, 대검·일선 청 소통을 통한 현장중심의 과학수사 지원을 위한 전국 청 과학수사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다. 영상녹화시스템 구축

영상녹화제는 기존의 조서 위주의 수사관행에서 탈피, 수사과정 전반을 영상녹화하고 이를 CD로 제작 고착화 하여 수사 및 재판 등에 활용하는 제도로, 피조사자의 인권침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면서도 진술증거 수집을 과학화하여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인권보장을 증진하기 위한 수사절차의 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03. 6월 구성된 수사과학연구회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법무연수원의 건의를 받아들여 추진하게 된 것이며, 2004. 3월 수사과학화추진단의 녹음·녹화팀 구성으로 본격화되었다. 2004. 3 ~ 4월 영상녹화장비를 선정하고, 서울중앙지검 등 고검 소재지 5개청, 수도권 3개청(서울서부, 인천, 수원지검), 기타 2개청(청주, 울산지검)을 시범 실시청으로 지정하였다. 같은 해 5월 시범 실시청 담당 검사 및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시범운영지침을 시달하여 2004. 6. 1.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시범실시 하였다. 같은 해 12월 시범실시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여 시범실시 성과 및 문제점 등을 토론·분석하여 영상녹화제를 확대 실시하기로 하였다.

2008. 1. 1.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비하여 기존 '영상녹화 업무처리지침'(대검 예규 제401호, 2006. 6. 20.)을 제정한 이래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대검 예규 제425호, 2007. 12. 11. 대검 예규 제519호, 2009. 11. 3. 대검 예규 제625호, 2012. 11. 3. 대검 예규 제651호, 2013. 6. 27. 대검 예규 제682호, 2013. 12. 11. 대검 예규 제711호, 2014. 3. 31. 대검 예규 제759호, 2014. 12. 29. 대검 예규 제798호, 2015. 7. 16. 대검 예규 제982호, 2019. 3. 15. 대검 예규 제1131호, 2020. 12. 30. 대검 예규 제1220호, 2021. 8. 11., 대검 예규 제1268호, 2022. 3. 16.)하여 전국 청에 시행하였으며, 일선 청 검사 및 수사관들의 영상녹화조사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조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7. 12월에 영상녹화조사업무 실무매뉴얼을 제작·배부하고, 2014년에는 영상녹화 활성화를 위한 T/F를 구성하여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피조사자의 인권을 고려한 영상녹화 조사기법 등을 연구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2014. 12월경 「영상녹화 실무 매뉴얼」을 전국청에 배포하였다.

2019. 3월부터 4월까지 주무과장이 전국 28개 지검 및 차치지청을 직접 방문하여 검사

및 수사관을 대상으로 「영상녹화조사 현장 설명회」 개최하여 영상녹화의 필요성 및 활용기법을 공유하여 영상녹화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19. 5월에는 일선 청 영상녹화 실적 우수검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영상녹화 활용 노하우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고, 논의 내용 중 실무 활용사례 중심으로 영상녹화조사 활용 TIP을 제작하여 전국 검사들에게 배포하였다. 2019. 6월에는 현장 설명회 일선 청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주임검사 승인 없이 결재자가 영상녹화물 열람할 수 있도록 영상물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열람 매뉴얼을 작성·배포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증진하였다.

2020. 12월에는 검찰청 외 제3의 장소에서도 영상녹화조사가 가능하고 휴대와 설치가 편리한 이동형 영상녹화조사장비 18대를 도입하여 장소적 제한 없이 영상녹화조사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의 피의자, 수용 중인 참고인,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주요 참고인에 대해 의무적으로 영상녹화조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등 '영상녹화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함으로써 조사절차의 투명성 및 인권 보호 기능을 강화하였다.

2021. 12월에는 개정 형사소송법(2022. 1. 1. 시행)으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됨에 따라 영상녹화조사를 유죄 입증에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법령 및 지침 상 필요적 영상녹화조사 사건, 사건 유형별 영상녹화물 증거 활용 사례, 새로운 방식의 영상녹화조사 사례를 소개한 「영상녹화조사 수사·공판 실무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 일선 청 영상녹화조사 활용에 기여하였다.

또한 영상녹화 조사 시 조서 작성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영상녹화 조사과정 전체를 문서화하여 수사 및 재판에 보다 편리하게 활용하고자 영상녹화제도 시행과 병행하여 2009. 2월 일반임기제 속기사 28명, 2013. 8월 기간제 근로자 속기사 54명, 2019. 5월 기간제 근로자 속기사 24명 등 총 106명의 전문 속기사를 채용하여 전국 청에 배치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의 속기·녹취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속기사 운영준칙」(대검 예규 639호, 2013. 3. 11.제정, 대검 예규 제791호, 2015. 7. 16. 개정, 대검 예규 제934호, 2018. 3. 2. 개정, 대검 예규 제1215호, 2021. 8. 11. 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위와 같이 제도적 정비와 더불어 효율적인 영상녹화조사를 위해 모든 영상녹화조사실은 조사과정을 녹음·녹화한 후 즉시 CD로 제작하고, 조사실 밖에서는 조사 장면을 동시에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검사실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변호인 참여하에 조사받을 수 있도록 내부 공간을 정비함으로써 민사사건과 같이 법정에 준하는 외관을 갖추도록 하였고, 여성아동조사실은 피조사자의 성별·연령을 최대한 반영하여 편안한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휴게실에는 부모 등이 모니터로 편면경을 통해 조사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조 환경을 개선하는 등 조사과정의 투명성과 인권 보호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영상녹화조사실은 2004. 12월 서울중앙지검, 남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등 4개청을

시범실시청으로 지정하여 12실을 설치·운영한 이후 2022. 12. 31.까지 전국 66개청에 총 899실을 운용하고 있다. 조사실 설치현황은 다음 〈표 2-37〉과 같다.

| 표 2-37 | 조사실 설치현황(2004 ~ 2022년)

종 류 / 연 도	계	검사 신문실	여성·아동 조사실	일반 조사실	일체형	분리형
2004	12	1	4	7	-	-
2005	42	4	9	29	-	-
2006	70	1	6	63	-	-
2007	242	9	7	226	-	-
2008	212	4	5	135	51	17
2009	77	2	2	35	26	12
2010	94	-	23	41	-	30
2011	38	-	1	24	-	13
2012	15	-	2	13	-	-
2013	10	-	2	8	-	-
2014	15	-	1	14	-	-
2015	0	-	-	-	-	-
2016	8	-	-	8	-	-
2017	73	-	3	70	-	-
2018	3	-	-	3	-	-
2019	82	-	5	77	-	-
2020	5	-	-	5	-	-
2021	-	-	-	-	-	-
2022	9	-	1	8	-	-
계	1007	21	71	766	77	72

※ 전국 수사검사(1027명, 2022. 12. 31. 현재) 대비 87% 설치

※ 설치 누계는 1007실이나 신청사 이전 등의 사유로 현재 총 899실 활용

라.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DNA감식 연구사업의 수행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집단의 시료를 사전에 채취하여 DNA형을 분석·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사건발생시 현장검증물과 비교·검색하여 범인을 조기에 검거할 수 있는 제도이다. 검찰은 2010. 1. 25. 공포되고 2010. 7. 26.부터 시행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살인, 성폭력 등 11개 유형의 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자들의 DNA신원확인정보를 관리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0년 7. 26.부터 채취대상자로부터 시료를 채취하여 DNA인적관리시스템에 2022. 12. 31. 기준 총 217,980명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였고, 그 중 193,189명에 대한 DNA분석결과를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였다. 검찰이 관리하는 DNA검색을 통해 살인, 성폭력, 강도 등 총 2,531건의 미제사건 용의자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수사 재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향후 강력사범에 대한 DNA데이터베이스 자료가 훨씬 더 축적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검거를 통해 범죄예방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관리하는 미제사건의 현장 증거물 DNA와의 원활한 상호검색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2019. 6월부터 2020. 6월까지 검찰은 경찰 국과수, 국방부와 함께 DNA DB 연례운영보고서를 발간하여 법무부 등 유관기관 및 검·경등 실무부서에 배포하고,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업무 참고 및 국민들이 DNA-DB운영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20. 12월 검찰은 경찰·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DNA-DB 운영성과를 담은 DNA-DB 10주년 백서를 발행하여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검·경등 실무부서에 배포하였다. 2021. 6월에는 제4차 연례운영보고서를 제작·배포하였다.

한편, DNA감식과 범죄자 DNA-DB에 사용되는 고가의 외국 상용분석키트를 대체하는 국산화 기술을 연구하고 외국에서 활발히 연구 중인 차세대 분석 기술을 국내에 조기 정착시켜 국내 DNA감식기술의 역량을 제고하고 선진화를 확립하기 위한 'DNA감식의 국산화 및 선진화 연구사업'이 3년 계획으로 2012년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대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용역의 형태이며 총 15개의 세부과제로 이루어져 서울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국내의 학계·연구 전문가 그룹이 수행하였다. 그 결과 국유 특허 12건, 저작권 2권을 등록하고, 이 중 3건을 관련 업계에 기술 이전하였다. 그리고 연구논문은 42편, 학술발표는 94건이 수행되어 관련 분야에 참고·활용되고 있다.

또한 2012. 11월, 2014. 2월, 2015. 3월, 2016. 7월, 서울대, 연세대 및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법과학 DNA 국제심포지움(ISFDL : International Symposium on Forensic DNA in Law)을 공동으로 개최하여 200여 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DNA-DB 및 선진 DNA감식 기술 등에 관하여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였다. 특히 2016. 7월 연세대와 공동으로 개최한 심포지움에는 2017. 8월 국제법유전총회(ISFG : International Society of Forensic Genetics) 개최를 앞두고 ISFG 부회장 메키 프린츠 박사 등이 참석하였으며, 2017. 8. 28. ~ 9. 2.까지 아시아 최초로 개최된 국제법유전총회(ISFG : International Society of Forensic Genetics)를 통해 법과학 관련 감정관 및 연구자 771명이 참석하는 큰 성과를 거두어 '수사의 과학화'를 지향하는 검찰 DNA감식 분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감식 기술 세계화의 기틀을 확고히 하였다.

2018. 4월에 개최된 제5회 법과학 DNA 국제심포지엄에는 DNA 감정관 및 경찰 과학수사직원 등 1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이태원 살인사건의 현장분석에도 참여한 범죄 전문가 David J Zeliff(미국)가 증거물 보관의 연속성을 주제로 하여 증거물채취 주의사항, 증거를 기반으로 한 사건현장의 재구성 등에 대한 특강을 하였다.

2019. 3월 ~ 12월 DNA 분야 자체시험연구 '차세대염기서열 분석방법(NGS)에 대한 유효성 평가연구'를 수행하여 최신기법을 감정에 적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축적하였다.

2019. 4월과 9월에 개최된 한국법생물연구회는 2014. 4월 대검찰청 등 11개 유관기관이 각자 전문 분야별로 축적된 정보를 공유할 목적으로 발족하였고, 그간 상호 협력과 지원을 통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 원산지와 종판별을 통한 관세포탈 방지, 특정 동·식물의 보호 등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12회 연구회까지 18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모범적인 정부 기관 간 협업 모델로 발전하였다. 대검찰청에서 개최한 11회 연구회에서는 '유전자 편집 기술의 현황 및 생명윤리적 관점에서의 논란'이라는 주제로 최신 기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였고, 국립 종자원에서 개최한 12회 연구회에서는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과 같은 전문 연구기관의 정보를 활용하여 대검찰청,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같은 감식 기관들이 객관적인 분석 결과를 도출한 여러 협력 사례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코로나19로 진행하지 못한 연구회를 제13회(2021년 하반기) 및 제14회(2022년 상반기)에는 온라인 연구회로 개최하였고, 2022. 9월에는 제15회 연구회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KOBIC)의 현장 개최로 진행하였으며, 생물의 종을 판별하는 DNA바코드 입력정보의 표준화를 위한 논의를 하였다. 디엔에이·화학분석과에서는 법생물연구회에서 구축된 각 분야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수사에 필요한 관련분야 전문가 추천도 지원하고 있다.

마.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

국민의 인권의식 향상에 따라 수사절차에서의 증거조사 중요성이 확대되고 피의자의 인권보장, 사건처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 증거취득 후 진술조사」로 검찰수사력의 전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2005. 4월 대검찰청에 과학수사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과학수사제2담당관실을 신설하였다.

2005. 5월 과학수사제2담당관실에서는 검찰의 과학수사 역량 제고를 위하여 디지털포렌식 전문 인력 증원, 디지털증거 수집·분석용 장비 및 시설 확충, 디지털증거 수집·분석센터 신축 등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증거 수집·분석 분야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2006. 3월 설계 발주를 거쳐 2006. 12월 공사를 착수하여, 2008. 10. 31. 대검찰청 부지에 지상6층 지하1층(건물연면적 7,844.88제곱미터, 공사비 143억 8,200만원) 규모의 디지털포렌식센터가 준공되었다. 그 뒤 마약감정실을 제외한 과학수사부 산하의 모든 감정·감식·분석실이 디지털포렌식

센터로 집중되어 법화학 감정·문서감정, 심리·영상·음성분석 뿐만 아니라 화재수사·DNA 감식 등 명실공히 검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과학수사를 선도하는 과학수사의 메카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 후 2012. 11월 단순히 수사지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감정기법 연구기관으로서 기능을 확대하고 선도적 과학수사기관으로 발돋움하고자 명칭을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로 변경하였고, 2013. 8월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내 「디지털포렌식연구소」를 개소하여 디지털 포렌식 도구 및 수사기법에 대한 연구 등 개발에 집중하고 안티포렌식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2008. 10월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준공 이후 정원 약 102%, 감정건수 약 450%, 감정장비 약 200% 등 인력 및 장비 등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심지어 일부 감정실은 개방된 별관 건물(예식장, 강당)을 임시 사용하고 있어 시설 보안 및 안전에 많은 문제가 있어 해결이 시급하였다.

더욱이 2020.부터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국가디지털포렌식 클라우드 센터' 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임에 따라 각종 R&D 사업 및 과학수사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의 증축이 절실하였다.

이에 2020. 12. 2. 국회 심의를 거쳐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증축 예산(총 사업비 약 325억 원)이 확보됨으로써, 지하 3층·지상 6층(연면적 12,455㎡) 규모의 증축 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하여 2021. 12. 설계업체 선정 이후 최적의 센터 건립을 위한 다각도의 검토를 거쳐 2022. 12. 기본설계를 완료하였다.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는 전방위적인 감정·감식·분석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하나의 과학수사기관으로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증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는 결국, 변화하는 범죄에 대응하여 수사 증거물에 대한 신속·정확한 분석으로 일선 수사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인권 보장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바. 과학수사 업무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1) 과학수사장비 관리 프로그램 개발

대검과 일선청에 분산 관리중인 과학수사장비의 체계적 관리 필요와 수사장비 관리업무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2006. 7월 프로그램 개발업체와 수사장비관리시스템 개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2006. 8월 수사장비 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였고, 2006. 9. 1. 시범운영을 시작하면서 각급 검찰청의 수사장비관리대장을 토대로 전국청 수사장비 데이터를 입력하였다. 또한 전국청 수사장비담당자를 대상으로 수사장비관리시스템 사용자교육을 실시하고, 대출·회수 등 업무처리 메뉴얼을 제작·배포 하였다.

이 시스템은 전국청의 수사장비 관련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화한 것으로 권한이 허용된 대검 또는 일선청 장비관리 담당자가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실시간으로 장비보유현황을 조회할 수 있으며, 기존 수기 기재 장부를 통해 관리하던 수사장비 대출·회수업무를 바코드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처리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정확성을 높였으며, 대검의 메인관리자가 수사장비 사용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아울러, 수사장비관리시스템을 e-PROS 과학수사홈페이지에 연동시켰으며, 기존 e-PROS 과학수사홈페이지에 장비지원 게시판을 신설하여 일선청 장비지원 요청 및 문의에 즉각 응대할 수 있도록 하여 과학수사 활성화 및 수사장비 효율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0. 6월 수사장비관리시스템의 노후와 사용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수사장비 활용 커뮤니티 제공, 통계 및 조회, 관리 기능 강화 등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시키고자 수사장비관리시스템의 고도화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2010. 10월 성능 및 기능이 더욱 개선된 수사장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다.

2) 디지털포렌식 수사지원 시스템 구축

2006. 6월 디지털 압수수색 및 분석 지원요청, 디지털 관련 자료, 각종 공지사항, 통계 활용을 위한 디지털포렌식 수사정보지원시스템의 개발을 완료하여 실무에 적용하였다.

그러나, 디지털수사지원업무가 통합 관리되지 않고, 디지털증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비하고, 수사질의어프로그램이 분석관의 PC에서만 구동되어 대용량 파일 등에 대한 검색이 어렵다는 등의 서비스 불만이 초래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디지털포렌식 수사정보지원시스템의 고도화 사업을 포함시켜 「전국 디지털수사망 구축사업(D-NET)」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단계별로 시행하여 대검찰청을 중심으로 지역 거점청 디지털포렌식팀을 연계하였다.

이와 함께 대검, 각 거점별 디지털포렌식팀(서울중앙, 수원고검, 부산고검, 대구고검, 광주고검, 대전고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서울고검, 서울남부지검, 창원지검, 서울북부지검, 춘천지검)과 일선 수사팀 간의 효율적인 수사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통합지원업무관리, 연구개발관리, 디지털수사장비관리, 통계관리, 외부전문가 관리, 운용시스템 관리 등을 위한 「디지털 수사 통합 업무 관리시스템(DFIS II)」, 분석결과의 온라인 송부 및 검색, 이메일, 회계데이터, 전자결재 데이터, 계좌내역, 통화내역 등을 입체적으로 통합분석할 수 있는 「통합디지털증거분석시스템(IDEAS)」, 대검찰청과 각 지역 거점청의 디지털증거를 체계적으로 보관 및 폐기가 가능한 중앙집중형 「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 디지털포렌식 전문교육이 온라인상에서 가능한 「디지털포렌식 온라인교육시스템」, 그리고 데이터의 안전한 유통관리를 위해 정보보안 체계를 설계하고, 구축 운영하고 있다.

2017. 8월 「디지털증거 확보(송치)체계(KD-NET) 구축사업」을 최종 완료하여, 1차 참여기관(문화체육관광부, 관세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2차 참여기관[(경찰청(대전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3차 참여기관[(경찰청(서울청),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과 디지털증거데이터패키지 국가 표준(KS X 1220)을 활용한 디지털증거의 무결한 송치·수리 등, 처리이력을 관리하기 위한 디지털 증거의 확보체계를 구축하였다.

검찰·경찰 간 디지털증거 송치를 위하여 네트워크(초고속 국가망)를 연결하였고 검찰·특사경은 국가행정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디지털증거를 송치할 수 있게 되었다.

지역 디지털포렌식팀은 5개 고검(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및 6개 지검(서울중앙, 수원, 인천, 서울남부, 창원)에 설치하여 운영 중이었으나, 폭발적인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분석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17. 12월 서울북부지검, 춘천지검에 추가 설치하였으며 2019. 3월 수원고검 개청에 따른 수원지검 포렌식팀이 수원고검 포렌식팀으로 이전하여 6개 고검 및 6개 지검에 디지털포렌식팀을 설치·운영 중이다.

2018년에는 디지털증거의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해 '국가형사사법기록관'에 디지털증거 백업센터를 구축하여 천재지변 등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

2019년도에는 디지털 증거의 생애주기에 대한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와 긴밀하게 연동, 디지털증거물의 등록 및 폐기업무 프로세스를 반영하여 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을 개선하였다.

또한 급격하게 발전하는 IT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 디지털증거분석 체계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특히 대검 자체 개발 모바일분석도구(MFA)의 활성화 및 지속적인 기능 개선, 압수된 대용량 디지털증거에서 범죄 단서를 식별할 수 있는 범죄 프로파일링 기법, 회계부정 적발 시나리오 기반의 대용량 회계데이터 분석 기법 연구 및 시스템 구축을 수행하고 있다.

2020년부터 빅데이터기반 지능형 디지털증거 통합분석 플랫폼 개발 사업(행정안전부의 전자정부지원사업, 3개년 수행)을 착수하여 2022년 12월 기준 18개 유관기관에 디지털증거 데이터 통합 분석 서비스(NDFaaS)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 범위 및 참여 기관 확대를 점차적으로 추진하는 등 원활한 시스템 운영관리에도 힘쓰고 있다.

3) 감정정보관리시스템(LIMS)의 운영

법화학, 마약, DNA, 문서 감정분야에 있어서 감정물의 접수에서부터 감정결과에 대한 감정서 작성 및 발송까지의 세부사항을 전산으로 기록 관리하는 감정정보관리 시스템은 감정절차의 연속성 및 무결성(chain of custody)을 담보하는 시스템으로 2010년 개발을 거쳐 2011년부터 본격 사용되고 있다. 2018. 10. 29.에는 수사기관이 대검 과학수사부에 의뢰하는 감정물에 대한 접수를 일반 우편물과는 별도로 NDFC에 신설된 중앙감정물접수실에서 전담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수령하도록 절차를 개편하였으며, 이 내용과 절차를 규정하는 「감정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을 2018. 11. 1. 개정하여 중앙감정물접수실의 운영 근거마련, 감정물 이동의 소급성을

관리하는 감정의뢰서 양식 개정, 감정물 채취 및 이동 중 발생한 훼손된 감정물에 대한 반려 조항을 강화하는 등 감정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2019. 10월 정확한 감정의뢰 방법 교육을 위해 '감정의뢰교육 영상'을 제작하여 검찰방송 온라인 교육자료에 게시하였다. 중앙감정물접수실의 신설에 따른 감정의뢰 절차의 변화 및 DNA 감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DNA감정 의뢰 시 감정물 확보부터 포장까지의 유의사항, 감정의뢰서를 작성하는 방법, 지문-DNA-법화학 공동 감정 의뢰 방법 등을 동영상 자료와 설명 자료로 제작 및 배포함으로써 감정물의 훼손 및 오염을 방지하고 감정물의 채취 단계부터 감정 완료시까지 감정물의 소급성을 유지하여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의 가치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등기 및 사송으로 중앙감정물접수실을 통해 접수되는 감정물(9개 분야 : 문서, 영상, 음성, 복원, 화재, DNA, 법화학, 모바일, 컴퓨터포렌식)은 2019년 2,243건, 2020년 3,552건, 2021년 3,963건, 2022년 3,996건으로 점차 증가하여 감정물 소급성 유지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 검찰업무 정보화

1) 검찰업무 정보화 시스템의 개선

검찰업무 정보화를 위하여 1980년대부터 통합사건관리시스템 개발을 시작으로 2000년「검찰정보화 장기발전계획(ISP)」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지식관리시스템(e-Pros), 검사실 수사정보시스템 등 신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한 검찰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며 지속적으로 검찰업무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다.

해킹, 악성코드 등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수사 자료 등 중요 문서들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부터 대검 및 서울중앙지검의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망분리 사업을 시작하여, 2016년 대전고·지검 등 6개청, 2017년 서울고검 등 10개청, 2018년 대구고·지검 등 13개청, 2019년 광주고·지검, 전주지검, 수원고·지검 등 5개청, 2020년 포항지청 1개청, 2021년 제주지검 등 12개청에 망분리를 적용하여 총 49개청에 대한 네트워크 망분리를 완료하였고, 향후 5년내에 전국 67개 검찰청의 망분리를 완료할 예정이다.

검찰 정보통신 인프라 시설의 성능 개선을 위해 노후 네트워크장비 및 전화교환기 교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07년 대검찰청 등 5개청, 2008년 춘천지검 등 6개청, 2009년 대구고·지검 등 5개청, 2010년 서울동부지검 등 6개청, 2011년 대전고·지검 등 9개청, 2012년 서울남부지검 등 5개청, 2013년 김천지청 등 3개청, 2014년 서울고·지검 등 2개청, 2015년 창원지검 1개청, 2017년 천안지청 등 2개청, 2019년 수원고·지검 등 5개청, 2020년 인천지검 등 2개청, 2021년 서울서부지검 등 8개청, 2022년 군산지청 등 10개청에 대한 정보통신 인프라 성능을 개선하였다.

또한, 검찰 전화교환기 성능 개선 및 보안 강화를 위해 IP교환기 OS 업그레이드 사업을 진행하여 2020년에는 대검찰청 등 48개청에 대한 IP교환기의 업그레이드를 완료하였다.

검찰 정보통신망 고도화를 통해 향후 네트워크 사용량 증가 및 신규 시스템 도입을 고려하여 검찰 정보통신망의 대역폭을 약 3배 이상 확대하였고, 각 고검의 관내 지청 정보통신망을 이중화 구성하여 네트워크 장애발생 시 정보통신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였으며, 정보유출 위험 방지 등을 위한 대용량 자료 임시보관소(1인 20GB)를 구축하였다.

2016년 기존 기계식 팩스의 자료 유실·훼손 방지와 팩스 관련 업무 경감을 위해 대검찰청 등 21개청에 전자팩스시스템을 도입하였고, 2017년 서울중앙지검 등 44개청으로 확대하여 전국 65개 검찰청에 전자팩스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2018년에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자팩스시스템을 이중화사업을 완료하였고, 2019년 수원고검 개청, 2022년 남양주지청 개청에 따라 전국 67개 검찰청에 전자팩스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다.

검찰 지식의 효율적인 축적과 협업 기반 강화를 위해 차세대 검찰 지식포털을 2014년 구축하고, 검찰 지식 백과사전인 프로스피디아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며, 보다 효율적인 지식생산 및 활용을 위해 2018년 e-PROS 내 지식저장고와 프로스피디아를 일원화하였다.

한편, 2018년『경조사 알림 등 지침』개정에 따라, 퇴직자의 혼례 및 상례를 게시할 수 있는 퇴직자 경조사 게시판을 신설하고, 성추행·성폭력 피해에 대한 신고 창구로 작성자가 익명으로 게시글 등록이 가능하며 본인이 작성한 게시글만 볼 수 있는 '#WeTogether' 게시판을 신설하였다.

2019년 검사 전문분야 개편에 따른 관련 기능을 개선하였고, '프로스피디아 활성화 방안 연구' 결과로 도출된 개선방안 및 실행과제를 토대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여, 통합검색의 정확도 향상 및 결과 화면 개선, e-PROS 메인 메뉴 정비, 사용자 화면 개선, 훈령·예규/지침·지시/매뉴얼 메뉴 통합 등을 통해 지식의 효율적 사용과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전자문서관리 및 검찰정보시스템들 간의 연계 확장을 위해 2010년 검찰 자체 전자결재시스템을 구축하여 기록물분류기준표에 따른 문서 관리체계를 마련하였고, 지속적으로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처리 용량 확장 및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실시간으로 직원간 상호 업무공유 및 각종 업무시스템과의 연계로 신속한 정보전달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3년 신기술이 적용된 검찰 메신저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여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하고 검찰 소통문화를 강화하였으며, 2019년 안정적인 전자우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안이 강화된 신규 전자우편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국정과제에 따라 ActiveX 제거 및 호환성 확보 등으로 사용자 편의기능을 보다 향상시켰다.

검찰은 전자정부법 등에 의거, 검찰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검찰 행정전자서명시스템 및 사용자 조직정보를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20년 검찰 행정전자서명시스템 장비 교체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작업 등 시스템 구성을 변경하여 재구축하였고, 현재 검찰 업무시스템 뿐만 아니라 타기관 제공 시스템까지 연계하여

검찰의 업무 영역을 확장하고 사용자 업무 활용도를 증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검찰청 홈페이지는 1996년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으로, 2002년 전국 검찰청별 홈페이지 구축, 2005년 민원증명발급 서비스 제공, 2007년에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웹접근성 개선 등 편리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모바일 홈페이지도 구축하여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체계를 더욱 강화하였으며, 2014년에도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정보 공개를 위해 사전정보공표 대상 메뉴를 추가하였다. 2019년 대검찰청 등 전국 66개청 홈페이지,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홈페이지, 역사관체험관 홈페이지의 메뉴 및 디자인을 전면 개편하여 사용자 편의성 및 접근성을 향상하였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검찰청 대표 1301검찰콜센터 소개와 이용안내 메뉴, 국가형사사법기록관 견학안내 메뉴를 추가하였다. 2022년에는 남양주지청 개청에 따른 홈페이지를 추가 구축하였고, 연간 품질관리 계획 수립 등 지속적인 웹사이트 품질개선을 통하여, 웹 호환성·접근성·개방성을 강화하고 웹 표준 등을 준수하였으며, 8년(2014년~2022년) 연속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획득하여 모든 국민에 대한 차별 없는 이용환경 조성 및 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였다.

2)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 사업 추진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를 활용하여 형사사법업무를 표준화·전자화하고, 형사사법정보를 공동 활용하여 불필요한 시간과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국민중심의 e-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21세기형 e-형사절차 구현을 목표로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구축을 추진하였다.

본 사업을 통하여 수사 프로세스 348종, 재판 프로세스 260종, 집행 프로세스 380종 및 압수업무 등 기타 프로세스 34종 총 1,022종의 형사사법업무 프로세스를 수작업 기반 업무환경에서 전자적 업무 프로세스로 대체하고, 형사사법 문서 총 1,361종의 서식을 표준화하여 기존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형사사법기관이 사용하는 공통 코드 25종을 표준화하여 수사·재판·집행 등 형사사법업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형사사법정보를 관계기관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기관의 약 74개 접점을 대상으로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약 48종의 민원 업무에 대하여 온라인 발급·처리가 가능하도록 구현하여 형사사건처리 진행상황조회 서비스, 재판서·통지서 조회, 벌과금 조회·납부 서비스 등 총 11종의 대국민 형사사법 통합 서비스를 2010. 7월부터 개시하였다.

2008. 12월 형사사법공통시스템사업의 쟁점에 대해 관계기관 간 합의를 도출하고, 법무부 장비 도입을 위한 4차 사업을 발주하였다. 주요 합의사항으로는 각 기관의 시스템은 각 기관이 운영하되, 대국민서비스시스템 등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통시스템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운영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하였고,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정을 추진하였다.

2009. 2월 기관 간 정보공동활용의 범위와 방식 등에 대해 관계기관 간 합의를 도출하였고, 2009. 12. 29.「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및「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등 2건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2010. 5. 1.「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및「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010. 7. 12. 전국 검찰청을 대상으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운영 개시하였다. 이에 따라 음주·무면허 약식사건 전자화,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대국민 통합포털 신설 등으로 검찰 사건처리 업무 효율화와 국민 편의성이 대폭 개선되었다.

2011년부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안정성 및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사건조회 및 영장정보 조회 권한 부여에 대한 승인제 도입 등 권한관리 체계를 정비하였고, DB접근제어 도입 및 사건관계자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였다.

변화하는 수사 환경에 발맞추어 팀제 수사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공유 사건부 기능 개선, 직접경정 및 겸방 업무 시 검사실별 시스템 접속 방식 개선, 사용자 편의성을 위한 미제사건부 개선, 재기·이송 시 기록목록 및 증거목록이 연계되도록 하고 사용자가 직접 기록목록 등 편집·업로드할 수 있는 기능 개선, 영장집행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내 전자팩스 기능 향상, 공무원연금공단 연계를 통한 공무원 신분확인 자동화 기능 구현으로 공무원범죄에 대한 형사처분 결과 신속한 통지, KICS에 입력한 출국규제 정보를 출입국사무소와 연계하여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개선,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 및 체포·구속통지서, 노역자유치집행 및 형집행통지서, 항고사건 처분결과통지 등 매년 송달건수가 많은 통지서 선정 후 우정사업본부와 연계하여 우편송달 업무를 전자화 처리, 적용법조 검색기능을 추가하여 보다 향상된 검색 결과를 기반으로 판결문·결정문 검색기능을 개선하여 맞춤형 정보제공 등 업무에 유용한 컨텐츠 제공으로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대국민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야간에도 벌금납부 사실을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신한은행과 납부내역 실시간 연계 시스템 구축, 신한은행 가상계좌로 납부한 벌과금 수납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수기 입력으로 인한 과오납 등의 민원 및 사고 발생요소를 차단, 민원인의 민원서류 신청 시 수기 작성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구술민원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인의 편의성에 기여하였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지휘·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의사결정과정 기록화 기능 구현, 주요사범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대포통장 등 주요정보 통합검색 기능을 구축, 형사사건 및 강력범죄 사건에 대한 '형사사건관리시스템' 및 '강력사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사력 향상을 도모하였고, 범죄피해자 권리강화를 위해 피해자지원시스템을 개선하였으며, 직관사건부를 신설하여 체계적인 직관사건 관리 체계를 마련하였다.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와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수감인 소환 또는 검사 직접청구 구속영장 발부·기각 시 변호인에게 문자 또는 이메일로 통지하는 기능 구현, 구속

송치사건 피의자 면담 관련 기능 등 신설하였고, 민원 관련 시스템 장애를 신속히 파악하여 대응하기 위한 민원인 통지 장애예방체계를 구축, 벌과금 수배자의 납부사실을 인지하여 불법구금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재산형 인치 업무 개선, 피의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사건처분결과 통지방식 개선, 특사경 송치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용노동부 송치사건 정보를 온라인으로 유통함으로써 업무 전자화 및 절차 간소화에 기여하였다.

2021. 1. 1.부터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 개정에 따른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청, 시정조치요구 등 새로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신규서식 및 신설 제도에 따른 기능을 검찰 KICS에 신속히 반영하였고, 개정 형사법령에 따른 전자송달기능을 추가하여 사건 관계인에 대한 통지 절차를 개선하였다.

피해자지원시스템도 전면 재정비하여 보다 직관적으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체 메뉴를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재조정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피해자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사, 수사지휘, 공소제기·유지, 재판집행 등 검찰 업무 과정에서 '전관예우' 등 오해의 소지를 방지하여 변호사의 변론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변호활동 관련 절차를 시스템화 하였으며, '통신제한조치 기간 연장', '실시간 위치정보 추적자료 및 기지국 수사' 관련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이 일부 개정(시행 2019. 12. 31.)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시스템에 반영하여 업무효율성 향상 및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였다.

법무부 특정경제사범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특정경제사범 관리 대상 사건 관련 보고 내용이 자동으로 전송될 수 있게 개선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관련하여 이첩사건, 형의 집행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기존 적용 중인 사건처분결과증명서 등 28종 외에 추가로 항고사건결정결과통지서 등 총 44종에 대하여 음성변환 바코드를 삽입하는 등 업무투명성 확보 및 장애인에 대한 정보접근 차별 해소에 기여하였다.

2022년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청구 관련 서식을 KICS 시스템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였다. 또한, 재산형집행시스템에 벌금미납자에 대한 소환장 발송 등 소환절차를 도입하였고, 입국시 통보요청된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재산형집행시스템에 벌과금 관리 및 입국시통보 해제 사유 발생 시 알림 기능을 구현하였으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재산형집행시스템에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 환부를 위한 피해자 환부대상사건 관리 기능을 도입하였다. 압수물 관리시스템에 '압수물환부통지서' 및 '압수물본환부통지서' 전자송달 기능을 구축하여 압수물환부 관련 통지업무를 개선하였다.

3) 검찰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검찰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날로 지능화하는 DDoS 등 사이버공격 정보를 탐지·분석하여

즉시 대응·조치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기초하고,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제291호, 2012. 1. 2.) 제10조의2(보안관제센터의 설치·운영)에 근거하여 2012. 12월 검찰사이버안전센터를 구축·완료하였고, 2013. 1월부터 본격적으로 대검찰청 및 63개 일선청에(현재 65개청) 대한 사이버위협 정보를 24시간 365일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하여 체계적인 대응을 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검찰업무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빅데이터 기반의 보안관제를 통하여 대용량의 로그정보 수집 및 다양한 상관분석으로 각종 사이버위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관리 능력을 강화하였다.

검찰정보시스템의 중요 업무자료 유출 예방을 위해 각종 정보보호시스템(백신, 방화벽, IPS, 유해사이트차단, 인터넷 자료저장방지, DB 및 서버 접근제어, 스팸메일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킹메일의 유해성 분석·대응 및 네트워크와 전자우편을 통한 APT,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악성코드 유입 탐지 및 차단을 위한 악성행위탐지시스템 등 정보보호 인프라를 구축하여, 안전한 업무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매년 정보보호 교육(유용한 보안상식 웹툰 제작·e-PROS 게시판 등 게시) 12회, 가상의 악성메일을 이용한 해킹메일 모의훈련 6회 실시, 보안뉴스레터·보안권고문 등 최근 보안이슈를 e-PROS 게시판을 통해 신속히 전달하는 등으로 사용자 정보보안 의식 제고에도 노력하고 있다.

2022년도에 침입방지시스템의 탐지정책 개발 및 보안 이슈 제공 등 예방활동 1,239건, 유해의심사이트와 유해의심 IP 차단 등 침해분석/대응활동 7,718건, 악성코드, 바이러스 감염 PC 탐지 등 침해탐지활동 535건의 각 업무를 수행하였고, 노후된 보안관제모니터링시스템을 교체하는 등 안전한 업무 환경 마련 및 사이버위협 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각종 정보보호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PC 해킹 차단, 악성코드 감염 방지, 보안취약점 진단 및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보안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각종 정보보호 규정 정비 등 노력을 통해 안전한 검찰사이버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 사이버범죄 대응역량 강화

사이버공격의 양상은 국가 주요 산업시설을 공격 대상으로 삼을 만큼 대담해지고 국민생활 안전에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피싱, 스미싱, 파밍에서부터 랜섬웨어, 비트코인, IoT공격 등 사이버범죄 수법 역시 한층 진화하고 있으며, 금전적 이득을 노리는 사이버범죄자들이 급증하며 국제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검찰은 사이버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된 업무와 기능을 추진·관리함으로써 사이버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11. 11. 1. 대검찰청에 사이버범죄수사단을 설치하였다.

사이버범죄수사단은 한수원 대상 사이버테러 사건을 계기로 2015. 2. 11. 과학수사부 출범과 함께 사이버수사과로 정식 직제화 되었고, 공공전산망 해킹, 악성코드 유포 등 주요 사이버범죄에 대한 전문적·조직적 대응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수사 필요분야 증가에 따른 일선청 수사역량 확대를 위하여 서울동부지검을 사이버범죄 수사 중점청으로 지정하여 사이버범죄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였다.

사이버범죄는 주로 공격자가 해외 서버를 경유하여 목표물을 해킹하는 초국가 범죄의 형태를 띤다. 이때 사용된 사이버 증거는 삭제되거나 변조되기 쉬우므로, 증거 보전 및 확보를 위한 국가 간의 신속한 공조가 수사 성패를 좌우한다.

사이버수사과는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등 세계 89개국이 가입하여 활동 중인 G7 24/7 High Tech Crime Network의 한국 접촉점으로서 국내 수사기관을 대표하여 국제공조 창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G7 24/7 Network를 통해 회원국들은 실시간 정보교환 및 소멸되기 쉬운 사이버 증거보존 요청을 진행함으로써 국경을 넘나드는 사이버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2019. 11월 사이버수사의 국제공조 다변화를 위해 독일의 연방범죄수사청(BKA), 유로폴의 사이버범죄센터(EC3) 등을 방문하여 공조 강화에 힘써 왔으며, 특히 2019. 11. 20.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사이버범죄 역량강화 허브(APC-HUB) 설립을 위해 대검찰청-월드뱅크-GFCE, 3자 MOU를 체결하였다. 후속 조치로 2020. 1. 9. 사이버범죄 국제공조센터에 허브 사무국을 개소하여 대검은 허브의 사무국 역할을 맡게 되었다.

2021. 2월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허브 파트너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세부 운영 계획을 확정하였으며, 이후 2022년까지 허브 전문인력 채용, 허브 로고 제작, 허브 홈페이지 및 온라인교육시스템 구축 등을 하였다. 또한 2022. 11. 1. ~ 4. 캄보디아, 라오스, 파푸아뉴기니 관계자를 초청하여 제1회 APC-HUB 훈련세션 및 제1회 연례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이와 같이 검찰은 아태 국가들과 우호적인 협력 관계 유지를 통해 글로벌 사이버범죄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국가안보실 및 국정원, 과기정통부, 외교부 등 관계 부처 및 기관과 협력하여 2022. 10. 11. 사이버범죄협약(일명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의향서를 유럽평의회에 제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보안원 등 관련 유관 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국가적 사이버 위협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 및 분석에 협력하고 있다. 특히 주한 미 FBI 협력관과 월례 공조 회의를 실시하여 사이버범죄 및 기술유출범죄 정보 교환 등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2021. 12월에는 미 FBI와 긴밀히 협력하여 리플(Ripple) 가상화폐 피싱 사기 사건의 국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환부함으로써 범죄 척결은 물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기여하였다.

연구·개발로 구축된 악성코드시스템 THEMIS는 악성코드에 대한 추출, 분석, 범죄자 추적 등 일련의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2012년 구축 이후 매년 고도화를 거듭하며

악성코드 제작·배포 사범 단속을 위한 검찰수사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및 스미싱 범죄 등 모바일 환경에서의 사이버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다양한 신종 악성코드를 이용한 사이버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신속한 증거 분석을 위하여, 모바일 기반 악성코드 등 신종 악성코드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 환경을 순차적인 고도화 사업을 통하여 구축하였고, 2016년 상반기에는 일선 청에서 악성코드분석시스템에 접속하여 분석결과(관련 IP·도메인 등)를 손쉽게 활용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였다. 2017년에는 기존 악성코드분석 시스템의 데이터와 유관기관에서 제공받은 데이터를 통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이버 위협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하였다. 2018년에는 사이버위협자원의 정보 중 국내 위협정보를 선별하고, 정규화 등을 통해 수사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9년에 불법 촬영물 유포·탐지 및 피해자 지원 시스템(웹 자동화 분석, 동영상 콘텐츠 특정점 추출 등) 개발에 착수하여 불법촬영물 피해자의 사법적 구제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020. 4월부터 본격 가동하여 2022. 12월까지 16,613개의 불법촬영물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200개 사이트를 찾아 게시물 삭제 및 사이트 차단 의뢰를 하였으며, 불법사이트 외 SNS, 다크웹 등 불법촬영물의 유입경로가 다양화되고 추적 시스템을 따돌리는 수법 또한 교묘해지고 있는 실정에 맞춰 2022년 불법동영상 추적기술 향상 및 별도 서버구축 등 시스템 고도화를 진행하였고, 2023년부터 지속적인 시스템 관리와 기능개선 작업을 위한 예산도 확보하였다.

또한 대검 홈페이지를 모방한 피싱사이트를 사전 탐지하여 채증 및 차단을 자동화한 시스템을 2013. 3월경에 자체 개발하여 2022. 12월까지 총 52,937건을 차단하였다.

사이버수사과는 연구·개발을 통한 신종 사이버범죄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첨단수사기법 개발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방안 연구',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사이버범죄 수사 실무적용 방안 연구', '사이버범죄 전문수사관 개인별 수사역량 평가시스템 구축에 관한연구', '사이버범죄 전문수사관 인력 양성방안에 관한 연구' 등 다양한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나아가 장기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 R&D에 관련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는 연구과제(가상자산 부정거래 등 사이버범죄 활동 정보 추적기술, 4년)를 발굴하고 직접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함으로써 다크웹, 가상화폐 등을 이용한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기술 개발에 노력하였다.

또한 자체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사이버 수사분야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사이버수사관련 국가연구개발과제('사이버범죄 수집정보의 증거화 방안', 3년)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속적인 연구·개발 여건을 마련하였다.

사이버수사과는 사이버범죄 사건 급증에 따른 신속한 보강수사와 전문적인 증거분석 및 공소유지 지원을 위해 일선 수사관 대상 사이버범죄 대응 전문 교육과정을 개설, 2020. 8. 제1기 사이버수사 전문가 양성과정을 시작하여 매년 1회 전문 교육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정형·비정형 데이터분석, 침해사고 조사 및 로그분석 등 전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이버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기술유출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검찰에서는 지난 2007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하였으며, 2013. 11. 조직개편으로 반부패부 수사지원과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에서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업무를 담당해왔다.

2022. 9월 사이버범죄 대응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기존 반부패·강력부 소관이던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과학수사부 사이버수사과로 이관하여 신속한 기술 분석 및 전문가 자문이 가능한 수사지원체계를 구축하였고, 현재 치밀성·은밀성 및 범죄의 중대성에 비하여 처벌이 낮은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위와 같은 노력으로 사이버수사과는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탁월한 전문 역량을 확보하고, 국가와 국민을 사이버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검찰상을 구현하고자 힘쓰고 있다.

자. 감정·분석기법 특허출원 및 등록

최근 들어 특허기술의 중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과학수사부는 특허를 통해 과학수사 분야의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고 최신 감정·분석기법개발을 통해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법과학분석과 문서감정 분야는 분광법을 이용한 볼펜 서명 감식 방법(2011. 10월), 분광법을 이용한 인주 및 서명 감식 방법(2012. 5월), 음성분석 분야에서는 신원확인을 위한 발성유도 방법 및 장치(2011. 12월), 오디오 파일의 위변조 검출 장치(2014. 4월), 주파수대역의 분석을 통한 디지털오디오파일의 위변조 검출방법(2015. 10월), 녹음 인증 시스템 및 그것을 이용한 녹음 인증 방법(2016. 1월), 음질특성을 이용한 화자인식장치 및 방법(2017. 11월), 영상분석 분야에서는 렌즈 왜곡 보정에 사용된 보간 패턴 검출을 통한 촬영카메라 식별 방법 및 장치(2013. 1월), 차량의 번호판 인식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 및 장치(2023. 1월), 멀티미디어 복원 분야에서는 손상음성파일 복원 장치 및 그 방법(2014. 11월), 녹음 인증 시스템 및 그것을 이용한 녹음 인증 방법(2016. 1월), 디지털 녹음 파일 위변조 식별을 위한 헤더 및 파일구조 비교 프로그램(2016. 2월), 타임스탬프를 이용한 이미지 정렬 장치 및 그 방법(2016. 11월), 손상된 멀티미디어 파일의 음성 복원 장치 및 그 방법(2017. 7월), FAT32를 기반으로 하는 삭제 파일의 메타데이터 복구 장치 및 그 방법(2022. 5월), 영상녹화분야에서는 영상 녹화 조사 시스템(2011. 10월)을 특허 등록하였다. 심리분석 분야에서는 심리생리검사 관리시스템(PMS: Polygraph Management System)(2015. 10월)을 저작권 등록하였고, 피검사자의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는 뇌파분석 방법 및 그 장치(2017. 11월)를 특허 등록하였다. 영상녹화분야에서는 화상 디자인이 표시된 컴퓨터 모니터(2010. 2월)와 컴팩트디스크용 라벨지(2010. 3월)를 디자인 등록하였다.

디엔에이·화학분석과 법화학감정 분야는 기체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암페타민 및 대마 유도체의 다성분 동시 분석방법(2008. 7월), 액체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디메틸암페타민 및 암페타민 유도체의 다성분 동시분석방법(2009. 6월), 기체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모발 중 암페타민 유도체 및 케타민 대사체의 다성분 동시분석법(2009. 11월), 기체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소변 중 60종 이상 마약성분의 다성분 동시분석법(2010. 12월), 대마 대사체 분석방법(2011. 4월), 기체크로마토그래프를 이용한 기체상 혼합물로부터 목적물질의 선택적 분취방법(2012. 2월) 메탐페타민의 신규한 제조경로 특정 불순물(2013. 1월), 면역 반응 측정법을 이용한 모발 중 마약 성분 신속 분석법(2014. 3월), 고온 기체상 크로마토그래프 분석법을 이용한 발기유발제의 고감도 신속 검출법(2014. 7월), 화학적 프로파일링에 기초한 메스암페타민의 분류기법(2014. 8월), 탄소수 6이하의 알코올류 다성분 동시분석법(2015. 7월), 혈액 중 성충동 억제약물 및 남성호르몬 다성분 동시분석법(2015. 8월), 하이드록시펜터민, 펜터민 및 메펜터민 동시 신속분석법(2017. 3월), 암페타민 검출 방법(2019. 6월), ADB-푸비나카의 대사체 합성 방법(2019. 11월), 쿠밀 페가클론의 대사체 합성 방법(2019. 11월), GC-MS 주입구 유도체화를 이용한 대마 대사체 분석 방법(2020. 7월),메트암페타민의 제조방법을 추정하는 방법(2020. 12월)을 특허 등록하였다. 또한 2021. 1월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수면유도제로 사용되나 성범죄에 악용 빈도가 높은 약물인 졸피뎀에 대한 대사체 성분에 대해 세계 최초로 모발 분석법을 개발함으로써 감정기간을 수일에서 수개월까지 확장할 수 있게 되어 실효성 있는 범죄수사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2022. 3월 알코올의존증 치료약물 소변분석법을 국제학술지 게재하였고 이어서 5월 알코올의존증 치료약물 복용 확인을 위한 측정값 평가 방법을 개발하였다. 2022. 6월 마약지문감정 크로마토그램 이미지 유사도 분석방법 및 시스템을 특허 출원하였고, 2022. 9월 마약류 분석 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인공지능을 접목하여 미지물질에 대한 신종 마약류 여부를 판별하고 화학구조를 추정할 수 있는 분석 기법을 개발하여 국제학술지에 발표하였으며, 2022. 12월 대마복용 확인을 위한 소변 중 대마 대사체 자동화 분석법을 개발하여 감정에 적용하였다. DNA-DB 운영 및 DNA감정 분야에서는 한국인 집단에서 변별력을 가진 STR 유전자들로 구성된 콰드루플렉스 피씨알시스템(Quadruplex PCR system) 및 이를 이용한 유전자 감식방법(2000. 10월), 한국인 집단에서 변별력을 가진 16개의 짧은 반복 단위 유전좌위들 및 성염색체 유전좌위를 포함하는 멀티플렉스 유전자 증폭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유전자 감식방법(2011. 1월), 체액식별용 키트 및 이를 이용한 체액 식별방법(2012. 12월), 멀티플렉스 유전자 증폭을 이용한 분석대상의 인간객체의 상염색체 분석방법(2014. 10월), miRNA를 이용한 체액 식별용 조성물·키트 및 체액 식별방법(2014. 10월), DNA메틸화 마커를 이용한 체액식별방법·체액 식별용 조성물 및 키트방법(2014. 11월), NGS기반 인간객체의 상염색체 분석방법(2015. 6월), 마약성 양귀비류의 판별방법(2015. 9월)을 특허등록 하였고,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을 이용한 인간객체의 확장 상염색체 STR분석방법(2015. 10월), 인간객체

염색체 상의 STR분석방법 및 이를 이용한 분석키트(2015. 10월)를 특허 등록하였으며, STR 유전자와의 분별 선행 증폭을 통한 유전자감식 방법(2015. 7월)을 특허 출원하였다. 또한 법과학적 관점에서 새롭게 시도된 생물종 고유의 DNA바코드 정보를 DB로 구축하고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법생물 디엔에이 바코드 수사자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프로그램(2014. 6월)을 저작권 등록하였다. 2018. 8월에는 저명한 국제학술논문지인 Electrophoresis에 한국인에 대한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를 활용한 STR분석 결과가 게재 되었다.

혼합형 DNA프로필 분석을 위해 자체시험연구를 진행하였고 과학수사학회지에 논문 'EuroForMix를 이용한 혼합형 DNA프로필 분석연구'를 발표하였다(2019. 9월).

2022년 4월에는 '마약성과 비마약성 대마의 식별을 위한 칸나비노이드 생합성 유전자 유래 분자마커 및 이의 용도' 1건, 신속한 증거물 수집 및 교차 오염 방지능이 우수한 핀셋 등 2건, 신속한 증거물 수집 및 교차 오염 방지능이 우수한 핀셋 캡 탈리 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핀셋 1건을 특허등록 하였다. 9월에는 단일염기다형성(SNP) 분석을 통해 친족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 3건(유전적 거리 기반 방식을 이용한 친족관계 분석 방법, 물리적 위치 기반 방식을 이용한 친족관계 분석 방법, 물리적 위치 및 기준값을 이용한 친족관계 분석 방법)에 대한 특허 출원과 '포렌식 체액식별 시스템'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하였으며, 11월에는 미생물 메타게놈 분석을 통한 타액흔 판별용 미생물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타액흔 판별 방법에 대해 특허를 출원하였다.

디지털수사과는 암호분석 분야에서 다수의 암호설정 파일에 대하여 암호를 한 번에 해제할 수 있는 '다수의 이기종 암호파일에 대한 자동화된 패스워드 해제시스템 및 방법'(2011. 12월), '착발신 소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 데이터를 이용하는 통화 내역 추출-추적 시스템 및 그 방법'(2013. 3월), '디지털 증거 분석시스템 및 그 방법'(2013. 7월), '디지털 증거 수집방법, 그리고 상기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기록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기록매체'(2013. 11월), 문서의 암호를 해독하는 'ASIC 칩을 이용한 암호 탐색 장치'(2016. 4월)를 발명하여 특허 등록, 디지털포렌식 분야에서는 '문서 파일의 포렌식 분석 방법 및 시스템'(2014. 3월), 이메일, 전자결재, 회계자료 등이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손상된 레코드를 복원하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에 대한 범용 복원 기법'(2015. 8월)과 'DB2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복원하는 방법 및 장치'(2015. 12월)를 디지털증거의 무결성 확보를 위한 '디바이스에서 사용자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데이터 획득장치 및 방법'(2015. 10월)을, Mysql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 손상된 레코드를 복원하는 'Mysql MyISAM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에 대한 범용 복원 기법'(2016. 9월), 'Mysql INNODB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에 대한 범용 복원 기법'(2016. 10월), '모바일 기기에서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하는 부분 데이터 획득 장치 및 방법'(2017. 10월), 인공지능비서 서비스에 대한 분석 방법으로써 '클라우드 기반의 IoT 시스템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장치 및 방법'(2020. 9월)을 발명하여 특허 등록하였다.

6. 테러 등 국가안보위해 세력 엄정대처 및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장

공공형사과 검사 조혜민

가. 추진배경

2022년 법무·검찰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를 엄단함으로써 헌법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과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나. 테러 범죄 엄정 대처

2021. 3.경 미국 애틀랜타에서 아시아계 증오범죄로 4명의 한국인이 총격 사망하였고, 2021. 5.경 서아프리카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우리 선원 5명이 해적들에게 납치되었다 석방되는 등 해외에서 우리 국민을 향한 테러사건이 발생하였으며, 국내에서는 직접적인 테러로 이어진 사건은 없었으나 해외 테러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사건을 적발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 8명을 기소(4명 실형 확정, 2명 1심, 2명 2심 재판 진행 중) 하였고, 테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미국 등 4개국과 국제 형사사법공조 4건을 이행하는 등 테러위협 제거 및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적극 노력하였고 테러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하는 등 테러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

다. 국가보안법위반 사범 수사

北 해커의 지령에 따라 현역 대위에게 “군사기밀을 제공해주면 가상화폐 등의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텔레그램을 발송하여 군사기밀을 탐지하려고 하였으나, 제안 거절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국가보안법(간첩)〕, 北 해커의 지령에 따라 ‘軍 합동지휘통제체계’ 전산망 해킹에 필요한 시계형 몰카 장비를 현역 대위를 통해 군부대 내로 반입하고〔국가보안법(편의제공)〕, 계속해서 北 해커의 지령에 따라 군사기밀 탐지에 사용되는 해킹장비(해킹용 USB 모듈) 제작에 필요한 부품들을 구입하고, 노트북에 연결하는 등〔국가보안법(간첩)〕사범 1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신중한 입건,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국가보안법 남용을 방지하고, 내실 있는 국가안보 수사체계를 운영하여 27명의 국가보안법위반 사범을 입건하여 그 중 15명을 기소(구속기소 1명)하였다.

라. 인권보장 철저

또한 안보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권, 심야조사 자제, 영상녹화 활용 등으로 피의자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비진술증거의 확보시에도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였다. 나아가 경찰의 장기 내사 사건을 점검하여 입건 가능성이 낮은 사건들은 적극적으로 종결토록 지휘하는 등 실효성 있는 사건 위주로 안보수사 역량을 집중함과 동시에 내사 장기화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하였다.

7. 과거사 사건 진실규명 및 침해된 인권 회복 노력

공공형사과 검사 조혜민

가. 추진배경

법무·검찰은 2017년부터 과거사 재심사건에 능동적으로 임하고, 인권침해 등 재심사유가 명백한 사건을 발굴하여 직권 재심을 지속적으로 청구하고 있다.

나. 지속적 직권재심 청구

2017년 이후 총 1,026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하였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재심이 청구되지 않은 피고인 187명을 추가 발굴하여 직권재심을 청구(175명 무죄 선고)하였으며, 납북귀환어부 피고인 15명을 추가 발굴하여 직권재심을 청구하여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고,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을 출범 후, 군법회의 수형인 700명에 대하여 직권재심을 청구(이 중 610명 무죄 선고)하는 한편,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하여도 직권재심을 확대하여 일반재판 수형인 10명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하였다.

다. 진실규명 및 인권회복 노력

직권 재심 사건 외에 당사자 청구 재심 사건도 공소유지 중심에서 벗어나, 재심사유가 명백한

사건은 재심개시 의견을 개진하고 신속한 심리를 요청하며, 불법구금 등 적법절차 미준수 사건에 대하여는 무죄를 구형하고, 상소권 역시 적정하게 행사하는 등으로 진실규명과 침해된 인권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8.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

공공형사과 검사 진세언

가. 추진배경

2022년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양대 선거가 순차 실시되었는데, 2021년 1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시행된 첫 전국 단위 선거였다.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는 대부분 경찰이 전담하게 되면서 검·경 협력절차를 통해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 안에 실체진실을 규명해야 하는 변화된 수사체계가 시험대에 오른 한 해였다.

나.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 노력

검찰은 전국 검찰청에 선거전담수사반을 편성하여 철저한 선거 대비체제를 확립하고,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의 공소시효 만료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하면서, 중점 단속대상(금품수수, 거짓말선거, 폭력선거)을 비롯한 선거범죄 수사에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아울러 검찰은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하고자, 2021. 12. 7. 경찰청과 함께 「22년 양대 선거 대비 수사기관 대책협의회」를 개최하여 검·경 수사실무협의회 정례화, 수사준칙 규정상 협력절차 활용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하였고, 2021. 12. 13. 「전국 18개 지검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하여 절제되고 공정한 검찰권 행사, 경찰 및 선관위와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등을 논의하였다. 이후에도 검찰·경찰간 4차례 「수사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협력절차 진행을 위해 노력하였다.

다. 수사성과 분석 및 선거범죄 적극 대처

2022. 3. 9. 제20대 대통령선거는 총 2,001명이 입건되고, 609명을 기소하였다. 유형별로는 ▲ 금품선거 101명, ▲ 허위사실공표 등 흑색·불법선전사범 810명, ▲ 폭력선거 389명, ▲ 기타 부정선거운동사범 701명이었다.

| 표 2-38 | 선거별 입건 및 처리 현황

[공소시효 만료일 기준, 단위: 명, ( )는 기소율]

구 분	입 건(구속)	입 건
제20대('22)	2,001 (12)	609 (30.4%)
제19대('17)	878 (16)	512 (58.3%)
제18대('12)	739 (19)	428 (57.9%)
제17대('07)	1,432 (37)	997 (69.6%)

| 표 2-39 | 범죄유형별 입건 및 기소 현황

[공소시효 만료일 기준, 단위: 명, ( )는 점유율]

구 분	입건	금품선거	흑색선전	폭력선거	기 타
제20대	2,001	101 (5.1%)	810 (40.5%)	389 (19.4%)	701 (35.0%)
제19대	878	68 (7.7%)	164 (18.7%)	273 (31.1%)	373 (42.5%)
제18대	739	66 (8.9%)	230 (31.1%)	107 (14.5%)	336 (45.5%)
제17대	1,432	162 (11.3%)	503 (35.1%)	94 (6.6%)	673 (47.0%)

제19대 대선 대비 입건인원은 127.9% 증가하였으나 구속인원은 25% 감소하였고(입건인원 제19대 878명 → 제20대 2,001명 / 구속인원 제19대 16명 → 제20대 12명), 기소율도 27.9%p 급감하였다(기소율 제19대 58.3% → 제20대 30.4%).

2022. 6. 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총 3,790명이 입건되고, 1,448명을 기소하였다. 유형별로는 ▲ 금품선거 999명, ▲ 허위사실공표 등 흑색·불법선전사범 1,172명, ▲ 공무원선거 개입 66명, ▲ 기타 부정선거운동사범 1,276명이었다.

| 표 2-40 | 범죄유형별 입건 현황

[공소시효 만료일 기준, 단위: 명]

구 분	흑색선전	금품선거	부 정 경선운동	공무원 선거개입	기 타	합 계
제8회	1,172명 (30.9%)	999명 (26.4%)	277명 (7.3%)	66명 (1.7%)	1,276명 (33.7%)	3,790명
제7회	1,457명 (34.6%)	825명 (19.6%)	85명 (2.0%)	99명 (2.4%)	1,741명 (41.4%)	4,207명
제6회	1,295명 (29.1%)	1,037명 (23.3%)	134명 (3.0%)	136명 (3.1%)	1,848명 (41.5%)	4,450명

| 표 2-41 | 입건·기소 현황

[공소시효 만료일 기준, 단위: 명]

구 분	입건인원 (구속)	기소인원 (기소율)
제8회 지방선거 (2022년)	3,790명 (38명)	1,448명 (38.2%)
제7회 지방선거 (2018년)	4,207명 (56명)	1,809명 (43.0%)
제6회 지방선거 (2014년)	4,450명 (157명)	2,349명 (52.8%)

특히, 당선인 중 331명이 입건되어 134명을 기소하였는데, 광역단체장 2명, 기초단체장 32명, 광역의원 20명, 기초의원 78명, 교육감 2명을 기소하였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당선인 총 입건인원은 322명에서 331명으로 증가한데 비하여, 당선인 기소인원은 139명에서 134명으로 감소하였고, 기소율도 43.2%에서 40.5%로 모두 감소하였다. 검찰은 당선인에 대한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되, 법리와 증거에 따라 공정한 결과를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한편, 2021년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단기 공소시효 제도가 맞물려 변화된 수사시스템의 문제점도 확인되었다. 선거사범은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고,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어서 초동수사 단계부터 신속한 강제수사와 치밀한 법리검토를 통한 혐의 입증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수사지휘권의 폐지로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검사가 사건을 파악하는데 제한이 있었고, 공소시효 만료에 임박하여 수백여 명의 선거사범 사건이 검찰에 집중 송치·송부되어 면밀한 검토와 보완수사 진행에 한계점도 노출되었다.

9. 노사 간 균형 있고 공정한 법집행

공공형사과 검사 남상오

가. 추진배경

법무·검찰은 2022년에도 노사 간 균형 있고 공정한 법집행을 위해 노력하였고, 집단적 이익 관철 목적의 불법적·폭력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도 불법에 상응하는 책임이 부과되도록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였으며, 각종 중대산업재해 사건에 엄정 대응하였다.

나.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

법무·검찰은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회복을 위한 업무개선방안을 마련하여, 1) 피의자 재산관계 조사를 통해 상습적·악의적 체불 사업주 구속 등 엄정 대처, 2) 출석거부 체불사업주에 대한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 적극 활용, 3) 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 설치·운영, 4) 야간·휴일·출장(현장) 형사조정 확대를 통해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다.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00산업에서 발생한 집단 직업성 질병자 발생 사건에 대하여 유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경영책임자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최소한의 보건조치인 국소배기장치도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 16명이 독성간염에 이르게 된 사실을 규명하여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11건 22명을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기소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산업재해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였다.

집단이익 관철 목적으로 이루어진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22. 6.~12. 집단운송거부 미참여자 상대 운송방해 등으로 총 6명을 구속 구공판 처분하는 등 국가경제와 국민 불편을 볼모로 한 불법행동에 대해 '불법과 비타협' 원칙에 따라 엄단하였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건설노조의 노조원 채용강요, 금원갈취 등 사범 5명을 구속 기소 함으로써 집단적 이익 관철 목적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였다.

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한 수사역량과 연구활동 강화 노력

일선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법리 및 수사 방법을 체계화한 벌칙해설서, 수사가이드북 등을 발간·배부하는 등 노동업무 분야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고용노동부·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대책협의회 및 수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중대재해자문위원회를 발족하여 법률해석 등 중대재해 사건 전반에 걸쳐 이론적·실무적 의견 수렴을 진행함으로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초기 안정적인 법안착과 효과적인 수사시스템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다.

| 그림 2-76 | 검찰·경찰·고용노동부 중대재해 대책협의회, 중대재해자문위원회 개최



〈 검찰·경찰·고용노동부 중대재해 대책협의회 〉



〈 중대재해자문위원회 〉

10.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에 기여

공공형사과 검사 남상오

가. 추진경과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집회의 자유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는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였다.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비난 목적 집회 중 욕설 발언에 항의하는 비서실장 등을 커터칼로 협박한 1인 시위자와 유튜버 등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사범 2명을 구속 기소하였다.

나. 불법폭력집회·시위 건수 추이

노동·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권리 주장과 견해 차이로 인한 갈등 심화, 코로나로 인한 집합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집회·시위 건수가 증가하였고, 불법폭력 시위도 증가하였다.

| 표 2-42 | 최근 5년간 불법·폭력 집회시위 추이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주요 집회·시위(건)	9,613	13,864	12,465	10,300	10,293
집회신고(건)	81,358	129,642	138,636	150,729	171,911
현행범 체포(명)	112	342	256	188	429
입건자(명)	602	1,515	1,488	1,380	1,865

* 주요 집회·시위란 경력이 배치된 집회·시위를 말함

* 출처 : 경찰청

| 표 2-43 | 2022년 발생 주요사건 현황

구 분	주요사건	비 고
안보사범	• 北 해커 연계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 사건	서울중앙지검
	• 인터넷 카페에 북한 찬양 이적표현물 게시 사건	충주지청
	• 국내체류 외국인의 테러단체 자금지원 사건	서울중앙지검 등
선거사범	•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의 부정선거운동 사건	서울중앙지검
	• 현직 국회의원의 당원집회 제한 위반 사건	진주지청
	• 현직 국회의원의 매수 사건	성남지청
	•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허위사실공표 사건	서울중앙지검 등
	• 대전시장 확성장치 사용 선거운동 사건	대전지검
	• 제주도지사 직무상지위 이용 선거운동 사건	제주지검
	• 부산교육감 유사기관 설치 및 허위사실공표 사건	부산지검
	• 전북교육감 동료교수 폭행 관련 허위사실공표 사건	전주지검
	• 담양군수 기부행위 사건	광주지검
	• 안성시장 기부행위 및 허위사실공표 등 사건	평택지청
	• 영주시장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사건	안동지청
	• 창원시장 경선 상대 후보자 매수 사건	창원지검
노동·집단사범	• 00산업 등 중대산업재해 사건	창원지검 등
	• 화물연대 불법행위 사건	춘천지검 등
	• 전직 대통령 사저 앞 집회 사건	울산지검
	• 건설현장 건설노조의 금품 갈취 등 사건	서울중앙지검 등

11. 국제공조를 통한 사회·경제 질서의 엄정 확립

국제형사과 검사 전성환

가. 범죄인인도·형사사법공조·국제수형자이송 관련 국제협력강화

1) 개요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외국과의 인적·물적 교류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이른바 국외도피사범이 급증하고, 외국에서

죄를 범하고 국내로 잠입하는 경우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범죄의 국제화 현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1991년 범죄인인도조약, 1993년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최초로 체결한 이래, 2011년 유럽평의회(49개국)의 범죄인인도조약 및 형사사법공조조약에 가입함에 따라 범죄인인도조약 체결국은 대폭 확대되어 현재 범죄인인도조약은 79개국(발효 79개국), 형사사법공조조약은 77개국(발효 77개국), 수형자이송조약은 74개국(발효 74개국)에 이르게 되었다. 이는 전 세계 주요국들과 해외도피 범죄인의 강제송환과 수사공조에 관한 협력 체계 구축 등 전반적인 국제사법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범죄인인도

범죄인인도법은 1988. 8. 5.에 제정 및 발효되었다. 법무부는 범죄인인도법 제정 이후, 그간 축적하여 온 제도적 기반과 경험을 집약하여 주요 해외도피사범에 대한 여권무효화 조치, 강제추방 등 국가별 실정을 고려한 맞춤형 송환방안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표 2-44 | 범죄인 송환 현황

연 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인수	48명	55명	74명	70명	85명	60명	73명	70명

3) 형사사법공조

형사사법공조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2022년 중 외국에 총 1,043건의 형사사법공조요청을 하였고, 외국으로부터 207건의 형사사법공조요청을 받아 처리하였다.

| 표 2-45 | 형사사법공조요청 현황

(단위 : 건)

연 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한국 요청	236	220	240	320	375	420	741	1,043
외국 요청	111	137	160	195	235	202	285	207

4) 국제수형자이송

2005. 11월 국내에서 발효된 유럽평의회 수형자이송협약에 의거하여, 2006년에는 국제수형자이송심사위원회 운영세칙 제정 등 국제수형자이송제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2007년부터 수형자이송이 실시되었고, 2021년에는 심사대상자 14명 중 국내이송 신청자 4명, 국외 이송 신청자 4명에 대하여 이송승인을 하였다. 한편 2012. 12. 18. 한-태국 수형자이송조약,

2014. 6. 13. 한-홍콩 수형자이송조약, 2015. 10. 22. 한-쿠웨이트 수형자이송조약, 2021. 6. 5. 한-카자흐스탄 수형자이송조약 및 2021. 9. 11. 한-키르기즈스탄 수형자이송조약이 각 발효되는 등 국제수형자이송조약의 효력이 발생한 나라는 74개국으로 확대되었다.

| 표 2-46 | 국제수형자 이송 현황

구 분 / 연도별	국내이송	국외이송
2015	11명	1명
2016	3명	1명
2017	1명	4명
2018	2명	6명
2019	6명	3명
2020	1명	0명
2021	1명	0명
2022	2명	1명

나.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사건 엄정처리

1) 개요

주한미군지위협정(이하 'SOFA')은 1966. 7월 체결되어 1967. 2월부터 시행된 뒤, 1999. 2. 1. 및 2001. 1. 18.에 개정되었다. 2001. 1. 18.자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은 살인, 강간 등 12개 중대범죄를 기소하는 경우 해당 피의자에 대한 신병인도를 받게 되었다. 또한 2012. 5. 23.에는 합동위원회 합의사항(Agreed View) 개정을 통해 위 12개 중대범죄로 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미국 당국은 수사기간 중에도 대한민국의 구금인도요청 자제요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하게 되었다.

2) 사건 처리 현황

SOFA 합의양해사항의 개정 이전에는 미군인에 대한 재판권 행사율이 1.0% 미만이었으나, 2002년부터는 재판권 행사율이 증가하여 2021년에는 77%에 이르고 있다.

한편, SOFA 범죄 발생건수는 2011년 397건, 2012년 344건, 2013년 365건, 2014년 405건, 2015년 387건, 2016년 388건, 2017년 374건, 2018년 351건, 2019년 444건, 2020년 541건, 2021년 457건, 2022년 521건이다.

| 표 2-47 |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관련 통계

(단위 : 명)

구분 / 연도별		발생							미군인 범죄에 대한 재판권행사	주한미군지위 협정사건 전체범죄에 대한행사
		총계	미측 관할 제외 총계	미군인				미군속 등		
				계	미측 관할	공소권 없음	미측관할 및 공소권 없음 제외			
'11	건	397	380	298	17	158	123	99	81(65.9%)	180
	명	456	439	341	17	177	147	115	92(62.6%)	207
'12	건	344	322	264	22	158	84	80	64(76.2%)	144
	명	379	357	294	22	175	97	85	70(72.2%)	155
'13	건	365	354	273	11	134	128	92	89(69.5%)	181
	명	403	392	305	11	163	131	98	98(74.8%)	196
'14	건	405	388	286	17	146	123	119	93(75.6%)	212
	명	433	416	300	17	152	131	133	97(74.0%)	230
'15	건	387	370	265	17	138	110	122	78(70.9%)	200
	명	419	402	289	17	152	120	130	82(68.3%)	212
'16	건	388	339	293	49	170	74	95	68(91.9%)	163
	명	426	377	326	49	198	79	100	71(89.9%)	171
'17	건	374	340	265	34	153	78	109	58(74.4%)	167
	명	415	381	295	34	169	92	120	62(67.4%)	182
'18	건	351	312	296	39	186	71	55	69(97.1%)	124
	명	378	339	319	39	202	78	59	70(89.7%)	129
'19	건	444	417	395	27	212	156	49	106(67.9%)	155
	명	477	450	426	27	232	167	51	107(64.1%)	158
'20	건	541	508	392	33	231	128	149	69(54.0%)	218
	명	587	554	426	33	258	135	161	70(51.9%)	231
'21	건	457	428	313	29	161	123	144	95(77.2%)	239
	명	487	458	337	29	172	136	150	104(76.4%)	254
'22	건	521	509	355	12	153	190	166	132(69.4%)	182
	명	579	567	401	12	178	211	178	144(68.2%)	196

※ '공소권없음'은 미군인 범죄로 집계는 되었으나, 친고죄의 고소취소나 교통사고의 종합보험 가입의 사유로 재판관할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등임

※ 2003년부터는 재판권행사율 산정 시 '공소권없음'에 해당하는 사건은 분모에 산입하지 않음

다. 불법수익환수를 위한 노력

선진일류국가 진입에 장애가 되는 부패범죄·경제범죄의 근본적 척결을 위해서는 불법수익의 철저한 추적 박탈로 부패행위에 대한 동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2001. 9. 27.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1. 9. 27.부터 시행하였다. 현행법은 '범죄수익' 개념의 전제가 되는 '중대범죄'를 나열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범죄수익 환수가 필요한 중대범죄를 추가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법무부는 중대범죄에 주식회사 외부 감사인 등의 금품수수 행위 및 이에 대한 공여행위, 사회적 약자를 감금하여 강제노역을 시키는 행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배포 행위 등을 추가하기 위하여 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2016. 9. 2. 국회에 제출하였고 2019. 4. 5. 국회 본회의에서 다른 의원입법 개정안과 함께 대안 가결되어 2019. 4. 23. 공포·시행되었다.

한편, 범죄수익환수와 더불어 보이스피싱, 유사수신행위 등의 조직적 사기범행의 범죄피해자의 원상회복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수사단계에서 발견된 피해재산을 법원의 몰수·추징보전 명령으로 보전하여 재산은닉을 막고, 피해자들이 민사소송 없이도 수사기관이 동결해 놓은 재산으로부터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2018. 11. 29. 국회에 제출하여 2019. 8. 2. 공포·시행되었다. 그리고, 관련 몰수·추징, 환부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환부 절차와 관련한 하위법령 정비에 착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및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2020. 11. 24. 공포·시행되었다. 또한 범죄수익환수 대상범죄 확대를 위해 법정형(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을 기준으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 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이 2021. 12. 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2. 1. 4. 공포·시행되었다.

라. 국제협약의 적극적 이행

1) '국제형사재판소규정'의 이행

우리나라는 2002. 11월 '국제형사재판소규정'을 비준함으로써, 동 규정의 당사국이 되었다. 국제형사재판소규정에 의해 2003. 3월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는 최초의 상설 국제형사법원으로서 집단살해죄·인도에 반한 죄·전쟁범죄 등 반인륜범죄의 수사 및 소추와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법무부는 국제형사재판소규정의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회한 후 2004. 5월 입법예고, 같은 해 6월 공청회 개최 등 절차를 거쳐 2006. 12월 국회에 이행입법안인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출하였고, 2007. 12. 21. 동법률이 공포되었다.

2) 'UN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 이행

초국가적조직범죄를 효율적으로 예방·처벌하기 위한 UN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이 2003. 9월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2000. 12. 13. 위 협약 뿐 아니라 인신매매방지 의정서, 불법이민방지의정서에 서명하였고, 총기류자제의정서는 2001. 10. 4. 서명하였다. 법무부는 협약 비준을 위하여 2007. 9월 이행입법 T/F를 구성하고 2008. 12월 법무부 초안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인 검토를 진행하여, 2010. 11월 여권법, 출입국관리법 등 불법이민 관련된 범죄를 중대범죄에 포함시키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2012. 1월 국회를 통과하여 2012. 1. 17. 공포, 2012. 4. 18. 시행되었다. 또한 2012. 8월 포괄적 인신매매죄 신설, 범죄단체조직죄 개선 관련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2013. 4. 5. 공포·시행되었다. 이러한 이행입법의 시행에 따라 2013. 10월 법무부는 외교부에 비준 추진을 의뢰하였고, 2014. 7월 외교부는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2015. 5. 29. 국회를 통과하여 2015. 11. 5. UN에 대한민국 정부의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UN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 당사국으로 가입하게 되었다. 이후 우리나라는 동 협약의 이행입법으로 시행된 법률들을 충실히 시행함으로써 국내 법제도 운영에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3) 'UN부패방지협약' 이행

'UN부패방지협약'은 공공·민간 부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포괄적 부패방지 국제협약으로서 동 협약의 제정으로 부패범죄와 관련된 국가 간 공조와 부패자산 환수를 위한 총체적인 국제규범이 마련되었다. 법무부는 2005. 11월 이 협약의 비준을 위해 설치된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국제범죄 분석기획단에 적극 참여하였고 2006. 10월 'UN반부패협약 이행입법 추진반'을 발족하였다. 이후 동 협약 이행입법안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안'을 마련하여 2007. 10월 국회에 제출하였고, 2008. 2월 위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8.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동 협약은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 2008. 4. 26. 비준·발효되었다. 이후 우리나라는 동 협약의 이행을 위해 2012. 11. 20. 부패범죄피해자의 피해재산 복구절차를 구체화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공포·시행하였고, 매년 개최되는 당사국 총회에 참가하여 협약 이행의 의지를 피력하며 우리나라의 추진 제도 및 사례, 성과를 소개하고 있으며, 동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다른 당사국에 대한 동 협약 이행점검을 실시하는 등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마. 국제협력성과

| 그림 2-77 | 국제협력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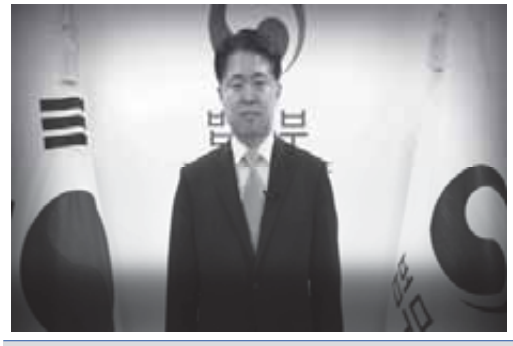


美 연방법무부 장관 회담(2022. 7.)





UNODC 동남아 반부패 컨퍼런스(2022. 8.)





ASEAN 초국가범죄 장관급 회의(AMMTC) 및 고위급 준비회의(Preparatory SOMTC)(2022. 9.)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추진

형사법제과 검사 남소정

가. 추진배경

헌법재판소는 2021. 12. 23. 원진술자의 법정 증언 없이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함)」 제30조 제6항에 대하여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하였다.

위헌 결정으로 인한 입법 공백으로 많은 미성년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이 수사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법정 등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증거보전 제도 마련'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나. 추진경과

법무부는 2022. 1. 5. 출범한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인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의 총 6회에 걸친 전체 회의를 통해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검토하였으며, 2022. 3. 법원행정처, 대검찰청,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다양한 유관기관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친화적 증거보전절차 등을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2. 4. 14.부터 2022. 5. 24.까지 입법예고 후 2022. 6. 28. 국무회의를 거쳐 2022. 6. 29. 국회에 제출하였다.

다. 주요내용과 성과

수사과정에서 미성년 또는 장애로 심신미약인 성폭력범죄 피해자(이하 '미성년 등 피해자')의 진술을 영상녹화 하였을 때, 원칙적으로 공판 前 증인신문을 위한 증거보전절차를 통해 피의자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고, 이러한 경우 공판절차에서 피해자 증언 없이도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반대신문을 포기한 경우 또는 미성년 등 피해자가 사망, 질병 또는 트라우마, 공포, 기억소실 등 사유로 법정 진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증거보전절차 없이도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위 증거보전절차 진행시 미성년 등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증인신문 방식, 장소 등에 관하여 미성년 등 피해자의 특성에 맞춘 특례를 신설한 바, 증거보전기일 이전에 신문사항 및 방법 등 결정을 위한 준비절차를 거치고, 법정이 아닌 별도로 마련된 아동친화적인 장소에서 훈련된 전문조사관이 피해자에 대한 신문을 중개하며, 그 과정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하여 법정에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피의자를 대면하거나 공격적인 반대신문에 노출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신문과정에서 피의자 등은 법원에 추가 필요사항의 신문을 요청할 수 있고, 법원은 전문조사관과 전자장치 등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추가 신문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의자의 반대신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국제아동인권규범을 반영하여 미성년 등 피해자가 형사사법절차를 거치면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사기관과 법원이 미성년 등 피해자의 이익을 최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라. 평가 및 발전방향

전문조사관 제도 도입시 훈련된 전문가가 아동·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진술을 청취하여 양질의 진술증거를 확보하고 조사 및 신문과정에서 아동·장애인의 고통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성년 등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을 하는 경우에도 가급적 동일한 전문조사관이 아동친화적인 동일한 장소에서 신문하도록 하여 피고인 측의 공격적인 반대신문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2차 피해를 방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성년 등 피해자가 절차에서 조기에 해방되어 치유 및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재판 전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아동친화적인 증거보전절차를 마련하였는바,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1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형사법제과 검사 이정아

가. 추진배경

최근 굴착기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 2명을 들이받아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상해를 입게 한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교통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도주차량, 음주 등 위험운전치사상,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을 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정범죄가중법')」상 '굴착기'가 가중처벌 적용 대상인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아 굴착기 운전자를 가중처벌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에 포함되지 아니한 건설기계인 불도저, 굴착기, 지게차 등은 위 규정상 자동차에 포함되는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등과 비교할 때에도 도로에서의 위험성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입법 공백을 제거하기 위하여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나. 추진경과

2022. 8. 12.부터 9. 21.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022. 10. 19.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2022. 12. 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입법 논의를 거쳐 대안이 가결되었고, 2022. 12. 27.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되었다.

다. 주요내용과 성과

「특정범죄가중법」 상 도주차량 운전자 가중처벌(제5조의3), 위험운전치사상(제5조의1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 가중처벌(제5조의13) 규정이 적용되는 자동차에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를 전부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법체계 정합성에 부합하도록 자동차의 정의 개념을 통일하고, 일부 건설기계 교통사고사범에 대한 처벌 공백을 방지하였다.

라. 평가 및 발전방향

도로에서의 위험성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입법 공백으로 인하여 가중처벌되지 않던 건설기계인 굴착기 등을 자동차의 개념에 전부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위험성이 높은 건설기계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14. 「소년법」, 「형법」 개정 추진

형사법제과 검사 이정아

가. 추진배경

최근 촉법소년의 범죄가 증가하고 그 범행의 흉포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하는 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합리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였다. 또한 범죄소년이 저지르는 범행의 수법이 점차 흉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를 120대 국정과제로 포함하여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을 추진하게 되었다. 위 소년범죄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는 내용 등의 「소년법」, 「형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나. 추진경과

2022. 6. 14.부터 10. 26.까지 법무부 내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TF'를 구성·운영하였고, 총 18회 회의 개최 등을 통해 「소년법」 등 법령 개정, 전과자 양산 방지, 소년보호처분 개선 및 소년교도소 교정·교화 강화,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10. 26.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위 소년범죄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12. 28.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합리화하는 내용 등의 「소년법」,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다. 주요내용과 성과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합리화하고, 소년의 인권보호,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강화 방안 등을 도입하였다.

구체적으로 「소년법」상 촉법소년 연령 상한 및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각각 하향하였다.

또한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 소년보호재판에서 피해자 진술권 및 참석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 소년보호절차의 항고권자에 검사를 추가하였으며, ▲ 소년재판에 검사 의견 진술 절차를 도입하였다.

소년범죄 형사사법 절차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 수사기관의 소년사건 수사 시 전문가의 의견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 절차의 중복을 방지하도록 통고 처분을 개선하였으며, ▲ 보호처분 준수 등 조건부 소년부송치제도를 신설하였다.

라. 평가 및 발전방향

흉포성을 띠고 있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에 없었던 처벌 가능성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범죄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실제 입법화가 되더라도 강간·강도 같은 흉포범죄 위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다른 대부분의 범죄는 소년부 송치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에 소년의 인권보호,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강화 방안 등도 도입하여 소년사법체계가 한층 더 개선·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년에 대한 처벌 강화 뿐만 아니라 사전적 범죄 예방 및 이를 위한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깊이 공감하고 있다. 체계적인 소년범죄 통계 관리시스템 구축, 셉테드 사업과 소년범죄의 연계 등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강화 등 다양한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도 함께 시행할 것이다.

제5절 범죄예방업무

1. 보호관찰 내실화·전문화를 통한 실효성 제고

가.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업무시스템 개편

보호관찰과 서기관 강신원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을 사회 내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도록 허용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제도로, 1988. 12. 31. 제정·공포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89. 7. 1.부터 범법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을 시작한 이래 「형법」 개정을 통해 1997. 1월에는 성인범까지 전면 확대되었으며, 2004. 9. 23.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성매매 사범에까지 확대되었다.

2009. 11. 29.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특별준수사항 부과 및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준수사항 추가·변경이 법제화되어 사범별 맞춤형 보호관찰이 가능해지면서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 정책 추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주취, 정신장애 상태에서 경미한 폭력범죄 또는 비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및 마약 중독자에 대한 치료명령을 실시하여 치료 여부를 형사사법 집행 과정으로 포섭하였으며, 더 나아가 2018. 6월부터 치료감호 기간(3년)이 만료되어 출소한 대상자 중 재범위험성이 높은 자에 대한 보호관찰 부과가 가능해지게 되면서, 치료 중단으로 인한 범죄 발생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 표 2-48 | 연도별 보호관찰 대상자

(단위 : 명)

연 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인 원	49,048	48,729	49,178	52,387	55,784	52,580	50,269	49,560	47,921	47,730

2) 추진내용

보호관찰관과 대상자가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독립된 면담 공간 확보로 면담 분위기를 조성하고 면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평택, 원주, 구미 등 총 3개 기관에서 독립면담실 4실을 추가

설치하여 2022. 12. 기준 전국 45개 기관에서 총 246실의 독립면담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7개 사범에 대해 전담 직원제를 지속하는 한편, 기관 규모가 작으나 관할구역이 넓은 지소의 경우 전담제를 폐지·축소하여 보호관찰 업무를 담당하는 전 직원이 지역별로 전담사건을 맡는 등 재범 방지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의 범죄 근절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월 2회 이상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재범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사례관리·공동출장 및 수사기관과 유기적 공조 체계를 유지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 및 임시조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다.

재범위험성이 높은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월 2회 이상 수시로 불시검사를 실시하여 재범억제 효과성을 제고하였으며, 재범위험 요인에 대한 근본적 개입, 개선을 위해 민간 전문가를 활용한 1:1상담 지원 및 집중면담을 실시하는 등 치료적 개입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최근 마약범죄 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펜타닐·암페타민 등 신종 마약 투약 여부까지 검출이 가능한 19종의 진단 시약기로 검사 도구를 교체 적용하였다.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선제적 치료적 개입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가정폭력·마약·성폭력 및 기타사범 중 집중 대상자에 대해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를 통해 주취·정신질환 의심자로 확인될 경우,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전문가 등 정신건강 전문요원을 활용한 연계상담 및 병원 치료 등을 실시하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스토킹 사범 보호관찰 대상자는 집중 등급으로 분류하여 월 2회 이상 밀착 지도감독하고, 피해자를 주기적으로 접촉하여 피해 재발 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였다.

| 표 2-49 |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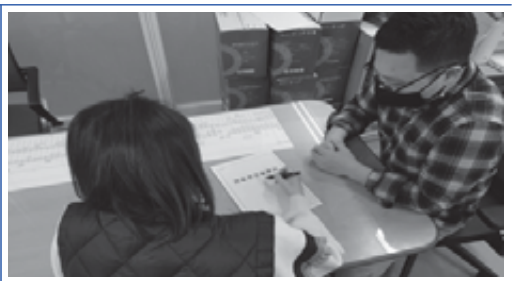
(단위 : %)

연 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재범률	7.6	7.4	7.6	7.9	7.8	7.2	7.2	7.3	6.4	6.0

| 그림 2-78 | 보호관찰 실시현장



출석면담



정신건강 선별검사

3) 평가 및 발전방향

이러한 다양한 재범방지 대책을 추진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재범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2022년에는 전년도 보다 0.4%p 낮은 6.0%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정신질환 등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관리강화, 사범별 전담 보호관찰제 개편 및 지도감독 매뉴얼 개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활용 및 분류처우 적정성 제고,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통한 면담역량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여 보호관찰제도가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나. 조사 업무

보호관찰과 보호사무관 정명훈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조사제도는 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법원 및 검찰의 요구에 의해 보호관찰관이 범죄인의 인격, 환경에 관한 상황, 재범위험성의 양태 및 정도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양형 및 처우 개별화의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이다. 보호관찰관은 피조사자의 범행동기, 피해회복 여부, 직업, 가족사항, 생활환경 및 성장과정, 대인관계, 정신상태, 성격, 재범위험성 등을 조사하여 통보한다.

보호관찰 조사제도는 1989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소년 판결전조사'와 석방 전 조사인 '환경조사'로 시작되었다. 1990년대 후반 보호관찰 적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조사 범주도 넓어졌다. 1997년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정에 따른 가정보호사건 결정전조사, 2004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성매매 보호사건 결정전조사, 2007년 「소년법」 개정에 따른 검사 결정전조사가 도입 되었다.

2007년에는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성폭력사범에 대한 청구전조사가 최초로 시행되었다. 2010년 이후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전조사,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 청구전조사, 아동학대(아동보호사건) 결정전조사, 피해자(피해아동) 보호명령 결정전조사, 이행실태조사, 치료명령 판결전조사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어 조사제도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귀주환경조사는 가출소 및 가석방 심사가 신청된 대상자 중 귀주환경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자에 대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귀주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조사를 의뢰하는 제도로,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 표 2-50 | 조사현황

(단위 : 건)

구분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판결전조사	2,159	2,257	2,166	1,901	2,003	2,053	1,797	1,596	1,618	1,273	18,823
법원 결정 전 조사	12,141	12,399	17,678	16,931	16,606	19,662	19,007	17,813	18,096	18,570	168,903
검사 결정 전 조사	5,084	5,855	3,805	4,379	3,626	1,678	1,092	909	932	527	27,887
청구전조사	2,497	2,511	2,352	2,619	1,783	1,600	1,468	1,456	1,311	1,472	19,069
소급청구 전 조사	247	192	119	79	86	39	52	37	33	18	902
환경조사	1,701	1,594	1,561	1,555	1,920	1,496	1,442	1,356	1,185	1,117	14,927

2) 평가 및 발전방향

조사업무는 제도 시행이후 근거 법령의 확대를 통해 매년 꾸준하게 업무가 증가하며 양적 성장이 이루어졌다. 또한 일명 '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방 사건, 광명 세모자 살인 사건 등 그동안의 축적된 신뢰도를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에 대해 조사를 수행하는 등 대외적으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최근에는 보석조건부 전자장치 부착제도 도입에 따른 전자보석 결정전조사 시행, 소년형사사법절차 전문성 확보를 위한 결정전조사 적극 활용 등 향후에도 조사업무의 활용도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청구전조사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2013. 4월부터 운영해 온 27개 청구전조사 전담기관을 2019. 12월 21개로 조정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조사업무의 전문성 확보 및 대외신뢰도 제고의 일환으로 2010. 8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여 조사관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2019년부터는 전문조사관 제도까지 시행함으로써 조사관의 전문성을 한층 제고하고 우수한 조사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게 되었다. 2022년 12월 현재 897명의 조사관과 26명의 전문조사관을 선발하였으며, 전문조사관에게는 조사 담당 직원을 수퍼비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향후 조사 담당 직원들의 전문성 제고와 양질의 조사서 작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사회봉사명령 집행

보호관찰과 사무관 이상기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사람에 대해 사회 내에서 일정 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로, 1989년 소년법 대상자를 시작으로 1997년 성인범에게까지 확대되었다.

2009. 9월부터 생계곤란으로 납부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벌금미납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2020. 1월 부터는 벌금액수의 상한선을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였다.

2010. 4월 법무부-농협중앙회 간 '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전국 농촌지역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연평균 약 18만8천 명, 총 89만여 명을 투입, 영농철 일손돕기, 영세농가 환경개선, 태풍·폭설·폭우 등 피해복구, 이미용 봉사 등 다양한 농촌지원 활동을 전개하였고, 2013. 5월 도움이 필요한 일반 국민들에게 직접 지원분야를 신청받아 대상자를 투입하여 지원하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실시하여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집행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2018. 1월부터 벌금형 집행유예가 도입되어 벌금형을 받은 대상자에게도 사회봉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사회봉사는 이처럼 사회내 처우의 대표적 제도로서 범죄자 처벌과 사회에 대한 배상 및 속죄, 범죄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등 사회 재통합 기능을 수행하면서 형사정책적으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 표 2-51 | 사회봉사 실시사건

(단위 : 건)

연 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사건 수	46,179	51,058	55,581	58,287	63,050	60,286	58,497	62,009	76,784	69,906

| 표 2-52 | 사회봉사 농촌지원 집행실적

(단위 : 명)

구 분 \ 연 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연인원	110,243	115,536	103,511	106,864	97,188	76,118	65,712	78,015	188,214	185,781	1,127,182

| 표 2-53 |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집행실적

(단위 : 건, 명)

구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건수	2,249	2,964	2,992	1,974	1,667	1,626	1,113	1,330	15,915
연인원	22,569	26,522	26,338	16,591	13,855	13,849	20,304	22,283	162,311

| 표 2-54 | 사회봉사현황

(단위 : 건)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봉사	접수	38,153	41,435	44,386	42,249	40,279	41,943	35,954	33,513
	실시	45,549	48,395	53,231	51,224	49,788	51,448	65,693	62,115
벌금 대체	접수	8,554	8,530	8,282	7,624	7,413	9,097	7,207	5,830
	실시	10,032	9,892	9,819	9,062	8,709	10,561	11,091	7,791
계	접수	46,707	49,965	52,668	49,873	47,692	51,040	43,161	39,343
	실시	55,581	58,287	63,050	60,286	58,497	62,009	76,784	69,906

2) 평가 및 발전방향

'사회적 약자지원 사회봉사'는 중증장애인·고령자·저장강박증 가정의 청소·도배·장판교체 등 주거환경개선, 폭설·폭우·화재·지진 등 재해 피해지역 긴급지원, 대상자의 특기를 활용하여 취약계층에게 진료·마사지·장수사진 촬영·이미용 봉사·학습봉사를 실시하는 특기집행 및 고독사 유류품 정리·민요공연·급식봉사·연탄배달 등 실질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투입하여 지원하는 제도로 법무부는 이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2022년도에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에 연인원 40,597명, 영세·고령 농가 등 농촌일손 돕기에 연인원 185,781명 등 총 226,378명을 투입 지원하여 국민에게 직접 도움을 주는 법무부 대표적 친서민 정책으로 평가받으며 자리 매김하고 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사회봉사 전담인력 확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위탁집행 감독을 강화하고 직접 집행의 내실화는 물론 사회적 취약계층 집행 확대, 탄력집행 확대 등 국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호흡하는 사회봉사명령 집행이 될 것이다.

아울러 대상자에게는 땀 흘리며 일하는 노동의 참가치를 깨닫게 하고, 국민들에게는 사랑받고 희망을 주는 사회봉사명령 집행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 그림 2-79 | 사회봉사 집행현장



국민공모제(주민과 함께하는 벽화그리기)



저장강박 장애 가정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 사업)



농촌 일손돕기 사회봉사

라. 수강명령 집행 전문성 강화

보호관찰과 보호사무관 정명훈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수강명령은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된 사람에게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시간 동안 강의, 체험학습, 심신훈련, 역할극 등 범죄성 개선을 위해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로, 1989. 7월 보호관찰제도와 함께 도입되어 소년에게 시행하였고 1997년 형법 개정에 따라 성인에게도 확대 실시하였다.

근거 법률의 확대에 따라 수강명령 부과의 양적 확대와 함께 폭력치료, 정신·심리치료 등 분야가 세분화되었고, 수강명령 집행의 효과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2009년 '성범죄자 상담치료 프로그램 매뉴얼', 2011. 8월 '준법운전 수강명령 표준 프로그램 매뉴얼'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또한 직원들의 전문교육 이수 또는 전문자격증 취득 등을 도모하여 2010년 수강전문 직원 108명을 양성하였고, 심리학 박사학위 소지자,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자격증 소지자,

성폭력·가정폭력·약물 관련 프로그램 운영 경력자 등을 특별 채용해 전문 강사로 활용하고 있다.

범죄인의 재범예방에 교육과 치료가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2010년 이수명령이 도입되었고, 2013년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수차례 개정되면서 필요적으로 수강·이수명령을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성폭력·가정폭력·알코올·약물 등 치료적 접근이 필요한 전문분야의 집행효과를 높이기 위해 2012년 수원에 수강집행센터를 시범 운영한 후, 2013년 서울, 대구, 광주, 2014년 인천, 대전, 부산, 2017년 서울남부, 의정부, 창원 등 총 10개 기관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0년 이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가정폭력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벌금형,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의 실형 판결 선고 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거 법률의 확대로 수강 분야와 대상자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 표 2-55 | 수강명령 현황

(단위 : 건)

구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수강명령	33,513	38,857	45,459	41,884	42,408	50,357	68,422	72,805	393,705
이수명령	5,571	5,073	6,290	7,999	7,808	8,225	9,200	11,518	61,684
기소유예 등	19,155	36,889	27,564	20,897	19,173	16,139	18,471	22,919	181,207

2) 평가 및 발전방향

수강집행센터는 전문성과 강의역량을 겸비하고 제도 이해가 높은 자체인력을 활용하여 대상자의 친범죄적 사고와 행동을 수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전문처우 프로그램을 집행함으로써, 외부 강사의 형사절차 이해 부족에 기인하는 운영상 단점을 보완하였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해 수강·이수명령이 의무적으로 부과되도록 법률이 개정되는 등 수강명령의 활용범위가 확대되었다.

또한, 최근 스토킹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범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실시를 위해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향후 수강명령 전문성 강화 및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한 꾸준한 노력을 통해 대상자의 사고와 행동 개선을 통한 재범방지와 정상적인 사회적응 지원을 도모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 그림 2-80 | 수강명령 집행현장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심성개선 소집단 수강프로그램

마. 범죄예방대상 전수식

보호관찰과 보호사무관 이상기

범죄예방정책을 성실히 수행하고 조직 발전에 기여한 우수직원, 자원봉사자, 민간인 및 단체를 발굴, 포상하여 격려하고 일하는 조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2022. 11. 17.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2022 범죄예방대상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시상식에는 한동훈 장관, 범죄예방정책국장 및 각 과장, 수상자 등 40여 명이 참석하여 올해의 범죄예방정책 성과를 돌아보고, 선진 범죄예방을 위한 미래를 다짐하였다.

한동훈 장관은 기념사에서 "지역 내 범죄예방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아낌없는 봉사와 헌신을 해주신 수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범죄자들이 재범 없이 건전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민·관의 협력으로 국민들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라고 하며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예방에 기여한 민간인, 직원 등에 대한 포상이 있었는데, 대구보호관찰소 강신탁 보호관찰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협의회 김형균 법무보호위원이 국민훈장 목련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협의회 김신희 법무보호위원, 서울소년협의회 김원균 소년보호위원, 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협의회 황준철 법무보호위원이 국민포장을 수상하였으며, 대구보호관찰소 김현미 사무관이 우수직원으로 선정되어 대통령표창을 수상하는 등 총 35명이 유공자 포상을 받았다.

2. 전자감독 등 고위험사범 관리

가. 전자감독 고위험사범에 대한 밀착 관리감독으로 국민 안전 강화

전자감독과 보호사무관 김충원

전자감독제도는 법원 등으로부터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범죄자의 신체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전자감독대상자의 실시간 위치를 파악하고, 보호관찰관의 밀착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제도로 '08. 9. 1. 시행되었다. 시행 초기에는 부착 대상이 성폭력으로 한정되었으나 '09년 미성년자유괴, '10년 살인, '14년 강도사건으로 확대되었고, '12. 12월 헌법재판소의 성범죄자 소급 부착 합헌 결정으로 대상자 수가 급증하였다.

'20. 8. 5.부터는 같은 해 2월 개정된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기존 4대 특정사범에 한정해 부착하였던 가석방 전자감독을 모든 가석방자로 확대하고,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전자보석제도'가 도입되는 등 형사사법시스템 내에서 전자감독의 영역이 크게 확대되었다.

| 표 2-56 | 연도말 전자감독대상자 현재원

(단위 : 명)

연 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현재원	1,703	2,119	2,313	2,696	2,981	3,126	3,111	4,052	4,316	4,421

'19. 4월 「전자장치부착법」(일명 조두순법) 개정을 통해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 중 재범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전자감독대상자에 대해 일정기간 1:1 전담 보호관찰을 시행하여 고위험 사범에 대해 24시간 집중 모니터링 및 매일 생활실태 점검 등 강화된 전자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전자감독대상자에 대한 24시간 중단 없는 밀착 지도감독 및 경보상황 대응을 위해 '13년 신설된 전자감독 범죄예방팀(보호직 공무원, 무도실무관 각 1명으로 구성)은 신설 초기 26개 팀에서 현재는 58개 전 기관으로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다.

전자감독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 등 재범방지를 위해 경찰과 공조를 강화하고 있으며, 매년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전자장치 훼손자 검거 합동 모의훈련 실시, 대상자의 신상정보 공유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21. 9월부터 제한된 인력으로 전자감독대상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에 따라 재범위험성이 높은 대상자를 선별해 집중 관리감독하는 '고위험군 전담제'를 도입하였고, 관리역량이 우수한 보호관찰관을 배치하였다.

성폭력 등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1:1 전자감독 확대 등 관리 강화를 통해 성폭력 전자감독대상자의 동종 재범률은 '21년 1.40%에서 '22년 0.73%로 크게 낮아지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08년 전자감독 제도 도입 이후 전자감독 제도는 강력범죄자의 재범 방지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강력범죄자의 재범 방지 수단을 넘어 그 활용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 표 2-57 | 성폭력 전자감독대상자 동종 재범률

(단위 : 명, %)

연 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재범자	30	48	53	58	66	83	55	41	46	24
재범률(%)	1.72	2.03	2.00	2.00	2.17	2.53	1.70	1.27	1.40	0.73

나. 신속수사팀 운영을 통한 「전자장치부착법」 위반범죄 신속 엄정 대응

전자감독과 보호사무관 김용권

'20. 12월 「사법경찰직무법」의 개정으로 '21. 6월부터는 전자장치 훼손범죄, 야간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 위반 범죄에 대해 그동안 경찰이 수사하던 것을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보호관찰관)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21. 8월 전자장치 훼손 전후 두명의 여성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을 계기로 '21. 10. 12.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신설하여 전자장치 훼손과 준수사항 위반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는 체계가 마련되었다.

신속수사팀 운영으로 전자감독담당자의 지도감독 업무와 특사경 업무가 분리되어 주·야간 상관없이 24시간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상시 파악하고, 위반 시 현장출동을 통해 현행범체포 등 즉각적이고 엄정한 대응이 가능해졌다.

운영 후 1년간 전자감독대상자의 성폭력 동종 재범률이 크게 감소하고 수사 건수는 월평균 10.8건에서 75.5건으로 7배 이상 증가하였고, 검찰 사건송치 기간도 평균 34일에서 16일로 단축되었으며, 이전에는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강제수사가 전무했으나, 신속수사팀 설치 후 강제수사 126건(강제수사 비율 16%) 등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사건에 대한 엄정 대응을 통한 행동통제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22. 7월 기존 13개팀에서 18개팀으로 신속수사팀이 확대 운영 중에 있다.

다. 전자장치 및 시스템 고도화

전자감독과 보호사무관 한상경

전자감독에 사용되는 전자장치란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일련의 기계적 설비로, 전자감독대상자의 발목에 부착하므로 '전자발찌'라고 칭하기도 한다. 전자장치는 피부착자에게 부착되어 운영되면서 여러가지 개선되어야할 사항들이 나타났고, '08년부터 현재까지 전자장치 훼손 방지 등 내구성 강화, 위치측정 기능향상, 측위방식의 다각화 등 전자장치의 고도화가 지속 추진되고 있다.

지속적인 전자장치 강화에도 불구하고, 전자장치를 훼손한 전자감독 대상자가 살인을 저지르는 등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법무부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자 훼손 방지 기능을 대폭 강화한 전자장치 개발에 착수하였다. 훼손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그 시간을 최대한 지연시키기 위해 스트랩 내장재를 기존 7겹에서 15겹으로 강화하고, 본체 및 잠금장치를 기존의 플라스틱 재질에서 금속프레임 기반의 외형으로 훼손 욕구를 억제시키는 '고위험자용 전자장치'를 개발하였고, 현장적용을 위한 시범운영을 실시 중이다. 또한 장치에 일정한 충격이 가해지거나 장치의 움직임이 없는 경우 훼손 또는 임의분리 경보가 발생하는 위험 감지 기능도 탑재하였다.

전자감독시스템은 전자감독대상자의 위치정보만 확인 가능하므로 전자장치 훼손 및 준수사항 위반 등 긴급상황 시 현장출동 외에 현장 확인이 어려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9년부터 전자감독 시스템과 지자체 CCTV의 연계사업을 추진하였다. '22년 기준 서울 등 12개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활용되고 있고, 보호관찰관이 태블릿 PC로 현장에서도 직접 CCTV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하여 현장대응력을 한층 끌어올렸다.

훼손 사건 등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유선으로만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실시간으로 모바일 정보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경찰 공조 시 인상착의, 위치정보 등 대상자를 식별하여 검거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즉시 제공함으로써 전자감독대상자의 신속한 검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늘어나는 전자감독대상자의 관리 및 효율적인 지도감독을 위해 '위치추적시스템' 고도화 1차, 2차, 현장감독장치(모바일 유가드) 고도화를 추진하였고 사용자 중심의 화면 설계, 지도데이터의 신속한 현행화를 위한 국토부 바로e맵 도입·활용 등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라. 성충동 약물치료 안정적 집행

치료처우과 사무관 임합격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성충동 약물치료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에 대하여 성충동을 억제하는 약물(호르몬 치료제)을 주사하여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성범죄 증가와 조두순, 김수철 사건과 같은 충격적인 아동 성폭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2010. 7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2011. 7월 시행).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의 집행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한 약물투여, 정신건강 전문요원 등 전문가에 의한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전담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 지도감독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2011. 7월 제도 시행 이후 2022. 12월까지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에 대한 판·결정 현황은 총 96건으로, 이중 29건(검사 청구 70건, 기각 39건, 미결 2건)은 법원 판결에 의한 것이고 67건은 가종료자 등에 대한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결정으로 이루어졌다. 성충동 약물치료의 최초 집행은 2012. 5. 30. 시행(치료감호심의위원회 2012. 5. 21. 결정)되었고, 2022. 12월까지 총 71건이 집행되었으며 이중 47건이 집행 종료되었다. 2022년 성충동 약물치료 개시 사건은 8건이며, 집행 인원은 총 42명이다.

| 표 2-58 | 연도말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자 집행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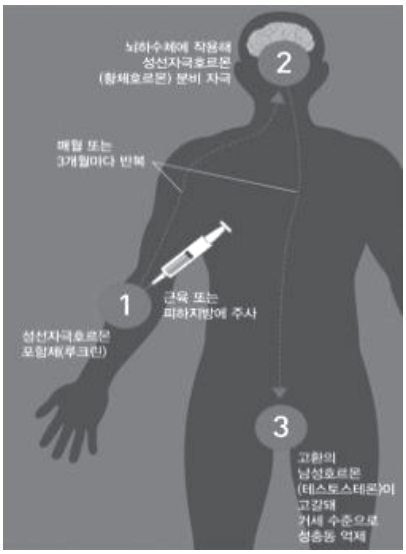
(단위 : 명)

연 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현재원	7	8	14	17	22	39	33	40	42

2) 평가 및 발전방향

제도시행 이후 총 63명을 집행하였으나 2021년까지 재범한 사람은 없으며, 약물치료의 부작용은 경미한 사례 이외에 특이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성충동 약물치료제도는 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치료기관의 의사, 심리치료 전문가, 폴리그래프(거짓말탐지기) 검사관, 보호관찰관이 함께 참여하는 집행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집행협의체는 성충동 약물치료의 효과성과 부작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치료 대상자의 안전과 치료의 효과성을 담보하는 전문적·통합적 처우 모델을 구축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그림 2-81 | 성충동 약물치료 효과



마.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의 체계적 관리

전자감독과 보호사무관 이정희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여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고, 등록정보 중 일부를 일반 국민과 지역사회에 공개·고지함으로써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이다.

'11. 4월부터 성인 대상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등록 업무가 확대되면서 법무부에서 성인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를 실시하였고, '13. 6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신상정보 등록업무는 법무부, 공개·고지 업무는 여성가족부로 운영 주체가 재편되었고 등록 대상 성범죄도 확대되었다.

법무부에서 등록·관리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공개·고지 집행을 위해 여성가족부 시스템으로 전송되고 경찰 전산망을 통해 전달되어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되고 있으며, '22년 말 기준 총 116,434명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11년 대비 417배 증가) 중이고, 그 중 6,288명이 신상정보 공개명령, 6,050명이 신상정보 고지명령을 선고받았다.

| 표 2-59 | 연도말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건수

(단위 : 건)

연 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등록건수	13,628	23,874	36,267	46,415	58,053	71,012	82,647	94,160	105,455	116,434

2) 평가 및 발전방향

법무부는 성범죄자 신상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상정보 미제출자, 소재불명 대상자 또는 허위 정보 제출자 등에 대해 상시 자체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특히 고위험자(공개·고지)는 신상 등록정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 경찰서에 즉시 통보하여 등록정보의 진위를 확인하게 하고 있으며, 그 중 전자감독대상자는 실시간 확인 가능한 보호관찰 정보와 비교·검토하여 명백히 잘못된 거주지 정보는 법무부가 직권으로 정정하여 신속히 공개정보에 반영함으로써 오(誤)정보가 공개·고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업무의 신속·정확한 집행을 위해 여성가족부·경찰청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의체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 직원의 업무 이해도 및 전문성을 높이고자 실무에 필요한 표준화된 신상정보 등록 절차를 담은 '21년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길라잡이'를 제작하여 일선 경찰관서 및 교정기관에 배포하였다.

'20년에는 그 동안 누적된 데이터를 기초로 성범죄자 7만5천여명의 특성을 분석한 「2020 성범죄백서」를 발간하였다. 분석된 자료에 의하면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의 확대, 보급으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고, 성범죄자의 절대다수는 과거의 성범죄수법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범자(2,901명)의 36.5%(1,058명)는 지하철, 찜질방, 버스, 공중화장실 등 원죄명과 동일한 장소를 범죄지로 다시 선택하는 등 범죄유형과 범행시간도 반복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강간 등'이 30.5%, '강제추행'이 44.1%,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 12.4%로 전체 등록대상의 약 87%를 차지하여 이들 성범죄에 대한 예방 강화에 더욱 초점을 맞춰야 함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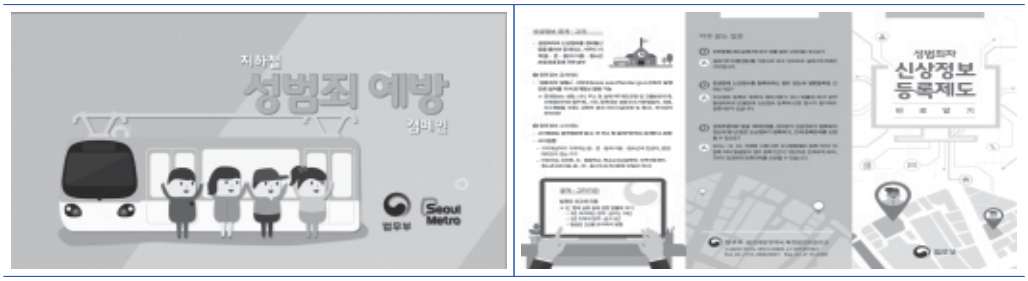
이처럼 「2020성범죄백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및 범죄예방 활동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23년에는 「성범죄백서」 제2호를 발간하여 성범자 및 성범죄 특성 등을 분석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성범죄 예방정책 수립에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이다.

* 「2020 성범죄백서」는 법무부 홈페이지 통계자료실에서 열람 가능

또한 누적된 성범죄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비정형데이터를 DB화하여 종이기록물을 이미지로 변환하는 등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항상 시키고 있으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21. 10. 19.)됨에 따라 '24년 10월부터는 신상등록분야에서도

현행 '우편송달' 방식에서 '전자적 송달'로 개선될 예정으로 효율성과 신뢰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그림 2-82 | 신상정보등록제도 홍보



3. 감호제도 개선

가. 국립법무병원 중증 환자 집중치료병동 신축

치료처우과 사무관 김형식

1) 추진배경

국립법무병원 수용인원의 44%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증환자에 대한 치료효과 제고 및 수용 안정화를 위해 주요 선진국과 같이 중증환자와 경증환자를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는 집중치료시설의 조성이 필요하였다.

2) 추진내용과 성과

국립법무병원 유휴부지에 320병상 규모의 중증 환자 집중치료병동을 신축하기 위해 사업비(총 492억 원)를 확보하여 2019. 12월 실시설계 완료, 2020. 9월 조달청 입찰을 통해 2020. 12월 시공사를 선정하여 착공에 들어갔다.

3) 향후 추진계획

2023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주요 선진국과 같은 1인실 위주의 소규모 병실에서 중증 환자를 집중치료하고 수용환경의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나. 의료 전문인력 확충

치료처우과 사무관 김형식

1) 추진배경

국립법무병원은 살인 등 중범죄 정신질환자 관리, 격오지, 낮은 보수 등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2022년 12월 기준 의사 정원 20명 중 10.5명(충원율 52.5%)이 근무하며 정신과 의사 1인당 환자 102명을 담당하는 실정으로 의료인력 확충이 시급한 문제이다.

2) 추진내용과 성과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통한 의사 보수 인상(기준급 150% → 최대 232%), 보건복지부 업무협의, 노후화 된 비상대기소 리모델링, 의료수당가산금 신설과 해외학회 참가 지원, 법정신의학연구소 운영 및 학술대회 개최 등 의사처우 개선 노력을 통해 의료부장 등 의사 7명 채용, 치과와 한의과 공중보건의사 각 1명 배정, 정신과 전공의 3명(+1 증원)을 확보하였다.

3) 향후 추진계획

우수한 의료인력 채용을 위해 의사 직급 상향 및 연봉 인상, 수당 신설 등 의사 처우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민간스카웃 제도 활용, 채용 홍보 확대 등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다. 국립법무병원 미래비전 선포식 개최

1) 추진배경

치료감호소 명칭을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하는 치료감호법 일부 개정('22. 1. 4.) 및 시행('22. 7. 5.)에 맞춰 기관 명칭 변경 홍보와 비전선포·실천결의를 통해 국립법무병원의 미래상 및 발전전략을 대내외 홍보하고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게 되었다.

2) 주요내용

국립법무병원 미래비전 선포식에는 법무부차관, 공주시장,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장,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장, 공주시 반포면장,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신범법자 치료와 재활 유공 직원에 대한 법무부장관 표창장 전수, 국립법무병원장 기념사, 법무부 차관과 공주시장의 축사, 비전선포 및 실천결의, 축하공연과 현판 제막식 순으로 진행되었고, 국립법무병원

의료부장과 간호과장은 직원을 대표하여 '법정신의학의 연구 중심 기관, 국립법무병원'이라는 미래비전을 선포하고 실천결의를 다짐하였다.

| 그림 2-83 | 국립법무병원 비전선포식('22.7.18.)



법무부차관 축사



현판식 행사

3) 향후 발전방향

국립법무병원은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밝힌 비전과 실천결의가 범법정신질환자 치료, 재활과 사회 안전 확보라는 치료감호제도의 본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변화와 도전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라. 보호감호자 수용시설 독립운영

치료처우과 검찰사무관 박두길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보호감호는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 합산 3년 이상인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특정범죄를 범한 때, 특정범죄를 수회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될 때, 보호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특정범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보호감호 선고를 통해 보호 감호시설에 수용하여 감호교화하고, 사회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근로를 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1980. 12. 18.「사회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시행된 보호감호제도는 사회질서 유지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였으나, 2005. 8. 4.자로「사회보호법」폐지 법률이 시행되면서

동법 부칙 제2조에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의 효력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집행은 구 「사회보호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을 두었다. 보호감호자는 원래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만 관리하였으나, 보호감호자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으로 2010년부터 교정본부와 범죄예방정책국 간 협의로 천안교도소와 경북북부제3교도소로 이원화하여 관리하여 왔다.

보호감호 입소자 중 처우성과를 반영하여 자치 처우 대상자로 선정되면 천안교도소로 이감하여 자치 처우를 실시하였으나 수용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처우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8. 12월 천안교도소로 수용시설을 다시 일원화하여 2022. 12. 31. 현재 13명을 수용·관리 중에 있다.

| 그림 2-84 | 천안교도소 피보호감호자 생활복지관



생활관 입구 모습



생활관 내 독서실

| 표 2-60 | 피보호감호자 집행인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 연 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집행인원	24	18	20	22	31	17	31	30	32	24

2) 평가 및 발전방향

독서실, 체력 단련실, 휴게실, 종교 집회실, 위탁 작업장 등 복지·종교·근로 시설이 갖춰진 독립된 수용동에서 자치생활을 하면서 피보호감호자의 처우 만족도가 높아졌고, 이에 따라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사전 적응력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 보호감호자의 사회적응력 배양

치료처우과 검찰사무관 박두길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피보호감호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교도소 내 검정고시·학사고시 교과 과정을 설치하였고, 〈표 2-61〉 같이 2014년과 2016년 각 1명, 2018년 2명의 검정고시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아울러 자동차 핸들 커버 제작, 정수기 부품 조립 등 위탁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 표 2-61 | 피보호감호자 검정고시 합격 현황

(단위 : 명)

구 분 \ 연 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	1	-	1	-	2	-	-	-	-
중입자격	-	-	-	-	-	-	-	-	-	-
고입자격	-	-	-	-	-	-	-	-	-	-
고졸자격	-	1	-	1	-	2	-	-	-	-

| 그림 2-85 | 위탁 작업장





2) 평가 및 발전방향

중단된 학업을 지속함으로서 지적 자존감을 향상시켰고, 위탁 작업을 통하여 사회복귀를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보다 다양한 위탁 작업을 발굴하여 피보호감호자의 실질적 사회정착금 마련에 기틀을 다지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것이다.

바.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운영

치료처우과 검찰사무관 박두길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판사·검사·법무부 고위공무원·변호사·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의 위원으로 구성된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매월 1회 회의를 개최하여 치료감호, 보호감호 및 보호관찰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고 있다.

재범위험성이 낮아진 피치료감호자와 피보호감호자에게 치료감호 가종료 및 보호감호 가출소 결정을 통해 조기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스스로의 갱생 의지를 제고하는 한편,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가종료자·가출소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심사하여 가종료·가출소를 취소하고, 치료감호·보호감호를 다시 집행하게 함으로써 사회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 추진내용과 성과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의 위탁, 가종료 및 그 취소와 치료감호 종료 여부, 치료감호 기간만료 시 보호관찰 부과 여부에 관한 사항,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가출소 및 그 취소와 집행면제에 관한 사항,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준수사항의 부과 및 지시·감독과 그 위반 시의 제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결정하며, 결정현황은 〈제5장 통계 : 표 5-70, 표 5-71〉과 같다.

치료감호 가종료의 경우 치료경과가 양호하여 약물 또는 통원치료만으로도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재범위험성이 현저히 낮아졌다고 판단될 때 병과된 징역형 등의 형기와 상관없이 가종료를 허가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186명이 가종료되었다.

장기 피치료감호자의 가종료 시 사회보호시설 연계를 확대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위원들의 정신감정결과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심사에 반영토록 하고 있으며, 2018. 12. 18.「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판사·검사·변호사·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외에 보호처분 전문가인 법무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등 심사에 적정을 기하고 있다.

한편, 보호감호 가출소 인원은 2005. 8. 4.「사회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보호감호 수용자의 자연 감소와 잔류 강력사범에 대한 엄격한 심사 등으로 인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2022년에는 7명이 가출소되었다.

3) 평가 및 발전방향

정신질환자는 지속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발가능성이 상존하므로 가종료자 등의 현 상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증상악화 등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아진 경우 가종료를 취소하여 치료감호를 다시 집행하도록 하는 등 가종료자의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회 안전에 기여하였고, 향후 피치료감호자 및 피보호감호자의 인권보호와 사회보호를 위해 재범위험성, 치료경과, 사회복귀가능성 등 실질적 평가를 통한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적정한 운영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4. 정신질환 범죄자 관리 강화

가. 범법 정신질환자 사법적 치료관리 강화

치료처우과 사무관 김형식

1) 추진배경

정신질환자에 의한 연이은 강력사건 발생으로 정신질환범죄자 관리강화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어, 보다 강화된 범법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및 관리 방안이 필요하였다.

2) 추진내용과 성과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정신질환 선별검사를 시행하여 증상의 정도에 따라 치료·입원 등 맞춤형 처우를 실시하였고, 치료명령 대상자의 치료약 복용여부를 감독하기 위한 복약검사를 의무화하였으며, 1회 주사로 1~3개월 치료효과가 지속되는 장기지속형 주사제 적용을 확대하였다.

치료감호 출소자에 대해 최대 20년 동안 국립법무병원과 전국 5개 국·공립 정신병원에서 무상 외래진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립법무병원 간호인력 증원과 대형병실 소규모화(정원 50명 → 10명 이하)사업 완료를 통해 과밀수용을 해소하였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3. 1.까지 병상 수 단계별 조정 (8병상 → 6병상)

3) 향후 추진계획

범법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내 적절한 치료·관리를 위해 경찰, 지방자치단체와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실형을 선고 받은 고위험 정신질환자 등의 원활환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해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에도 사법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는 등 치료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나. 치료명령 제도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 치료처우과 보호사무관 임합격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2016. 12월 개정 「치료감호법」의 시행으로 경미한 강력 범죄를 저지른 주취·정신질환자 등에 대하여 사회 내 치료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치료명령제도가 도입되었다. 더불어 경미한 강력 범죄를 범한 정신질환자에게 검사가 정신과 상담·치료와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 지침」 대검예규 제873호를 제정하여 치료명령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다. 2016년 16명, 2017년 606명, 2018년 572명, 2019년 750명, 2020년 572명, 2021년 453명, 2022년 381명이 치료명령 또는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들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치료 기관을 지정하여 임상치료 및 인지행동 심리치료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 표 2-62 | 치료명령 사건 접수 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집행유예	446	584	473	338	291
선고유예	5	6	0	8	2
기소유예	121	160	99	107	88

2) 추진내용 및 성과

2017. 12월 「치료감호법」을 개정하여 주취·정신질환 이외 재범위험성이 높은 '마약중독'을 치료명령 대상에 추가하였고,(2018. 6월 시행) 대검찰청과 협의를 통하여 「마약류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 지침」을 개정하여 마약류 사범에 대한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도입하는 등 치료명령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으로 구성된 치료명령 협의체 운영을 통하여 실질적 치료의 효과를 높이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치료기관을 확대한 결과 현재는 전국 250개의 치료기관이 지정되었다.

3) 평가 및 발전방향

사회 내 사법적 치료제도의 도입을 통해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사회 내 치료 및 관리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나,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므로 경미한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조기 개입을 보다 확대하여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받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중(重)범죄로의 전이를 차단하는 한편 치료명령의 실효성 제고와 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다. 정신질환 소년원생 치료·관리 강화

소년보호과 사무관 이혁

1) 추진배경

소년원 내 규율위반 사건의 절반 이상이 정신질환 소년에 의해 발생하는 등 수용안전 및 교육운영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체계적 관리체계 마련 필요 하였다.('22년 소년원 징계자 중 정신질환 소년의 비율 54.1%)

2) 추진내용과 성과

전국 11개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에 의무과장 11명, 정신과 전문의 12명,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0명 등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정신질환 소년원생에 대한 진단 및 평가, 심리치료 등 치료적 개입을 강화하였다. 한편, 소년보호기관 인력증원을 위한 노력을 통해 '22. 3. 간호사 인력이 4명 증원되어 전국 소년보호기관에 간호사 2인 이상의 정원(총 28명)을 확보함으로써 보호소년 등의 의료만족도 향상을 도모할 수 있었다.

3) 향후 추진계획

소년보호기관 내 노후화된 의료장비·시설의 현대화를 지속 추진하고, 보다 안전한 의료처우제공을 위해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를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중증 정신질환으로 분류되어 계속 관리가 필요한 소년원생이 퇴원하는 경우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 정신건강서비스 대상자로 편성하여 지속적인 상담·치료관리를 받을 수 있는 사회복귀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이다.

라. 소년원생 정신건강증진 프로세스 시행

소년보호과 사무관 이혁

1) 추진배경

소년원 내 정신질환자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대전 의료재활소년원은 7호 처분자 위주의 운영이 불가피하여, 9호·10호 정신질환소년에 대한 각 소년원별 자체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였다.

2) 추진내용과 성과

모든 소년원 학생을 대상으로 입원 시 정신질환 진단을 위한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치료 및 개입의 필요에 따라 치료군을 4단계로 분류하여 심신건강회복 프로그램, 정신과 상담 등 단계별 맞춤형 처우를 제공하는 '소년원생 정신건강증진 프로세스'를 도입·시범실시한 결과, 정신질환소년 징계율 16.3%p 감소 등 전반적인 수용 안정 측면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따라, 2022년에는 소년원생 정신건강증진 프로세스를 전국 소년원에서 전면 실시하고, 소년의 개인적·환경적 특성에 따른 처우계획을 세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소년원생 개별처우 시스템'과 '정신건강증진 프로세스'를 연계하여 보호소년의 개별처우 단계에서 정신질환 소년원생의 치료적 개입을 확대하였다.

3) 향후 추진계획

7호 처분의 경우 의료·재활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중증 정신질환자 다수가 병원, 요양소가 아닌 소년원에 위탁되어,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치료·교육에 어려움이 있다. 장기적으로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는 소년원에서의 교육보다는 지역사회 복지·의료체계에서의 치료와 관리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공공의료기관 역할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법원 등과의 협의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5. 청소년 비행 예방 강화

가. 청소년 초기비행예방 강화

소년범죄예방팀 사무관 홍성원

1) 추진배경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지역사회 위기·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비행예방전문교육과 인성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 초기비행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최근 청소년 인구감소로 소년 비행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소년범죄의 저연령화 및 재범률 증가 등으로 초기비행소년의 재비행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였다.

2) 추진내용 및 성과

2021년 11월 '상담전문 민간자원 연계를 통한 초기비행예방 강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전국 9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였다. 이후 전국 19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민간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청소년 비행 예방에 관심을 가진 민간자원을 조직화하여 교육생과 멘토링 연계 등을 통해 초기비행소년에 대한 지속적 개입을 실시하였다. 또한,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교육 의뢰된 교육생을 대상으로 개별상담을 실시하여 교육 참여동기를 강화하고, 교육생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비행예방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2022년 10월에는 소년범죄 저연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연령 비행청소년 대상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신규 개발 프로그램의 현장 적용 활성화를 위해 자체 직원 연수를 실시하였다.

| 그림 2-86 | 민간자원 조직화



멘토 간담회



멘토 위촉식

3) 평가 및 발전방향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교육생 특성을 반영한 비행예방교육과정 운영 및 신규 프로그램 개발·직원교수 역량 강화로 비행예방교육의 전문화·내실화를 추진하였다. 앞으로도 초기비행소년 대상 개별면담 강화 및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연계 등 선제적·지속적 개입을 통해 초기비행예방 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나. 소년 보호관찰 지도감독 강화

소년범죄예방팀 사무관 장선영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보호관찰제도는 1989년 7월 1일 소년범을 대상으로 시작된 후 1997년 1월 성인범으로 전면 확대되면서 성인 강력사범 위주로 운영되어 왔으나, 2017년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기획과에 소년범죄예방팀이 신설되면서 소년에 대한 체계적 지도감독을 위한 여건이 성숙되었다. 이후 2022년 8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소년범죄예방팀 직제가 반영되어 소년에 특화된 전문 보호관찰 정책 수립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 표 2-63 | 연도별 소년 보호관찰 등 실시사건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72,967	64,034	62,813	61,583	50,594
보호관찰	31,065	28,062	25,874	23,830	23,291
사회봉사	7,901	6,824	6,318	6,785	5,593
수강명령	21,184	18,054	19,605	21,404	12,184
조사	12,817	11,094	11,015	9,564	9,526

2) 추진내용

재범위험성 기반 체계적 보호관찰 실시를 위해 2016년 9월 「소년대상자 정적 재비행 위험성 평가도구(JDRAI-S : Juvenile Delinquency Risk Assessment Inventory-Static)」를 개발하여 실무에 적용하기 시작하였고, 2018년 2월 「소년 대상자 동적 재비행 위험성 평가도구(JDRAI-D : Juvenile Delinquency Risk Assessment Inventory-Dynamic)」를 개발하였으며, 2021년 6월 「통합 소년 재범위험성 평가도구(JDRAI-Ⅱ : Juvenile Delinquency Risk Assessment

Inventory-Ⅱ)」를 개발하여 처우계획 수립, 프로그램 배치, 제재, 원호 등 보호관찰 지도감독 전반에 활용함으로써 고위험 대상자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보호관찰 청소년의 비행원인에 따른 '문제해결 중심 지도감독'을 실시하기 위해, 2022년 2월 법무연수원에 '소년 상담형 면담 전문 교육'을 신설하고, 2022년 11월 KICS 지도감독(출석면담) 화면을 처우계획 점검 중심으로 개편하여 범죄원인별 맞춤형 처우계획 수립과 이에 대한 점검을 통해 성공적 소년 보호관찰이 이루어지도록 업무 환경을 조성하였다.

이와 더불어, 소년의 체계적 행동개선을 위해서는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충동성 과잉 등 성인과 차별되는 소년의 정신건강 요소 및 반사회적 또래관계에 대한 대응, 취약한 보호환경과 보호자 양육태도에 대한 개선, 학교 적응 및 무직자에 대한 학업 지속 지원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대응으로 2020년부터 정신질환 치료·상담 지원, 콜코칭 상담지원, 조혼·미혼모 대상 생계비 및 양육비 지원, 저소득 대학생 장학금 지원, 소년보호관찰 라포 형성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 2009년부터 시행해 온 검정고시 수강권 지원, 2007년부터 실시해온 교사멘토링 등을 지속 운영하고 있다.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학습권 및 가족의 수면권 등을 보호하고 엄정한 외출제한명령 집행 감독을 위해 기존 '전화를 통한 본인 확인' 방식의 소년 외출제한명령 집행시스템을 '스마트워치 형태의 재택감독' 방식으로 개선하여,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서울권역 5개 보호관찰소에서 시범 운영했으며,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에는 착용 편의성 향상 및 디자인 소형화·경량화, 시스템 성능을 향상 시킨 소년 전자적 외출제한명령 시스템을 신규 개발하여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가해자 처벌 위주의 기존 사법체계를 보완, 피해자 공감 및 관계회복의 회복적 사법 이념을 소년사법체계로 확장하기 위해, 2018년부터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하여, 2019년 '소년보호관찰 회복적 사법 운영 매뉴얼'을 개발하고 강사를 양성하여 12개 보호관찰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2020년에는 '소년수강명령 회복적사법 운영 매뉴얼'을 개발하여 전국 27개 보호관찰소에서 회복적사법 수강명령을 집행하였다. 2021년부터 '소년선도위탁 회복적 사법 패널회의 매뉴얼'을 개발하여 전국 5개 보호관찰소에서 시범 운영하였으며, 2022년 11월 서울보호관찰소에 '마음이음 회복적사법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전국시행 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 표 2-64 |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 현황

(단위 : %)

연 도	2018	2019	2020	2021	2022
재범률	12.3	12.8	13.5	12	12

3) 평가 및 발전방향

재범위험성 기반 소년 맞춤형 처우를 통한 지도감독 강화로 2021년부터 재범률이 감소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2023년에도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에 역량을 집중하고, 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외출제한명령 시스템 신규 개발, 피해자 보호 및 관계 회복 중심의 회복적 사법 이념의 보호관찰 확대, 소년 보호관찰 인프라 확충 등으로 소년범죄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다. 소년비행예방 시행계획 및 소년사법제도 개선 추진

소년범죄예방팀 사무관 박유원

1) 추진배경

법무부는 2017년 9월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등 날로 흉포화·집단화되는 청소년 강력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소년범죄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여론과 실효성 있는 소년범죄 예방대책을 마련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2017년 12월 소년비행예방협의회 신설 등 내용의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예방 대책」을 발표하고, 2018년 6월 「소년비행예방협의회 규정」(대통령훈령 제385호)을 제정하였다.

소년비행예방협의회 규정에 따라 2018년 12월 정책연구, 전문가 자문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향후 5년간 우리나라 청소년 비행예방정책의 청사진을 담은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2019~2023)**을 수립·발표하였고,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수행하고 있다.

*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문체부, 복지부, 여가부, 방통위, 경찰청, 산림청 등

** '청소년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4대 핵심가치(예방·교화·보호·협력) 아래 5대 전략 16개 추진과제 수립

2) 추진내용 및 성과

2022년에는 1월부터 2월까지 2021년 시행계획 추진성과를 분석·평가하고 2022년 시행계획 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하였고, 2022년 제5차 소년비행예방 실무협의회, 소년비행예방협의회를 개최한 후 「2022년 소년비행예방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였다.

2021년 시행계획 추진 결과, 비행예방교육 및 법교육 실적 향상 등 청소년 비행유입 차단 활동 및 기반을 강화하였으며, 보호관찰 청소년 재범률이 1.5%p 감소하고 정신질환 청소년에 대한 치료 및 재활적 개입 기반을 마련하는 등 소년범 재범방지 역량이 증대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지원 강화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22년에는 10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시행계획을 추진하였다. 위기청소년 비행유입 차단을 위해 우범소년 제도개선 및 소년사법 관련 법안 논의 지원을 지속하였고, 초기 비행소년 선도 및 진단 강화를 위해 상담전문 민간자원 연계를 통한 초기 비행예방 강화, 비행예방교육 내실화·전문화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소년범 재범방지 역량, 소년원 교육 및 소년교도소 교정교육 내실화를 통해 재비행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피해자 보호·지원체계 개선, 소년비행예방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였다. 그 외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도 2022년 시행계획을 기반으로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인프라 확충, 학교폭력 등 피해학생에 대한 의견수렴 및 환류체계 구축 등 소년비행예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2022년 6월부터 10월까지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TF」에 참여,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에 일조하였다. 소년범죄 종합대책에 소년 맞춤형 처우 제공을 위한 소년원송치 처분(9호·10호)과 장기 보호관찰 병합, 보호관찰 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다양화의 내용을 담았으며, 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보호처분 집행 정보공유 활성화를 포함하였다. 그리고 사법적 개입과 복지적 보호조치가 조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범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우범소년에 대해 장기 보호관찰 및 소년원송치 등 과도한 보호처분을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민간 연계 강화, 체계적 소년범죄 통계 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해당 내용을 포함한 소년법 개정안(정부)을 마련하여 2022년 12월 28일 국회에 제출하는 등 법·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하였다.

이와 더불어 2022년에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향후 5년간 추진될 「제2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을 2023년 12월까지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준비도 병행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앞으로도 법무부는 소년비행예방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소년범죄 종합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를 지속 추진하여 소년의 건전한 사회정착 및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2023년 2월부터 8월까지 제2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2024~2028)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소년비행예방 정책 환경 및 해외 정책 동향 등 파악·분석, 제2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의 방향, 주요 과제 등을 연구하고, 부처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2023년 12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제2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할 예정이다.

6. 소년재비행방지 역량 강화

가. 소년원생 재비행 예방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

소년보호과 사무관 김인수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소년원은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수용·보호하면서 교과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 의료재활 등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고 안정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고 있다.

1942년 처음 개원할 당시에는 교육보다 수용관리에 중점을 두었으나, 이후 꾸준히 교육기능을 강화하여 제과제빵, 헤어디자인, 한식조리 등 다양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중·고등학교 교과교육 및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인성교육과 의료재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전국 소년원학교의 명칭 및 2022년 소년원 교육과정은 〈표 2-65〉와 같다.

| 표 2-65 | 전국 소년원학교의 명칭 및 2022년 소년원 교육과정

기 관(학교명)	설립일	개교일	대상	교 육 과 정
서울소년원 (고봉중고등학교)	1942. 4. 20.	2000. 8. 30.	9호 10호	• 중·고등학교 교과교육 • 직업능력개발훈련(제과제빵·한식조리·헤어디자인)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부산소년원 (오륜정보산업학교)	1947. 1. 18.	2000. 8. 31.	10호	• 직업능력개발훈련(용접·제과제빵·헤어디자인) • 분류심사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대구소년원 (읍내고등학교)	1945. 11. 21.	2000. 8. 31.	9호 10호	• 고등학교 교과교육 • 직업능력개발훈련(제과제빵·커피바리스타) • 인성강화교육(커피바리스타) • 분류심사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분류심사
광주소년원 (고룡정보산업학교)	1946. 11. 7.	2000. 8. 31.	9호 10호	• 직업능력개발훈련(자동차정비·에너지설비) • 인성강화교육(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 • 분류심사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전주소년원 (송천중고등학교)	1967. 3. 25.	2000. 9. 1.	8호 9호 10호	• 중·고등학교 교과교육, 특별반(드론) • 남성 특수단기(8호 처분자) 교육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대전소년원 (대산학교)	1998. 7. 1.	2002. 3. 4.	7호 9호 10호	• 의료·재활교육(7·9·10호) • 분류심사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기 관(학교명)	설립일	개교일	대상	교 육 과 정
청주소년원 (미평여자학교)	1978. 7. 8.	2009. 7. 1.	8호 9호 10호	• 직업능력개발훈련(헤어디자인·제과제빵) • 인성강화교육(예술분장·커피바리스타) • 여성 특수단기(8호 처분자) 교육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안양소년원 (정심여자중고등학교)	1963. 7. 2.	2000. 8. 30.	9호 10호	• 여성 중·고등학교 교과교육 • 직업능력개발훈련(피부미용·제과제빵)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춘천소년원 (신촌정보통신학교)	1966. 4. 16.	2000. 9. 4.	9호 10호	• 직업능력개발훈련(헤어디자인) • 인성강화교육(그래픽디자인·디저트) • 분류심사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제주소년원 (한길정보통신학교)	1987. 11. 9.	2000. 8. 30.	8호 9호 10호	• 직업능력개발훈련(제과제빵·골프매니지먼트) • 제주지역 남성 특수단기(8호 처분자) 교육 • 분류심사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2) 평가 및 발전방향

2022년에는 소년원생 개별처우 시스템 개편을 통해 소년원 입원부터 출원까지의 과정에서 가정결손 분석, 정신질환자 선별, 개별처우 계획 수립 및 사회정착 지도 연계를 통해 개인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처우를 제공으로 소년원생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또한, 소년원학교 재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부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교육부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3 ~ '27년)」에 소년원학교 입원 초기부터 학생 수준을 파악하고 수요에 따라 직업·교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단(교과 및 학습 준비도) 및 보정자료 지원 내용을 포함하게 하는 등 소년원 학교 학생의 차별없는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와 같이 소년원 교정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정책을 통해 향후 소년원생 재범률 감소, 기초학력 증진 등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나. 소년원생 수용환경 개선 등 인권처우 확대

소년보호과 사무관 김인수

1) 추진배경 및 추진내용

소년원생들의 조화로운 성장을 유도하는 인권적 처우환경 조성을 위해 국제인권기준(수용소년의 인권보호와 개별처우를 위해 1인실 사용 권장)에 따라 10 ~ 15인 규모의 대형 집단생활실을 4인 이하 소규모 생활실로 전환하는 '소년원 시설 현대화 사업'을 2013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여

생활실 내 화장실·세면실 설치, 개인별 침대·책상 제공 등 수용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22년까지 전국 8개 소년원(대구·광주·춘천·청주·전주·대전·안양·부산)의 시설 현대화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서울소년원 생활관 리모델링을 위한 공사와 춘천소년원 교육관 및 부대시설 재건축 공사를 시작하여 '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그림 2-87 | 소년원 시설 현대화 사업


집단 생활실


4인 이하 소규모실


개방형 Hall식 생활관

이와 더불어 소년분류심사원 시설 확충을 위해 법원 위탁 수요가 많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여성 전용 소년분류심사원, 경기북부소년분류심사원 등의 시설확충을 위해 설계 착수와 부지확보를 위한 노력을 추진 중에 있다.

| 그림 2-88 | 생활실 리모델링







2) 평가 및 발전방향

소년원 시설 현대화 사업과 함께 집단 생활실을 4인 이하의 소규모 생활실로 전환하여 인권보호와 개별처우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소년원생의 정서적 안정과 비행학습 방지에 기여하였다. 이후에도 시설 리모델링이 미완료된 기관의 생활실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 비행 초기단계 위탁소년 비행원인진단 및 교육 강화

소년보호과 사무관 장수용

1) 추진배경 및 추진내용

최근 20년 간 누범 청소년 비율이 크게 증가하여 비행 초기단계 청소년의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였다. 비행 초기단계인 위탁소년 전담 시설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이 전국에서 유일하며, 소년분류심사원 미설치 지역의 위탁소년 교육은 해당 지역 소년원에서 대행함에 따라 위탁소년 진단과 교육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22년에는 위기개입 중심의 위탁소년 교육프로그램을 마련, 피해자 공감과 책임 있는 도덕적 인성 함양 등 초기비행단계 소년에게 적합한 교육의 개념과 목표를 설정하고, 환경적·개인적 위기를 진단·개입함으로써 재범방지 및 건전한 성장과 발달 도모하였다. 또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를 개발하여 위탁·유치소년을 대상으로 재범에 유의미한 통계적 예측력을 갖는 범죄경력, 반사회적태도, 반사회적 성격/지능, 가정/환경, 학교/친구 위주로 진단체계를 재구성하는 비행원인진단체계를 개발하여 향후 분류심사 의사결정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과학적 비행원인진단과 전문적 인성교육 환경 조성, 위탁소년 전담 시설 확충을 통하여 비행 초기단계인 위탁소년에 대한 조기개입 강화 기반을 마련하였다. 앞으로도 위탁소년의 재비행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성장을 돕기 위하여 교육과 분류심사, 생활지도의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7.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법교육 전개

보호정책과 사무관 이춘희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국민의 법의식 개선과 불필요한 법적 분쟁 예방, 학교폭력 등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하여 체계적인 법교육을 실시하였다. 중점 사항은 법무부 내부 위원 및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법교육위원회의 회의 개최, 청소년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수요자별 맞춤형

법교재 개발, 법교육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 지역 법교육 인프라 확산을 위한 법교육 관련 유관단체 협력 및 민간 법교육 지원, 법체험 기관 '솔로몬로파크(대전, 부산, 광주)' 운영 및 전주솔로몬로파크 신설 추진 등이다.

나. 추진성과

1) 법교육 체계 구축

2005. 3월 법조계·학계·교육계·언론계 등 사회 각계 전문가 14인으로 구성된 법교육 연구위원회를 발족하여 법교육 6대 연구과제를 선정한 후 2006년까지 총 7차례 회의를 개최하였다.

2006. 7월 17인으로 구성된 법교육 자문위원단을 구성·운영하여 민·관 협력방안 등 법교육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얻었다.

2008. 6월「법교육지원법」시행 및 법교육위원회 구성을 통해 법교육 연구 및 추진 체계 구성을 마무리하였으며, 2009. 1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법교육위원회를 총 26차례 개최하여 법교육 프로그램 개선사항 및 발전방향에 대해 심의하였다.

| 표 2-66 | 법교육 6대 연구과제

법교육 6대 연구과제	① 국내·외 법교육 실태 점검 및 법교육 추진방향 ② 법교육 관련 교육과정·교과서 분석 ③ 법교육 프로그램 및 학습교재 개발방안 ④ 교사 등 법교육 관련자 전문성 강화 지원방안 ⑤ 법조계, 법과대학 등 법교육 지원방안 ⑥ 평생교육, 시민교육으로서의 법교육 연계 방안

2) 수요자별 맞춤형 법교재 개발

2005. 9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일상생활과 법, 법의 기본원리와 가치, 경제생활과 소비자, 범죄와 형사절차, 직장 생활과 근로자, 가정생활과 가족, 국가와 국민 생활의 영역 등으로 구성된 '청소년의 법과 생활'을 시작으로, 2005. 12월 대학생 및 시민 대상 '한국인의 법과 생활', 2006. 1월 법교육 프로그램 강사·교사용 지도서 '법은 내 친구', 2006. 4월 어린이용 법교육 교재인 '나는야 법짱'을 발간하였으며, 이후 대상을 확대하여 2012. 3월에 다문화가정 대상 'Fun Fun 대한민국의 법'과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 '우리법 바로알기', 2018년에는 일반 시민 대상 '클릭, 안전한 사이버 세상으로(LAW)'를 발간·배포 하였고, 2019년에는 청각·시각 장애인을 위해 '쉽게 쓴 한국인의 법과 생활'을 수어영상도서로 개발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DREAM)에서 지원하고 있다.

2020. 4월에는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N번방 사건' 직후 청소년들이 디지털 공간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피해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디지털 법교육 교재 '디지털 소통로(Law) 및 전자책자(e-book)를 제작하여 무료 배포하였고, 2021년에는 사례 중심으로 구성된 개정판 '디지털 소통로(Law)Ⅱ'를 발간하였다. 2022. 10월에는 여러 아동학대 사례를 알리기 위한 아동학대신고의무자용 안내책자 '아동행복지금바로(Law)'를 제작하였다.

| 표 2-67 | 대상별 법교육 교재

대 상	도서명(발간일)
중·고교생	청소년의 법과 생활('05.12./'07.2./'08.1./'10.3./'11.3./'13.3./'14.2./'16.3./'18.10./'19.10.),만화로 보는 우리나라 헌법의 역사('09.7.), 헌법재판소 판례로 사회 교과서 200% 활용하기('10.2.), 학교폭력 예방 소책자('12.6.), 알고보니 든든한 축구비법('12.10.), 장난과 범죄사이('13.), 디지털 소통로 중·고등용('20.), 디지털소통로Ⅱ('21.10.)
대학생·시민	한국인의 법과 생활('05.12./'07.2./'08.2./'09.2./'10.2./'11.3./'13.3./'15.9./'17.9./'18.10,/'19.2./'21.8.), 불경기를 이겨내는 생활법률('09.2.), 아뿔싸! 알면서도 속는 사이버범죄('09.4.), 알면 힘이 되는 알짜배기 생활법률('10.6.), 축구 잘하는 법(法)('11.12.), 학교폭력 예방 소책자('12.6.), 어르신을 위한 알면 알수록 좋은 법('12.8.), 희망을 만드는 법('13.9.), 보배야 행복해지는 법을 알려줘(점자 및 음성도서)('13.9.), 클릭, 안전한 사이버 세상으로(LAW)('18.10), 쉽게 쓴 한국인의 법과 생활('19.12./'21.6.), 아동행복지금바로('22. 10.)
법교육 강사·교사	Law Educator Ⅰ·Ⅱ, 법은 내 친구('06.1.), 학교폭력예방 가이드북('08.3.), 학생자치법정 가이드북('08.5.), 학교폭력 OUT('09.12.), 법사랑 사이버랜드를 활용한 수업지도안('12.11.),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강의안('12.6.), 강력범죄 예방 강의안('13.3.) 및 가해방지 강의안('13.10.), (헌)법교육 종합 콘텐츠 DVD('13.10.), 쉽게 가르치는 우리헌법(중·고 사회용)('15.12.), 아동학대 예방 법교육 교재 및 리플릿('16.9.)
어린이	나는야 법짱(06.4.), 손오공 무법소탕기Ⅰ·Ⅱ('06.9.) 및 Ⅲ('11.6.), 함께하는 법이야기('07.11.), 법에게 물어봐('08.4.), 만화로 배우는 우리나라 헌법('09.1.), 학교폭력 예방 소책자('12.6.), 홍비홍시와 함께하는 소중한 나와 우리('12.11.), 우리 공주의 나를 사랑하는 법('13.3.), 헌법아! 놀자Ⅰ·Ⅱ('13.9.), 손오공 무법소탕기 Ⅳ('13.11.), 나는야! 법짱('13.12.), 내친구 LAWⅠ·Ⅱ('15.2.), 조선은 법치국가다('15.5.), 우리 모두가 주인이에요 및 일곱 난쟁이 집에도 규칙이 필요해('15.12.), 우리곁엔 헌법('16.7.), 생각이 자라나는 솔로몬의 학생법정('16.8), 교과서 속 법이야기('17.11.), 어린이로스쿨('19.5.), 디지털소통로 초·중등용('20.4.), 이야기로(Law) 아이가 행복해지는 법①·②('21.9.)
다문화·북한이탈 청소년	Fun Fun 대한민국의 법('12.3.), 우리법 바로알기('12.6.), 우리가 만드는 행복한 법세상 및 다문화 사회 청소년의 법과 생활('15.6.), 대한민국으로 온 청소년을 위한 우리법 이야기 초·중급('16.7.) 이민자 생활법률강연 소책자('20.6.)
장애인	'쉽게 쓴 한국인의 법과 생활' 수어영상도서('19.12.)

3)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005년 직무연수를 통해 학교현장에서 법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법 관련 전문성을 함양한 것을 시작으로, 2005년 '모의재판 경연대회', 2006년 '북한이탈 청소년 법교육', '법교육 출장강연', '학생자치법정', 2009년 '우리헌법 만들기 공모전', 2010년 '중학생 생활법 퀴즈대회', 2011년 스포츠 법교육, 2014년 '헌법토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일상생활 속 법교육 확대를 위해 2007년 '시민법률콘서트', 2013년 '시민로스쿨' 및 2013년 '법사랑학교', 2015. 12월부터 '유아법교육'을 실시하였고, 2016. 11월부터 '찾아가는 로파크' 버스를 도입해 법적 인프라가

부족한 도서산간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법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8년에는 독서 활동을 결합한 유아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법교육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2019년에는 블라인드 변호인 제도, 참관인 제도 등 학생인권의식 향상을 강화한 학생자치법교육 운영매뉴얼 4.0 개발·보급을 통해 인권친화적 학생자치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2019년에는 그동안 실시해 왔던 각종 경연대회(생활법퀴즈, 모의재판, 헌법토론 등)가 과도한 경쟁으로 법교육의 본래 취지를 훼손한다는 우려에 따라, 대회형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중·고교생 법체험 캠프로 개편하였고, 2020년에는 법체험 캠프를 확장하여 법과 인권 체험 청소년 동아리를 지원하는 '꿈꾸는 디케 프로젝트'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관리, 출장강연형 프로그램 운영 등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민간 법교육 활성화를 도모했고, 국민들이 법교육 콘텐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 특성에 맞는 생애주기별 법교육 프로그램을 편재했다.

2022년에는 청소년의 초기 비행 예방·관리를 위해 학교밖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 대상 법교육을 강화하였고, 청소년지도자(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를 위한 법교육 직무연수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4) 법교육 유관단체 협력 및 민간 법교육 지원

2006. 3월 법교육 수업모형 개발 등 청소년 법교육 사업 공동추진을 위해 서울대학교(사범대학)와 체결한 MOU를 시작으로, 서울시립대, 2007년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 여성 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이화여자대학교, 2009년 초등 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서울교육대학교, 준법풍토 조성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및 동아일보와 공동으로 MOU를 추진하였다.

또한 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국 14개 법학전문대학원과 MOU를 체결하고, 부산 솔로몬로파크 건립 및 지역 법교육 인프라 확산을 위해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교육청과 MOU를 체결하였다.

| 표 2-68 | 연도별 MOU체결 현황

연 도	MOU체결 대상
2006년	서울대학교 사범대, 서울시립대학교(법정대학)
2007년	교육인적자원부, 이화여자대학교
2009년	서울교육대학교, 대한변호사협회·동아일보, 법학전문대학원 6개교 (고려대, 부산대, 전북대, 경희대, 전남대, 성관관대)
2010년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문화체육관광부, 법학전문대학원 3개교(이화여대, 중앙대, 연세대)
2011년	법학전문대학원 3개교(제주대, 경북대, 한양대)
2012년	법학전문대학원 2개교(충남대, 동아대)
2016년	한국프로농구연맹(KBL), 한국야구위원회(KBO)

그 밖에 민간의 법교육 연구활동을 위해 약 30여명으로 구성된 '법교육학회' 창립을 지원하였고, 법교육의 확산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국민재단' 부설 '한국법교육센터'의 설립을 지원하였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법무부는 「법교육지원법」 제5조에 따라 역량있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을 법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10년부터 한국법교육센터, 청소년 희망재단, YES21청소년재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 충남대학교 법률센터, 법무법인 청파 등 민간기관 17개를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하였다.

5) 법 체험기관 '솔로몬로파크' 운영

2007년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쉽고 재미있게 법과 질서의 소중함을 체득할 수 있도록 대전솔로몬로파크(법연수관, 법체험관)를 설립하였다.

2019년에는 노후화된 법체험관 전시 시설물 개선 및 후생관 리모델링 등을 통해 체험객의 만족도가 향상되었고, 2022년에는 법연수관 내 '해돌이 방송국'의 방송 설비 확장을 통한 '실시간 온라인 법교육'으로 코로나19 상황에도 대국민 법교육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법연수관에서는 어린이 법탐험캠프, 중학생 법사랑캠프 등 체험형 법교육 프로그램과 청소년,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법연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법체험관은 법역사관, 모의국회, 모의법정, 어린이 법짱마을 등으로 구성되어 생생한 법률 현장 체험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2016년에는 증가하는 법체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부산솔로몬로파크를 건립하였고, 부산솔로몬로파크는 대전솔로몬로파크와 차별화하여 헌법배움터, 선거체험관, 법놀이터 등으로 구성된 법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충청권(대전로파크), 영남권(부산로파크)과의 지역적 균형을 확보하고 호남권 법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광주솔로몬로파크를 2020년 착공 및 2022년 준공 후 2023. 3월에 개관예정이며, 전주솔로몬로파크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

| 그림 2-89 | 대전·부산·광주 솔로몬로파크 전경



대전솔로몬로파크



부산솔로몬로파크



광주솔로몬로파크

다. 평가 및 발전방향

2022년에 법교육 정책 방향 설정과 주요 사업 심의를 위해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교육위원회 정기회의를 2차례 개최했고, 주식회사 프리하라, 법무법인 청파 등 2개의 법문화진흥센터를 발굴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를 확대하였다.

또한 법교육 대상을 학교밖·가정밖 청소년, 이주배경청소년 등 법적 보호가 더욱 필요한 계층으로 확대하고, 운영 중에 있는 탈북청소년, 이민자,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 방과후 시설을 위한 맞춤형 법교육을 강화하였으며, 시민법교육, 학생자치법교육 등을 사회 변화에 맞춰 개편하였다.

2023년에는 청소년의 법적 사고력 및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체험·활동형 콘텐츠 개발에 힘쓰고, CPTED(범죄예방환경개선)·마약예방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주제에 대한 법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할 예정이며 대안교육 위탁기관 대상 법교육을 새로 시작하는 등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법교육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법체험 테마파크인 솔로몬로파크가 다양한 계층의 시민에게 풍성한 법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관별로 특색있는 체험시설을 조성하고, 내실있는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8.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법질서 실천운동

보호정책과 사무관 김영남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일상생활 속에서의 범죄가 증가하고 아동,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범죄피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증대되었다. 범죄는 개인의 재산이나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삶의 질 저하는 물론 막대한 유·무형의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이에 범죄취약지역의 범죄예방시설 확충을 통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일상생활에서 빈발하는 기초 법질서 위반 사례를 찾아서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의 범죄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생활 속에서 법질서를 체감하게 할 수 있는 실천운동을 추진하게 되었다.

2014년을 기점으로 그동안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오던 활동들을 심화,

확대한 '법질서 실천운동'을 전개하였다. 2014년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만들기'를 목표로 '기초 법질서 지키기', '안전법규 준수',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등 3개 분야를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 전국 지역공모를 거쳐 모두 33개 지역에서 특성에 맞는 법질서 실천운동을 추진하였다.

또한 청년·대학생 법질서 실천운동의 전형을 만들고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저스티스 서포터스'를 조직하여 법질서 준수 캠페인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지난 2008년 이후 2022년까지 약 3천명 이상의 청년·대학생이 '저스티스 서포터스'의 이름으로 활동하였다.

법질서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전개하고 있는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은 2014년 14개 지역, 2015년 11개 지역에서 민간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였다. 2016년에는 사업 규모 확장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유사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과 행정안전부의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과의 협업으로 진행하였다. 2017년에는 법무부의 색채를 가미한 범죄예방 환경개선(법사랑타운)을 시작하였다. 범죄예방 환경개선과 더불어 주민공동체 교육을 지속적으로 병행하는 '법사랑타운' 사업을 경기 안성과 전남 광양에 시범 실시하는 등 모두 12개 지역의 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하였다. 2018년에는 경기 광명 등 3개소 '법사랑타운'과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지역 경기 남양주 등 5개소와 행정안전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 선정지역 광주 남구 등 5개소 등 모두 13개소를 선정하여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과 주민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였다.

2019년에는 국토교통부(도시재생 뉴딜사업) 협력지 경기 용인 등 7개소, 해양수산부(어촌뉴딜사업 300) 협력지 경남 남해군 등 3개소, 2020년에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협력지 부산 진구 등 7개소, 해양수산부(어촌뉴딜300) 협력지 전남 완도 등 3개소에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과 주민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였다. 2021년에는 국토교통부(도시재생 뉴딜사업) 협력지 경기 용인시 등 3개소, 해양수산부(어촌뉴딜사업 300) 협력지 강원 삼척시 등 2개소에 지방자치단체 협력지 경기 안산시 등 2개소를 더한 총 7개소를 선정하여 중·장기 범죄예방 계획 및 기초설계안 등을 제공하고 주민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였다.

2022년에는 국토교통부(도시재생뉴딜사업) 협력지 경북 울진군 등 3개소, 해양수산부(어촌뉴딜사업 300) 협력지 거제시 유교항 등 2개소, 지방자치단체 협력지 인천시 남동구 등 3개소를 더한 총 7개소를 선정하여 범죄예방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였고, 위기청소년을 위한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시범 추진하여 부산 등 3곳의 청소년시설에 비상벨·잠금장치 등 설치, 시설 관리자를 위한 긴급상황 대처 물품(호신용 경보기 등) 제공하였으며, 위기청소년들에게는 범죄예방키트를 지원하였다.

나. 추진성과

1)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위한 '법질서 실천운동'

2022년에는 공익적 가치를 중시하는 대학생 및 청년으로 구성된 저스티스 서포터스 40개 팀, 185명이 실생활과 밀접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캠페인 및 홍보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아동학대·스토킹·사이버범죄·성범죄·학교폭력 예방 및 마약 퇴치 및 근절 등의 주제로 393회의 현장 활동을 실시하였고 영상, 웹툰, 카드뉴스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활동 1,167회를 실시하였다.

또한,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의 경우 2022년에 경북 울진군, 인천시 남동구 등 7곳에 보행로 정비를 비롯하여 고보 조명 설치, 쉼터 정비 및 비상벨 설치 등 주거지 안전강화 및 방범시설물 확충 등의 범죄예방 컨설팅을 제공하여 범죄 불안감 감소 및 범죄예방에 기여하였다.

| 그림 2-90 | 법질서 실천운동 및 범죄예방 환경개선



법질서 캠페인





범죄예방 환경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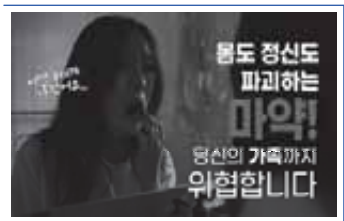
2) 생활 속의 범죄예방 인식 개선 활동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며 일반사회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사회적 우려에 대응, 마약 범죄예방을 위한 공익광고(제목: 몸도 정신도 파괴하는 마약, 당신의 가족까지 위협합니다)를 제작하여 유튜브·지하철·버스·공항전광판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진행하였다. 또한, '21. 10. 21.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스토킹으로 인한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 스토킹범죄 예방 공익광고를 제작하여 유튜브를 활용한 광고를 실시(누적조회수:161만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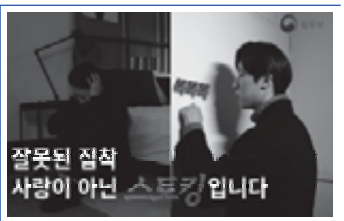
| 표 2-69 | 연도별 홍보 현황

연 도	홍보 내용
2012년	공익광고('언어순화', '강력범죄예방-돌려주세요', '학교폭력예방-거품편') 제작 TV·라디오·지하철·영화관 등에 홍보, BGF리테일(구, 훼미리마트)과 연계하여 전국 7,000여 CU점포 계산대 및 수도권 지역 대형모니터 1,060개에 공익광고를 무료 송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송인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부활 김태원 작사·작곡)' 제작, EBS '폭력 없는 학교-법질서선진화과편' 방송('12.7.)
2013년	4대악 근절을 주제로 TV, 라디오 공익광고, 다큐멘터리 각 1편을 제작하여, KBS, MBC, YTN, MBN, 서울·경기 전광판, 영화관 등에 홍보('13. 9. ~ 12.), 문화체육관광부 등 7개 부처와 협력하여 4대악 근절 공익광고 2편을 제작, KBS를 통해 송출('13. 9. ~ 12.), '폭력예방 포스터'를 제작하여 교육부, 전국 초·중·고등학교, 지자체, 민간단체 등에 총 2만 부를 배포
2014년	SBS TV, 채널A, YTN, MBN, TV조선 등에 법질서 실천운동 공익광고 '행복 비법' 편을 방영, '법질서 실천송'(카라)을 제작·배포, 법질서 실천운동 로고와 슬로건 '법질서 실천, 나부터 릴레이' 포스터를 제작하여 유관기관 및 각 지자체, 민간기업 등에 총 1만부를 배포
2015년	KBS 특집다큐 '당신의 집은 안전합니까?'와 KTV '100년의 행복, 희망 대한민국'이 방송, 채널A, YTN 등 TV·라디오에 '배려, 법질서 실천운동' 확산을 위한 공익광고가 총 332회 송출, '법의 날', '호국의 달', '광복절' 등 기념일을 주제로 한 교육 동영상을 제작하여 법사랑사이버랜드, 유튜브 등에 게시, LGU+ 승강기 광고보드와 미디어라이프 광고보드(3,287대, 콘텐츠 당 300여 회)에 송출, SNS 홍보를 위한 페이스북 페이지 '나부터릴레이' 개설('15.8.)
2016년	페이스북에 법사랑서포터스가 제작한 '법무정책 카드뉴스' 및 '삼국지 웹툰' 등 300여개 콘텐츠 게시
2017년	우리사회 나눔 문화 정착과 불우 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재능나눔 프로젝트'를 집중 홍보(페이스북에 재능나눔을 주제로 웹툰과 카드뉴스 제작·배포, 팟캐스트와 'SBS 이숙영의 파워FM'에 음성 광고 실시, 스포츠동아, 매일경제에 우리사회 재능 나눔 문화 정착을 위한 기고, 연합뉴스TV, 채널A에 공익광고를 송출)
2018년	범죄예방 및 기초법질서 준수 포스터 제작('나 이런 사람이야!', '관심이 곧 예방')하여 지하철 스크린도어·객차 및 고속버스터미널 전광판 등에 게시, 범죄예방 환경개선 및 명예보호관찰관 등을 소개하는 라디오광고를 제작·송출('MBC 굿모닝 FM김재동',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2019년	범죄예방 및 기초법질서 준수 포스터를 제작('당신은 부끄러운 어른이 아닌가요?' 등)하여 수도권 1 ~ 4호선 지하철 출입문, 수서역 수서평택고속선 옥외매체, 서포터스 활동, 사이버랜드 등 다양한 캠페인 콘텐츠로 활용
2020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공익광고(디지털 성범죄의 공범이 되지 마세요)를 제작하여 수도권 지하철 2호선 행선안내기(승강장, 대합실) 및 유튜브, 전국 약 115개 전광판 국가광고 송출
2021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예방 '을 주제로 5개월간 매월 영상컨텐츠를 제작하여 유튜브 광고, 아동학대 예방 동영상을 버스 내부, 고속버스터미널 전광판, 유트브 채널(누적조회수 127만회)에 게시
2022년	마약범죄 예방을 주제로 유튜브·버스·지하철·전광판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동시다발적 홍보 및 스토킹범죄 예방을 주제로 유튜브 홍보(누적조회수:161만회) 실시

| 그림 2-91 | 2022년 홍보







마약범죄 예방 홍보 | 스토킹범죄 예방 홍보

다. 평가 및 발전방향

2022년 법질서 실천운동은 아동학대·스토킹·사이버범죄·성범죄·학교폭력 예방 및 마약 퇴치 및 근절 등의 다양한 주제로 운영되었다. 카드뉴스, 웹툰, 동영상, SNS 등 온라인 활동과 활발한 오프라인 캠페인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법질서 실천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법무부는 타부처 및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였다.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협력지와 해양수산부의 어촌뉴딜사업 협력지 및 지방자체단체 협력지를 대상지로 선정하여 해당 지역에 범죄예방 컨설팅 등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여, 국민의 범죄 불안감 해소에 기여하였다.

2022년 법질서홍보는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마약범죄 및 스토킹범죄 예방을 홍보주제로 선정하였고, 유튜브·지하철·버스·전광판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동시다발적 홍보를 통해 마약범죄 및 스토킹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

향후에도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선정하여 법질서 실천운동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홍보 관련 전문기관과 협업하고, 국민들이 자주 접하는 홍보매체를 선정하여 홍보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9. 출소자 사회복귀 역량강화를 위한 갱생보호사업의 추진

보호정책과 사무관 이태윤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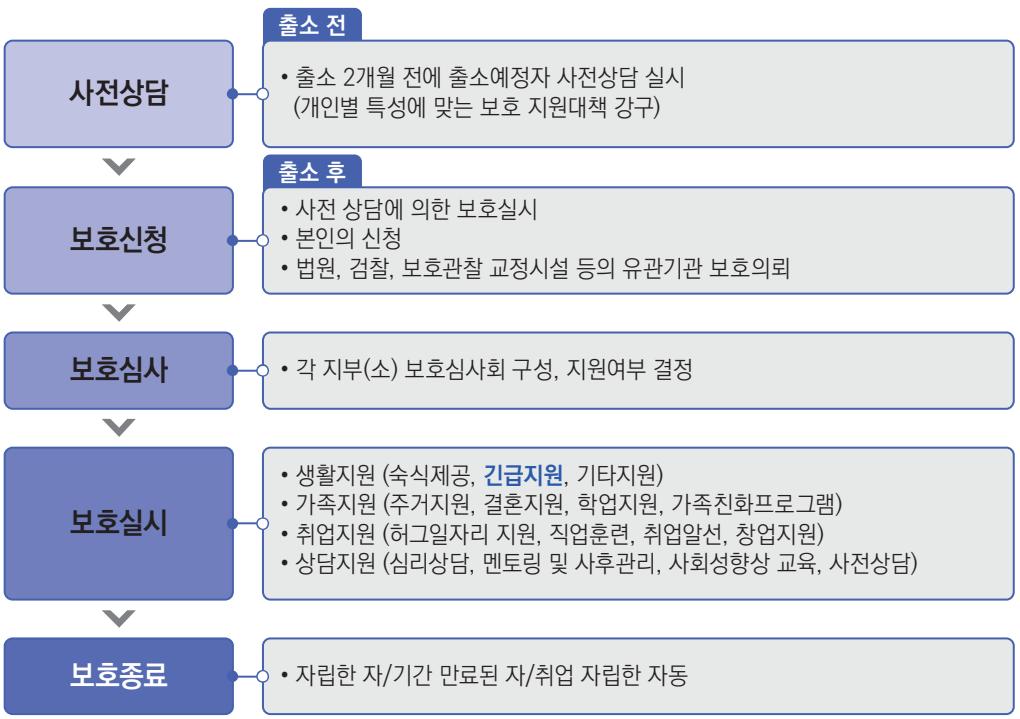
법무부는 산하기관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통하여 2006년부터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지원센터와 연계한 「출소자 취업희망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그 결과로 2010년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출소자의 취업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1 ~ 2014년까지 고용노동부의 「출소자 취업성공패키지」 위탁사업을 통해 총 16,071명의 출소자를 참여시켜 취업역량을 강화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15년부터는 55억여 원의 국고를 지원받아 고용노동부 위탁사업이 아닌 법무부 직접사업으로 출소자 특화 취업지원사업인 「허그(HUG) 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2022년까지 출소자 48,862명을 참여시켜 취업역량을 강화시켰다.

가정 해체 위기에 처해 있는 출소자의 가족관계 회복과 출소자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2014년 경기도 오산시에 건립된 법무보호교육원 가족희망센터에 전문 상담인력을 배치하여 가족상담, 가족캠프, 가족교육, 문화체험 등 다양한 가족친화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2020년부터 프로그램 운영 주체를 전국 지부(소) 단위로 확대하였고, 2022년까지 갱생보호대상자 77,963명에게 131,611건의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를 진행하였으며, 갱생보호대상자 가족 2,231명에게 241회에 걸쳐 가족친화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또한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민 참여를 높이고자 2006년부터 정계, 학계, 자원봉사자, 유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허그(HUG) 후원의 날'[1]을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행사의 취지를 더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행사 명칭을 '법무보호복지의 날 기념식'으로 변경했다. 전국 각 지역별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인사를 추천받아 법무보호위원으로 위촉하고, 취업지원, 재정지원, 주거지원, 종교, 사전상담, 여성, 대학생 등 기능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국 지부(소)에서 활동하고 있다.

| 그림 2-92 | 법무보호사업 신청 절차



1) 허그(HUG) 후원의 날 : 갱생보호사업 유공 자원봉사자 노고를 치하하고 출소자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후원행사

나. 추진성과

1) 출소자 취업 역량 강화 및 사회복귀 조기 정착을 위한 일자리 지원

코로나19 장기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비대면 취업지원서비스(서면상담 등) 도입하여 교정기관 및 소년원과의 협력을 통해 출소(퇴원)예정자 대상 서면상담을 실시하였고, 비대면 취업박람회를 통해 구직자에게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실시간 취업연계를 강화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법무부 '소년범죄 종합대책' 과 관련하여 성인범 중심의 취업지원을 소년범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소년원 및 보호관찰소 직원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소년범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적극 지원하였다. 출소자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출소자 7,729명(전년 동기 대비 710명 증가)이 취업지원사업에 참여하였고, 2,643명이 수료(4,044명 진행 중), 이 중 2,205명(83.4%, 전년 동기 대비 173명 증가)이 취업에 성공하여 자립하였다.

| 표 2-70 | 허그일자리지원사업 실적

참여연도	참여인원(명)	수료인원(명)	수료자 취업현황	
			취업 인원(명)	취업률(%)
2017	5,655	5,241	3,021	57.6
2018	5,726	4,915	2,630	53.5
2019	6,117	4,904	3,144	64.1
2020	6,605	5,037	3,354	66.6
2021	7,019	5,211	3,548	68.1
2022	7,729	2,643	2,205	83.4
계	38,851	27,951	17,902	64.0

| 그림 2-93 | 출소자 취업역량 강화 노력



비대면 취업박람회 개최



취업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출소자의 안정적 취업처 확보를 위해 2008. 6월 전국취업위원연합회를 구성하여 1기업 1출소자 고용운동을 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고용협력기업의 지속적인 발굴 및 정례화를 통해 1,472개 업체에 출소자 3,358명이 채용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특히, 2009년부터 2022년까지 67개의 '출소자 고용 우수기업체'를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출입국 전용 심사대 이용, '신용보증기금'에서 기업대출시 보증한도비율 10% 상향 및 보증보험료 0.2% 할인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출소자 고용에 대한 기업체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2022. 4월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입찰에 대한 물품 적격심사 시 신인도 항목에서 법무보호대상자 고용 우수기업에게 가점 1.0점이 부여 되는 신규 우대제도를 도입하였다.

| 그림 2-94 | 일자리 기반 활성화 노력



제63호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식

공단은 2011년부터 용접 등 취업이 용이하고 지역산업에 부족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기술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울산(용접), 전주(영농), 창원(조선비계, 용접 / 기계가공), 서울동부(미용, 제과제빵 등), 충남 홍성(자동차정비), 경북 예천(전기) 등에 위치한 7개 기술교육원은 출소자 등 갱생보호대상자를 전문 기능인으로 양성하여 안정된 일자리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20. 1월부터 고용노동부 「고용촉진장려금 관련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공단 기술교육원 직업훈련이 포함됨에 따라 기술교육원 직업훈련 수료자를 채용하는 기업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표 2-71 | 기술교육원 운영실적

(기준 : 2011. ~ 2022.)

구 분	입교(명)	수 료		취 업		비 고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서울동부	624	474	75.9	132	27.8	
인천	1,056	884	83.7	433	48.9	
충남	515	479	93.0	157	32.7	
경북	255	197	77.2	28	14.2	
울산	1,164	898	77.1	425	47.3	
경남	673	515	76.5	109	21.1	
전북	615	504	81.9	128	25.3	
계	4,902	3,951	80.5	1,412	35.7	

공단 창업지원은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금이 없어 창업에 곤란함을 겪는 출소자에게 서민금융진흥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1인당 5,000만원까지 임차 보증금을 최대 6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출소자 208명에게 81억 4,755만원을 지원, 출소자 자립 지원에 도움을 주고 있다.

2) 출소자 가족지원 사업 강화

가족지원사업은 2022년 한 해 주거지원 154호, 심리상담 14,923건, 수형자 가족지원 943명 지원 등 갱생보호대상자 및 그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2006년부터 국토교통부와 연계하여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출소자에게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을 실시하여, 2022년까지 총 2,688호의 임대주택을 지원, 3,645가구의 출소자 가족이 주거지원 혜택을 받았다.

출소자 및 가족들의 심리적 문제 진단·치료, 대인관계 개선 및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해 2012년부터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 26명을 각 지부,지소에 배치하여 2022년까지 77,963명에게 136,611건의 전문 심리상담과 심리검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2019년부터 법무부와 공단은 수형자 가족 및 미성년 자녀 보호를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2022년까지 학업지원 1,381건, 주거지원 39가구, 심리상담 1,067건, 긴급지원 1,052건, 접견지원 1,198건, 장학금 지원 80건 등 활발한 지원을 통해 수형자 가족해체 및 자녀의 범죄 대물림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표 2-72 | 주거지원사업 관리주택현황

(기준 : 2006. ~ 2022.)

연번	기 관 명	관할지역	관리주택(호)
1	서 울 지 부	서울 서남부지역	202
2	서 울 동 부 지 부	서울 동부지역	46
3	인 천 지 부	인천, 부천	287
4	경 기 지 부	수원, 경기 남부(경기남부 관할 제외)	307
5	경 기 남 부 지 부	경기 남부(오산, 평택, 화성, 안성)	87
6	경 기 북 부 지 부	경기 북부	191
7	강 원 지 부	강원 서부지역(원주, 춘천 등)	99
8	강 원 동 부 지 부	강원 동부지역(강릉, 동해, 삼척 등)	7
9	대 전 지 부	대전	181
10	충 남 지 부	충남 전지역	39
11	충 북 지 부	충북 전지역	86
12	대 구 지 부	대구, 경주, 포항	226
13	경 북 지 부	경북 전지역(경주, 포항제외)	29
14	부 산 지 부	부산	147
15	울 산 지 부	울산	125
16	경 남 지 부	경남 전지역(부산·울산 제외)	150
17	광 주 전 남 지 부	광주·전남 전 지역	191
18	전 북 지 부	전북 전지역	116
19	제 주 지 부	제주	40
20	서 울 북 부 지 소	서울 북부지역	132
합계			2,688

| 그림 2-95 | 출소자 가족지원 사업 활동



주거지원대상자 가정방문 및 명절 위문 실시



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3) 지원 인프라 확대 및 홍보 강화

2022년 11월, 공단 본부 대회의실에서 「2022 법무보호복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여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화합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 표 2-73 | 법무보호복지의 날 추진경과

일 시	장 소	내 용	참석인원
2006. 10. 26.	전국거점도시	• 발대식, 헌혈운동, 가두캠페인	2,800여명
2007. 06. 14.	라비돌리조트	• 전진대회, 노란리본, 가두캠페인	3,000여명
2008. 08. 29.	백범기념관	• 전진대회, 노란리본, 청계천 가두캠페인	4,000여명
2009. 09. 02.	올림픽홀	• 바자회, 콘서트, 사회적비용 컨퍼런스	4,000여명
2010. 09. 10.	장충체육관	• 바자회, 콘서트, 취업박람회(교정기관 합동)	3,000여명
2011. 10. 31.	코엑스	• 전진대회, 바자회, 축하공연(난타, 샌드 애니메이션)	1,500여명
2012. 10. 30.	국립중앙박물관	• 전진대회, 바자회, 성과경진대회(영상물 상영 등)	1,000여명
2013. 10. 30.	안양아트센터	• 전진대회, 바자회, 노란리본기	1,000여명
2014. 10. 29.	안양아트센터	• 전진대회, 기업홍보 축하공연(타악, 대학생 & 보호청소년)	1,000여명
2015. 11. 18.	과천정부청사	• 전진대회, 사료전시, 축하공연(국악, 대학생 & 청춘합창단)	1,000여명
2016. 11. 16.	과천정부청사	• 전진대회, 사진전, 축하공연(음악축제 수상자(합창, 난타))	1,000여명
2017. 11. 16.	과천시민회관	• 자원봉사자 포상, 역사관 개관 기념 기록물 전시, 축하공연	1,000여명
2018. 11. 07.	과천시민회관	• 자원봉사자 포상, 축하공연(홍보대사 등), 공단가 제창	1,000여명
2019. 11. 08.	과천정부청사	• 자원봉사자 포상, 홍보영상 상영, 기념공연, 손피켓 퍼포먼스	200여명
2020. 11. 04.	공 단 본 부	• 자원봉사자 포상, 홍보영상 상영, 후원금 전달식, 손피켓 퍼포먼스	70여명
2021. 11. 03. 2021. 11. 10.	과천정부청사 공 단 본 부	• 자원봉사자 포상, 홍보영상 상영, 후원금 전달식, 손피켓 퍼포먼스	70여명
2022. 11. 30.	공 단 본 부	• 자원봉사자 포상, 홍보영상 상영, 후원금 전달식, 법무보호명문가 인증패 전달식	140여명

| 그림 2-96 | 2022 법무보호복지의 날



2022 법무보호복지의 날 행사

아울러, 2013년부터 갱생보호사업·기술교육원별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법무부 보라미 방송을 통해 각 교정기관에 송출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일터나눔 허그(HUG)기업 수기집 「희망으로 다시 시작하다」를 제작·발간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에 배포하였다.

또한 2016년부터는 모바일을 통해 공단 동향과 소식을 알리는 「월간 뉴스레터」와 자원봉사자 미담사례, 출소자 성공스토리 등을 담은 소식지 「아름다운 동행」을 활용하여 공단 사업을 홍보함으로써 출소자 포용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다.

70여년에 이르는 우리나라 갱생보호사업의 역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2017년 법무보호교육원 내에 역사관을 설치하고 공단에서 보관 중인 시대별 사료를 정리하여 전시함으로써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2022년 11월 공단 본부 청사 1층에 홍보역사관(Koreha Re-Entry Hall)을 개관하여 누구나 쉽게 법무보호사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홍보역사관에서는 공단 변천사와 운영 현황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피니티 미러룸, 실감형 콘텐츠, 체험형 콘텐츠 등 총 3개의 다양한 테마 공간을 통해 이색 체험을 즐길 수 있다.

| 그림 2-97 | 홍보역사관(리엔트리홀) 사진



홍보역사관(리엔트리홀) 개관식



자원봉사자 등 홍보역사관 체험

4) 전국 자원봉사 조직 개편

2019. 3월 기존 법사랑위원과 보호위원으로 이원화된 조직을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법무보호위원으로 일원화하여 법무보호위원전국연합회, 전국취업위원연합회, 대학생 법무보호위원전국연합회, 가정희망복원자문위원회 등으로 자원봉사자 조직을 개편하였다. 2022년 현재 법무보호위원 등 자원봉사조직 358개, 자원봉사자 7,211명이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 표 2-74 | 공단 자원봉사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합계	운영위원	취업지원	재정지원	주거지원	종교교화	여성	사전상담	대학생	기타
위원회수	358	10	37	22	22	15	24	28	31	169
인원	7,211	39	790	543	545	141	453	662	1,175	2,863

다. 평가 및 발전방향

일자리지원 사업은 출소자들의 구직기회 및 고용협력기업 인프라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에 기여하였으며, 출소자 고용 우수사례 등의 관련 모바일뉴스레터, 공단 소식지, SNS 등을 통해 국민 친화적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출소자 인식개선에도 앞장서고 있으며, 향후 허그일자리프로그램 참여자 1만명을 목표로 사업을 확대하고 출소자 고용을 희망하는 지역사회 내 협력기업을 지속 발굴,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지원 등 출소자의 일자리 창출 기반 확충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공단 일자리사업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기도 광주, 전라남도 목포 등에 보호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가족지원사업은 주거지원, 심리상담, 자녀학업지원 등을 통해 갱생보호대상자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며, 가족친화프로그램 확대 실시 및 내실 있는 주거지원 운영으로 사업 효과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수형자 가족지원을 위해 교정기관과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수형자 가족 접견지원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하여 운영하는 등 내실 있는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2022년 신문(645회), 방송(48회), 인터넷매체(2,660회), 온라인매체(22,056회) 등에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앞으로 출소자 우수사례 수기집 제작 및 유관기관 배포 등을 통해 홍보 역량을 집중하고 교정본부의 협조를 통해 보라미 방송에 송출하던 취업지원 관련 홍보 영상 외에도 생활지원, 가족지원, 상담지원 등 법무보호사업 안내 영상을 송출할 계획이다.

법무보호위원으로 새롭게 출발한 자원봉사조직은 전문화교육 강화, 자원봉사활동분야 지속 발굴을 통해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할 계획이다.

제6절 감찰·감사업무

1. 감찰업무

감찰담당관실 검찰사무관 이기용

가. 개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사전 예방적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되, 비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부패와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비위행위자에 대하여 엄정하게 조사·조치함으로써 유사 비위 차단에 주력하였다.

특히,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공직윤리 관련 안내와 교육을 통하여 직장 내 인권증진 및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대검찰청 감찰부 및 각 고등검찰청 감찰부서에 대하여 정기적인 감사를 통해 효과적인 내부 감찰을 수행하도록 감독하는 한편, 감찰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위원 수를 조정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위촉함으로써 감찰에 관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의견을 수렴하였다.

나. 엄정하고 효율적인 감찰 활동 전개

1) 비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

상시적인 사전 예방적 감찰활동을 통해 비위 발생의 사전 예방에 주력하는 동시에, 다각적으로 비위 정보를 수집하고 비위공무원을 직접 조사하는 등 비위 발생의 진상을 규명하여 엄정히 대처함으로써 공직기강 확립과 법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확보에 기여하였다.

2) 비위 발생 예방에 중점을 둔 예방적 감찰 활동 적극 전개

취약 분야, 과오 다발 분야, 중점 점검 대상자, 다수 민원을 야기한 직원에 대한 비노출 관찰활동, 부장·차장검사 승진대상자 인사검증 제도 등의 선제적 감찰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단순히 비위나 과오를 적발하는데 그치지 않고 업무 개선을 통해 비위 재발 방지에 기여하는 감찰활동을 추진하였다.

3) 「법무·검찰공무원의 부조리신고등에 대한 보상 및 포상 지침」 등 개정

「법무·검찰공무원의 부조리신고등에 대한 보상 및 포상 지침」, 「공직자등록재산조사단 운영규정」, 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을 개정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다. 감찰 업무를 통한 법무부 내 인권증진·공직윤리 확립

1)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운영

2018년부터 현재까지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갑질 피해자 구제, 갑질 피해 신고로 인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고, 2022년 카카오톡을 이용한 법무부 오픈채팅방 「감찰톡」을 개설하여 피해자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익명성을 보장하여 조직 내 인권 증진을 도모하였다.

2) 청렴한 공직윤리 확립

법무부 각 부서와 소속기관에 청탁금지법에 관한 안내와 교육 실시,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한 등록절차 안내 및 심사, 퇴직 공직자 취업 관련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 안건 검토, 병역사항 신고의무자·공개대상자에 대해 병역 신고 안내 등을 통해 비위 발생에 대한 사전예방 및 공직 윤리에 대한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공무원의 청렴한 윤리의식을 고취하였다.

라. 감찰업무의 객관성 제고

1) 검찰의 감찰업무 효과적 지휘·감독

대검찰청 감찰부 및 각 고등검찰청의 감찰부서 업무에 대한 정기 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대검찰청 감찰부 등으로부터 감찰 착수·진행·결과 등 감찰과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보고받아 검찰의 감찰업무에 대한 효과적인 지휘·감독 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였다.

2) 법무부 감찰위원회 전면 개편 및 감찰위원회 개최

감찰위원회 효율성 증대를 위해 위원 수를 13명에서 9명으로 조정하는 한편, 감찰위원 9명 중 8명을 외부인사로 구성하여 감찰기능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고,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법조계 인사를 6명에서 3명으로 감축하였다. 또한, 감찰위원회를 연간 4회 개최하여 감찰결과에 대한 검증 및 감찰사건 처리방향 등을 심의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권고 의견을 제시하여 감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2. 감사업무

감사담당관실 서기관 김경수

가. 자체감사체계 역량 강화 및 반부패·청렴도 제고

1) 추진개요

'적극행정 확산을 통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와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목표로 현장과 소통하는 열린 감사, 철저한 사전 점검을 통한 감사성과 제고 및 우수 성과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로 적극행정 분위기를 활성화하고, 국민관심 분야와 내부비위 근절 및 청렴도 제고에 역점을 두고 감사를 추진하였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정책·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등에 대한 특정감사, 채용실태 및 공직복무점검, 부조리 신고민원 조사를 통해 국민 불편해소와 내부비위 근절 등을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감사인력 감소에 따른 감사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감사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였으며, 71개 소속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복무감사, 내부 비위 제보 조사(청렴감사) 및 특정감사를 통해 총 386건의 지적사항을 확인하여 관련자 162명에게 징계·경고 등 신분상 조치하였고, 37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132,429천원을 회수, 감액하는 등 재정상 조치를 취하였다.

2) 추진실적

| 표 2-75 | 실시현황

구 분	내 용	실시기관 수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점검	71
특정감사	특정업무·사업 등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책 마련	8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 직원의 비위, 근무실태 등 점검	전 소속기관·산하공공기관

| 표 2-76 | 조치내역

(단위 : 건, 명, 천원)

종별 \ 조치결과	계			신분·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징계		경고		주의 등		회수 등		감액 등	
	건	인원	금액	건	인원	건	인원	건	인원	건	금액	건	금액
합 계	386	162	132,429	3	3	12	12	329	147	37	52,385	5	80,044
종 합 감 사	298	152	52,385	2	2	12	12	247	138	37	52,385	-	-

조치 결과 / 종별	계			신분·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징계		경고		주의 등		회수 등		감액 등	
	건	인원	금액	건	인원	건	인원	건	인원	건	금액	건	금액
특 정 감 사	21	1	80,044	1	1	-	-	15	-	-	-	5	80,044
복 무 감 사	67	9	-	-	-	-	-	67	9	-	-	-	-

나. 다각적인 반부패·청렴 시책 추진으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응

1) 추진개요

국민권익위원회의 평가 체계가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평가 등을 통합한 종합청렴도 평가로 개편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발맞추어 다각적인 반부패 시책 추진 대응체계로 전환, 청렴체감도 제고, 이해충돌방지법 안착 및 정책 현장성 제고를 목표로 반부패·청렴시책을 시행한 결과 '종합청렴도' 3등급(보통)으로 평가받았다.

2) 주요 반부패·청렴 추진 활동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착 노력

이해충돌방지법 시행(2022. 5. 19.)에 따라, 동 제도의 법무부 안착을 위해 「법무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2022. 5. 18.) 및 「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2022. 8. 18.) 등 관련 행정규칙을 정비하였고, 이해충돌이 우려되는 대표업무(연구용역, 소송대리인 선임, 위원회 외부위원 위촉 등)에 대해 사적이해관계 신고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위반 여부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종합감사 시 이해충돌방지법 상 행위기준을 반영하여 이행실태를 상시 감사하였다. 아울러 고위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 '청렴 LIVE'(2022. 7. 22.), '청렴릴레이 교육', 'MZ세대 공무원 청렴워크숍'(2022. 9. 30.) 등을 통해 이해충돌방지법 안착에 노력하여 전 직원의 94.6%(21,397명)가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수강하였고, 리플릿 배포(2022. 7.), 화면보호기 설치(2022. 9.) 등을 통해 이해충돌방지법 상 행위기준을 전 직원이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 그림 2-98 | 2022년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주요 추진 활동



2022년 청렴LIVE



리플릿



화면보호기

나) 부패 취약분야 개선 노력을 통한 외부청렴도 향상

2021년 '수용자 보관금품 접수 특정감사'를 진행하였음에도 부패경험 응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외부청렴도 평가가 저조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청렴시민감사관과 합동으로 실제 이행상태를 점검(2022. 9.~10.)한 결과 당초 특정감사 시 도출된 15건의 개선과제 중 12건이 이행 완료 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미완료된 중장기 과제 3건에 대하여는 조속히 이행하도록 통보 조치하였다.

또한 '분류심사·상담조사' 업무의 외부청렴도 개선을 위해서 감찰관실과 범죄예방정책국 합동으로 '분류심사·상담조사 T/F(3회 회의)' 운영을 통해 분류심사관 교육 및 민원인 대상 안내책자 발간·배포 등 노력을 통해 2021년도 대비 부패 취약분야인 '수용자 보관금품 접수'(73.0점→90.7점) 및 '분류심사·상담조사'(64.0점→86.4점) 업무의 외부청렴도가 대폭 향상되었다.

다) 청렴시책 참여자의 다양성 확보

외부인 등 다각적인 시각에서 부패통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직렬별 퇴직공직자 등 외부위원(6명)으로 구성된 청렴시민감사관의 역할을 확대하여, '외국인정책 특정감사' (2022. 5. 19.), '보관금품 이행실태 점검'(2022. 10. 7.) 등 현장 감사에 참여하여 제도개선 사항 권고 및 이행실태를 확인하였으며, 청렴릴레이 교육 및 'MZ세대 공무원 청렴워크숍'에 강사로 참여하고, 각종 평가 시에도 심사위원으로 활발히 참여하였다.

또한 청렴정책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여 시책의 현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속기관 직원 중 반부패·청렴업무 참여 희망자를 모집하여 '제2기 청렴멤버스'(2022. 6.)를 발족하였다. 직렬·직급·연령·성별로 다양하게 구성하여 총 62명을 제2기 청렴멤버스로 위촉하였으며 청렴워크숍 및 청렴알림e 제작 지원, 반부패·아이디어 공모전(2022. 3.), 청렴의 날 공모전 참여 등 다양한 청렴시책에 참여하였다.

제7절 인권업무

1. 국가인권정책 총괄·선도

가. 인권보장 수준의 향상을 위한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

인권정책과 전문위원 강지윤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강제실종방지협약)」은 유엔의 9대 핵심 인권규약 중 하나로 2010년 12월 국제적으로 발효되었으며, 강제실종 범죄를 방지하고 처벌하며,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법무부는 제3차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심의에서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가입 권고를 받아 2018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수용의견을 표명한 후, 관계부처 및 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2022년 7월 21일 외교부와 함께 동 협약의 비준동의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정부가 제출한 비준동의안이 2022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였고, 2023년 1월에 가입서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하여 비준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동 협약 가입과 함께 개인통보, 국가간 통보 절차도 수락하였다. 동 협약은 2023년 2월 3일 국내 발효되었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강제실종 근절 노력에 동참하려는 적극적 의지를 밝히는 의미가 있다. 동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유엔의 9대 핵심 인권규약 중 8개에 가입을 완료하였다. 특히, 가입과 함께 개인통보 및 국가간 통보 절차를 수락하여 협약상 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개인 또는 다른 당사국이 유엔 강제실종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법무부는 2020년~2021년 법무부 강제실종방지협약 이행입법위원회를 10차례 운영하여 동 협약의 국내 이행법률 권고안을 마련하는 등 협약의 실효성 있는 국내 이행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강제실종방지위원회에 2년 이내에 국가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나.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이행점검 강화 및 제4차 NAP 수립 추진

인권정책과 사무관 이동훈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18. ~ '22.)의 과제별 주요 추진성과, 미흡 사항,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및 평가를 통해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 이행력 강화에 힘써왔다. 특히, 각 분야 인권전문가로 구성된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회의를 활성화하여 제3차 NAP 2021년도 이행실적에 대한 심도 있는 점검 및 논의를 거치고, 정부 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된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제3차 NAP 2021년도 이행점검 결과보고서를 최종 확정하여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였다. 2021년도 이행상황은 총 272개 과제 중 완료 과제 21개, 정상추진 과제 246개로서 이행률은 98.16% 이다.

또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18. ~ '22.)의 종료에 따라 새로운 인권 수요와 국제기준 및 새 정부의 인권정책 기조를 반영한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3. ~ '27.)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정책과제와 관련한 인권관련 학회, 시민사회 등 폭넓은 사전 의견수렴을 실시하였고,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평가와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해 객관적이고 전문성 있는 외부 기관을 통한 연구용역('22.4. ~ 8.)을 실시하여 향후 실효적이고 지속가능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새로운 인권 수요에 대한 이행방안 등을 도출하였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제4차 NAP 권고('22.8.)에 따라, 인권위 권고·시민사회 의견·국제기구 권고에 대한 관계부처·기관에 대한 의견조회('22.8. ~ 9.)를 실시하고, 제4차 NAP 정책과제 논의를 위한 인권정책자문단 회의 개최('22.9.), 국정과제와 연구용역 제시과제 등에 대한 관계부처·기관 의견조회('22.10.), 새 정부 비전에 부응하는 신규과제 발굴, 별도 목차 신설(가칭 '디지털 시대의 인권')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체계적이고 세밀한 검토 과정을 거쳐 내실있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제3차 NAP 2021년도 이행상황 점검 시,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회의의 실질적 운영을 통해 심도있는 점검과 논의를 함으로써 보다 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점검이 되도록 하였으며 소관부처의 이행력 강화에 일조하였다. 또한, 2021년도 이행상황을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인권개선을 위한 국가적 노력을 홍보하고 전국민의 국가 인권정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다.

한편, 제3차 NAP 이행평가와 제4차 NAP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보다 객관적인 점검과 수립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본계획을 위해 시민사회

단체, 관련 부처 및 기관 등으로부터 사전 의견수렴을 거쳤고,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회의를 개최하고, 새 정부의 국정기조를 반영한 신규과제를 발굴하는 등 새로운 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였다.

법무부는 앞으로 공청회, 관계부처 회의, 시민사회 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각계각층의 분야별 전문가, 국민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향후 5개년 계획의 내실있는 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다. 인권 모니터링 제도 운영

인권정책과 사무관 이정환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에서는 2021. 3. 30. 인권 친화적 법무행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부 인권 모니터링 운영 규정」(법무부훈령 제1351호)을 제정하였다. 인권 모니터링 제도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중 법무부 소관 과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인권 관련 국내·외 규정 및 권고를 준수하고 재량권 행사 시 적절한 보호방안이 있는지를 사전 평가한 후, 개선책을 미리 반영하는 제도이다. 인권 모니터링을 통해 징벌대상 수용자의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 사유를 통합·조정하여 처우 제한이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운영되도록 정비하였고 보호소년 처우 과정에서 보호소년을 통제되어야 되는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을 인권 친화적인 용어로 수정하였으며, 출입국사범 단속활동보고서에 적법절차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단속과정에서 외국인의 인권이 보호되도록 개선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2022년 인권 모니터링 제도는 법무행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비율이 높은 '구금·보호시설' 분야에서 수용자, 보호·위탁소년, 보호외국인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시설 이외' 분야에서도 다양한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인권 보호에 이바지하고 있다. 법무행정 내에서 법령등을 제·개정하거나 정책을 추진할 경우 인권 모니터링 제도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라. 국제인권기구 대응 업무 강화

인권정책과 전문위원 전현신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대한민국은 총 8개의 주요 국제인권협약에 가입하였으며, 이 중 법무부는 4개의 조약(「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을 소관하고 있다.

2022년의 주요 성과로서 법무부 소관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3차 권고 이행상황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자발적으로 작성·제출하였고, 4차 심의를 위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제9차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국가보고서 작성, 제2,3차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국가보고서 심의 등 타 부처 소관 인권조약 국가보고서 작성 및 심의에도 정부대표단으로 참석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2023년 1월에 실시하는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4차 심의에 앞서 국제인권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용역 진행, 관계부처회의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사전회의 참석 등 국제사회의 요구를 이해하고,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대비하였다.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 등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대응 및 협조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

나아가 2022년에도 유엔 인권기구에 대한 우리 국민의 개인진정 사건 및 유엔 인권기구의 우리나라에 대한 정보 요청 서한이 다수 접수된 바, 법무부는 정부 답변서 작성 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실히 청취하는 한편 국제사회에 우리 인권정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였다. 나아가 미 국무부의 대한민국 연례 인권보고서 작성 시 자료 제공, 유엔 인권이사회 주제별 특별절차 공동서한 답변서 작성, 한·미 민주주의 거버넌스 협의체 회의 참석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세계적 인권증진에 기여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2023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연되었던 국제기구 업무가 전반적으로 회복되고 있어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방문 등 국제인권기구 관련 업무의 빈도가 앞으로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내부적으로 국제인권업무 담당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대외적으로 시민사회·국회·인권위·관련 전문가와의 소통을 양적·질적으로 모두 제고하여 국제인권기구 대응 업무를 내실화하고, 국제인권기구의 권고가 국내 인권정책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제4차 심의,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와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 제출이 2023년에 이루어질 예정인 바 국제인권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국가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하여 제출하고 심의에 적극적으로 응할 계획이다.

마. 국제인권기준에 발맞춘 인권정책 발전 방안 모색

인권정책과 전문위원 전현신, 강지윤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국가인권정책 수립·총괄·조정 부처로서의 적극적 기능을 회복하고,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권과제에 부응하는 정책을 마련하고자 중요 이슈에 대한 관계기관·시민사회의 공론장을 마련하고, 신규 정책 도입방안을 적극 연구·검토하였다. 대표적으로 유엔 인권조약기구 보고절차에 대한 포괄적인 실무지침서를 마련하여 국제인권조약 국가보고절차의 정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나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기업과 인권(Business and Human Rights) 관행을 국내 기업에 확산하기 위해, 「기업과 인권 세미나」를 2회 개최하고, 「기업과 인권 길라잡이」를 영문본으로 발간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또한, 기업과 인권 관련 국제 동향을 발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 제11차 「유엔 기업과 인권 포럼」에 참석하여 타 국가의 모범사례 및 전문가들의 경험 등을 수집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법무부는 앞으로도 시민사회·전문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제기준에 맞는 인권정책 수립 및 새로운 인권문제 대응에 힘쓸 예정이다. 2023년에는 주요 국제인권조약 중 양대 조약이라고 일컫는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국가보고서 심의와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규약」 국가보고서 작성·제출을 앞두고 있어 연구용역을 토대로 국가 보고절차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바. 기업과 인권 세미나 개최

인권정책과 전문위원 강지윤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2022. 10. 28.(금)과 11. 4.(금) 양일간 14:00~17:00에 대한변호사협회,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공동 주관으로 「기업과 인권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해외 인권실사법제화 움직임 등 기업과 인권 ESG 경영 관련 관심이 높아진 시점에서 기업 사내 변호사, 법무법인 변호사 등이 다수 참여할 수 있게 금번 세미나는 발제자·토론자 위주의 대면 토의 및 일반 참석자의 온라인 참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 추진내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축사에서 본 세미나를 통해 국제기준에 맞는 인권경영 실천사례를 공유하여 기업의 사내 변호사 등 인권경영 실무자들이 현실적인 실천방안 모색을 강조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유럽 등을 중심으로 인권실사 법제화 움직임이 있는 시점에서, 해외에 진출하거나 공급망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우리 기업들이 국제적 흐름에 대비하고, 기업의 현실에 맞게 자율적으로 기업과 인권을 도입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제1부에는 기업과 인권 관련 국제적 동향과 「기업과 인권 길라잡이」, K-ESG 가이드라인 등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였고, 제2부에는 기업과 인권 관련 국제규범과 사내 인권담당자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양일간 제조업, 식음료업, 지주회사, 공기업 등 다양한 산업 및 형태의 기업의 생생한 인권경영 실천사례를 공유하였다.

| 그림 2-99 | 기업과 인권 세미나



법무부장관 환영사



포럼 참석자 발표사진

사. 제59회 법의 날 기념식 개최

인권정책과 서기관 강의곤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법무부는 2022. 4. 25.(월) 10:00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제59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본 행사는 2020년 제57회, 2021년 58회에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법무부 내 「정부포상 전수식」으로 간소하게 진행되었다가 3년 만에 정식으로 거행되었다. 기념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그 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포상 및 「국민이 공감하는 정의, 법치와 공존하는 정의」라는 주제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2) 추진내용

이번 정부포상 전수식에서는 변호사로서 복지관, 가정법률상담소 등 현장에서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향상에 기여하고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부의장, 위원으로 활동하며 남북문제의 전향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허노목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가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한 것을 비롯하여, 총 12명이 포상을 수상하였다.

법무부장관은 기념사를 통하여 '법은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 구성원의 약속이자 정의 실현을 위한 기본'이라고 강조하고, 법무부는 정의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여러 문제들에 적극 대처하며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였다.

| 그림 2-100 | 제59회 법의 날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



법무부장관 기념사



법의 날 유공 정부포상 전수

2. 범죄피해자보호·지원 강화

가.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인권구조과 서기관 반준성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범죄피해구조금은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범죄로 인하여 사망·장해·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1987년 범죄피해자구조법 제정 이래 구조금 지급을 시작하여 2010년 범죄피해자보호법 통합이후 지속적으로 그 지급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왔다. '20. 11월 적법체류 결혼이민자를 구조금 지급 대상으로 포함하고 구조금 분할지급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2022년 한 해 동안 총 189건, 95억 원의 구조금을 지급하여 범죄피해자들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2. 11월 구조금 신청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본인정보제공동의를 통해 제출서류를 보다 간소화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범죄피해구조금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거나 범죄피해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범죄피해자와 유가족들의 회복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 향후에도 구조금 지급대상 확대, 구조금 지급 방법 다양화 등 개선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범죄피해자 우선의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 범죄피해자 심리적 지원 강화

인권구조과 사무관 홍찬주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강력범죄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인 스마일센터를 설립하였다. 스마일센터는 살인, 강도, 폭력, 성폭력, 방화 등 강력범죄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보호자를 대상으로 상담, 심리평가, 심리치유, 집단프로그램, 사회적 자원연계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범죄

발생 후 자신의 주거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피해자에게 임시거주가 가능한 쉼터를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한다.

'10. 7월 서울동부 스마일센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국 16개 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18년에는 스마일센터 총괄지원단을 설치하여 전국 센터의 심리치료 서비스 전문성 강화, 표준 프로그램 개발·보급,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 전국 스마일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 표 2-77 | 연도별 설치현황

구분	2010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설치 지역	서울 (동부)	부산	인천 광주	대구 대전	춘천 전주	서울 (서부) 수원	의정부	청주 울산	창원	제주	목포

스마일센터의 외형 확대에 맞추어 질적 성장을 기하고자 지속적인 연구용역*을 실시해왔고, 특히 올해에는 신분 노출을 꺼리는 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하여 '강력범죄 피해자 자가치유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또한 '외상 후 성장'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범죄피해자의 트라우마 극복과 외상 후 성장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20년 범죄피해자 심리적 후유증에 대한 표준 평가 프로토콜 및 치료 가이드라인 개발
'21년 스마일센터 사례관리 매뉴얼 개발 및 표준화 연구
'22년 강력범죄 피해자 자가치유 프로그램 개발 연구

스마일센터에서는 '22년 말까지 23,224명의 강력범죄피해자에게 심리치료(446,634건), 임시주거 제공(37,066건), 사회적 지원(28,453건) 및 법률적 지원(34,896건) 등을 제공하였으며, 최근 3년간 지원실적은 다음과 같다.

| 표 2-78 | 최근 3년간 지원실적

(단위 : 명, 건)

연 도	신규접수 (명)	서비스 지원					교육홍보
		계	심리지원	사회지원	법률지원	임시주거	
2020	2,402	66,993	55,659	4,122	4,992	2,220	3,632
2021	2,630	72,398	59,664	4,369	5,281	3,084	5,080
2022	3,250	90,992	69,987	5,040	6,452	9,513	6,702

2) 평가 및 발전방향

'21년 한 해 동안 전국 스마일센터에서 심리치료 및 심리상담을 지원 받은 대상자들의 치료효과를 살펴본 결과 외상후 스트레스 진단 척도(PDS), 사건충격척도(IES), 한국판 벡우울척도(K-BDI), 한국판 벡불안척도(K-BAI) 평균값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하단 표 참조) 이는 범죄피해자들이 스마일센터에서 전문적인 지원을 받음으로써 우울 및 불안 증상이 크게 완화되어 심리적인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앞으로도 스마일센터는 개소 등 외형적 확대에 맞추어 운영 내실화를 통한 질적 성장으로 국내 유일의 범죄피해 트라우마 전문 치유기관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할 계획이다.

| 표 2-79 | 심리치료 효과 검증 결과

(단위 : 명, 건)

구분		표본 수	평균	표준편차	결과해석
외상후스트레스 진단척도 (PDS)	치료 전	244	**29.5**	3.3	• 10점이하 : 낮은 수준 • **11~20점 : 중간 수준** • 21점이상 : 높은 수준
	치료 후	244	**12.3**	2.8	
사건충격척도 (IES-R)	치료 전	244	**50.7**	5.8	• 기준점 25점 • 25점 초과 시 외상과 관련된 증상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
	치료 후	244	**20.5**	4.4	
벡우울척도 (K-BDI)	치료 전	244	**28.4**	12.3	• **13점이하 : 증상 없음** • 14~19점 : 경미한 우울증 • 20~28점 : 중간정도 우울증 • 29점이상 : 심각한 우울증
	치료 후	244	**12.2**	9.7	
벡불안척도 (K-BAI)	치료 전	244	**24.8**	13.8	• 7점이하 : 불안증상 거의없음 • **8~15점 : 경미한 불안** • 16~25점 : 중간정도 불안 • 26점이상 : 심각한 불안
	치료 후	244	**8.8**	8.8	

※ 출처 : 2021년 스마일센터 백서

다. 범죄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인권구조과 서기관 반준성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 지원은 범죄피해자의 주거 환경개선 및 자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민임대주택, 매입·전세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로서 '10. 8월부터 시행되었다. '20. 5월 주거지원 공고문 개정을 통해 주거지원 대상 범죄에 디지털 성범죄를

추가하여 얼굴 공개, 보복범행 등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신변의 위협으로부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주거지원 대상자에 관하여 과실에 의한 행위로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를 제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주거지원 공고문을 개정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한 이후 지속적으로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 표 2-80 | 주거지원 대상 확대(2020. 5.)

종 전	개 선
1. 사망, 장해, 5주 이상의 상해	좌동
2. 상해 정도와 무관하게 주거지원 필요성 인정시 지원 - 살인, 강도, 방화, 강간, 친족간 성폭력, 약취·유인, 체포·감금 피해자 3. 상해 정도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한 피해자 범위 확대 - 보복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 아동학대 - 장애인·아동·청소년·업무상위력 강제추행 - 실화로 인해 주거를 상실한 경우	좌동 ※ 주거지원 대상 범죄에 디지털 성범죄 추가 등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의 유포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의 배포 의율 대상 피해자까지 확대 - 주거지원 대상 범죄에 과실범죄가 제외되는 점 명시 - 국토부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반영 및 지원규모 및 대상주택 상세 기술

2) 평가 및 발전방향

주거지원은 범죄로 주거를 상실하거나 보복위험 우려, 친족 간의 범죄 등으로 새로운 보금자리가 필요한 범죄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2022년에도 총 42가구가 주거지원을 받았으며, 향후에도 주거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더 많은 범죄피해자들이 따뜻한 보금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각지대 해소 – 스마일공익신탁

인권구조과 서기관 반준성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국가의 재정적·제도적 한계로 지원받지 못하는 범죄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부 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2016. 4월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을 설립하였다. 법무부 장관과 직원 일동이 제1호 위탁자로 참여하여 3,000만 원을 기탁하였으며, 이후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사회 각계각층의 참여로 모아진 기탁금으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2022년에는 친부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 친족간 살인으로 가정이 파괴된 피해자, 방화로

인해 전재산을 잃어 추가 지원이 절실한 피해자 등 9명에게 총 5,000만 원을 지급하여 2016년 출범 이후 총 136명에게 6억 5천여만 원의 생계비와 학자금을 지원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스마일공익신탁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함으로써 피해 회복과 생계유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법무부 직원들이 직접 모아준 천사공익신탁에서 스마일공익신탁으로 매년 재원을 출연해 그 의미가 더욱 깊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스마일공익신탁을 통하여 제도적 한계로 인해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들에게 생계비·학자금 등의 도움을 줄 예정이다.

마.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립 및 활동 지원

인권구조과 서기관 반준성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민간 자원봉사단체로서 2003. 9월 김천구미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 지방검찰청 및 지청 단위별로 61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포함)가 활동 중이다.

센터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도 한 해 총 36억 6,577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60개 센터는 피해자 상담 86,322건, 경제·의료 지원 16,403건, 신변보호 435건 등 총 124,980건의 각종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을 전개하였다.

| 표 2-81 | 최근 3년간(2020 ~ 2022) 지원실적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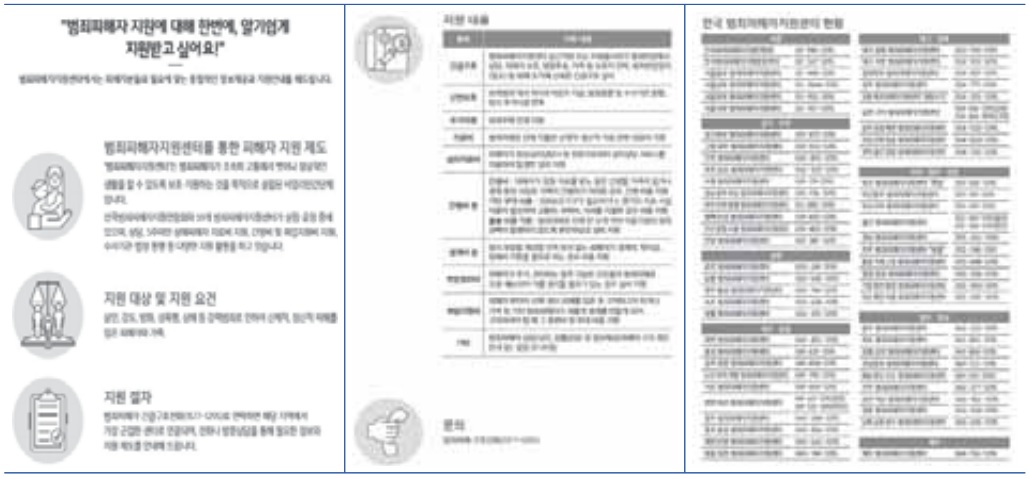
연 도	합 계	상 담	경제·의료지원	신변보호	기 타
2020	122,121	85,464	18,416	526	17,715
2021	119,620	84,752	18,476	604	15,788
2022	124,980	86,322	16,403	435	21,820

2) 평가 및 발전방향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각 지역사회에서 범죄피해자들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경제적 지원 이외에도 자조모임 및 자체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피해자의 심리적 치유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통합지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해당 지역사회 범죄피해자 지원기관, 수사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총괄적인 범죄피해자 지원에 앞장서고 있고, 향후에도 통합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적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종합 지원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 그림 2-101 |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한 피해자 지원 제도



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대국민 홍보 강화

인권구조과 서기관 반준성

1) 제9회 다링안심캠페인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은 범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경제적 고통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무관심과 보호·지원의 소홀로 말미암아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신변위협 등 심각한 2차적 피해를 입고 있다.

법무부에서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2022년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제고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아홉 번째 다링안심캠페인을 개최하였다.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본 행사는 2014년에 처음 시작되었고 범죄피해자와 가족,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종사자와 일반 시민 등 2,500여 명이 참석하는 범국민적 행사이다. 다만, 2022년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 행사를 동시에 진행하였으며, 2021년 5~6월 한 달간 「방구석 탈출 다링」을 부제로 하여 '너와 나 모두가 하나 되어 범죄피해로 고통 받는 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함께 응원하자'는 구호를 웹·모바일 페이지와 인스타그램 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널리 전파하고, 참가자들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자연스럽게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이와 더불어 새롭게 「자체 비대면 걷기, 워크온 어플리케이션」 홍보방법을 새롭게 도입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2022. 6. 10. 청계광장에서 나눔걷기 행사를 진행하여 범죄피해자지원 종사자 및 시민 1,000여명이 참여하여 범죄로부터 상처받은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함께 응원하였다.

향후, 법무부는 온라인 캠페인의 장점을 적극 살려 관련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적 관심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 그림 2-102 | 제9회 다링안심캠페인



2) 제15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범국민적인 이해 및 관심 제고, 범죄피해자 지원 관계자에 대한 사기 진작과 피해자의 참여와 소통의 기회 마련을 위해 2022. 11. 29.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15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개최하였다.

본 행사는 2008년 '1985. 11. 29. UN의 범죄피해자 및 권력남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원칙 선언'을 기념하여 처음 개최된 후 15회째를 맞는 행사로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유공자 등 70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그동안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이바지한 7명에게 국민포장(1명), 대통령표창(2명), 국무총리표창(4명)이 전수되었고, 특히 국민포장은 살인사건으로 홀어머니를 잃은 어린 형제를

위해 2014년부터 법정후견인이 되어 직접 양육하는 등 범죄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은 김경자님(부산사상구 주례3동 주민자치위원장)이 수상하였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수상자들을 비롯하여 피해자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국가의 손길이 부족한 영역에서 범죄피해자들을 위해 애써오신 덕분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가 이처럼 지속적으로 발전해 올 수 있었다, 제가 국가를 대신해 감사드린다. 국가는 피해자들의 편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하였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주무부처로서 지속적으로 지원 제도를 개선하고 민간 협력을 강화하여 범죄피해자의 회복과 사회 복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나갈 것이다.

| 그림 2-103 | 제15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국민포장 전수



기념촬영

3) 홍보매체를 통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홍보

법무부는 전년도에 이어 2022년에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광고(공익영상)를 제작하여 국민생활 밀착형 홍보 매체를 통해 효과적인 대국민 홍보를 시행하였다.

2022년도 상반기에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책자 및 리플릿 배포, 전국 1,000여개 병·의원 키오스크 광고'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KTX, SRT 및 서울역 전광판 공익영상 광고'를 추진함으로써 연간 균형있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홍보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스마일센터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스마일센터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상반기에는 서울 지하철역 전광판, 하반기에는 전국 주요지역 전광판에 송출하였고, 수도권 버스 옥외 광고판을 통한 스마일센터 홍보와 라디오 캠페인 광고 등을 실시하였다.

| 그림 2-104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홍보



키오스크 광고 디자인



기차역 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홍보

법무부는 앞으로도 다양하고 의미 있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홍보 활동을 대폭 강화해 나갈 것이다.

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운영

인권구조과 서기관 김홍준

우리 헌법은 제30조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동안 재원의 부족으로 인해 범죄피해자를 지속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적 보호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2010. 5월 연간 1조 5천억 원이 넘는 벌금의 4%를 주요재원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안정적이고 탄력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을 제정(2011. 1월)하였다. 이후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을 개정(2013. 1월)하여 집행된 벌금의 5%를 기금에 전입하도록 하고,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을 개정(2015. 1월)하여 벌금의 6%를 기금에 전입하도록 하였으며,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을 개정(2021. 1월)하여 집행된 벌금의 8%를 기금에 전입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사업을 일반회계로 이관(2022. 1월)한 결과, 여유자금이 148억 원으로 확대되어 안정적인 기금 사업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022년도 기금 편성 현황은 〈표 2-82〉와 같다.

| 표 2-82 | 2022년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편성 현황

(단위 : 백만 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사업액	총액
강력범죄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17,796	35,924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회복 지원	4,620	
	범죄피해자구조금	10,553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2,955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1,358	46,717
	성폭력 피해자 지원	36,172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9,187	
기금 운영비	기금 관리비	48	48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	2,500	2,500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120	120
여유자금 운용	통화금융기관 예치	14,805	14,805
총 계		**100,114**	

아.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인권구조과 서기관 반준성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그간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가 여러 주체에 분산되어 개별적·독자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범죄피해자가 이를 편리하게 연계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이에, 법무부는 각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의 연계를 강화하여 범죄피해자 지원이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범죄초기부터 일상회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가 종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하였다.

법무부, 여성가족부, 대검찰청, 경찰청, 교육부, 방송통신위원회, 서울시청, 경기도청 등 범죄피해자 지원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협의체'를 구성(2022. 10월)하여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범죄피해자가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에 대한 의미가 깊다. 향후에도 범죄피해자가 편리하게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를 보완해 나갈 것이다.

| 그림 2-105 |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협의체 제3차 회의

3.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구조 강화

가. 소외계층에 대한 능동적 법률구조 지향

인권구조과 사무관 김향권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 심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 발생,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취약계층 사건 증가와 법률구조 수요 대비 공급 부족으로 인한 격차 발생 등에 따라 법률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적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 추진내용과 성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정부정책에 따른 법률보호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 차원에서 무료법률구조 대상자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법률서비스 문턱이 높아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층

및 농·어촌지역 서민의 법률구조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무변촌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총 75개 지역에 공단 지소를 설치하였다.

공단은 민사 무료법률구조 사업을 확대·강화하고자 무료 대상자 범위를 차상위계층 등으로 확대하였고, 금융감독원 등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불법사금융피해자에 대한 채무자 대리인 선임지원사업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였다.

2022년부터는 플랫폼종사자 및 집단피해자(공익소송)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새로 실시하였고,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소송비용 부담을 일부유료에서 전부 무료로 변경하여 취약계층의 법률구조 접근성을 제고하였다. 구체적 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

| 표 2-83 | 민사 무료법률구조 대상자 확대·강화 추진 실적

지원대상자 및 대상사건	실시 시기	법률구조사업 실적
차상위계층 무료법률구조 지원	2018. 1. 1.	10,743건, 311,242백만 원
경찰·소방공무원 무료법률구조 지원	2018. 9. 1.	76건, 2,728백만 원
불법사금융피해자 채무자 대리인 선임지원사업 실시	2020. 1. 28.	채무자대리인선임 10,113건, 소송구조 80건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법률구조사업 실시	2021. 5. 10.	148건, 24,436백만 원
집단피해자(공익소송)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지원	2022. 4. 1.	69건, 15,012백만원
플랫폼종사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지원	2022. 4. 1.	7건, 280백만원

3) 평가 및 발전방향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규범개정과 업무협약 등을 통한 무료법률구조대상자 확대 및 법률보호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차상위계층과 저소득층 및 농·어촌지역 서민, 사회복지 시설 수용자, 플랫폼종사자, 집단피해자(공익소송) 등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법률보호 취약계층의 법률복지 증진과 인권보호에 힘쓰고 있다.

나. 개인회생·파산신청사건에 대한 법률구조 지원 강화

인권구조과 사무관 김향권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개인회생·파산신청사건에 대한 법률구조를 활성화하여 금융소외자의 부채형 빈곤추락을 예방하고 신속한 신용회복 지원을 위하여 2005년 대한법률구조공단 7개 지부에 전담팀을 구성하여 신속하고 전문화된 법률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였다.

2) 추진내용과 성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위와 같은 전담팀 구성 후 각 7개 지부에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노동부, 신용회복위원회, 국민연금공단 등과 연계하여 법률구조, 신용회복, 취업지원, 재무설계 등 맞춤형 One-Stop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그 추진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

| 표 2-84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설치 추진실적

지원확대 내용	시기	추진 실적
서울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설치	2009. 1. 21.	센터 개소 이후 개인회생·파산사건 실적 (법률구조) 168,936건 (법률상담) 1,212,678건
대구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설치	2010. 6. 1.	
부산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설치	2011. 5. 27.	
광주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설치	2012. 8. 27.	
대전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설치	2013. 7. 23.	
수원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설치	2014. 6. 5.	
울산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설치	2014. 6. 12.	

한편, 공단은 법원 등과의 융합행정 구현을 통해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패스트트랙[1](Fast-Track) 제도를 실시(2014. 1. 21. 서울중앙지방법원 시범 운영)하여 이용실적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2021년 대비 2022년 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

| 표 2-85 | 패스트 트랙 이용실적 증대 현황

구 분	'21년		'22년		증 감 률	
	개인회생(건)	파산(건)	개인회생(건)	파산(건)	개인회생(건)	파산(건)
실 적	201	3,491	197	3,222	△2.0	△7.7

3) 평가 및 발전방향

공단은 2013. 5. 15. 법원, 채무조정 관련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공단이 진행하는 사건의 경우 법원은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보다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패스트 트랙 제도를 서울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에 적용 후 2017. 6월까지 순차적으로 전국 9개 지부로 확대하여 시행 중이다. 패스트 트랙을 통한 소요기간 단축으로 금융소외자의 조속한 사회복귀 및 재기의 기회를 제공한 결과 이용자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1) 패스트트랙 : 법원·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통한 법원 신청 절차의 간소화

다. 체불임금피해 근로자 무료법률구조 활성화

인권구조과 사무관 김향권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근로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005. 7월부터 고용노동부와의 협약에 따라 체불임금 피해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시작하였고 2017. 4월부터는 다부처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개시로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임금체불 근로자의 신속한 법률구조를 위한 맞춤형 법률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곧바로 제공받는 등 One-Stop 서비스를 통해 체불임금피해 근로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활성화하였다.

2) 추진내용과 성과

공단의 체불임금피해 근로자에 대한 최근 5년간의 무료법률구조사업 추진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

| 표 2-86 | 체불임금피해 근로자 무료법률구조사업 추진실적

연 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인원(명)	150,447	162,977	137,637	116,465	61,757
건수(건)	95,137	106,249	90,174	77,668	43,078
금액(천원)	983,438,918	1,118,822,106	1,009,918,012	830,382,985	452,681,720

| 표 2-87 | 체불임금피해 근로자 무료법률구조 현황

(단위 : 건)

연 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사건수	66,706	67,338	73,244	89,759	90,151	95,137	106,249	90,174	77,668	43,078

공단은 2017. 4. 24.부터 '다부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곧바로 제공받는 등 One-Stop 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2019. 8. 26.부터 임금체불근로자에 대한 법률구조절차 간소화를 위해 지방노동관서에 직접 업무지원(출장)하여 One-Stop 법률구조서비스 제공하는 등 체불임금피해 근로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활성화하였다.

한편, 2021년 대비 실적 증감률은 구조인원 대비 47.0%, 구조건수 대비 44.5%, 구조금액 대비 45.5% 각 감소한 실적을 보였다. 이는 2021. 10월 개정 시행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판결 없이 대지급금(소액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3) 평가 및 발전방향

공단은 유관기관(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공단 지부 등의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체불근로자들에 대하여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는 임금체불근로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이면 신속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체류의 적법성을 불문하고 내국인과 동등한 수준의 무료법률구조 혜택을 부여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에도 기여하고 있다.

라. 소외지역 및 수용시설 등에 대한 출장 상담 실시 등

인권구조과 사무관 김향권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및 출장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농어촌 지역의 거주자나 수용시설의 수용자들은 법률문제가 발생해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 이에 공단에서는 2001년도부터 공단 지부나 출장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44개 농어촌 지역을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직접 방문하여 강연 및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2003년도부터는 교도소, 구치소, 외국인보호소 등의 수용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출장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그 밖에 서신, 인터넷, 전화, 원격화상상담 등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법률상담과 홈페이지에서의 법률정보 제공을 통하여 장애, 질병, 원거리 등의 사유로 공단에 직접 찾아오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법적 지원을 하고 있다.

2) 추진내용과 성과

공단의 최근 5년간 소외지역 및 수용시설 등에 대한 출장상담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 표 2-88 | 소외지역 및 수용시설 등에 대한 출장상담 현황

연 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횟수	287	300	135	141	90
건수	1,151	2,267	696	684	259

마. 이동법률상담차량 운영

인권구조과 사무관 김향권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010. 7월부터 이동법률상담 버스를 운영하여 장애인 보호시설, 산간벽지 등 공단 방문이 어려운 지역의 국민들을 직접 찾아가서 법률상담 및 조사, 사건접수까지 One-Stop으로 이루어지는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그림 2-106 | 이동법률상담





2) 추진내용과 성과

이동법률 상담버스 운영 이후 총 1,873개 지역을 방문하여 법률상담 18,515건, 법률구조회부 안내 726건, 강연 357회를 실시함으로써 법률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외지역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3년 간 연도별 사업 추진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

| 표 2-89 | 이동법률상담버스 연도별 사업실적

연 도	방문지역	법률상담(건)	구조회부 안내(건)	강연(회)	수강인원(명)
2020	95	609	33	6	560
2021	128	656	7	12	530
2022	140	631	16	8	331

2022년의 경우 이동법률 상담 차량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무변촌, 산업단지, 농·어촌, 산간벽지 등 법률보호 소외지역에 대한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이동신문고에 참여하여 국민의 생활 현장에 찾아가는 법률상담을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였다.(이동신문고 40회, 법률상담 150건 실시)

3) 평가 및 발전방향

법률구조 수요자 편의를 위해 공단은 2014. 10월 이동법률 상담차량을 기존 1대에서 2대로 확대 운영하고, 2019. 8월 1대를 교체하여 무변촌, 산업단지, 농·어촌, 산간벽지, 도서 지역 등에 찾아가는 법률상담으로 법률구조서비스를 강화하였고 상담과정에서 소송 등의 구조가 필요한 경우 바로 법률구조와 연계함으로써 법률구조 수요자의 공단 방문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여 공단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바.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문화교육 실시

인권구조과 사무관 김향권

1) 추진배경 및 경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언어와 문화의 차이 등,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주여성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1. 6월 김천시에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법문화교육센터를 개소하여 대한민국의 기본 법질서, 국적, 혼인과 상속, 기초질서 등에 관한 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 추진내용과 성과

법문화교육센터 개소 이후 최근 5년간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노인 및 취약계층 청소년 등 권리 보호를 요하는 대상을 적극 발굴하여 맞춤형 법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진 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

| 표 2-90 |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법문화교육 추진실적

연 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인원(명)	3,361	4,273	2,347	3,615	4,619

2022년의 경우,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사회적 거리두기, 인원 제한 등)하에 코로나 발생률이 낮은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나센터·노인복지관 등을 적극 방문하여 학습자의 수요에 맞추어 법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년 법교육에도 적극 참여하여 진로체험학습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학교폭력예방교육 492회, 12,487명).

법교육 대상자를 다변화하여 귀농·귀촌인, 중장년층 시민, 군인, 공무원 및 관련종사자 등에게 맞춤형 법교육을 추진하여 국민의 권리보호 및 법교육 대상자 다변화를 모색하였으며 2022년 추진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

| 표 2-91 | 법교육대상자 다변화 추진실적

구 분	귀농·귀촌인	중장년층 시민	군 인	공무원 및 관련종사자
추진노력 대상	남원시 귀농·귀촌인	서초50+센터 등	격오지 근무 군인	아동권리보장원 등
추진실적	509명	234명	104명	582명

3) 평가 및 발전방향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법문화교육은 다문화가족 등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국민으로서 소속감을 고취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며, 청소년 등에 대한 법교육은 합리적인 법의식을 함양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이해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을 육성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사. 성폭력범죄·아동학대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인권구조과 사무관 김향권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형사절차 등에서 자기주장과 방어능력이 취약하여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한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률조력을 위해 2012. 3월부터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사법률구조를 시행하였고, 2013. 6월 형사법률구조 대상자를 모든 성폭력범죄 피해자로 확대하였으며, 2021. 6월에는 장애인학대범죄 피해자까지 대상자에 포함하였다.

또한 2013. 7월 성폭력범죄 피해자 조력업무를 전담하는 성폭력범죄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6명을 채용하여 6개 지부에 배치하였고, 2014년에는 성폭력범죄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9명을 증원하였다. 2015. 1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아동 학대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까지 국선변호 업무를 확대 실시하고, 2015. 4월 범죄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16. 1월 국선전담변호사 2명을 증원하였고, 2019. 3월 국선 전담변호사 4명, 2020. 4월 국선전담변호사 2명, 2022. 12명을 증원하여 2022. 12월 현재 전국 35명의 범죄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가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장애인학대범죄 피해자 보호에 힘쓰고 있다.

2) 추진내용과 성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성폭력범죄 피해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 장애인학대범죄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구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2012. 3월부터 2022. 12월까지 총 89,321건의 피해자 국선변호사건을 수행하였고 국선전담변호사의 연도별 추진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

| 표 2-92 | 성폭력범죄·아동학대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 실적

연 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구조건수	4,062	4,221	5,534	5,682	5,916	8,389

또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을 실시하여 2022년 성폭력, 아동학대 및 장애인학대 사건의 처리절차 및 변호사 윤리에 관하여 총 6회 온라인 교육(기본과정 3회와 심화과정 3회(각 과정 1회 1일, 7시간))을 통하여 총 533명에 대해 실시하였다.

3) 평가 및 발전방향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성폭력범죄·아동학대범죄·장애인학대범죄 피해자 보호제도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률지원과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하였다. 나아가 원스톱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피해아동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강화하고, 피해자 특성에 맞는 상담을 위해 전담자를 지정 운영하는 한편,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신속하게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인권구조과 사무관 김향권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의 효율적 해결 및 국민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위원회를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이 정하는 서울중앙지부(2017. 5. 30.), 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지부(2017. 7. 1.) 등 총 6개 지부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추진내용과 성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정착을 위해 공단은 2017년부터 다음 〈표 2-93〉과 같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2021년 및 2022년 업무추진 실적은 다음 〈표 2-94〉와 같으며, 2022년 조정종결(미조정결정,각하,취하,이송 제외) 사건 중 조정성립 비율은 48.3%를 달성하여 서민주거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 2022년 조정종결사건 중 조정성립 및 화해취하 비율은 83.8%

| 표 2-93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정착 사업추진 실적

추 진 내 용	추진시기
• 2017년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예산 및 설치지부 확정	2016. 12월
• 개소를 위한 소관부서별 준비절차 이행 → 제 규범 정비, 상임위원 및 사무국 인력채용, 교육훈련, 홍보 등	2017. 3월 ~ 6월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직원 워크샵 개최	2017. 11월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국회 간담회 개최 • 주택임대차분쟁조정 관련 규범 재정비	2017. 12월
•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사례』책자 발간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법무부장관 방문 현장 간담회	2018. 5월
•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업무 프로그램 및 홈페이지 개설	2018. 6월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홍보 강화 →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안내문구 삽입 → 시내버스 외벽 광고, 지하철 역사 내 포스터 게시 등	2018. 7 ~ 12월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2018. 6월,12월 2019. 4월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규범 정비관련 사무국장 간담회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인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 관련 규범 재정비	2020. 12월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사건 업무처리 기준 시달 → 자동조정개시 도입에 따른 조정절차 처리, 수수료 면제 처리방법 등 시달	2021. 6월
•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홍보 강화 → 조정위원회 설치 전국 6개 지역에 버스 외부 래핑 광고를 통한 사업 홍보	2021. 7월 ~ 8월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실무 협의회 개최 → 성과 :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및 통일적인 분쟁조정 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자료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협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2021. 8월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사무국장 간담회 개최	2021. 11월
• 주택임대차분쟁조정 관련 규범 재정비	2021. 9월, 12월
• 법무부 서울중앙지부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현장 방문 → 방문 : 법무실장, 법무심의관, 법무서기관, 인권구조과장 등 → 주요안건 : ① 조정위원회 사업실적 제고 및 운영 활성화 ② 효율적 조정제도 절차 진행을 위한 관련 규범 개선 방안	2022. 2월

추 진 내 용	추진시기
• 22년 상반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직급별 간담회 개최 → 목적 : ① 6개지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통일된 업무기준 마련 ② 행정형 조정위원회 발전 도모	2022. 3월
•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협약 체결 → 목적 : 전세사기 근절 및 서민 임차인 보호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홍보	2022. 4월
• ADR을 통한 분쟁 해결 활성화를 위한 대한상사중재원과의 업무협약 체결 → 내용 : 상호간 법률구조 및 분쟁종합지원센터로의 사건 연계 안내	2022. 6월
• 6개 지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직원 워크숍 개최 → 목적 : 사무국 직원 간 교류를 통해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노하우를 제 공하고 전문역량 강화	2022. 11월

| 표 2-94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업무추진 실적

구 분	2021년				2022년			
	접수	조정처리	조정성립	화해취하	접수	조정처리	조정성립	화해취하
실 적(건수)	1,635	1,611	299	302	1,828	1,871	382	281

※ 처리건수에 구수사건(전년도 이월 사건)포함

※ '20.12.10.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자동조정개시제도 도입에 따라 조정미개시 사건 없음

3) 평가 및 발전방향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법원의 소송 또는 조정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했던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적인 조정을 통해 보다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게 되었다.

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

● 인권구조과 사무관 김향권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상가건물임대차 관련 분쟁의 효율적 해결 및 국민 생계안정을 위하여,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이 정하는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지부(2019. 4. 17.) 등 총 6개 지부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추진내용과 성과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정착을 위해 공단은 2021년 다음 〈표 2-95〉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2020년 및 2021년 업무추진실적은 다음 〈표 2-96〉과 같으며, 2022년 조정종결(미조정결정,각하,취하,이송 제외) 사건 중 조정성립 비율은 42.2%를 달성하여 국민의 생계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 2022년 조정종결사건 중 조정성립 및 화해취하비율은82.5%

| 표 2-95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정착 사업추진 실적

추 진 내 용	추진시기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TF 가동 → 개소를 위한 소관부서별 준비절차 이행(제규범 정비, 개소식 준비, 시스템 정비 등)	2019. 3 ~ 4월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 업무프로그램 개발 및 홈페이지 개설	2019. 4월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업무 개시	2019. 4월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홍보 강화 → 서울시 희망광고를 통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업 홍보 등	2019. 4 ~ 12월
• 서울보증보험과의 협약으로 임대차분쟁조정신청사건 수수료 무료 지원 → 권리금보호신용보험 및 상가보증금보장신용보험 가입자에 대한 수수료 무료 지원	2019. 9월
• 관련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인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 규범 재정비	2020. 12월
•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서울 제외) 공정임대료 시범실시 → 목적 : 상가건물 임대료에 대해 감정평가를 활용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임대료를 산정하여 임대인·임차인 간 갈등을 원만하게 해소	2021. 11월
•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국회 간담회 개최 → 목적 : 상가임차인의 차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차원의 대책 마련 • 주택임대차분쟁조정 관련 규범 재정비	2021. 12월
•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사건 업무처리 기준 시달 → 내용 : 국·공유재산인 상가건물의 임대차분쟁조정 대상여부 및 적용범위	2022. 5월
• 유관기관 제2차 실무 협의회 개최 → 목적 : 상가임차인의 차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차원의 대책 마련 → 내용 :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차임증감청구권 가이드라인 확정	2022. 5월

| 표 2-96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업무추진 실적

구 분	2021년				2022년			
	접수	조정처리	조정성립	화해취하	접수	조정처리	조정성립	화해취하
실 적(건수)	493	506	74	73	408	394	65	62

※ 처리건수에 구수사건(전년도 이월 사건)제외

※ '20.12.10.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자동조정개시제도 도입에 따라 조정미개시 사건 없음

3) 평가 및 발전방향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법원의 소송 또는 조정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했던 상가건물임대차 관련 분쟁을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적인 조정을 통해 보다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게 되었다.

차.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

인권구조과 사무관 손장혁

공급자 중심의 법률서비스 체계, 법률복지를 위한 전달체계 미비, 소송구조에 집중된 운영 등 기존 법률구조제도의 한계로 인해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법률홈닥터'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법무부가 변호사 자격자인 '법률홈닥터'를 직접 채용,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배치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결혼이주여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법교육 등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률홈닥터 사업은 2011년 시범사업 실시 후, 2012년 20명의 변호사 정식 채용을 시작으로, 2014년 40명, 2017년 60명, 2018년 65명으로 법률홈닥터 인원을 확대하였으며, 시·군·구청 등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결합하여 종합적 법률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 표 2-97 | 2022년도 법률홈닥터 배치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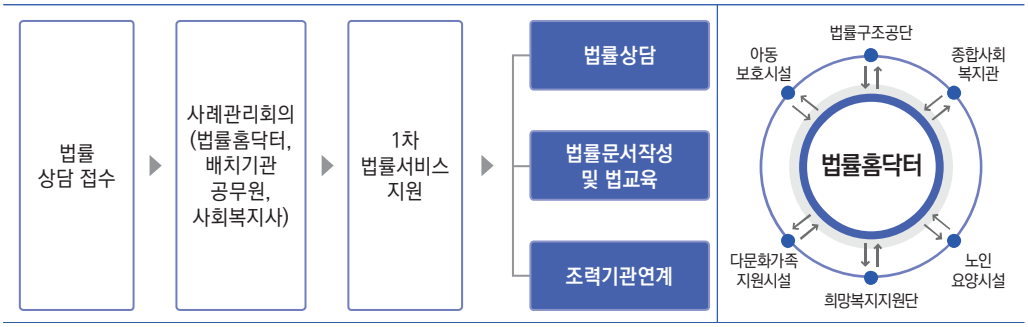
지역	배치기관
서울	강서구, 관악구, 노원구, 도봉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양천구, 은평구, 종로구, 서울협의회, 중랑구, 광진구
경기·인천	인천강화군, 인천미추홀구, 인천서구, 인천협의회, 고양덕양구, 광명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성남시, 안산시, 안성시, 오산시, 이천시, 수원협의회, 광주시
충청	충주시, 충북협의회, 대전 유성구, 대전동구, 대전광역시, 논산시, 서산시, 천안시, 아산시
전라	익산시, 전주시, 전북협의회, 광주광산구, 광주남구, 광주서구, 순천시, 전남협의회
대구·경북	대구달서구, 대구동구, 대구북구, 대구수성구, 경산시, 영주시, 포항시, 구미시
부산·경남	부산광역시, 부산남구, 부산사상구, 부산수영구, 부산해운대구, 울산광역시, 진주시, 창원시
강원	속초협의회, 삼척시

2) 추진내용과 성과

법률홈닥터는 법률복지 전담변호사로서 시·군·구청,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상주하면서 각 지역의 사회복지 시스템과 연계하여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종합적인 법률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 그림 2-107 | 법률홈닥터 업무 처리절차 및 조력기관 연계구조



법률홈닥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률홈닥터 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법률홈닥터 사업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법률지원 분야별(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주요 법적쟁점 및 상담 유의사항 등을 수록한 '법률홈닥터 실무 직무교재'를 편찬하여 법률상담 시 활용함으로써 법률홈닥터의 법률지원 역량을 강화하였고, 국가적 재난·위기상황 발생으로 인한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단과 연계하여 '수도권 등 집중호우 피해자 법률지원단'(2022. 8.), '이태원 참사 법률지원단'(2022. 10.),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2022. 12.) 등에서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법률홈닥터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포스터·리플릿 등 인쇄 홍보물을 시·군·구, 검찰청, 범죄피해자센터, 스마일센터, 경찰서 등 1,308개 기관에 배포하고,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등 지방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KTX,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을 활용한 홍보를 전개하였다.

| 그림 2-108 | 법률홈닥터 홍보 포스터 및 리플릿, 홍보동영상



포스터



리플릿



동영상

2022년 법률홈닥터의 법률상담, 법교육, 유관기관 연계, 법률문서 작성 등 법률서비스 제공 실적은 47,637건으로, 전년 41,500건 대비 15% 상승(6,137건)하였다. 법률홈닥터 서비스 이용자 대상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는 87.91점으로, 전년 87.80점 대비 0.11점 상승하여 '만족' 수준이었다.

| 표 2-98 | 법률홈닥터 지원실적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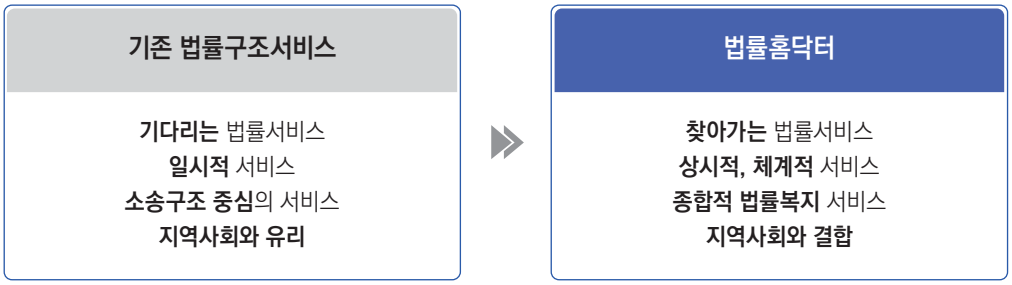
연 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지원실적	17,611	28,563	37,663	39,361	55,439	59,201	56,145	47,172	41,500	47,637

* 지원실적 : 법률상담, 법교육, 유관기관 연계, 법률문서 작성

3) 평가 및 발전방향

그동안 법률홈닥터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가까이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의 다양한 법률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민들의 든든한 법률주치의'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 이와 함께 법률홈닥터 이용자들의 만족도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어 법률복지 사각지대 발굴·해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법률복지 발전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그림 2-109 | 법률홈닥터 도입 성과



4. 자체 인권보호시스템 구축을 통한 국민의 인권보호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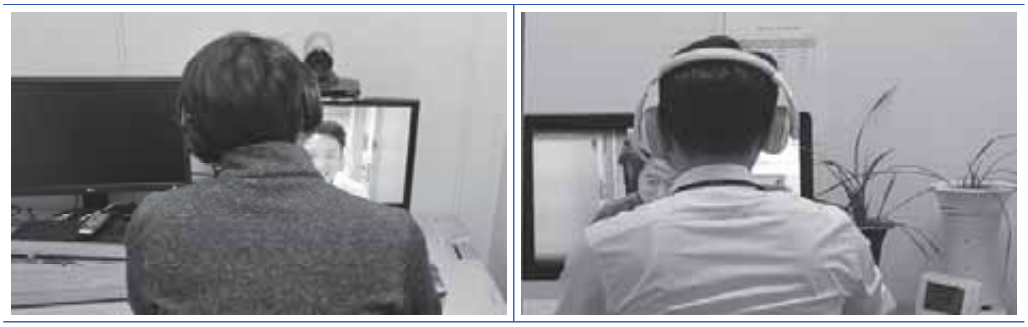
인권구조과 검사 최현주

가. 인권침해사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사를 위한 화상조사시스템 강화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원거리 구금·보호시설 수용자의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10년부터 인권침해신고센터와 각 수용시설에 네트워크 연결망 및 화상모니터를 설치하여 조사관과 수용자 사이에 1:1 원격 화상면담이 가능하도록 한 원격조사시스템인 화상조사시스템을 도입하여 전국 구금·보호시설에 관련 장비를 설치 중이고, 2022년에 6개 구금·보호시설에 화상조사시스템을 추가 설치하여 현재 법무부 인권국(2대)과 총 63개 구금·보호시설에 화상조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그림 2-110 | 화상조사시스템 활용장면



2) 평가 및 향후 추진계획

화상조사시스템을 통해 기존에 서면 또는 출장조사만으로 수용자의 진정내용을 파악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진정 접수 시 신속하게 화상면담조사를 실시하여 직접 수용자와 마주 보고 수용자의 목소리를 통해 진정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수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도모해나갈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화상조사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면전진정제도를 통해, 수용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면전진정 신청서'만 팩스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인권침해신고센터에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었고, 법무행정에 대한 부지나 오해에서 비롯된 진정 등의 경우에는 조사관의 상세한 설명이나 안내만으로 진정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도 상당하였다.

| 표 2-99 | 연도별 화상조사 실적

(단위 : 건)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실적	189	358	354	462	602	567	559	918	777	899

2022년까지 법무부 소속 전국 교정시설 53개소와 소망교도소(민영), 국립법무병원, 국립부곡법무병원, 제주소년원 등 63개 구금·보호시설에 화상조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고, 2023년에는 소년보호시설 및 외국인보호소에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설치할 계획이다.

나. 충실하고 적정한 인권침해사건 처리

2022년 접수된 인권침해사건은 총 4,002건으로, 그 중 진정사건은 3,920건(전화 13건, 우편 2,737건, 인터넷 243건, 팩스 927건, 방문 0건), 인지사건은 82건이다. 2022년 3,783건을 처리(인용 및 구제 86건, 이첩 1,461건, 각하 1,916건, 기각 320건) 하였다.

동절기 조사·징벌시 자비구매물품인 겨울속바지와 덧버신 착용 제한, 외부 병원 진료시 수용복 착용, 개인 물품 제작 지시 등 인권침해사건에 대하여 직접조사를 통해 인권침해사실을 확인하고 개선조치 권고를 하였으며, 공주교도소 수용자 사망사건에 대해 신속히 조사를 실시하고, 언론 등에서 의혹 제기한 내용 등을 확인하여 교정기관 내 폭행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권고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다.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구금·보호시설 감독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전 감독을 통해 법무행정 과정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 2006년부터 인권침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법무부 소속 구금·보호시설인 교도소·구치소, 외국인보호소, 검찰청 구치감, 소년원 등의 인권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2022년에는 코로나19로 축소되었던 정기 실태조사 대상 기관을 확대하여 국립법무병원 등 총 24개 법무부 소속 구금·보호시설에 대해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직접적인 인권실태 점검을 통해 구금·보호시설의 인권실태 등을 파악하고, 수용자(피보호자 포함, 이하 같음) 설문조사(2022년 1,516명), 개별면담(2022년 368명) 등을 통하여 인권침해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인권침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 표 2-100 | 2022년 인권실태 점검현황

(단위 : 회)

점검기관	교정시설	검찰청 구치감	외국인 보호시설	소년보호시설	합계
횟수	7	5	6	6	24

또한 정기 실태조사 이외에, 인권 사각지대에 있거나 인권향상의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주제를 선정하여, 해당 주제에 대해 다수기관을 상대로 집중적으로 심도있게 점검하여 제도개선안을 도출하는 '주제별·집중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외국인보호소의 실질적 보호시설로의 전환을 위한 기본권 제한요소 점검을 주제로 화성·청주·여수 외국인보호소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보호소 직원 의견 청취, 인권단체 간담회 실시 등을 실시하여, 화성외국인보호소 '개방형 보호시설' 시범실시에 적용할 기본권제한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여 권고하였으며, 교정기관 내 수용자 간 폭행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점검을 주제로 7개 교정시설의 수용자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 개별 면담,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고, 개선 필요 사항을 마련하여 교정본부 및 조사 대상기관에 통보하는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였다.

라. 법무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2022년 법무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은 인권감수성훈련, 검사·검찰수사관 대상 1:1 맞춤형·체험형 인권프로그램, 외부강사 기관방문 교육 등 직렬별로 다양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에 더하여 기존에 시행해오던 인권교육 전반을 진단·분석하고, 교육수요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신규 교육콘텐츠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인권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주요 현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 표 2-101 | 2022년 인권교육 현황

(단위 : 회)

교육 기관	인권감수성훈련			맞춤형인권교육		외부인권강사 기관방문교육	기타	합계
	교정	보호	출입국	검사	검찰수사관			
횟수	8	3	3	5	10	43	7	79
인원	170명	62명	47명	51명	102명	1,703명	246명	2,381명

마. 인권보호 평가 및 우수 인권공무원 포상

2007. 8.부터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국 검찰청에 대한 인권평가를 실시하였고, 2011년 하반기부터 인권보호와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 내 교정본부, 범죄예방정책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기관에 대해서도 인권보호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22년에는 2021년 하반기와 2022년 상반기에 대한 인권보호 평가를 실시하여 검찰 8개 기관, 교정 8개 기관, 범죄예방 10개 기관, 출입국 4개 기관 등 총 30개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하여 포상하였다.

그리고 2013년부터 업무과정에서 정성과 배려를 다한 법무부 소속 공무원을 격려하고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매년 세계인권선언 기념일(12. 10.)에 즈음하여 우수인권공무원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있다. 2022년에는 검찰 4명, 교정 5명, 범죄예방 2명, 출입국 2명 등 총 13명을 우수인권공무원으로 선정하여 포상하였고, 인권침해사건 처리와 실태조사를 통해 인권신장에 기여한 공이 큰 조사관과 충실하고 성실한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증진의 공이 큰 내부 강사를 격려하기 위해 우수 공무원 2명(조사 1명, 인권교육 1명)을 선정하고 표창하였다.

5. 여성·아동의 권익 보호 강화

가. 사회적 취약계층인 여성·아동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상 지원 강화

여성아동인권과 서기관 김건수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는 2012년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도입하여 성폭력·아동학대 등 범죄피해자가 낯선 형사사법절차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조력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13년부터는 진술조력인을 양성하여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중 아동, 장애인과 수사기관, 법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조력하고 있다.

2) 추진내용과 성과

피해자 국선변호서비스의 전문성 강화 및 지역별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국선변호만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국선전담변호사를 전국 12개 지역에 신규 채용·배치하여 기존 23명에 불과했던 전담 인력을 35명으로 크게 확대하였고, 진술조력 수요가 가장 많은 수도권(서울)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조력지원 등을 위해 상근 진술조력인 3명을 서울 권역에 추가 배치(서울남부·서울북부해바라기센터, 서울경찰청 희망센터)하였다. 또한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피해자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예산을 2021년 대비 약 25억 원 증액하였다. 한편, 피해자 국선변호서비스 및 진술조력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피해자 국선변호사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신규 및 저연차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을 위한 업무매뉴얼 개정판을 발간·배포하였으며, 경찰·검찰·법원·장애인지원기관에 「장애인복지법」 개정·시행에 따른 진술조력인 지원 대상 확대 사실을 안내·홍보하는 리플릿, 포스터를 배포하고, 장애인 관련 전문성을 갖춘 신규 진술조력인을 양성하였다.

| 표 2-102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범죄 피해자 지원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피해자 국선변호사	13,363	16,106	19,336	19,903	22,755	25,487	26,007	38,446	39,161
진술조력인	386	727	1,203	1,381	1,722	2,226	2,684	4,184	3,822
합계	13,749	16,833	20,539	21,284	24,477	27,713	28,691	42,630	42,983

3) 평가 및 발전방향

피해자 지원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 인력인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와 상근 진술조력인을 지속적으로 추가 배치할 예정[1]이다. 특히 2023년 1월부터 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에 대해 국선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진술조력인이 지원되는 등 피해자 지원 대상 및 범죄가 확대됨에 따라 효과적이고 충실한 지원을 위해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진술조력인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피해자와 수사기관, 유관기관 대상 제도 활용에 대한 홍보를 지속하는 등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나. 아동학대 방지 전방위시스템 구축

여성아동인권과 사무관 박상열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아동학대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전담인력 부족, 현장 대응 능력

1) 2023년 전국 권역별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8명, 상근 진술조력인 2명 추가 배치 계획

한계 등으로 인해 아동학대 조기 발견과 실효성 있는 아동 인권 중심의 사후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아동 중심의 예방부터 사후조치까지 통합적이고 전방위적인 아동학대 방지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아동학대 대응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대상을 아동학대 사건 발생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의 대응인력으로 확대하는 한편,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함으로써 교육과정 체계화 및 효율화를 추진하였다.

| 표 2-103 | 교육 진행 실적

- '22. 4. 21. 피해아동 보호위탁 시설 종사자(49명) 교육(온라인)
- '22. 6. 8. ~ 10. 전국 아동학대 전담검사(28명) 전문교육 교육(법무연수원)
- '22. 6. 29. ~ 6. 30. 아동학대 대응역량 강화 교육(56명, KT대전인재개발원)
- '22. 8. 31. 피해아동 보호위탁 시설 종사자(52명) 교육(온라인)
- '22. 9. 22. ~ 23. 전담수사관(28명) 아동학대 대응역량 강화교육 교육(상록리조트 천안)
- '22. 10. 24. ~ 25. 보호관찰관-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43명) 아동학대 대응역량 강화 교육(소노벨변산)
- '22. 11. 2. ~ 4. 아동학대 대응역량 강화 교육(복지부 공동 운영)(57명, 오라카이호텔)
- '22. 11. 28. ~ 30. 아동학대 대응역량 강화 교육(복지부 공동 운영)(98명, 한화리조트 해운대)

| 그림 2-111 | 아동학대 대응인력 역량강화 교육





아동학대 가해자 감호위탁 활성화를 위하여, 2022. 8. 1. 감호위탁지정시설 고시를 개정하였고, 2022. 4. 7. ~ 8. 1. 감호위탁 제도연구 및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22. 10. 28. 감호위탁 처분사례 및 법제 정비 방안 논의를 위한 법무부·법원·보호복지공단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일반 국민의 아동학대 인식개선을 위해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아동학대 예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아동학대 대응인력 교육대상을 사건발생에서부터 종결까지 전체 과정의 대응인력으로 확대하였으며, 보건복지부와 공동교육과정 개설·운영으로 교육과정의 체계화 및

효율화를 기하였다.

앞으로도 가정 내 아동학대 발생 시 아동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감호위탁 활성화를 추진하고, 간호조무사, 약사 등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직군을 확대하고,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돌봄위탁을 추가하는 등 제도상 미비점 보완·개선을 통해 선진적 아동인권 보호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여성아동인권과 서기관 김건수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학대, 매매, 착취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외국인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 미등록 이주아동은 미등록 특성상 실태조사가 어려워 정확한 수조차 알 수 없으므로, 국내 체류 아동 모두를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를 도입하여 외국인 아동 인구에 대한 기본 정보 취득이 필요하다. 2022. 6. 28.「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이 의원(권인숙 의원 포함 38명) 입법 형식으로 발의되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표 2-104 | 법안 주요 내용

법안 주요 내용
• **(적용대상)**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19세 미만의 국민이 아닌 사람
• **(통보의무의 면제 등)** 업무 담당자에게「출입국관리법」제84조 제1항에 따른 통보의무 면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생등록업무에 관한 정보 제공 요청 제한
• **(출생등록신청 의무자)** ①부 또는 모, ②부모가 신청하지 않을 경우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신청 가능
•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부)** 법무부가 관리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운영
• **(출생등록신청 및 증명서 발급)** 관할 시·군·구 및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수행

2) 향후 추진계획

2023년 연내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법률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며,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법무부가 운영하는 출생등록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출생등록이 누락 없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출생통보제와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라. 장애인차별시정명령 활성화

여성아동인권과 사무관 조병기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되어 있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이를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008. 4. 11.「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법무부는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시정명령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법령에 규정된 차별로 인한 '침해의 심각성', '공익의 중대성' 가중요건을 삭제하고, 국가인권위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차별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정명령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여 2021년 6월부터 시행하는 한편, 비정기적으로 개최하던 심의회를 매 분기마다 개최하기로 하여 2022년에는 총 4회 심의를 수행하였고, 지속적인 현장점검 및 이해당사자 면담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차별시정명령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장애인차별시정명령은 '장애'라고 하는 하나의 차별금지사유를 이유로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등 생활 영역 전반에 걸쳐 차별을 금지하고 그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구제수단을 규정하는 등 장애인의 기본권과 권리 보호에 이바지하고 있다. 보다 많은 장애인이 시정명령제도를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 사례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제도 개선점을 검토·반영하는 등 시정명령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6.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사무관 차현지

가.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인권법」(2016. 9. 4. 시행, 2016. 3. 3. 제정)에 따라 2016. 10. 11. 개소하여,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수집하고 기록한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 조사·연구 자료 등을 3개월마다 이관받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한다. 통일 시 책임규명(가해자 처벌, 공직자 재임용 심사, 피해자 보상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북한 당국에 대한 일반 경고적 기능을 수행하여 지금 현재 북한 당국의 인권침해행위를 간접 억제하기 위함이다.

2017. 4월부터 현재(2022.12.31.)까지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로부터 이관받은 북한인권 관련 자료는 총 2,066건으로, 이에 대한 분석을 완료한 후 가해자 인명카드를 포함한 사건기록을 서고 및 북한인권기록보존관리시스템(DB)에 저장하여 보존·관리하고 있다.

북한인권기록보존관리시스템(DB) 내 '북한인권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북한 인권 관련 사례 및 쟁점 연구 자료, 정책 이슈 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수록하고, 이를 편리하게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서울유엔인권사무소와 〈인권침해 문서화: 국제사례 검토〉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는 등 교류·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표 2-105 |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자료 이관 현황

이관시기	2017(3회)	2018(4회)	2019(4회)	2020(4회)	2021(4회)	2022(4회)	합계
건 수	355	457	700	411	103	40	2,066

2) 평가 및 발전방향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지난 5년간 분석한 자료를 전수 점검하여 기록의 완결성을 높이고 '북한인권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 기반을 마련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이관 자료량 감소에 적극 대응하였다.

앞으로 책임규명 자료의 증거력 강화와 북한인권 증진 기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 분석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다.

제8절 교정업무

1. 인권을 존중하는 교정행정 구현

가. 교정시설 내 감사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한 수용자 인성 함양

사회복귀과 교정관 정희동

1) 추진배경

교정시설 내 감사나눔 문화 확산 및 수용생활 속 '감사의 습관화'로 폭행사고 예방 등 안정된 수용생활을 유도하고, 수용자 교정교화의 효과성을 높여 출소 후 성공적인 사회복귀 및 국민의 안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추진경과

2022년 10월 감사나눔연구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전국 교정시설에 감사나눔신문 20,000여부를 보급·지원하는 한편, 수용자 '감사쓰기' 를 통해 심성순화와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2022년 11월에 감사쓰기 공모전을 운영하여 우수자에 대해 시상 및 상금 등으로 격려하였다.

3) 향후 추진계획

교정시설의 지리적 특성상 감사쓰기 등 전문 강사 섭외가 어려운 만큼, 내부 강사 양성 및 영상 교육 제작 등으로 교육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안정된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 그림 2-112 | 교정시설 내 감사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식(2022. 10. 13.)



교정시설 내 감사나눔 추진 방향 논의



기념 촬영

나.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교정시설 신·증축

복지과 시설사무관 최명근

1) 추진배경

2012년 이후 급격한 수용인원 증가와 과밀수용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출소자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 확인' 심판사건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함에 따라 교정본부는 2023년 말까지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2013헌마142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 2016. 12. 29 결정 -	국가는 수형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교정시설 내 수형자 1인당 적어도 2.58㎡이상의 수용면적을 확보 하여야 한다. 다만, 현실적 어려움을 참작하여 늦어도 5년 내지 7년 내에 기준을 충족하도록 개선을 촉구한다.

2) 추진내용과 성과

교정본부는 2022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622억 원을 편성하여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등 아래의 사업을 추진하여 과밀 수용 해소에 기여하였다.

| 표 2-106 | 2022년 국유기금 사업 현황

(단위 : ㎡, 원)

구 분	기 관 명	사업기간		시설규모(㎡)		총사업비 (백만원)	2023예산 (백만원)	비 고
				부지	건물			
이전	원주교도소	'14	'25	200,319	41,709	153,575	10,522 (공사비 등)	공사
	창원교도소	'18	'24	215,844	45,817	129,089	6,171 (공사비 등)	설계
신축	거창구치소	'15	'23	160,818	19,844	96,146	사업완료	공사
	경기북부구치소	'20	'25	116,000	38,524	115,262	1,720 (설계비)	설계
	화성여자교도소	'20	'25	41,930	19,780	72,301	5,803 (공사비 등)	설계
	태백교도소	'22	'28	444,187	56,560	202,635	4,525 (설계비)	설계
	남원교도소	'22	'27	150,600	21,185	72,936	2,036 (설계비)	설계
수용동 증축	울산구치소	'21	'23	현 부지내	2,000	6,132	1,930 (공사비 등)	공사
	제주교도소	'21	'23	〃	2,000	5,908	1,735 (공사비 등)	공사
	진주교도소	'22	'24	〃	1,800	5,456	2,080 (공사비 등)	공사
	군산교도소	'22	'24	〃	1,800	5,456	2,080 (공사비 등)	공사

또한, 과밀해소 사업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일반회계를 별도로 확보하여 강릉(교)·경북북부2(교) 등 7개 기관의 수용동 내 노후·유휴공간에 리모델링(증축 포함)을 시행하여 수용정원 230명을 확대하는 성과를 일궈냈다.

| 그림 2-113 | 교정시설 신·증축 현황



거창구치소 신축(사업완료)



원주교도소 이전 신축(공정율 5%)



강릉교도소 수용동 증축



경북북부제2교도소 수용동 리모델링

3) 향후 추진계획

교정본부는 수도권과 대도시 그리고 여성 수용시설을 중심으로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신·증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전교정시설 이전 신축사업을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아래와 같다.

| 표 2-107 | 교정시설 신·증축 사업계획

(단위 : ㎡, 원)

구 분	기 관 명	사업기간		시설규모(㎡)		총사업비 (백만원)	'23예산 (백만원)	비 고
				부지	건물			
이전	전주교도소	'12	'24	198,348	54,545	182,080	2,971	설계
	대전교도소	'22	'27	546,178	76,320	224,274	-	위탁사업
신축	대전구치소	'22	'27	364,119	42,350	126,170	-	위탁사업
	광주구치소	'23	'28	156,000	36,686	140,535	-	협의
증축	여주교도소	'23	'25	부지 내	1,500	6,471	268 (설계비)	설계

또한, 교정본부는 2023년도에 인천(구), 순천(교), 논산·서산(지) 등 구내 유휴 부지를 이용한 수용동 증·개축(일반회계 사업)을 통해 수용환경 개선 및 수용자의 인권 증진을 목표로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다. 코로나19 대응 교정시설 현장점검

코로나19 교정시설 긴급대응단 교정관 문준영

1) 추진배경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유입 시 집단감염 발생 우려가 매우 높은 점과 다수 확진자 발생 시 빠른 초동 조치를 통한 확산 방지 및 변경된 방역 정책 이행 여부 확인 등 일관적인 방역 대응을 위해 교정시설 현장점검이 필요하였다.

2) 추진경과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54개 교정기관 중 다수 확진자 발생 기관을 우선으로 총 81회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확진자 격리 수용동·중점관리 수용동 운영 실태, 다수 밀집 공간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였다.

3) 성과

방역 수범 사례 등을 발굴해 공유함으로써 보다 세세한 방역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아울러 현장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이를 개선하였다.

| 그림 2-114 | 교정시설 현장 점검 발굴 사례



경주(교) 코로나19 무균소독실 운영 사례



진주(교) 확진자 격리 수용동 음압시설 운영 사례



순천(교) 실내 방역 우수 사례



강릉(교) 외부인 출입 통제 우수 사례

라. 고위험군 수용자 중점관리 체제 전환·시행

코로나19 교정시설 긴급대응단 교정관 문준영

1) 추진배경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3T(검사·추적·치료)전략이 한계에 봉착하고 장기간 코로나19 방역정책으로 수용자 처우가 일부 제한되어 교정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교정시설 방역·치료체제를 고위험군 관리 중심 체제로 전환하여 수용자 처우는 최대한 보장하고 코로나19 감염 시 위험도가 높은 수용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2) 추진경과

2022년 3월 부터 고위험군 수용자를 중점관리군과 상시모니터링군으로 이원화하여 이중 코로나19 감염 시 위중증 등의 가능성이 높은 중점관리군은 최대한 타인과의 접촉을 줄이기 위해 별도 수용동에 수용하여 운동·접견 등을 실시하고 매일 1회 이상 의무관의 진료를 받게 하였다. 상시모니터링군은 중점관리군에 비해 건강상태가 양호하나 관리가 필요한 수용자로

매일 1회 이상 발열체크 등 건강 상태를 수시 모니터링하는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수용자이다. 전국 교정기관의 중점관리군은 2022. 12. 31. 기준 1,023명이다.

| 표 2-108 | 확진 수용자 및 확진자 사망 현황(2022년 실적 기준)

(단위 : 명)

구 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 계
확진 수용자	3,751	243	15	142	334	466	396	277	242	5,866
확진 사망자	1	-	-	-	-	-	-	1	-	2

3) 성과

고위험군 수용자 집중관리로 위중증 등을 사전 예방하고 일반수용자는 의심 증상 발현 등 유증상자 중심으로 관리하여 신규 변이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코로나19 대유행에도 교정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

2. 국민 중심 교정행정 서비스 제공

가. 제51회 교정작품전시회 야외 전시회 개최

직업훈련과 교정관 박성현

1) 추진배경

교정작품전시회는 1962년 덕수궁에서 처음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로 자리매김하였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코로나 19로 인한 2년간의 온라인 전시에서 벗어나 서울대공원에서 처음 야외 전시회로 개최하여, 교정행정이 국민들과 서로 교감하며 일상 회복의 기쁨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2) 추진경과

2022. 10. 28.부터 3일간 서울대공원 야외광장에서 전시된 작품은 수형자 및 직원이 제작한 공예작품, 생활공예품, 문예작품으로 구성되어 377점이 전시되었고, 국화 전시, 교정 체험 부스도 별도로 운영하는 등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교정을 홍보하였다.

| 그림 2-115 | 제51회 교정작품전시회



교정작품전시회 개관식



교정작품 관람



교정작품전시회 포스터

3) 정책성과 및 평가

작품 하나, 하나에는 지난날의 과오를 참회하며 밝은 내일을 소망하는 진심이 담겨 있으며, 이러한 작품들의 밑바탕이 수형자들을 안정적인 사회복귀로 인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23년부터는 각 지방교정청별로 작품전시회를 개최하여 전국적으로 교정작품을 홍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교정이 국민 속으로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 여성수형자 사회복귀 종합지원 프로그램 “따손 Cafe” 개점

직업훈련과 교정관 권익광

1) 추진배경

수형자의 직업능력 향상과 사회적응력 배양을 위해 직업훈련부터 출소 후 사회정착까지 전 과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단계적 지원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수형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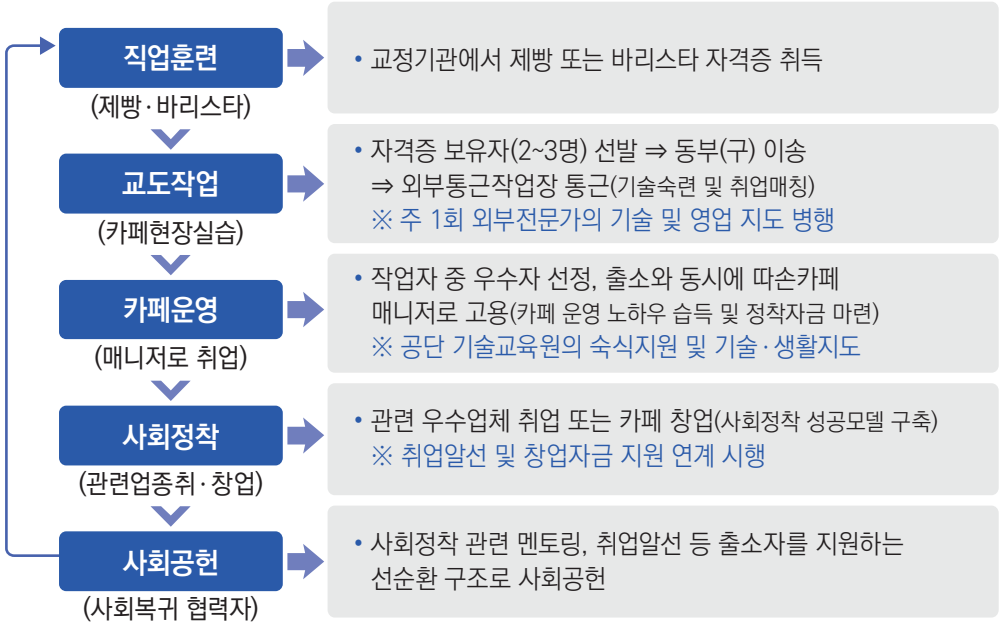
사회복귀 종합지원 프로그램*」시범사업 일환으로 여자수형자 외부통근작업 형태로 서울동부구치소에 '따손 Cafe'를 개점하였다.

* 수형자 직업훈련과 연계된 외부통근작업, 법무보호복지공단의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 민간단체(제로캠프)의 범죄예방 사업 등과 협업한 수형자 사회복귀 종합지원 프로그램

2) 추진경과

2022년 4월 사단법인 제로캠프와 여성출소자 고용 및 통근형 작업 형태의 Cafe 개설·운영에 대해 협의하고 설립 현장을 확인하였다. 동년 5월 여성수형자 사회복귀 통합지원을 위한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고 6월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자 중 모범수형자를 선발하여 Cafe 작업자를 선정하였다. 8월 제로캠프와 외부통근작업 신규계약을 체결한 후 9월 서울동부구치소 민원실에 제빵기, 커피머신 등을 구입하여 외부통근 작업장을 신설하여 12월 개점·운영 중에 있다.

| 그림 2-116 | 따손 Cafe 운영 흐름도



| 그림 2-117 | '따손' Cafe



Cafe 외부



개점식

3) 정책성과 및 평가

여성수형자의 출소 후 취업에 유리한 바리스타·제과제빵 등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외부통근작업인 카페를 개설하여 기술숙련을 거친 후 출소 후 매니저로 취업까지 연계되는 수형자 사회복귀 종합프로그램으로써 안정적인 사회복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다.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교정교육 전문 강사 양성

사회복귀과 교정관 정희동

1) 추진배경

수용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들을 관리하는 교정공무원에게 교정교육전문강사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어렵게 외부강사 섭외에만 의존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내부 강사 양성을 통한 안정적 교육 운영과 효과성 향상을 기대한다.

2) 추진경과

2021년 7월 '교정직 공무원의 교정교육 전문 강사 자격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한 차례 개정을 통해, 제1회 교정교육 전문 강사 자격인정 평가시험을 실시하여 최종 합격자 19명에 자격을 부여하였다.

3) 향후 추진계획

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인성교육, 심리치료, 취·창업, 직업훈련에만 국한된 강사 자격 인정

분야를 교정교육 전반으로 확대하고, 경력인정 및 교과제 적용을 통해 강사 자격 취득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 그림 2-118 | 교정교육 전문강사 자격인정 관련 실기시험(2022. 11. 4.)



면접 평가



강의시연 평가

라. 대체복무제의 안정적 정착

교정기획과 교정관 이형직

1) 추진배경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군 복무를 대신하여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복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2020. 1. 1.)이 제정되어 2020. 10. 26.부터 우리나라 최초로 대체복무제가 시행되었다.

2) 추진내용 및 성과

대체복무요원은 소집과 동시에 대체복무교육센터에 입교하여 3주간 신규교육을 받고, 교육 수료 후 복무기관(교정기관)에서 복무하게 된다. 2020년 10월 첫 소집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416명을 소집하여, 현재 20개 복무기관에서 1047명이 복무하고 있다.

| 표 2-109 | 대체복무요원 소집·교육 현황(2022년 실적 기준)

(단위: 명)

합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416	46	49	31	44	40	38	39	-	-	40	89

교정본부는 2020년부터 대체복무 생활관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오고 있으며, 2022년에는 청주교도소 생활관 등을 리모델링하였다. 특히, 지난 2022년 9월에는 영월 대체복무교육센터를 준공하여 대체복무요원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대체복무요원으로서 기본자세를 함양하기 위한 시설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생활관에는 휴게실, 체력단련실, 컴퓨터실 등 편의시설을 완비하여 쾌적한 복무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 그림 2-119 | 대체복무제의 안정적 정착



영월 대체복무 교육센터 전경



영월 대체복무 교육센터 개관식(2022. 12. 7)

시설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 및 법령 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학계·시민단체·병역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대체복무제 정책자문위원회'를 상·하반기에 각각 개최하여 합리적인 대체복무 운영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대체역 복무관리 매뉴얼 발간, 대체복무요원 종교활동 개선, 대체업무 확대 운영, 예비군대체복무 시행 등 대체복무제 시행기관의 운영상 문제점 개선과 안정적 대체복무 운영을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하였다.

3) 향후계획

2023년도에는 신규 대체복무요원 423명을 소집·교육하여 5개 교정기관 및 결원 기관에 추가로 배치할 예정이며, 향후 2026년까지 34개 복무기관(교정기관)에서 1,900여명의 대체복무요원이 복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수교육 및 복무 적응력 향상교육 등 내실 있는 업무 수행 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복무점검·실태조사를 통한 각 대체복무기관의 운영상황을 점검하여 복무 부실을 예방할 예정이다.

또한, 대체복무요원들로 하여금 비군사적 성격의 공익 업무 수행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대체복무제도의 취지에 맞는 다양한 업무 분야를 발굴·검토하여 안정된 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3. 미래를 지향하는 교정행정 구현

가. 현장 교정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복지과 교정관 위종진

1) 추진배경

교정공무원은 수용자 처우 및 직접 계호, 상시화된 야간근무 등 강도 높은 근무환경으로 직무스트레스 및 신체 위험에 장기간 노출되어왔다. 이러한 인적·물적 열악함을 개선함으로써 수용자의 인권을 효율적으로 보장하고, 현장 직원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현장 교정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법무부장관 지시사항 (2022. 5. 25)	현장 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인사·보수·근무환경 등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부서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바람

2) 추진내용과 성과

교정본부는 현장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수용동 근무자실에 프린터, 냉장고, 공기청정기 등을 설치하였으며, 야간근무자의 쾌적한 휴식 공간 확보를 위해 상황대기실에 1인 침대와 침구를 보급하였다.

또한, 2023년도 예산에 노후 비상대기숙소 리모델링, 야간근무자의 급식비 및 특수건강검진비 인상, 특정업무경비 지급 대상 현실화, 정신건강 회복 프로그램 확대, 피복비 인상 등을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며, 전년 대비 45억원(33.3%)이 증액된 181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일궈냈다.

| 그림 2-120 | 현장근무자 근무환경 개선 추진



상황대기실 1인 침대 등 보급



보안과 직원 휴게실 환경 개선

| 표 2-110 | 교정공무원 처우개선 관련 예산(확정) 내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년 예산	2023년 예산	주요 내용
합 계	13,569	18,089 (+4,520)	• 증 33.3%
특정업무경비 지급 확대 (980명 → 1,430명, 1인 7만원)	823	1,201 (+378)	• 조사·수사 관련 업무담당자 지급 현실화
교정공무원 급식비 인상 (11,000원 → 13,000원)	6,023	6,880 (+857)	• 수용자 난동 제압 등 육체활동이 빈번한 교정공무원 근무 특성 고려 급식비 인상
피복 품질 개선 및 교정공무원 방한점퍼 신설	5,574	6,074 (+500)	• 피복류 품질 개선 및 실외경비 등 교정공무원 특성 고려 방한 점퍼 신설
교정공무원 정신건강회복 지원	847	1,538 (+691)	• 수용자에 의한 폭행 등에 노출된 교정공무원 특성 고려 정신건강 회복지원 프로그램 상담 대상자 확대
교정공무원 특수건강검진 지원 (50,000원 → 80,000원)	302	483 (+181)	• 야간근무자의 질병 조기 발견을 위해 특수건강검진비 현실화
교정공무원 실외 근무자실 설치 (105개소 신설)	-	525 (순증)	• 악천후 등 열악한 실외근무 환경에 적합한 근무자실 105개소 설치
비상대기소 리모델링 (홍성교도소)	-	1,388 (순증)	• 1974년 준공되어 노후된 비상대기소 환경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3) 향후 추진계획

교정본부는 단순한 구금 확보의 목적을 넘어서 '교정교화의 가치 실현'이라는 교정 업무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교정공무원의 업무 특수성과 전문성을 반영한 수당 신설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현장 교정공무원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나. 차세대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 구축

보안과 교정관 유동윤

1) 추진배경

교정본부는 지난 2003년에 구축된 기존 교정정보시스템의 노후화 문제로 인한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시스템 자체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면 개편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총사업비 312억 원을 투입하여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2020년부터 3년간 총 3차 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2) 추진내용과 성과

「차세대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차세대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 개발·도입(1차 사업), 모바일 교정정보시스템 구축(2차 사업), 모바일 교정정보시스템 확대 구축 및 수용자용 키오스크(KIOSK) 도입(3차 사업) 등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진행된 각 사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차 사업】(2020. 3. ~ 2021. 5.)

- 차세대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 개발·도입
- 민원인 키오스크(KIOSK) 개발 및 시범운영 등

【2차 사업】(2021. 6. ~ 2022. 2.)

- 모바일 교정정보시스템 구축
- 민원인 키오스크(KIOSK) 전국 교정기관 확대 구축
- 급양 및 차량 관리 시스템 구축 등

【3차 사업】(2022. 8. ~ 2023. 2.)

- 모바일 교정정보시스템 확대 구축
- NFC 기술을 활용한 수용관리 방안 도입
- 수용자용 키오스크(KIOSK) 개발 및 시범운영 등

3) 향후 추진계획

2023년에는 2020년부터 시작되어 3개년 계획으로 추진된 「차세대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모바일 교정정보시스템 확대 구축 및 수용자용 키오스크(KIOSK)의 시범운영이 예정되어 있다.

향후 최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동향을 살펴, 필요한 기술의 도입을 통해 교정행정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그림 2-121 | 「차세대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 구축」 1차 사업 관련



차세대 교정정보시스템 구성(안)



교정정보시스템 메인화면(PC 화면)



교정정보시스템 업무화면(PC 화면)

| 그림 2-122 | 「차세대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 구축」 2차 사업 관련



모바일 교정정보시스템 메인화면(초기 화면)



모바일 교정정보시스템 업무화면



모바일 수용생활기록부



민원인 키오스크(KIOSK)

| 그림 2-123 | 「차세대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 구축」 3차 사업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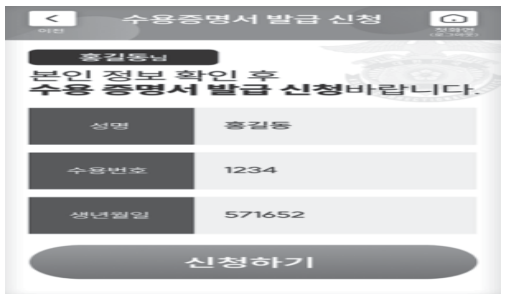
모바일 교정정보시스템 메인화면(개선된 화면)



수용자용 키오스크(KIOSK)



NFC 기술을 활용한 수용관리 예시 화면



수용자용 키오스크(KIOSK) 예시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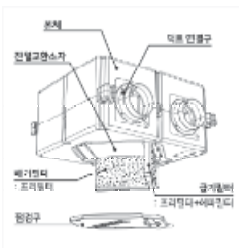
다. 교정시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기계환기설비 시범운영

의료과 교정관 임종오

1) 추진배경

교정시설은 3밀(밀폐, 밀집, 밀접) 환경으로 집단감염의 위험이 항시 존재하여,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 발생 시 오염된 공기가 다른 수용동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여 방역 체계를 유지하고 수용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빌딩형 교정시설 등 공기순환에 문제가 있는 교정시설을 중심으로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 시범운영하게 되었다.

| 그림 2-124 | 기계환기설비 사진



천장형 음압기 구성



서울동부(구) 완충지역





인천(구) 1201동

2) 추진경과 및 성과

교정기관별 공기 순환에 문제가 있는 수용동 등 필요 지역을 파악한 후 공기역학 전문가가 방문하여 설치의 필요성 및 설치 장소를 검토하였고, 안양교도소, 수원구치소, 서울동부구치소, 인천구치소에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였으며 향후 공기순환에 문제가 있는 교정시설을 추가로 파악하여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3) 평가 및 기대효과

수용동에서 코로나19 등의 감염병 발생 시 다른 수용동으로의 전파를 차단하여 감염병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등 신속한 초동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 전국 교정기관과 보호관찰소 간 화상조사 전면 시행

보안과 서기관 장귀남

1) 추진 배경

기존 보호관찰관의 교정기관 방문조사는 코로나19 등에 따른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상존하고, 기관 간 물리적 거리·인력 상황 등에 따른 업무부담이 가중되면서 폭력적 성향의 정신질환 수용자의 보호관찰관 등 직원 폭행 우려라는 문제점이 존재했다. 그래서 방문조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고, 2020년부터 교정기관과 보호관찰소간 화상조사 도입을 추진하였다.

2) 추진 내용과 성과

2022년 4월 1일 화상조사 관련 유관부서와 업무 협의를 시작으로 2022년 4월 18일부터 4월 22일까지 5일간 서울구치소 등 6개 교정기관에서 보호관찰기관과의 화상조사를 시범운영을 실시하였고, 2022년 5월 16일부터 전국 교정기관과 보호관찰기관간 화상조사를 전면 시행 중이다.

| 그림 2-125 | 교정기관 화상조사 활성화



교정기관 화상조사 시스템

3) 향후 추진 계획

교정본부는 화상조사 활성화를 위해 교정시설 내 영상 장비실 추가 구축 및 화상조사 환경 개선, 유관기관과의 화상조사 활성화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4. 재범방지 실효성 향상을 위한 교정정책 추진

가. 고위험군수형자 정밀분류심사 시스템 구축

분류심사과 교정관 고재익

1) 추진배경 및 경과

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크고 재범위험성이 높은 살인, 강도, 성폭력 등의 강력범죄 수형자 등의 출소는 사회 안전에 중대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교정본부에서는 이러한 고위험군 수형자들에 대한 집중관리를 위해 2015년 서울지방교정청 분류센터를 시작으로 광주·대전·대구지방교정청 분류센터를 차례로 신설, 고위험군 수형자에 대한 심층 심리검사를 통한 정밀분류심사 등을 수행하여 재범위험성 집중관리 체계를 마련하였다.

2) 추진성과

2022년 대구지방교정청 분류센터가 직제상 정식 기구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전국의 고위험군 수형자에 대한 권역별 통일된 정밀분류심사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다.

| 표 2-111 | 지방교정청 분류센터 신설현황

구 분	서울(청)	대구(청)	대전(청)	광주(청)
운영기관	서울남부구치소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	정읍교도소
개 원 일	2015. 11. 23.	2021. 7. 19.	2018. 3. 2.	2017. 3. 2.

고위험군 수형자의 정밀분류심사 실적이 2021년 815건 대비 증가하였으며, 집중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여 재범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교육·심리치료 등 처우방안을 제시하고, 출소 예정 수형자의 석방 전 위험관리수준 평가, 성폭력사범 재범위험성 심층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 표 2-112 | 지방교정청 분류센터 운영실적(2022년 실적 기준)

(단위: 건)

구 분	합계	서울(청)	대구(청)	대전(청)	광주(청)
정밀분류심사	1,172	302	452	252	166

3) 평가 및 발전방향

교정본부는 권역별 분류센터 신설을 완료하여 고위험군 수형자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를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에 기여하였으며, 향후 출소 전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의 경찰 등 사회 유관기관과 공유·협조 체계를 마련하여 우범자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사회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나. 고위험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사후관리 강화

심리치료과 교정관 박경식

1) 추진배경

최근 스토킹 살인사건, 연쇄 성폭력사범의 출소 등으로 인해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재범방지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고위험 성폭력사범의 범인성 개선 및 재범방지를 위해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심리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고위험 성폭력사범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였다.

2) 추진내용

2022년 1월 고위험 성폭력사범 사후관리 강화 차원에서 심화과정 수료자 중 치료 미흡자에 대하여 사후관리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

치료자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치료 미흡자(수료자의 10%내외)에 대하여 심리치료센터 직원이 출소 전 또는 특별·유지과정 참여 전까지 반기별 1회 이상 출장 방문 상담, 화상 상담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였다.

또한, 정규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하는 추가과정(특별·유지과정)을 확대 운영하여, 특별과정은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로 횟수를 늘렸으며, 유지과정은 기존 20개 기관에서 운영하던 것을 전 교정기관으로 운영 기관을 확대하였다.

* 정규과정 : 기본(60시간), 집중(100시간), 심화(300시간)

| 그림 2-126 | 고위험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사후관리 강화

※ 추가과정 개요

구분	특별 과정	유지 과정
대상	프로그램 수료자 중 가학·변태적, 13세 미만·장애인 대상 성폭력사범으로 잔형기 1년 이내의 자	심화과정 수료자로 잔형기 1년 이내의 자 (필요시 기본·집중과정 수료자)
운영 기관	서울남부심리치료센터	전 교정기관
운영 시간	150시간(4개월)	20시간(1개월)

3) 평가 및 향후계획

심리치료 정규과정을 이수한 고위험 성폭력사범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심리치료를 강화함으로써 재범방지 효과를 제고하고 국민의 불안을 불식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교정본부는 재범방지 실효성 향상을 통해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다. 수용자 초기상담 설문지 번역본 제작

심리치료과 사무관 이현진

1) 추진배경

국내 교정기관에는 한국인 수용자 외에도 다양한 국적을 가진 수용자들이 입소하지만, 신입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기존의 「신입수용자 초기상담 설문지」가 한글로만 제공되어 한글을 읽지 못하는 외국인 수용자에 대한 정확한 초기 스크리닝이 어렵고, 이들의 적정한 처우 및 수용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외국인 수용자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위한 번역본*이 있으나 이 중 개선된 초기상담 설문지 번역본이 없어 외국인 수용자를 위한 신입수용자 초기상담 설문지 번역본을 제작하게 되었다.

* 우울증평가도구(PHQ-9), 자살행동척도(SBQ-R), 알코올사용장애척도(AUDIT-K), 조기정신증척도(ESI), 공격성척도(K-BPAQ)

2) 추진내용

외국인 수용자에 대한 정확한 초기 스크리닝을 위해 신입수용자 초기상담 설문지를 중국어, 태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등 10개 언어* 로 번역하여 2022년 4월 전국 54개 교정기관에 배부하였다.

* 중국어, 태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러시아어, 말레이어, 영어, 카작어, 몽골어, 필리핀

전국의 각 교정기관에서 신입수용자를 담당하는 근무자는 수용자 입소 시 또는 필요 시에 수용자의 국적에 따라 번역본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외국인 수용자가 교정 처우에 있어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초기 상담 설문을 이용한 스크리닝을 통해 수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사전에 파악하고 적극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3) 평가

다국적 언어로 신입 수용자 초기상담 설문지를 제공하여 신입 외국인 수용자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초기 스크리닝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외국인 수용자 교정사고 예방 및 수용관리를 강화하고, 외국인 수용자의 적정한 수용처우를 통한 인권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라. 가석방 확대 및 심사 내실화

분류심사과 서기관 정혜리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모범수형자, 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별적 가석방 확대 및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사태로 인하여 가석방 심사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서류 위주 심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형자의 개선의지, 심리상태 및 사회복귀 준비상태 등 실질적인 재범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가석방 심층면접제도를 확대하였다.

전문가로 구성된 심층면접관이 강력사범 등 신중한 심사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 대면면접, 심리검사, 담당교도관 면담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가석방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 가석방심사에 반영함으로써 가석방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강력사범 등의 가석방에 대한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표 2-113 | 가석방 심사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예비심사인원	53,887	53,739	55,407	63,155	71,364
신청인원	9,384	11,328	12,203	13,035	13,794
허가인원	8,693	8,174	7,911	9,390	10,310

| 표 2-114 | 가석방 심층면접 실시 현황

(단위 : 명)

구 분	추천인원	실시인원	실시인원 증감
2021년	592	252	-
2022년	1,153	476	88.9% 증가

2) 평가 및 발전방향

교정본부는 모범수형자 및 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별적 가석방 확대로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상황에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심층면접제도를 확대하여 가석방 심사를 내실화하고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였다.

제9절 출입국·외국인정책업무

1. 편리하고 안전한 출입국 국경관리 체계 구축

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출입국심사 제도 정비

출입국심사과 사무관 김영오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가) 무사증입국 및 사증면제협정 일시정지 해제

2020년 초 발생한 코로나19 팬더믹 사태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무사증입국이 정지되는 등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었으나, 세계 각국의 방역완화 조치에 따라, 우리나라도 인적교류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무사증 일시정지 조치 등의 해제가 검토되었다.

이에 따라, 상대국의 코로나19 방역상황 및 상호주의 등을 고려하여 그간 무사증 입국이 중단되었던 국가에 대하여 점진적으로 무사증 입국 일시정지 조치를 해제하여 2022. 11. 1.부로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112개국 국민에 대하여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였다.

※ (무사증 일시정지 해제) '22. 4. 1.부 호주 등 46개 국가(지역), '22. 5. 1.부 뉴질랜드 등 6개 국가(지역), '22. 6. 1.부 그레나다, '22. 7. 1.부 홍콩, '22. 8. 4.부 일본 등 3개 국가(지역), '22. 11. 1.부 솔로몬 군도 등 5개 국가(지역)

나) 제주무사증 입국허가제도 일시정지 해제 및 양양공항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제도 시행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방역강화 조치로 2020. 2. 4.부로 중단되었던 제주무사증 입국허가제도가 2022. 6. 1.부로 재개됨에 따라 제주무사증 입국불허국가 23개국 국민을 제외한 외국인은 사증없이 제주도로 입국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강원도에서 건의한 "양양공항 단체관광객 무사증입국 허가제도"를 시행하여, 아시아 4개국(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국민이 자국에서 동일 직항편으로 출발, 양양공항으로 입국하여 동일 직항편으로 양양공항으로 출국하려는 5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에게 특례적으로 무사증입국을 허용하였다.

다) 스티커 부착 방식의 입국심사증 확대 시행

종전의 교부방식 입국심사증은 여권상의 출입국 기록(입국일, 체류기간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단기체류 외국인의 신분확인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단기체류 입국외국인을 대상으로 스티커 부착방식의 입국심사증 개선안을 마련하여 2022. 6. 1.부터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시범운영하였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2022. 9. 22.부터 전국 공항만 출입국기관으로 확대 시행하게 되었다.

※ (심사인 날인방식 변경 연혁) '11. 2. 10. 국민 입국심사인 날인 생략, '16. 11. 1. 국민 및 외국인 출국심사인 날인 생략, '19. 6. 1. 여권에 입국심사인을 날인하는 방식에서 입국심사 확인증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변경

2) 평가 및 발전방향

2022년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면서 세계 각국이 국경통제를 완화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방역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간 중단되었던 제주무사증 입국허가제도를 재개하고, 양양공항 단체관광객 무사증입국 허가제도를 시행하였으며, 무사증 입국이 일시정지되었던 국가의 국민에 대하여도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였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이 증가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상권 및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였다.

특히, 입국심사증을 스티커 부착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외국인 방문객들이 입국심사증 분실로 인한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입국일자 확인 등에 있어서도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었다.

나. 전자여행허가제(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확대 시행

출입국심사과 사무관 김영오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전자여행허가제(K-ETA)는 무사증입국 가능 국가 국민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K-ETA 홈페이지(k-eta.go.kr)나 모바일 앱(K-ETA)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및 여행정보를 입력하여 미리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이다.

무사증입국 외국인 입국 불허에 따르는 외교적 마찰을 감소시키고 불법체류, 성범죄자, 마약사범 등 고위험군 외국인과 감염병 의심자의 유입을 차단하여 효율적인 국경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2021. 5. 3. 시범운영을 거쳐 2021. 9. 1.부로 본격 시행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다수 국가·지역에 대해 무사증입국이 잠정 정지되어 2021년 말 기준으로 K-ETA 대상 국가·지역은 50개였으나 2022년부터 무사증입국이 점차 재개되어 2022. 11. 1.부터는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112개 국가·지역 전체에 K-ETA를 적용하고 있다.

※ (무사증 입국 재개 경과) '22. 4. 1. 96개 → '22. 5. 1. 102개 → '22. 6. 1. 103개 → '22. 7. 1. 104개 → '22. 8. 4. 107개 → '22. 11. 1. 112개

2) 평가 및 발전방향

K-ETA를 소지한 외국인에게는 입국신고서 생략 및 전용심사대 이용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마약사범·성범죄자 등 고위험국 외국인의 입국을 항공기 탑승 전에 차단함으로써 안전한 국경관리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K-ETA 신청 정보를 바탕으로 지역별 외국인 방문객 통계를 분석한 '우리동네 외국인 방문객 일일 현황'을 한국관광데이터랩 등과 연계하여 공개하는 등 빅테이터를 통해 관광을 비롯한 외국인 관련 산업분야에 활용이 가능해졌다.

| 표 2-115 | K-ETA 신청 현황

구분	신청건수	수수료 수입
2021년	86,211 건	6억 1,008만원
2022년	2,082,358 건	208억 2,547만원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정지되었던 무사증입국이 2022년 모두 재개된 이후 외국인 입국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K-ETA 이용 외국인의 숫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청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K-ETA 시스템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무사증 입국자의 데이터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향후 출입국심사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사증발급, 조사 등 다양한 출입국업무 수행에 있어 비교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국익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에게는 보다 빠르고 편리한 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익위해 우려자는 항공기 탑승을 차단하여 안전한 국경관리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 자동출입국심사제도 확대 시행

출입국심사과 사무관 최재원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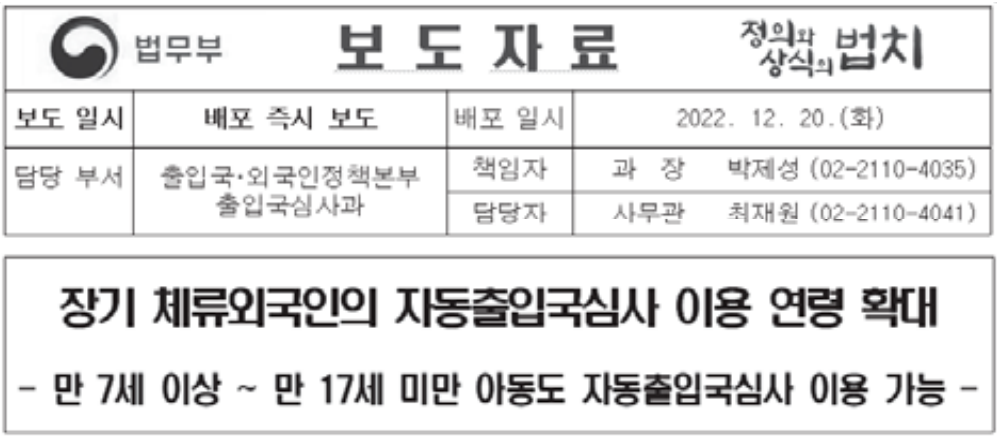
자동출입국심사는 심사관과 대면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여권과 지문을 자동출입국심사대에 인식시켜 간편하고 신속하게 출입국심사를 완료하는 출입국심사 제도이다. 2008. 6. 인천공항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처음 제도를 시행한 이래 외국인 이용대상 확대, 사전등록절차 생략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하여 이용자가 증가하였다.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출입국자 감소와 입국 자동출입국심사 전면 제한(2020. 4. 11.)으로 이용자수가 감소하였으나 12개 공·항만의 노후 자동출입국심사대 26대를 최신 장비로 교체하여

출입국자 증가에 대비하였다.

또한 2022. 12. 27. 장기 체류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연령을 '17세 이상'에서 '7세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어린이를 동반한 외국인 가족도 국민과 동일하게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 그림 2-127 | 장기 체류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확대 시행 관련 언론보도(2022. 12. 20.)



법무부 **보 도 자 료** 정의와 상식의 법치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보도	배포 일시	2022. 12. 20.(화)
담당 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심사과	책임자	과 장 박제성 (02-2110-4035)
		담당자	사무관 최재원 (02-2110-4041)

장기 체류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연령 확대

- 만 7세 이상 ~ 만 17세 미만 아동도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가능 -

| 표 2-116 | 자동출입국심사대 운영현황

(기준 : 2022. 12. 31., 단위 : 대)

구분	합계	인천공항	김해공항	김포공항	제주공항	청주공항	대구공항	양양공항	무안공항	인천항	부산항	평택항	군산항
설치 대수	238	159	21	8	8	4	8	3	4	9	5	5	4

| 그림 2-128 | 추진경과



2) 평가 및 발전방향

국가 간 이동이 점차 회복됨에 따라 전년대비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자는 9,083,267명 증가하여 1,100% 상승하였다. 전체 출입국자 대비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자 비율은 52%로 전년 대비 31.3% 증가하였다. 비대면 심사에 대한 선호도의 증가와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대상 확대에 따라 자동출입국심사의 이용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자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노후된 자동출입국심사대의 교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더 많은 승객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나갈 예정이다.

| 표 2-117 |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출입국자	계	88,908,420	93,548,093	14,701,839	4,391,173	19,223,428
	국 민	57,859,670	57,795,389	9,171,423	2,326,774	12,778,752
	외국인	31,048,750	35,752,704	5,530,416	2,064,399	6,444,676
자동심사대 이용자	계	30,466,946	37,697,784	5,490,622	908,914	9,992,181
	국 민	29,420,061	32,093,114	4,729,477	800,626	8,403,293
	외국인	1,046,885	5,604,670	761,145	108,288	1,588,888
전체 대비 자동이용율(%)		34.3%	40.3%	37.3%	20.7%	52.0%
국민 자동이용율		50.8%	55.5%	51.6%	34.4%	65.8%
외국인 자동이용률		3.4%	15.7%	13.8%	5.2%	24.7%

라. 공항 출국대기실 국가운영 전환

출입국심사과 사무관 김영오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그간 출국대기실은 법령상의 근거규정이 없어 출국대기실 임차료를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 외에 출국대기 시설 운영 및 입실자 관리는 민간에서 전담하는 구조로 운영되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외국인 인권침해 논란 및 송환대상 외국인의 처우 등에 대하여 언론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론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출국대기실 국가 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의결을 거쳐 2021. 8. 17. 공포되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 이후 하위법령 정비, 출국대기실 시설보완, 운영 인력 채용 등 1년 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2022. 8. 18.부터 출국대기실 운영주체가 민간에서 국가로 전환되었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출국대기실 국가운영은 2001년 인천공항 개항 이후 20년 만에 출국대기실의 운영주체를 민간에서 국가로 대전환하는 의미가 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 이전에는 운수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까지 입국불허 외국인이 공항만에서 대기하는 동안 발생하는 관리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 및 출국대기실을 민간이 운영함에 따라 대기실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대기실 운영 관련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출국대기실 국가 운영을 통해 기내식 등 다양한 식단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고 출국대기실 내 시설 및 환경개선을 통해 송환대상 외국인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문제를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었다.

다만, 이러한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출국대기실이 공항 보안구역내에 있어 환풍·채광 및 충분한 공간 확보가 여의치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소송 제기 등으로 장기대기하거나, 노약자, 영유아 동반자 등의 인도적 처우 향상을 위해 공항 보안구역 밖에 별도의 대기시설 설치가 필요하다.

마. 출국금지제도 개선(출국금지심의위원회 활성화)

출입국심사과 서기관 최병철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가) 2021.7.19. 김홍걸의원 출국금지 제도 관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 강화를 위해 출국금지 제도 개선 관련 법무·검찰개혁위원회(2020.6.8.) 및 국가인권위원회(2020.7.15.)의 권고가 있었으며, 출국금지 조치에 대한 심사 절차, 사후통제 강화를 통한 국민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김홍걸 의원이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의원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 출국금지 대상 명확화 ▲ 통지 유예 기간 축소 ▲ 출국금지 통지 대상 확대 ▲ 이의신청 기간 확대 ▲ 심의위원회 상설화 및 법적근거 법률로 상향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출국금지 제도의 사후통제를 위한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이었다.(위원장을 법무부 차관으로 하고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함)

나) 출국금지제도 개선안

이에 우리 부는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전체위원회와 분야별 소위원회(수사, 조세, 기타)로 나누고 ▲ 이의신청건 ▲ 1년 이상 기간연장건 ▲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건을 심의하고, 위원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6인 이내의 위원(소위구성에 따른 증가)으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 표 2-118 | 출국금지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검 찰	5,569	5,539	7,268	11,598	14,506
경 찰	2,325	2,525	3,293	3,167	3,977
관세청	66	78	63	32	71
국세청	6,503	2,220	1,994	728	811
병무청	253	159	90	123	117
보호관찰기관	-	-	4,292	8,951	6,936
기 타	376	681	23,457*	665	530
계	15,092	11,202	40,457	25,254	26,948

* '20년 '기타' 출국금지자 중 22,613명은 코로나19 관련자임

2) 평가 및 발전방향

가) 현재 동 법안은 국회 법사위 1소위에 계류 중이며, 법안 통과 시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조직 등을 정비하여 전문성있는 심의를 할 예정이다.

나) 출국금지심의위원회가 활성화 되면 출국금지 이의신청건 뿐만 아니라 1년 이상 기간연장건도 심의함으로써 본인의 규제 사실을 모르거나 구제절차를 몰라 기본권을 침해 당하고 있던 사람을 선제적, 적극적으로 구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 출국금지를 요청하던 관계기관도 앞으로는 신중하게 출국금지 요청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바. 출입국우대카드 발급 기준 완화

출입국심사과 사무관 최재원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사회 공헌자, 기업인, 외국금융 투자가 등에게 보다 나은 출입국 우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범납세자,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한국전 참전용사 및 직계 자녀 등을 대상으로 2022년 총 11,254건의 출입국 우대카드를 발급하였다.

〈우대 관련 카드 제도 현황〉

가) APEC 기업인 여행카드(ABTC) : 1996. 11. APEC경제장관회의에서 제도 시행을 선언 후 한국, 호주, 필리핀 회원국 간 합의에 의해 1997. 5. 최초 시작되었다. 이 제도는

현재 19개국의 APEC 회원국 기업인에 대해 입국비자 대신 동 카드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역내 무역 및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카드 소지자는 대한민국 뿐 아니라 회원국 입국 시 비자면제 및 전용통로를 통한 신속한 출입국심사를 제공 받는다. 감염병 확산 등으로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된 기간을 ABTC 발급 심사 산정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을 개정(2022. 6. 20.), ABTC 발급기준을 완화하였다. 2022. 12월 말 기준, 19개국의 총 카드 발급 수는 255,156개이며 이 중 한국인에게 발급된 건수는 40,397개로 회원국 중 2위이다.

| 표 2-119 | APEC 기업인 여행카드(ABTC) 현황

(기준 : 2022. 12. 31., 단위 : 개)

국가 / 카드수	중 국	호 주	한 국	싱가폴	홍 콩	베트남	타 이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255,156	40,098	9,714	40,397	44,895	30,200	11,984	6,172	4,767	16,501
일 본	대 만	인도네시아	페 루	칠 레	멕시코	필리핀	브루나이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28,294	14,486	2,005	546	1,641	1,025	403	74	78	1,876

나) 출입국우대카드(Immigration VIP Card) : 국가·사회발전 공헌자에게 사회적 예우를 다하고 교통약자 배려 및 국제교류 증진을 위해 출입국심사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카드 소지자는 출입국 시 동반 3인까지 전용 보안검색대 및 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2013. 12. 시행 후 2022. 12월 말 현재 21,821명에게 출입국우대카드가 발급되었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출입국우대카드 발급을 통하여 사회발전 공헌자 등에게 더 나은 출입국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인들이 보다 자유롭게 교류하며 투자, 무역활동을 할 수 있도록 원활한 APEC 기업인 여행카드(ABTC)의 발급을 통해 국내 수출입 기반 기업의 경제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 국경 안전 강화

출입국심사과 사무관 김영오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014. 3. 발생한 말레이시아 항공기 실종사건의 원인으로

도난·분실여권소지자에 의한 테러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출발지 공항에서부터 위험승객의 항공기 탑승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탑승자 사전확인제도(IPC : I-PreChecking)"를 시행하게 되었다.

2015. 2. 16. 일본 나고야 공항에서 출발하여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국적항공기를 대상으로 처음 시범운영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2017. 4. 1.부터는 국내에 취항하는 모든 항공사를 대상으로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를 전면 시행하였고, 2022. 12. 31. 현재 기준 48개국, 100개 항공사, 185개 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사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2022년 입국금지자 368건, 인터폴 수배자 정보 15건, 분실 또는 무효 처분된 여권 정보 2,654건 등을 포함한 총 116,460건에 대하여 탑승불가를 통보하여 위험인물의 대한민국 입국을 원천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더욱이 2020년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에 따라 감염병 위험지역에서 출발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현지 공항에서 탑승 차단하여 대한민국 영토 진입 전 감염병력 등의 위험 외국인의 선제적 입국제한 조치가 가능하였다.

감염병의 전 세계적 유행으로 국가 간 인력이동의 제약이 큰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필수적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선별적 입국 허용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을 통해 위험 외국인의 입국을 사전 차단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필수인력의 입국 허용 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하여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로 국가 간 인력이동이 제한된 상태에서 필수인력 입국을 지원하고, 안전한 국경을 관리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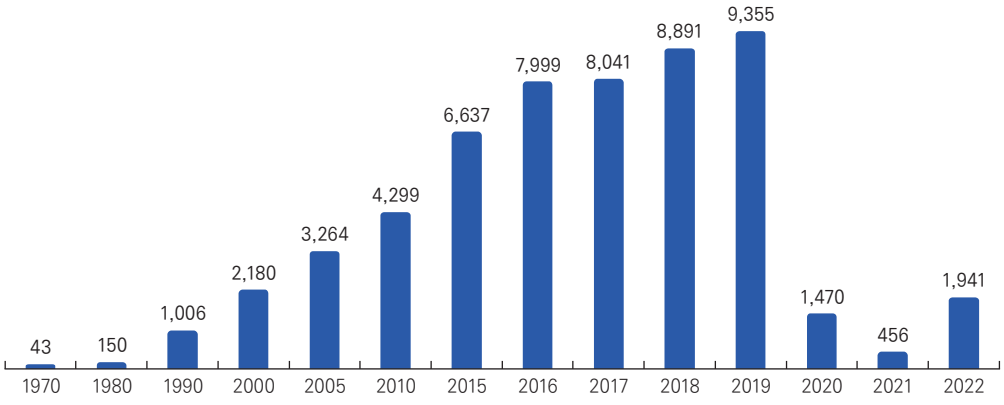
아. 출입국자 현황

출입국심사과 사무관 김영오

2022년도 전체 출입국자는 전년도의 4,559,693명 보다 325.8% 증가한 19,414,228명을 기록하였다. 국민은 12,889,166명으로 전년도 2,432,517명에 비해 429.9% 증가하였고 외국인은 6,525,062명으로 전년도 2,127,176명에 비해 206.7% 증가하였다.

| 그림 2-129 | 출입국자 증감 추이

(단위 : 만 명)



1) 외국인 입국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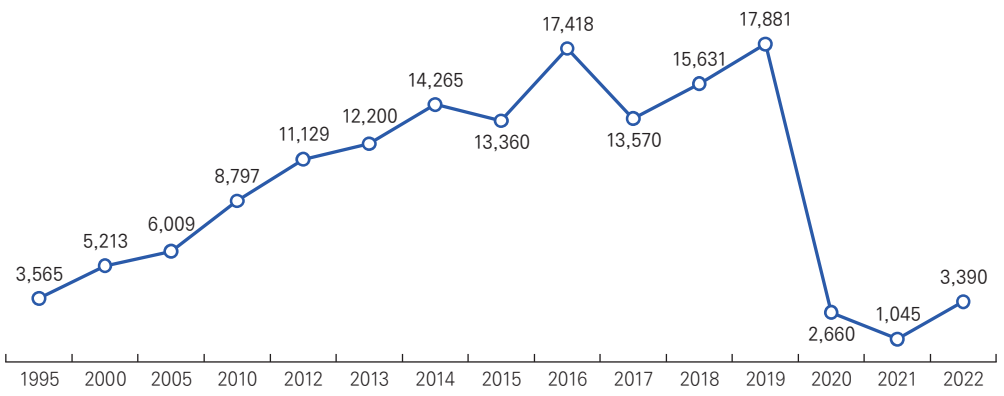
2022년도 외국인 총 입국자는 3,390,009명으로 전년도 1,044,545명에 비해 224.5% 증가하였다.

국적별 입국자 수는 미국 61만 명(18%), 일본 31만 명(9.1%), 중국 25만 명(7.4%), 베트남 24만 명(7.1%) 순이다.

입국목적별로 살펴보면, 관광 및 방문이 205만 명(60.4%)로 가장 많았고, 비전문취업 14만명(4%), 재외동포 12만 명(3.7%), 유학 11만 명(3.3%) 순으로 나타났다.

| 그림 2-130 | 외국인 입국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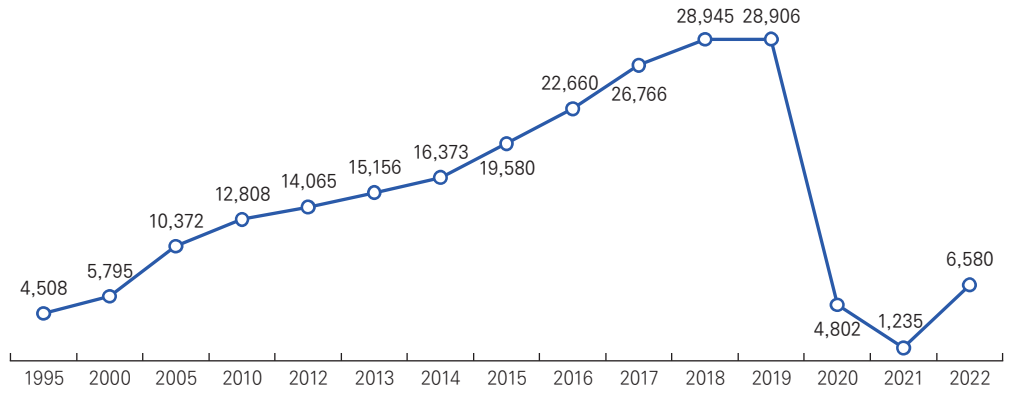


2) 국민 출국자

국민 출국자는 6,580,145명으로 전년도 1,234,697명 대비 432.9% 증가하였다. 2010년 이후 국내 경기회복 및 환율안정 등으로 빠르게 증가하던 국민 출국자는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각국의 입국 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1980년대 이전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였으나, 2022년 코로나19 상황 완화에 따른 전 세계적 방역 관련 조치 해제로 국민의 출국도 큰 폭의 회복세를 보였다.

| 그림 2-131 | 국민 출국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2.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개방적이고 인권친화적인 체류환경 조성

가.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체류 길잡이' 제작

체류관리과 사무관 배덕환, 김원희

1) 추진배경

법무부는 2022. 12. 외국인들의 국내 체류와 정착지원을 위해 대한민국 비자정보가 담긴 지침서인 '맞춤형 체류 길잡이'(이하 '비자 내비게이터')를 전자책 형태로 제작하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그간 법무부는 내·외국인들에게 비자 및 체류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콜센터),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운영해 오고 있었으나, 외국인 등으로부터 여전히 대한민국 비자정보에 대해 쉽게 알지 못하여 불편하고, 비자종류도 많아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2) 추진경과

'비자 내비게이터'는 비자의 종류(37개), 취업 가능범위, 체류 시부터 영주자격 취득 시까지 과정, 민원 신청방법, 자주 묻는 질문, 주요 상담사례와 함께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각종 신고 의무사항 및 주요 법 위반사례 등이 수록되어 있어 외국인에게 국내 체류과정에서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법무부는 2022. 10월에도 동포들을 위한 맞춤형 지침서인 '동포 맞춤형 길라잡이*'를 배포하여 동포들이 국내 체류과정에서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바 있다.

* 동포 비자종류, 주요 취업분야, 동포 가족의 체류절차, 자주 묻는 질문, 주요 상담사례 등 수록

법무부는 앞으로도 체류·비자 관련 안내 및 홍보채널을 다변화함으로써 외국인들이 우리 사회에 빠르게 적응하고 정착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그림 2-132 | 비자 내비게이터 및 동포 맞춤형 길라잡이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체류 길잡이
(비자 내비게이터)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정착지원을 위한
동포 맞춤형 길라잡이

나. 재입국허가 면제 재시행

체류관리과 사무관 배덕환

1) 추진배경

법무부는 국가방역체계 개편에 따라 2020. 6월부터 시행해오던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 의무화 조치'를 중단하고, 2022. 4. 1.부터 '재입국허가 면제'를 재개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재입국허가 의무화 조치' 시행으로 장기체류 외국인의 출입국 절차를 강화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일정부분 기여한 바도 있으나, 동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일각에서는 국내 투자 및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는 등 민원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도 증가하였다.

2) 추진내용

이에 법무부는 국내 체류외국인의 출입국 관련 불편 해소를 위해 재입국절차 간소화 방안을 중대본에 건의를 하였고, 방역당국에서 이를 수용함으로써 재입국허가 면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재입국허가 면제 조치로 2022. 4. 1. 이후 출국하는 등록외국인은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영주권자는 2년 이내) 자유롭게 재입국할 수 있다.

다만 출국한 날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국외 체류 후 재입국하려면 출국 전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재입국허가 가능 기간은 최대 2년까지이다.

한편 2022. 4. 1. 이전에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등록외국인은 기존에 부여받은 재입국허가기간까지 입국하여야 하며, 만약 코로나19로 인해 기간 내 입국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미리 재입국허가기간을 연장받아야 한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내 체류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 관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다.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전문인력 비자제도 개선

체류관리과 사무관 박지원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가) 조선업 활황기를 맞아 외국인력 수급 지원 필요성 증대

2022년 한국 조선업은 3년 치 일감을 미리 확보하며 호황기를 맞았으나, 내국인 기능인력의 지속 유출로 조선분야 생산인력 부족 현상이 극심하였다. 수주물량 증가 대비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조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기능인력(E-7) 비자 발급 요건 개선으로 조선업계의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지원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었다.

나) 조선분야 전문인력 비자제도 개선

법무부는 2022. 4. 19. 특정활동(E-7)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을 개정하여, 조선분야 전문인력 비자 발급 요건을 대폭 개선하였다. 먼저, 조선용접공, 도장공에 적용되던 쿼터제를 폐지*하여 업체 당 내국인의 20% 이내에서 외국인 기능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두 번째로, 복잡한 선발절차로 인력 수급 실효성 및 적기 인력 채용을 저해하던 조선 용접공 도입 절차를 수요업체 중심으로 간소화하였다. 한편, 2022. 11. 1. 조선 분야 용접공 고용이 가능한 업체의 범위를 확대하여, 내국인 구인난을 겪고 있는 조선 기자재 업체도 외국인 용접 기술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마지막으로, 2022. 12. 26. 조선용접공 고용업체의 업력 기준을 3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한 신생 기업도 외국인 용접공을 초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법무부는 조선업계 인력 수급난 완화에 기여하면서도, 기업이 전문성을 갖춘 외국인 기능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였으며, 향후에도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하여 조선분야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기존에는 용접공은 누적 체류인원 총 600명 이내에서, 도장공은 연간 신규 근로자 300명 이내에서 도입 허용

다) 신속한 입국 지원

2022. 7월, 12월 두 차례에 걸쳐 조선업계 종사 외국인력의 사증발급인정서, 사증이 신속하게 발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기존에는 통상 각각 4주 이상 소요되던 심사 기간을 사증발급인정서 심사 1주 이내, 사증 발급도 1주 이내로 처리할 수 있도록 단축하여, 조선분야 인력이 적기에 산업 현장에 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표 2-120 | 조선분야 외국인 기능인력(E-7) 증가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20년 12월	2021년 12월	2022년 12월
도장, 전기, 용접, 플랜트공	389	720	1,382

라. 우수인재 유치 지원

체류관리과 사무관 박지원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가) 우수인재 유치 확대 필요

저출산·고령화의 여파로 생산연령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해외 우수인재의 적극 유치는 국가 경제 성장의 원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이다. 따라서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유연한 비자 제도의 운영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이다.

나) 첨단분야 인턴비자(D-10-3) 신설

2022. 8. 8. 첨단분야 인턴비자를 신설하였다. 기존에는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이나 국내 유학생에게만 인턴 활동을 허용하였고, 해외 대학 재학생은 국내 기업 인턴활동을 할 수 없었다. 그동안 한국의 위상 제고로 졸업 전 한국에서 인턴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 학생들의 수요와 국내 정보기술(IT) 기업 등이 외국인 대학생들을 인턴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었으나, 이를 허용하는 비자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인재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첨단분야 인턴비자 신설을 통해, 잠재적 우수인재에게 한국기업 근무와 한국 생활을 경험할 기회를 부여하여 우수한 인적자원을 선점하고자 하였다. 또한, 미래 우수인재에게 한국의 기술과 문화를 전파하여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시에도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첨단분야 인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국내 유학, 취·창업을 원하는 경우 비자 취득 요건을 우대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성화 및 중소 벤처기업 우수인재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다) 네거티브 방식의 전문 취업비자(E-7-S) 신설

법무부는 2022. 12. 28. 네거티브 방식의 전문 취업비자 신설을 발표하였다. 그간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는 93개 직종*에 한하여 비자 발급을 허용하였으나,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이 생겨나는 산업 및 직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 일정 점수요건을 충족한 첨단산업분야 종사 예정자**와 고소득자(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GNI) 3배 이상)는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 직종에 상관없이 폭넓게 비자 발급을 허용하였다. 다만, 제도의 취지를 남용하여 국민 대신 저임금 외국인을 편법적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첨단분야에서 신설하는 비자의 경우 비자발급 요건 중 임금 기준을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으로 강화하였다.

*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및 특정활동(E-7) 비자 87개 직종

**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 종사자의 소득, 나이, 학력, 한국어능력 등을 점수로 평가

*** 단순노무, 일반 사무직, 선량한 사회풍속에 반하는 직종 등

마.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체류관리과 사무관 최준호

1) 추진배경

법무부는 농어촌의 고질적 인력난, 구인난을 해소하고 필요한 기간 만큼만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계절적으로 외국인을 단기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를 2017년부터 본격 시행하였다.

| 표 2-121 | 계절근로제 연도별 운영 현황

구 분	2015 ~ 2016년 (시범운영)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운영인원	219	1,085	2,824	3,497	223* (국내 체류자)	1,847 (국내 체류자 1,288 +해외입국자 559)	12,027 (국내 체류자 1,397 +해외입국자 10,630)

* 2020. 2월부터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시적 계절근로자 제도” 시행

그러나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입국 계절근로자가 2020년 0명, 2021년 559명에 불과할 정도로 해외 인력 수급이 어려워졌으며, 무단이탈하는 계절근로자도 발생하여 농어가의 인력난이 더욱 심해졌다.

2) 추진성과

코로나19에 따른 각국의 출입국 규제가 점차 완화됨에 따라 국내 100개 지자체에 총 10,630명의 계절근로자가 해외에서 입국하였고, 한시적으로 허용해오던 국내 체류 외국인의 계절근로 참여를 상시 허용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 1,397명이 계절근로에 참여하는 등 2022년 한 해에 총 12,027명의 계절근로자가 농어가의 일손을 도왔다.

농어가의 계절근로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고용 허용 업종 및 국내 참여가능한 체류자격, 고용주 1인당 고용인원 등을 확대하였고, 계절근로자의 근무처 변경허가 수수료를 면제하여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고 유연하게 근무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2. 3.부터 농협에서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숙식을 제공하며 농어가에 일일단위 단기인력을 제공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3개 지자체에서 시작하였고, 하반기 2개 지자체가 추가되어 총 5개 지자체에서 계절근로자 190명이 참여하였다. 공공형 계절근로는

기존 제도가 숙식 제공이 어려운 영세 농어가나 단기 인력이 필요한 농어가는 이용이 어려웠던 점을 보완하고 이용료가 저렴하여 농어가로부터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어, 2027년까지 17개 지자체로 순차 확대하려던 당초 계획을 앞당겨 2023년 19개 지자체로 조기 확대하기에 이르렀다.

2022. 9. 국무총리 주재 제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농업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안정적인 인력선발·유치를 위해 지정기관이 지자체를 대신하여 MOU 체결업무 대행 등 계절근로자 유치·관리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조기에 확대하고 근로자의 근무처 변경 요건을 완화하여 근로자의 탄력적 배정과 고용이 가능하게 하며, 체계적 인력관리를 위해 통합인력관리플랫폼을 구축·활용하고, 비자정책적 유인 제공 등을 통해 장기간 근속을 유도하는 등 중장기 제도 발전 방향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어 2022. 12. 법무부 및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2023년도 상반기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전국 124개 지자체 27,778명에 달하는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확정하여 농어촌 일손 부족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였다.

3) 평가 및 발전방향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인력 도입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속적인 계절근로제도 확대·개선을 통해 참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농어가의 계절적 인력난 부족 해소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참여 규모 확대에 따라, 특정 국가에서 이탈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법무부는 국내외 지자체의 계절근로자 사업단계별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부실 관리에 대한 제재 등 사업내실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이탈이 적은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등 국내 연고자 초청 방식을 확대해 나가고, 계절근로자 유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지정 및 계절근로자 인력관리플랫폼 보급을 통해 안정적인 인력공급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바. 코로나19 완화로 단기비자 제한 해제, 전자비자발급 재개

체류관리과 사무관 이주호

1) 추진배경

2022. 3. 10. 방역당국 주재로 개최된 해외출입국 관리 체계 개편* 관련 관계부처 해외유입 상황평가회의의 결정에 따라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2020. 4. 13.부터 잠정 중단하였던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방문(C-3) 및 전자비자 발급을 2022. 6. 1.부터 재개하였다.

* 국가별 방역 위험도에 따라 주의국가(Level 2)와 일반국가(Level 1)로 분류 및 비자발급 제한 기준 개선 등

2) 추진경과

가) 단기방문(C-3) 및 전자비자 발급 재개

코로나19 이후 외교·공무·협정, 주재·투자·무역경영, 인도적 사유 등 필수목적 방문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던 단기방문(C-3) 비자 발급을 일반국가(Level 1)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 친지방문, 상용 활동 등 모든 분야로 확대하였다. 우수인재, 외국인환자, 단체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비자 발급도 2022. 6. 1.부터 재개하였다.

또한 2020. 4. 13.부로 정지되었던 여러 번 방문 가능한 단기 복수비자 효력을 2020. 4. 5.이전에 발급받은 비자로서 그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부활시켰다.

나) 무비자 입국이 잠정 정지된 국가 대상 복수비자 발급 및 단체 전자비자 도입

코로나19로 인해 상호 무비자 입국이 잠정 정지된 국가 중 방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일본, 대만, 마카오에 대하여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2022. 7. 1.부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비자를 개선하였다.

여러 번 방문할 수 있는 복수비자(C-3, 1년 유효)를 발급하고 비자발급 신청 시 신청서, 여권 이외에 왕복항공권만 제출하도록 서류제출을 간소화하였으며 5인 이상의 단체여행객에 대한 전자비자제도를 전산시스템 정비와 국외전담여행사 지정 후 2022. 10. 24.부터 시행하였다.

사.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체류관리과 사무관 이주호

1) 추진배경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지방 인구감소, 지역의 활력저하, 인구의 사회적 유출 등 악순환이 지속되어 외국인 정책 차원에서 대응이 요구되었다. 이에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외국인 정책으로 '지역특화형 비자'를 신설하고 시범운영을 시작하였다.

2)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우수인재 및 외국국적동포에게 체류 특례를 부여하여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법무부와 지자체가 협업으로 추진하였다.

가) 지역우수인재

외국인 유학생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지역 우수 외국인에게 인구감소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하거나 취업·창업하는 조건으로 거주(F-2) 비자를 선(先) 발급하였으며,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의 장은 지역 특성과 수요를 고려하여 외국인력이 필요한 업종·인원을 제안하고, 지역우수인재를 추천하도록 하였다.

나) 외국국적동포

인구감소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는 조건으로 재외동포(F-4) 비자를 선(先) 발급하고, 단순노무 허용 등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의 취업제한을 완화하였다.

3) 추진성과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는 우선 지역민의 수용성이 높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두 차례 공모를 통해 총 9개의 광역지자체와 4개의 기초지자체를 시범사업 운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가) 제1차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운영 지자체 선정(2022. 9. 5.)

2022. 7. 25.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운영 지자체 선정 공고를 하였으며, 선정심사를 거쳐 광역 4개, 기초 2개 등 총 6개의 지자체를 선정하였다.

| 표 2-122 | 제 1차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지자체 선정

(단위 : 개)

선정지자체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총 6개 지자체 - 광역지방자치단체 : 4개 - 기초지방자치단체 : 2개	충청남도(보령시·예산군), 전라북도(정읍시·남원시·김제시), 전라남도(장흥군·강진군·해남군·영암군), 경상북도(영주시·의성군·영천시·고령군)	경기도 연천군, 경상남도 고성군

나) 제2차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운영 지자체 선정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운영 지자체를 확대해 달라는 지자체 건의사항을 수용하여 2022. 10. 18. 추가 선정 공고를 하였으며, 선정심사를 거쳐 광역 5개, 기초 2개 등 총 7개의 지자체를 선정하였다.

| 표 2-123 | 제2차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지자체 선정

(단위 : 개)

선정지자체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총 7개 지자체 선정 - 광역지방자치단체 : 5개 - 기초지방자치단체 : 2개	부산광역시(서구, 동구, 영도구), 충청북도(제천시, 단양군), 전라북도(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라남도(고흥군, 보성군), 경상북도(성주군)	대구광역시 남구, 경기도 가평군

다) 시범운영 및 비자발급 개시

2022. 10. 4.부터 2023. 10. 3.까지 1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며, 2022. 12. 31. 기준 총 55명(지역우수인재 48명, 외국국적동포 7명)이 지역특화형 비자를 발급받았다.

4) 평가 및 발전방향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는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던 기존의 비자 제도와 달리, 지자체가 각 지역의 특수성과 수요를 고려하여 비자 발급 요건을 법무부에 제안하고 지역우수인재를 추천할 수 있어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2023년 하반기에는 1년간의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하고 지자체 등 관련 부처와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를 보완하여 전면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아. 우크라이나인 특별체류 조치

체류관리과 사무관 이주호

1) 추진배경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하여 자국 귀국이 어려운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들을 대상으로 인도적 배려 차원에서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특별체류를 허가하였다.(2022. 2. 28.)

2) 주요내용

가) 합법체류 외국인

체류활동을 마치고 출국하고자 하나 자국 현지 정세 등으로 인해 출국이 어려워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우크라이나 국적 외국인에게 기타(G-1)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취업 활동도 허용하였다.

나) 불법체류 외국인

단순 불법체류자인 경우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를 하지 않고 현지 정세가 안정화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출국기한을 유예하였다.

| 표 2-124 | 우크라이나인 국내 체류 현황

(2022.12.31. 기준, 단위 : 명)

총계	유학 (D-2)	방문동거 (F-1)	재외동포 (F-4)	결혼이민 (F-6)	기타 (G-1-99)	방문취업 (H-2)	그 외
5,205	101	1,154	1,736	216	164	949	885

3) 평가 및 발전방향

우크라이나인에 대한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 시행으로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은 전쟁 위험을 피해 국내에서 안전하게 체류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 부는 우크라이나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계속 시행할 예정이며,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류기간연장이나 취업활동 등에 있어서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자. 재외동포 포용정책 추진

체류관리과 사무관 김원희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위험이 크게 확산함에 따라, 문화적·언어적 동질성이 높은 외국국적동포를 소중한 인적자원으로 인식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정세 영향으로 고려인 동포가족을 포용하고자 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법무부는 외국국적동포의 안정적 국내 정착을 위한 재외동포 포용정책을 추진하였다.

2022년 국내에 체류하는 동포는 약 80만 명이며, 이 중 재외동포(F-4) 자격자는 약 50만 명으로 약 62%에 해당하며, 영주(F-5) 자격자는 12만 명, 방문취업(H-2) 자격자는 약 11만 명이다.

| 표 2-125 | 국내 체류 외국국적동포의 체류자격별 현황

(기준: 2022.12.31. 단위: 명)

총 계	재외동포 (F-4)	영 주 (F-5)	방문취업 (H-2)	방문동거 (F-1)	결혼이민 (F-6)	기 타
804,976	502,451	121,285	105,567	36,587	16,971	22,115
100%	62%	15%	13%	5%	2%	3%

2) 추진내용과 성과

첫째, 2022. 1월부터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동포 아동이 안정적으로 국내에서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재외동포(F-4) 자격변경을 허용하고, 동포 아동과 동거하는 비동포 부친이나 모친에게는 방문동거(F-1) 자격을 허용하였다.

또한, 만 6세~18세 학령기 아동이 장기질병 치료나 중증장애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경우에도 국내 학교 재학 중인 아동에 준하여 안정적 체류지위인 재외동포(F-4)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1년 동안 약 8,657명의 동포 아동이 학습권을 보장받고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우크라이나 동포에 대한 입국 및 체류 지원정책을 추진하였다.

2022. 2. 24.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주변국으로 피난을 간 우크라이나 고려인과 국내 체류하는 우크라이나인의 현지 가족이 전쟁을 피해 가족이 머무는 한국에 입국하고자 하나 전시상황으로 비자 신청서류 발급이 어려워졌다.

이에 법무부는 주변국에 피난 중인 우크라이나 동포와 가족에게 비자 발급서류를 면제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입국을 지원하고, 단기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도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현지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취업을 허용하는 인도적 조치를 시행하였다.

법무부의 이러한 조치로 인해 비자 발급 건수가 급증하여 약 10개월(2022. 3. 8. ~ 12. 31.) 동안 총 3,007명의 우크라이나인에게 비자가 발급되었으며, 3,036명이 입국하였다.

| 표 2-126 |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법무부 조치 언론보도

보도일자	주요 내용
2022. 3. 8.	• 「법무부, 우크라이나 동포·가족사증 발급 대폭 간소화한다」(중앙일보) – 법무부는 외교부와 협의를 통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우크라이나 동포 등에 대한 사증 신청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2022. 3. 29.	• 「법무부, 우크라이나 동포 가족 초청 범위 확대」(KBS) – 법무부는 국내 동포와 국내 연고자의 현지 가족 초청범위를 형제·자매, 조부모까지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2022. 6. 20.	• 「우크라이나 탈출 고려인 난민 400여 명, 광주 고려인마을에 정착」(여성신문) – 고려인 동포들은 한국 입국비자 없이 무작정 우크라이나를 떠났으나, 법무부의 비자 간소화 방침으로 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

셋째, 법무부는 2022. 12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방문취업(H-2)의 서비스업 활동범위를 네거티브(허용제외업종 지정) 방식으로 변경하고 취업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2023. 1월부터 음식점업, 숙박업, 간병 등 인력난이 심각한 서비스업 분야에 방문취업(H-2) 동포 취업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2022. 3~4월, 7~8월 전국 17개 동포밀집지역에 위치한 동포단체 및 법무부 지정 '동포체류지원센터'(11개)를 직접 방문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동포들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2022. 12월 동포체류지원센터 간담회를 실시하여 동포정책에 대한 현안을 공유하고 건의사항을 제도에 반영하는 등 동포지원 민간단체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였다.

| 그림 2-133 | 동포체류지원센터 간담회



동포체류지원센터 방문(2022. 3. 3.)



동포체류지원센터 간담회(2022. 12. 6.)

3) 평가 및 발전방향

법무부는 외국국적동포가 우리사회에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동포들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시켰으며, 동포 아동·청소년들이 교육권을 보장받고 미래사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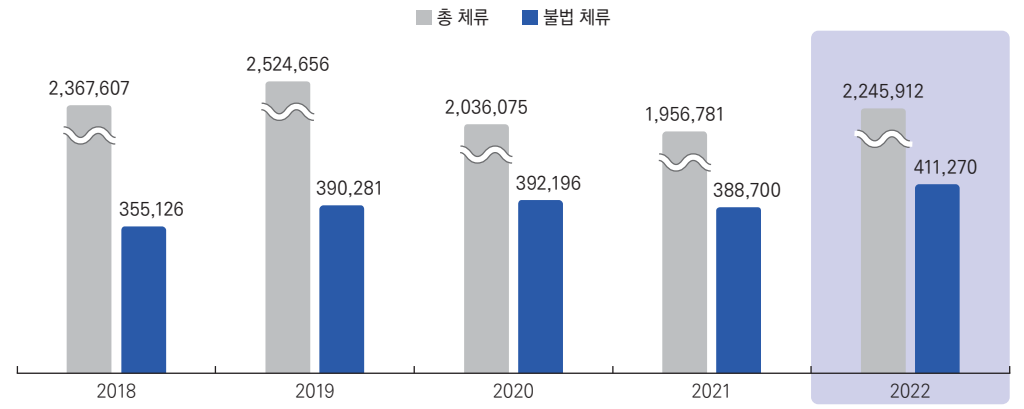
또한 우크라이나 조치 관련, 전쟁의 위험으로 도움이 절실한 고려인 동포와 가족을 위해 적극적인 포용정책을 펼침으로써 동포 인권 보호에 기여하였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재외동포를 우리 미래세대의 구성원으로서 적극 포용하여, 국민과 재외동포가 상생하는 동포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절차 강화 및 보호시설 환경 개선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2022년 상반기까지 지속된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항공편 축소 운항과 세계 각 국의 제한적인 입국 정책이 지속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수 감축을 위한 법무부의 여러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국내 불법체류자 감소에는 한계가 있었다. 더욱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점차 완화되어 2022. 4월부터 잠정 중단된 사증면제 및 무사증 입국이 재개되면서 외국인 입국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 수도 다시 증가하게 되었다.

| 그림 2-134 | 총 체류 및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이에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국 36개 특별단속지역과 55개 외국인 밀집 지역을 지정하였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방역사각지대에 처하지 않도록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한 방역 점검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하였고, 2022년 하반기 코로나19 확산세가 점차 완화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하였다.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과 이민특수조사대에 기획조사 전담반을 상시 운영하여 불법취업 알선브로커 등 주요 출입국사범, 국민안전 분야와 서민일자리 잠식 분야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다.

또한, 외국인 밀집지역내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환경적 요소 유무 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불법고용을 방지하기 위한 계도 활동도 병행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초래 위험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외국인 전용클럽, 마사지 등 유흥업종(6 ~ 7월)과 택배·이사·배달·건설업 등 서민

일자리 잠식 및 대포차 운행 등 국민 안전 분야(9 ~10월)에도 집중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2022년 하반기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완화됨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에 대해 범정부 차원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법무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국경·체류·안전 실무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부합동단속 재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10.11.~12.10.)을 재개하는 등 불법체류 외국인수 감축을 위해 노력하였다.

2022. 12월 현재 불법체류 등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98,350명 가운데, 강제퇴거 10,196명(10.4%), 출국명령 28,585명(29.1%), 출국권고 2,067명(2.1%) 등 출국조치 된 외국인은 총 40,848명이며, 고발된 사람은 1,478명(1.5%), 그 밖에 통고처분(과태료) 후 체류허가 등의 조치를 받은 사람은 총 56,024명(57%)이었다.

| 표 2-127 |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처리 현황

(단위 : 명)

연도	총계	강제퇴거	출국명령	출국권고	고발	기타
2020	118,829	11,843	44,597	2,100	2,605	57,684
2021	121,225	9,986	29,567	2,922	1,304	77,446
2022	98,350	10,196	28,585	2,067	1,478	56,024

※ 기타 : 통고처분 후 체류허가 등

* '23년부터 통계산출 방식 변경으로 기존 통계수치와 일부 상이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코로나19 확산세 완화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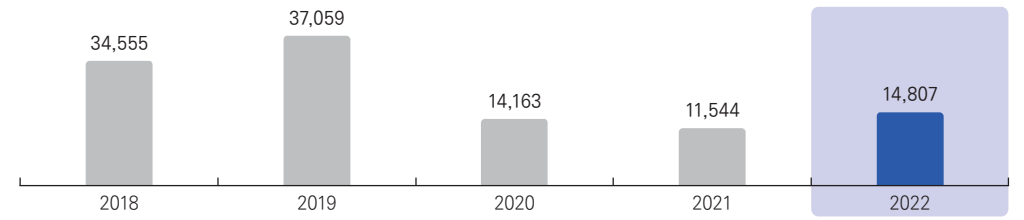
이민조사과 주무관 신철승

2022년 초반에는 오미크론 신종 변이 확산에 따른 외국인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코로나19 무료 검진과 백신접종 독려를 위한 계도 및 자진출국유도 등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3차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의 혜택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제도(2022. 1. 25 ~ 10. 31.)를 시행함으로써 불법체류 외국인이 안심하고 백신접종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불법체류 외국인의 백신 접종률을 크게 상승시키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하였다.

※ 2021. 8. 28.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접종 완료율은 5.7% 불과, 2023. 2. 6. 기준 2회 이상 접종 완료율은 94.0%로 향상, 방역사각지대 예방에 기여

2022년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상황 완화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활동을 점차 강화하여 2022년 한해 불법체류 외국인 등 14,807명을 적발하여 본국으로 강제 송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2022년 상반기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단속활동이 위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정부합동을 재개하는 등 점진적으로 단속활동 강화하여 단속실적은 전년대비 28.3% 증가하였다.

| 그림 2-135 | 불법체류 외국인 적발 현황



2022년도에도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대책」의 시행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하거나 단속된 경우 범칙금 부과 등으로 외국인 체류 질서를 확립하였고, 2022.2월부터는 3차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자진출국을 적극 유도하는 등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를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2022년도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그간 잠정 중단된 관계부처 정부합동단속을 재개하였다. 총 530명이 참여하여 2개월간(10.11.~12.10.) 외국인 범죄 및 유흥업소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분야와 택배·배달대행 등 국민 일자리 잠식 업종 등을 집중단속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3,865명, 불법고용주 483명을 적발하는 등 불법체류 문제에 범정부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정부의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코로나 영향으로 국제 항공편 운항이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의 해택을 부여하는 특별 자진출국 운영 방안('22.11.7~'23.2.28)을 정부합동단속과 병행하여 시행함으로써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자진출국을 적극 유도하였다.

한편 2022년 8월에는 단속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및 안전사고 예방, 외국인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방문 조사시 주거권자 등의 동의 절차를 규정한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을 개정하고, 단속 거부 및 상습 불법 고용주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영장을 통한 엄정한 법 집행이 가능토록 출입국사범 단속체계를 개선하였다.

| 표 2-128 | 자진출국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1 대비 2022 실적
자진출국자	64,814	71,663	55,260	32,867	32,026	841↓ (2.6%↓)

2) 기획조사 및 유흥·마사지 업종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집중단속

이민조사과 주무관 빈중찬

2022년도 기획조사를 추진한 결과, 불법입국 및 취업 알선자 등 1,980명(593건)을 적발하여 그 중 54명을 구속, 321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899명을 강제퇴거 하는 등 출국조치 하였다. 주요 사례로는 이슬람 극단주의 추종 외국인 41명 검거, 미국에서 음주폭행, 음주운전 치사 범행 후 국내로 도피한 인터폴 수배 미국인 검거, 불법·무면허 유상운송 태국인 일당 구속, 중국인 140명을 종교박해 사유로 허위 난민신청 알선한 중국인 브로커 구속, 속칭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여 우즈베키스탄인 101명을 무역상인 것처럼 허위초청한 한국인 브로커 구속,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이수증 3,369매를 위조하고 불법취업을 알선한 베트남인 브로커를 구속한 사례 등이 있다.

또한, 2022. 6월~7월, 2개월 동안 유흥·마사지 업종 불법취업 외국인 및 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외국인 642명, 알선 브로커 11명, 불법 고용주 234명 등 총 887명을 적발하여 12명 구속, 24명 불구속 송치, 534명 출국조치(강제퇴거518, 출국명령16), 218명을 범칙금 처분, 99명은 고발 등 조치하였다.

기획조사 활성화 및 효율적인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조사과장 회의를 개최하고, 체류외국인 동향조사·사범·보호 기법연구 발표회, 유관기관·단체 초청 간담회 등을 통한 동향조사 기법 및 관련 정보 공유로 기획조사를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불법체류 유발 환경 차단 및 외국인 밀집지역과 취약시설에 대한 순찰·단속을 통해 국민 불안 요소를 해소하여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노력하였다.

| 표 2-129 | 기획조사 추진 실적

(단위 : 명)

구분 / 연도	계		위변조 여권		허위초청		불법취업		기타	
	건	인원	건	인원	건	인원	건	인원	건	인원
2021년	522	1,099	27	72	24	33	120	290	351	704
2022년	593	1,980	17	17	52	76	172	1,067	352	820
전년대비(%)	113.6	180.2	63.0	23.6	216.7	230.3	143.3	367.9	100.3	116.5

3) 개방형 보호시설 운영 및 외국인보호규칙 개정 등 인권보호 강화

이민조사과 주무관 고성훈

2022. 4월 화성외국인보호소 여성보호동의 일부를 개방형보호시설로 전환하여 인권친화적으로 시설을 개선하고, 보호외국인에 대한 처우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철창을 제거하고 주간에 운동장을 상시 개방하여 보호동 내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였으며, 인터넷PC, 휴대폰 사용공간을 별도로 마련하여 외부소통 및 정보접근권을 보장하였다. 자동판매기, 건조기, 도서 등을 비치하여 외국인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는 인권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였다.

외국인보호시설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방역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보호외국인 전용 생활치료센터를 지정·운영하였으며, 보호시설 내에서 발생한 총 165명의 확진자를 격리 보호 조치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외국인보호소 방문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법무부 인권국의 5개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에도 성실히 임하였다.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및 외국인보호소에 보호외국인 고충상담관을 지정·운영하여 강제퇴거를 앞둔 보호외국인의 권익을 보장하고 이들의 체불임금 271건, 의료구호 5,465건 등의 고충을 적극 처리하였다.

단속·보호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보호시설 출입국관리 공무원 3명을 국군의무사령부의 응급구조사 양성교육과정에 파견하여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2022. 12월 보호외국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특별계호제도 개선, 인권보호관제도 도입, 보호장비의 종류 및 사용절차에 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보호규칙을 개정하였다.

4.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의 효율화 제고를 통한 이민자 권익 증진

가. 영주·귀화자 대상 맞춤형 교육과정 마련

이민통합과 사무관 홍동우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게 될 거주 및 영주자격 등 정주형 체류자격 외국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귀화자도 꾸준히 1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어, 이들의 지역사회 통합에

대한 요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법무부는 영주 및 귀화 신청을 준비하는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 수요 조사를 실시, 대상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마련하였다.

경미한 법 위반사항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준법시민교육, 이공계 특성화 기관 유학생·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우수인재 시민교육, 국적증서 수여식 참여자 대상 국민의 권리와 의무 안내 등의 국적취득예정자 시민교육 등 대상별로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2022. 7월부터 각 지방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교재에는 영주·귀화자의 권리와 의무, 생활정보, 17개 시·도별 지역특화정보를 담아 제공하고 있으며, 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강사, 지역별 유관기관 강사 등 교육과정에 맞게 강사풀을 구성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영주권자 및 귀화자가 각 지역사회에 소속감을 갖고, 우리 사회에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한 이민통합 정책을 개발·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나. (법무부-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외국인정책협의회 개최

이민통합과 사무관 홍동우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2019. 7월,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공유 및 체류외국인 증가에 따른 외국인 밀집지역 관리,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 맞춤형 정책추진을 위하여 법무부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반기별(4월, 10월) 1회 양측이 교대로 회의를 개최하며, 2022. 4월 법무부 이민통합과 주관으로 제6회 외국인정책협의회를, 10월에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회장도시:시흥시) 주관으로 제7회 외국인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외국인 주민이 1만명 이상 거주 하거나 전체 주민 중 외국인 주민의 비율이 3%를 초과하는 27개 기초자치단체로 구성

| 그림 2-136 | (법무부-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외국인정책협의회 개최



제6회 외국인정책협의회(2022. 4. 29.)



제7회 외국인정책협의회(2022. 10. 7.)

2) 평가 및 발전방향

국내 체류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정책 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업과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더욱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컴퓨터기반평가(CBT) 도입

이민통합과 사무관 전강섭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국내 체류 이민자의 사회통합 촉진을 목적으로 2009년부터 시행된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지난 13여년 간 이민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 기관의 노력으로 꾸준히 성장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입국자 수 감소와 집합교육 및 기본소양 평가 중단으로 참여자 수가 감소하는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에 법무부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기존 집합에 의한 대면교육 방식에서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 방식으로 빠르게 전환하여 운영하였으며, 컴퓨터 기반평가(CBT)를 도입하여 평가방법을 다양화하였다.

소규모 상시 평가로 운영되는 컴퓨터 기반평가(CBT)는 감염병 예방에 취약하고, 시·공간의 제약이 큰 대규모 집합평가의 한계를 보완하였으며, 2022. 3월 사전평가를 시작으로 2022. 8월 귀화용 종합평가로 확대하여 국내 체류 이민자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및 평가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및 평가 기회를 확대하여 이민자가 우리사회 구성원으로서 빠르게 적응·자립할 수 있도록 컴퓨터 기반평가(CBT) 장소를 추가 설치하고, 중간·영주용 종합 평가까지 평가 종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그림 2-137 | 사회통합프로그램 컴퓨터기반평가(CBT)센터



컴퓨터기반평가(CBT)센터 내 필기시험 평가장



컴퓨터기반평가(CBT)센터 내 구술시험 평가장

라. 결혼이민자 전혼(前婚)관계 출생자녀를 위한 지침 제정

이민통합과 사무관 김은호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의 기조를 반영하여 결혼이민자의 전혼(前婚) 관계 출생자녀를 위한 지침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전혼관계 출생 자녀의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게 하되, 공교육 인정대상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1회 2년의 체류기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공교육 진입을 유도하였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전혼관계 출생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더라도 대안학교나 일반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방문동거(F-1) 자격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기간도 종전의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그간 개별 지시공문으로 체류를 허가해 온 결혼이민자 전혼관계 출생자녀에 대한 지침을 제정함으로써, 명확하고 통일적인 업무처리를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체류허가 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교육기관 진학 시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이민배경 자녀들에 대한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하고 이들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마. 결혼이민 지침 및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본국 가족 관련 지침 정비

이민통합과 사무관 김은호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결혼이민자가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상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자에 준하여 2년의 체류기간을 부여하도록 하였고, "2023년 가구수별 소득요건 기준금액" 및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소득추정 시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변경하는 등 결혼이민 자격과 관련한 요건 중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였다.

한편,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이 결혼이민 자격이 아닌 재외동포(F-4) 등 다른 자격으로 체류 중인 경우에도 부모 등의 가족을 초청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부모 등의 가족이 국내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입국규제 기간을 준용함으로써, 사증발급 제한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결혼이민자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결혼이민자의 체류권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였다. 또한, 부모 등 가족에 대한 초청범위 확대를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보다 폭넓은 양육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결혼이민자의 체류권 보장과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바. 아프간 특별기여자 국내 정착 지원

이민통합과 사무관 최민수

1) 추진 배경

2021. 8월 말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한국대사관, 한국병원, 한국직업훈련원 등에서 우리 정부에 조력하였다는 이유로 생명이 위험했던 아프간 특별기여자 391명(79가구)이 '미라클 작전'을 통해 국내에 입국하였다.

특별기여자 입국 후 이들의 우리 사회 정착과 자립을 위해 체류 안정화, 복지, 교육, 취업 등 범정부차원의 협업과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2) 추진 경과

법무부는 외국인정책 총괄부서로서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의 국내 정착을 전담하였다. 2021. 8월 말부터 약 6개월 동안 진천 및 여수에서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며, 의료지원, 심리상담과 더불어 한국어와 한국사회이해 등 기초적응교육을 실시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체류 보장을 위해 법령을 개정하였으며,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취업 연계와 진학을 지원하였다.

2021. 11월 법무부차관을 단장으로 법무부 외에도 교육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정부합동지원단'을 구성하여 취업, 생활, 교육, 의료 등 보다 체계적인 정착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정부 주도의 정착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협력플랫폼'을 구성함으로써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지역사회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1:1전담 멘토링, 취업연계, 한국어교육 등 국내 생활 전반에 걸쳐 도움을 주었다,

3) 평가 및 향후 계획

2022. 10. 31.부로 '정부합동지원단' 운영은 종료되었으나, 아프간 특별기여자 정착 지원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다. 법무부 이민통합과에서는 모니터링 현황점검, 관계부처 협의 및 법령적 검토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정착지 관할 출입국관서에서는 정착지원 일반업무(실무협의체 운영, 취업연계, 의료지원 등)를 수행하고 있다.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국내 정착 지원은 초유의 범정부 협업과제로, 2022년 정부혁신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으며, 국회, 정부기관 협업, 민간 기업·단체·국민의 참여 등 범국가적 협력을 통해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우리 사회 적응과 안정적인 정착을 실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사. 제15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이민통합과 사무관 최민수

2022. 5. 20. 법무부는 "제15회 세계인의 날"을 맞이하여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 IOM(국제이주기구) 한국대표부 대표 등 외교사절과 이민자 정착지원 및 국민과 이민자의 사회통합에 기여한 유공자,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천정부청사에서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한동훈 장관은 기념사에서 "외국인 정책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가 선진화된 이민법제와 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 사회와 지역 경제에 동력이 될 수 있는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적재적소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외국인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1961년도에 입국하여 경북 칠곡에 자리 잡아 의료봉사를 시작한 후 국내 한센병 환우들의 완치를 위하여 헌신적인 봉사와 노력을 기울인 오스트리아 출신 사단법인 릴리회 명예회장인 '엠마 프라이싱거 여사'(한센인의 어머니)가 올해의 이민자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밖에 사)꿈을이루는사람들 장영기 대표이사, 천주교제주교구이주사목센터(단체)가 대통령 표창을, 한국이민재단 김찬기 국장, 양주사회통합지역협의회 조창섭 회장, 고려인마을가족카페 텐올가 발레레브나 대표와 사)무지개뜨는언덕, 서산시가족센터, 제주글로벌센터 등 3개 단체가 외국인 정착 지원 유공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원청 이민자네트워크 김옥실 회장 등 4명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단체)이 이민자 사회통합에 기여한 공로로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또한 인종, 국적을 초월한 '세계속의 우리'에서 '우리 속의 세계'로 개념을 확장, 한국사회에 정착 자립하여 살아가고 있는 이민자를 통해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의 얼굴'이라는 주제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상영하였고,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국내 정착 감회, 우즈벡 출신의 고려인 동포 지원 활동, 스리랑카 출신 이민자의 국내 정착과 봉사활동을 내용으로 '미담사례' 발표의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이날 미국, 필리핀, 루마니아 등 다국적 출신의 사물놀이단의 공연과 안나 예이츠(독일) 교수 등 4명으로 구성된 소리꾼들의 흥부가 박타령 협연, 수원대 외국인 유학생 및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이민자 네트워크로 구성된 중창단의 합창 등은 기념식을 한층 다채롭고 풍성하게 만들었다.

한편, 기념식은 실시간으로 유튜브에 생중계되어 기념식에 참여하지 못한 내·외국인도 온라인을 통해 기념식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국가 출신의 성공적인 국내정착 및 모범사례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국민과 재한외국인의 '공존과 자립, 나눔'의 메시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다.

| 그림 2-138 | 제15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2022. 5. 20.)



법무부장관 기념사



유공자 정부 포상



재한외국인 중창단 합창



폐회 및 기념촬영

5. 국민이 공감하고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국적정책 추진

가. 국적증서수여식 개최를 통한 국적취득자의 국민정체성 함양

국적과 사무관 정금심

1) 추진배경 및 경과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은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 또는 국적회복증서를 수여받을 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적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9. 1. 21. 최초로 국적증서수여식(국립한글박물관)이 개최된 이래,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수여식' 제도를 통해 새로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약 5만 여명에 이르고 있다.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수여식'은 전국 19개 출입국·외국인관서 및 재외공관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방식의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수여' 방식이

최초로 도입되었다. 그 결과 연중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이 지속되었음에도 2022년 13,187명이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를 수여받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특히 올해는 특별공로자 국적 수여 10년이 되는 해로서 '선한 영향력이 있는 숨은 유공자 발굴 프로젝트'를 기획하였고, 평생을 낮은 자세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봉사하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헌신한 우리 사회의 숨은 유공자들을 발굴하여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하였다.

이 날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라는 별칭처럼 평생을 청빈과 겸손의 삶을 실천하며 한국 교육 발전과 인재 양성에 공헌한 웬트워스 주니어 웨슬리 선교사(미국), 제주 예멘인의 안정적 국내 정착과 의료 지원에 공헌한 갈 크리스티나 에벨리나 수녀(루마니아), 네팔 근로자 등의 국내 적응 및 안정적 정착 지원 등 사회통합에 공헌한 타망 다와 치링 스님(네팔)등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2012년 인요한 박사(미국)가 최초로 특별공로자로 인정받은 이래 총 12명의 특별공로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

이에 더하여 올해에는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들의 위대한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그 후손이 대한민국 국적을 받아 온전히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자리를 축하하고자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서대문구 소재)에서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 날 법무부장관은 환영사에서 "자신의 목숨보다 나라를 귀히 여기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 분골쇄신했던 선조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전한다"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당당히 살아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자 도리"라고 하였다.

이번 행사로 계봉우 선생 등 독립유공자 11인의 후손 20명이 특별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대한민국 국민이 된 김유리(독립유공자 강연상 선생의 외증손)는 "할아버지의 독립활동을 잊지 않고 기억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였고, 김나탈리아(독립유공자 조명희 선생의 현손)는 "할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아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당당히 살아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 그림 2-139 | 8·15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2022. 8. 11.)



독립유공자 후손 기념촬영



법무부장관 환영사

2) 평가 및 발전방향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수여식은 시행 후 4년을 맞이하였으며 올해 기획한 '특별공로자 국적증서 수여식'과 '8·15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수여식'은 다수의 언론에 보도되어 국민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2020. 3. 코로나19 심각단계 상향 이후 대규모의 국적증서수여식 행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여건이었으나, 국적법에 따른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면서도 감염병 전파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대면 또는 개별방문 국적수여 방식 등을 통해 국적신청자가 국적취득이 지연되지 않도록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였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적취득자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민의 국적취득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뜻깊은 국적증서 수여식 행사를 지속적으로 기획하고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나.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국적과 사무관 정금심

1) 추진배경 및 경과

그 간 국내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우수 외국인재라고 해도 영주권·국적 취득까지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 6년 이상 소요되는 등 국내 정착에 어려움이 있어 카이스트 등 학계에서는 과학·기술 우수 외국인재에게 안정적 국내 정착 기회를 제공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왔다.

이에 법무부는 국내에서 수학한 외국 과학·기술 우수인재가 학위취득 이후 한국사회에서 영주와 국적을 신속하게 취득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이하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였다.

우선 2021. 12월 시범 시행을 통해 카이스트 등 이공계 특성화기관 석·박사 학위 취득자가 취업조건 없이 거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시범 시행기간 동안 이공계 특성화기관(KAIST, DGIST, GIST, UNIST, UST) 담당자와 핫라인 구축, 찾아가는 간담회 등을 통한 현장 요구사항을 청취하였다. 또한 SNS를 활용한 온라인 소통공간 개설 및 상담, 온·오프라인 제도 설명회 및 영주·시민 통합교육도 진행하였다. 법무부는 위와 같은 꾸준한 검토와 의견 수렴을 과정을 거친 후 2022. 12월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통합 지침」을 제정하였다.

| 그림 2-140 |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홍보



카이스트 패스트트랙 설명회(2022. 11. 17.)



패스트트랙 홍보 리플릿

패스트트랙 제도는 카이스트 등 이공계 특성화기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의 경우 총장 추천 시 '거주자격', 연구경력, 실적 등이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영주권', 연구실적이 우수하면 국적심의위원회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받을 수 있는 제도(우수인재 특별귀화)이다. 이 패스트트랙의 시행을 통해 카이스트 등 이공계특성화기관 석·박사 학위 취득자는 3단계 절차로 3년 만에 영주권·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 4-5단계(석·박사→전문직→거주→영주→일반귀화) ➡ 3단계(석·박사→거주→영주·특별귀화)

2) 평가 및 발전방향

법무부는 이번 패스트트랙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외국인재들이 영주·귀화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온라인 소통 플랫폼 운영, 맞춤형 정착·지원 서비스 등을 통한 올바른 영주·귀화 정보 제공 등 우수 외국인재가 한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발전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다. 수요자 중심의 국적 제도 개선

국적과 사무관 홍창기, 김종승

1) 추진배경 및 경과

2020. 9. 24. 헌법재판소는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시점(만 18세 되는 해 1월1일)부터 3개월 이내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 해소 전까지 일률적으로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하였다.

이에 법무부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2022. 9. 1. 국회 통과되어 2022. 10. 1. 개정 「국적법」이 시행되어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시점(만 18세 되는 해 1월1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국적이탈제도가 개선되었다.

이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시점(만 18세 되는 해 1월1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하였더라도 기간 내 국적 이탈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주된 생활의 근거지를 외국에 두고 있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와 동시에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결정 시 복수국적자의 주된 거주지, 병역의무 공평성과 조화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판단할 예정이다.

* 출생지 및 복수국적 취득경위, 주소지, 주된 거주지가 외국인지 여부, 대한민국 입국 횟수 및 체류 목적·기간,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 행사 여부, 복수국적으로 인하여 외국에서의 직업 선택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 여부,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과 조화 여부 등

2) 평가 및 발전방향

개정법 시행으로 국민의 국적이탈의 자유 보장과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확보를 조화롭게 달성하는 균형있는 국적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국적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통해 국적 민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한편, 효율적이고 신속한 업무처리 방식을 모색하여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해 나갈 계획이다.

3) 국적업무 처리현황

귀화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국적법상 법률행위이며 국적회복이란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국적 취득 등으로 우리 국적을 상실하였다가 다시 우리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귀화신청은 2017년 17,765명에서 일반귀화 신청 시 종전에는 외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으면 일반귀화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고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 일반귀화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개정 국적법 시행(2018. 12. 20.)을 앞두고 폭증하여 2018년 22,153명에 이르렀다. 2019년에는 16,852명으로 다시 예년 수준으로 돌아갔으며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19가 대유행하였음에도 전년도와 비슷한 16,529명, 2021년 ~ 2022년에는 18,000명대를 유지하였다.

법무부는 이러한 외국인의 귀화 신청 건수의 증가에 따라 2022년에도 꾸준히 귀화심사 T/F팀을 유지하며 귀화 신청에 대하여 집중 처리하는 한편,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면서도 우리 국적을 원하는 외국인이 조속히 국적을 취득하여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한 방식의 국적증서수여식을 운영하여 총 13,187명의 외국인이 귀화(10,171명) 또는 국적회복(3,016명)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 표 2-130 | 유형별 국적취득(귀화,회복) 현황

(단위 : 명)

종류별 / 연도별	총 계		귀화		국적회복	
	신청	허가	신청	허가	신청	허가
2017	20,244	12,861	17,765	10,086	2,479	2,775
2018	25,014	14,254	22,153	11,556	2,861	2,698
2019	19,952	12,357	16,852	9,914	3,100	2,443
2020	18,899	15,649	16,529	13,885	2,370	1,764
2021	21,160	13,636	18,091	10,895	3,069	2,741
2022	22,789	13,187	18,079	10,171	4,710	3,016

라. 향후 추진계획

2023년에는 개정 국적법에 따른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해로서, 병역의무의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국적이탈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도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과학·기술 우수 외국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 발전시켜 우수한 외국 인재가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며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미래 국가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6.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난민정책 추진

가. 추진배경

전쟁 발발, 내전의 장기화 및 그로 인한 정치·경제 상황의 불안정 등 2022년에도 국제정세 불안으로 인해 전 세계 난민 발생 위기 상황은 가중되었으며, 2020년 초부터 확산된 코로나19 상황이 점차 진정되어 국가 간 출입국이 자유로워지자 국내 난민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이후 난민심사 대기 건수는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22년 난민신청 및 이의신청 건수 증가와 더불어 난민신청 후 난민인정 결정 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난민심사의 특성으로 난민심사 대기 건수 적체 현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난민심사 시스템을 개선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전문적 난민심사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난민업무 지침」을 개정하고, 난민심사관 및 난민전담공무원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과정을 주기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검증된 난민전문통역인을 선발하고 교육하기 위한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를 실시하여 우수 통역인 후보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나아가 난민심사·처우 등 현행 난민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반국민, 관계부처, 국제기구, 시민사회단체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으며, 인도적 체류허가자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 또한 지속하였다.

| 표 2-131 | 난민신청 및 심사 대기 현황

(매년 12. 31. 기준, 단위 : 건)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난민신청		16,173	15,452	6,684	2,341	11,539
대기	1차	16,887	22,321	14,976	7,643	11,063
	이의신청	2,747	3,253	5,118	4,526	4,888

※ 기준 시점에 따라 소송 결과 반영 등으로 수치 일부가 변동될 수 있음

나. 추진내용

1) 2022년 난민업무처리 현황

난민정책과 사무관 김정욱

1994년 난민업무를 최초 시행한 이후 2022년까지 총 84,922건의 난민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이중 철회된 22,465건을 제외한 총 46,506건에 대하여 난민심사를 완료하였다. 심사 결과 총 1,338명에게 난민인정 지위를 부여하고 2,485명에게 인도적 체류허가를 하여, 결과적으로 총 3,823명에게 「난민법」에 따른 보호를 제공하였다.

2022년 난민신청 건수는 총 11,539건으로 전년(2,341건) 대비 393% 증가하였고, 난민심사 대기 건수도 총 15,951건으로 전년(12,169건) 대비 31% 증가하였다. 2022년 난민심사결정 건수(1차 심사 후 이의신청까지 완료한 건수)는 총 5,363건으로 전년도 6,852건 대비 21.7% 감소하였으나, 난민인정은 175건으로 전년도 72건 대비 143.1% 증가하였으며, 인도적 체류허가는 67건으로 전년도 52건 대비 28.8% 증가하였다.

2) 난민심사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

난민정책과 사무관 김정욱

난민신청자의 국적, 신청 사유 또한 점차 복잡, 다양해지고 있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업무 수행을 위해 난민인정 심사 기준을 보완하여 난민 업무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난민인정 신청 접수, 면접, 결과 통보, 서류 열람 등 난민인정 심사 과정 전반에 걸쳐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난민업무 지침」을 개정하였으며 이를 대외에 공개함으로써 난민업무 처리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난민심사는 난민신청자의 진술내용과 출신국의 정황정보, 기타 사실조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난민지위 인정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법무부는 전문적인 난민심사를 위해 매년 다양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법무연수원의 집합교육과 사이버강의 외에도 관련 국제기구(유엔난민기구)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전문교육을 총 6회 실시하는 등 국·내외 난민심사이론과 실무 심사기법에 대한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증진시키고 있다. 2022년에는 난민면접 시 유의사항 등 실무 중심으로 교육을 하였으며, 난민전담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심리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 표 2-132 | 2022년 난민전담공무원 교육 실시 현황

회차	참석인원	주요 내용	주최
1차 (3.7. ~ 3. 8.)	44명	• 난민이론 개관(난민법의 이해) • 난민면접 및 보고서 작성법 • 난민인정불인정 사례 분석 • 전문가 초청 강연 – 인권감수성 교육	법무부
2차 (4.14. ~ 4.15.)	33명	• 난민면접 및 보고서 작성법 • 난민인정불인정 사례 분석	법무부

회차	참석인원	주요 내용	주최
		• 전문가 초청 강연 – 미얀마 국가정황 – 난민인정자 초청 강의	
3차 (6.30. ~ 7.1.)	32명	• 난민면접 및 보고서 작성법 • 난민인정불인정 사례 분석 • 전문가 초청 강연 – 신빙성 평가 요소의 이해 및 실제 – 젠더의 이해	법무부/UNHCR
4차 (8.10. ~ 8.11.)	38명	• 난민이론 개관(난민법의 이해) • 난민면접 및 보고서 작성법 • 난민인정불인정 사례 분석 • 전문가 초청 강연 – 카자흐스탄 국가상황	법무부
5차 (10.27.)	32명	• 난민이론(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10호) • 난민인정불인정 사례 분석 • 전문가 초청 강연 – 아동면접 시 유의사항	법무부/UNHCR
6차 (12.9. – 12.12.)	39명	• 난민소송 판례 분석 • 난민전담공무원 직무스트레스 완화 방안 • 전문가 초청 강연 – 러시아 및 튀르키예 국가정황 – 난민인정자의 지역사회 정착기	법무부

3)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시행

난민정책과 사무관 김정욱

2022년 한 해 동안 난민신청자의 국적은 90개국, 난민통역 언어는 42개에 달하는 등 난민신청자의 국적과 구사언어가 다양해지며 소수·특수 언어에 대한 통역 수요도 함께 증가하였다. 법무부는 다양한 언어권 난민신청자에 대한 통역지원을 위해 2012년부터 난민전문 통역인 풀(Pool)을 구축하여 난민전문통역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21년도에 최초로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2022. 1월 30개 언어 160명의 통역인을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위촉한 바 있으며, 2022년에도 난민전문통역인 후보군 확대를 위해 인증제를 추가 시행하여 2022년 말 25개 언어 148명의 통역인을 추가로 선발함으로써 인증받은 난민전문통역인은 34개 언어 308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한편 난민면접 통역품질을 검증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2022년에도 4차에 걸쳐 통번역대학원 교수 등 외부 전문가를 통해 난민(전문)통역인 105명에 대한 통역능력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매년 난민전문통역인에게 난민제도와 통역윤리, 난민통역실습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하여 난민전문통역인의 역량강화 및 통역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 그림 2-141 | 2022년 난민전문통역인 위촉식 개최(2022. 1. 19.)



난민전문통역인 위촉식(윤리선서식)



난민전문통역인 위촉식 참가자 기념촬영

4) 「난민법」 개정 추진

난민정책과 사무관 김정욱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가입 이후 2013년에는 독립 「난민법」을 제정·시행하였다. 그러나 전 세계적 난민발생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이로 인한 국내 난민신청자 유입 증가 등 「난민법」 시행 이후의 난민정책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난민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또는 개선사항 등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법무부는 관계부처·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난민신청 및 난민제도 남용 방지, 이의신청 심의의 전문성·효율성 확보 등에 따른 난민신청자 절차적 권리보장 강화, 난민인정자 등의 국내 안정적 정착 지원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였다.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0. 12월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2021. 12월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2022. 12월 제401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1소위에서 법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5) 재정착난민 수용

난민정책과 사무관 이청훈

재정착난민 제도는 「난민법」 제24조(재정착희망난민의 수용)에 따라 해외 난민캠프 등에 임시정착하고 있는 난민 중 한국으로 재정착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 심사를 거쳐 수용하는 제도로, 2015년 처음 도입되어 현재까지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코로나19 추세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한국을 포함한 미국, 캐나다 등 23개국은 재정착난민 수용에 참여하며 국제사회 내 난민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재정착난민은 유엔난민기구(UNHCR)로부터 추천을 받은 난민 중 서류심사, 현지면접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선발되며, 현지에서 건강검진 및 사전교육 후 입국하여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약 6개월간 한국어 및 한국사회 적응교육 등 초기정착을 위한 교육을 받고 나서 지역사회에 정착하게 된다.

법무부는 2015년 제16회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에서 심의·확정된 '재정착난민 수용 시범사업 계획'에 따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태국 내 임시 체류하고 있는 미얀마 난민 총 86명(16가족)을 수용하며 1차 시범사업을 종료하였다. 이어 2018. 6월 사업국을 말레이시아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2차 재정착난민 수용 시범사업 실행계획'을 심의·확정하였고, 이에 따라 2018년 26명, 2019년 37명, 2020년 17명의 재정착난민을 수용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연되었던 2020년 사업 및 2021년 사업을 2022년에 함께 추진함에 따라 2022년에는 67명(24가구)을 수용하였다.

| 표 2-133 | 재정착난민 수용 현황

(단위 : 명)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2
인원(가구수)	22(4)	34(7)	30(5)	26(8)	37(15)	17(5)*	67(24)
사업수행국	태국	태국	태국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 2019년 수용 결정되었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2020년 입국

6) 난민신청자 등 처우 개선

난민정책과 사무관 이청훈

「난민법」 제18조(난민의 인정 등)는 기본적으로 난민신청에 대한 심사를 6개월 내에 마치도록 하고 있으며, 심사기간 동안에는 같은 법 제40조(생계비 등 지원)에 따라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지원금 수준의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출신국의 박해로부터 긴급히 피난해오는 난민의 특성을 고려하여 난민인정심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난민신청자의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생계비는 난민신청자 중 별도로 지원신청을 한 사람들 중 소정의 심사를 거쳐 소득·자산, 주거현황, 자녀동반 또는 임신여부, 중대한 질병 유무 등 여러 가지 사정상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에게 난민신청일로부터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고 있다.

특히, 2022년에는 2019년도부터 동결된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금액을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금 수준으로 상향하여 난민신청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2022년 한 해 난민신청자에게 지급된 생계비는 총 2억 5천만 원으로, 가구당 1회 생계비 지원 금액의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 표 2-134 | 2022년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금액

(단위 : 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비(非) 입주자	488,800	826,000	1,066,000	1,304,900	1,541,600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입주자	244,400	413,000	533,000	652,450	770,800

2022년 한 해 전체 난민신청자 11,539명 중 225명이 생계비 지원을 신청하였으며, 심사를 거쳐 177명에게 생계비를 지원하였다.

이외에도,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2020년 '주요 국가의 보충적 난민보호 제도 연구' 용역 실시 등 보충적 보호에 관한 해외사례를 조사·분석하고, 시민사회단체 등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각종 의견을 수렴하였다.

7)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

난민정책과 사무관 이청훈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는 「난민법」 제45조(난민지원시설의 운영) 규정에 따라 난민신청자와 난민인정자의 숙식·의료 등 기초생계를 지원하는 시설로, 2022년 신규 입소자는 총 102명이다.

지원센터에서는 난민 등의 초기 한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수준별 한국어 교육 및 한국사회적응 교육 등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2022년부터 입소자 중 유아(미취학 아동) 대상으로 한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8) 유엔난민기구(UNHCR)와의 교류·협력 강화

난민정책과 사무관 이청훈

난민보호를 위한 대표적 국제기구인 유엔난민기구(UNHCR)와의 협력·교류를 통해 전 세계 난민문제 해결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고, 국제적 감각을 가진 인적자원을 양성하여 난민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난민문제의 장기적 해결책 중 한 가지인 재정착 프로그램 추진에 있어서, 유엔난민기구(UNHCR)로부터 재정착이 필요한 난민을 추천받는 등 활발히 교류를 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22년도에는 재정착난민 67명이 한국에 입국하였다.

아울러, 국내 난민심사 역량 강화를 위한 난민전담공무원 교육 과정에서 유엔난민기구(UNHCR)

주최 온라인 강의를 실시하는 등 난민심사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협력 또한 지속하였다.

한편, 2022. 11월 법무부장관은 필리포 그란디(Filippo Grandi) 유엔난민기구(UNHCR) 최고대표와 면담을 통해 양측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그림 2-142 | 법무부장관, 유엔난민기구(UNHCR) 최고대표 면담(2022. 11. 11.)



법무부장관, 유엔난민기구(UNHCR) 최고대표 면담

다. 향후 추진계획

2023년에는 난민통역의 전문성 및 공정성 등 질적인 측면의 향상과 더불어 양적인 측면에서 난민전문통역인 후보군 확대를 위해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를 추가 시행하는 한편 체계적인 난민통역 인력 풀(pool) 확대·관리를 위한 노력 또한 지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난민심사관 및 난민전담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제기구· 대학 교수 등 외부 전문가 초청 강의, 실무 중심 교육을 진행하고, 난민심사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균형잡힌 난민심사 체계를 보완·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난민법」 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회 입법 과정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난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비하여 「난민법 시행령」 및 「난민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동시에 준비하고,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체류자격 신설 관련 출입국관리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인도적 체류허가자에 대한 처우를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7. 공정하고 전문적인 난민 이의신청 심의 체계 구축

가. 추진배경

난민불인정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자가 급증함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심사기구인 난민위원회로 하여금 이의신청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기능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20. 2. 25. 〈난민심의과〉를 신설하여 이의신청 심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한편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이의신청 심의체계를 개선하였다.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는 2020년 5,955건으로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이래, 2020. 1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수칙 준수로 2022년에도 1차 심사기관의 심사 결정건수가 감소함에 따라 이의신청 건수도 3,080건으로 전년 대비 38% 정도 감소하였다. 2023년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진정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어 이의신청 건수 역시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표 2-135 | 난민 이의신청 및 심사결정 현황

(매년 12. 31. 기준, 단위: 명)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이의신청	5,277	3,723	3,110	4,067	5,955	4,718	3,748
심사결정	4,276	4,415	2,584	3,431	3,792	4,997	3,080

※ 기준 시점에 따라 소송 결과 반영으로 수치 일부가 변동될 수 있음

나. 추진내용

1) 공정하고 신속한 난민 이의신청 심의체계 구축

난민심의과 사무관 최은숙

2022. 2월 난민 이의신청 절차 안내 책자를 6개 언어(한국어, 영어, 러시아어, 아랍어, 중국어, 불어)로 발간·배포하고 관련 정보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시행하여 이의신청인들이 정보 부족, 언어적 한계 등을 극복하고 이의신청 제도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정보의 접근성 및 권리 보장을 강화하였다.

또한 2022 회계연도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제안된 국가정황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을 구체화하여 확보한 예산(5천 4백만)으로 2022. 6월 '국가정황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정보화전략 계획(ISP)을 수립하여 국가정황정보의 체계적 활용 및 관리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한편 '해외 국가정황정보 전담조직 운영사례 및 법제도'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분석하고 국가정황정보 관련 법과 제도를 연구하는 등 공정한 난민 이의신청 심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 제정·시행

난민심의과 사무관 최은숙

2022년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난민법」 제21조에 따른 난민불인정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법무부예규 1306호)」을 제정·시행한 것이다. 특히 난민 이의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처리 절차와 기준을 예규로 제정하여 공개함으로써 유관기관 및 언론 등 외부로부터 이의신청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 동안은 난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중 접수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비공개 내부 지침인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에 규정해 왔으나 이로 인해 업무의 통일성이 떨어지고 당사자는 난민 이의신청이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지 알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으나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은 난민불인정결정 등에 관여한 난민조사관 지정 배제, 난민위원회 의견진술 통지기한 명시, 서면진술 및 난민위원회 자문위원단의 운영 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내부적으로 업무의 통일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고 이의신청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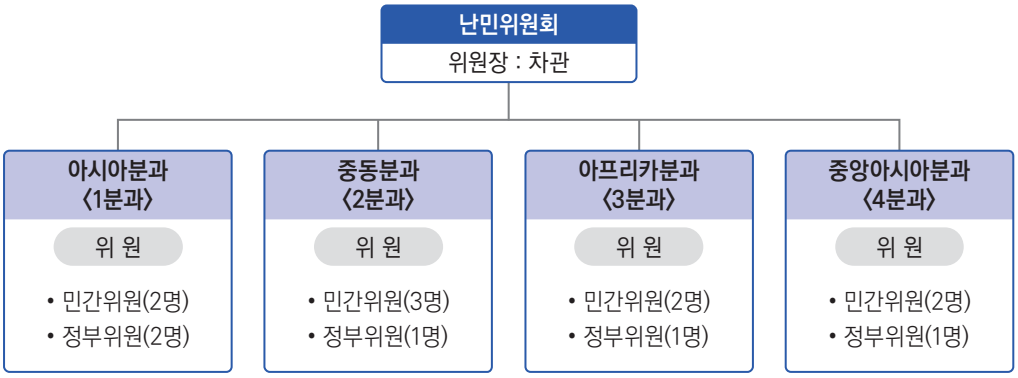
3) 난민위원회 개최를 통한 난민 보호

난민심의과 사무관 안재필

2022년에는 총 7회의 난민위원회를 개최하여 난민불인정결정 등 이의신청 약 3,080건을 심의·의결하였고, 매달 분과별로 분과위원회(44회)를 개최하여 난민 이의신청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와 더불어 난민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개최 시, 의견진술 청취가 필요한 이의신청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 추가 면접이 필요한 신청인에게는 추가 면접을 진행함으로써 이의신청인의 실질적 권리 보장을 강화하였다.

| 표 2-136 | 난민위원회 조직도(분과위원회별)



4) 유엔난민기구(UNHCR) 교육을 통한 난민조사관 육성 및 전문성 강화

난민심의과 사무관 최은숙

그간 난민조사관 등에 대한 교육 기회의 부족, 교육 내용과 교육의 주체, 커리큘럼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전문성 확보 여부에 대한 비판과 함께 난민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전문성 향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이에 2022년에는 난민조사관을 육성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었다.

첫 번째로 2022. 2월~7월까지 총 21주간 난민 실무경험이 없는 청(사무소) 직원 총 5명을 선발하여 난민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이론 교육(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과 기존 난민조사관의 전담 멘토 지도를 통해 심사·면접 등 실무를 배우는 수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다.

두 번째로는 난민 이의신청 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난민조사관의 역량 개발을 위해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와 공동으로 난민조사관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2주간)하였다. '이론' 교육보다는 실제 사례에 대한 '훈련'에 초점을 맞춘 교육은 다양한 난민심사의 사례 분석, 취약집단 면접시 유의사항, 국가정황정보 조사 실습 등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수준높은 교육으로 난민조사관의 전문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앞으로도 난민 이의신청 심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난민조사관 교육 프로그램을 정례화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5) 난민조사관 연구모임 활동

난민심의과 사무관 안재필

난민신청자의 출신 국가 및 난민 신청사유는 복잡·다변화되고 있으며, 국제적 난민심사 기준

또한 지속적으로 변화·고도화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1. 2월 난민조사관 연구모임을 개설하였다.

2022년 난민조사관 연구모임에서는 국내외 심사·판례 및 해외 심사 기준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유관 기관의 의견 청취를 통하여 사례가 다양하고 심사가 어려운 '특정집단 구성원 신분' 사유에 해당하는 「젠더(gender)」에 대한 난민지위심사 안내서를 발간하였고 인지이론에 기반을 둔 난민면접 기법(PEACE Model & Feedback)에 대한 연구, 면접 평가와 난민배제 심사, 기억 강화 기법 등에 대한 연구 및 토론을 진행하였다.

또한 난민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는 민간 난민 전문가, 각 지역 전문가 및 난민전문통역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 소통을 통해 해당 지역의 역사, 정치, 경제, 종교,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심화된 이해와 의견 공유를 바탕으로 난민조사관의 전문성을 향상하였다.

다. 향후 추진계획

2023년에는 난민 이의신청 제도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 난민위원의 제척·회피 근거 신설, ▲ 난민위원회 자문위원 위촉 근거 신설, ▲ 이의신청인 등에 대한 의견진술 통지기한 명시 및 서면진술 근거 신설, ▲ 난민조사관 자격 명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난민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이의신청 심의 절차를 보다 공정하게 운영하고 난민조사관 임명에 관한 투명성과 이의신청 사실조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심의 진행 경과 알림 시스템을 구축하여 난민 이의신청인이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 진행경과 및 심의일정을 상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별행정심판 기능 강화로 이의신청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등 이의신청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 강화에도 힘쓸 예정이다.

아울러 난민 이의신청 심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난민지위심사 안내서 「아동편」을 발간하고 이의신청 업무 매뉴얼을 제정하여 난민 조사관의 업무 기준의 통일성을 마련할 계획이다.

추가적으로 난민 신청 다발 국가를 중심으로 난민 심사의 핵심 정보로 활용되는 국가정황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국가정황정보 업무의 통일성 및 적정성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정황정보 업무의 매뉴얼을 제정하는 등 국가정황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8.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개방과 포용의 외국인 정책 추진 및 국제협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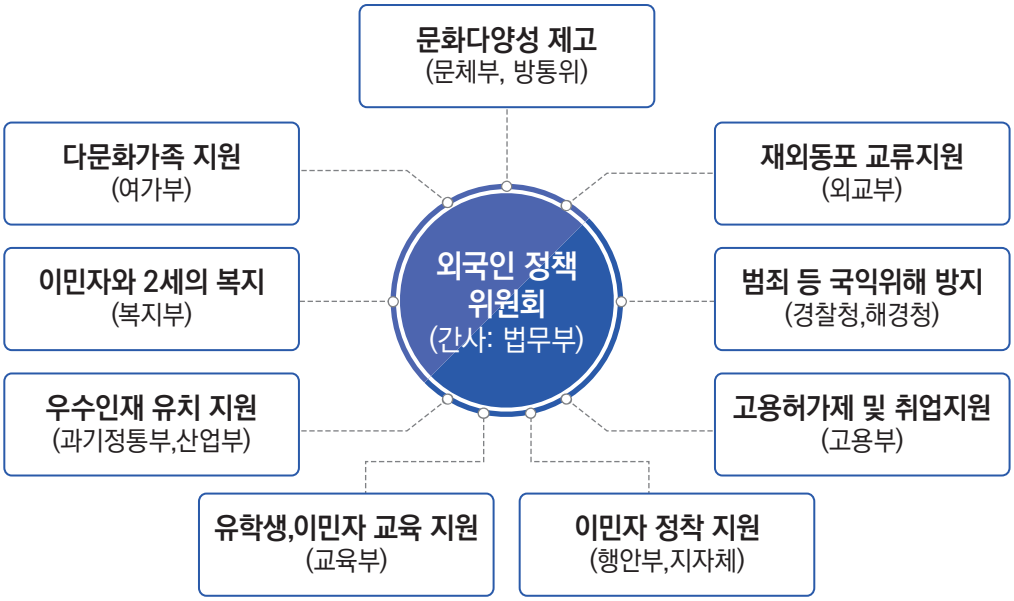
가. 2022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립

외국인정책과 주무관 노종인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외국인정책[1]은 그 특성상 관련 분야가 많고 정책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므로, 소관부처별 개별적인 정책추진보다는 국가차원에서 중장기 정책 방향을 미리 설정하고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 ~ 2022년)의 연도별 세부계획 수립을 위하여 2022. 3. 22.부터 2022. 3. 25.까지 '제26회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의 심의·조정을 거쳐 「2022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 그림 2-143 | 외국인정책위원회



1) 국경 및 출입국관리, 국적부여 정책과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민정책(Immigration Policy)를 의미하며,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당시 '이민'이라는 용어에 대해 국민이 '해외 이민'과 혼동할 우려가 있어 '이민정책' 대신 「외국인정책」으로 호칭하기로 정부 내에서 합의하여 사용

2) 주요내용

'2022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은 5년 단위의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5개 정책목표(개방, 통합, 안전, 인권, 협력)를 중심으로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협업으로 수립한 총 1,241개의 외국인정책 관련 과제(소요예산 약 6,043억여 원)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있는 개방

- 우수인재를 위한 원격근무자 비자 신설 추진 및 정주 여건 관련 문제에 대해 신속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글로벌 헬프 데스크(GHD) 운영
- 한국유학 정보서비스 혁신, 유학생 업무관리 시스템 개선, 온라인 유학박람회 플랫폼 구축 등 차세대 '한국유학종합시스템' 신규 구축
- 지역수요를 반영한 뿌리분야 숙련기능인력 확대 및 비수도권 인구 감소지역 소재 대학 졸업 후 지역 소재 사업장 취업자 등 인구감소 지역 우수 외국인의 장기체류 지원 검토
- 크루즈 관광재개를 대비한 해외 Port Sales 등 수요 확대를 위한 크루즈 홍보를 코로나19 추세를 감안하여 온·오프라인 추진,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지속 추진

나)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 출입국민원 대행업무 제도 활성화, 전자민원 처리 확대 등 비대면 처리 확대 및 외국인 소득금액정보, 지방행정제재·부담금 등 정보연계를 통한 체류민원 업무 효율화
- 사회통합 관련 강사,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상담원, 다문화 이해교육 전문 강사 양성 및 역량 강화,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을 위한 이수교육 및 보수교육 실시
- 다문화학생의 이중언어 재능을 조기에 발굴·육성하기 위한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개최 및 이중언어 코치 신규 양성교육 실시
- 지자체 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자문회의 운영 현황 파악,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참여 등 우수사례 발굴·확산

다)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 등록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연령 조정 및 자동출입국심사대 노후장비 교체
- 각국의 코로나19 백신접종률, 확진자 감소 추이 등을 고려하여 중수본 등과 협의하여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K-ETA) 신청가능 국가 확대
- 코로나19 관련 단계적 일상회복 진행상황을 고려하면서 광역단속팀 주관 범정부적 단속체계 구축 및 외국인 체류 질서 및 안전을 위협하는 법 위반자 단속실시

라)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 국제인권협약 국가보고서 심의·개인 진정에 대한 답변 등 외국인 인권 증진과 차별방지 등을 위한 관계부처 및 국제인권협약 이행메커니즘의 협력 강화
- 외국인노동자 취업 전 취업교육기관 안전보건교육 강사 및 안전보건교육 지원, 다양한 형태의 안전보건자료 개발·보급, 건설업 등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 점검 실시
- 문화다양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및 사회적인 가치 확산을 위해 문화다양성의 날 기념 주간행사 개최, 재한외국인의 안정적인 사회정착과 사회통합 기여를 위해 다언어 프로그램 정규 편성 및 다언어 콘텐츠 확대
- 동포체류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신설 관련 재외동포법 개정 추진, 동포밀집지역 동포지원 민간단체에 대한 동포체류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마) 협력에 바탕한 미래지향적 거버넌스

- 국가별 도입 상한 결정 시 불법체류 방지제도 운영 여부를 반영하여 송출국 자체적인 귀국 촉진 노력 유도, 송출국 대사관 등과 연계한 귀국지원 컨설팅 등 실시
- 지역적 안보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적 현황 파악 및 위변조 동향, 국제 이주 동향의 파악을 위해 지역 국제회의체 참여
- 전국 6개 권역(서울·인천권, 경기권, 강원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으로 나누어 지자체 시설 등을 이용하여 광역·기초지자체 공무원 외국인정책 담당자 교육 실시
- 각종 이민행정 기록을 통계분석시스템을 통해 원하는 이민행정 통계 및 정책기초정보로 제공하는 빅데이터 기반 정보분석 및 통계시스템 개선 추진

| 표 2-137 | 과제 및 예산규모 현황

(단위 : 개, 백만 원)

2022년 / 정책목표	합 계		중앙부처		지자체	
	과제수	예산	과제수	예산	과제수	예산
합계	1,241	604,347	168	323,353	1,073	280,994
1. 개방	113	244,795	39	194,603	74	50,192
2. 통합	719	187,936	37	31,830	682	156,106
3. 안전	42	13,519	25	13,052	17	467
4. 인권	292	55,003	44	18,705	248	36,298
5. 협력	75	103,094	23	65,163	52	37,931

나. 2022년 정책발표회 개최

외국인정책과 주무관 박래식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2022. 10. 7. 외국인정책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출입국행정의 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출입국·외국인관서 직원이 참여하는 정책발표회를 개최하였다. 2007년 이래 매년 출입국·이민실무와 관련된 정책발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출입국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민원인 입장에서 정책에 대하여 연구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처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2022년 정책발표회에는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총 54개 과제가 제출되었으며, 내부 심사를 거쳐 10개 과제가 본선에 진출하였다. 2022. 10. 7. 개최된 정책발표회 본선에서는 '합성사진 적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허위 사증 신청 사전 차단'이 최우수상을, '개인별 체류지 고유번호를 활용한 3세대 전자민원 도입 제안'과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자여행허가(K-ETA) 운영 개선안'이 우수상을, '계절근로 이탈억제 및 농어가 신속지원방안'과 '외국인 유학생 일자리 매칭 방안', '계절근로자관리센터 설립과 체계적인 운영방안'이 장려상을 수상하였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정책발표회는 소속기관 직원 2명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정책현장의 의견도 고루 반영되도록 하였다.

| 그림 2-144 | 제25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정책발표회(2022. 10. 7.)





다. 2022년 이민정책포럼 개최

외국인정책과 주무관 박래식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직원들의 이민정책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소양을 함양하기 위하여 2007. 8. 29.부터 수요정책포럼이 시작되었다. 2016. 3. 24. 이민정책포럼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주제 및 발표방식 등 운영방식을 개선하였고, 2017. 9월부터 외부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수렴을 위하여 제도를 확대 운영하였으며, 2018년부터 e나라도움 화상회의를 활용하여 일선 기관 직원들이 포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하반기부터는 기존 대면 방식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하였으나, 강의 집중도 저하 및 직원의 자발적 참여가 미흡하여 2022. 5월부터 운영방식을 대면으로 전환하고, 수요자 중심 운영방식으로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주요내용 및 평가

2022년 이민정책포럼을 통해 학자, 연구원, 정책담당자 등 각계각층의 외국인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고, 유튜브를 활용한 홍보 기법(교정본부 유튜버), 불체아동 정책에 대한 이해(서울, 수원 등 현장 직원), 국외 사회통합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조사 및 사전 준비(전주사무소 직원), 영국의 이민정책(장익현 한신대 교수), 디아스포라의 삶을 통한 한국인의 정체성 조명(전후석 영화감독) 등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발표와 질의·응답 및 토론 형식으로 진행하였고, 그 결과 전체적인 포럼 진행 분위기 및 참여자 만족도가 향상되었다.

이민정책포럼은 이민정책 환경과 세계적 이민정책 동향을 다양한 전문가로부터 듣고 서로의 생각 등을 공유함으로써 정책추진 역량 및 이해도를 향상시켰고, 외국인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 및 대안을 모색하는 등 정책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 그림 2-145 | 2022년도 이민정책포럼





라. 국제협력 강화

출입국기획과 주무관 송지연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면서 그간 영상회의 등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던 회의들이 대면 개최로 전환되고, 해외 주요인사들의 방한 및 주한 외국공관과의 교류도 증가하는 등 국제협력도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국경관리의 패러다임도 변화하여, 그간 테러분자·범법자 색출·불법이민자 통제 등 국경안보 측면을 강조하던 국경관리의 개념에서 나아가 개별국가의 안전뿐만 아니라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인류 공동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국가 간 협력과 연대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우리 본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국경관리 및 이민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아세안 + 한·중·일 이민청장 회의, 도쿄 출입국포럼, ICAO 워킹그룹회의, IOM 국경관리회의 등 다자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최신 출입국 동향 및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우리 정책 수립에 참고하였고, 우리 본부가 시행하고 있는 전자여행허가제 등 전자적 국경관리 사례를 각국과 공유하였다. 또한, UNHCR, IOM 등 난민 및 이주 분야 국제기구의 고위급과 교류 등을 통해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2) 주요내용 및 평가

가) 다자간 협의체를 통한 국제이민협력

2022년 한 해 동안 OECD 이주작업반 회의, ANDEX 지역협의회, APEC 고위관리회의 산하 BGM 회의, 제2회 도쿄 출입국포럼, ASEAN 항공 안전 워크숍, 글로벌 대테러포럼, APT 이민청장회의, UNHCR 집행이사회, IOM 고위급회의, ICAO 워킹그룹회의, IOM 국경관리회의 등 각종 국제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후 개최하지 못했던 차세대 이민정책전문가 회의를 3년 만에 개최, 13개국 19명의 이민청 직원들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인구 이동 및 인력정책을 주제로 각 국의 정책과 모범 사례 등을 공유하고, 전자여행허가제(K-ETA), 지역특화형 비자 등 우리 본부의 우수한 정책을 소개하였다.

특히, 우리 본부는 아세안 지역과의 출입국·이민 분야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고, 이에 처음 개최되는 '아세안 + 한·중·일 이민청장 회의'에 참여하여 아세안 국가와 한중일 3개 국가 간 협력 및 이민정책 정보 공유 등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일본 법무부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주최하는 도쿄 출입국포럼에 참석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출입국 관리를 위한 국경관리제도, 외국인 인력수용과 관련된 정책 등에 대한 모범 사례와 정보를 교환하는 등 이주분야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도 동참하였다.

| 그림 2-146 | 국제회의 참여



제2회 도쿄 출입국포럼



제1회 APT 이민청장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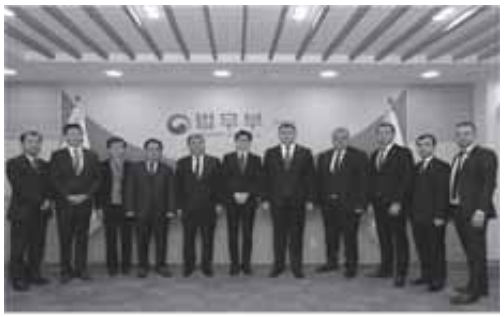
제13회 차세대 이민정책전문가 회의

나) 양자협력 강화 및 교류 다양화

우리 본부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이주 관련 현안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 불법체류 다발국 및 인력송출국의 주한 공관과 회의를 개최하는 등 양자 협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이민행정 선진국가의 주한공관 및 이민당국과도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현안 관련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였다.

법무부 장관과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올해가 '한-우즈베키스탄 간 외교관계 수립 30주년' 및 '고려인 동포의 우즈베키스탄 정주 85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양국 간 법무·출입국관리 분야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고, 현지 우리 교민들이 겪고 있는 비자 관련 고충 해소 등을 위해서도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IOM 부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는 법무부와 IOM 간 협력관계 강화 및 이민정책 관련 의견을 공유하였다. 또한 주한네덜란드대사, 네덜란드 송환청, 태국 노동부 등과의 면담을 통해 현안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논의를 위한 상시적 공식채널 수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 그림 2-147 | 양자간 교류



장관 - 우즈베키스탄 법무부·노동부장관 면담



차관 - IOM 부사무총장 면담



한-몽골 출입국관리 고위급 회담



한-일본 출입국관리 고위급 회담



출입국본부장-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사무소 대표 면담



출입국본부장-주한 네덜란드대사 면담



주한 필리핀대사관 면담



주한 중국대사관 면담

9. 디지털플랫폼 구축을 통한 원스톱 이민행정 서비스 제공

가. 이민행정 온라인 민원시스템 통합 재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이민정보과 사무관 서제선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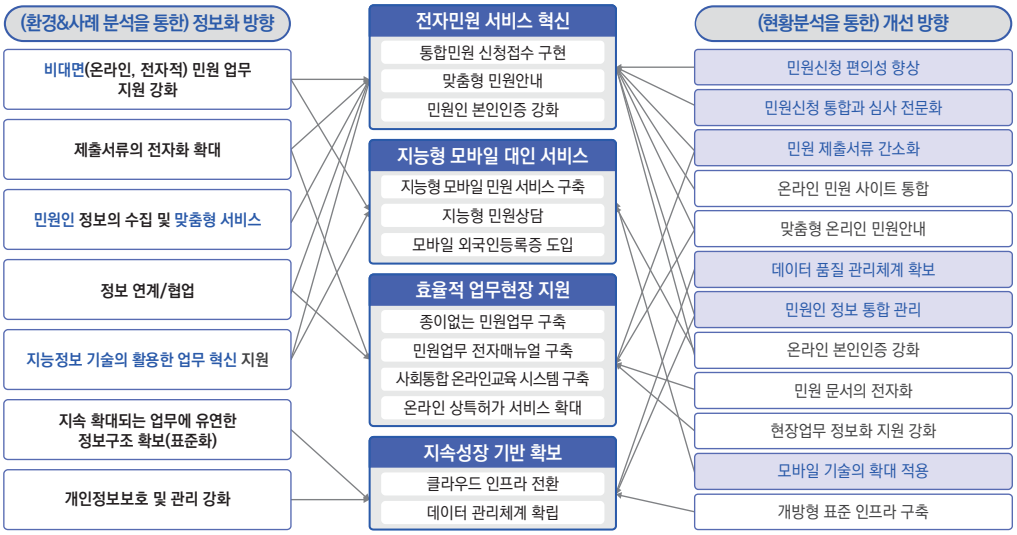
외국인을 위한 이민행정 민원 시스템*이 구축·운영되고 있으나, 사증 신청부터 입국 후 국내체류, 사회적응, 국적취득 등의 과정에서 단일 경로를 통한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통합된 플랫폼이 부재하였다.

* 하이코리아(체류), 비자포털(사증), 사회통합정보망(사회통합), 유학생정보시스템(유학생관리) 등

더욱이, IT 기술의 발전으로 공공의 행정 서비스에 대한 민간의 기대와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어 기존 시스템을 통한 정보기술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코로나-19 등 팬데믹 상황에서 비대면 온라인 민원 서비스의 필요성이 증가함에도 대면 업무를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노후 시스템으로는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기 어려웠다.

이에, 법무부는 이민행정 민원 시스템의 전면 통합 재구축을 목표로 4대 전략과제와 11개 이행과제로 구성된 이민행정 온라인 민원시스템의 전체 4개년(2024~2027년)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였다.

| 그림 2-148 | 이민행정 온라인 민원시스템 구축의 전략적 방향



| 표 2-138 | 이민행정 온라인 민원시스템 구축의 4대 전략과제, 11개 이행과제 및 추진시기

전략과제	이행과제	추진시기
전자민원 서비스 혁신	• 통합 전자민원 서비스 구현 - 전자민원 신청접수 일원화, 접근성·편의성 및 개인화 서비스 강화 등	'24년
	• 민원인 본인인증 강화 - 통합 인증, 신분증 진위 검증, 비대면 생체인증 도입 등	'25년
지능형 모바일 대민 서비스	• 지능형 모바일 민원 서비스 구축 - 모바일 기반의 민원안내, 신청접수, 맞춤형 알림, 증명발급 서비스 등	'25년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도입 - 외국인등록(거소신고)증 발급 및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 구축 등	'24년
	• 지능형 민원상담 - 민원 안내, 개인화 서비스, 교육 추천, 민원 신청 조회 등	'25 ~ '27년
효율적 업무현장 지원	• 민원서류 전자문서관리시스템 구축 - 민원 제출서류의 전자적 관리 및 이미지 디지털화(텍스트 변환) 등	'26 ~ '27년
	• 민원업무 전자매뉴얼 구축 - 민원업무 매뉴얼·편람의 전자적 관리 및 다국어 번역 등	'26년
	• 사회통합정보망 재구축 및 온라인교육시스템 확대 - 학습관리시스템(LMS) 도입 및 평가관리, 모바일 교육서비스, 증명서 검증 등	'25년
	• 온라인 상륙허가 서비스 확대 - 온라인 및 모바일 상륙허가 서비스 확대 구축	'25년
지속성장 기반 확보	• 클라우드 인프라 전환 - 법무부 인프라 최적의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24 ~ '26년
	• 민원 데이터 재정비 - 민원 데이터 현행화, 품질 확보, 통합모델 재설계, 품질관리 도구 도입 등	'25년

2) 평가 및 발전방향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바탕으로 법무부는 이주민 권익 증진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과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경험과 가치 창출, 수혜자(외국인) 대상의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국가 이미지 제고 등을 목표로 전체 4개년(2024~2027년) 정보화사업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단계별 계획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나. 민원불편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소득금액증명 연계 실시

이민정보과 사무관 서제선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개정(2020. 9. 25.)으로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등 외국인등록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외국인이 체류 업무 등 민원신청 시 소득금액증명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했다.

그러나 외국인이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과 증명서류 누락 등으로 행정적인 비효율이 발생하였고, 이에 법무부는 2022. 12. 27.부터 국내 장기체류 중인 등록·거소신고 외국인의 소득금액정보 총 960,026건, 합산금액 21.4조원의 정보를 국세청과 연계하였다.

| 표 2-139 | 등록·거소신고외국인 소득금액증명 연계 현황

(단위 : 건 / 백만원)

소득구분명	건수	금액	비고
근로소득자용	431,311	12,824,982	2021년도 국세청 신고자료 기준
일용근로소득용	354,528	6,804,005	
사업소득용	152,229	1,395,329	
이자소득	1.043	17,955	
기 타	20,915	393,664	
총합계	960,026	21,435,935	

2) 평가 및 발전방향

그동안 민원인이 번거롭게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은 후 각종 체류 업무 등 민원 신청 시 별도로 제출해야 했던 불편함이 있었으나, 외국인 소득금액 정보연계 시행에 따라 별도의 서류 제출이 없어도 등록·거소신고 외국인의 소득금액정보를 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민원인의 편의를 크게 증진하였다.

법무부는 나아가 대법원과 가족관계 정보 연계도 추진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민원 편의를 더욱 증진할 예정이다.

10.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표준화 및 데이터분석을 통한 외국인정책 수립 지원

가. 추진배경

부처마다 외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기본인적정보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표기하고 있어 정부 기관 간 동일인 확인이 어려워 규제, 조세, 의료보험 등 국가행정 업무에 비효율이 발생하고 외국인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외국인이 입국 시 행사한 여권 등의 정보를 기준으로 부처 간 산재된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표준화하고, 외국인행정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기반 외국인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2021. 7. 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벤처형조직으로 외국인정보빅데이터과를 신설하였다.

외국인정보빅데이터과에서는 ⅰ)「외국인 행정정보 종합플랫폼」 구축·운영, ⅱ) 범정부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표준화, ⅲ)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외국인 정책 지원을 중점 추진업무로 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인 외국인 행정체계 구축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나. 주요 추진내용

1)「외국인 행정정보 종합플랫폼」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및 추진

외국인정보빅데이터과 사무관 이수천

부처 간 상이한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표기 방식을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표준화하고, 외국인행정 데이터를 결합·분석하여 데이터 기반 외국인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2021. 12. 24.~2022. 5. 20. 약 5개월간「외국인 행정정보 종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이 사업에서 3대 전략과제와 5대 수행과제를 마련하였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3개년 동안 약 167억이 소요될 것으로 산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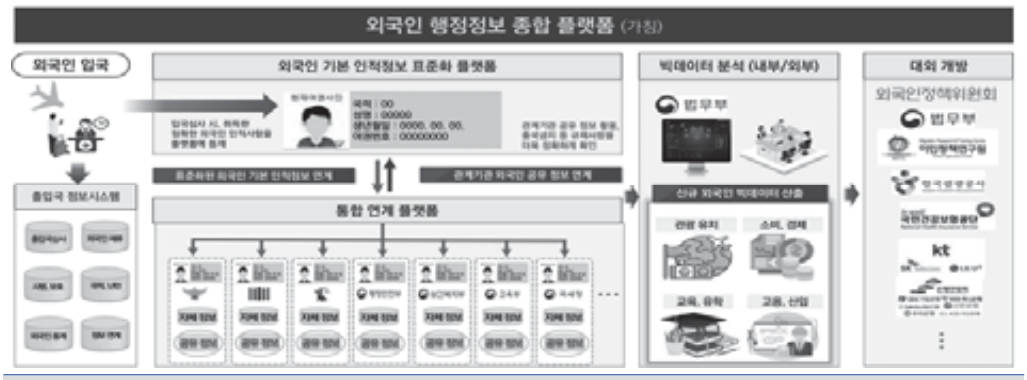
| 표 2-140 | 전략과제별 이행 로드맵 수립

전략과제	수행과제	비고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표준화	1.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표준화 플랫폼 구축	1차년 추진
외국인 행정정보 연계 허브 구축	2. 연계 데이터 관리 플랫폼 구축	1차년 추진
외국인 행정정보 융합 및 활용	3. 외국인행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1~3차년 추진
	4. 외국인행정 빅데이터 분석 및 확대	1~3차년 추진
	5. 외국인행정 빅데이터 개방체계 구축	2차년 추진

2022년 제1차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80.79억)을 확보하였으며, 2023. 3월 구축사업에 착수하여 2023. 11월부터 시범운영을 할 계획이다.

이 플랫폼 구축이 완성되면 각 부처의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표준화 확대를 지원하여 외국인의 범죄, 세금·과태료 체납, 공공서비스 부정수급 등을 예방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의 외국인행정에 대한 업무 신뢰도 및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양한 외국인행정 데이터를 결합·분석하여 인구감소, 지역소멸 및 생산인구 감소 등에 따른 맞춤형 정책서비스의 과학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림 2-149 | 외국인 행정정보 종합플랫폼 목표 시스템



외국인 행정정보 종합플랫폼 개요도

2)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무부-한국관광공사 업무협약(MOU) 체결

외국인정보빅데이터과 사무관 신하균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 관광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후 일상 회복을 대비하고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2. 4. 14.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무부-한국관광공사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앞으로 법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각 기관이 보유한 외국인 관련 방문객 통계 데이터를 상호 공유하고, 데이터 결합을 통해 국내 관광시장을 분석하여 '외국인 관광마케팅 전략 고도화', '지역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 등으로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게 된다.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지자체, 관광업계 등에서 외국인 관광 유치전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동네 외국인 방문객 일일 현황' 분석·시각화 자료를 2022. 4. 25.부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와 한국관광데이터랩(datalab.visitkorea.or.kr)을 통해 매일 제공하고 있다.

| 그림 2-150 | 법무부-한국관광공사 업무협약(MOU) 체결(2022. 4. 14.)



업무협약 체결식 사진



'우리 동네 외국인 방문객 일일 현황' 분석·시각화 화면

3) 제1회 외국인행정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개최

외국인정보빅데이터과 사무관 신하균

2022. 4. 25. ~ 7. 28. 외국인행정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법무부와 이민정책연구원이 공동 주관하여 「제1회 외국인행정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2022. 4. 25. ~ 6. 30.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총 19팀(52명)이 지원하였으며, 내·외부 위원의 1·2차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외국인을 위한 의료지원 앱), 우수상(머신러닝 분류모델을 활용한 무사증 입국자 위험선별과 계절근로자 규모 예측 및 시각화), 장려상(농어촌 외국인 근로자 숙식 환경 개선을 위한 전용기숙사 건립 위치 제안) 총 3팀의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2022. 7. 28.에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회의실에서 시상식을 개최하여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시상하였으며. 최우수작품은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하는 「제10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통합본선(8.31.~9.1.) 진출 기회를 제공하였다.

| 그림 2-151 | 제1회 외국인행정 공공데이터 활용 시상식(2022. 7. 28.)



최우수상(정재희, 조세연, 문정인)팀 기념촬영



수상자들과 단체 기념촬영

4) 외국인행정 빅데이터 분석 교육훈련 과정 운영

외국인정보빅데이터과 사무관 김경아

2022. 4. 25., 6. 13. 총 2차례에 걸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 협업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외국인행정 빅데이터 분석 교육훈련 과정을 5일간 운영하였다. 1, 2차 교육과정에 총 40명의 직원이 참여하여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열의를 보였으며,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외국인정책 추진에 활용 가능한 빅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표 2-141 | 2022년 외국인행정 빅데이터분석 교육훈련 과정 프로그램

일자	교육주제	교육내용
1일차	메타버스의 이해 빅데이터 분석 개론 데이터 활용 교육	• 메타버스의 개념과 동향 • 사례 기반 빅데이터 분석 이해 • 빅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방법
2일차	빅데이터 분석 및 가시화-1	• 빅데이터 가시화 실습(1) • 빅데이터 분석 실습(1) • 빅데이터 활용법 실습(1)
3일차	외국인행정 빅데이터 분석 및 가시화	• 외국인정보 빅데이터 전처리 실습 • 외국인정보 빅데이터 변환 및 검색처리 실습 • 외국인정보 빅데이터 통계 분석 및 가시화 실습
4일차	데이터 분석도구 이해	• R 소개와 활용 사례 소개 • R 및 R Studio 설치 및 활용 실습 • 데이터 구조 이해, 전처리 과정 실습
5일차	빅데이터 분석 및 가시화-2	• 빅데이터 가시화 실습(2) • 빅데이터 분석 실습(2) • 빅데이터 활용법 실습(2)

5)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표준화 범정부 협의체 구성·운영

외국인정보빅데이터과 사무관 신하균

2021. 12. 14. 형사사법기관[법무부(범정, 교정), 검찰청, 경찰청, 법원, 해양경찰청]을 대상으로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표준화 추진을 위한 1차 협의체 구성에 이어, 2022. 2. 14. 주요 외국인정책 관련 기관(고용부, 국세청, 복지부, 여가부, 해수부, 국정원)을 대상으로 2차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2022. 9. 20., 9. 22.에는 범정부 협의체 기관 1·2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표준화 추진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및 「외국인 행정정보 종합플랫폼」 구축사업 설명 등 업무 협의를 진행하였다.

1·2차 실무협의회 개최 결과, 각 부처는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표준화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향후 「외국인 행정정보 종합플랫폼」 구축 시 협의체 기관별 필요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 그림 2-152 |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표준화 범정부 협의체 실무협의회 개최



1차 협의체(형사사법기관) 실무회의(2022. 9. 20.)



2차 협의체(주요 외국인정책 관련 기관) 실무회의(2022. 9. 22.)

6) 지자체 맞춤형 외국인 빅데이터 분석 및 협력체계 구축

외국인정보빅데이터과 사무관 김경아

인구감소·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증가하는 외국인 주민·다문화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한 해 동안 지자체와 함께 맞춤형 외국인 빅데이터 분석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제6~7회 법무부-다도협(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외국인정책협의회(2022. 4. 29., 10. 7.)에서 회원도시(27개 시)를 대상으로 '지역별 외국인 거주 현황' 분석모델을 시연하고, 수요를 파악하는 등 데이터 분석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앞으로 이 분석모델을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여 2023년 하반기 구축 예정인 「외국인 행정정보 종합플랫폼」을 통해 지자체 등에 제공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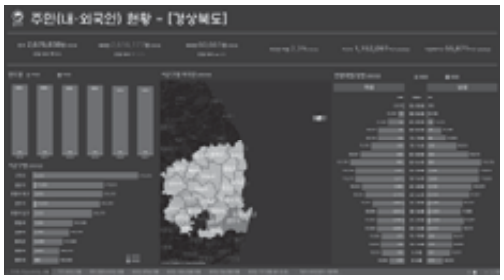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공모기간(1차 : 2022. 7. 25. ~ 8. 19., 2차 : 2022. 10. 19. ~ 11. 18.) 동안 총 9개 지자체 28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외국인 동포·유학생·결혼이민자 거주 현황 및 지역별 외국인 고용·산업별 현황 등을 분석·시각화하여

제공하였다. 향후에도 지자체별 특수성을 고려한 외국인행정 데이터 분석자료를 정책부서와 지자체 등에 제공하여 맞춤형 외국인 정책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 그림 2-153 | 지자체 맞춤형 외국인 빅데이터 분석 및 협력체계 구축



제7회 법무부-다도협 외국인정책협의회(2022. 10. 7.)



지역별 외국인 거주 현황 분석화면

11.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해외유입차단TF 운영

해외유입차단TF 사무관 이상배

가. 해외유입차단TF 운영

'코로나19 이민 국경안전긴급대응단'이 출입국기획과 소속 해외유입차단TF로 개편됨에 따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코로나19 대응 업무는 해외유입차단TF에서 총괄하게 되었다.

해외유입차단TF는 팀장(5급)이하 총 9명을 배치, 주말·휴일을 포함하여 24시간 운영하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해외유입 상황평가 관계부처 회의 참석 등 범정부 회의 관리, 대외협의, 감염병 대응 출입국절차 마련·관리, 방역목적 출입국·외국인 정보 대외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진행상황

해외유입차단TF는 매일 수십여 종의 정형 통계와 비정형 통계를 작성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 방역 당국에 제공하고 해외 감염병 확산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관계기관 협의체인 '해외유입 상황평가 관계부처 회의'에 자료를 제공하는 등 선제적으로 해외 감염병 유입 차단 조치를 마련하였다.

특히 세부 방역절차 마련 시, 탑승객 사전정보시스템 등 전산 인프라와 숙련된 출입국심사인력을 활용하여 적극 지원함으로써 경제·외교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해외 감염유입원을 선별적·선제적으로 차단하는 K-방역 업무를 적극 분담하였다.

다. 주요 조치 사항

일자	제 목	주 요 내 용	수신처	비 고
1. 7.	출입국기관 소속 직원 코로나19 추가(3차) 예방접종 독려 요청	• 출입국기관 직원 대상 3차 예방접종 독려 요청	본부 각과, 소속기관	해외유입 차단 TF
1. 13.	국내 체류 외국인 3차 접종 독려 협조 요청	• 외국인의 3차 접종률 저조 및 외국인 확진자 증가에 따라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3차 접종 독려 요청	본부 각과, 소속기관	해외유입 차단 TF
2. 14.	소속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 수립 알림	• 방역당국 요청에 따라 기관 내 감염예방조치 및 오미크론 확산 시 핵심업무 지속계획을 반영한 「소속기관 업무연속성계획」 수립 배포	본부 각과, 소속기관	해외유입 차단 TF
4. 1.	우크라이나인 동포 입국 후 격리 관련 협조 요청	• 긴박한 현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우크라이나 국적 동포에 대해 고려인단체에서 제공하는 격리시설 이용 또는 임시생활시설 무료 이용 등 방역당국에 협조 요청	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유입 차단 TF
4. 12.	'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 발급 중단 지시	• 특별입국절차시 발급하였던 '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 발급 중단 지시 - 시행일 : 2022. 4. 13.	본부 각과, 소속기관	해외유입 차단 TF
4. 19.	우크라이나인 동포 입국 후 격리 관련 협조 요청(보완)	• 우크라이나 사태로 입국하는 고려인 동포 중 임시생활시설 입소자에 대해 입국심사 단계에서 별도 표시 예정 알림	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유입 차단 TF
5. 31.	보호외국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절차 개선 협조 요청	• 보호외국인 강제퇴거집행시 필요한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을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대리 발급받을 수 있도록 협조 요청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해외유입 차단 TF
6. 3.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른 해외입국관리체계 개편 안내	•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 시행 - 시행일 : 2022. 6. 8.	본부 각과, 소속기관	해외유입 차단 TF
6. 8.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절차 개선 알림	• 보호외국인 강제퇴거집행을 위한 예방접종증명서에 대해 출입국관리 공무원 발급 위임 허용	이민조사과, 소속기관	해외유입 차단 TF
6. 22.	코로나19 대비 여름철 휴가 대책 알림	• 오미크론 감소 추세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인해 여행수요 증가와 함께 확진자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된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여름휴가 대책(안)」 송부	본부 각과, 소속기관	해외유입 차단 TF
6. 29.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본부 및 소속기관 방역강화 방안 안내	•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 전망에 따라 중대본에서 발표하는 위험도 단계에 따른 소속기관 운영계획 수립 및 배포	소속기관	해외유입 차단 TF

일자	제 목	주 요 내 용	수신처	비 고
7. 19.	해외입국자 입국 후 PCR검사 기준 강화 안내	• 입국 후 3일이내 검사 → 입국 후 1일차 검사	본부 각과, 소속기관	해외유입 차단 TF
7. 25.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4차 접종 대상 확대 알림	• 접종효과 감소, 재감염 사례 증가, 감염재생산지수 상승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뚜렷해 짐에 따라 4차접종 대상자 확대시행(50세 이상 접종 권고 등)	본부 각과, 소속기관	해외유입 차단 TF
8. 11.	소속기관 방역 및 예방접종 업무 관리자 지정 및 현행화 요청	• 중대본 회의 중 감염취약시설 방역관리자 지정의 중요성이 언급됨에 따라 각 소속기관에 방역 및 예방접종 업무 관리자(담당자 포함) 지정 및 현행화 요청	소속기관	해외유입 차단 TF
8. 12.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출입국·외국인정책 위험도 단계별 운영 계획」 수정 알림	• 신규 입소 보호 외국인 격리 기간 단축(14일→7일), 위험도 '높음'단계까지 보호시설 면회 예약제 폐지 등	본부 각과, 소속기관	해외유입 차단 TF
8. 31.	해외 입국정책 개선 입국 전 검사 중단 안내	•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에게 실시하였던 입국 전 PCR(또는 RAT) 검사 중단 알림 - 시행일 : 2022. 9. 3.	본부 각과, 소속기관	해외유입 차단 TF
9. 30.	해외입국 체계 완화 입국 후 검사 중단 안내	•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에게 실시하였던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의무 중단 알림 - 시행일 : 2022. 10. 1.	본부 각과, 소속기관	해외유입 차단 TF
10. 27.	동절기 추가 접종 확대 계획 알림	• 사회적 면역수준 감소 및 방역 긴장감 완화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동절기 추가 접종 확대 계획 수립 알림	본부 각과, 소속기관	해외유입 차단 TF
12. 13.	코로나19 동절기 추가접종 집중 접종기간 연장 알림	• 방역당국에서 지정한 동절기 추가접종 집중 접종기간 연장 알림 - 집중 접종 기간 : 2022. 11. 21.~2022. 12. 31.	본부 각과, 소속기관	해외유입 차단 TF
12. 30.	중국 입국자 선제적 감시방안 조치 안내	• 중국발 해외 유입 확진자 증가에 따라 선제적 방역 강화 조치 시행 - 입국전 Q-Code 이용 의무화/입국전 PCR (RAT) 음성확인서 제출/ 입국 후 1일내 검사실시	본부 각과, 소속기관	해외유입 차단 TF

제10절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 사무관 김민기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우리나라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여 200만 명을 넘은 반면, 국내 생산연령인구의 지속 감소*, 지방소멸**, 농어업 분야 및 중소기업 인력난 심화 등 인구 위기로 인한 충격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극적인 이민정책의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대되었다.

* 2020년 3,738만 명에서 2070년 1,737만 명까지 감소 전망(통계청, 2021. 12.)

**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행정안전부, 2021. 10.)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인 유입 증가로 인한 갈등 등 이민정책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여, 인구감소 등 사회적 위기에 대응하면서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출입국·이민관리체계의 시급한 마련이 요구되었다.

이에 법무부는 당면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출입국·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신설하여 이민정책을 둘러싼 난제를 연구하고, 국가 백년대계로서의 출입국·이민정책을 수립·추진하고자 하였다.

| 그림 2-154 | 컨트롤타워 신설 필요성 관련 언론보도



인구 감소 등 관련 언론보도



이민청 설립 필요 관련 언론보도

2022. 11. 7.「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 제1449호)」을 제정하여, 출입국·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신설을 위한 전담 준비조직으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을 설치하였다.

추진단은 법무부 자율기구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속으로 설치되었고, 기존에 비직제로 운영되던 이민정책기획단을 확대 개편하여 단장(4급) 이하 총 6명(4.5급 1명, 5급 3명, 6급 이하 2명)을 배치, 이민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정책 요구에 대응하고 컨트롤타워 신설을 포함한 중장기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 그림 2-155 |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 현판식 행사(2022. 11. 18.)



현판식 행사



현판식 행사

2. 주요내용

가. 출입국·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신설 관련 공론화 추진

출입국·이민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상반된 시각을 고려하여, 정책 방향 설정과 컨트롤타워 신설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2022. 8월부터 국민,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 세미나, 학술대회 등 공론화 절차를 총 18회 진행하여 출입국·이민정책 관련 쟁점에 대한 각계의 의견수렴을 하였다.

특히, 2022. 11. 25.「법무부 미래성장을 위한 이민정책위원회 규정(법무부훈령 1406호)」에 따라 이민정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법조계, 사회단체 활동가 등 외부(민간)위원 18명 및 내부위원 2명으로 구성된 이민정책위원회(위원장 : 서울대 정인섭 명예교수)를 발족, 회의 개최를 통해 이민정책 비전,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자문을 진행하였다.

| 그림 2-156 | 이민정책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회의 개최(2022. 11. 25.)



이민정책위원회 위원 위촉식



제 1회 이민정책위원회

| 표 2-142 | 출입국·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신설 관련 공론화 현황

일 자	내 용
8. 18.	• '국민참여단' 온라인 토론회 개최 – 외국인 유입 및 이민정책 추진 방향 등
8. 22.	• '한국이민학회' 학술대회 참여 – 이민 연구의 새로운 방향 및 주제, 이민청 설립의 선결과제
8. 30.	• '이민청 톺아보기' 국회 세미나(1차) 공동 개최 – 이민청 설립 필요성, 추진 방향 등 • '이민청' 관련 학술대회 참여 – 선진국 이민 관련 부처 운영 형황 및 시사점
8. 31.	• 국회 정책 토론회 참여 – 농어촌 인구소멸 위기 해소 방안 등 • 재외동포정책 포럼 참여 – 재외동포청 및 이민청 설립 관련 • '제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민관협력 포럼 참여 –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설립 등
9. 15.	• '이민청 톺아보기' 국회 세미나(2차) 공동 개최 – 국익과 인권의 조화
9. 20.	• 국회 정책 세미나 참여 – 지방소멸 시대, 지방정부의 이민정책 성과와 한계 등
9. 22.	• 이민사회의 도래와 한국의 미래 심포지엄 – 글로벌시대 한국의 국가경쟁력과 이민정책 방향 등
9. 30.	• '이민청 톺아보기' 국회 세미나(3차) 공동 개최 – 경제활력 제고 및 내·외국인 사회통합 촉진
10. 14.	• '국민참여단' 대면 토론회 개최 – 외국인 유입 등 이민정책 추진 방향 등 '제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수립 관련 의견수렴
11. 18.	• 한국지역개발학회 학술대회 참여 – 지방소멸 대응 방안

일 자	내 용
11. 21.	• '글로벌 리더스 포럼 2022' 참여 – 저출산 시대 이민정책
11. 25.	• '제1회 이민정책위원회' 개최 – 이민정책 비전 및 추진 방향 등
12. 10.	•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참여 – 이민을 둘러싼 갈등 및 국민적 공감대에 기반한 이민정책
12. 15.	• 이민정책 토론회 공동 개최 – 인구감소 시대 이민정책 방향
12. 21.	• '제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 경제활력 제고와 체류질서 확립의 조화 등

나.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편방안 마련

공론화 결과, 외국인 유입 확대에 대한 우려도 일부 존재하였으나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출입국·이민정책이 강조되며 컨트롤타워의 신설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추진단은 공론화 과정에서 제안된 국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과 해외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컨트롤타워 신설 방안 및 국가백년대계로서 출입국·이민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3. 향후계획

추진단은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전제로, 이민정책 관련 난제에 책임있게 답할 수 있는 가칭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신설하여 오로지 국민의 이익을 기준으로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정책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통합의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11절 소년범죄 대응 업무

정책기획단 검사 이수창

1.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TF 구성 및 운영

가. 추진배경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 소년범죄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의 범죄 악용으로 인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는 등 소년범죄 종합대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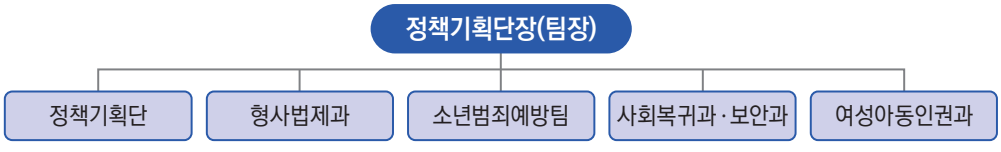
이에 법무부는 2022. 6.부터 10.까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구성·운영하였고, 위 TF 활동 결과를 토대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나.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TF' 구성 및 활동

1)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TF' 구성 및 운영(2022. 6.~10.)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TF'는 2022. 6. 기조실장 산하에 정책기획단장을 팀장으로 하여 검찰국·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교정본부 등 유관부서로 구성되었다.

| 그림 2-157 |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 구성



2) TF 주요 활동 경과

가) 총 18회 TF 회의 개최(2022. 6.~10.)

총 18회에 걸친 TF 회의를 통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전과자 양산 방지, 소년 보호처분 개선, 소년교도소 교육·교정 강화,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대책 등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논의하였다.

나) 정책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2022. 6.~9.)

2022. 6. 법무부장관이 안양소년원을 방문한 것을 비롯하여, 법무부차관이 김천소년교도소, 법무보호복지공단을 방문하여 소년범 수용환경 및 교육실태를 파악하고, TF팀원이 서울가정법원 방문 및 간담회를 통해 소년사건 재판절차 등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하였다.

다) 소년범죄 대책 관련 각계 의견 및 자료 분석(2022. 6.~9.)

각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 소년원 출원생 인터뷰,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국가위원회 권고안 검토 및 해외입법례 분석 등을 통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현실화뿐 아니라 소년들이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복귀·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책까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특히, 그동안 소극적으로 대응하였던 각 위원회 권고사항을 전향적인 자세로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실현 가능한 부분은 종합대책에 상당 부분 반영하였다.

3) TF 활동 성과

오랫동안 난제로 남아 있던 소년범죄 대응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여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14세⇨13세)뿐만 아니라 교정·교화 강화, 피해자보호, 인권보호 개선 및 인프라 확충을 망라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2022. 10. 26. 발표하였다.(TF 활동 종료)

2.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

가. 소년범죄 종합대책 주요 내용

| 표 2-143 | 소년범죄 종합대책 주요 내용

소년범죄 종합대책	
1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
2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인프라 확충**
	• 소년원 생활실 소규모화(10~15인실⇨4인실), 아동복지시설 수준 급식비 인상 • 수도권에 학과교육 중심 소년전담 교정시설 운영 • 구치소 내 성인범·소년범 철저 분리, 소년 보호관찰 전담 인력 증원 • 소년분류심사원 시설 확충·명칭 변경(1개⇨3개), 민간 참여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신설

소년범죄 종합대책	
3	**소년원·소년교도소 교육·교정 강화**
	• 9호·10호 소년원송치 처분에 5호 장기 보호관찰을 병합할 수 있도록 개선 •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3~'27년)」에 소년원 포함, 교육부와 협력 강화 • 소년교도소에 검정고시반 필수과정 신설 등 학과교육 강화 • 소년 성폭력사범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 피해자 관점 교육 도입 • 소년범에 대한 맞춤형 가석방 도입 및 전과 회보제한 검토
4	**소년보호절차 인권보호 개선**
	• 우범소년에게 장기 보호관찰, 소년원송치 등 과도한 보호처분 폐지 •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에 대한 소년의 이의제기권 신설 • 외출제한명령 대상자 감독방식을 '스마트워치' 방식으로 개선
5	**소년범죄 피해자보호 강화**
	• 소년보호절차에서 피해자에 대한 통지제도 개선 및 피해자의 참석권 규정 신설 • 피해자 의사 반영을 위해 검사의 항고권 신설 • SNS, 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피해자 접근금지 법적근거 마련
6	**소년형사사법절차 전문성 제고**
	• 인천·수원지검에 '소년부' 신설, 약식기소 자제 등 형사처벌 적정성 제고 • 보호자 등의 통고에 의해 소년보호사건 개시된 경우 검사 통지 제도 마련, 조건부 소년부송치 제도 신설
7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소년범죄 예방정책 추진**
	• 체계적 소년범죄 통계 관리시스템 구축 •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CPTED)과 소년범죄 예방 적극 연계

나. 향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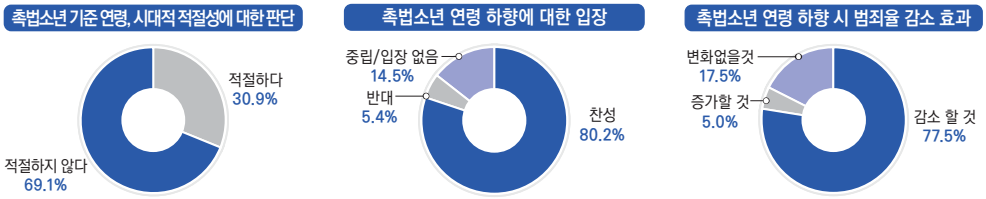
2022. 12. 28. 국회에 제출한 「형법」, 「소년법」 개정법률안 등 정부안 통과를 위한 국회 논의 지원을 포함하여 소년범죄 종합대책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다. 참고 사항

1)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관련 여론조사 결과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 촉법소년 연령 상한의 하향에 대해 찬성의견(80.2%)이 반대의견(5.4%)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2-158 |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관련 여론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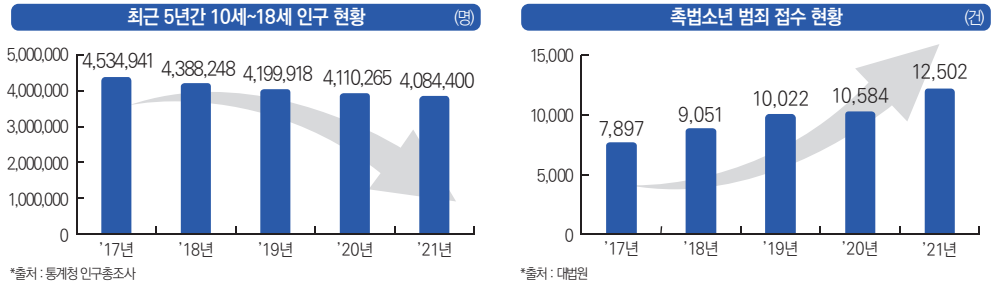


*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 '22. 6. 성인남녀 3,506명 대상

2) 촉법소년 범죄 증가 자료

전체 소년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음에도 촉법소년 범죄는 매년 증가 추세(2017년 7,897건⇨ 2021년 12,502건)이고, 촉법소년에 의한 살인, 성폭력 범죄 등 강력범죄도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2014년~2020년 살인죄(미수 포함)를 범한 촉법소년 10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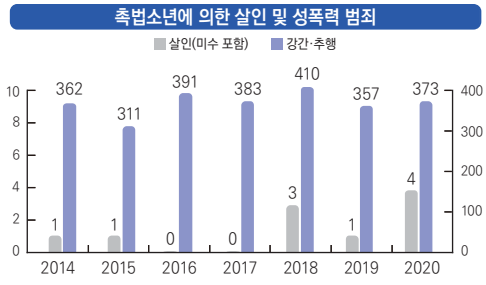
| 그림 2-159 | 촉법소년 범죄 증가(1)



*출처 : 통계청 인구총조사

*출처 : 대법원

| 그림 2-160 | 촉법소년 범죄 증가(2)



촉법소년에 의한 강력범죄 사례

촉법소년 모친 살해 사건

-'21.8. 13세 소년이 모친으로부터 꾸지람을 들었다는 이유로 칼로 모친을 찔러 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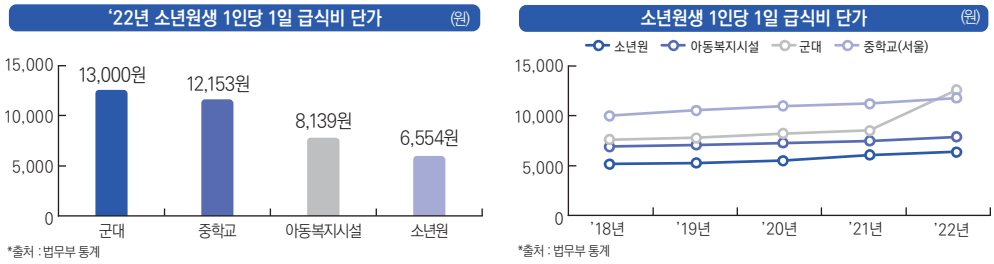
초등학생 성폭력 등 사건

-'22년 초등학생 2명(12세)이 초등학생 2명(9세)에게 유사 성행위, 구강성교를 강요한 후 부모님 등에게 알라지 못하도록 협박, 폭행

3) 소년원생 급식비 단가

2022년 소년원생 1식 급식비 2,185원은 서울 중학교 급식비 4,051원의 53.9%에 불과하여 2023년부터 소년원생 1인당 급식비(1일 6,554원)를 아동복지시설(6호 시설) 수준(1일 8,139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 그림 2-161 | 최근 소년원생 1식 급식비 단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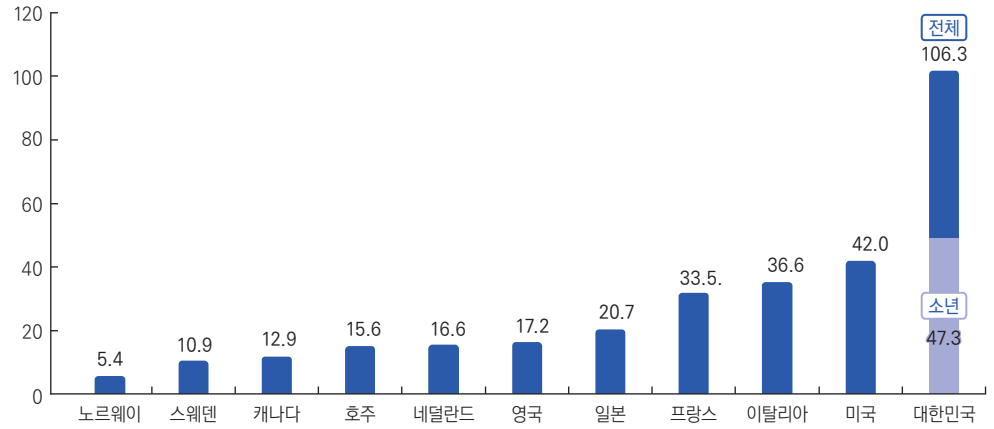


4) 직원 1인당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인원

우리나라의 경우 직원 1인당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인원이 OECD 국가에 비해 과다하다.

※ 직원 1인당 전체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인원 : (OECD 국가 평균) 37.6명 (우리나라) 전체 106.3명, 소년 47.3명

| 그림 2-162 | OECD 국가 보호관찰관 관리대상자 수



5)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최대 수용인원

2021년 기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정원(170명) 대비 131%에 해당하는 222명을 수용하였다.

| 표 2-144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최대 수용인원

기 관	정 원	2019	2020	2021
인 원	170	260	245	222
정원대비 초과율	100%	153%	144%	131%

제12절 인사정보관리단

1.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인사정보관리단 검사 김주현

가. 추진배경

과거 대통령실에 집중되었던 인사검증 기능을 분산하여 권한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고, 인사검증 담당기관을 다원화함으로써 검증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2. 6. 7. 공직후보자에 대한 객관적 1차 검증 업무를 수행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였다.

나. 구성 및 업무

1) 법무부의 인사검증 법적 근거 마련 및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정부조직법」과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인사정보 수집·관리 권한을 위탁 받는 행정기관으로 대통령비서실장 외에 법무부장관을 추가하였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동 시행규칙에 인사정보관리단장 및 인사정보1·2담당관을 신설하고, 다양한 검증 영역을 포괄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인사혁신처·교육부·국방부·국세청·경찰청·감사원·국가정보원·금융감독원 등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하였다.

2) 공직후보자에 대한 '1차 검증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

공직후보자의 청렴성·도덕성 등 공직 적격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사실관계 및 법률적 쟁점 등에 대해 확인·검토하는 객관적인 1차 검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검증 업무의 독립성 보장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은 검증 과정에서 중간 보고를 받지 않고, 사무실도 법무부 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 설치했으며, 인사정보관리단과 여타 부서 간의 정보교류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法務年鑑

03



법령정비

제1절 개관
제2절 법률
제3절 대통령령
제4절 총리령 및 법무부령

제1절 개관

구분 / 연도	계	제정				개정				폐지	
		소계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소계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소계	부령
2010	72	16	9	4	3	56	19	12	25	-	-
2011	67	9	1	3	5	58	11	21	26	-	-
2012	58	7	2	3	2	51	10	24	17	-	-
2013	59	3	1	1	1	56	14	14	28	-	-
2014	83	8	1	4	3	75	27	26	22	-	-
2015	59	4	1	2	1	55	10	19	26	-	-
2016	80	5	3	1	1	75	24	26	25	-	-
2017	70	3	-	2	1	67	23	20	24	-	-
2018	58	1	-	1	-	57	19	23	15	-	-
2019	51	2	-	1	1	48	9	24	15	1	-
2020	71	2	-	1	1	69	27	25	17	-	-
2021	86	9	2	3	4	76	27	24	25	1	1
2022	60	1	-	-	1	58	18	18	22	1	1

제2절 법률

Ⅰ. 개정법률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가. 추진배경

- ○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 되면서 법무부(법무심의관실)에 접수된 상가임차인들의 민원 중 코로나로 인해 폐업을 한 이후에도 차임을 계속해 내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고 임차인의 생존권까지 위협한다는 고충이 있었음
- ○ 이에 법무부는 상가임차인들의 현실적 고충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에 판례와 학설에 의해 원론적으로 인정되던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을 토대로 개정안을 마련한 후, 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심도있는 논의 과정을 거쳐 코로나19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상가임대인에게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권을 인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게 되었음

나. 추진경과

2021. 3. 법무부, 상가임차인 보호 방안 마련
2021. 4. 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 검토의견 회신
2021. 5. 12. 개정안 마련
2021. 8. 19. 국회 제출
2021. 12. 9. 국회 본회의 의결
2022. 1. 4. 법률 제18675호로 공포 및 시행

다. 주요내용

- 상가임차인이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인해 폐업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
- 한편, 법의 적용 시점에 관해서 법 시행일(공포한 날) 당시 존속 중인 상가 임대차에도 적용되게 하여 더 많은 상가임차인이 개정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부칙 제2조)

2. 국제사법

가. 추진배경

- 국제재판관할의 일반원칙으로서 “실질적 관련의 원칙”을 선언하는 조문과 소비자계약 및 근로계약 사건에 관한 국제재판관할을 정하는 규정 외에는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한 현행 국제사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국제재판관할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제사법의 체계를 완비하고, 국제거래 및 다문화가정 등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해결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나. 추진경과

2020. 8. 7. 정부안 국회 제출
2021. 12. 9. 국회 본회의 의결
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공포(2022. 7. 5. 시행)

다. 주요내용

- 국제재판관할 결정을 위한 실질적 관련성 판단기준의 구체화
- 일반관할 및 유형별 국제재판관할 규정 신설(35개 조문)

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가. 추진배경

○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에 맞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는 대한민국 거주 외국인 및 그 동반가족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필요

나. 추진경과

2021. 10. 28. (김영주 국회의원) 제안
2022. 1. 10. 국회의결
2022. 1. 25. 법률 제18793호로 공포
2022. 1. 25. 시행

다. 주요내용

○ 대한민국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그 동반가족으로서 국내 정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기여자 등의 처우에 관하여는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의 처우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특별기여자등에 대해 초기생활정착 및 취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4. 형사소송법(1)

가. 추진배경

○ 현행법은 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압수·수색 처분을 할 때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상대방에게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압수·수색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0. 7. 23. (조응천 의원), 2020. 7. 24.(이수진 의원) 제안
2022. 1. 11. 국회의결(대안 가결)
2022. 2. 3. 법률 제18799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압수·수색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본을 교부하도록 함

5. 출입국관리법(1)

가. 추진배경

○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나, 국가비상사태 등의 경우 출국이 제한되어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체류기간이 도과할 수 있으므로, 국가비상사태 등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출입국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때에는 직권 또는 외국인의 신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나. 추진경과

2021. 6. 18. (소병철 국회의원) 제안
2021. 1. 11. 국회의결
2021. 2. 3. 법률 제18798호로 공포
2022. 5. 4. 시행

다. 주요내용

○ 대한민국 또는 다른 국가의 전시, 사변, 전염병 확산,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위기에 따른 국경의 폐쇄, 장기적인 항공기 운항 중단 등으로 인하여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출국이 제한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외국인의 신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

6.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가. 추진배경

○ 피부착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위치추적관제센터가 지자체 CCTV 영상정보를 활용하여야 하나, 개인정보 처리 주체(개별 지자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을 달리 해석하여 활용이 제한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

나. 추진경과

2021. 5. 21. 국회제출
2021. 12. 9. 국회의결
2022. 1. 4. 법률 제18678호로 공포
2022. 7. 5. 법률 시행

다. 주요내용

○ 위치추적관제센터의 장이 피부착자의 준수사항 위반여부 확인 및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자체의 장에게 영상정보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7.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가. 추진배경

○ 범법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시설인 치료감호소가 수용·격리 중심의 교정시설로만 인식되고 있어 치료감호소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명칭 변경 필요

나. 추진경과

2020. 12. 31. 국회제출
2021. 12. 9. 국회의결
2022. 1. 4. 법률 제18678호로 공포
2022. 7. 5. 법률 시행

다. 주요내용

○ 치료·재활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기관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명칭 변경

8. 출입국관리법(2)

가. 추진배경

- 그간 외국인의 송환과 관련하여 운수업자가 그의 비용과 책임으로 그 외국인을 송환하고, 운수업자에게 출입국항에 있는 일정한 장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 운수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까지 관리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과도하고, 출국대기실을 민간이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외국인의 인권침해 문제 및 대기실의 운영 관련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었음
- 이에, 출국대기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운수업자에 책임이 없는 경우 외국인의 출국시까지 발생하는 관리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0. 12. 21. (박영순 국회의원) 제안, 2021. 4. 27. (박주민 국회의원) 제안
2021. 7. 23. 국회의결
2021. 8. 17. 법률 제18397호로 공포
2022. 8. 18. 시행

다. 주요내용

- 출국대기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 마련
- 운수업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외국인의 출국시까지 발생하는 관리비용을 국가가 부담
-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송환대상외국인이 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출국대기실 내 질서를 해하는 경우에는 필요·최소한의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9. 형사소송법(2)

가.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 검사는 송치요구 등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등에 관하여는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는 것을 금지하며,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결과 불송치결정을 받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1. 2. 1. (민형배 국회의원), 2021. 5. 20.(이수진 국회의원), 2021. 8. 12.(황운하 국회의원), 2022. 4. 15. (박홍근 국회의원) 제안
2022. 1. 11. 국회의결(대안 가결)
2022. 5. 9. 법률 제18862호로 공포
2022. 9. 10. 시행

10. 국적법

가. 추진배경

○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의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을 예외없이 제한한 규정은 국적 이탈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내용 및 취지를 고려, 예외적인 국적 이탈 허가 절차 신설

나. 추진경과

2022. 3. 4. 개정안 국회 이송
2022. 9. 1. 국회의결
2022. 9. 15. 법률 제18978호로 공포
2022. 10. 1. 시행

다. 주요내용

- 주된 생활의 근거를 계속하여 외국에 둔 복수국적자의 경우에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령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던 국적심의위원회를 법률상 심의기구로 격상시키면서, 다수의 민간 위원이 참여하도록 하고 종전의 심의사항 외에 국적 이탈 허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심의하도록 함

11. 민법(1)

가. 추진배경

- 개정 전 민법에 따르면 상속인이 미성년자일 때, 법정대리인이 제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 이에 법무부는 빚 대물림의 고리를 끊어 청년들이 정상적이고 공정하게 경제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정승인 제도 개선 추진

나. 추진경과

2022. 4. 법무부,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 마련하여 입안보고 및 입법예고

2022. 8. 10. 국회 제출
2022. 9.~10. 법원행정처 및 전문위원실과 협의를 통한 수정 대안 마련
2022. 11. 24. 국회 본회의 의결
2022. 12. 13. 법률 제19069호로 공포 및 시행

다. 주요내용

- 상속개시 당시 미성년자였던 사람이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날부터 3개월 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민법 제1019조 제4항)
- 한편, 법의 적용 시점에 관해서는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더라도 ① 법 시행 당시 미성년자이거나, ②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몰랐던 성년자에 대해서는 모두 개정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개정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부칙 제2조)

12. 민법(2)

가. 추진배경

- 사법(私法)의 기본법인 「민법」에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나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함

나. 추진경과

2020. 10. 16. 국회제출
2021. 1. 8. 국회의결
2022. 12. 27. 법률 제19098호로 공포 (2023. 6. 28. 시행)

다. 주요내용

○ 민법 제158조를 개정하여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하되,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함(제158조)

13. 채무자회생법

가. 추진배경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에서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을 각각 신설함에 따라 도산전문법원의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서비스 제공범위를 실효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차원에서 회생법원과 접근성이 인정되는 고등법원 권역을 기준으로 회생법원의 도산사건 중복관할을 허용할 필요성이 제기됨

나. 추진경과

2022. 9. 30. (박주민 국회의원), 2022. 10. 4.(김도읍 국회의원), 2022. 10. 5.(우원식 국회의원) 제안
2022. 12. 7. (법제사법위원회 대안) 발의
2022. 12. 8. 국회의결(대안가결)
2022. 12. 27. 법률 제19102호로 공포

다. 주요내용

○ 부산고등법원 관할 소재지인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에 채무자가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 등을 둔 경우 원칙적인 토지관할 법원 외에 부산회생법원에도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중복관할을 허용함

14. 변호사시험법

가. 추진배경

-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석차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2020. 10. 15. 선고 2020두43319) 취지에 맞추어 응시자가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본인의 성적뿐만 아니라 총득점 순위도 공개 청구할 수 있도록 공개 청구가 가능한 시험 정보의 범위를 확대
- 변호사시험 응시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등을 응시 수수료 반환사유에 추가하여 응시자의 편익 증진

나. 추진경과

2021. 12. 22. 정부안 국회 제출
2022. 12. 8. 국회 본회의 의결
2022. 12. 27. 법률 제19100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현재 공개하고 있는 변호사시험 '성적'뿐만 아니라 '석차'도 5년간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제18조 제1항)
- 변호사시험 응시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거나 시험을 끝까지 마치지 못한 경우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응시 수수료 반환 사유를 추가(제20조 제2항)

15. 통신비밀보호법

가. 추진배경

○ 긴급통신제한조치 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수사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통신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

나. 추진경과

2021. 3. 11. 정부 제출
2022. 12. 8. 국회 의결
2022. 12. 27. 법률 제19103호로 공포
2022. 12. 27. 시행

다. 주요내용

○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실시한 모든 경우(36시간 내 중지 여부 불문) 집행착수 후 지체 없이 법원에 허가를 청구하거나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함
○ 긴급통신제한조치 후 법원의 허가 또는 대통령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취득한 자료를 폐기하도록 함
○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해 자료를 폐기할 경우 자료폐기결과보고서(폐기이유·범위·일시 등 기재)를 관할 법원에 송부하고 기록에 첨부하도록 함

1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 추진배경

○ 종전에는 특정범죄가중법상 교통범죄의 대상을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 등에 한정하고 있어 굴착기와 같은 일부 건설기계의 운전자는 가중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어 특정범죄가중법상 가중처벌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 이에 굴착기와 같은 일부 건설기계의 운전자도 특정범죄가중법상 교통범죄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운전자를 도주차량 운전자 가중처벌, 위험운전치사상죄 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어린이 치사상죄로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안전 및 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2. 8. 12. ~ 9. 21. 입법예고
2022. 10. 19. 정부안 제출
2022. 12. 8. 국회의결(대안 가결)
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특정범죄가중법」 상 ① 도주차량 운전자 가중처벌(제5조의3), ② 위험운전치사상(제5조의11), ③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 가중처벌(제5조의13) 규정이 적용되는 자동차에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를 전부 포함하도록 명시함

1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가. 추진배경

○ 교정시설에서의 과도한 작업으로부터 수형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수용자의 재판청구권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

나. 추진경과

○ 2022. 12. 27. 법률 제19105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접촉차단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접견하게 하는 경우를 대통령령에서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수용자의 최대 작업시간을 법률로 규정
○ 작업 중 신체 장해가 발생한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의 지급 시기를 '석방할 때'로 한정하지 않고 언제든 지급할 수 있도록 함

1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 추진배경

○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추가함으로써, 아동학대범죄를 조기 발견하고 피해아동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함

나. 추진경과

2021. 2. 25.(강선우 국회의원), 2021. 12. 6.(최종윤 국회의원) 제안
2022. 12. 8. 국회 의결(대안 가결)
2022. 12. 27. 법률 제19101호로 공포(2023. 6. 28. 시행)

다. 주요내용

○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추가
-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추가

제3절 대통령령

Ⅰ. 대통령령[개정]

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추진배경

○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치료 및 재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소의 장이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 종료사실을 경찰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299호, 2021. 7. 20. 공포, 2022. 1. 21. 시행)됨에 따라,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 종료사실 통보 절차와 통보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마련

나. 추진경과

2022. 1. 11. 대통령령 제32330호로 공포

다. 주요내용

○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 종료사실 통보 절차 등(안 제20조의2 신설)
- 보호관찰소의 장이 보호관찰 종료사실 통보를 위한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성명 등 인적 사항과 죄명·형기, 병명과 치료 이력 등 재범 위험성과 치료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참고할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
-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 종료사실 통보 시 통보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성명 등 인적 사항과 보호관찰 종료일, 병명과 치료 이력 등 범죄예방 및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정함

2. 법무자문위원회규정

가. 추진배경

○ 현행법상 법무자문위원의 자격은 법률학에 조예가 깊은 자로 국한되어 있어 전문적이고 복잡한 사회 분야의 법 제도 개선을 위한 충분한 자문을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법무자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나. 추진경과

2022. 2. 3. 대통령령 제32381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법무자문위원의 자격요건을 “법률학에 조예가 깊은 자”에서 “법무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경하고, 그 인원을 20인에서 25인으로 증원함

○ 법무자문위원회의 간사, 전문위원 및 연구위원의 임명권자를 법무자문위원장에서 법무부장관이 직접하도록 함

3.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1)

가. 추진배경

○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31663호 2021. 5. 4. 공포, 2022. 3. 1. 시행)된 것에 맞추어,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의 하부조직으로 2개 형사부와 3개 과를 신설하면서 정원 1명(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1명)하고, 의정부지방검찰청의

1개 형사부를 폐지하는 한편,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 처리를 위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및 평택지청에 1개 형사부를 각각 신설하고,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위하여 지방검찰청 등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3명(9급 3명)을 기술직군 정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2. 2. 7. 대통령령 제32390호로 공포·시행
(단, 남양주지청 관련 개정 규정은 2022. 3. 1.부터 시행함)

다. 주요내용

- ◦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의 기구 및 정원, 분장사무 정비
  -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은 1지청장, 2형사부, 3과(사무과, 수사과, 집행과)로 하고, 의정부지방검찰청의 형사부 1개를 남양주지청으로 이체함
-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및 평택지청에 각각 형사제4부와 형사제3부를 증설함
- ◦ 관리운영직군을 기술직군으로 전환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및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서 퇴직 등의 사유로 자연감소되는 관리운영직군 정원 3명을 기술직군 정원 3명으로 전환함

4. 검사정원법 시행령

가. 추진배경

- ◦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의 개정(대통령령 제31663호 2021. 5. 4. 공포, 2022. 3. 1. 시행)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이 신설되고,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및 평택지청에 형사부가 증설됨에 따라,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의 검사 정원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및 평택지청 부장검사 정원 확보를 위하여 검찰청별 검사 정원 조정이 필요함

나. 추진경과

2022. 2. 7. 대통령령 제32389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및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과 평택지청 부장검사 정원 배정

-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의 검사 정원 23명 중 15명(부장검사 정원 1명, 검사 정원 14명)은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이체하고,
- 서울서부·춘천·대구·부산지검 및 홍성·경주·포항·통영·목포·군산지청 검사 정원 각 1명(총 10명) 중 2명은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의 지청장 및 부장검사 정원으로, 6명은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의 검사 정원으로, 나머지 2명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과 평택지청의 부장검사 정원으로 각각 재배정함

5.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2)

가. 추진배경

○ '고발사주', '판사사찰'의혹 사건을 계기로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존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문제 제기되는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정보 수집 필요성, 통제 및 점검강화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적 설득이 가능한 방향으로 재설계 필요

나. 추진경과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4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수사정보담당관 폐지 및 정보관리담당관 신설, 검찰의 수사정보의 수집·관리·분석 기능과 검증·평가 기능을 분리

- 수사정보에 대한 수집·관리·분석·검증 및 평가 기능을 모두 수행하던 수사정보담당관을 폐지하되, 대검찰청에서 생성하는 수사정보의 수집·관리·분석 업무 등을 수행하는 정보관리담당관을 신설하고, 정보관리담당관이 직접 수집한 수사정보의 검증·평가는 별도의 회의체에서 담당하도록 함

6.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가. 추진배경

○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 위원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 개정

나. 추진경과

2022. 1. 11. ~ 2. 21.	입법예고
2022. 3. 29.	국무회의 통과
2022. 4. 5.	대통령령 제32562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형사사법정보체계 실무협의회의 위원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를 추가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를 위한 기관별 운영세칙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기관에 해양경찰청장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추가

7.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추진배경

○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을 가지고 국내에 체류하는 학령기 외국국적동포의 취학을 지원하기 위하여 '초·중·고등학교 재학 여부'를 '국내거소 신고사항'에 추가하여 취학 지원 대상자 파악 필요

나. 추진경과

2022. 4. 12. 대통령령 제32569호로 공포 및 시행

다. 주요내용

○ 국내거소 신고사항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하는지 여부"를 기재하고, 첨부서류에 "재학증명서 등 학교에 재학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설

8.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추진배경

○ 종이어음은 만기의 제한이 없고 분실, 훼손 등의 위험이 있으며 고의부도나 어음사기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종이어음을 전자어음으로 대체하기 위해 전자어음의 의무발행 대상을 확대하되 영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의무발행 대상의 제한적 확대

나. 추진경과

2022. 1. 27. 제4회 차관회의 통과
2022. 2. 3. 제6회 국무회의 통과
2022. 2. 8. 대통령령 제32393호로 공포
2022. 5. 9. 시행

다. 주요내용

○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자를 외부 감사대상 주식회사 및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억 원 이상의 법인사업자로 확대
- 기존의 의무발행 대상자는 외부 감사대상 주식회사 및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10억 원 이상의 법인사업자
- 의무발행 대상 확대에 따른 혼란 방지, 소규모 법인사업자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9.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3)

가. 추진배경

○ 검찰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죄 대응을 위하여, 지방검찰청 및 지청 마지막 순위 형사부에서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 수사를 개시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는 등 형사부 분장사무를 개편하고, 형사부로 전환되었던 각급 검찰청 주요 전문수사부서의 기능에 따른 명칭을 부여하며, 수사를 위한 임시조직을 설치하려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도모하는 등 검찰청의 조직과 기능을 조정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2. 7. 4. 대통령령 제32752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형사부 분장사무 개편
- 일반 형사부도 제한없이 수사하고, 기관장 재량에 따라 탄력적 부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형사부 분장사무 정비
- 지방검찰청 및 지청 마지막 순위 형사부에서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 수사를 개시하도록 한 규정 폐지

○ 일선청 전문부서 기능 강화
- 형사부로 전환되었던 각급 검찰청 주요 전문수사부서에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을 부여하고, 부서별 기능에 따라 차장 산하 부서 재편 및 공판부 균형 배치

○ 수사를 위한 임시조직 설치 제한 규정 폐지
- 수사를 위한 임시조직을 설치하려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 도모

10.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추진배경

○ 개정전 형사소송법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현행 형사소송법 조문을 인용하도록 수정 필요(법제처 요청)

○ 수사자료표 작성 관련 조문에 규정된 '인적사항'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취지로 항목 구체화 필요(경찰청 요청)

○ 기타 불필요한 조문 삭제 및 용어 정비

나. 추진경과

2022. 3. 15. 관계부처 협의
2022. 4. 13. 입법예고
2022. 6. 28. 국무회의 의결
2022. 7. 5. 대통령령 제32771호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현행 형사소송법 조문 인용
- 제6조에서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위임에 따라 수사자료표를 작성할 사법경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개정전 형사소송법 조문인 '제196조 제1항의 사법경찰관'으로 되어 있어 현행 형사소송법 조문에 따라 '제197조 제1항의 사법경찰관'으로 수정

○ 수사자료표 작성 항목 명확화
- 제2조에서는 수사자료표에 작성하는 항목을 규정하고 있고, 사법경찰관은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별표 서식에 따라 피의자의 '국적',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등을 작성하고 있음(외국인인 경우 '여권번호', '외국인 등록번호'도 포함)
- 실무를 반영하여 '인적사항'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피의자의 성명, 국적,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으로 수정

※ 특히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은 그 처리를 엄격히 제한하는 취지이므로 명확히 추가할 필요

○ 불필요한 조문 삭제
- 제2조의2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위임을 받아 범죄경력자료의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형실효법 개정으로 인해 해당 사항들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삭제(현재 형실효법 상 위임규정 부존재)

○ 기타 용어 정비
- 제7조 제1항에서는 "법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알기 쉬운 용어인 "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라고 정비

※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법 제6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로 규정되어 있어 문구 통일 필요

11.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가. 추진배경

○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리의 민감정보 등의 처리에 관한 인용 규정 정비가 필요함

나. 추진경과

2022. 7. 5. 대통령령 제32770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형사소송법」(법률 제16924호, 2021. 1. 1. 시행)이 개정되면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을 위한 근거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던 「형사소송법」 조문을 현행 조문에 맞도록 정비함

12.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가. 추진배경

○ 법제처에서는 우선 취업한 후 학업을 병행하는 청년들의 구직기회 확대 등을 위해 법령 일괄 정비를 추진

○ 기존 범죄피해자보호시설의 시설종사자 자격 요건(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제5조 별표3)에 따르면, 전문상담사 교육을 이수하거나 사회복지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이전에 상담원이나 생활지도사로 근무한 이력은 실무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됨

○ 이에, 전문상담사 교육 이수 또는 사회복지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전후를 불문하고 관련 근무 이력을 모두 실무경력으로 인정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청년들의 구직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1. 12. 인권구조과 개정안 법제처 제출
2022. 5. 25. 입법예고(~7. 4.)
2022. 7. 19. 법제처 심사 완료
2022. 8. 2. 제34회 국무회의
2022. 8. 9. 대통령령 제32868호로 공포 및 시행

다. 주요내용

○ 시설종사자 자격요건 중 '전문상담사 교육 이수 또는 사회복지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1년 이상 상담원 또는 생활지도사로 근무한 경력'에 '석사학위 취득 전 또는 교육 이수 전의 경력'도 포함하도록 함

1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가. 추진배경

○ 출국대기실의 운영 주체를 민간에서 국가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통과(2022. 8. 18. 시행)됨에 따라, 출입국항 내의 출국대기실에서 대기해야 하는 송환대상 외국인의 대기장소를 외국인의 편의 등을 위해 출입국항 내의 다른 장소로 변경하는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2. 8. 16. 대통령령 제32871호로 공포
2022. 8. 18. 시행

다. 주요내용

- 출입국항 내에서의 송환대기장소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출입국항 사이의 송환대기장소 변경 및 외출 규정의 신설
- 관리비용의 부담 및 납부 절차를 규정

14.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가. 추진배경

-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로 예시된 중요 범죄의 유형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검찰청법」이 개정(법률 제18861호, 2022. 5. 9. 공포, 9. 10. 시행)됨에 따라, 중요 범죄인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그 성격에 따라 재분류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중요 범죄에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를 추가하는 등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 범죄의 범위를 정비함
- 법률의 위임 없이 검사가 기존 사건과 관련하여 인지한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불합리하게 제한하여 오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규정을 삭제하여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신속한 수사개시를 통해 수사 절차 지연 등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나. 추진경과

2022. 9. 8. 대통령령 제32909호로 공포(2022. 9. 10. 시행)

다. 주요내용

○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 범죄의 범위 정비(안 제2조, 안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신설)

- 부패범죄를 사무의 공정을 해치는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이나 손해를 도모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범죄 등으로 정의하고, 부패범죄에는 직권남용죄 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관련 부패범죄와 공무원의 부정선거운동죄 등 정치자금 및 공직선거 관련 법률에 따른 부패범죄 등이 포함되도록 함
- 경제범죄를 생산·분배·소비·고용·금융·부동산·유통·수출입 등 경제의 각 분야에서 경제질서를 해치는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경제적 이익이나 손해를 도모하는 범죄로 정의하고, 경제범죄에는 횡령·배임죄 등 「형법」상 경제범죄와 보험사기죄 등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경제범죄 등이 포함되도록 함
-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 범죄에 무고·도주·범인은닉·증거인멸·위증·허위감정통역·보복범죄 및 배심원의 직무에 관한 죄 등 국가의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와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하도록 규정된 범죄를 추가함

○ 송치받은 사건 등과의 직접 관련성 규정 삭제

-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 약화와 수사 절차 지연 등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법률의 위임 없이 하위 법령으로 검사가 기존 사건과 관련하여 인지한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 온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관련 규정을 삭제함

15.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추진배경

○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으로 공무원 봉급 등이 총 보수 대비 1.4퍼센트 인상·조정됨에 따라 이를 검사의 봉급에 반영함

나. 추진경과

2022. 10. 11. 대통령령 제32984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검사의 보수에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인상분 반영
-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여 검사의 봉급액을 인상·조정('22. 1. 1.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
- 단, 3호봉 이상의 검사의 경우에는 별표2(검사의 봉급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22. 12. 31.까지는 부칙 규정에 의해 봉급을 지급

16. 변호사법 시행령

가. 추진배경

○ 기존 군사법원 및 군검찰 조직을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이 개정·시행('22. 7. 1.)됨에 따라, 군사법원법을 준용하고 있는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 규정을 개정 군사법원법 체계에 맞추어 개정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2. 7. 14. 입법예고
2022. 12. 6. 국무회의 의결
2022. 12. 20. 시행

다. 주요내용

○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이 제한되는 국가기관의 범위에 관한 변호사법 시행령 규정 중 '군사법원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고등군사법원 및 보통군사법원'을 '군사법원법 제6조에 따른 각 지역군사법원'으로, '군사법원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고등검찰부 및 보통검찰부'를 '군사법원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으로 각 개정함(변호사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3호·제4호, 제8조 제1호 다목·2호 바목)

17. 국적법 시행령

가. 추진배경

○ 복수국적자의 예외적인 국적이탈 허가 절차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적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세부 절차를 구체화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필요

나. 추진경과

2022. 12. 20. 대통령령 제33082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 신청의 자격기준 및 허가 시 고려사항 등 구체화
- ○ 국적심의위원회의 운영 사항 규정

18.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4)

가. 추진배경

- ○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면서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추가로 설치하고 분장사무를 확대하며,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산지방검찰청의 조직과 기능을 일부 조정하는 한편, 정부의 통합활용정원 운영 계획에 따른 자체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등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인력 수요를 고려하여 마약수사직 8명을 증원(5급 3명, 6급 1명, 7급 2명, 9급 2명)하는 등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2. 12. 29. 대통령령 제33171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제2부 신설
  -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여성아동범죄조사제2부 추가 신설하고, 그 분장사무에 스토킹·노인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 부산지방검찰청 조직개편
  - 부산지역의 특성상 조직·마약범죄가 만연하여 강력범죄 등에 대한 범죄대응 역량 강화

필요에 따라, 부산지방검찰청의 반부패·강력수사부를 반부패수사부와 강력범죄수사부로 분리함(부신설에 따른 부장검사 정원 확보를 위해 공판제1부와 공판제2부를 공판부로 통합)

○ 정부인력 효율화를 위한 통합활용정원 적용에 따른 검찰청 직원 정원 감축 및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인력 증원

- 대검찰청에 피의자 등의 심리 감정·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 스토킹 범죄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 수사정보 검증·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을 각각 증원하고,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2명,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 사이버 마약거래 수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 고액 벌금·과료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 국제범죄 수사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 지청 방호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을 각각 증원하고,
-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의 정원 5명과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 포함)의 정원 76명을 각각 감축함

제4절 총리령 및 법무부령

Ⅰ. 규칙[제정]

1. 출국대기실 운영 규칙

가. 추진배경

○ 송환 대상 외국인은 출국하기 전까지 출국대기실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출국대기실의 운영 및 안전대책 등에 관하여는 외국인 보호시설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397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됨에 따라, 출국대기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2. 5. ~ 2022. 7.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
2022. 7. ~ 2022. 8.	부내심사 및 법제처 심사
2022. 8. 18.	법무부령 제1033호 제정
2022. 8. 18.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출국대기실의 입실 절차, 입실외국인의 면회 및 통신, 안전대책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

Ⅱ. 규칙[개정]

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 종료사실 통보를 위하여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하는 서식 등을 정하는 한편, 도주할 염려가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구인(拘引)을 신청할 때에 사용하는 구인장 신청서의 법률 인용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나. 추진경과

2022. 1. 13. 법무부령 제1020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보호관찰 종료사실 통보 심사 신청서 등(제25조의3 신설)
- 보호관찰 종료사실 통보를 위한 심사 신청서는 별지 제16호의2 서식
- 보호관찰 종료사실 통보를 위한 심사 결정은 별지 제3호 서식

2. 법무자문위원회 운영규칙

가. 추진배경

○ 법무자문위원회 전문위원 등 직원의 임명 또는 위촉권자를 법무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무자문위원회규정」 개정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을 현행화하는 등 명확하게 정하기 위함

나. 추진경과

2022. 2. 3. 법무부령 제1021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 법무자문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직무를 「법무자문위원회규정」 제3조 각호에 대해 법무자문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분장하는 것으로 함
- ○ 「법무자문위원회규정」 개정에 따라 법무자문위원회 전문위원 및 연구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권자를 법무부장관으로 변경함

3.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1)

가. 추진배경

-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서는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하는 등 방법으로 35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함

나. 추진경과

2021. 8. 9. 입법예고(~9. 23.)
2022. 1. 24. 법제처 심사 완료
2022. 2. 7. 법무부령 제1022호로 공포 및 시행

다. 주요내용

○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중 "「주택법」 제5조의3"을 "「주거기본법」 제18조"로, 제1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같은 항 제7호 중 "예금잔고증명서"를 "예금잔액증명서"로, 별지 제21호 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7호 중 "예금잔고증명서"를 "예금잔액증명서"로 개정

4.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1)

가. 추진배경

○ 법무부에 교정시설의 감염병 예방·대응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에 수용자의 처우 개선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한 관리 체계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76명 중 168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32명, 7급 52명, 8급 54명, 9급 26명)은 증원하고, 8명(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9급 2명)은 법무부에서 법무부 소속기관으로 이체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1476호, 2022. 2. 22.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법무부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소년원의 인력 1명(6급 1명)을 치료감호소로 이체하는 대신 치료감호소 인력 1명(9급 1명)을 소년원으로 이체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대전보호관찰소 홍성지소, 대구보호관찰소 포항지소, 전주보호관찰소 군산지소에 두던 하부조직을 서울남부보호관찰소, 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및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 두도록 하며, 일부 보호관찰소 및 출입국·외국인관서의 관할구역과 위치를 현행화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2. 2. 22. 법무부령 제1023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2022년도 소요정원 반영
- 인력 증원 : 171명(305명 중 1분기 반영 인력)
- 기구 신설 :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및 관리과·조사과, 의정부보호관찰소 남양주지소, 대구지방교정청 분류센터 및 서울지방교정청 대체복무교육센터 신설

5.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1)

가. 추진배경

○ 국민들이 결격사유의 요건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결격사유로 규정된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형의 선고와 관련한 결격사유 요건을 명확하게 정비하는 한편, 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선원 인력 수급관리를 목적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외국인 선원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나. 추진경과

2022. 4. 12. 법무부령 제1024호로 공포 및 시행(일부 2022. 8. 1. 시행)

다. 주요내용

○ 형의 선고와 관련된 결격사유 명확화
○ 외국인 선원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기준을 완화
○ 결혼이민(F-6) 자격 사증발급 신청 시 첨부서류 정비
○ 선원취업(E-10) 자격 외국인등록 신청 시 첨부서류 정비
○ 통합신청서식에 재학 여부 표시란 추가

6.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가지고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학령기 외국국적동포의 취학 지원을 위하여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할 때에 초등학교 등 학교에 재학하는지 여부를 함께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2569호, 2022. 4. 12.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2. 4. 12. 법무부령 제1025호로 공포
2022. 4. 12. 시행(일부 2022. 8. 1. 시행)

다. 주요내용

○ 재외동포 통합신청서식에 학교에 재학하는지 여부를 표시하는 란을 추가
○ 중국 국적 재외동포의 국내거소신고 등 민원 편의를 위하여 중문 재외동포 통합신청서식을 신설

7.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2)

가. 추진배경

○ 대한민국 또는 다른 국가의 전시, 사변, 전염병 확산 등에 따른 장기적인 항공기 운항 중단 등으로 인하여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출국이 제한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해당 외국인에 대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798호, 2022. 2. 3. 공포, 5. 4. 시행)됨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2. 5. 4. 법무부령 제1026호로 공포 및 시행

다. 주요내용

○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기준을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인지 여부 및 장기·단기 체류자격 또는 영주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으로 정함

8.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가. 추진배경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국선변호사 선정기간 직권연장 및 선정요청기관 확대, 제도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평가제 도입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나. 추진경과

2022. 2. ~ 4.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
2022. 5. 9. 법무부령 제1027호로 공포
2022. 5. 9. 시행(일부 2022. 7. 1. 시행)

다. 주요내용

- ○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피해장애인에 대한 국선변호사 선정(제1조의2제1호라목)
- ○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사 선정범위 확대(제8조제2항제4호)
- ○ 국선변호사 선정요청기관 확대(제11조제1호)
- ○ 국선변호사 선정기간 직권연장(제13조제2항)
- ○ 국선변호사에 대한 감독 강화(제22조 및 제24조)

9.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 ○ '22. 1. 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법률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서식 정비 필요

나. 추진경과

2022. 7. 5. 법무부령 제204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 조문 및 서식 개정
  - 개정 법률을 반영하여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개정

1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2)

가. 추진배경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법무부에 설치한 범죄예방데이터과의 존속기한을 2022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5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법무부 정원 5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5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법무부 소속기관인 서울지방교정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대체복무교육센터의 평가기간을 2024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개월 연장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법무부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4명(7급 1명, 9급 3명)을 기술직군으로 전환하며, 법무부 하부조직의 일부 분장사무를 정비하고, 현행 법령 속 일부 어려운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2. 5. 31. 법무부령 제1028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벤처형조직 범죄예방데이터과 및 직급상향 정원의 존속기간 1년 연장 등 반영
- 범죄예방데이터과 및 직급상향 정원 5명의 존속기한을 2022. 5. 31.에서 2023. 5. 31.까지 1년 연장

○ 신설기구 서울지방교정청 대체복무교육센터 평가기간을 2024. 9. 30.에서 2024. 12. 31.까지 3개월 연장

11.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3)

가. 추진배경

○ 법무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에게서 위탁받는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관 밑에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0명(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경정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2668호, 2022. 6. 7. 공포·시행)됨에 따라 신설되는 인사정보관리단장의 하부조직을 구체화하고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2. 6. 7. 법무부령 제1029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 인력 증원 : 20명 증원
- 기구 신설 : 인사정보관리단장, 인사정보1담당관, 인사정보2담당관 신설

12.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4)

가. 추진배경

○ 법무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부 법무연수원에 두는 연구위원 5명(검사 5명)을 증원하고, 치료감호소의 명칭을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2718호, 2022. 6. 27. 공포, 2022. 6. 27. 및 2022. 7. 5.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2. 6. 27. 법무부령 제1030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증원
  - 인력 증원 : 5명 증원
- 치료감호소 명칭을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

1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 '22. 1. 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마련 필요

나. 추진경과

2022. 7. 5. 법무부령 제205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영상정보 열람 사실의 통지에 필요한 사항 마련

- (통지시기) 위치추적관제센터의 장은 피부착자에 관한 영상정보 열람 사실을 열람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피부착자에게 통지
- (통지방법) 휴대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전화, 팩스, 우편 등

14.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5)

가. 추진배경

○ 소년사법정책 및 집행 전반을 관리하기 위하여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 2025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소년범죄예방팀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정원 5명(5급 2명, 6급 3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법무부의 정원 1명(9급 1명)을 법무연수원으로, 법무연수원의 정원 1명(7급 1명)을 법무부로 상호이체 하는 한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과장의 분장사무에 외국 우수인재에 관한 거주·영주 등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고, 보호관찰소 및 그 지소 중 행정지원과 또는 조사과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업무를 복수의 과장 중에서 대신하여 분장할 수 있도록 하며, 서울고등검찰청의 사건 관할 구역과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관할 구역 일치를 위하여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 관할 구역 일부를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관할로 변경하고,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의 범죄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하여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업무 담당 기관을 기존 6개 보호관찰소에서 18개 보호관찰소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2. 8. 4. 법무부령 제1031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소년범죄예방팀 신설
- 기구 신설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범죄예방정책국에 2025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소년범죄예방팀 신설
- 정원 5명 직급 상향

15.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3)

가. 추진배경

○ 입국이 허락되지 않은 외국인이 탔던 선박의 장 등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외국인의 송환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그 외국인을 송환하도록 하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항에 출국대기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선박의 장 등에게 송환 대상 외국인의 관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397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2. 8. 18. 법무부령 제1032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선박의 장 등에게 송환을 지시하는 구체적 방법 규정
○ 송환기한의 연기에 관한 절차 신설
○ 관리 요청에 따른 송환 대상 외국인의 관리 기준 마련

16.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6)

가. 추진배경

○ 법무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난민심의과의 평가기간을 2022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9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2. 9. 30. 법무부령 제1035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신설기구 평가기간 연장
- 난민심의과 평가기간을 2022년 9월 30일에서 2024년 9월 30일까지 2년 연장

17.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7)

가. 추진배경

○ 법무부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거창구치소를 신설하고 제주교도소를 증축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03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8명, 7급 13명, 8급 37명, 9급 37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2969호, 2022. 11. 1.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2. 11. 1. 법무부령 제1036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2022년도 소요정원 반영
- 인력 증원 : 103명(305명 중 3분기 반영 인력)
- 기구 신설 : 거창구치소 및 총무과, 직업훈련과, 복지과, 사회복귀과, 의료과 신설

18.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2)

가. 추진배경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민원인에 대한 불필요한 서류 요구를 최소화하고 민원인의 신청에 따라 민원인의 정보를 공동이용망을 이용해 행정청이 확인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구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검찰청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를 피해자 동의를 받아 검찰청에서 확인하여 피해자가 별도 제출하지 않도록 개선하고자 함

나. 추진경과

2022. 3. 22. 입법예고(~5. 2.)
2022. 10. 28. 법제처 심사 완료
2022. 11. 7. 법무부령 제1037호로 공포 및 시행

다. 주요내용

○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
- 유족구조금·긴급구조금 신청 시 입양관계증명서 제출 근거 명시
-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등 제출 서류 명시

○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
- 장해구조금 등 신청 시 친족관계 증명서류,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제출 근거 명시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신청인의 제출서류 간소화 신설

○ 별지 제9호 ~ 제11호
- 민원처리법 개정에 따라 구조금 신청시 본인정보 제공 요구 항목 신설 등

19. 국적법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 복수국적자의 예외적인 국적 이탈 허가절차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필요

나. 추진경과

2022. 12. 20. 법무부령 제1040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 신청을 위한 신청서의 서식 지정

○ 국적이탈 허가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를 국적이탈 허가 신청의 세부 자격기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거나 보유 중임을 증명하는 자료, 신청인과 그의 직계존속 등의 출입국 사실에 관한 자료 등으로 규정

20.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 시 외국인의 인적사항 확인 등을 위하여 첨부할 수 있는 서류에 여권 또는 여권 사본에 준하는 서류 등을 추가하고,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외국인의 등록대장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대통령령 제33115호, 2022. 12. 27. 공포·시행)에 따른 서식 마련 및 각종 신청서 미비점 보완·개선

나. 추진경과

2022. 12. 27.　법무부령 제1041호로 공포 및 시행

다. 주요내용

○ 등록사항변경신청서 서식 신설 및 각종 신청서의 기관명칭 변경 및 영문 수정 등
- 등록사항 변경의 근거를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에 마련함에 따른 서식 신설과 각종 신청서의 기관명칭 변경, 영문 수정, 항목추가 등 수정 필요사항 개정

21.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8)

가. 추진배경

○ 법무부에 법률구조기구 간 연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에 구치소·교도소 등 교정기관 수용동의 교대근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0명(6급 2명, 7급 2명, 8급 8명, 9급 8명), 수용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2명(6급 5명, 7급 7명, 8급 10명), 가석방 심사의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4명(6급 1명, 7급 5명, 8급 4명, 9급 4명), 수용자의 급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6급 1명, 7급 3명, 8급 2명, 9급 1명),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7급 1명, 8급 2명, 9급 1명), 사회봉사명령의 집행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0명(6급 4명, 7급 6명, 8급 5명, 9급 5명),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2명(6급 8명, 7급 12명, 8급 12명),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전자여행허가센터 신설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2명(5급 1명, 6급 2명, 7급 3명, 8급 3명, 9급 3명)을 각각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32명(6급 8명, 7급 12명, 8급 12명)은 평가대상 정원으로, 12명(5급 1명, 6급 2명, 7급 3명, 8급 3명, 9급 3명)은 평가대상 조직으로 각각 증원하며, 국립법무병원 의무직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약물중독재활센터장 등 정원 3명(4급 3명)의 직급을 하향 조정(4급 또는 5급 3명)하면서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무부의 정원 7명(5급 2명, 6급 2명, 7급 2명, 9급 1명)과 법무부 소속기관의 정원 103명(5급 2명, 6급 15명, 7급 23명, 8급 29명, 9급 34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3165호, 2022. 1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개방형직위의 효율적인 운영과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무부의 실·국장급 개방형직위 중 법무심의관을 제외하고 인권국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고, 효율적인 조직·인력 운영을 위하여 법무부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직렬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6명(9급 6명)을 기술직군 직렬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5명(9급 5명)과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의 정원 1명(9급 1명)으로 각각 전환하며, 체류외국인 관리 및 출입국사범 관리를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등 법무부 소속기관 평가대상 정원 331명(6급 72명, 7급 95명, 8급 86명, 9급 78명)의 평가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2. 12. 29. 법무부령 제1044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2022년도 소요정원 반영
  - 인력 증원 : 31명(305명 중 4분기 반영 인력)
- '22년 하반기 수시직제 반영
  - 인력 증원 : 101명
  - 기구 신설 :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자여행허가센터 신설
- '22년 통합활용정원 감축 반영
  - 인력 감축 : 110명
- 신설기구 및 신규인력을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으로 반영
  - 평가대상 기구 :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자여행허가센터
  - 평가대상 정원 : 전자감독 대상자 감독 인력 32명

22.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3)

가. 추진배경

-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1호 ~ 제8호에 따라 범죄피해자지원법인 등록신청서의 첨부 서류 제출 시 요구되는 임원의 이력서, 취임동의서는 제9호에 명시된 첨부 서류와 중복 가능. 이에 중복되는 서류를 제출 서류에서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불편을 감소시키도록 규제 개선이 필요

나. 추진경과

2022. 11. 8. 입법예고(~12. 19.)
2022. 12. 27. 법제처 심사 완료
2022. 12. 30. 법무부령 제360호로 공포 및 시행

다. 주요내용

○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 신청서 첨부 서류 간소화
- 범죄피해자지원법인 등록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중 중복되는 서류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첨부서류 중 '임원 이력서' 및 '임원 취임승낙서'의 경우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임원의 이력서, 취임동의서)와 중복될 수 있음
- 이에 제12조 제2항 제9호에 따른 첨부 서류 중 '제1호부터 제8호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

Ⅲ. 규칙[폐지]

1.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 범죄인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그 성격에 따라 재분류하여 직접 규정하고, 부패범죄 중 '공무원 등 주요공직자'의 범위에 관하여 법무부령으로 위임하였던 근거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32902호, 2022. 9. 8. 공포, 9. 10. 시행)됨에 따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이 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2. 9. 8. 법무부령 제1034호로 공포(2022. 9. 10. 시행)

다. 주요내용

○ 상위법령인 「검찰청법」,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중요범죄'의 분류체계가 변경되고(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 및 영 제2조 각 호), '주요공직자'의 범위에 대한 위임규정이 삭제된 점(영 제2조제1호가목) 등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은 폐지하고 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은 영에서 일원적으로 규정함

法務年鑑

04



국회업무

제1절 국회업무

제1절 국회업무

가. 정기회 및 임시회

기획재정담당관실 주무관 박창현

2022년도에는 총 9회(393회 ~ 401회)에 걸쳐 정기회 및 임시회가 개최되었다. 법무부는 미래 번영을 이끄는 일류 법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공정한 검찰,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등 주요정책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국적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출입국관리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민법」 등의 법안들이 통과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 외에 법사위 국정감사와 업무보고, 현안보고를 통해 우리 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과 현안 과제의 추진상황을 알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 표 4-1 | 회차별 국회활동 개관

구분	회기	국회 활동 개관
제393회	'22. 1. 27. ~2. 25. (30일간)	【본회의】 • 총 3차례 개의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22. 1. 27.) •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22. 2. 21.) 【법제사법위원회】 • 총 2차례 개회(전체회의 2)
제394회	'22. 3. 7. ~4. 5. (30일간)	【본회의】 • 총 1차례 개의 • 국회 운영위원장 보궐선거('22. 4. 5.) 【법제사법위원회】 • 총 3차례 개회(전체회의 2, 제1소위 1)

구분	회기	국회 활동 개관
제395회	'22. 4. 6. ~4. 27. (22일간)	【본회의】 • 총 2차례 개의 • 통과법안('22. 4. 15.) –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회】 • 총 11차례 개회(전체회의 4, 제1소위 6, 안건조정회의 1)
제396회	'22. 4. 30. (1일간)	【본회의】 • 총 1차례 개의 • 통과법안('22. 4. 30.)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397회	'22. 5. 3. ~6. 1. (30일간)	【본회의】 • 총 4차례 개의 • 통과법안('22. 5. 3.)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18건)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제20대 대통령(윤석열) 취임사('22. 5. 16.) 【법제사법위원회】 • 총 7차례 개회(전체회의 5, 제1소위 2)
제398회	'22. 7. 4. ~8. 2. (30일간)	【본회의】 • 총 8차례 개의 • 국회의장, 부의장 선거('22. 7. 4.) • 교섭단체 대표연설(더불어민주당, '22. 7. 20.) • 교섭단체 대표연설(국민의힘, '22. 7. 21.) • 정치외교통일분야 대정부질문('22. 7. 25.) • 경제분야 대정부질문('22. 7. 26.) •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22. 7. 27.) 【법제사법위원회】 • 총 4차례 개회(전체회의 4)
제399회	'22. 8. 16. ~8. 31. (16일간)	【법제사법위원회】 • 총 5차례 개회(전체회의 4, 제1소위 1)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 총 1차례 개회(전체회의 1)

구분	회기	국회 활동 개관
제400회	'22. 9. 1. ~ 12. 9. (100일간)	【본회의】 • 총 14차례 개의 • 통과법안('22. 9. 1.)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통과법안('22. 11. 24.)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 • 통과법안('22. 12. 8.)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회】 • 총 16차례 개회(전체회의 8, 제1소위 7, 제2소위 1) • 국정감사('22. 10. 4. ~ 10. 24.) – 법무부('22. 10. 6.), 대검찰청('22. 10. 20.), 종합감사('22. 10. 24.) 실시
제401회	'22. 12. 10. ~ '23. 1. 8. (30일간)	【본회의】 • 총 5차례 개의 • 2023년도 예산안('22. 12. 24.) • 국회의원(노웅래) 체포동의안('22. 12. 28.) 【법제사법위원회】 • 총 1차례 개회(전체회의 1)

나. 당정협의 및 간담회

당정 협의·간담회에서는 규제혁신 방안, 스토킹 범죄 대책, 마약류 관리 대책 등 현안에 대하여 당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대처방안 마련 등을 논의하였다.

| 표 4-2 | 당정협의 및 간담회

구 분	일시	논의 안건	참석자
당정 협의	'22. 8. 5.	• 규제혁신 당정협의회 (규제혁신 방안)	• **〈당 측〉** – 성일종 정책위의장, 임이자 환노위 간사, 박형수 법사위 위원 등 • **〈정부 측〉** – 국조실장, 국무2차장, 환경부 차관, 법무부 법무실장 등
당정 협의	'22. 8. 25.	• 정기국회 대비 국민의힘 연찬회 (정기국회 중점추진법안 및 주요현안)	• **〈당 측〉** – 김도읍 위원장, 정점식 간사, 박형수 위원 등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위원 • **〈정부 측〉** –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등
당정 협의	'22. 9. 22.	• 스토킹 범죄 대책관련 긴급 당정협의회	• **〈당 측〉** – 성일종 정책위의장, 정점식 법사위 간사, 이만희 행안위 간사, 전주혜 의원 등 • **〈정부 측〉** – 경찰청장, 법무부 차관 등
고위 당정 협의	'22. 9. 25.	• 스토킹 등 집착형 잔혹범죄 대응 방안 등	• **〈당 측〉** –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등 • **〈정부 측〉** –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법무·농림·고용부장관, 국조실장 등 • **〈청 측〉** – 대통령비서실장, 국정기획·정무·홍보·경제·사회수석 등
당정 협의	'22. 10. 26.	•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	• **〈당 측〉** –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정점식 법사위 간사, 이만희 행안위 간사, 강기윤 복지위 간사, 장동혁 원내대변인 등 • **〈정부 측〉** – 국조실장, 법무부 차관, 경찰청장, 식약처장 등
당정 협의	'22. 11. 11.	•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당정협의	• **〈당 측〉** –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정점식 법사위 간사, 김정재 국토위 간사, 당 원내대변인 등 • **〈정부 측〉** – 법무부 차관, 국토부 1차관, 법무부 법무심의관 등

法務年鑑

05



통 계

제1절 법무업무 통계
제2절 검찰업무 통계
제3절 범죄예방업무 통계
제4절 인권업무 통계
제5절 교정업무 통계
제6절 출입국·외국인정책업무 통계

제1절 법무업무 통계

1. 법무업무

| 표 5-1 | 법령자문

(단위 : 건)

부처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5,096	4,458	4,811	5,089	6,039	6,541	7,322	6,608	7,581	5,586
기획재정부	149	153	171	169	174	314	285	150	106	127
교육부	185	222	217	287	303	234	262	389	401	397
미래창조과학부	107	149	192	78	92	-	-	-	-	-
교육과학기술부	41	-	-	-	99	-	-	-	-	-
과학기술부	-	-	-	-	-	-	-	-	-	-
교육인적자원부	-	-	-	-	-	-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	-	348	228	231	218	165
외교부	27	26	23	32	33	18	40	42	28	28
통일부	153	16	28	44	41	57	65	68	67	43
법무부	480	263	438	272	570	710	1,008	896	892	754
국방부	121	118	138	101	142	118	130	126	180	112
행정자치부	-	19	313	418	247	-	-	-	-	-
안전행정부	625	412	-	-	187	-	-	-	-	-
행정안전부	-	-	-	-	187	509	605	672	842	576
문화체육관광부	192	224	225	210	240	249	345	332	364	288
농림축산식품부	281	238	287	310	279	309	308	319	352	358
산업통상자원부	316	252	324	370	248	314	379	246	225	140
보건복지부	432	346	430	469	609	530	567	541	795	499
환경부	210	164	196	220	250	310	344	316	349	290
고용노동부	194	145	172	200	261	229	273	170	318	214
여성가족부	118	125	121	77	108	122	114	146	151	104
국토교통부	553	571	578	559	687	706	720	744	897	498
해양수산부	120	194	196	179	176	203	293	212	269	228
중소벤처기업부	-	-	-	-	-	156	190	157	140	132
국민안전처	-	2	150	139	103	-	-	-	-	-
방송통신위원회	38	35	47	70	67	91	82	75	107	69
국무조정실	25	21	10	25	31	28	29	32	50	25
공정거래위원회	51	33	34	74	132	88	141	76	62	33
금융위원회	192	169	94	198	186	231	274	188	151	99
국민권익위원회	14	10	9	11	25	26	23	50	59	2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	-	-	-	-	3	25	20
국가보훈처	64	55	60	66	86	81	72	108	122	69
인사혁신처	-	1	50	57	65	91	85	99	109	76
법제처	15	10	5	8	11	12	9	18	16	16

부처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식품의약품안전처	91	103	103	106	131	119	131	137	172	78
기타	302	382	200	340	456	338	320	65	114	119

| 표 5-2 | 법령해석

(단위 : 건)

부처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10	168	185	188	171	178	204	171	251	224
기획재정부	1	2	-	2	-	1	2	2	5	-
교육부	-	7	6	1	2	-	-	-	2	11
미래창조과학부	-	1	1	-	-	-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	-	2	3	4	1	3
외교부	-	-	-	2	4	1	1	4	3	2
통일부	-	1	-	-	-	-	-	-	-	-
법무부	1	-	8	17	12	10	13	11	15	8
국방부	-	-	1	2	1	3	-	2	-	-
행정자치부	-	-	6	6	2	-	-	-	-	-
안전행정부	-	5	-	-	-	-	-	-	-	-
행정안전부	-	-	-	-	-	9	6	12	27	4
문화체육관광부	2	1	-	-	-	1	3	-	1	2
농림축산식품부	-	2	-	-	1	-	-	-	2	1
산업통상자원부	2	2	-	1	1	-	1	1	3	2
보건복지부	1	1	5	2	2	2	1	1	6	3
환경부	-	3	-	-	1	-	3	1	2	-
고용노동부	-	3	-	-	1	2	3	3	1	2
여성가족부	-	4	3	1	-	-	1	2	1	1
국토교통부	-	4	5	7	4	5	9	5	9	5
해양수산부	-	-	-	-	1	4	-	-	1	-
중소벤처기업부	-	-	-	-	-	-	-	-	1	-
국민안전처	-	-	1	1	4	-	-	-	-	-
방송통신위원회	-	-	-	-	-	1	-	1	1	-
국무조정실	-	-	-	-	-	-	-	-	-	-
공정거래위원회	-	-	-	-	-	1	1	-	-	-
금융위원회	-	1	1	1	1	3	1	-	1	1
국민권익위원회	-	-	-	3	-	-	1	-	1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	-	-	-	-	-	-	2
국가보훈처	-	-	-	4	-	-	-	-	-	-
인사혁신처	-	-	-	-	1	-	1	-	-	-
법제처	-	-	-	-	-	-	-	1	3	2
식품의약품안전처	-	2	-	-	-	3	-	-	1	1
기타	3	129	148	138	133	130	154	121	164	172

| 표 5-3 | 법령 제정·개정(정부발의안 기준)

(단위 : 건)

분류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59	74	55	67	66	55	48	73	52	52
제정	소계	4	7	3	5	2	1	2	8	7	2
	법률	1	1	–	3	–	–	–	–	2	–
	대통령령	1	4	2	1	2	1	1	5	2	–
	총리·부령	2	2	1	1	–	–	1	3	3	2
개정	소계	54	67	52	62	64	52	45	65	44	49
	법률	13	22	7	18	15	5	5	15	3	9
	대통령령	14	23	19	20	20	18	21	27	17	15
	총리·부령	27	22	26	24	29	29	19	23	24	25
폐지	법령	1	–	–	–	–	2	1	–	1	1

| 표 5-4 | 법무자료 발간

(단위 : 건)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발간횟수	10	8	22	18	17	18	11	8	16	16

2. 국제법무활동

| 표 5-5 | 통상관계 법률자문 및 조약 등 국제협약의 법률문제 검토

(단위 : 건)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횟수	40	56	28	14	9	14	16	13	31	30

| 표 5-6 | 법률관련 인사 국제 교류

(단위 : 건)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횟수	11	5	7	7	12	7	9	4	1	2

| 표 5-7 | 법무에 관한 국제회의 참가

(단위 : 건, 명)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횟수	39	48	27	29	11	18	27	53	37	39
인원	34	73	82	55	42	20	38	47	117	104

3. 변호사·공증

| 표 5-8 | 변호사 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등록인원	16,547	18,708	20,531	22,318	24,015	25,838	27,695	29,584	31,281	32,981
개 업	14,242	15,954	17,424	18,849	20,182	21,575	23,144	24,782	26,181	27,741
비 개 업	2,305	2,754	3,107	3,469	3,833	4,263	4,551	4,802	5,100	5,292

| 표 5-9 | 공증인 인원

(단위 : 명, 개)

구 분 \ 연 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임명공증인		59	66	73	77	75	78	81	83	82	83
법 무 법 인	사무소	268	261	245	241	239	238	234	227	225	225
	구성원	1,183	1,170	1,029	1,000	981	946	918	882	865	874
합 동 법 률 사무소	사무소	31	29	27	25	23	20	20	19	17	16
	구성원	121	115	109	93	86	85	60	55	57	45
대 행 청		12	12	12	12	13	13	13	13	13	13

| 표 5-10 | 공증사무 처리 건수

(단위 : 건)

연 도 \ 구 분	사건처리건수
2013	4,030,468
2014	3,825,991
2015	3,758,294
2016	3,745,816
2017	3,415,840
2018	3,074,532
2019	2,777,661
2020	2,425,221
2021	2,529,558
2022	2,368,621

4. 국가소송

| 표 5-11 | 전체 국가소송 사건

(단위 : 건)

구분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접수	계	11,891	13,412	14,874	10,390	9,982	10,116	10,549	10,987	11,534	12,006
	구 수	7,171	8,025	9,350	5,841	5,192	5,227	5,570	6,082	6,515	7,064
	신 수	4,720	5,387	5,524	4,549	4,790	4,889	4,979	4,905	5,019	4,942
처리	계	3,373	3,560	4,485	5,293	4,530	4,526	4,250	4,373	4,285	4,441
	승 소	1,477	1,623	1,882	1,822	1,746	1,806	1,587	1,660	1,678	1,666
	패 소	522	586	606	568	546	485	471	500	451	433
	기 타	1,374	1,351	1,997	2.903	2,238	2,235	2,192	2,213	2,156	2,342

| 표 5-12 | 국가소송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 건)

연 도	접 수	처 리			
		계	승 소	패 소	기 타
2013	11,891 (4,720)	3,373	1,477	522	1,374
2014	13,412 (5,387)	3,560	1,623	586	1,351
2015	14,874 (5,524)	4,485	1,882	606	1,997
2016	10,390 (4,549)	5,293	1,822	568	2,903
2017	9,982 (4,790)	4,530	1,746	546	2,238
2018	10,116 (4,889)	4,526	1,806	485	2,235
2019	10,549 (4,979)	4,250	1,587	471	2,192
2020	10,987 (4,905)	4,373	1,660	500	2,213
2021	11,534 (5,019)	4,285	1,678	451	2,156
2022	12,006 (4,942)	4,441	1,666	433	2,342

* 접수란 중 ( )는 신수

| 표 5-13 | 유형별 국가소송 사건

(단위 : 건)

구분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총 계		11,879	13,398	14,860	10,377	9,966	10,096	10,536	10,975	11,518	12,034
국가원고	계	1,663	2,936	4,213	2,328	2,212	2,181	2,061	2,435	2,799	2,991
	부동산	351	265	314	343	419	376	405	461	657	776
	손해배상	26	30	26	17	15	14	9	6	5	6
	기 타	1,286	2,641	3,873	1,968	1,778	1,791	1,647	1,968	2,137	2,209
국가피고	계	10,216	10,462	10,647	8,049	7,754	7,915	8,475	8,540	8,179	8,999
	부동산	2,942	2,951	2,942	2,649	2,638	2,617	2,800	2,700	2,663	2,752
	손해배상	3,668	3,786	3,536	2,017	1,793	1,749	2,010	2,081	2,379	2,396
	기 타	3,606	3,725	4,169	3,383	3,323	3,549	3,665	3,760	3,677	3,851

| 표 5-14 | 민사신청 사건

(단위 : 건)

구분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접수	계	4,231	7,113	5,731	6,220	6,983	8,134	8,974	9,519	9,895	12,031
	구 수	2,111	4,328	3,373	3,584	4,288	5,047	5,566	5,984	5,988	8,390
	신 수	2,120	2,785	2,358	2,636	2,695	3,087	3,408	3,535	3,907	3,641
처리	계	1,543	3,718	1,785	2,020	1,977	2,596	3,062	2,678	2,487	2,694
	종 결	1,318	1,234	1,394	1,512	1,336	1,762	2,314	1,907	1,513	1,689
	본안이송	95	2,325	222	255	355	348	255	240	180	113
	취 하	87	86	116	137	149	159	202	225	237	187
	각 하	14	30	15	17	29	36	77	55	97	93
	기 타	29	43	38	99	108	291	214	251	460	612

5. 행정소송

| 표 5-15 | 전체 행정소송 사건

(단위 : 건)

구분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접수	계	36,444	38,182	38,882	36,799	36,969	37,130	37,772	40,073	40,978	42,736
	구 수	20,289	22,317	22,775	19,239	18,246	18,326	18,709	21,463	20,768	24,635
	신 수	16,155	15,865	16,107	17,560	18,723	18,804	19,063	18,610	20,222	18,101
처리	계	13,091	14,592	13,285	18,664	18,800	18,560	16,414	18,868	16,387	15,561
	승 소	6,371	7,132	6,290	9,392	10,250	10,064	8,991	10,478	9,302	8,478
	패 소	1,865	1,702	1,740	2,056	1,814	1,811	1,687	1,807	1,719	1,752
	취 하 등	4,855	5,758	5,255	7,216	6,736	6,685	5,736	6,583	5,366	5,331
미 제		23,353	23,590	25,597	18,135	18,169	18,570	21,358	21,205	24,591	27,175

| 표 5-16 | 행정소송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 건)

연 도	접 수	처 리				미 제
		계	승 소	패 소	기 타	
2013	36,444 (16,155)	13,091	6,371	1,865	4,855	23,353
2014	38,182 (15,865)	14,592	7,132	1,702	5,758	23,590
2015	38,882 (16,107)	13,285	6,290	1,740	5,255	25,597
2016	36,799 (17,560)	18,664	9,392	2,056	7,216	18,135
2017	36,969 (18,723)	18,800	10,250	1,814	6,736	18,169
2018	37,130 (18,804)	18,560	10,064	1,811	6,685	18,570
2019	37,772 (19,063)	16,414	8,991	1,687	5,736	21,358
2020	40,073 (18,610)	18,868	10,478	1,807	6,583	21,205
2021	40,978 (20,222)	16,387	9,302	1,719	5,366	24,591
2022	42,736 (18,101)	15,561	8,478	1,752	5,331	27,175

* 접수란 중 ( )는 신수

| 표 5-17 | 유형별 행정소송 사건

(단위 : 건)

구분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36,444	38,182	38,882	36,799	36,969	37,130	37,772	40,073	40,978	42,786
조세관계	5,644	6,849	7,379	6,089	5,246	4,849	5,412	5,206	4,831	5,402
공무원신분	1,681	1,582	1,645	1,515	1,611	1,635	1,799	1,999	1,978	2,018
국토도시계획	3,129	3,141	2,846	2,642	2,477	2,632	2,619	2,702	2,978	3,781
영업허가취소·정지	3,534	3,934	3,389	2,283	2,414	2,424	2,163	1,786	1,358	1,174
자격·면허·등록·인가	2,678	2,810	2,231	1,889	2,062	2,802	2,779	3,255	2,921	2,968
기타	19,778	19,866	21,392	22,381	23,159	22,788	23,000	25,125	26,912	27,393

6. 지구심의회 국가배상 신청사건

| 표 5-18 | 전체 국가배상 신청사건(협정배상 신청사건 포함)

(단위 : 건)

구분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접수	계	4,517	3,976	4,149	4,738	4,558	6,064	5,860	7,371	7,394	7,132
	구수	885	1,130	1,057	1,059	1,140	1,629	2,001	2,408	3,603	4,166
	신수	3,632	2,846	3,092	3,679	3,418	4,435	3,859	4,963	3,791	2,966
처리	계	3,299	2,915	3,047	3,598	2,921	4,054	3,452	3,768	3,228	2,899
	인용	1,767	1,177	1,057	1,154	801	1,129	895	1,109	779	691
	기각	1,424	1,627	1,896	2,249	2,008	2,777	2,357	2,456	2,253	2,126
	기타	108	111	94	195	112	148	200	203	196	82
미제		1,218	1,061	1,102	1,140	1,637	2.010	2,408	3,603	4,166	4,233

| 표 5-19 | 국가배상 신청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협정배상 신청사건 포함)

(단위 : 건)

연 도	접 수	처 리				미 제
		계	인 용	기 각	기 타	
2013	4,517 (3,632)	3,299	1,767	1,424	108	1,218
2014	3,976 (2,846)	2,915	1,177	1,627	111	1,061
2015	4,149 (3,092)	3,047	1,057	1,896	94	1,102
2016	4,738 (3,679)	3,598	1,154	2,249	195	1,140
2017	4,558 (3,418)	2,921	801	2,008	112	1,637
2018	6,064 (4,435)	4,054	1,129	2,777	148	2.010
2019	5,860 (3,859)	3,452	895	2,357	200	2,408
2020	7,371 (4,963)	3,768	1,109	2,456	203	3,603
2021	7,394 (3,791)	3,228	779	2,253	196	4,166
2022	7,132 (2,966)	2,899	691	2,126	82	4,233

* 접수란 중 ( )는 신수

| 표 5-20 | 한·미주둔군지위협정 배상 신청사건

(단위 : 건)

구분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접수	계	167	168	174	196	175	185	204	150	145	141
	구 수	53	56	58	50	70	58	97	63	63	92
	신 수	114	112	116	146	105	127	107	87	82	49
처리	계	111	109	124	126	109	88	141	87	53	78
	인 용	91	84	110	112	101	78	119	74	43	65
	기 각	19	20	12	14	7	9	14	11	9	8
	기 타	1	5	2	–	1	1	8	2	1	5
미 제		56	59	50	70	66	97	63	63	92	63

| 표 5-21 | 한·미주둔군지위협정 배상 신청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 건)

연 도	접 수	처 리				미 제
		계	인 용	기 각	기 타	
2013	167 (114)	111	91	19	1	56
2014	168 (112)	109	84	20	5	59
2015	174 (116)	124	110	12	2	50
2016	196 (146)	126	112	14	-	70
2017	175 (105)	109	101	7	1	66
2018	185 (127)	88	78	9	1	97
2019	204 (107)	141	119	14	8	63
2020	150 (87)	87	74	11	2	63
2021	145 (82)	53	43	9	1	92
2022	141 (49)	78	65	8	5	63

* 접수란 중 ( )는 신수

7. 국가배상금 지급 현황

| 표 5-22 | 국가배상금 지급 현황

(단위 : 건/백만 원)

구분 / 연도	지급총액	배상결정	판결	소송비용확정액
2013	409 / 57,389	119 / 273	290 / 57,116	- / -
2014	745 / 203,013	85 / 180	385 / 198,872	275 / 3,961
2015	1,005 / 300,722	122 / 438	461 / 293,615	422 / 6,669
2016	960 / 236,223	91 / 275	371 / 228,695	498 / 7,253
2017	861 / 354,386	121 / 599	369 / 349,084	371 / 4,703
2018	821 / 770,075	107 / 793	319 / 762,218	395 / 7,064
2019	780 / 154,637	99 / 169	267 / 146,600	414 / 7,868
2020	763 / 72,781	94 / 210	258 / 62,530	411 / 10,041
2021	765 / 223,742	60 / 83	275 / 215,908	430 / 7,751
2022	882 / 148,368	57 / 87	293 / 140,810	532 / 7,471

8. 헌법재판 현황

| 표 5-23 | 헌법재판 현황

연도	구분	접수 (신·구수)	처리											미제
			합계	위헌					합헌				각하 등	
				소계	위헌	한정위헌	헌법불합치	인용	소계	합헌	한정합헌	기각		
2013	계	2,328	1,585	71	25	–	3	43	372	147	–	225	1,142	743
	위헌법률	60	22	8	7	–	1	–	14	14	–	–	–	38
	정당해산	1	–	–	–	–	–	–	–	–	–	–	–	1
	권한쟁의	9	5	–	–	–	–	–	1	–	–	1	4	4
	헌법소원	2,258	1,558	63	18	–	2	43	357	133	–	224	1,138	700
2014	계	2,712	1,888	60	11	3	15	31	255	104	–	151	1,573	824
	위헌법률	64	14	7	3	3	1	–	6	6	–	–	1	50
	정당해산	1	1	1	–	–	–	1	–	–	–	–	–	–
	권한쟁의	5	2	–	–	–	–	–	–	–	–	–	2	3
	헌법소원	2,642	1,871	52	8	–	14	30	249	98	–	151	1,570	771
2015	계	2,683	1,937	110	47	–	15	48	379	176	–	203	1,448	746
	위헌법률	87	44	22	21	–	1	–	20	20	–	–	2	43
	정당해산	1	–	–	–	–	–	–	–	–	–	–	–	1
	권한쟁의	11	2	1	–	–	–	1	–	–	–	–	1	9
	헌법소원	2,584	1,891	87	26	–	14	47	359	156	–	203	1,445	693
2016	계	2,697	1,976	101	33	1	9	58	393	179	–	214	1,482	721
	위헌법률	63	27	14	12	–	2	–	4	4	–	–	9	36
	탄핵	1	–	–	–	–	–	–	–	–	–	–	–	1
	정당해산	1	1	–	–	–	–	–	–	–	–	–	1	–
	권한쟁의	18	5	–	–	–	–	–	–	–	–	–	5	13
	헌법소원	2,614	1,943	87	21	1	7	58	389	175	–	214	1,467	671
2017	계	3,347	2,425	43	4	–	1	38	293	116	–	177	2,089	922
	위헌법률	71	11	1	1	–	–	–	10	10	–	–	–	60
	탄핵	1	1	1	–	–	–	1	–	–	–	–	–	–
	권한쟁의	15	2	–	–	–	–	–	–	–	–	–	2	13

연도	구분	접수(신·구수)	처리											미제
			합계	위헌					합헌				각하 등	
				소계	위헌	한정위헌	헌법불합치	인용	소계	합헌	한정합헌	기각		
	헌법소원	3,260	2,411	41	3	-	1	37	283	106	-	177	2,087	849
2018	계	3,349	2,447	168	57	-	59	52	379	108	-	271	1,900	902
	위헌법률	77	39	26	8	-	18	-	10	10	-	-	3	38
	권한쟁의	15	5	-	-	-	-	-	-	-	-	-	5	10
	헌법소원	3,257	2,403	142	49	-	41	52	369	98	-	271	1,892	854
2019	계	3,632	2,519	49	8	-	7	34	348	142	-	206	2,122	1,113
	위헌법률	69	18	6	5	-	1	-	11	11	-	-	1	51
	권한쟁의	16	5	2	-	-	-	2	2	-	-	2	1	11
	헌법소원	3,547	2,496	41	3	-	6	32	335	131	-	204	2,120	1,051
2020	계	4,354	3,042	81	10	-	7	64	392	162	-	230	2,569	1,312
	위헌법률	71	20	11	7	-	4	-	8	8	-	-	1	51
	정당해산	-	-	-	-	-	-	-	-	-	-	-	-	-
	권한쟁의	16	11	-	-	-	-	-	5	-	-	5	6	5
	헌법소원	4,267	3,011	70	3	-	3	64	379	154	-	225	2,562	1,256
2021	계	2,827	2,621	65	15	-	4	46	343	126	-	217	2,213	1,518
	위헌법률	38	19	8	6	-	2	-	9	9	-	-	2	70
	탄핵	1	1	-	-	-	-	-	-	-	-	-	1	-
	권한쟁의	2	1	-	-	-	-	-	1	-	-	1	-	6
	헌법소원	2,786	2,600	57	9	-	2	46	333	117	-	216	2,210	1,442
2022	계	2,829	2,675	85	26	-	30	30	309	113	-	196	2,278	1,672
	위헌법률	43	37	25	17	-	8	-	7	7	-	-	3	76
	권한쟁의	5	4	-	-	-	-	1	1	-	-	1	2	7
	헌법소원	2,781	2,634	60	9	-	22	29	301	106	-	195	2,273	1,589

9. 제11회 변호사시험 관련 통계

가. 출원 현황

| 표 5-24 | 연도별 응시원서 접수 현황

(단위 : 명)

연 도	시험구분	총 계	남 자	여 자
2014	변호사시험	2,432	1,387	1,045
2015	변호사시험	2,704	1,567	1,137
2016	변호사시험	3,115	1,816	1,299
2017	변호사시험	3,306	1,839	1,467
2018	변호사시험	3,490	1,985	1,505
2019	변호사시험	3,617	2,038	1,579
2020	변호사시험	3,592	1,986	1,606
2021	변호사시험	3,497	1,966	1,531
2022	변호사시험	3,528	1,967	1,561

| 표 5-25 | 연령별 출원 현황

(단위 : 명)

연령 / 시험구분	25세 미만	25세 이상 ~ 30세 미만	30세 이상 ~ 35세 미만	35세 이상 ~ 40세 미만	40세 이상 ~ 45세 미만	45세 이상 ~ 50세 미만	50세 이상
변호사시험 (비율, %)	1 (0.03)	1,126 (31.92)	1,554 (44.05)	582 (16.5)	188 (5.33)	57 (1.62)	20 (0.57)

| 표 5-26 | 법학전공별 출원 현황

(단위 : 명)

법학전공 / 시험구분	총 계	전 공	비 전 공
변호사시험 (비율, %)	3,528	1,036 (29.37)	2,492 (70.63)

나. 합격자 현황

| 표 5-27 | 연도별 합격자 현황

(단위 : 명, %)

연 도	시험구분	총 계			남 자			여 자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2014	변호사시험	2,292	1,550	67.62	1,298	869	66.94	994	681	68.51
2015	변호사시험	2,561	1,565	61.10	1,471	893	60.70	1,090	672	61.65
2016	변호사시험	2,864	1,581	55.20	1,668	939	56.29	1,196	642	53.68
2017	변호사시험	3,110	1,593(기준)	51.22	1,720	870	50.58	1,390	723	52.01
			1,600(기준)	51.45	1,720	876	50.93	1,390	724	52.09
2018	변호사시험	3,240	1,599	49.35	1,843	906	49.16	1,397	693	49.61
2019	변호사시험	3,330	1,691	50.78	1,873	935	49.92	1,457	756	51.89
2020	변호사시험	3,316	1,768	53.31	1,809	972	53.73	1,507	796	52.82
2021	변호사시험	3,156	1,706	54.06	1,766	985	55.77	1,390	721	51.87
2022	변호사시험	3,197	1,712	53.55	1,766	951	53.85	1,431	761	53.18

| 표 5-28 | 법학전공별 시험 합격 현황

(단위 : 명)

법학전공 / 시험구분	총 계	전 공	비 전 공
변호사시험 (비율, %)	1,712	383 (22.37)	1,329 (77.63)

제2절 검찰업무 통계

1. 검사 수사 사건

가. 전체 사건

| 표 5-29 |

(단위 : 명)

구분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접수	계				2,474,033	2,463,524	2,580,756	2,672,784	2,506,404	2,401,898	2,503,478	2,397,832	2,154,158	2,164,845
	구수				84,196	83,944	88,432	83,473	90,535	99,297	111,949	142,279	181,786	61,141
	신수				2,389,837	2,379,580	2,492,324	2,589,311	2,415,869	2,302,601	2,391,529	2,255,553	1,972,372	2,103,704
처리	계				2,389,660	2,374,370	2,495,255	2,581,748	2,407,061	2,290,052	2,361,611	2,215,577	2,084,164	2,074,336
	직수 및 송치사건	기소	소계		910,158	870,320	852,314	894,616	809,882	719,980	699,111	662,077	576,547	608,836
			구공판		182,322	191,080	187,402	209,734	202,649	196,821	205,418	219,062	193,457	190,586
			구약식		727,836	679,240	664,912	684,882	607,233	523,159	493,693	443,015	383,090	418,250
		불기소	소계		1,297,033	1,344,779	1,460,294	1,458,816	1,367,742	1,320,937	1,381,922	1,291,658	477,541	498,582
			무혐의		315,513	334,419	361,070	371,611	333,716	314,565	324,017	317,251	85,493	79,957
			기소유예		338,628	338,350	378,723	376,137	338,971	274,936	242,471	217,206	197,405	220,235
			기소중지		185,052	208,340	218,047	213,833	209,989	237,460	295,726	264,868	77,564	83,471
			참고인중지		17,582	15,694	12,542	10,008	8,411	7,150	6,836	7,153	1,016	700
			각하		87,987	95,974	112,931	104,710	116,518	138,712	162,762	171,110	40,109	39,543
			기타		352,271	352,002	376,981	382,517	360,137	348,114	350,110	314,070	75,954	74,676
		보완수사요구			–	–	–	–	–	–	–	–	199,901	157,801
		이송	소년보호		29,992	25,226	25,027	25,192	24,948	23,478	24,396	25,919	20,998	24,342
			가정보호		6,414	9,449	20,036	22,264	18,829	19,539	23,424	19,868	22,852	22,208
			타관		145,830	124,378	137,197	179,522	182,140	202,896	228,636	211,165	177,082	143,701
			성매매보호		233	218	387	1,338	956	465	249	212	170	142
			아동보호		–	–	–	–	2,564	2,757	3,873	4,678	8,261	7,865
	불제사건	기록반환			–	–	–	–	–	–	–	–	477,186	491,696
		재수사요청			–	–	–	–	–	–	–	–	21,030	21,863
	중제사건	기록반환			–	–	–	–	–	–	–	–	98,861	94,514
		시정조치요구			–	–	–	–	–	–	–	–	3,735	2,786
미제					84,373	89,154	85,501	91,036	99,343	111,846	141,867	182,255	69,994	87,967

나. 청별 사건

| 표 5-30 |

(단위 : 명)

검찰청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2,389,837	2,379,580	2,492,321	2,589,311	2,415,869	2,302,596	2,391,529	2,255,553	1,972,372	2,103,704
서울중앙	183,105	175,052	175,798	181,844	171,076	165,305	172,967	172,404	150,857	163,017
서울동부	78,169	76,497	76,287	73,148	71,256	73,250	76,612	68,797	57,559	63,472
서울남부	100,572	99,170	103,045	100,839	97,922	96,437	100,253	88,444	80,725	84,956
서울북부	86,491	90,907	91,109	94,269	88,617	84,968	85,674	77,905	67,668	74,777
서울서부	69,321	68,703	67,255	70,706	65,081	64,015	64,409	56,189	51,086	57,401
의정부	87,021	87,175	93,587	98,927	92,808	91,082	90,519	84,813	72,933	50,739
고양	56,961	59,494	62,921	67,051	63,366	58,324	61,366	56,262	49,303	52,696
남양주	-	-	-	-	-	-	-	-	-	27,377
인천	139,475	141,832	143,257	155,534	144,821	139,518	145,386	135,824	113,911	123,911
부천	53,972	55,792	60,109	64,154	58,583	58,422	58,402	56,628	48,897	52,664
수원	119,807	123,235	136,617	152,098	142,413	131,605	139,803	136,060	116,510	124,405
성남	60,269	60,984	64,293	74,402	65,256	62,303	63,293	61,240	55,355	55,442
여주	19,137	19,216	20,627	22,661	22,466	21,753	22,826	21,628	18,553	19,825
평택	31,973	34,926	38,080	43,750	41,843	39,415	42,389	44,077	37,191	39,102
안산	70,573	69,766	82,751	94,682	81,275	73,865	75,641	72,090	62,129	62,782
안양	41,395	40,557	43,780	48,460	42,634	40,669	42,096	36,288	31,245	32,113
춘천	22,126	20,227	20,663	21,007	19,579	17,631	19,230	18,802	15,227	16,643
강릉	17,736	18,166	17,941	18,893	18,226	15,779	16,365	14,251	12,525	14,365
원주	19,976	18,948	19,907	21,182	20,387	17,241	18,276	16,524	15,184	17,418
속초	7,518	7,157	7,472	7,362	7,423	6,798	7,132	6,670	6,384	6,635
영월	8,299	7,790	8,403	8,745	7,315	6,916	7,488	6,740	6,214	6,542
대전	67,572	68,139	71,061	77,084	77,375	75,308	78,099	77,509	63,022	69,321
홍성	13,773	13,732	15,991	16,407	14,722	14,584	15,264	15,348	11,810	13,607
공주	5,772	5,878	5,788	5,806	5,473	5,994	5,926	5,920	5,212	5,279
논산	8,728	8,193	8,707	8,193	8,146	7,770	7,702	7,895	6,465	6,859
서산	17,688	17,597	17,529	18,782	17,920	18,197	17,915	17,246	16,192	16,505
천안	38,163	43,292	46,263	48,295	43,913	44,222	44,056	41,842	35,269	37,667
청주	40,919	41,656	44,964	51,021	46,298	45,767	46,182	43,818	39,726	42,830

검찰청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충주	13,489	13,769	15,577	17,104	14,260	13,905	14,119	14,270	12,214	13,352
제천	7,691	7,158	7,086	6,787	6,390	5,986	5,903	5,649	5,577	5,440
영동	3,316	3,302	3,623	3,259	3,020	2,673	3,323	3,249	2,930	2,799
대구	94,367	95,746	98,787	98,506	89,621	85,753	89,907	83,411	72,927	74,028
안동	12,745	12,985	13,244	12,416	11,806	10,944	11,702	11,493	10,161	9,916
경주	14,377	12,774	13,362	12,974	12,393	10,855	11,707	10,500	9,325	9,390
포항	25,424	22,382	23,637	22,937	22,055	21,277	21,857	19,398	16,882	17,130
김천	27,104	25,438	26,971	27,520	25,274	22,493	23,189	21,835	19,046	20,030
상주	7,724	7,276	7,496	7,277	7,139	7,576	7,807	7,417	6,773	7,472
의성	4,056	3,687	3,846	4,415	3,944	4,058	4,492	4,065	4,240	3,956
영덕	3,913	3,959	4,239	4,244	4,376	4,313	4,062	4,319	3,902	3,929
대구서부	47,116	48,041	50,597	47,113	43,776	40,931	43,275	41,894	38,438	37,554
부산	135,847	138,579	138,971	134,094	90,312	78,056	84,222	74,932	63,992	66,505
부산동부	44,037	42,094	46,398	44,792	42,596	40,629	42,566	39,187	35,074	37,882
부산서부	-	-	-	-	37,240	42,841	45,057	42,435	36,954	38,161
울산	67,016	64,205	69,837	69,618	63,190	59,769	62,922	56,258	54,598	54,181
창원	54,548	49,294	52,880	54,616	51,915	48,384	52,698	49,897	41,694	42,759
진주	22,730	22,036	23,244	23,191	21,133	19,591	21,876	25,006	23,584	37,792
통영	22,604	22,667	24,614	26,793	24,519	20,754	20,871	20,408	16,665	18,161
밀양	6,341	6,753	7,009	6,918	6,836	6,478	8,029	6,975	6,733	6,114
거창	5,046	4,975	5,422	5,610	4,901	4,432	4,811	4,560	4,287	4,389
마산	19,963	20,829	22,187	21,268	18,875	17,839	19,253	17,355	14,717	15,336
광주	97,246	94,977	93,188	89,002	83,088	78,863	81,976	77,858	66,839	70,508
목포	25,656	24,568	25,137	25,152	22,224	21,125	21,387	20,939	19,985	21,034
장흥	3,233	3,120	3,264	3,502	3,264	3,179	3,245	3,154	2,947	2,964
순천	39,768	38,272	42,618	42,724	37,967	35,909	38,359	34,803	31,781	33,249
해남	7,263	6,619	7,106	7,081	6,992	6,490	6,483	6,218	5,945	7,234
전주	37,598	36,633	38,139	39,814	36,768	36,669	37,815	35,442	31,567	35,255
군산	27,495	26,272	26,145	26,631	26,545	24,709	24,975	23,236	20,603	21,077
정읍	8,624	8,389	8,902	8,865	9,267	8,242	8,646	8,227	8,243	8,432
남원	4,643	4,566	5,053	4,737	4,893	4,027	4,261	4,112	4,075	4,105
제주	32,346	34,134	39,537	45,049	43,096	36,708	35,463	35,837	32,522	35,220

※ 2021년부터 불송치기록 및 수사중지기록 접수 건수 포함

다. 고소·고발 사건

| 표 5-31 |

(단위 : 명)

구분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접수	계		758,785	743,223	768,579	744,960	729,229	782,251	850,551	843,712	522,368	494,753
	구수		58,920	58,821	62,890	59,659	60,869	68,140	78,511	100,422	116,196	30,816
	신수		699,865	684,402	705,689	685,301	668,360	714,111	772,040	743,290	406,172	463,937
처리	계		699,795	680,782	708,905	683,655	661,220	704,080	750,668	727,137	491,624	451,462
	기소	소계	158,071	152,955	147,111	144,331	135,601	135,340	140,519	135,290	110,220	115,851
		구공판	43,723	46,110	43,211	45,478	43,122	44,932	48,323	51,815	40,001	39,411
		구약식	114,348	106,845	103,890	98,853	92,479	90,408	92,196	83,475	70,219	76,440
	불기소	소계	461,758	465,207	497,561	464,421	452,450	488,050	524,399	505,758	165,338	173,066
		무혐의	167,470	169,636	175,930	174,599	166,589	179,861	187,842	186,589	54,534	53,597
		기소유예	41,160	40,706	46,201	36,880	33,939	31,958	30,678	26,436	29,287	39,240
		기소중지	84,669	84,952	87,672	84,139	80,201	82,678	88,105	72,143	21,090	20,604
		기타	168,459	169,913	187,758	168,803	171,721	193,553	217,774	220,590	60,427	59,625
	보완수사요구		–	–	–	–	–	–	–	–	99,634	79,307
	이송	소년보호	1,573	1,441	1,241	1,614	2,040	2,354	2,705	2,706	2,554	2,910
		가정보호	626	867	973	909	895	995	839	712	812	755
		타관	77,767	60,309	62,018	72,378	69,855	76,961	81,704	82,088	112,526	79,138
		성매매보호	–	3	1	2	3	1	–	5	2	1
		아동보호	–	–	–	–	376	379	502	578	538	434
미제			58,990	62,441	59,674	61,305	68,009	78,171	99,883	116,575	30,744	43,291

라. 주요범죄유형별 사범

| 표 5-32 | 병역사범

(단위 : 명)

구분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접수	계			33,626	25,824	23,301	19,397	11,352	8,392	7,605	5,343	2,609	4,902
	구수			155	160	99	76	80	78	114	135	124	49
	신수			33,471	25,664	23,202	19,321	11,272	8,314	7,491	5,208	2,485	4,853
처리	계			25,888	33,461	25,729	23,229	19,318	11,272	8,274	5,221	2,565	4,691
	기소	소계		15,764	20,003	16,604	16,359	13,852	7,680	5,201	2,676	1,130	2,603
		구공판		1,627	1,834	1,899	1,786	1,623	1,293	963	816	655	739
		구약식		14,137	18,169	14,705	14,573	12,229	6,387	4,238	1,860	475	1,864
	불기소	소계		9,129	11,973	8,682	6,443	5,091	3,348	2,785	2,275	598	1,248
		무혐의		367	405	393	432	407	242	277	205	86	66
		기소유예		1,309	1,493	1,187	1,207	1,026	969	1,190	464	280	977
		기소중지		6,968	6,823	5,870	3,903	2,591	1,240	828	1,189	15	8
		기타		485	3,252	1,232	901	1,067	897	490	417	217	197
	보완수사요구			-	-	-	-	-	-	-	-	645	595
	이송	소년보호		-	-	-	-	-	-	-	-	-	-
		타관		995	1,485	443	427	375	244	288	270	192	245
		성매매송치		-	-	-	-	-	-	-	-	-	-
미제				146	165	95	72	79	80	118	122	44	211

| 표 5-33 | 경제사범

(단위 : 명)

구분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접수	계			124,139	125,015	134,123	118,507	115,754	103,541	107,950	118,138	83,911	76,933
	구수			11,246	10,474	10,138	9,562	10,451	11,593	12,145	16,630	21,063	8,338
	신수			112,893	114,541	123,985	108,945	105,303	91,948	95,805	101,508	62,848	68,595
처리	계			114,372	114,950	125,059	108,785	104,756	92,204	93,090	96,994	75,724	65,566
	기소	소계		26,896	26,097	26,878	27,418	27,639	23,072	22,718	22,605	17,954	17,794
		구공판		8,479	9,146	9,208	9,114	8,897	8,667	8,492	8,519	7,028	7,091
		구약식		18,417	16,951	17,670	18,304	18,742	14,405	14,226	14,086	10,926	10,703
	불	소계		72,154	76,958	86,499	66,829	60,151	53,329	54,188	57,787	23,302	22,451

구분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기소	무혐의	17,072	16,885	17,335	17,295	17,419	17,045	18,389	22,573	7,582	6,270
		기소유예	15,578	17,135	19,042	12,547	11,420	9,204	8,134	8,555	7,346	7,423
		기소중지	7,834	8,701	8,201	6,835	6,570	7,270	8,300	7,638	2,400	2,441
		기타	31,670	34,237	41,921	30,152	24,742	19,810	19,365	19,021	5,974	6,317
	보완수사요구		–	–	–	–	–	–	–	–	14,108	11,948
	이송	소년보호	833	680	700	664	534	454	488	616	664	998
		가정보호	–	–	–	–	1	–	–	–	–	–
		타관	14,489	11,215	10,982	13,874	16,431	15,349	15,696	15,986	19,696	12,375
		성매매	–	–	–	–	–	–	–	–	–	–
미제			9,767	10,065	9,064	9,722	10,998	11,337	14,860	21,144	8,187	11,367

| 표 5-34 | 폭력사범

(단위 : 명)

구분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접수	계		407,284	404,955	431,618	450,413	437,983	419,272	419,596	376,618	245,030	258,900
	구수		8,963	6,775	6,863	6,754	7,481	8,272	9,469	10,762	16,632	6,388
	신수		398,321	398,180	424,755	443,659	430,502	411,000	410,127	365,856	228,718	252,512
처리	계		399,869	397,142	424,815	443,141	429,923	410,157	407,715	360,619	238,674	249,414
	기소	소계	114,961	105,712	98,166	98,581	93,055	91,871	93,464	97,101	82,432	90,316
		구공판	25,799	30,006	28,631	32,339	30,206	28,878	28,315	27,986	24,324	25,818
		구약식	89,162	75,706	69,535	66,242	62,849	62,993	65,149	69,115	58,108	64,498
	불기소	소계	263,823	269,267	293,812	308,410	302,149	284,118	276,000	230,289	94,898	103,055
		무혐의	34,033	33,672	33,511	32,274	31,211	32,250	33,867	33,745	9,003	8,357
		기소유예	70,644	61,757	58,882	51,859	47,175	40,459	34,857	28,649	23,864	23,672
		기소중지	20,157	33,711	45,534	53,443	57,892	55,328	56,412	37,900	25,252	31,521
		기타	138,989	140,127	155,885	170,834	165,871	156,081	150,864	129,995	36,779	39,505
	보완수사요구		–	–	–	–	–	–	–	–	22,098	19,050
	이송	소년보호	7,593	6,476	6,072	6,329	7,291	6,914	6,807	5,930	5,247	6,562
		가정보호	6,170	9,069	19,127	20,989	17,701	18,247	21,712	18,206	21,008	20,422
		타관	7,322	6,618	7,638	8,832	9,471	8,756	9,385	8,780	12,724	9,752
		성매매	–	–	–	–	–	–	–	–	–	–
		아동보호	–	–	–	–	256	251	347	313	267	257
미제			7,415	7,813	6,802	7,272	8,060	9,115	11,881	15,999	6,356	9,486

| 표 5-35 | 강력사범

(단위 : 명)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접수	계		18,855	18,125	17,655	16,041	17,713	17,271	17,849	8,804	6,091	8,618
	구 수		993	926	1,196	838	1,299	1,213	1,277	1,551	868	346
	신 수		17,862	17,199	16,459	15,203	16,414	16,058	16,572	7,253	5,223	8,272
처리	계		17,391	16,826	16,763	14,726	16,449	15,965	15,224	8,061	5,782	8,150
	기소	소 계	6,681	6,450	5,912	5,260	4,671	4,787	4,665	2,173	1,812	2,070
		구공판	6,403	5,796	5,158	4,810	4,382	4,514	4,504	2,135	1,790	2,042
		구약식	278	654	754	450	289	273	161	38	22	28
	불기소	소 계	8,714	8,466	9,099	7,694	10,335	9,630	8,892	5,264	1,842	3,528
		무혐의	3,482	3,775	3,869	3,866	3,964	4,094	4,362	1,073	379	506
		기소유예	936	1,096	1,196	978	785	682	667	376	290	278
		기소중지	962	1,058	1,042	1,234	1,246	1,116	1,093	143	96	79
		기 타	3,334	2,537	2,992	1,616	4,340	3,738	2,770	3,672	1,077	2,665
	보완수사요구		-	-	-	-	-	-	-	-	550	413
	이송	소년보호	673	593	379	384	347	284	312	167	117	110
		가정보호	24	25	49	29	26	33	19	5	4	4
		타 관	1,299	1,292	1,324	1,359	1,066	1,224	1,331	451	1,451	2,021
		성매매	-	-	-	-	-	-	-	-	-	-
		아동보호	-	-	-	-	-	4	7	5	6	4
미 제			1,009	1,464	1,299	892	1,315	1,264	1,306	2,625	309	468

※ 검찰통계사무규정 개정(2020. 5. 8.)에 따라 흉악사범에서 강력사범으로 변경

| 표 5-36 | 교통사범

(단위 : 명)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접수	계		654,364	644,397	663,726	688,128	581,769	471,945	442,188	424,448	258,499	271,877
	구 수		1,960	1,870	2,528	2,456	2,941	3,317	3,234	3,630	8,108	2,862
	신 수		652,404	642,527	661,198	685,672	578,828	468,628	438,954	420,818	250,391	269,015
처리	계		652,063	641,732	661,340	685,327	578,550	468,775	438,643	416,395	255,697	267,571
	기소	소 계	388,961	361,137	351,980	358,119	310,143	249,514	213,543	198,716	183,680	198,247
		구공판	51,890	41,637	36,105	42,152	42,485	38,084	43,579	55,864	49,717	47,183
		구약식	337,071	319,500	315,875	315,967	267,658	211,430	169,964	142,852	133,963	151,064
	불기	소 계	253,597	270,987	299,463	314,563	255,695	208,095	213,993	205,785	45,514	42,945
		무혐의	53,248	59,968	67,463	76,786	50,160	24,020	22,971	22,992	5,486	4,898

구분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소	기소유예	55,688	58,600	70,892	75,315	51,319	25,329	19,752	22,055	22,612	21,580
		기소중지	11,857	14,304	14,575	15,120	14,454	16,565	19,964	17,186	8,026	9,162
		기타	132,804	138,115	146,533	147,342	139,762	142,181	151,306	143,552	9,390	7,305
	보완수사요구		-	-	-	-	-	-	-	-	16,117	14,816
	이송	소년보호	5,813	5,042	4,731	4,901	5,073	4,231	4,535	5,496	4,702	5,338
		가정보호	-	-	1	1	1	-	-	1	-	-
		타관	3,692	4,566	5,165	7,743	7,638	6,935	6,572	6,397	5,684	6,225
		성매매	-	-	-	-	-	-	-	-	-	-
미제			2,301	2,665	2,386	2,801	3,219	3,170	3,545	8,053	2,802	4,306

마. 주요신분별 사건

| 표 5-37 | 소년사범

(단위 : 명)

구분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접수	계		102,454	91,100	91,723	88,226	85,178	76,642	76,871	74,422	57,247	62,646
	구수		1,563	1,018	921	823	1,062	1,276	1,690	1,817	3,101	1,393
	신수		100,891	90,082	90,802	87,403	84,116	75,366	75,184	72,613	54,146	61,987
처리	계		101,421	90,158	90,890	87,277	84,026	75,150	75,197	72,344	55,854	61,542
	기소	소계	8,086	6,764	6,618	6,238	5,648	5,945	6,155	6,847	5,224	5,563
		구공판	5,197	4,284	4,437	4,010	3,531	3,944	4,255	4,949	3,692	3,945
		구약식	2,889	2,480	2,181	2,228	2,117	2,001	1,900	1,898	1,532	1,618
	불기소	소계	55,541	50,897	51,086	47,718	46,166	37,873	36,499	30,331	18,365	21,223
		무혐의	5,702	5,260	6,201	5,964	5,532	5,280	5,522	5,395	724	800
		기소유예	35,132	31,036	30,371	26,558	25,416	20,237	19,157	15,952	13,420	15,439
		기소중지	5,349	6,490	5,322	6,707	6,566	5,031	4,889	3,081	2,948	3,598
		기타	9,358	8,111	9,192	8,489	8,652	7,325	6,931	5,903	1,273	1,386
	보완수사요구		-	-	-	-	-	-	-	-	4,709	3,780
	이송	소년보호	29,937	25,191	24,999	25,159	24,935	23,478	24,393	25,869	20,998	24,342
		가정보호	36	49	156	180	183	169	212	233	405	348
		아동보호	-	-	-	-	-	9	6	9	5	5
		타관	7,820	7,253	8,023	7,972	7,067	7,666	7,926	9,054	6,148	6,281
		성매매	1	4	8	10	27	10	6	1	-	-
미제			1,033	942	833	949	1,152	1,492	1,677	2,086	1,393	1,838

※ 소년범 : 20세 미만 범죄(2008. 6. 22.시행 개정소년법 나이〈19세 미만〉 미반영)

| 표 5-38 | 학생사범

(단위 : 명)

구분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접수	계			5,536	6,047	4,947	2,972	2,264	1,061	1,360	3,082	4,731	6,067
	구수			137	74	76	35	17	27	39	35	153	117
	신수			5,399	5,973	4,871	2,937	2,247	1,034	1,321	3,047	4,578	5,950
처리	계			5,460	5,970	4,912	2,957	2,242	1,024	1,329	2,954	4,583	5,853
	기소	소계		215	363	274	244	148	40	27	147	298	302
		구공판		147	177	95	85	86	16	9	84	102	123
		구약식		68	186	179	159	62	24	18	63	196	179
	불기소	소계		3,435	3,645	3,046	1,809	1,417	534	676	1,358	1,719	2,385
		무혐의		344	415	463	247	163	55	95	257	75	87
		기소유예		2,431	2,353	1,829	1,007	863	288	343	716	1,231	1,759
		기소중지		125	179	245	211	210	90	103	138	353	442
		기타		535	698	509	344	181	101	135	247	60	97
	보완수사요구			-	-	-	-	-	-	-	-	335	447
	이송	소년보호		1,473	1,520	1,089	670	495	336	448	1,121	1,628	2,219
		가정보호		2	2	4	4	2	3	5	10	41	32
		아동보호		-	-	-	-	-	-	-	-	-	1
		타관		335	439	496	229	180	111	173	318	562	467
		성매매		-	1	3	1	-	-	-	-	-	-
미제				76	77	35	15	22	37	31	128	148	214

| 표 5-39 |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

(단위 : 명)

구분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접수	계			9,182	7,778	7,942	9,480	13,466	18,458	19,483	21,622	17,707	27,263
	구수			822	884	1,085	960	1,233	1,634	1,677	2,057	2,850	1,049
	신수			8,360	6,894	6,857	8,520	12,233	16,824	17,806	19,565	14,857	26,214
처리	계			8,288	7,044	7,314	8,553	12,041	17,083	17,697	18,870	16,850	26,354
	기소	소계		332	415	293	303	345	190	180	128	104	76
		구공판		280	354	256	274	301	147	148	111	97	61
		구약식		52	61	37	29	44	43	32	17	7	15
	불	소계		7,524	6,278	6,755	7,831	11,157	16,227	17,029	18,210	11,482	11,681

구분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기소	무혐의	2,561	2,560	2,443	2,481	2,894	2,920	2,988	3,102	1,601	1,533
		기소유예	133	121	99	104	171	95	80	60	68	24
		기소중지	58	91	71	45	79	74	65	78	26	22
		기타	4,772	3,506	4,142	5,201	8,013	13,138	13,896	14,970	9,787	10,102
	이송	소년보호	-	-	-	-	-	-	-	-	-	-
		가정보호	-	-	-	-	-	-	-	-	-	-
		타관	432	351	266	419	539	666	488	532	4,794	14,143
		성매매	-	-	-	-	-	-	-	-	-	-
	보완수사		-	-	-	-	-	-	-	-	470	454
미제			894	734	628	927	1,425	1,375	1,786	2,752	857	909

| 표 5-40 | 외국인 사건

구분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접수	계		35,281	38,674	48,277	54,200	46,928	45,068	50,867	49,504	36,375	38,718
	구수		821	775	1,283	1,049	1,257	1,145	1,486	1,785	2,581	1,253
	신수		34,460	37,899	46,994	53,151	45,671	43,923	49,381	47,719	33,794	37,465
처리	계		34,561	37,615	47,280	53,001	45,867	43,671	48,866	48,071	35,128	36,873
	기소	소계	13,965	13,863	16,535	18,332	14,944	13,789	14,811	14,921	13,753	14,975
		구공판	2,451	2,894	3,979	3,985	3,974	4,162	4,927	5,221	5,028	5,353
		구약식	11,514	10,969	12,556	14,347	10,970	9,627	9,884	9,700	8,725	9,622
	불기소	소계	19,093	22,100	28,377	31,609	28,173	27,097	30,174	29,157	13,312	14,147
		무혐의	3,410	4,138	5,981	6,832	5,840	5,175	5,649	5,930	1,414	1,275
		기소유예	7,227	8,308	10,246	11,788	9,960	9,130	10,599	9,169	7,406	8,384
		기소중지	3,405	4,191	5,642	5,863	5,325	5,385	5,851	6,204	2,141	2,405
		기타	5,051	5,463	6,508	7,126	7,048	7,407	8,075	7,854	2,351	2,083
	보완수사요구		-	-	-	-	-	-	-	-	4,350	3,851
	이송	소년보호	38	31	45	48	57	61	86	164	125	179
		가정보호	96	145	314	350	303	365	480	388	478	524
		타관	1,366	1,468	2,004	2,649	2,386	2,320	3,312	3,439	3,105	3,195
		성매매	3	8	5	13	4	6	3	2	5	2
미제			720	1,059	997	1,199	1,061	1,397	1,940	1,322	1,247	1,845

| 표 5-41 |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형사사건

(단위 : 명)

구분 / 연도별		발생							미군인 범죄에 대한 재판권행사	주한미군지위협정사건 전체범죄에 대한행사
		총계	미측 관할 제외 총계	미군인				미군속 등		
				계	미측 관할	공소권 없음	미측관할 및 공소권 없음 제외			
'11	건	397	380	298	17	158	123	99	81(65.9%)	180
	명	456	439	341	17	177	147	115	92(62.6%)	207
'12	건	344	322	264	22	158	84	80	64(76.2%)	144
	명	379	357	294	22	175	97	85	70(72.2%)	155
'13	건	365	354	273	11	134	128	92	89(69.5%)	181
	명	403	392	305	11	163	131	98	98(74.8%)	196
'14	건	405	388	286	17	146	123	119	93(75.6%)	212
	명	433	416	300	17	152	131	133	97(74.0%)	230
'15	건	387	370	265	17	138	110	122	78(70.9%)	200
	명	419	402	289	17	152	120	130	82(68.3%)	212
'16	건	388	339	293	49	170	74	95	68(91.9%)	163
	명	426	377	326	49	198	79	100	71(89.9%)	171
'17	건	374	340	265	34	153	78	109	58(74.4%)	167
	명	415	381	295	34	169	92	120	62(67.4%)	182
'18	건	351	312	296	39	186	71	55	69(97.1%)	124
	명	378	339	319	39	202	78	59	70(89.7%)	129
'19	건	444	417	395	27	212	156	49	106(67.9%)	155
	명	477	450	426	27	232	167	51	107(64.1%)	158
'20	건	541	508	392	33	231	128	149	69(54.0%)	218
	명	587	554	426	33	258	135	161	70(51.9%)	231
'21	건	457	428	313	29	161	123	144	95(77.2%)	239
	명	487	458	337	29	172	136	150	104(76.4%)	254
'22	건	521	509	355	12	153	190	166	132(69.4%)	182
	명	579	567	401	12	178	211	178	144(68.2%)	196

※ '공소권없음'은 미군인 범죄로 집계는 되었으나, 친고죄의 고소취소나 교통사고의 종합보험 가입의 사유로 재판관할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등임

※ 2003년부터는 재판권행사율 산정 시 '공소권없음'에 해당하는 사건은 분모에 산입하지 않음

2. 구속영장 발부 등

| 표 5-42 | 구속영장 발부 및 처리

(단위 : 명)

구분 / 연도		구속영장 발부 현황					구속인원 처리현황										
		청구 및 신청	기각		발부	미집행	계	기소			소년(가정) 보호사건 송치	불기소					보완수사요구
			검사	판사				소계	구공판	구약식		소계	기소유예	기소중지	혐의없음	기타	
'13	계	38,766	5,655	5,914	26,716	-	28,298	28,040	27,953	87	118	140	33	42	65	82	-
	검사	7,327	-	1,769	5,075	-	5,476	5,440	5,424	16	-	36	1	32	3	5	-
	사경	31,439	5,655	4,145	21,641	-	22,822	22,600	22,529	71	118	104	32	10	62	77	-
'14	계	41,637	5,310	7,303	28,580	-	30,547	30,269	30,207	62	79	199	16	39	64	80	-
	검사	8,134	-	1,903	5,835	-	6,786	6,750	6,731	19	-	36	3	31	1	1	-
	사경	33,503	5,310	5,400	22,745	-	23,761	23,519	23,476	43	79	163	13	8	63	79	-
'15	계	44,110	5,695	6,831	31,153	-	33,946	33,731	33,655	76	67	148	21	37	47	43	-
	검사	7,013	-	1,528	5,142	-	6,181	6,147	6,115	32	-	34	3	27	1	3	-
	사경	37,097	5,695	5,303	26,011	-	27,765	27,584	27,540	44	67	114	18	10	46	40	-
'16	계	46,198	6,088	7,187	32,369	-	35,154	35,010	34,948	62	25	119	6	36	34	43	-
	검사	8,165	-	1,812	5,889	-	7,015	6,995	6,974	21	-	20	-	19	-	1	-
	사경	38,033	6,088	5,375	26,480	-	28,139	28,015	27,974	41	25	99	6	17	34	42	-
'17	계	41,701	6,574	6,682	28,340	-	31,355	31,185	31,126	59	19	151	6	39	40	66	-
	검사	5,919	-	1,485	4,414	-	5,706	5,670	5,658	12	-	36	-	30	3	3	-
	사경	35,782	6,574	5,197	23,926	-	25,649	25,515	25,468	47	19	115	6	9	37	63	-
'18	계	35,946	5,871	5,585	24,438	-	27,525	27,388	27,332	56	20	117	6	20	32	59	-
	검사	4,225	-	1,118	3,095	-	4,584	4,559	4,534	25	1	24	2	18	1	3	-
	사경	31,721	5,871	4,467	21,343	-	22,941	22,829	22,798	31	19	93	4	2	31	56	-
'19	계	35,345	5,683	5,587	24,018	-	26,860	26,756	26,704	52	8	96	5	16	34	41	-
	검사	3,167	-	922	2,235	-	3,645	3,628	3,604	24	-	17	1	14	1	1	-
	사경	32,178	5,683	4,665	21,783	-	23,215	23,128	23,100	28	8	79	4	2	33	40	-
'20	계	31,033	5,260	4,656	21,098	-	24,467	24,373	24,335	38	6	88	4	8	30	46	-
	검사	1,807	-	513	1,289	-	3,126	3,116	3,094	22	-	10	-	5	1	4	-
	사경	29,226	5,260	4,143	19,809	-	21,341	21,257	21,241	16	6	78	4	3	29	42	-
'21	계	28,201	6,174	3,895	18,064	-	20,973	20,897	20,861	36	3	45	-	4	21	20	28
	검사	1,217	-	330	886	-	2,351	2,320	2,302	18	-	3	-	2	1	-	28
	사경	26,984	6,174	3,565	17,178	-	18,622	18,577	18,559	18	3	42	-	2	20	20	-
'22	계	29,000	6,389	4,187	18,352	-	21,555	21,463	21,445	18	4	64	2	7	16	39	24
	검사	1,434	-	385	1,038	-	2,615	2,608	2,595	13	0	6	0	3	1	2	2
	사경	27,566	6,389	3,802	17,314	-	18,940	18,855	18,850	5	4	58	2	4	15	37	23

3. 구속적부심사

| 표 5-43 |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접수	계	1,746	2,127	2,117	2,353	2,125	1,994	1,929	1,815	1,542	1,956
	구 수	-	-	-	-	-	-	-	-	-	-
	신 수	1,746	2,127	2,117	2,353	2,125	1,994	1,929	1,815	1,542	1,956
처리	계	1,717	2,127	2,117	2,353	2,125	1,993	1,929	1,812	1,542	1,956
	석 방	304	441	344	355	301	240	197	118	92	132
	기 각	1,379	1,656	1,748	1,972	1,795	1,730	1,691	1,666	1,428	1,784
	취 하	34	30	25	26	29	23	41	28	22	40
심사중		-	-	-	-	-	1	-	1	-	-

4.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표 5-44 | 항고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접수	계	48,642	51,995	55,140	53,168	57,306	65,456	80,195	80,627	44,057	33,589
	구 수	3,447	3,327	4,386	4,505	4,825	5,435	7,936	7,651	7,738	3,231
	신 수	45,195	48,668	50,754	48,663	52,481	60,021	72,259	72,976	36,319	30,358
처리	계	45,312	47,602	50,632	48,341	51,886	57,524	72,539	72,879	40,826	30,171
	기소명령	176	201	121	117	96	50	60	28	17	13
	재기수사명령	3,060	3,606	3,436	3,067	3,646	4,402	4,695	4,706	3,017	1,925
	주문변경명령	103	114	90	255	240	140	135	44	39	39
	항고기각	37,736	39,618	42,984	40,305	42,247	43,628	52,451	57,580	35,484	27,099
	각 하	4,237	4,063	4,001	4,597	5,648	9,304	15,198	10,521	2,269	1,095
미제		3,330	4,393	4,508	4,827	5,440	7,932	7,656	7,748	3,231	3,418

| 표 5-45 | 재항고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접수	계	2,651	2,936	3,110	2,669	3,754	4,300	7,312	6,447	4,616	4,408
	구수	1,110	919	461	348	465	523	908	1,479	1,184	692
	신수	1,541	2,017	2,649	2,321	3,289	3,777	6,404	4,968	3,432	3,716
처리	계	1,732	2,476	2,762	2,204	3,231	3,392	5,833	5,263	3,924	2,917
	기소명령	-	-	-	-	-	-	-	-	-	-
	재기수사명령	72	52	72	59	61	56	104	142	74	54
	주문변경명령	-	-	1	-	-	-	-	-	-	-
	항고기각	928	1,501	1,722	1,655	2,170	2,247	3,717	4,550	3,059	2,084
	각하	732	923	967	490	1,000	1,089	2,012	571	791	779
미제		919	460	348	465	523	908	1,479	1,184	692	1,491

| 표 5-46 | 재정신청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심사중		14,688	16,037	19,377	22,165	25,061	29,406	36,793	42,005	41,370	44,074
접수	계	18,884	20,771	21,043	19,393	21,285	24,212	34,758	29,743	17,156	13,825
	공소제기명령	-	-	-	-	-	-	-	-	-	-
	고법송부	18,884	20,771	21,043	19,393	21,285	24,209	34,756	29,742	17,155	13,822
	신청취소	-	-	-	-	-	3	2	1	1	3
처리	계	14,419	18,007	19,461	16,605	18,389	19,864	27,369	24,530	17,790	11,118
	신청기각	14,231	17,738	19,184	16,392	18,014	19,586	27,085	24,209	17,571	10,939
	공소제기결정	118	150	160	86	171	106	97	161	111	77
	신청취소	70	119	117	127	204	172	187	160	108	102

5. 형의 집행

| 표 5-47 | 사형집행

(단위 : 명)

구분 \ 연도	계	2001	2002	'03 ~ '07	2008	'09 ~ '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집행인원	-	-	-	-	-	-	-	-	-	-	-	-
기타 (사면·감형 등)	10	-	4	-	6	-	-	-	-	-	-	-

| 표 5-48 | 벌과금 집행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조정금액	처분금액				집행미제액
		현금집행	유치집행	기타처분 금액	계	
2013	30,255,449,022	1,478,847,909	2,500,582,716	238,671,053	4,218,101,678	26,037,347,344
2014	30,338,793,001	1,515,336,230	2,437,519,838	212,084,718	4,164,940,786	26,173,852,215
2015	30,427,117,765	1,485,721,253	2,172,718,742	285,497,041	3,943,937,036	26,483,180,729
2016	30,973,951,033	1,477,985,331	2,702,019,260	180,568,827	4,360,573,419	26,613,377,614
2017	31,479,966,569	1,440,018,684	2,920,347,012	148,669,665	4,509,035,361	26,970,931,208
2018	32,367,440,507	1,302,533,747	3,123,518,750	652,849,501	5,078,901,998	27,288,538,509
2019	32,616,527,504	1,223,258,449	3,000,576,228	494,089,002	4,717,923,679	27,898,603,825
2020	37,922,664,770	1,277,513,057	4,242,205,364	321,135,450	5,840,853,871	32,081,810,899
2021	37,716,213,301	1,194,457,327	3,941,826,907	157,795,659	5,294,079,893	32,422,133,408
2022	38,197,346,186	1,193,344,535	3,856,611,451	97,944,158	5,147,900,144	33,049,446,042

※ 조정금액은 당해년도 벌과금 조정총액에서 촉탁금액을 감액한 실조정금액
※ 기타 처분금액은 사회봉사 집행, 집행불능 결정, 공제(미결구금일수 통산)금액의 합계액
※ 집행미제액은 사회봉사집행 중, 집행정지, 순미제 금액의 합계액

6. 사 면

| 표 5-49 | 사면

(단위 : 명)

구 분 / 실시일자	일반 사면	특별 사면	일반 감형	특별 감형	일반 복권	특별 복권	특별 사면 및 특별 복권	비 고
'82. 1. 1.	-	11	-	-	-	-	-	징계변호사
'82. 3. 3.	-	1,419 (488)	-	545 (248)	-	238 (233)	-	12대 대통령취임 1주년
'83. 3. 15.	-		-	2	-	-	-	미문화원 방화사건
'83. 8. 12.	-	77 (1)	-	10	-	551 (257)	-	광복절
'83. 12. 23.	-	36	-	-	-	142 (66)	-	성탄절
'84. 8. 14.	-	43	-	2	-	307 (71)	364 (50)	광복절
'84. 10. 2.	-	-	-	177 (40)	-	-	-	개천절
'85. 3. 2.	-	1,615 (393)	-	512 (186)	-	-	-	대통령취임 4주년
'85. 8. 15.	-	-	-	4	-	-	-	40주년 광복절(국가유공자등)
'87. 7. 10.	-	1,819 (7)	-	-	-	401 (21)	115 (43)	7·1대통령담화관련
'88. 2. 27.	-	4,214 (788)	-	835 (185)	-	992 (665)	334 (19)	제13대 대통령취임
'88. 12. 21.	-	1,113 (20)	-	96 (5)	-	365 (31)	155 (6)	11·26 대통령특별 담화관련
'90. 4. 12.	-	1	-	-	-	-	-	김현희
'91. 2. 25.	-	914 (187)	-	565 (187)	-	-	-	대통령취임 3주년
'91. 5. 25.	-	-	-	30 (9)	-	-	-	-
'91. 12. 24.	-	1	-	-	-	1	-	-
'92. 12. 24.	-	9	-	1	-	12	2	-

구 분 / 실시일자	일반 사면	특별 사면	일반 감형	특별 감형	일반 복권	특별 복권	특별 사면 및 특별 복권	비 고
'93. 3. 6.	-	34,147 (590)	-	1,076 (167)	-	2,987 (81)	2,703 (66)	제14대 대통령취임
'93. 5. 28.	-	81 (75)	-	-	-	-	-	광주민주화운동관련
'93. 12. 24.	-	137	-	-	-	24	26	전교조 관련
'95. 8. 15.	-	1,269 (103)	-	426 (46)	-	528 (29)	318 (23)	8·15 광복절
'95. 12. 2.	일반사면(대통령령 제14818호)							경미한 행정법규위반자 및 징계공무원
'96. 2. 25.	-	1	-	-	-	-	22	대통령취임 3주년
'96. 8. 15.	-	-	-	-	-	5	6	광복 51주년 경축
'97. 10. 3.	-	1	-	-	-	8	14	개천절기념
'97. 12. 22.	-	17	-	-	-	-	8	전직대통령 등
'98. 3. 13.	-	2,058 (231)	-	1,258 (61)	-	806	30,681	제15대 대통령 취임 기념
'98. 8. 15.	-	18 (3)	-	13	-	1,402 (5)	3,406 (12)	건국 50주년 경축
'99. 2. 25.	-	2,707 (2)	-	12	-	1,088 (28)	3,501 (50)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99. 8. 15.	-	40 (1)	-	7	-	256 (9)	788 (16)	광복 54주년 경축
'00. 8. 15.	-	3,881 (58)	-	810 (8)	-	525 (3)	23,148 (163)	광복 55주년 경축
'02. 7. 10.	월드컵 경축	-	-	-	-	-	-	운전면허벌점 등 감면 4,810,000명
'02. 12. 31.	-	54	-	4	-	25	39	복역중인 외국인 51명 잔형집행 면제포함
'03. 4. 30.	-	38 (1)	-	-	-	431	955 (5)	제16대 대통령 취임(공안사범 사면)
'03. 8. 15.	-	2,363 (502)	-	675 (10)	-	170	21,417	광복 58주년 경축
'04. 5. 26.	-	1	-	-	-	6	62	부처님 오신 날 경축

구 분 / 실시일자	일반 사면	특별 사면	일반 감형	특별 감형	일반 복권	특별 복권	특별 사면 및 특별 복권	비 고
'05. 8. 15.	-	2,528 (62)	-	567 (20)	-	1,483 (1)	9,515 (19)	광복 60주년경축(운전면허 벌점 등 감면 4,207,152명)
'06. 8. 15.	-	46	-	19	-	27	50	광복 61주년경축(건설업체 벌점삭제 등 4,390명)
'07. 2. 12.	-	28	-	12	-	276	118	경제살리기와 국민통합
'08. 1. 1.	-	8	-	14	-	18	35	-
'08. 6. 4.	-	119	-	31	-	-	-	새 정부 출범 100일 기념(운전면허 벌점 등 감면 2,828,917명)
'08. 8. 15.	-	1,401 (8)	-	178	-	1,951	8,797 (16)	광복 63주년, 건국 60주년 경축 (징계사면 328,335명, 소형선박 조종사면허취득결격기간 해제 500명)
'09. 8. 15.	-	1,947 (6)	-	375	-	-	7,145 (2)	제64주년 광복절, 건국 61주년 경축
'09. 12. 31.	-	1	-	-	-	-	-	-
'10. 8. 15.	-	25	-	15	-	2,406	47	제65주년 광복절 기념 (징계사면 5,685)
'12. 1. 12.	-	595	-	185	-	-	165	-
'13. 1. 31.	-	16	-	3	-	18	18	-
'14. 1. 29.	-	516 (1)	-	113	-	-	5,296 (1)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2,887,601명 등 행정제재 감면 총 2,896,499명
'15. 8. 15.	-	877 (5)	-	246	-	1	5,403 (5)	제70주년 광복절 기념(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2,200,925명 등 행정제재 감면 총 2,206,924명)
'16. 8. 15.	-	858 (6)	-	261	-	3	3,754 (6)	제71주년 광복절 기념(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1,420,049명 등 행정제재 감면 총 1,422,493명)
'17. 12. 30.	-	852 (2)	-	245	-	17	5,330 (2)	2018년 신년(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1,650,975명 등 행정제재 감면 총 1,652,691명)
'19. 2. 28.	-	819 (1)	-	243 (1)	-	89	3,227 (2)	제100주년 3·1절

구 분 / 실시일자	일반 사면	특별 사면	일반 감형	특별 감형	일반 복권	특별 복권	특별 사면 및 특별 복권	비 고
’19. 12. 31.	-	569 (1)	-	153	-	2,159	2,293 (2)	2020년 신년(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1,709,822명 등 행정제재 감면 총 1,712,422명)
’20. 12. 31.	-	556	-	153	-	8	2,307 (1)	2021년 신년(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1,118,923명 등 행정제재 감면 총 1,119,608명)
’21. 12. 31.	-	642	-	131	-	369	1952	2022년신년(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980,780명 등 행정제재 감면 총 983,051명, 전직 대통령 포함)
’22. 1. 26.	-	-	-	-	-	2	-	2022년 신년 후속조치
’22. 8. 15.	-	495	-	87	-	7	1104	2022년 광복절(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592,037명 등 행정제재 감면 총 593,509명,)
’22. 12. 28.	-	9	-	2	-	1342 (4)	20 (1)	2023년 신년

※ ( )는 국방부 소관

7. 형사보상금 지급

| 표 5-50 |

(단위 : 천원, 명)

구분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예산액	11,000,000	14,000,000	20,000,000	24,000,000	27,500,000	33,213,000	33,213,000	37,313,000	40,000,000	40,000,000
보상인원	29,015	34,363	14,546	8,713	7,374	5,073	4,257	4,380	3,414	2,983
지급금액	57,671,711	88,165,833	52,974,617	31,768,637	36,038,809	36,736,416	40,138,487	41,906,948	44,386,945	42,323,047

※ 형사보상금 = 피고인 보상금 + 피의자 보상금 + 무죄비용 보상금 + 기타

8. 마약보상금 지급

| 표 5-51 |

(단위 : 천원)

종 류 \ 구 분	민간인 보상금	공무원 보상금	계
예 산 액	120,000	180,388	300,388
2021	25,300 (2)	-	25,300
2022	120,000 (8)	-	120,000

※ ( )는 인원

9. 해외연수

가. 검사 장기 해외연수

| 표 5-52 |

(단위 : 명)

지역 / 연도	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스페인	러시아	캐나다	호주	오스트리아	이집트	네덜란드	벨기에	싱가포르	칠레	이탈리아	인도	터키	스웨덴	아랍에미레이트	스위스
2005	28	14	1	2	1	2	2	1	-	1	1	1	1	1	-	-	-	-	-	-	-	-	-
2006	50	25	2	5	2	3	3	1	-	2	1	1	1	1	1	1	1	-	-	-	-	-	-
2007	53	26	3	4	2	3	3	1	-	3	2	1	-	1	1	-	1	1	1	-	-	-	-
2008	54	21	4	5	2	3	4	2	1	4	2	1	-	2	1	-	1	1	1	-	-	-	-
2009	53	21	4	5	3	3	4	2	-	3	1	1	-	2	1	-	1	2	-	-	-	-	-
2010	54	24	4	5	2	3	3	3	-	3	2	1	1	1	1	-	-	1	-	-	-	-	-
2011	54	20	2	5	2	5	6	3	-	6	2	1	-	1	-	-	-	-	-	1	-	-	-
2012	54	23	3	5	3	3	5	2	-	4	3	1	-	1	-	-	-	1	-	-	-	-	-
2013	54	25	3	4	3	2	3	4	-	4	3	1	-	1	-	-	-	1	-	-	-	-	-
2014	52	23	2	5	3	2	5	3	-	5	2	1	-	1	-	-	-	-	-	-	-	-	-
2015	52	24	3	5	3	2	3	4	-	4	2	1	-	1	-	-	-	-	-	-	-	-	-
2016	52	20	3	5	3	4	3	2	-	4	2	1	-	1	1	1	-	-	-	-	1	1	-
2017	57	26	3	2	3	2	5	2	-	4	1	1	-	2	1	1	1	-	-	-	2	-	1
2018	57	37	1	6	1	2	2	1	-	3	1	1	-	1	-	1	-	-	-	-	-	-	-
2019	57	45	3	2	3	2	-	-	-	1	-	-	-	1	-	-	-	-	-	-	-	-	-
2020	56	41	2	2	1	2	1	-	-	1	-	-	-	3	-	1	-	-	-	-	1	-	-
2021	58	41	4	2	1	2	-	3	-	4	-	-	-	1	-	-	-	-	-	-	-	-	-
2022	57	42	3	1	2	2	-	1	-	1	-	-	-	1	2	1	-	-	-	-	1	-	-

※ 타부처 주관 포함

나. 검사 외 검찰공무원 장기 해외연수

| 표 5-53 |

(단위 : 명)

연도 \ 지역	계	미국	영국	호주	독일	일본	중국	캐나다	태국	스페인	체코	멕시코	몽골	네덜란드
2005	4	1	1	-	-	-	-	-	-	1	1	-	-	-
2006	4	1	-	-	-	-	1	2	-	-	-	-	-	-
2007	8	2	-	-	-	2	1	1	1	1	-	-	-	-
2008	7	3	-	-	-	1	1	1	-	1	-	-	-	-
2009	5	2	1	-	-	-	1	1	-	-	-	-	-	-
2010	6	3	-	-	-	1	1	1	-	-	-	-	-	-
2011	6	3	1	-	-	-	1	-	-	-	-	1	-	-
2012	5	3	-	-	-	-	1	1	-	-	-	-	-	-
2013	7	3	-	1	-	1	1	-	-	-	-	-	1	-
2014	7	3	-	-	1	-	2	1	-	-	-	-	-	-
2015	6	3	-	-	-	-	2	1	-	-	-	-	-	-
2016	4	3	-	-	-	-	-	1	-	-	-	-	-	-
2017	6	3	-	-	-	1	1	1	-	-	-	-	-	-
2018	7	3	1	-	-	-	2	-	-	-	-	-	-	1
2019	3	2	1	-	-	-	-	-	-	-	-	-	-	-
2020	4	2	-	-	1	-	-	1	-	-	-	-	-	-
2021	3	1	1	-	1	-	-	-	-	-	-	-	-	-
2022	4	1	1	-	-	1	-	-	-	1	-	-	-	-

※ 타부처 주관 포함

제3절 범죄예방업무 통계

1. 감호처분

가. 감호청구

| 표 5-54 | 감호종류별 청구인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254	156	155	118	99	77	184	65	78	96
보호감호	–	–	–	–	–	–	–	–	–	–
치료감호	254	156	155	118	99	77	184	65	78	96

| 표 5-55 | 죄명별 청구인원

죄명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감호	치료감호
계	–	254	–	156	–	155	–	118	–	99	–	77	–	184	–	65	–	78	–	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5	–	1	–	–	–	1	–	–	–	–	–	1	–	2	–	–	–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36	–	27	–	18	–	1	–	–	–	–	–	–	–	–	–	–	–	–
절도	–	7	–	11	–	5	–	10	–	8	–	2	–	16	–	2	–	–	–	–
강도	–	5	–	4	–	2	–	2	–	2	–	–	–	3	–	–	–		–	–
살인	–	40	–	22	–	29	–	17	–	9	–	9	–	14	–	20	–	5	–	6
강간	–	13	–	6	–	4	–	4	–	1	–	2	–	2	–	–	–	1	–	–
사기	–	10	–	4	–	3	–	–	–	2	–	–	–	5	–	3	–	–	–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	–	–	–	–	–	–	–	–	–	–	–	–	–	–	–	–	–	–	–
상해·폭행	–	14	–	16	–	15	–	16	–	12	–	8	–	39	–	13	–	10	–	16
방화·실화	–	14	–	11	–	11	–	6	–	14	–	7	–	12	–	3	–	1	–	1
상해(폭행)치사	–	–	–	2	–	3	–	1	–	–	–	2	–	2	–	–	–	1	–	1
무고	–	–	–	–	–	–	–	–	–	–	–	–	–	–	–	–	–		–	–
기타	–	110	–	52	–	65	–	60	–	51	–	47	–	90	–	22	–	60	–	49

나. 피보호감호자 수용

| 표 5-56 | 죄명별 수용인원

죄명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119	104	100	62	31	17	31	30	32	24
강도	33	32	32	18	8	5	12	13	9	10
절도	23	19	16	10	3	3	9	9	8	3
폭력	4	2	2	-	-	1	2	-	1	1
성폭력	59	48	47	32	20	8	8	8	14	9
기타	-	3	3	2	-	-	-	-	-	1

| 표 5-57 | 전과별 수용인원

전과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119	104	100	62	31	17	31	30	32	24
초범	7	6	7	3	3	-	1	3	2	-
2 ~ 3범	28	22	18	11	5	4	7	3	3	3
4 ~ 5범	39	31	32	20	10	4	8	10	5	3
6 ~ 7범	33	31	29	20	7	6	8	3	10	10
8 ~ 9범	7	8	7	4	3	2	5	8	8	5
10범 이상	5	6	7	4	3	1	2	3	4	3

| 표 5-58 | 동기별 수용인원

동기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119	104	100	62	31	17	31	30	32	24
이욕(利慾)(생활비, 유흥비, 허영)	105	101	98	62	31	17	31	30	32	24
원한·분노	-	-	-	-	-	-	-	-	-	-
취중	4	3	2	-	-	-	-	-	-	-
우연	-	-	-	-	-	-	-	-	-	-
기타	10	-	-	-	-	-	-	-	-	-

| 표 5-59 | 학력별 수용인원

연 도 / 학 력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119	104	100	62	31	17	31	30	32	24
무 학	9	15	11	14	-	-	3	2	3	3
초 졸	40	31	36	14	7	8	11	6	6	1
중 졸	21	19	17	12	11	2	8	15	11	6
고 졸	47	38	35	22	13	7	9	7	12	13
대 졸	2	1	1	-	-	-	-	-	-	1

| 표 5-60 | 직업별 수용인원

연 도 / 직 업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119	104	100	62	31	17	31	30	32	24
노 동	22	29	30	12	1	3	5	3	1	2
종 업 원	32	16	14	6	1	1	2	1	2	2
농 업	1	-	1	-	-	-	-	-	-	-
상 업	13	10	9	8	3	1	2	2	1	1
기 타	51	49	46	36	26	12	22	24	28	19

| 표 5-61 | 감호집행 기간별 수용인원

연 도 / 집행기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119	104	100	62	31	17	31	30	32	24
1년 미만	10	5	4	7	3	3	2	-	3	1
1년 이상~2년 미만	20	13	11	7	4	7	5	3	2	2
2년 이상~3년 미만	30	23	12	10	7	1	4	3	1	3
3년 이상~4년 미만	27	27	24	22	7	1	2	6	5	1
4년 이상	32	36	49	16	10	5	18	18	21	17

다. 피치료감호자 수용

| 표 5-62 | 죄명별 수용인원

죄명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1,122	1,149	1,180	1,093	1,096	1,038	1,012	1,016	863	815
살인	334	340	372	343	338	328	336	321	310	290
상해(폭행)치사	37	37	36	34	38	30	30	28	22	22
폭력	180	195	161	137	156	149	140	171	141	139
절도	64	58	68	60	59	58	62	58	51	43
방화	63	71	80	75	80	76	74	64	49	45
강도	45	54	57	52	48	48	44	44	31	25
성폭력	247	263	279	272	242	208	184	184	144	138
기타	152	131	127	120	135	141	142	146	115	113

| 표 5-63 | 전과별 수용인원

전과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1,122	1,149	1,180	1,093	1,096	1,038	1,012	1,016	863	815
초범	721	759	769	728	721	671	657	663	577	537
2범	130	121	132	133	129	126	132	135	97	84
3범	63	70	77	61	65	57	60	61	57	51
4범	44	42	40	45	35	38	37	35	31	26
5범 이상	164	157	162	126	146	146	126	122	101	117

| 표 5-64 | 병명별 수용인원

병명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1,122	1,149	1,180	1,093	1,096	1,038	1,012	1,016	863	815
조현병	480	509	533	507	519	528	543	575	509	471
정신지체	89	104	102	97	93	84	77	84	62	56
조울증	57	72	81	85	84	71	76	79	68	63
성격(인격)장애	44	38	35	27	27	23	13	10	9	5
간질	26	20	14	12	10	10	9	10	6	4
약물중독	85	176	175	130	35	46	35	19	26	26
기타	341	230	240	235	328	276	259	239	185	190

| 표 5-65 | 학력별 수용인원

학력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1,122	1,149	1,180	1,093	1,096	1,038	1,012	1,016	863	815
무학	42	41	48	44	73	70	54	53	47	39
초졸	138	143	141	139	189	163	153	153	125	109
중졸	222	230	227	202	186	173	156	161	141	131
고졸	497	494	512	475	478	475	499	378	321	301
대졸	223	241	252	233	170	157	150	271	229	235

| 표 5-66 | 직업별 수용인원

직업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1,122	1,149	1,180	1,093	1,096	1,038	1,012	1,016	863	815
노동	103	104	102	85	94	93	81	89	73	63
종업원	43	94	67	53	46	40	30	33	26	25
농업	29	28	28	27	27	31	28	25	21	19
상업	10	41	7	40	22	17	4	3	2	1
무직	732	759	745	695	693	658	664	691	599	551
기타	205	123	231	193	214	199	205	175	142	156

| 표 5-67 | 감호집행 기간별 수용인원

집행기간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1,122	1,149	1,180	1,093	1,096	1,038	1,012	1,016	863	815
1년 미만	434	548	279	283	220	195	210	193	115	138
1년 이상~2년 미만	188	126	199	181	230	167	136	153	140	85
2년 이상~3년 미만	126	115	173	133	156	178	123	112	126	116
3년 이상~4년 미만	110	99	126	115	103	116	144	103	81	102
4년 이상	264	261	403	381	387	382	399	455	401	374

라. 피보호감호자 교육훈련 및 기능자격취득

| 표 5-68 | 교육훈련 인원

구분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17	14	7	7	-	2	-	-	1	-
학과교육	소계	4	12	7	6	-	2	-	-	-	-
	초등반	-	-	-	-	-	-	-	-	-	-
	중등반	-	-	-	-	-	-	-	-	-	-
	고등반	-	2	-	-	-	-	-	-	-	-
	학사고시반	4	10	7	6	-	2	-	-	-	-
직업훈련	소계	13	2	-	1	-	-	-	-	1	-
	목공	-	-	-	-	-	-	-	-	-	-
	미(도)장	-	-	-	-	-	-	-	-	-	-
	조적	-	-	-	-	-	-	-	-	-	-
	타일	-	-	-	-	-	-	-	-	-	-
	배관	-	-	-	-	-	-	-	-	1	-
	전기	-	-	-	-	-	-	-	-	-	-
	보일러시공	12	-	-	-	-	-	-	-	-	-
	이·미용	-	-	-	-	-	-	-	-	-	-
	원예	-	-	-	-	-	-	-	-	-	-
	양재	-	-	-	-	-	-	-	-	-	-
	정비	1	1	-	-	-	-	-	-	-	-
	정보기기	-	-	-	-	-	-	-	-	-	-
	기타	-	1	-	1	-	-	-	-	-	-

| 표 5-69 | 기능자격취득 인원

구분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13	2	-	1	-	1	-	-	-	-
천안교도소	소계	-	-	-	-	-	-	-	-	-	-
	1·2기능사	-	-	-	-	-	1	-	-	-	-
	기능사보	-	-	-	-	-	-	-	-	-	-
	면허	-	-	-	-	-	-	-	-	-	-
경북북부제3교도소	소계	13	2	-	1	-	-	-	-	-	-
	1·2기능사	13	2	-	1	-	-	-	-	-	-
	기능사보	-	-	-	-	-	-	-	-	-	-
	면허	-	-	-	-	-	-	-	-	-	-

마.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운영

| 표 5-70 | 피보호감호자 결정 인원

구분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38	33	39	59	53	31	22	34	16	8
가 출 소	37	33	23	53	43	23	11	15	15	7
가출소취소	1	-	16	6	10	8	11	19	1	1
집 행 면 제	-	-	-	-	-	-	-	-	-	-

| 표 5-71 | 피치료감호자 결정 인원

구분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268	330	354	456	320	326	269	243	299	215
종 료	2	1	4	2	3	-	-	-	3	-
가 종 료	247	275	266	394	226	246	208	186	270	186
가종료취소	19	54	84	60	91	80	61	57	26	29

바. 보호감호 가출소

| 표 5-72 | 감호집행 기간별 가출소 인원

구분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37	33	23	53	43	26	11	15	15	7
3년 미만	5	-	-	3	1	8	6	3	3	3
3년이상 ~ 4년 미만	6	5	5	6	6	6	-	3	4	-
4년이상 ~ 5년 미만	3	8	5	12	23	6	2	2	1	-
5년 이상	23	20	13	32	13	6	3	7	7	4

| 표 5-73 | 죄명별 가출소 인원

구분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37	33	23	53	43	26	11	15	15	7
절도	7	9	9	10	12	3	2	5	7	-
강도	13	9	5	20	11	10	4	8	4	3
폭력행위등	3	2	-	4	1	-	1	-	-	-
성폭력	14	13	9	19	17	13	4	2	4	4
기타	-	-	-	-	2	-	-	-	-	-

| 표 5-74 | 전과별 가출소 인원

전과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37	33	23	53	43	26	11	15	15	7
초범	2	2	-	4	2	-	-	1	2	-
2 ~ 3 범	6	10	6	9	8	-	4	2	-	1
4 ~ 5 범	14	11	5	14	13	6	1	6	3	-
6 ~ 7 범	11	8	7	17	14	10	5	3	3	4
8 ~ 9 범	1	1	4	5	3	4	-	2	5	2
10범 이상	3	1	1	4	3	6	1	1	2	-

사. 치료감호 종료·가종료

| 표 5-75 | 치료감호 기간별 종료·가종료 인원

기간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계	2	247	1	275	4	266	2	393	3	226	-	252	-	235	-	188	2	263	-	190
1년 미만	-	47	1	65	2	59	1	68	-	11	-	40	-	55	-	53	1	8	-	22
1년 이상 2년 미만	1	94	-	94	2	72	-	80	2	51	-	39	-	30	-	11	1	40	-	24
2년 이상 3년 미만	1	43	-	36	-	41	-	62	1	26	-	41	-	33	-	19	-	28	-	26
3년 이상	-	63	-	80	-	94	1	183	-	138	-	132	-	117	-	105	-	187	-	118

| 표 5-76 | 죄명별 종료·가종료 인원

죄명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계	2	247	1	275	4	266	2	393	3	226	-	252	-	235	-	188	2	263	-	190
살인	-	33	-	42	-	27	-	77	-	48	-	35	-	23	-	48	-	43	-	47
상해(폭행)치사	-	3	-	5	-	6	-	10	-	2	-	8	-	3	-	4	-	6	-	3
폭력행위 등	-	48	-	39	2	81	-	78	2	26	-	38	-	45	-	17	-	55	-	26
강간	1	9	-	31	1	16	1	50	-	56	-	54	-	50	-	23	-	46	-	26
강도	-	9	-	6	-	13	1	17	-	12	-	7	-	9	-	6	-	15	-	7
절도	-	23	-	24	1	13	-	26	-	16	-	19	-	17	-	15	-	17	-	16
방화, 실화	1	17	-	10	-	10	-	32	-	11	-	19	-	16	-	17	-	16	-	11
기타	-	105	1	118	-	100	-	103	1	55	-	72	-	72	-	58	2	65	-	54

| 표 5-77 | 전과별 종료·가종료 인원

연도 / 죄명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계	2	247	1	275	4	266	2	393	3	226	-	252	-	235	-	188	2	263	-	190
초범	-	102	-	114	1	119	-	209	-	124	-	131	-	116	-	87	-	138	-	99
2범	1	29	1	37	2	33	1	43	3	25	-	29	-	25	-	26	-	48	-	17
3범	-	16	-	15	-	17	1	31	-	13	-	20	-	17	-	13	-	18	-	14
4범	-	14	-	14	1	9	-	10	-	15	-	12	-	9	-	14	1	10	-	16
5범 이상	1	86	-	95	-	88	-	100	-	49	-	60	-	68	-	48	1	49	-	44

| 표 5-78 | 병명별 종료·가종료 인원

연도 / 죄명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계	2	247	1	275	4	266	2	393	3	226	-	252	-	235	-	188	2	263	-	190
조현병	-	71	-	65	2	83	1	139	2	80	-	84	-	63	-	64	1	121	-	90
정신지체	1	17	-	11	-	16	-	27	-	19	-	16	-	16	-	17	-	23	-	13
조울증	-	14	-	11	-	15	-	24	-	14	-	23	-	16	-	10	-	21	-	20
성격(인격)장애	-	8	-	8	-	9	1	8	1	1	-	5	-	8	-	5	-	5	-	3
간질	-	4	-	7	-	7	-	4	-	2	-	-	-	1	-	1	-	4	-	2
약물중독	1	107	1	143	-	105	-	138	-	37	-	35	-	41	-	41	-	20	-	38
기타	-	26	-	30	2	31	-	53	-	73	-	89	-	90	-	50	1	69	-	24

2. 보호관찰

가. 보호관찰심사위원회 결정

| 표 5-79 |

(2022년)

구분 \ 심사위원회	계	서 울	부 산	대 구	광 주	대 전	수 원
계	12,125	2,799	1,386	1,614	1,800	1,933	2,593
가 석 방 (보 호 관 찰)	10,295	2,487	1,141	1,365	1,429	1,707	2,166
임 시 퇴 원	817	143	-	86	253	80	255
기 타 (임시퇴원취소, 임시해제, 가해제)	1,013	169	245	163	118	146	172

나. 처분종류별 실시사건 현황

| 표 5-80 |

(2022년)

대상 \ 구분	총실시인원			종료	현원
	계	구수	접수		
계	265,792	117,531	148,261	169,467	96,325
선 고 유 예	26	16	10	18	8
집 행 유 예	157,772	81,180	76,592	98,447	59,325
보 호 처 분	32,196	13,390	18,806	19,070	13,126
가 석 방	14,051	2,946	11,105	10,489	3,562
임 시 퇴 원	1,443	520	923	934	509
가 출 소	56	39	17	22	34
가 종 료	893	611	282	326	567
치 료 명 령	1,172	807	365	526	646
치료감호기간만료	52	40	12	24	28
가 정 보 호	11,465	3,102	8,363	7,744	3,721
성 매 매	214	77	137	155	59
아 동 학 대	4,183	1,225	2,958	2,765	1,418
기 소 유 예	15,302	4,979	10,323	11,116	4,186
성구매자 교육	3,384	1,224	2,160	2,107	1,277
전자장치부착	4,274	3,019	1,255	1,181	3,093
벌 금 미 납	7,791	1,961	5,830	6,132	1,659
이 수 명 령	11,518	2,395	9,123	8,411	3,107

다. 근거법률별 접수현황

| 표 5-81 |

구분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112,878	121,517	134,364	159,636	162,360	149,282	148,054	153,310	142,538	148,261
형법	소계	57,485	60,190	63,746	76,366	81,808	85,217	78,079	85,589	79,301	75,611
	선고유예	13	9	22	23	16	22	11	17	23	8
	집행유예	52,803	55,992	59,568	70,670	74,996	78,057	69,627	77,744	69,625	64,498
	가석방	4,669	4,189	4,156	5,673	6,796	7,138	8,441	7,828	9,653	11,105
소년법	소계	34,932	27,765	26,517	24,718	25,511	24,972	21,912	22,621	19,435	19,729
	단기보호관찰	16,010	12,214	12,974	11,240	11,815	11,319	9,281	9,419	7,870	8,494
	장기보호관찰	13,692	10,956	9,570	9,538	9,594	9,224	8,619	8,437	7,381	7,646
	단독명령	3,910	3,238	2,889	2,707	2,910	3,133	2,954	3,803	3,240	2,666
	임시퇴원	1,320	1,357	1,084	1,233	1,192	1,296	1,058	962	944	923
치료감호법	소계	510	531	481	690	986	1,097	1,118	885	882	690
	가출소	61	61	40	87	78	64	34	24	24	17
	가종료	449	470	441	603	434	488	308	227	372	282
	치료명령	-	-	-	-	474	528	745	620	468	379
	치료감호기간만료	-	-	-	-	-	-	31	14	18	12
성폭력처벌법	소계	716	3,144	4,389	5,533	10,957	17	11,962	12,414	12,810	14,328
	선고유예	3	1	5	11	16	12,544	4	2	1	2
	이수명령	-	-	-	-	5,074	6	6,044	6,231	6,361	7,279
	집행유예	713	3,143	4,384	5,522	5,867	6,223	5,914	6,181	6,448	7,047
가정폭력처벌법	소계	3,176	5,596	7,823	8,608	9,126	6,315	9,384	7,940	6,782	8,529
	보호처분	3,176	5,596	7,823	8,608	9,126	7,875	9,384	7,940	6,771	8,469
	집행유예	-	-	-	-	-	-	-	-	11	60
성매매처벌법	소계	760	910	1,619	2,274	2,835	7,875	879	840	561	463
	보호처분	335	239	390	1,050	1,443	1,274	243	204	133	137
	집행유예	425	671	1,229	1,224	1,392	521	636	636	428	326
기소유예	소계	5,899	7,859	11,425	14,859	13,126	753	11,082	8,378	7,849	10,323
	1급	199	106	190	103	96	2,301	106	52	49	48
	2급	5,700	7,753	4,096	3,810	3,553	148	1,835	1,123	908	847
	선도교육	-	-	7,139	10,946	9,477	2,153	9,141	7,203	6,892	9,428
성구매자교육	소계	3,058	2,658	2,847	11,763	5,817	7,213	2,457	1,430	1,468	2,160
전자장치부착법	소계	996	971	833	870	795	3,239	793	822	822	841
형사소송법(보석)	소계	-	-	-	-	-	-	-	-	444	414
벌금미납사회봉사	소계	4,059	6,718	8,554	8,530	8,282	891	7,413	9,097	7,207	5,830
청소년성보호법	소계	1,287	5,175	5,608	4,444	1,609	7,624	1,270	1,242	2,214	2,312
	선고유예	-	-	-	1	1	1,219	-	-	-	-
	이수명령	414	4,454	4,356	3,219	257	-	251	258	390	274
	집행유예	873	721	1,252	1,224	1,351	-	1,019	984	1,824	2,038
아동학대처벌법	소계	-	-	522	981	1508	1,219	1,705	2,052	2,657	3,876
	이수명령	-	-	149	20	31	1,029	103	158	0	337
	보호처분	-	-	301	839	1235	-	1,364	1,591	2,174	2,958
	집행유예	-	-	72	122	242	784	238	303	483	581
산업안전보건법	소계	-	-	-	-	-	-	-	-	1	26
마약류관리법	소계	-	-	-	-	-	-	-	-	105	1,947
스토킹처벌법	소계	-	-	-	-	-	-	-	-	-	1,182

※ 접수사건 : 전년도 이월사건을 제외한 당해연도 순수접수건

라. 기관별 보호관찰 등 대상자 접수현황

| 표 5-82 |

기관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112,878	121,517	134,364	159,636	162,360	149,282	148,054	153,310	142,538	148,261
서울	5,924	7,052	7,875	8,645	8,438	7,153	7,113	6,959	6,597	6,750
서울동부	3,167	3,191	3,626	3,964	3,718	3,397	3,579	3,732	3,526	3,697
서울남부	4,099	4,298	4,758	5,436	5,880	5,361	5,455	5,170	5,012	5,115
의정부	4,527	4,338	4,670	6,561	6,175	6,050	5,850	6,531	5,825	4,915
인천	4,414	5,315	6,092	7,633	7,895	6,856	6,295	5,975	6,093	6,064
수원	5,799	5,966	6,687	8,784	8,857	7,992	7,992	8,589	8,009	8,509
춘천	1,353	1,335	1,340	1,478	1,717	1,596	1,447	1,374	1,291	1,401
대전	4,382	4,255	4,541	4,895	5,753	5,804	5,541	6,251	5,608	5,353
청주	2,151	2,348	2,631	2,654	3,155	3,346	3,270	2,897	3,258	3,517
대구	4,164	4,056	5,975	6,351	5,843	5,204	5,637	5,700	5,488	5,695
부산	4,866	5,370	5,413	7,460	6,634	4,479	3,424	3,478	3,219	3,384
울산	2,961	4,110	3,552	3,178	4,964	4,097	4,738	5,508	4,224	4,305
창원	3,333	3,963	3,818	4,843	4,961	3,976	4,650	5,825	5,375	5,895
광주	5,270	5,159	5,577	5,355	7,899	6,872	5,608	5,982	4,692	4,871
전주	1,747	2,041	2,104	2,888	3,191	3,005	2,667	3,153	2,731	2,371
제주	1,528	1,797	1,699	2,493	3,103	2,839	2,851	2,722	2,040	2,771
서울서부	2,276	2,662	2,988	3,330	3,247	3,132	3,195	3,235	2,963	2,895
서울북부	2,439	2,294	2,898	3,152	3,014	3,328	4,076	4,019	3,570	3,457
고양	2,810	2,942	4,070	4,401	4,155	3,539	3,522	4,247	3,834	4,241
부천	2,619	2,837	2,991	3,548	4,351	4,172	4,117	3,656	3,470	3,596
성남	2,899	3,302	3,344	4,440	4,676	4,026	3,710	3,672	3,887	3,889
여주	1,277	1,109	1,172	1,422	1,588	1,321	1,255	1,414	1,412	1,428
안산	4,375	4,253	5,301	6,515	5,177	4,856	4,493	4,203	4,336	5,112
평택	1,679	1,802	2,286	3,063	2,580	2,128	2,664	2,897	2,782	3,088
안양	1,653	1,828	2,156	2,606	2,378	2,305	2,308	2,121	2,143	1,914
강릉	887	1,259	1,192	1,366	1,355	1,209	1,401	1,192	1,307	1,204
원주	1,194	1,214	1,562	1,780	1,561	1,499	1,530	1,432	1,207	1,607

기관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속초	548	548	474	630	396	497	505	560	625	476
영월	438	445	501	487	489	433	597	620	433	522
홍성	914	843	1,128	992	900	943	754	959	792	947
공주	376	421	429	547	505	478	387	466	531	433
논산	769	805	778	891	890	657	805	717	548	539
서산	914	1,191	1,205	1,079	988	926	1,082	1,443	1,449	1,408
천안	2,007	2,034	2,283	3,304	3,059	2,784	3,173	3,153	2,824	2,801
충주	1,042	904	1,048	1,182	1,130	915	886	962	744	883
제천	557	723	746	629	623	506	547	519	493	466
대구서부	2,422	2,389	3,147	3,790	3,011	3,023	3,044	2,868	3,260	3,399
안동	863	971	948	1,296	958	1031	839	773	737	875
경주	556	703	685	789	724	621	587	786	837	734
포항	1,039	1,193	1,584	2,178	2,317	1,754	1,706	2,000	1,535	1,655
구미	1,545	1,611	1,533	1,974	1,978	1,913	2,199	2,550	1,903	1,798
상주	533	510	608	612	657	470	643	579	517	501
영덕	260	209	308	388	336	298	332	521	400	399
부산동부	2,524	2,870	2,918	4,196	3,708	3,436	3,359	3,269	3,073	3,535
부산서부	-	-	-	-	-	3,580	2,883	3,160	2,470	2,739
진주	1,006	1,156	1,170	1,478	1,659	1,595	1,562	2,309	1,964	1,837
통영	1,294	1,513	1,499	2,015	2,025	1,627	1,720	1,305	1,541	1,502
밀양	418	421	482	544	464	473	470	592	503	462
거창	335	351	361	503	448	440	472	509	361	327
목포	1,560	1,603	1,755	1,932	2,366	1,772	1,311	1,294	1,868	1,537
순천	1,974	2,036	2,431	2,955	3,319	2,848	2,831	3,014	2,645	2,173
해남	654	738	783	788	866	851	692	581	711	672
군산	1,379	1,438	1,482	1,778	1,469	1,612	2,016	1,864	1,642	1,604
정읍	691	700	608	782	851	839	893	772	776	753
남원	351	320	335	348	324	325	399	427	510	333
인천서부	1,847	2,426	2,577	3,057	3,417	2,850	2,689	2,510	2,639	2,725
영동	269	349	240	251	218	243	283	294	308	304
남양주										2,878

※ 부산서부지소 : '18. 4. 9, 남양주지소 : '22. 7. 25. 개청

마. 소년·성인별 실시사건 현황

| 표 5-83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총 계				227,733	223,072	227,020	260,933	265,792
소년	계			45,364	40,587	39,291	38,546	36,338
	형법	소계		684	777	814	746	761
		선고유예		6	3	1	1	-
		집행유예	보호관찰부	606	699	742	671	669
			단독명령	60	56	54	64	74
		가석방		12	19	17	10	18
	소년법	소계		40,108	36,629	36,281	36,027	33,639
		보호처분	단기보호관찰	18,189	15,592	15,003	14,508	13,855
			장기보호관찰	16,271	15,693	15,293	14,756	14,338
			단독명령	3,685	3,557	4,403	5,272	4,003
		임시퇴원		1,963	1,787	1,582	1,491	1,443
	치료감호법	소계		5	3	3	4	1
	성폭력처벌법	소계		104	127	114	126	142
		선고유예		2	1	1	-	1
		집행유예	보호관찰부	71	88	81	76	79
			단독명령	31	38	32	50	62
	가정폭력처벌법	소계		40	61	48	62	99
		보호처분	보호관찰부	30	53	31	35	63
			단독명령	10	8	17	27	36
	성매매처벌법	소계		12	7	4	2	2
		보호처분	보호관찰부	9	6	4	2	2
			단독명령	3	1	-	-	-
		소계		1	5	3	6	3
		집행유예	보호관찰부	1	5	3	6	3
			단독명령	-	-	-	-	-
	기소유예	소계		4,173	2,750	1,821	1,294	1,384
	성구매자교육	소계		5	3	3	3	3
	벌금미납	소계		56	37	26	22	23
	청소년성보호법	소계		173	185	172	252	279
		선고유예		1	-	-	-	-
		집행유예	보호관찰부	136	136	121	148	-
			단독명령	35	47	50	100	153
		이수명령		1	2	1	4	126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아동학대처벌법	소계		3	3	1	1	-
		보호처분	보호관찰부	3	3	-	-	-
			단독명령	-	-	1	1	-
		소계		-	-	1	-	-
		집행유예	보호관찰부	-	-	-	-	-
			단독명령	-	-	1	-	-
		이수명령		-	-	-	-	-
	형사소송법(보석)	소계		-	-	-	1	2
성인	계			182,369	182,485	187,729	222,387	229,454
	형법	소계		120,652	119,625	126,227	152,800	150,134
		선고유예		31	26	23	38	24
		집행유예	보호관찰부	65,058	61,578	62,042	65,154	60,049
			단독명령	46,323	47,129	54,007	76,082	76,028
		가석방		9,240	10,892	10,155	11,526	14,033
	치료감호법	소계		2,396	2,726	2,575	2,555	2,213
		가출소		170	137	90	64	56
		가종료		1,221	1,059	840	934	893
		치료명령		988	1,486	1,596	1,496	1,212
		치료감호기간만료		17	44	49	61	52
	성폭력처벌법	소계		16,245	16,011	16,763	20,126	22,648
		선고유예		18	6	4	2	1
		집행유예	보호관찰부	3,690	3,534	3,547	3,761	4,007
			단독명령	4,943	5,108	5,489	7,974	9,187
		이수명령		7,594	7,363	7,723	8,389	9,453
	가정폭력처벌법	소계		10,425	12,064	11,151	10,091	11,366
		보호처분	보호관찰부	6,820	7,998	7,083	5,859	6,835
			단독명령	3,605	4,066	4,068	4,232	4,531
		소계		-	-	-	11	70
		집행유예	보호관찰부	-	-	-	11	70
			단독명령	-	-	-	-	-
		이수명령		-	-	-	8	110
	성매매처벌법	소계		861	399	271	241	212
		보호처분	보호관찰부	691	302	133	138	82
			단독명령	170	97	138	103	130
		소계		1,723	1,358	1,084	1,032	841
		집행유예	보호관찰부	1,318	999	703	597	497
			단독명령	405	359	381	435	344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기소유예	소 계		9,515	11,016	9,330	10,932	13,918
성구매자 교육	소 계		3,942	3,135	1,885	2,371	3,384
전자장치 부착법	소 계		3,218	3,183	3,321	3,467	3,635
형사소송법 (보석)	소 계		-	-	-	537	637
벌금미납	소 계		9,006	8,672	10,535	11,069	7,768
청소년 성보호법	소 계		2,076	1,841	1,728	3,037	3,706
	선고유예		2	-	-	-	-
	집행유예	보호관찰부	800	728	617	704	869
		단독명령	939	797	812	1,830	2,439
	이수명령		335	316	299	503	398
아동 학대 처벌법	소 계		1,869	1,940	2,221	2,996	4,183
	보호처분	보호관찰부	1,425	1,373	1,468	1,937	2,617
		단독명령	444	567	753	1,059	1,566
	소 계		441	388	436	712	955
	집행유예	보호관찰부	206	206	215	349	487
		단독명령	166	182	221	363	468
	이수명령		69	127	202	296	429
산업안전 보건법	소 계		-	-	-	1	27
마약류관리법	소 계		-	-	-	105	2,036
스토킹 처벌법	소 계						1,182

바.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실시사건 현황

| 표 5-84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총 계				227,733	223,072	227,020	260,933	265,792
보호관찰	계			104,850	101,089	95,861	93,654	94,375
	형법	소계		56,842	55,325	53,472	53,340	52,415
		선고유예		37	29	24	39	24
		집행유예		47,553	44,385	43,276	41,765	38,340
		가석방		9,252	10,911	10,172	11,536	14,051
	소년법	소계		27,600	25,735	24,098	22,505	22,114
		보호처분	단기보호관찰	12,842	11,386	10,658	9,960	9,718
			장기보호관찰	12,795	12,562	11,858	11,054	10,953
		임시퇴원		1,963	1,787	1,582	1,491	1,443
	치료감호법	소계		2,336	2,637	2,492	2,490	2,173
		가출소		170	137	90	64	56
		가종료		1,221	1,059	840	934	893
		치료명령		928	1,397	1,513	1,431	1,172
		치료감호기간만료		17	44	49	61	52
	성폭력처벌법	소계		2,430	2,309	2,311	2,254	2,263
		선고유예		20	7	5	2	2
		집행유예		2,410	2,302	2,306	2,252	2,261
	가정폭력처벌법	소계		5,155	6,210	5,673	4,663	5,594
		보호처분		5,155	6,210	5,673	4,652	5,524
		집행유예		-	-	-	11	70
	성매매처벌법	소계		1,615	1,056	634	524	403
		보호처분		496	222	102	105	64
		집행유예		1,119	834	532	419	339
	기소유예	소계		3,740	2,796	2,023	1,502	1,357
	전자장치부착법	소계		3,220	3,183	3,321	3,467	3,635
	형사소송법(보석)	소계		-	-	-	538	639
	청소년성보호법	소계		596	551	481	498	571
		선고유예		1	-	-	-	-
		집행유예		595	551	481	498	571
	아동학대처벌법	소계		1,316	1,287	1,356	1,835	2,497
		보호처분		1,180	1,140	1,212	1,623	2,221
		집행유예		136	147	144	212	276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마약류관리법	소 계	-	-	-	38	597
	스 토 킹	**소 계**					117
사회봉사명령	계		51,224	49,788	51,448	65,693	62,115
	형 법	소 계	40,088	39,910	42,031	54,778	51,798
		보 호 관 찰 부	11,402	10,912	11,517	14,079	13,158
		단 독 명 령	28,686	28,998	30,514	40,699	38,640
	소 년 법	소 계	6,714	5,905	5,655	6,301	5,137
		단 기 보 호 관 찰	2,643	2,095	1,817	1,914	1,565
		장 기 보 호 관 찰	2,113	1,991	1,924	2,117	1,898
		단 독 명 령	1,958	1,819	1,914	2,270	1,674
	치 료 감 호 법		65	92	86	69	41
	성 폭 력 처 벌 법	소 계	1,572	1,592	1,761	2,442	2,795
		보 호 관 찰 부	374	389	411	468	541
		단 독 명 령	1,198	1,203	1,350	1,974	2,254
	가 정 폭 력 처 벌 법	소 계	610	616	612	626	571
		보 호 관 찰 부	273	294	245	222	177
		단 독 명 령	337	322	367	404	394
	성 매 매 처 벌 법	소 계	528	412	424	492	414
		보 호 관 찰 부	205	149	138	164	149
		단 독 명 령	323	263	286	328	265
	기 소 유 예		1,181	838	448	225	141
	청 소 년 성 보 호 법	소 계	307	297	290	532	732
		보 호 관 찰 부	105	100	77	98	126
		단 독 명 령	202	197	213	434	606
	아 동 학 대 처 벌 법	소 계	159	126	141	217	254
		보 호 관 찰 부	56	32	36	59	60
		단 독 명 령	103	94	105	158	194
	마약류관리법	소 계	-	-	-	11	213
	스 토 킹	소 계					19
수강명령	계		41,884	42,408	50,357	68,422	72,805
	형 법	소 계	24,406	25,167	31,538	45,428	46,685
		보 호 관 찰 부	6,709	6,980	7,991	9,981	9,223
		단 독 명 령	17,697	18,187	23,547	35,447	37,462
	소 년 법	소 계	5,794	4,989	6,528	7,221	6,388
		단 기 보 호 관 찰	2,704	2,111	2,528	2,634	2,572
		장 기 보 호 관 찰	1,363	1,140	1,511	1,585	1,487
		단 독 명 령	1,727	1,738	2,489	3,002	2,329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성폭력처벌법	소 계	4,753	4,874	5,082	7,167	8,278
		보호관찰부	977	931	911	1,117	1,284
		단독명령	3,776	3,943	4,171	6,050	6,994
	가정폭력처벌법	소 계	4,700	5,299	4,914	4,875	5,370
		보호관찰부	1,422	1,547	1,196	1,020	1,197
		단독명령	3,278	3,752	3,718	3,855	4,173
	성매매처벌법	소 계	454	301	304	265	241
		보호관찰부	199	107	71	55	32
		단독명령	255	194	233	210	209
	기소유예		-	-	-	-	-
	청소년성보호법	소 계	1,008	860	829	1,752	2,284
		보호관찰부	236	213	180	256	325
		단독명령	772	647	649	1,496	1,959
	아동학대처벌법	소 계	769	918	1,162	1,657	2,387
		보호관찰부	262	263	291	392	547
		단독명령	507	655	871	1,265	1,840
	산업안전보건법	소 계	-	-	-	1	23
	마약류관리법	소 계	-	-	-	56	992
	스토킹	소 계					157
성구매자교육			3,947	3,138	1,888	2,374	3,384
벌금미납사회봉사			9,062	8,709	10,561	11,091	7,791
이수명령			7,999	7,808	8,225	9,200	11,518
기소유예			8,767	10,132	8,680	10,499	13,804

사. 성적양호자에 대한 조치 현황

| 표 5-85 |

구분 / 연도	총 계	임시해제	부정기형종료	가출소 집행면제	가종료 집행종료	가정보호 처분종료
2018	2,184	2,165	-	-	3	16
2019	877	854	-	-	2	21
2020	492	454	-	-	3	35
2021	527	497	-	-	3	27
2022	603	515	-	-	4	84

아. 성적불량자에 대한 조치 현황

| 표 5-86 |

구분 / 연도	구인	긴급 구인	유치	제재조치							
				경고	집행 유예 취소	보호 처분 변경	임시 퇴원 취소	가석방 취 소	기간 연장	보호 관찰 정지	가정 보호 등 취소
2018	1,417	14	1,350	35,479	749	1,217	128	14	35	76	219
2019	1,231	9	1,125	33,849	694	982	122	20	36	65	201
2020	961	9	824	26,412	506	965	85	16	25	56	184
2021	807	7	705	27,472	541	909	77	20	34	36	123
2022	752	8	668	28,427	510	885	64	64	260	39	147

자. 구인·유치대상자의 단계별 처리 현황

| 표 5-87 |

구분 / 연도	긴급구인	구인장 신청				구인장 집행	구인장 반환	구인후 석방	유치허가신청			유치	취소·변경신청				
		검찰		법원					검찰	법원			검찰	법원		심사 위원회	
		기각	청구	기각	인용				기각	기각	인용		기각	기각	인용	기각	인용
2018	14	30	2,265	23	2,242	1,417	829	51	16	24	1,302	1,343	6	241	942	2	132
2019	9	20	1,921	24	1,897	1,230	7,622	77	6	15	1,080	1,125	3	236	718	1	127
2020	9	37	1,526	12	1,514	961	564	113	8	17	804	824	4	129	579	-	88
2021	7	90	1,296	12	1,284	805	572	79	14	9	708	705	3	129	465	-	80
2022	8	53	1,246	8	1,238	737	494	65	12	7	658	656	4	126	401	1	80

차. 사회봉사명령 접수 및 집행현황

| 표 5-88 |

구분 / 연도	개시	종료계	집행		이송	집행불능
			완전집행	부분집행		
2018	51,224	41,853	38,447	609	2,023	774
2019	49,788	40,043	36,918	607	1,930	588
2020	51,448	21,609	17,821	629	2,484	675
2021	65,693	36,995	31,831	830	3,283	1,051
2022	62,115	44,152	38,720	918	3,358	1,156

※ 집행불능 : 형집행, 사망, 집행유예취소 등의 사유로 명령받은 시간 중 단 1시간도 집행하지 못하고 종료한 사건

카. 사회봉사명령 근거법률별 실시 및 접수사건 추이

| 표 5-89 |

구분 / 연도	총 계		형 법		소년법		치료감호법		성폭력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2018	51,224	42,249	40,088	32,911	6,714	5,650	65	53	1,572	1,326	610	530
2019	49,788	40,279	39,910	32,214	5,905	4,805	92	74	1,592	1,262	616	517
2020	51,448	41,946	42,031	34,175	5,655	4,746	86	60	1,761	1,420	612	521
2021	65,693	35,954	54,778	29,349	6,301	3,774	69	16	2,442	1,406	626	453
2022	62,115	33,513	51,798	26,924	5,137	3,496	41	14	2,795	1,498	571	419

구분 / 연도	성매매처벌법		기소유예		청소년성보호법		아동학대처벌법		마약류관리법		스토킹처벌법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2018	528	404	1,181	973	307	261	159	141	-	-	-	-
2019	412	344	838	733	297	226	126	104	-	-	-	-
2020	424	341	448	339	290	226	141	118	-	-	-	-
2021	492	245	225	187	532	360	217	153	11	11	-	-
2022	414	199	141	106	732	435	254	198	213	205	19	19

※ 실시사건 = 전년이월사건 + 당해연도접수사건

타. 사회봉사명령 부과 형태 추이

| 표 5-90 |

구분 / 연도	총 계			소 년			성 인		
	계	보 호 관찰부	단 독 명령부	소 계	보 호 관찰부	단 독 명령부	소 계	보 호 관찰부	단 독 명령부
2018	51,224	17,405	33,819	7,845	5,111	2,734	43,379	12,294	31,085
2019	49,788	16,133	33,655	6,787	4,359	2,428	43,001	11,774	31,227
2020	51,448	16,324	35,124	6,292	4,004	2,288	45,156	12,320	32,836
2021	65,693	19,210	46,483	6,763	4,220	2,543	58,930	14,990	43,940
2022	62,115	17,730	44,385	5,570	3,675	1,895	56,545	14,055	42,490

※ 실시사건 기준(선도위탁도 단독명령이 가능해 2013년부터 포함하여 산정)

파. 사회봉사명령 집행분야의 연도별 추이

| 표 5-91 |

구분 / 연도	총 계	직접 집행	협력집행(분야별 성격)					
			소계	자연보호	복지분야	공공시설	대민지원	기타
2018	39,007	6,521	32,486	48	30,325	1,089	770	254
2019	37,453	5,775	31,678	53	29,718	899	725	283
2020	18,450	6,501	11,949	7	10,057	991	678	216
2021	32,661	10,690	21,971	135	10,031	2,906	7,444	1,455
2022	39,638	10,453	29,185	19	14,095	3,566	9,996	1,509

하. 수강명령 접수 및 집행현황

| 표 5-92 |

구분 / 연도	개시	종료계	집 행		이송	집행불능
			완전집행	부분집행		
2018	41,884	34,046	31,353	293	1,439	961
2019	42,408	33,575	31,199	273	1,262	841
2020	50,357	22,359	19,045	328	2,012	974
2021	68,422	37,351	33,012	326	2,578	1,435
2022	72,805	51,927	46,649	318	3,231	1,729

※ 집행불능 : 형집행, 사망, 집행유예취소 등의 사유로 명령받은 시간 중 단 1시간도 집행하지 못하고 종료한 사건

거. 수강명령 근거법률별 실시 및 접수사건 추이

| 표 5-93 |

구분 / 연도	총 계		형 법		소년법		성폭력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2018	41,884	33,309	24,406	19,607	5,794	4,510	4,753	3,703	4,700	3,801
2019	42,408	34,523	25,167	20,582	4,989	3,975	4,874	3,850	5,299	4,512
2020	50,357	41,672	31,538	26,643	6,528	5,305	5,082	3,978	4,914	3,922
2021	68,422	40,453	45,428	25,836	7,221	4,412	7,167	4,311	4,875	3,152
2022	72,805	41,857	46,685	24,570	6,388	4,334	8,278	4,699	5,370	3,871

구분 / 연도	성매매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아동학대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마약류관리법		스토킹처벌법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2018	454	331	1,008	737	769	620	-	-	-	-	-	-
2019	301	214	860	624	918	766	-	-	-	-	-	-
2020	304	237	829	621	1,162	966	-	-	-	-	-	-
2021	265	125	1,752	1,283	1,657	1,277	1	1	56	56	56	56
2022	241	128	2,284	1,374	2,387	1,761	23	22	992	941	157	157

※ 실시사건 = 전년이월사건 + 당해연도접수사건

너. 수강명령 부과 형태 추이

| 표 5-94 |

구분 / 연도	총 계			소 년			성 인		
	계	보 호 관찰부	단 독 명령부	소계	보 호 관찰부	단 독 명령부	소계	보 호 관찰부	단 독 명령부
2018	41,884	13,872	28,012	5,952	4,151	1,801	35,932	9,721	26,211
2019	42,408	13,292	29,116	5,182	3,355	1,827	37,226	9,937	27,289
2020	50,357	14,679	35,678	6,724	4,143	2,581	43,633	10,536	33,097
2021	68,422	17,097	51,325	7,488	4,333	3,155	60,934	12,764	48,170
2022	72,805	16,667	56,138	6,705	4,185	2,520	66,100	12,482	53,618

※ 실시사건 기준(선도위탁도 단독명령이 가능해 2013년부터 포함하여 산정)

더. 수강명령 집행분야의 연도별 추이

| 표 5-95 |

구분 / 연도	총 계	직접 집행	협 력 집 행						
			소계	약물	준법운전	심리치료	가정폭력	성폭력	기타
2018	31,646	30,800	846	6	64	53	140	34	549
2019	31,472	29,977	1,495	2	81	104	61	70	1,177
2020	19,373	18,811	562	1	3	56	109	57	336
2021	33,338	31,483	1,855	4	1,035	50	125	201	440
2022	46,967	41,232	5,735	17	4,258	20	175	790	475

러. 환경조사 및 환경개선

| 표 5-96 |

구분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환경조사	소 계	1,701	1,594	1,561	1,555	1,921	1,502	1,442	1,365	1,185	1,117
	소 년 원	1,555	1,395	1,432	1,419	1,693	1,373	1,343	1,297	1,084	1,032
	교 도 소	43	106	59	60	167	104	93	62	100	84
	법무병원	103	93	70	76	60	19	6	6	1	1
환 경 개 선		-	-	-	-	1	6	1	4	9	4

머. 조사

| 표 5-97 |

구분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판 결 전 조 사	2,159	2,257	2,166	1,901	2,003	2,053	1,797	1,596	1,442	1,075
결 정 전 조 사	12,141	12,399	17,678	16,931	16,606	19,662	19,007	17,813	18,096	18,574
검사결정전조사	5,084	5,855	3,805	4,379	3,626	1,678	1,092	909	932	527
청 구 전 조 사	2,497	2,511	2,352	2,619	1,783	1,600	1,468	1,456	1,311	1,472
소급청구전조사	247	192	119	79	86	39	52	37	33	18
사 실 조 회	-	-	-	-	-	-	-	-	176	198

버. 지명수배 의뢰 및 해제 현황

| 표 5-98 |

구분 / 연도	계				소 년				성 인			
	수배의뢰	수배해제			수배의뢰	수배해제			수배의뢰	수배해제		
		계	검거	기타		계	검거	기타		계	검거	기타
2018	2,887	2,089	1,430	659	1,267	1,018	828	190	1,620	1,071	602	469
2019	2,457	1,812	1,233	579	1,035	822	675	147	1,422	990	558	432
2020	1,968	1,369	959	410	860	666	550	116	1,108	703	409	294
2021	1,743	1,273	829	444	707	539	442	97	1,036	734	387	347
2022	1,606	1,155	748	407	618	485	398	87	988	670	350	320

※ 수배해제 사유 중 기타는 기간만료, 사망 등의 사유가 포함됨

서. 보호관찰 사안조사

| 표 5-99 |

구분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건 수	6,658	6,297	6,252	7,895	8,821	9,434	11,571	11,973	13,077	13,872

어. 보호관찰 불요결정

| 표 5-100 |

구분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접 수	6,150	5,503	5,716	7,221	8,248	8,575	8,268	8,271	9,395	10,292
필 요	4,174	3,734	3,816	5,127	6,205	6,394	7,962	7,169	8,783	9,762
불 요	1,976	1,769	1,900	2,094	2,043	2,181	593	743	609	530
허 가	1,976	1,769	1,900	2,094	2,043	2,181	593	743	609	530

3. 갱생 보호

가. 갱생보호 실적

| 표 5-101 |

구분	총계	숙식 제공	직업 훈련	취업 지원	창업 지원	주거 지원	긴급 지원	사후 관리	사전 상담	사회성 향상	심리 상담	기타 지원
인원	135,307	1,825	4,155	13,206	8	173	9,641	25,737	32,877	7,077	15,630	24,978

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사업실적

| 표 5-102 |

구분	계	숙식 제공	직업 훈련	취업 지원	창업 지원	주거 지원	긴급 지원	사후 관리	사전 상담	사회성 향상	심리 상담	기타 지원
인원	128,072	1,419	3,995	13,103	2	173	9,402	25,310	31,847	4,421	14,923	23,477

다. 민간갱생보호법인 사업실적

| 표 5-103 |

구분	계	숙식 제공	직업 훈련	취업 지원	창업 지원	주거 지원	긴급 지원	사후 관리	사전 상담	사회성 향상	심리 상담	기타 지원
인원	7,235	406	160	103	6	0	239	427	1,030	2,656	707	1,501

4. 소년보호 및 분류심사

가. 보호소년 수용

| 표 5-104 | 입·출원 인원

입·출원		성별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입원	계	남	3,863	3,223	2,884	2,763	2,974	2,770	2,392	2,036	1,777	1,765
		여	572	484	504	476	510	539	565	504	451	449
	전년도 이월	남	1,197	1,175	945	928	858	924	695	693	707	533
		여	201	169	155	215	176	186	185	210	160	161
	송치	남	2,548	1,933	1,858	1,754	2,022	1,729	1,607	1,279	1,017	1,191
		여	341	295	321	241	308	333	349	272	264	263
	임시퇴원 취소	남	118	115	81	81	94	117	90	64	53	42
		여	30	20	28	20	26	20	31	22	27	25
	이탈학생 재수용	남	-	-	-	-	-	-	-	-	-	-
		여	-	-	-	-	-	-	-	-	-	-
출원	계	남	2,685	2,275	1,961	1,900	2,029	2,064	1,700	1,330	1,244	1,272
		여	401	333	281	316	320	352	358	345	280	316
	퇴원	남	1,676	1,254	1,119	1,045	1,135	1,049	877	555	462	540
		여	243	188	164	147	194	210	183	134	99	110
	임시퇴원	남	941	952	786	788	832	946	747	687	692	632
		여	145	137	103	158	114	123	137	170	143	178
	처분변경 처분취소	남	48	46	43	41	36	50	58	56	64	47
		여	12	8	13	10	8	18	35	37	37	28
	사망	남	-	-	-	-	-	-	-	1	-	-
		여	1	-	-	-	-	-	-	-	-	-
	이탈	남	-	-	-	-	-	-	-	-	-	-
		여	-	-	-	-	-	-	-	-	-	-
	기타	남	20	23	13	26	26	19	18	31	26	53
		여	-	-	1	1	4	1	3	4	1	0

주) 1. 송치 : 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인원)
2. 이탈 : 이탈 후 당해연도에 재수용 되지 않은 인원
3. 기타 : 유죄판결 등
4. 입원인원 중 "송치+임시퇴원 취소=신수용인원"

| 표 5-105 | 1일 평균 수용인원

기관 \ 연도 / 성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남	1,207	1,056	921	932	981	869	738	738	627	552
	여	173	181	192	199	185	209	208	189	155	148
서 울	남	295	270	236	234	246	204	172	206	170	135
	여	-	-	-	-	-	-	-	-	-	-
부 산	남	175	132	118	138	124	111	86	86	14	9
	여	1	1	1	1	1	-	-	-	-	-
대 구	남	128	137	130	141	137	114	94	86	89	87
	여	-	-	-	-	-	-	-	-	-	-
광 주	남	161	129	94	104	134	107	95	104	99	82
	여	-	1	-	-	-	-	-	-	-	-
전 주	남	128	123	108	92	81	91	102	103	97	97
	여	-	-	-	-	-	-	-	-	-	-
대 전	남	139	112	111	92	109	106	64	48	47	43
	여	9	10	5	6	12	15	20	21	19	18
청 주	남	-	-	-	-	-	-	-	-	-	-
	여	54	46	45	45	45	85	85	66	58	59
안 양	남	-	-	-	-	-	-	-	-	-	-
	여	109	123	141	147	127	109	103	103	78	71
춘 천	남	151	117	93	89	107	103	92	79	86	74
	여	-	-	-	-	-	-	-	-	-	-
제 주	남	30	36	31	42	43	33	33	25	25	25
	여	-	-	-	-	-	-	-	-	-	-
대 전	남	'07. 7. 23. 기관폐지									
	여										
창 원	남										
	여										
안 산	남										
	여										
대 덕	남										
	여										

주) 2011. 5. 4. '대덕소년원'이 '대전소년원'으로 기관명칭 변경

| 표 5-106 | 기관별 신수용 인원

기관 \ 연도 / 성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남	2,666	2,048	1,939	1,835	2,116	1,846	1,697	1,343	1,070	1,232
	여	371	315	349	261	334	353	380	294	291	288
서 울	남	635	489	474	442	524	482	474	453	297	281
	여	-	-	-	-	-	-	-	-	-	-
부 산	남	351	267	281	213	265	208	198	158	79	95
	여	44	44	44	54	48	38	43	51	39	41
대 구	남	88	110	143	176	162	78	73	75	142	137
	여	21	15	25	16	13	5	6	1	-	1
광 주	남	146	154	122	90	137	139	147	131	114	137
	여	40	28	36	9	28	20	39	29	22	29
전 주	남	69	16	5	-	5	3	385	350	284	401
	여	3	-	-	-	-	-	-	-	-	-
대 전	남	1,242	921	828	849	943	876	362	152	118	104
	여	9	4	3	15	21	8	30	11	26	13
청 주	남	-	-	-	-	-	-	-	-	-	-
	여	137	106	110	71	102	31	105	82	77	103
안 양	남	-	-	-	-	-	-	-	-	-	-
	여	113	108	122	87	114	233	150	116	123	85
춘 천	남	90	53	66	38	39	30	41	4	12	44
	여	-	6	1	3	1	9	3	-	1	10
제 주	남	45	38	20	27	41	30	17	20	24	33
	여	4	4	8	6	7	9	4	4	3	6
대 전	남										
	여										
창 원	남										
	여										
안 산	남										
	여										
대 덕	남										
	여										

'07. 7. 23. 기관폐지

주) 2011. 5. 4. '대덕소년원'이 '대전소년원'으로 기관명칭 변경

| 표 5-107 | 수용기간별 인원

기간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3,005	2,531	2,171	2,138	2,275	2,328	1,943	1,546	1,396	1,494
1월 미만	1,348	969	883	773	902	830	16	11	9	32
3월 미만	96	80	62	62	47	64	705	232	97	126
6월 미만	894	769	670	676	777	773	535	652	642	801
6월 이상	149	108	91	126	115	131	240	207	189	169
7월 이상	20	19	15	13	8	12	5	4	10	20
8월 이상	15	19	28	13	20	8	11	7	10	9
9월 이상	26	29	16	14	16	25	18	11	11	7
10월 이상	11	13	16	11	12	18	9	10	9	17
11월 이상	11	20	15	12	8	20	17	18	17	13
12월 이상	25	30	30	47	19	49	64	70	48	54
13월 이상	81	77	43	71	46	85	94	81	60	50
14월 이상	114	91	86	83	90	99	78	75	108	70
15월 이상	82	132	84	75	71	87	51	73	60	48
16월 이상	72	80	58	73	59	53	32	33	56	32
17월 이상	30	37	30	37	49	37	21	18	32	13
18월 이상	21	35	26	21	23	24	15	12	11	7
19월 이상	7	19	11	11	10	7	13	7	9	14
20월 이상	3	4	7	20	3	6	4	25	18	12
평균수용기간(월)	5.00	5.91	5.56	6.03	5.52	5.91	6.51	7.80	8.42	5.51

※ 대상 : 퇴원 및 임시퇴원

나. 보호소년 분류처우

| 표 5-108 | 처우과정 분류인원

구분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3,037	2,363	2,288	2,096	2,450	2,199	2,077	1,637	1,361	1,520
7호	소계	94	108	109	83	132	141	116	139	123	114
	기타	94	108	109	83	132	141	116	139	123	114
8호	소계	1,296	925	802	762	880	801	707	405	326	464
	기타	1,296	925	802	762	880	801	707	405	326	464
9호	소계	960	768	766	713	857	741	716	622	584	619
	교과	111	125	168	161	95	87	97	127	123	113
	직업	77	70	102	72	243	219	236	180	106	99
	특성화	188	134	178	136	132	74	78	64	133	135
	기타	584	439	318	344	387	361	305	251	222	272
10호	소계	687	562	611	538	581	516	538	471	328	323
	교과	196	118	53	31	45	34	64	69	56	62
	직업	279	294	408	332	374	314	349	288	147	150
	특성화	36	27	13	12	8	1	-	-	-	-
	기타	176	123	137	163	154	167	125	114	125	111

※ 대상 : 신수용인원

다. 보호소년 교육

| 표 5-109 | 교과교육 수료인원

구분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228	139	135	154	187	208	253	300	329	367
초등학교	-	-	-	-	-	-	-	-	-	-
중 학 교	101	49	32	25	26	18	95	90	79	91
고등학교	127	90	103	129	161	190	158	210	250	276

| 표 5-110 | 검정고시 합격인원

구분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619	670	600	676	617	447	420	409	303	253
초졸	4	3	1	-	-	-	-	-	-	-
중졸	246	224	190	152	141	76	65	45	39	22
고졸	369	443	409	524	476	371	355	364	264	231

| 표 5-111 | 직업훈련 수료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직 업 훈 련	472	497	500	640	552	633	532	458	354	245

| 표 5-112 | 기능자격 취득 인원

구분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2,687	3,301	3,106	3,681	4,710	4,762	4,188	3,025	2,741	2,937
일 반 기 능	774	947	992	1,238	1,524	1,634	1,478	838	723	830
컴퓨터관련	1,292	1,590	1,288	1,415	1,524	1,341	1,181	793	608	821
외국어관련	-	-	-	-	-		-	-	-	-
기 타	621	764	826	1,028	1,662	1,787	1,529	1,394	1,410	1,286

| 표 5-113 | 학생 사회봉사활동 현황

구분 / 연도	이웃사랑 실천 봉사활동					정보화교육 봉사활동		
	소 계	PC등 수리	복지시설 방문	농촌 일손돕기	지역행사 지원 등	소 계	지역 주민	장애인
계	8,393		2,586	142	5,665	2	-	2
2013	1,220	-	511	16	693	-	-	-
2014	1,477	-	480	18	979	-	-	-
2015	1,035	-	356	56	623	-	-	-
2016	1,399	-	345	9	1,045	-	-	-
2017	1,050	-	294	18	738	-	-	-
2018	1,011	-	348	6	657	-	-	-
2019	1,011	-	242	5	764	-	-	-
2020	158	-	10	-	148	-	-	-
2021	-	-	-	-	-	-	-	-
2022	32	-	-	14	18	-	-	-

| 표 5-114 | 취업 현황

연 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취 업 인 원	273	327	234	423	417	352	303	187	208	134

| 표 5-115 | 상급학교 진학 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115	134	154	159	167	165	104	130	148	121
대 학 교	45	71	91	93	88	86	55	64	71	68
고등학교	70	63	63	66	79	79	49	66	77	53

라. 위탁소년 수용·분류심사

| 표 5-116 | 입·출원 인원

구분		성별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입원	계	남	5,888	5,230	5,508	4,778	4,931	4,745	4,055	3,534	3,028	3,315
		여	1,228	1,095	1,104	1,051	1,372	1,398	1,305	1,122	1,069	1,097
	이월인원	남	336	341	364	348	333	338	307	276	176	173
		여	69	75	68	73	61	102	98	83	45	70
	신수용인원	남	5,552	4,889	5,144	4,430	4,598	4,407	3,748	3,258	2,852	3,142
		여	1,159	1,020	1,036	978	1,311	1,296	1,207	1,039	1,024	1,027
	이탈자재수용	남	-	-	-	-	-	-	-	-	-	-
		여	-	-	-	-	-	-	-	-	-	-
출원	계	남	5,547	4,866	5,159	4,446	4,593	4,439	3,778	3,358	2,855	3,051
		여	1,153	1,027	1,030	992	1,270	1,300	1,223	1,077	999	1,019
	보호자위탁	남	8	10	29	16	14	19	11	9	3	8
		여	9	4	8	-	6	10	5	10	3	8
	보호시설위탁	남	492	429	474	430	456	438	454	481	467	417
		여	197	181	163	201	241	281	249	262	259	247
	소년원송치	남	2,090	1,684	1,709	1,507	1,689	1,455	1,227	1,128	806	869
		여	301	270	319	243	288	305	285	229	232	196
	보호관찰부보호자위탁	남	2,603	2,318	2,472	2,121	2,138	2,139	1,789	1,408	1,303	1,530
		여	555	494	418	461	630	591	589	462	417	484
	위탁변경	남	112	114	112	92	72	65	38	101	156	102
		여	26	25	21	18	17	14	12	43	53	36
	심리불개시	남	-	-	-	-	-	-	-	2	1	-
		여	-	-	-	-	-	-	-	1	-	-
	불처분	남	16	10	9	8	5	8	11	3	12	11
		여	2	2	2	2	1	-	2	2	1	2
	이탈	남	-	-	-	-	-	-	-	-	-	-
		여	-	-	-	-	-	-	-	-	-	-
	기타	남	226	301	354	272	219	315	248	226	107	114
		여	63	51	99	67	87	99	81	68	34	54
연말현재인원		남	341	364	348	333	338	307	276	176	173	264
		여	75	68	73	61	101	98	83	45	70	78

| 표 5-117 | 1일 평균 수용인원

기관	성별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남	391	391	364	327	348	334	301	254	209	248
	여	80	80	72	71	95	97	95	79	75	81
부 산	남	74	73	78	70	70	66	63	45	44	57
	여	11	11	16	17	18	16	19	17	17	20
대 구	남	28	28	28	32	30	25	25	16	15	18
	여	7	7	5	6	6	6	6	5	6	6
광 주	남	41	41	37	35	43	36	27	25	20	19
	여	8	8	8	6	10	9	6	4	5	5
전 주	남	7	7	-	-	-	-	-	-	-	-
	여	2	2	-	-	-	-	-	-	-	-
대 전	남	24	24	26	35	28	33	28	28	18	24
	여	5	5	5	7	11	11	9	7	6	8
춘 천	남	11	12	9	9	15	11	12	8	8	8
	여	2	2	1	1	2	2	4	3	3	3
제 주	남	3	3	3	2	2	3	4	3	4	3
	여	1	1	1	1	1	-	1	1	1	0
서울심	남	203	203	183	144	160	160	141	129	100	119
	여	44	44	36	34	47	53	51	42	37	39

※ 2011. 5. 4. '대덕소년원'이 '대전소년원'으로 기관명칭 변경

※ 2014. 1. 9. 전주소년원 위탁(유치) 업무 광주소년원 이전

| 표 5-118 | 기관별 위탁 인원

기관 \ 연도 / 성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남	5,552	4,889	5,142	4,430	4,598	4,407	3,748	3,258	2,852	3,142
	여	1,159	1,020	1,036	979	1,311	1,296	1,207	1,039	1,024	1,027
부 산	남	1,074	1,059	1,055	893	901	771	670	567	562	624
	여	167	195	213	211	249	186	205	218	216	228
대 구	남	336	367	368	395	344	297	278	198	195	235
	여	89	71	68	73	75	71	66	59	72	81
광 주	남	495	403	463	413	513	452	348	322	237	244
	여	105	97	110	73	110	120	73	55	60	53
전 주	남	111	1	–	–	–	–	–	–	–	–
	여	28	1	–	–	–	–	–	–	–	–
대 전	남	355	305	387	450	363	422	356	328	232	314
	여	75	57	81	102	150	140	107	93	80	102
춘 천	남	161	176	139	144	215	182	169	88	94	92
	여	33	31	18	19	34	31	51	37	40	32
제 주	남	38	44	44	27	26	36	40	48	49	37
	여	14	21	16	8	11	7	16	12	10	7
서울심	남	2,982	2,534	2,686	2,108	2,236	2,247	1,887	1,707	1,483	1,596
	여	648	547	530	493	682	741	689	565	546	524

※ 2011. 5. 4. '대덕소년원'이 '대전소년원'으로 기관명칭 변경
※ 2014. 1. 9. 전주소년원 위탁(유치) 업무 광주소년원 이전

| 표 5-119 | 위탁기간별 인원

기간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총출원 인 원	6,700	5,893	6,187	5,438	5,863	5,739	5,000	4,435	3,854	4,070
10일 미만	124	154	166	106	124	144	70	67	151	155
10 ~ 20일	949	754	950	679	562	616	371	393	444	306
21 ~ 30일	4,392	3,874	3,850	3,326	3,851	3,573	3,134	2,862	2,413	2,347
31 ~ 40일	1,026	877	1,014	1,018	1,032	1,001	907	812	622	810
41 ~ 50일	145	191	160	250	238	291	400	242	199	370
51 ~ 60일	64	43	47	58	56	114	118	59	25	82

※ ( )는 위탁변경, 불처분, 심리불개시 등 인원

| 표 5-120 | 비행원인진단 실시인원

구분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분 류 심 사	6,357	5,543	5,804	5,116	5,614	5,385	4,755	4,266	3,620	3,661
상 담 조 사	4,382	4,261	4,119	3,993	4,179	3,224	2,421	2,589	2,968	3,512
검사결정전조사	-	-	-	25	-	-	-	-	-	-

| 표 5-121 | 비행예방프로그램 실시인원

구분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315,184	336,404	119,844	371,625	408,850	315,184	336,404	137,023	194,314	158,156
대안교육	소 계	23,013	23,630	36,638	49,317	54,019	50,635	48,698	17,179	19,820	22,269
	일반학생	19,739	18,359	31,298	43,305	48,410	45,180	41,557	13,430	15,854	17,323
	기소유예	2,767	4,993	5,123	5,757	5,416	4,365	4,608	2,975	2,504	3,034
	보호처분	507	278	217	255	193	1,090	2,533	774	1,462	1,594
청소년심리검사		9,377	10,020	11,046	12,473	12,933	10,868	12,322	3,871	4,488	5,835
보 호 자 교 육		8,246	9,192	8,964	9,465	13,314	12,024	10,373	4,044	4,566	5,871
법 교 육		114,298	153,956	211,331	300,370	328,584	241,657	265,011	94,750	145,620	124,181

※ 보호자교육 :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 소년보호기관 통합 실적임

| 표 5-122 | 법원 보호처분결정별 인원

판정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6,700	5,893	6,189	5,438	5,863	5,739	5,000	4,435	3,854	4,070
1호	17	14	37	16	20	29	16	19	6	16
2호	59	31	42	46	47	80	73	42	52	28
3호	65	69	55	33	29	88	56	41	36	20
4호	1,132	1,153	1,464	1,118	1,169	1,323	1,049	786	704	815
5호	2,026	1,659	1,426	1,464	1,599	1,407	1,285	1,134	1,013	1,143
6호	689	610	637	631	697	719	703	743	726	664
7호	69	88	74	63	99	116	95	98	93	94
8호(1개월)	860	682	672	525	593	531	372	321	231	291
9호(단기)	837	684	714	670	774	658	607	526	453	482
10호(장기)	622	501	568	492	511	455	479	412	261	255
기타	324	402	500	380	325	333	265	313	279	262

주) 소년법 개정(2007. 12. 21. 2008. 6. 22. 시행)
1호처분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
2호처분 : 수강명령
3호처분 : 사회봉사명령
4호처분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처분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처분 :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7호처분 : 병원, 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호처분 :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처분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처분 : 장기 소년원 송치
기 타 : 불처분

제4절 인권업무 통계

| 표 5-123 |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실적

구분 / 연도	민·가사 법률구조(건)			형사구조(건)	법률상담(건)
	계	소송전구조	소송구조		
2009	108,654	120	108,534	24,619	1,260,401
2010	113,092	115	112,977	19,579	1,281,792
2011	122,057	133	121,924	13,888	1,242,783
2012	126,898	123	126,775	13,612	1,409,916
2013	136,747	116	136,631	16,257	1,482,762
2014	143,853	98	143,755	21,546	1,505,699
2015	148,161	112	148,049	21,759	1,486,795
2016	150,088	64	150,024	21,468	1,481,186
2017	149,446	104	149,342	17,791	1,373,195
2018	154,585	187	154,398	16,770	1,320,476
2019	168,039	169	167,870	15,480	1,399,103
2020	138,998	217	138,781	11,046	1,277,453
2021	131,602	208	131,394	11,253	1,184,692
2022	101,887	92	101,795	13,095	1,107,880

| 표 5-124 | 범죄피해자 지원활동(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 실적

(단위 : 건)

구분 / 연도	총 계	상담	경제·의료 지원	신변보호	기 타
2014	78,977	57,071	11,867	1,082	8,957
2015	89,699	66,876	11,773	512	10,538
2016	109,484	80,763	12,247	407	16,067
2017	159,728	121,223	14,655	503	23,347
2018	184,412	139,294	15,817	538	28,763
2019	192,266	156,939	17,313	485	17,529
2020	199,406	141,123	18,416	526	39,341
2021	195,747	144,416	18,476	604	32,251
2022	211,246	156,309	16,403	435	38,099

| 표 5-125 |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단위 : 천 원, 명)

구분 \ 예산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예산액	7,929,000	7,728,000	9,773,000	9,712,000	9,870,000	9,870,000	9,870,000	10,578,000	11,520,000	10,423,000
보상인원	312	331	382	279	264	248	305	206	191	189
지급금액	7,912,273	7,070,624	9,770,720	9,257,269	9,289,429	10,175,047	11,516,297	9,567,057	9,792,147	9,502,935

| 표 5-126 | 인권침해사건 접수현황

구분 \ 연도	합 계	수 사	교 정	출입국	범죄예방	기타
2015	1,809	26	1,545	30	125	83
2016	2,620	62	2,252	26	124	156
2017	2,782	73	2,355	26	129	199
2018	2,935	50	2,520	30	150	185
2019	3,435	78	3,942	49	111	255
2020	3,967	107	3,370	89	110	291
2021	4,062	26	3,748	101	80	107
2022	4,002	53	3,525	69	120	235

| 표 5-127 | 인권침해사건 처리현황(구수포함)

구분 \ 연도	합 계	각 하	이 첩	기 각	인용·구제 (인용·구제율)
2015	1,820	958	543	234	85(4.7%)
2016	2,543	1,300	847	311	85(3.3%)
2017	2,641	1,380	900	281	80(3.0%)
2018	2,872	1,628	898	275	71(2,5%)
2019	3,321	1,670	1,229	360	62(1.9%)
2020	4,005	1,968	1,501	447	89(2.2%)
2021	4,030	1,973	1,557	416	84(2.1%)
2022	3,783	1,916	1,461	320	86(2.3%)

제5절 교정업무 통계

1. 수용자 수용 현황

가. 수용현황

| 표 5-128 | 교정시설 1일 평균 수용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수용정원			45,690	46,430	46,600	46,600	47,820	47,820	47,990	48,600	48,980	48,990
1일평균수용인원			47,924	50,128	53,892	56,495	57,298	54,744	54,624	53,873	52,368	51,117
수용내용	기결구금자	소 계	32,278	32,751	34,625	35,618	37,006	35,877	35,281	34,789	34,259	33,381
		수형자	30,181	30,727	32,649	33,791	35,382	34,380	33,813	33,392	33,548	32,610
		노역수	2,097	2,024	1,976	1,827	1,624	1,497	1,468	1,397	711	771
	미결구금자	소 계	15,646	17,377	19,267	20,877	20,292	18,867	19,343	19,084	18,109	17,736
		피의자	712	747	847	864	753	643	632	558	496	526
		피고인	14,934	16,630	18,420	20,013	19,539	18,224	18,711	18,526	17,613	17,210

| 표 5-129 | 인구대비 수용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인 구	1일 평균 수용인원	인구대비 1일 평균수용인원(%)	교도관 정원	교도관 대비 평균수용인원
2013	51,141,463	47,924	0.094	15,476	3.1
2014	51,327,916	50,128	0.098	15,934	3.1
2015	51,529,338	53,892	0.105	15,887	3.4
2016	51,696,216	56,495	0.109	15,892	3.6
2017	51,779,148	57,298	0.111	15,871	3.6
2018	51,824,477	54,744	0.106	15,999	3.4
2019	51,849,861	54,624	0.105	16,101	3.4
2020	51,829,023	53,873	0.103	16,482	3.3
2021	51,638,809	52,368	0.101	16,652	3.1
2022	51,439,038	51,117	0.099	16,668	3.1

| 표 5-130 | 수용자 성별 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48,824	51,760	54,667	57,675	55,198	54,169	54,099	53,956	52,130	52,940
수형자	소 계	32,137	33,444	35,098	36,479	36,167	35,271	34,697	34,749	34,087	34,475
	남	30,525	31,661	33,122	34,281	33,905	32,932	32,384	32,404	31,651	31,870
	여	1,612	1,783	1,976	2,198	2,262	2,339	2,313	2,345	2,436	2,605
	총수에 대한 여자비율(%)	5.0	5.3	5.6	6.0	6.3	6.6	6.7	6.7	7.1	7.6
미결수용자	소 계	16,687	18,316	19,569	21,196	19,031	18,898	19,402	19,207	18,043	18,465
	남	15,376	17,008	18,026	19,488	17,520	17,340	17,863	17,580	16,436	16,798
	여	1,311	1,308	1,543	1,708	1,511	1,558	1,539	1,627	1,607	1,667
	총수에 대한 여자비율(%)	7.9	7.1	7.9	8.1	7.9	8.2	7.9	8.5	8.9	9.0

| 표 5-131 | 수형자 연령별 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32,137	33,444	35,098	36,479	36,167	35,271	34,697	34,749	34,087	34,475
16세 미만	6	3	-	2	4	1	4	1	3	1
18세 미만	55	50	47	46	45	35	41	45	63	56
20세 미만	280	270	262	290	244	248	231	233	224	200
25세 미만	2,327	2,514	2,609	2,642	2,484	2,335	2,255	2,378	2,441	2,504
25세 이상	2,366	2,247	2,244	2,450	2,562	2,779	2,860	3,058	3,264	3,479
30세 이상	7,677	7,584	7,678	7,678	7,543	7,059	6,834	6,488	6,166	6,245
40세 이상	9,714	9,986	10,310	10,275	9,712	9,307	8,637	8,427	7,962	7,807
50세 이상	7,362	7,989	8,624	9,255	9,330	9,067	9,033	8,941	8,673	8,413
60세 이상	2,350	2,801	3,324	3,841	4,243	4,440	4,802	5,178	5,291	5,770

| 표 5-132 | 외국인 수용인원(국적별 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1,222	1,271	1,884	1,997	2,096	2,079	2,315	2,451	2,377	2,644
소계	기 결	773	770	1,123	1,232	1,320	1,338	1,416	1,445	1,386	1,657
	미 결	449	501	761	765	776	741	899	1,006	991	987
중국	기 결	488	492	800	852	903	805	730	700	628	747
	미 결	269	340	500	477	431	343	426	432	464	421
일본	기 결	3	4	6	8	8	7	7	6	6	5
	미 결	1	3	1	1	4	4	2	1	-	1
미국	기 결	30	34	35	37	35	37	40	34	28	31
	미 결	20	24	29	28	26	28	17	15	16	20
기타	기 결	252	240	282	335	374	489	639	705	724	874
	미 결	159	134	231	259	315	366	454	558	511	545

| 표 5-133 | 수형자 죄명별 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32,137	33,444	35,098	36,479	36,167	35,271	34,697	34,749	34,087	34,475
절 도	4,650	4,599	4,420	4,061	3,858	3,681	3,549	3,254	2,744	2,667
폭력행위등 처벌법	2,582	2,748	2,863	2,815	2,624	2,544	2,509	2,330	2,325	2,373
사기 및 횡령	5,024	5,911	6,834	7,699	7,630	8,028	8,024	8,330	8,323	8,272
성 폭 력	5,845	6,284	6,272	5,953	5,480	5,713	5,717	5,652	5,572	5,720
마 약 류	1,380	1,344	1,553	1,890	2,133	1,329	1,996	1,595	1,849	2,169
과 실 범	1,315	1,463	1,423	1,691	1,722	1,894	1,851	2,474	2,590	2,448
강 도	3,276	3,014	2,821	2,552	2,333	2,036	1,919	1,803	1,683	1,519
살 인	3,675	3,750	3,728	3,584	3,484	3,291	3,228	3,170	3,063	3,028
기 타	4,390	4,331	5,184	6,234	6,903	6,755	5,904	6,141	5,938	6,279

| 표 5-134 | 수형자 형명, 형기별 인원

(단위 : 명)

형명·형기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32,137	33,444	35,098	36,479	36,167	35,271	34,697	34,749	34,087	34,475
징역	소 계	30,738	32,006	33,637	34,991	34,679	33,790	33,232	33,287	32,643	33,026
	1년 미만	5,078	5,312	5,724	6,362	6,050	6,173	5,599	4,401	3,978	4,574
	1년 이상	10,344	10,898	12,001	13,010	13,208	12,587	12,819	14,053	13,826	13,376
	3년 이상	6,613	6,866	6,870	6,747	6,727	6,587	6,340	6,428	6,532	6,651
	5년 이상	4,912	5,088	5,216	5,195	5,029	4,888	4,902	4,902	4,894	5,023
	10년 이상	3,299	3,335	3,283	3,127	3,071	2,927	2,903	2,784	2,643	2,580
	20년 이상	492	507	543	550	594	628	669	719	770	822
금고	소 계	53	60	67	86	73	81	66	86	67	81
	1년 미만	33	37	42	47	32	30	32	27	27	27
	1년 이상	16	19	17	28	28	41	25	45	30	46
	3년이상	4	4	8	11	13	10	9	14	10	8
무 기 징 역		1,288	1,320	1,337	1,345	1,358	1,343	1,343	1,320	1,322	1,313
사 형		58	58	57	57	57	57	56	56	55	55

| 표 5-135 | 수형자 입소 경력별 인원

(단위 : 명)

사유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32,137	33,444	35,098	36,479	36,167	35,271	34,697	34,749	34,087	34,475
무경험자		17,483	18,604	19,794	20,649	20,055	19,558	18,955	19,379	18,988	19,482
유경력자	소 계	14,654	14,840	15,304	15,830	16,112	15,713	15,742	15,370	15,099	14,993
	1 회	5,292	5,552	5,987	6,437	6,979	6,741	6,474	6,265	6,329	5,974
	2 회	2,515	2,531	2,506	2,665	2,728	2,668	2,847	2,822	2,802	2,832
	3 회	1,833	1,790	1,742	1,685	1,615	1,623	1,638	1,654	1,609	1,668
	4회이상	5,014	4,967	5,069	5,043	4,790	4,681	4,783	4,629	4,359	4,519

| 표 5-136 | 수형자 입·출소 사유별 인원

(단위 : 명)

구분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입소자	계	55,479	56,044	62,395	64,541	62,624	57,742	56,420	51,874	35,342	36,970
	신입소	27,333	26,573	29,357	28,330	24,851	22,429	21,827	18,609	4,243	5,609
	형확정	23,267	24,281	27,206	30,269	31,500	29,638	29,225	28,204	26,590	26,381
	기타	4,879	5,190	5,832	5,942	6,273	5,675	5,368	5,061	4,509	4,980
출소자	계	54,297	54,203	60,414	62,979	62,819	58,450	56,900	51,817	35,844	36,547
	형기종료	16,374	17,191	19,187	21,357	23,324	21,821	21,092	19,737	17,910	16,479
	가석방	6,201	5,394	5,507	7,157	8,275	8,693	8,174	7,911	9,390	10,310
	사면	13	282	559	479	309	-	561	206	110	65
	기타	17,501	16,173	15,927	14,184	12,559	11,089	10,177	8,588	3,695	4,637
	노역종료	14,208	15,163	19,234	19,802	18,352	16,847	16,896	15,375	4,739	5,056
연도말 인원		32,137	33,444	35,098	36,479	36,167	35,271	34,697	34,749	34,087	34,475

나. 미결구금자

| 표 5-137 | 미결구금자 입소사유별 인원

(단위 : 명)

구분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44,274	48,265	52,129	55,240	51,863	47,986	47,581	43,820	40,057	41,058
신입소		39,604	43,171	46,585	49,405	45,976	42,461	42,120	38,516	34,571	35,128
기타 (보석취소 등)		4,670	5,094	5,544	5,835	5,887	5,525	5,461	5,304	5,486	5,930

| 표 5-138 | 미결구금자 출소사유별 인원

(단위 : 명)

구분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42,651	46,272	50,654	53,470	53,890	47,913	47,061	43,929	41,315	40,606
구속취소		1,400	1,669	2,056	2,452	2,761	2,538	2,474	2,200	1,775	1,618
벌금		1,078	1,224	1,306	1,310	1,218	976	775	684	541	507
집행유예		10,100	11,777	12,914	12,447	11,227	8,985	8,831	7,536	6,823	6,604
보석		2,882	3,167	3,069	2,678	2,555	2,127	2,105	2,165	2,015	1,650
형확정		22,017	23,155	25,985	29,019	30,173	28,216	28,040	27,043	25,770	25,648
기타		5,174	5,280	5,324	5,564	5,956	5,071	4,836	4,301	4,391	4,579
연도말인원		16,687	18,317	19,569	21,196	19,031	18,898	19,402	19,207	18,043	18,465

※ 2011년 통계부터 교정기관간 이송·이입 인원은 제외함

다. 소년수형자

| 표 5-139 | 소년수형자 죄명별 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152	131	130	150	128	105	116	115	142	133
절 도	43	34	26	23	24	17	10	21	26	23
사기·횡령	1	2	10	2	12	12	9	8	6	6
폭력·상해	17	5	10	27	4	3	11	13	7	10
강 간 등	46	34	27	35	44	24	26	21	31	36
강 도 등	16	11	14	19	8	5	14	13	11	9
살 인	7	6	5	5	4	4	3	1	1	1
과 실 범	-	2	2	2	-	1	4	1	2	-
기 타	22	37	36	37	32	39	39	37	58	48

| 표 5-140 | 소년수형자 형명·형기별 인원

(단위 : 명)

형명형기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152	131	130	150	128	105	116	115	142	133
징역형	무 기	-	-	-	-	-	-	-	-	-	-
	20년 이상	4	1	-	-	-	1	-	-	-	-
	10년 이상	4	3	2	2	-	-	1	-	2	1
	5년 이상	10	11	12	13	9	13	21	15	22	25
	3년 이상	39	42	48	56	47	33	45	41	47	62
	1년 이상	87	67	56	69	64	55	45	55	65	40
	1년 미만	8	7	11	8	8	2	4	2	4	3
	6월 미만	-	-	1	1	-	1	-	2	2	2
금고형	3년 미만	-	-	-	-	-	-	-	-	-	-
	1년 미만	-	-	-	1	-	-	-	-	-	-

| 표 5-141 | 소년수형자 석방사유별 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122	124	118	97	113	99	97	81	42	33
가석방	53	33	27	31	28	26	35	35	11	7
부정기형집행 종료결정	-	-	-	-	-	-	-	-	-	-
형기종료	45	68	78	53	64	38	43	37	27	24
기타	24	23	13	13	21	35	19	9	4	2

라. 외부교통권

| 표 5-142 | 수용자 원격화상접견 실적

(단위 : 건)

연 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건 수	198,458	214,205	246,045	279,423	288,953	294,150	316,462	392,735	331,625	585,958

| 표 5-143 | 수용자 전화사용 실적

(단위 : 건)

연 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건 수	488,153	501,483	569,562	576,357	555,883	594,835	588,130	784,751	523,183	1,039,125

| 표 5-144 | 수용자 접견예약 실적

(단위 : 건)

연 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건 수	479,481	533,348	579,852	657,241	751,207	969,264	903,667	929,250	1,111,364	1,411,107

| 표 5-145 | 수용자 접견 실적

(단위 : 건)

연 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건 수	2,159,672	2,425,321	2,576,186	2,807,596	2,737,767	2,504,718	2,471,940	1,251,240	779,681	822,051

마. 재복역률 및 가석방

| 표 5-146 | 2018년 출소자의 누적 재복역률

재복역 기간	'18년 출소자의 누적 재복역률 (출소자 29,469명)	
	재복역 인원	비 율
3월 이내	87	0.3%
6월 이내	491	1.7%
1년 이내	2,123	7.2%
2년 이내	5,230	17.8%
3년 이내	7,004	23.8%

※ 조사대상인원 : 29,469명
※ 출소자 재복역률 개념
출소자 재복역률이란, 금고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된 자로서 '14년에 형기종료, 가석방·사면 등의 사유로 출소한 자 중, 출소 후 범한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위해 3년 이내에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비율

| 표 5-147 | 출소사유별·재복역기간별·성별 재복역률

출소사유	총출소 인원		재복역 인원		재복역기간									
					3월 미만		3월 이상 6월 미만		6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전체	여자	전체	여자	전체	여자	전체	여자	전체	여자	전체	여자	전체	여자
총 계	29,469	2,176	7,004	223	87	1	404	7	1,632	42	3,107	113	1,774	60
형기종료	20,740	1,200	6,362	197	81	1	384	7	1,539	39	2,803	100	1,555	50
가석방	8,693	975	630	26	6	0	18	0	93	3	296	13	217	10
감호기간종료	-	-	-	-	-	-	-	-	-	-	-	-	-	-
가출소	26	0	7	0	0	0	1	0	0	0	4	0	2	0
사 면	10	1	5	0	0	0	1	0	0	0	4	0	0	0

※ 출소사유별 재복역률 : 형기종료 30.7%, 가석방 7.2%, 감호기간 종료 0.0%, 가출소 26.9%, 사면 50.0%
※ 재복역기간별 누적 재복역률 : 3월 이내 0.30%, 6월 이내 1.37%, 1년 이내 5.54%, 2년 이내 10.54%, 3년 이내 6.02%
※ 재복역기간별 인원 : 3월이내 87명(1.2%), 3월이상 6월이내 491명(7.0%), 6월이상 1년이내 1,632명(23.3%), 1년이상 2년이내 3,107명(44.4%), 2년이상 3년이내 1,774명(25.%)
※ 성별 재복역률 : 남자 24.8%, 여자 10.2%

| 표 5-148 | 출소자 범수별 재복역률

출소사유	구분	총출소인원	재복역자 범수				
			1범	2범	3범	4범	5범 이상
총계	출소인원	29,469	16,620	5,928	2,202	1,211	3,508
	재복역인원	7,004	1,875	1,496	894	595	2,144
	재복역률	23.8	11.3	25.2	40.6	49.1	61.1
형기종료	출소인원	20,740	9,825	4,214	2,038	1,180	3,483
	재복역인원	6,362	1,517	1,247	870	589	2,139
	재복역률	30.7	15.4	29.6	42.7	49.9	61.4
가석방	출소인원	8,693	6,784	1,712	161	25	11
	재복역인원	630	353	248	23	4	2
	재복역률	7.2	5.2	14.5	14.3	16.0	18.2
감호기간종료	출소인원	-	-	-	-	-	-
	재복역인원	-	-	-	-	-	-
	재복역률	-	-	-	-	-	-
가출소	출소인원	26	2	1	3	6	14
	재복역인원	7	0	1	1	2	3
	재복역률	26.9	0.0	100	33.3	33.3	21.4
사면	출소인원	10	9	1	0	0	0
	재복역인원	5	5	0	0	0	0
	재복역률	50.0	55.6	0	0	0	0

※ 범수별 재복역률 : 초범 11.3%, 2범 25.2%, 3범 40.6%, 4범 49.1%, 5범 이상 61.1%

※ 출소사유별 범수별 재복역률 : 형기종료 5범(61.4%), 가석방 5범(18.2%), 가출소 2범(100%), 사면 초범(55.6%)의 재복역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표 5-149 | 출소자 연령별 재복역률

출소사유	구분	총출소인원	재복역자 연령					
			20세 미만	20세 ~ 29세	30세 ~ 39세	40세 ~ 49세	50세 ~ 59세	60세 이상
계	출소인원	29,469	155	4,431	5,935	7,500	7,918	3,530
	재복역인원	7,004	61	1,242	1,419	1,808	1,823	651
	재복역률	23.8	39.4	28.0	23.9	24.1	23.0	18.4
형기종료	출소인원	20,740	119	2,822	4,149	5,398	5,750	2,502
	재복역인원	6,362	51	1,010	1,265	1,699	1,721	616
	재복역률	30.7	42.9	35.8	30.5	31.5	29.9	24.6
가석방	출소인원	8,693	35	1,603	1,785	2,093	2,150	1027
	재복역인원	630	9	229	154	105	99	34
	재복역률	7.2	25.7	14.3	8.6	5.0	4.6	3.3
감호기간종료	출소인원	-	-	-	-	-	-	-
	재복역인원	-	-	-	-	-	-	-
	재복역률	-	-	-	-	-	-	-
가출소	출소인원	26	0	0	1	8	16	1
	재복역인원	7	0	0	0	3	3	1
	재복역률	26.9	0	0	0	37.5	18.8	100
사면	출소인원	10	1	6	0	1	2	0
	재복역인원	5	1	3	0	1	0	0
	재복역률	50.0	100	50.0	0	100	0	0

※ 연령별 재복역률 : 20세 이내 39.4%, 20대 28.0%, 30대 23.9%, 40대 24.1%, 50대 23.0%, 60대 이상 18.4%
※ 출소사유별 연령별 재복역률 : 형기종료(42.9%), 가석방(25.7%)은 20세 미만의 재복역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표 5-150 | 출소자 죄명별 재복역률

출소사유	구분	총출소인원	재복역자 죄명								
			살인	강도	성폭력	폭력행위	절도	사기·횡령	마약류	과실범	기타
계	출소인원	29,469	738	465	2,135	4,055	3,473	9,538	1,782	3,261	4,022
	재복역인원	7,004	41	125	366	1,145	1,736	1,530	646	654	761
	재복역률	23.8	5.6	26.9	17.1	28.2	50.0	16.0	36.3	20.1	18.9
형기종료	출소인원	20,740	188	296	2,119	3,299	3,006	5,196	17.81	2,092	2,763
	재복역인원	6,362	18	107	362	1,061	1,607	1,289	646	556	716
	재복역률	30.7	9.6	36.1	17.1	32.2	53.5	24.8	36.3	26.6	25.9
가석방	출소인원	8,693	550	158	5	753	459	4,340	1	1,169	1,258
	재복역인원	630	23	15	0	83	125	241	0	98	45
	재복역률	7.2	4.2	9.5	0	11.0	27.2	5.6	0	8.4	3.6
감호기간종료	출소인원	-	-	-	-	-	-	-	-	-	-
	재복역인원	-	-	-	-	-	-	-	-	-	-
	재복역률	-	-	-	-	-	-	-	-	-	-
가출소	출소인원	26	-	11	11	1	3	0	-	-	-
	재복역인원	7	-	3	4	0	0	0	-	-	-
	재복역률	26.9	-	27.3	36.4	0	0	0	-	-	-
사면	출소인원	10	-	-	-	2	5	2	-	-	-
	재복역인원	5	-	-	-	1	4	0	-	-	-
	재복역률	50.5	-	-	-	50.0	80.0	0	-	-	-

※ 죄명별 재복역률 : 살인(5.6%), 강도(26.9%), 성폭력(17.1%), 폭력(28.2%), 절도(50.0%), 사기·횡령(16.0%), 마약류(36.3%), 과실범(20.1%)

※ 출소사유별 죄명별 재복역률 : 형기종료(53.5%)·사면(80.0%)·가석방(27.2%)는 절도가 재복역률이 높게 나타남

| 표 5-151 | 출소자 형기별 재복역률

출소사유	구분	총출소인원	재복역자 형기								
			6월 미만	6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계	출소인원	29,469	1,054	8,519	15,214	3,021	836	382	253	121	69
	재복역인원	7,004	207	1,961	4,049	563	126	55	27	15	1
	재복역률	23.8	19.6	23.0	26.6	18.6	15.1	14.4	10.7	12.4	1.4
형기종료	출소인원	20,740	1,005	6,797	9,961	1,919	604	273	116	51	14
	재복역인원	6,362	206	1,839	3,616	503	121	49	19	9	0
	재복역률	30.7	20.5	27.1	36.3	26.2	20.0	17.9	16.4	17.6	0
가석방	출소인원	8,693	49	1,719	5,247	1,101	232	105	131	59	50
	재복역인원	630	1	121	429	60	5	5	6	2	1
	재복역률	7.2	2.0	7.0	8.2	5.4	2.2	4.8	4.6	3.4	2.0
감호기간종료	출소인원	-	-	-	-	-	-	-	-	-	-
	재복역인원	-	-	-	-	-	-	-	-	-	-
	재복역률	-	-	-	-	-	-	-	-	-	-
가출소	출소인원	26	-	-		-	-	4	6	11	5
	재복역인원	7	-	-	-	-	-	1	2	4	0
	재복역률	26.9	-	-	-	-	-	25.0	33.3	36.4	0
사면	출소인원	10	-	3	6	1	-	-	-	-	-
	재복역인원	5	-	1	4	0	-	-	-	-	-
	재복역률	50.5	-	33.3	66.7	0	-	-	-	-	-

※ 형기별 재복역률 : 6월 미만(19.6%), 6월 이상 1년 미만(23.0%), 1년 이상 3년 미만(26.6%), 3년 이상 5년 미만(18.6%), 5년 이상 7년 미만(15.1%), 7년 이상 10년 미만(14.4%), 10년 이상 15년 미만(10.7%), 15년 이상 20년 미만(12.4%), 20년 이상(1.4%)

※ 출소사유별 형기별 재복역률 : 형기종료(36.3%)·가석방(8.2%)·사면(66.7%)은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재복역률이 높게 나타남

| 표 5-152 | 수형자 가석방 현황

(단위 : 명)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인원	6,201	5,394	5,507	7,157	8,275	8,693	8,174	7,911	9,390	10,310

2. 수용자 교육·교화 현황

가. 학과교육, 프로그램, 입상 등

| 표 5-153 | 검정고시 교육인원

구분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785	720	609	556	616	639	655	647	647	573
고졸 검정	510	498	428	411	444	473	498	517	523	462
중졸 검정	228	188	147	126	150	155	144	123	114	101
초졸 검정	47	34	34	19	22	11	13	10	10	10

| 표 5-154 | 검정고시 합격인원

구분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571	565	575	533	508	492	502	508	542	441
고졸 검정	370	390	394	383	371	364	379	425	461	359
중졸 검정	187	163	147	133	125	120	113	76	75	76
초졸 검정	14	12	34	17	12	8	10	7	6	6

| 표 5-155 |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인원

(단위 : 명)

소 별 \ 연 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교육인원	30	30	30	30	21	22	17	20	8	4
	졸업인원	9	6	7	6	5	7	6	8	2	-
천안	교육인원	-	-	-	-	-	-	-	-	-	-
	졸업인원	-	-	-	-	-	-	-	-	-	-
김천	교육인원	30	30	30	30	21	22	17	20	8	4
	졸업인원	9	6	7	6	5	7	6	8	2	-

| 표 5-156 | 수형자 문화프로그램 시행 현황

연 도	기 관	횟 수	인 원(명)	비 고
2013	51	535	68,786	
2014	51	654	58,412	
2015	52	846	55,468	
2016	52	1,285	61,110	
2017	52	1,428	63,671	
2018	38	1,322	50,873	
2019	52	917	43,018	
2020	46	361	8,983	
2021	53	425	3,836	
2022	41	729	14,464	

| 표 5-157 | 일반수형자 정신교육 및 인성교육 실적

(단위 : 명)

연 도	2013	2014	2015 (집중인성)	2016 (집중인성)	2017 (집중인성)	2018 (집중인성)	2019 (집중인성)	2020 (집중인성)	2021 (집중인성)	2022 (집중인성)
실 시 인 원	6,202	5,763	8,604	10,066	10,525	9,909	11,566	4,917	7,187	5,720

나. 귀휴 등 사회적 처우

| 표 5-158 | 귀휴 인원

(단위 : 명)

연 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인 원	1,282	1,356	999	1,084	1,142	1,198	1,193	75	52	1,097

| 표 5-159 |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 인원

(단위 : 명)

연 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인 원	4,245	4,417	4,322	4,991	5,080	4,850	4,859	134	-	11

| 표 5-160 | 가족만남의 날 행사 인원

(단위 : 명)

연 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인 원	11,578	11,855	12,755	14,393	11,095	8,891	9,004	59	-	24

| 표 5-161 | 가족만남의 집 이용 인원

(단위 : 명)

연 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인 원	1,261	1,338	1,361	1,431	1,583	1,913	1,908	27	-	5

다. 교정위원 활동

| 표 5-162 | 교정위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4,833	4,688	4,706	4,765	4,830	4,777	4,592	4,495	4,410	4,368
교화위원	1,915	1,778	1,804	1,790	1,845	1,812	1,702	1,647	1,651	1,628
종교위원	1,967	1,924	1,895	1,931	1,910	1,891	1,864	1,835	1,775	1,778
교육위원	211	246	275	315	329	328	333	335	316	319
의료위원	108	98	102	98	97	91	84	77	72	68
취업위원	632	642	630	631	649	655	609	601	596	575

| 표 5-163 | 교화위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교 육	법 조	사회사업	실 업	공무원	기 타
인 원	1,628	62	35	72	1,139	16	304

| 표 5-164 | 종교위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기 독 교	불 교	천 주 교	기 타
인 원	1,778	852	577	317	33

| 표 5-165 | 교육위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교 수	교 사	학원강사	직업훈련 강사	기 타
인 원	319	60	12	26	14	207

| 표 5-166 | 의료위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의 사	한의사	약 사	간호사	기 타
인 원	68	59	1	2	-	6

| 표 5-167 | 취업위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실 업	사회사업	교 육	공무원 및 정부산하기관	기 타
인 원	575	399	17	54	36	69

| 표 5-168 | 교화위원 활동실적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상 담 (명)	1,591	2,390	1,629	1,734	1,704	1,334	2,371	219	4	112
교화강연(회)	3	8	11	15	5	3	14	-	-	-
자매결연(명)	363	515	519	341	204	306	1,101	10	33	21
수 용 생 활 지 원 (명)	4,619	6,992	5,867	6,726	4,434	5,363	6,068	8,491	5,130	4,446

| 표 5-169 | 종교위원 활동실적

구분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교리지도(명)	41,207	37,790	29,560	36,876	33,215	37,085	35,670	99	4	7,496
자매결연(명)	3,989	3,448	3,828	3,333	7,158	11,641	12,360	356	161	3,041
수용생활지원(명)	24,780	22,336	22,170	23,962	24,725	28,224	37,336	13,466	13,350	18,739
교화도서기증(권)	401	670	346	3,441	164	3,809	1,013	151	8	4,642

| 표 5-170 | 교육위원 활동실적

구분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교육훈련지도(명)	6,761	7,668	11,401	14,162	18,003	20,428	18.520	2,988	890	4,110
자매결연(명)	8	29	18	13	44	-	-	-	6	10
수용생활지원(명)	-	11	36	187	67	93	20	103	94	341
교화도서기증(권)	-	20	100	43	249	-	230	400	-	189

| 표 5-171 | 의료위원 활동실적

구분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의료지원(명)	4,762	4,731	10,716	12,310	11,566	13,295	12,410	10,288	9,752	9,741
자매결연(명)	2	5	9	3	-	-	-	-	-	-
수용생활지원(명)	-	-	45	115	68	120	380	676	884	592
교화도서기증(권)	-	-	-	-	-	100	-	-	-	-

3. 교도작업 및 직업훈련

가. 교도작업

| 표 5-172 | 취업 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수형자 총인원		32,076	32,867	34,425	36,082	35,990	34,633	34,605	34,621	33,892	33,809
취업불가능인원		9,140	9,085	10,458	12,154	11,613	11,510	11,662	12,612	12,924	13,436
취업가능인원	계	22,936	23,782	23,967	23,928	24,377	23,123	22,942	22,009	20,968	20,373
	취업인원	18,991	21,471	22,090	22,100	22,265	21,351	21,562	20,577	19,534	19,165
	비율(%)	83	90	92	92	91	92	94	93	93	94
	불취업인원	3,945	2,311	1,877	1,828	2,112	1,772	1,380	1,432	1,434	1,208

※ 감호작업은 제외

| 표 5-173 | 생산실적

(단위 : 백만 원)

구분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획	33,789	37,699	42,082	55,541	57,033	60,056	60,893	61,374	61,603	61,564
실적	42,099	47,247	55,792	62,239	66,127	65,732	62,704	62,850	65,555	63,366
실적/계획(%)	124.6	125.3	132.6	112.1	115.9	109.5	103.0	102.4	106.4	102.9
실적 증가율(%)	10.7	12.2	18.1	11.6	6.2	△0.6	△0.5	△0.6	4.3	△3.3

| 표 5-174 | 작업형태별 생산실적

(단위 : 백만 원)

구분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실 적	42,099	47,246	55,792	62,239	66,127	65,732	62,704	62,850	65,555	63,366
직영작업	실 적	22,873	24,801	30,228	34,998	38,141	37,905	34,326	37,089	38,413	38,946
	구성비 (%)	54.3	52.5	54.2	56.2	57.7	57.7	54.7	59.0	58.6	61.5
위탁작업	실 적	11,548	15,026	17,448	18,763	19,312	19,886	20,158	18,271	16,996	17,284
	구성비 (%)	27.4	31.8	31.3	30.1	29.2	30.2	32.2	29.1	25.9	27.3
외통·개방	실 적	7,020	7,217	7,914	8,330	8,456	7,807	8,114	7,357	7,489	6,815
	구성비 (%)	16.7	15.3	14.2	13.4	12.8	11.9	12.9	11.7	11.4	10.8
기타	실 적	658	202	202	148	218	134	107	132	2,657	321
	구성비 (%)	1.6	0.4	0.4	0.2	0.3	0.2	0.2	0.2	4.1	0.5

| 표 5-175 | 연도별 관수용품 등 공급실적

(단위 : 백만 원)

구분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생산총액		42,099	47,247	55,792	62,239	66,127	65,732	62,704	62,850	65,555	63,366
관수용품	계	19,354	22,504	28,503	31,723	35,343	28,617	26,595	31,603	33,912	38,946
	교정기관	18,757	20,535	25,971	27,479	31,060	24,949	23,570	29,885	31,257	35,303
	법무부산하	296	311	205	994	74	99	1,162	211	123	155
	부 외 처	301	1,658	2,327	3,250	4,209	3,569	1,863	1,507	2,532	3,488

| 표 5-176 | 작업장려금 지급실적

구분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지급액 (천 원)	14,901,986	17,798,954	20,231,129	20,853,628	22,641,637	22,074,502	23,129,488	20,621,076	22,659,230	22,600,238
지 급 연인원 (명)	5,022,670	4,435,528	5,634,098	5,615,637	5,874,204	4,967,883	5,187,748	5,139,172	4,870,453	3,738,721
1인당 1일평균 (원)	2,967	4,013	3,591	3,713	3,854	4,443	4,458	4,013	4,652	6,045

| 표 5-177 | 수용자 조위금·위로금 지급실적

(단위 : 천 원)

구분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지급인원	3	-	5	5 (2)	2	5 (2)	2	4 (1)	3	1
지 급 액	11,346	-	98,729	96,308 (90,034)	20,040	145,466 (103,986)	10,287	57,328 (44,668)	41,820	19,588

※ ( )는 조위금

| 표 5-178 | 피보호감호자 근로보상금 지급실적

(단위 : 천 원)

구분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지 급 액	700,846	630,667	687,043	449,740	405,258	167,154	151,133	105,409	52,594	53,078
지급인원	117	98	92	64	32	16	21	18	13	13
1인당 평균 지 급 액	5,990	6,435	7,468	7,027	36,241	36,520	38,348	31,306	18,558	19,127

| 표 5-179 | 최근 5년간 세입·세출현황

(단위 : 백만 원)

연도별 \ 구분	총세입액	총세출액	세계잉여금	비 고
2018	118,233	110,222	8,011	-
2019	114,086	100,203	13,883	-
2020	118,424	107,406	11,018	-
2021	114,370	106,756	7,614	-
2022	118,026	109,684	8,342	-

※ 총세입액은 전년도 이월금 포함

| 표 5-180 | 국유재산 및 주요장비 현황

(단위 : 백만 원)

계	국유재산	공작물 등
208,010	206,808	2,102

| 표 5-181 | 작업장려금 1일 지급기준표

(단위 : 원)

구 분	생 산 작 업									비 생 산 작 업								
작업 종류	직영 개방지역작업			직영 집중근로 (위탁 집중근로)			직영 일반생산작업 (위탁 일반생산작업)			운영지원작업						직업훈련		
										일반운영 지원작업			취사원					
등 급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지급액	15,000	12,000	10,000	8,500 (60%)	7,500 (60%)	6,500 (60%)	4,000 (60%)	3,500 (55%)	3,000 (50%)	1,600	1,500	1,400	3,700	3,200	2,700	1,100	1,000	900

| 표 5-182 | 연도별 취업 지원 실적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취업	1,405	1,636	1,503	1,663	1,670	1,542	1.557	1,625	1,725	1,832

나. 직업훈련

| 표 5-183 | 직업훈련 실시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4,852	6,276	6,484	6,644	6,727	6,939	6,433	5,942	5,417	5,635
양성·향상훈련	3,336	3,811	3,758	3,913	3,719	4,313	4,276	4,397	4,200	4,865
숙련훈련	249	397	360	364	457	608	637	777	720	521
일반훈련	1,267	2,068	2,366	2,367	2,551	2,018	1,520	768	497	249

| 표 5-184 | 기술자격 취득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2,953	3,278	3,264	3,316	3,443	3,424	3,338	3,128	3,070	2,740
기 술 사	-	-	-	-	-	-	-	-	-	-
기 능 장	4	1	5	4	-	-	2	-	-	2
기 사	11	-	-	1	-	1	-	5	7	4
산업기사	158	79	50	56	92	87	60	100	85	91
기 능 사	2,780	3,198	3,209	3,255	3,351	3,336	3,276	3,023	2,978	2,643

| 표 5-185 | 기능경기대회 입상실적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95	101	87	76	77	98	99	94	78	81
지방대회	84	88	77	64	63	76	76	73	58	56
전국대회	11	13	10	12	14	22	23	21	20	25

제6절 출입국·외국인정책업무 통계

1. 연도별 출입국자 현황

| 표 5-186 |

구분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계	54,966,229	61,652,158	66,372,908	79,987,974	80,407,702
	승객	48,888,699	55,316,870	60,054,078	73,916,823	75,134,915
	승무원	6,077,530	6,335,288	6,318,830	6,071,151	5,272,787
국민	소계	30,352,303	32,722,368	39,111,816	45,313,898	53,445,030
	승객	27,646,533	29,971,333	36,228,736	42,197,580	50,130,062
	승무원	2,705,770	2,751,035	2,883,080	3,116,318	3,314,968
외국인	소계	24,613,926	28,929,790	27,261,092	34,674,076	26,962,672
	승객	21,242,166	25,345,537	23,825,342	31,719,243	25,004,853
	승무원	3,371,760	3,584,253	3,435,750	2,954,833	1,957,819

구분 \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계	88,908,420	93,548,093	14,701,831	4,559,693	19,414,228
	승객	83,558,252	87,822,137	12,777,578	2,859,950	12,889,166
	승무원	5,350,168	5,725,956	1,924,253	1,699,743	6,525,062
국민	소계	57,859,670	57,795,389	9,171,481	2,432,517	12,889,166
	승객	54,321,526	54,198,298	7,957,472	1,593,633	11,586,942
	승무원	3,538,144	3,597,091	1,214,009	838,884	1,302,224
외국인	소계	31,048,750	35,752,704	5,530,350	2,127,176	6,525,062
	승객	29,236,726	33,623,839	4,820,106	1,266,317	5,521,977
	승무원	1,812,024	2,128,865	710,244	860,859	1,003,085

2. 국적별 외국인 입국현황

| 표 5-187 |

구분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총 계	10,678,334	12,682,019	13,359,701	17,418,307	13,569,509
중 국	3,923,190	5,663,482	6,154,730	8,268,262	4,393,936
일 본	2,715,451	2,254,307	1,859,190	2,321,842	2,337,588
미 국	743,017	798,858	859,361	960,683	969,277
타 이 완	566,200	666,805	551,362	865,948	957,836
홍 콩	391,340	550,268	524,116	651,639	659,182
필 리 핀	133,595	162,615	412,197	566,693	459,588
태 국	313,347	412,217	375,021	474,262	503,777
말 레 이 시 아	187,322	227,434	223,782	311,686	308,152
베 트 남	114,357	141,827	199,323	299,084	380,929
인 도 네 시 아	119,179	132,547	194,472	296,377	231,908
러 시 아	119,691	164,628	191,214	238,171	275,779
싱 가 포 르	157,696	185,712	160,402	221,844	216,574
인 도	60,675	68,097	154,294	196,773	124,458
캐 나 다	122,330	135,163	147,715	178,023	178,761
오스트레일리아	114,106	129,504	134,357	153,125	151,583
영 국	106,783	113,786	124,833	136,900	128,046
독 일	86,759	89,004	101,251	111,413	111,077
프 랑 스	67,836	73,846	85,093	93,039	94,013
몽 골	65,446	63,584	81,201	82,780	108,139
우 즈 베 키 스 탄	44,326	48,777	59,453	71,299	81,711
뉴 질 랜 드	27,065	29,119	28,806	32,038	33,526
기 타	498,623	570,439	737,528	886,426	863,669

구분 \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총 계	15,630,522	17,880,503	2,659,845	1,044,545	3,390,009
중 국	5,032,906	6,284,486	740,039	187,908	250,876
일 본	2,976,444	3,303,088	438,708	18,025	309,460
미 국	1,068,173	1,139,150	265,134	251,203	610,103
타 이 완	1,146,215	1,290,683	171,943	5,779	77,707
홍 콩	679,942	685,569	87,118	1,381	60,220
필 리 핀	471,532	516,503	120,171	117,316	206,529
태 국	565,784	580,191	78,878	9,351	185,409
말 레 이 시 아	383,467	409,254	48,741	4,596	70,988
베 트 남	519,448	624,640	112,938	25,359	239,269
인 도 네 시 아	250,248	280,146	67,301	46,998	108,178
러 시 아	308,665	350,093	75,117	35,235	63,810
싱 가 포 르	232,359	246,736	18,136	7,625	165,713
인 도	120,975	144,758	34,299	31,633	66,018
캐 나 다	196,859	208,280	35,437	30,201	94,589
오스트레일리아	154,390	174,681	23,559	3,717	66,404
영 국	133,149	146,132	21,124	9,337	46,414
독 일	117,173	121,989	24,543	20,381	66,002
프 랑 스	101,854	112,588	19,891	16,195	63,984
몽 골	118,783	118,977	22,535	6,511	67,146
우즈베키스탄	89,391	95,634	17,570	16,177	42,314
뉴 질 랜 드	34,652	39,504	6,772	1,732	15,997
기 타	928,113	1,007,421	229,891	197,885	512,879

※ 외국인입국자 현황은 2014년까지 승무원 제외, 2015년 이후 승무원 포함

3. 항구별 외국인 입국현황

| 표 5-188 |

항구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총 계	10,678,334	12,682,019	13,359,701	17,418,307	13,569,509
인천공항	6,791,570	7,910,157	7,778,178	10,010,950	9,288,559
제주공항	1,035,720	1,188,019	958,601	1,327,513	555,387
김해공항	768,412	826,736	789,992	1,059,397	1,062,683
김포공항	1,080,350	1,056,803	943,451	1,029,912	922,837
부산항	244,125	223,248	460,625	850,990	412,465
인천항	416,320	465,523	543,334	621,693	332,305
청주공항	70,967	190,906	194,255	237,282	61,021
평택항	96,698	141,425	170,805	179,051	211,138
대구공항	11,961	40,523	51,145	103,339	68,730
군산항	30,859	35,035	47,844	65,265	76,979
감천항	9,800	10,070	56,558	57,818	57,964
울산항	8,593	8,429	48,852	48,071	46,328
광양항	9,651	9,622	29,080	44,614	38,986
오산공항	24,943	29,920	36,431	34,994	32,599
무안공항	23,639	32,019	37,727	34,295	4,074
양양공항	19,231	86,785	47,005	34,202	2,446
동해항	8,329	8,320	21,234	27,978	31,066
여수항	10,809	4,649	20,337	26,904	26,031
창원항	1,659	2,380	13,526	13,191	13,034
서산항	2,186	2,380	6,433	6,590	7,782
속초항	7,452	8,879	1,386	1,101	11,858
기타	5,060	400,191	1,102,902	1,603,157	305,237

항구 \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총 계	15,630,522	17,880,503	2,659,845	1,044,545	3,390,009
인천공항	10,789,900	11,983,837	1,899,649	721,864	2,807,636
제주공항	839,775	1,220,957	117,997	23	35,660
김해공항	1,279,277	1,375,031	154,778	4,429	109,871
김포공항	1,084,115	1,165,403	148,795	539	73,398
부산항	380,537	450,550	82,576	94,296	101,116
인천항	410,667	510,530	34,139	14,216	17,254
청주공항	68,166	89,695	5,756	12	40
평택항	210,495	296,933	26,151	13,771	14,934
대구공항	107,407	204,324	19,520	4	7,155
군산항	109,649	169,779	13,632	8,034	9,900
감천항	56,697	60,005	26,365	20,529	21,692
울산항	43,955	43,266	26,247	38,141	37,361
광양항	35,377	34,642	18,956	34,385	32,519
오산공항	32,306	28,809	27,188	22,331	27,072
무안공항	7,717	20,770	1,275	-	216
양양공항	13,699	12,113	4,724	3	5,670
동해항	28,465	28,423	6,757	6,141	11,646
여수항	31,798	59,960	18,417	37,312	43,297
창원항	13,071	13,389	7,715	9,507	10,792
서산항	8,527	8,425	2,904	3,497	4,868
속초항	4,969	5,938	516	-	127
기타	73,953	97,724	15,788	15,511	17,785

※ 외국인입국자 현황은 2014년까지 승무원 제외, 2015년 이후 승무원 포함

※ 오산공항은 2016년부터 평택으로 명칭 변경

4. 체류자격별 외국인 입국현황

| 표 5-189 |

체류자격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총 계	10,678,334	12,682,019	13,359,701	17,418,307	13,569,509
사증면제(B-1)	1,090,907	1,426,293	1,249,506	1,556,536	1,634,095
관광통과(B-2)	5,040,354	5,335,626	4,632,593	5,833,225	5,269,825
단기상용(C-2)	-	-	-	-	-
단기종합(C-3)	2,728,573	3,725,073	3,635,898	5,026,435	3,319,579
유 학(D-2)	114,818	117,836	140,160	169,715	212,295
기술연수(D-3)	1,806	1,663	1,934	1,678	1,723
일반연수(D-4)	37,282	45,624	62,550	81,033	90,357
종 교(D-6)	2,362	2,323	2,292	2,348	2,428
주 재(D-7)	9,234	9,103	8,991	9,160	8,548
기업투자(D-8)	39,859	40,550	40,795	42,007	41,984
무역경영(D-9)	32,326	38,867	33,958	26,302	18,288
교 수(E-1)	8,186	7,323	7,555	7,550	7,491
회화지도(E-2)	38,572	34,567	32,299	32,158	30,922
연 구(E-3)	9,223	9,670	9,810	9,494	9,618
예술흥행(E-6)	4,368	4,710	4,596	3,996	3,765
특정활동(E-7)	36,904	39,260	43,300	46,324	47,528
비전문취업(E-9)	105,738	115,294	123,433	134,764	140,072
선원취업(E-10)	8,281	9,574	9,431	9,877	10,720
방문동거(F-1)	41,740	41,043	49,310	69,742	82,857
거 주(F-2)	24,948	30,189	35,728	43,041	48,924
동 반(F-3)	36,544	40,173	43,222	43,684	40,048
재외동포(F-4)	280,130	349,137	405,948	468,336	515,587
영 주(F-5)	87,497	101,184	118,553	134,138	151,115
기 타	898,682	1,156,937	2,667,839	3,666,764	1,881,740

체류자격 \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총 계	15,630,522	17,880,503	2,659,845	1,044,545	3,390,009
사증면제(B-1)	1,908,616	2,053,173	222,306	19,938	663,699
관광통과(B-2)	6,378,362	7,158,538	939,748	115,029	945,123
단기상용(C-2)	-	-	-	-	-
단기방문(C-3)	4,127,283	5,184,417	503,028	89,288	439,865
유 학(D-2)	248,472	291,007	89,414	53,366	111,101
기술연수(D-3)	1,449	1,103	321	389	397
일반연수(D-4)	83,538	84,653	29,048	26,718	41,094
종 교(D-6)	2,313	2,398	647	625	1,239
주 재(D-7)	8,460	9,072	2,045	1,044	2,539
기업투자(D-8)	41,886	42,442	9,252	4,574	13,009
무역경영(D-9)	9,705	8,669	3,169	2,562	3,418
교 수(E-1)	7,160	6,904	2,061	964	2,460
회화지도(E-2)	27,291	29,115	11,326	5,376	11,868
연 구(E-3)	9,508	9,212	2,569	1,618	4,346
예술흥행(E-6)	4,570	5,436	1,790	1,934	3,816
특정활동(E-7)	46,661	46,475	12,398	5,827	20,099
비전문취업(E-9)	145,174	151,116	41,992	16,732	135,167
선원취업(E-10)	11,737	11,634	6,325	4,895	9,329
방문동거(F-1)	88,747	97,159	32,329	11,306	46,485
거 주(F-2)	53,672	58,425	13,330	3,637	12,238
동 반(F-3)	38,402	40,284	13,651	9,254	21,388
재외동포(F-4)	565,636	579,522	112,752	64,246	123,610
영 주(F-5)	162,760	177,531	34,140	11,644	24,322
기 타	1,659,120	1,832,218	576,204	593,579	753,397

※ 외국인입국자 현황은 2014년까지 승무원 제외, 2015년 이후 승무원 포함

5. 국적별 체류외국인 현황

| 표 5-190 |

국가 \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총 계	2,367,607	2,524,656	2,036,075	1,956,781	2,245,912
중 국	1,070,566	1,101,782	894,906	840,193	849,804
베 트 남	196,633	224,518	211,243	208,740	235,007
미 국	151,018	156,982	145,580	140,672	156,562
태 국	197,764	209,909	181,386	171,800	201,681
필 리 핀	60,139	62,398	49,800	46,871	57,452
우즈베키스탄	68,433	75,320	65,205	66,677	79,136
일 본	60,878	86,196	26,515	28,093	46,741
인도네시아	47,366	48,854	36,858	34,188	50,841
캄 보 디 아	47,012	47,565	41,405	41,525	49,240
몽 골	46,286	48,185	42,511	37,012	53,038
네 팔	40,456	42,781	39,743	36,903	47,865
타 이 완	41,306	42,767	19,444	18,554	25,417
러 시 아	54,064	61,427	50,410	48,680	25,374
스 리 랑 카	25,828	25,064	22,466	20,291	24,912
캐 나 다	25,934	26,789	21,794	22,830	27,705
미 얀 마	28,074	29,294	26,412	26,096	33,275
방글라데시	16,641	18,340	16,823	16,426	21,928
오스트레일리아	14,279	15,222	7,913	7,591	17,819
파 키 스 탄	13,275	13,990	12,842	12,410	14,460
인 도	11,945	12,929	10,892	11,542	14,419
영 국	6,972	7,550	5,871	6,435	8,149
기 타	142,738	166,794	106,056	113,252	205,087

6. 체류자격별 체류외국인 현황

| 표 5-191 |

체류자격 \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총 계	2,367,607	2,524,656	2,036,075	1,956,781	2,245,912
사증면제(B-1)	228,194	248,753	179,332	165,869	224,817
관광통과(B-2)	149,474	204,541	51,977	43,673	100,793
단기방문(C-3)	218,743	256,696	114,261	97,225	137,642
단기취업(C-4)	1,302	1,645	2,356	1,691	1,985
유 학(D-2)	102,690	118,254	101,810	111,178	134,062
기술연수(D-3)	2,461	1,964	1,634	1,654	1,719
일반연수(D-4)	59,729	63,691	52,952	53,870	65,204
종 교(D-6)	1,594	1,561	1,254	1,378	1,471
상사주재(D-7)	1,308	1,400	1,057	1,028	1,148
기업투자(D-8)	5,889	5,909	5,587	5,955	6,822
무역경영(D-9)	2,520	2,352	2,136	2,053	2,148
교 수(E-1)	2,341	2,187	2,053	2,017	2,012
회화지도(E-2)	13,749	13,910	12,621	13,403	14,251
연 구(E-3)	3,145	3,132	3,110	3,638	4,009
예술흥행(E-6)	3,633	3,549	3,011	3,285	3,989
특정활동(E-7)	21,884	21,314	19,534	20,675	24,083
비전문취업(E-9)	280,312	276,755	236,950	217,729	268,413
선원취업(E-10)	17,447	17,603	17,552	17,921	19,874
방문동거(F-1)	118,192	122,886	105,382	96,015	105,293
거 주(F-2)	41,099	43,671	43,666	42,367	44,561
동 반(F-3)	22,360	22,890	20,050	21,237	24,917
재외동포(F-4)	444,880	464,152	466,682	478,442	502,451
영 주(F-5)	142,151	153,291	160,947	168,118	176,107
방문취업(H-2)	250,381	226,322	154,537	125,493	105,567
기 타	232,129	246,228	275,624	260,867	272,574

7. 청·사무소(출장소)별 등록외국인 현황

| 표 5-192 |

사무소 \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총 계	1,246,626	1,271,807	1,145,540	1,093,891	1,189,585
서 울	119,496	118,335	102,859	96,888	95,824
서 울 남 부	130,854	127,223	106,526	95,393	91,451
부 산	51,849	52,323	46,147	45,022	48,978
인 천	112,056	118,283	110,849	107,902	115,876
수 원	132,472	133,871	121,265	113,145	114,327
제 주	24,841	25,668	22,943	20,717	21,592
대 구	51,947	54,698	49,605	48,331	53,518
대 전	39,186	41,593	37,511	37,309	43,699
여 수	6,576	6,817	6,673	7,349	8,197
양 주	38,212	39,806	37,291	35,822	40,382
광 주	33,479	34,535	31,372	30,501	34,394
창 원	30,911	30,854	27,472	25,985	28,986
춘 천	11,808	12,196	10,924	11,045	13,044
청 주	38,148	39,114	35,610	34,564	39,543
전 주	25,647	26,973	25,496	24,509	28,138
울 산	31,295	32,239	28,081	26,427	28,326
안 산	91,433	91,164	83,680	78,935	97,165
세 종 로 (출)	67,776	69,750	61,768	60,393	69,019
구 미 (출)	13,140	13,078	12,111	12,127	13,942
포 항 (출)	8,612	8,740	8,349	8,268	9,216
천 안 (출)	39,703	41,226	37,188	36,321	40,448
서 산 (출)	8,115	8,308	7,843	7,513	8,862
고 양 (출)	23,939	24,080	22,177	21,244	23,751
목 포 (출)	14,204	15,424	14,621	14,245	17,603
거 제 (출)	7,473	8,302	6,641	5,404	5,861
군 산 (출)	5,700	6,101	5,792	5,822	6,803
평 택 (출)	43,855	45,606	43,623	43,229	45,911
김 해 (출)	21,315	21,883	19,492	18,524	20,930
기 타	22,584	23,617	21,631	20,957	23,799

8. 지역별 등록외국인 현황

| 표 5-193 |

지역 \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총 계	1,246,626	1,271,807	1,145,540	1,093,891	1,189,585
경 기	408,526	414,318	380,144	360,412	382,865
서 울	283,984	281,876	242,623	226,569	239,297
경 남	74,304	76,123	67,239	63,148	70,390
충 남	73,174	76,375	69,622	67,462	76,495
인 천	67,869	72,259	67,648	66,364	71,849
경 북	56,969	58,119	52,469	51,100	57,055
부 산	45,738	45,999	40,366	39,420	42,863
충 북	39,537	40,714	37,060	36,045	41,270
전 남	33,042	34,638	32,906	32,656	38,988
전 북	31,347	33,074	31,288	30,331	34,941
대 구	28,033	30,191	27,798	27,230	29,568
울 산	20,002	20,450	17,884	16,827	18,379
광 주	22,815	23,825	21,323	20,934	22,967
제 주	24,841	25,668	22,943	20,717	21,592
대 전	18,184	19,109	16,895	17,292	20,594
강 원	18,261	19,069	17,332	17,384	20,472

※ 충남은 세종시(5,336명) 포함

9. 연도별 외국국적동포 체류현황

| 표 5-194 |

구분 \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총 계	878,665	878,439	811,211	778,670	804,976
중 국	728,539	719,269	662,845	628,491	626,729
미 국	45,011	45,655	44,039	43,212	45,752
캐 나 다	15,933	16,046	15,975	16,731	17,899
우즈베키스탄	34,355	36,752	31,962	32,216	40,706
러 시 아	25,302	28,020	26,871	27,488	34,220
오스트레일리아	4,624	4,783	4,430	4,232	4,925
뉴 질 랜 드	2,436	2,490	2,393	2,279	2,512
카 자 흐 스 탄	12,586	14,992	13,033	13,993	19,614
독 일	841	809	787	812	874
일 본	826	852	768	706	755
기 타	8,212	8,771	8,108	8,510	10,990

10. 외국인 유학생 체류현황

| 표 5-195 |

구분 \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총 계	160,671	180,131	153,361	163,699	197,234
유 학(D-2)	102,690	118,254	101,810	111,178	134,062
한국어연수(D-41)	57,971	61,867	51,545	52,506	63,146
외국어연수(D-47)	10	10	6	15	26
증 감 률 (전년대비, %)	(18.9%)	(12.1%)	(-14.9%)	(6.7%)	(20.5%)

국가 \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총 계	160,671	180,131	153,361	163,699	197,234
중 국	68,994	71,719	52,102	49,033	59,905
베 트 남	45,143	57,539	57,945	63,492	71,038
몽 골	8,650	8,739	8,240	8,838	11,431
우즈베키스탄	7,840	10,499	9,077	9,504	11,555
일 본	2,676	2,887	2,193	3,876	5,105
인도네시아	1,520	1,461	1,342	1,561	2,339
파키스탄	1,720	1,905	1,531	1,392	1,603
인 도	1,411	1,451	1,289	1,412	1,802
말레이시아	1,075	969	724	897	1,124
미 국	1,210	1,385	861	1,285	1,676
(타 이 완)	1,354	1,108	859	960	1,383
방글라데시	1,206	1,387	1,160	1,278	1,569
러 시 아	884	965	918	1,303	1,740
네 팔	1,636	2,331	2,796	2,772	2,746
필 리 핀	659	613	452	475	694
기 타	14,693	15,173	11,872	15,621	21,524

11. 국민의 배우자 체류현황

| 표 5-196 |

연 도	2018	2019	2020	2021	2022
인 원	159,206	166,025	168,594	168,611	169,633
증감률 (전년대비, %)	(2.4%)	(4.3%)	(1.5%)	(0.01%)	(0.6%)

국가 \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총 계	159,206	166,025	168,594	168,611	169,633
중 국	58,706	60,324	60,072	59,770	59,499
베 트 남	42,460	44,172	44,058	41,447	39,136
일 본	13,738	14,184	14,595	15,074	15,366
필 리 핀	11,836	12,030	12,002	12,041	12,253
캄 보 디 아	4,496	4,641	4,638	4,565	4,641
미 국	3,658	3,883	4,312	4,538	4,801
태 국	4,411	5,130	5,929	6,558	7,506
몽 골	2,438	2,497	2,486	2,502	2,528
우즈베키스탄	2,425	2,688	2,625	2,709	2,738
캐 나 다	1,320	1,334	1,397	1,426	1,470
러 시 아	1,494	1,668	1,800	2,041	2,224
네 팔	901	884	841	834	852
파 키 스 탄	968	984	979	989	1,003
타 이 완	1,213	1,394	1,472	1,596	1,730
영 국	969	1,045	1,120	1,200	1,280
인 도 네 시 아	809	905	998	1,073	1,205
방 글 라 데 시	368	375	361	376	385
기 타	6,996	7,887	8,909	9,872	11,016

12. 연도별 국적 처리현황

| 표 5-197 |

국가 \ 연도	허가 유형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귀화	11,556	9,914	13,885	10,895	10,248
	회복	2,698	2,443	1,764	2,741	3,043
중 국	귀화	4,838	4,371	7,932	5,145	4,480
	회복	144	181	120	185	114
베 트 남	귀화	4,849	3,867	4,076	4,225	4,431
	회복	45	39	29	13	18
필 리 핀	귀화	597	423	375	241	203
	회복	7	11	7	25	11
몽 골	귀화	99	102	145	103	60
	회복	14	6	10	3	6
우즈베키스탄	귀화	72	78	138	97	119
	회복	12	6	8	12	10
일 본	귀화	17	14	15	20	30
	회복	53	41	54	86	94
태 국	귀화	58	52	68	78	89
	회복	5	3	7	6	7
파 키 스 탄	귀화	42	48	26	34	26
	회복	2	-	-	-	-
기 타	귀화	984	959	1,110	952	810
	회복	2,416	2,156	1,529	2,411	2,783

13. 연도별 난민심사 및 처리현황

| 표 5-198 |

구분 \ 연도		총계	'94~'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신청	1차	84,922	9,539	5,711	7,541	9,942	16,173	15,452	6,684	2,341	11,539
	이의 신청	38,164	4,309	3,257	5,277	3,723	3,110	4,067	5,955	4,718	3,748
심사결정	소계	83,194	9,118	6,238	10,602	9,634	6,879	9,306	11,895	10,979	8,543
	1차	51,394	5,887	4,244	6,326	5,219	4,295	5,875	8,103	5,982	5,463
	이의 신청	31,800	3,231	1,994	4,276	4,415	2,584	3,431	3,792	4,997	3,080
철회*	소계	23,941	1,653	351	815	1,245	2,412	4,264	6,230	4,003	2,968
	1차	22,465	1,529	278	735	1,197	2,305	4,138	5,929	3,693	2,661
	이의 신청	1,476	124	73	80	48	107	126	301	310	307

* 1차 심사의 경우 직권종료 처리 건 포함

※ 기준 시점에 따라 소송 결과 반영 등으로 수치 일부가 변동될 수 있음

14. 난민신청 심사결과

| 표 5-199 |

구분 \ 연도		총계	'94~'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심사완료		46,506	4,742	2,756	5,665	5,874	3,954	5,061	6,239	6,852	5,363
난민인정(보호)	소계 (보호율, %)	3,823 (8.2)	1,185 (25.0)	303 (11.0)	350 (6.2)	437 (7.4)	651 (16.5)	308 (6.1)	223 (3.6)	124 (1.8)	242 (4.5)
	인정 (인정률, %)	1,338 (2.9)	475 (10.0)	105 (3.8)	98 (1.7)	121 (2.1)	144 (3.6)	79 (1.6)	69 (1.1)	72 (1.1)	175 (3.3)
	인도적 체류	2,485	710	198	252	316	507	229	154	52	67
불인정		42,683	3,557	2,453	5,315	5,437	3,303	4,753	6,016	6,728	5,121

※ 기준 시점에 따라 소송 결과 반영 등으로 수치 일부가 변동될 수 있음

※ 인정취소 7건 및 철회 2건 포함(2013년 1건)

法務年鑑



자 료

제1절 직제
제2절 훈령·예규 및 주요지시
제3절 장관 연설문
제4절 역대 법무·검찰 간부 명단
제5절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 명단
제6절 인사
제7절 국외훈련·출장
제8절 국제교류 현황
제9절 상훈
제10절 위원회 현황
제11절 소속기관 및 단체 현황

제1절 직제

1. 직제 연혁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1	1948. 7.17.	법률 제1호	정부조직법 제정 공포	• 법무부 설치
2	1948. 9.13.	대통령령 제3호	남조선과도정부기구의 인수에 관한 건	• 과도정부 사법부(법률기초국과 법률조사국 제외)와 그 소속기관을 인수
3	1948.11. 4.	대통령령 제21호	법무부직제 제정 공포	• 1실 4국 21과 설치
4	1950. 3.31.	대통령령 제307호	법무부직제 개정	• 3국 10과로 개편
5	1954. 9. 1.	대통령령 제936호	〃	• 법무국 조사과 폐지, 소년과 신설
6	1955. 2. 7.	법률 제354호	정부조직법 개정	• 법제처를 법제실로 개칭하고 법무부에 소속시킴
7	1955. 2.17.	대통령령 제1008호	법제실직제 제정 공포	• 법제실에 제1·2국을 두고 제1국에 운영지원과를 둠
8	1960. 7. 1.	법률 제552호	정부조직법 개정	• 정무차관·사무차관 신설, 법제실을 폐지하고 그 업무를 국무원 사무국으로 이관
9	1961. 8.25.	법률 제698호	〃	• 정무차관·사무차관 폐지 기획조정관 신설
10	1961.10. 2.	각령 제177호	법무부직제 개정	• 검찰국에 출입국관리과 신설, 김포·인천·부산에 각 출입국관리사무소 설치
11	1962. 5.21.	각령 제770호	〃	• 형정국을 교정국으로, 형무과를 교정과로 각 개칭, 출입국관리과를 법무국으로, 소년과를 교정국으로 각 이관
12	1962. 7. 4.	각령 제885호	공보사무담당공무원의배치및직무에관한건 제정 공포	• 공보담당 일반직 3급갑류 1인 신설
13	1963.12.14.	법률 제1506호	정부조직법 개정	• 기획조정관실을 기획관리실로 개칭
14	1966.10.26.	대통령령 제2798호	법무부직제 개정	• 일본국 해외주재관 2명 주재
15	1967. 4.10.	대통령령 제2986호	〃	• 법무국을 법무실로 승격하고 소송수행담당관 신설
16	1967. 7. 7.	대통령령 제3139호	법무부직제 개정	• 교정국에 시설과 설치
17	1969. 3.24.	대통령령 제3829호	〃	• 기획관리실에 비상계획담당관 신설
18	1970. 2.20.	대통령령 제3900호	〃	• 비상계획담당관을 비상계획관으로 하고 그 밑에 비상계획보좌관을 둠
19	1970. 2.27.	대통령령 제4678호	〃	• 본부 각과의 계제도 폐지, 출입국관리담당관 신설. 경제기획원에 주재관(3갑) 신설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20	1970. 8.20.	대통령령 제5278호	〃	• 출입국관리담당관을 출입국관리국으로 확대 개편하고 그 밑에 입국심사과·체류심사과 설치
21	1973. 3.14.	대통령령 제6570호	〃	• 교정국장 밑에 교정기획관 신설, 비상계획관은 차관직속으로 개편
22	1973. 3.28.	대통령령 제6594호	〃	• 공보담당관(3갑)을 공보관(2갑, 2을 또는 별정직)으로 조정
23	1975. 7.16.	대통령령 제7697호	〃	• 검찰과를 검찰 제1·2·3·4과로 하고 인권옹호과를 인권과로 개편하여 법무실 이관, 출입국관리국에 기록관리과 신설
24	1976.12. 9.	대통령령 제8293호	〃	• 출입국관리국장 밑에 출입국관리심의관 신설
25	1977. 9.20.	대통령령 제8698호	〃	• 차관 밑에 감사관 신설
26	1978. 5. 2.	대통령령 제9000호	〃	• 법무실에 조사과를 신설하고 송무과를 송무제1·2과로 하며, 교정국에 보안과·직업훈련과를 신설하고 계획과를 작업지도과로 개칭
27	1981. 1. 9.	대통령령 제10160호	〃	• 보호국을 신설하고 그 밑에 보호과·조정과·심사과를 설치
28	1981.11. 2.	대통령령 제10526호	법무부직제 개정	• 송무담당관 2인을 1인으로 감축하고, 법무실의 송무제1·2과를 송무과로 통합. 검찰국장 밑에 연구검사 신설. 교정국의 교정기획관을 폐지하고 관리과를 재정과로, 직업훈련과를 교육과로 개칭. 출입국관리국의 출입국관리심의관을 폐지함
29	1982. 8.11.	대통령령 제10891호	〃	• 검사로 보하게 되어있던 실·국장 및 과장을 검사장 및 고등검찰관으로 하고, 송무담당관을 검사장으로 함
30	1983. 7.22.	대통령령 제11179호	〃	• 검사장으로 보하게 되어 있던 실·국장을 검사장 및 고등검찰관으로 하고 출입국관리국장을 일반직으로 조정하며, 법무실·검찰국·보호국 소속 과장 직급을 고등검찰관에서 고등검찰관 또는 검찰관으로 조정. 송무담당관과 조사과를 폐지하고 법무실장 밑에 법무심의관, 교정국장 밑에 교정심의관과 교화심의관을 신설하며, 비서관 직급을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으로 조정
31	1984.12.31.	대통령령 제11592호	〃	• 교정국 소속의 소년과를 보호국 소속으로 하고, 조정과를 조사과로, 심사과를 관찰과로 하며, 교정국에 경비과를 신설함. 법무심의관의 기능 일부 조정
32	1986. 4. 3.	대통령령 제11879호	〃	• 보호국장을 고등검찰관에서 검사장으로 직급 조정하고, 별정직 전산처리사 4인(6급상당 2인, 7급상당 2인)을 전산처리사 또는 별정직으로 직렬 조정
33	1986.10.11.	대통령령 제11978호	〃	• 법무실에 섭외법무심의관, 교정국에 보안제2과를 신설하고, 보안과를 보안제1과로 개편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34	1988.12. 2.	대통령령 제12553호	〃	• 교정국 시설과를 기획관리실 시설관리담당관으로 개편
35	1990.10.29.	대통령령 제13149호	법무부직제 개정	• 법무실 송무과를 송무심의관으로 개편, 섭외법무심의관을 국제법무심의관으로 명칭 변경
36	1991. 2. 1.	대통령령 제13279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법무부와 산하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던 직제를 법무부와 그소속기관직제(법무부·법무연수원·교도소·치료감호소·소년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보호관찰소·출입국관리사무소)로 통합 조정
37	1991. 9.30.	대통령령 제13483호	〃	• 교화심의관, 경비과 폐지(4개 지방교정청 신설에 따름), 출입국기획과 신설, 투자외국인관리담당관 폐지 및 입국심사과를 출입국심사과로 변경 • 서울·대구·대전·광주 지방 교정청 신설 • 영등포·수원·부산·마산교도소와 인천구치소에 분류심사과 신설 • 광주소년감별소 신설 •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관리과 및 심사과 신설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전산실 설치
38	1992. 2.15.	대통령령 제13588호	〃	• 법무실에 남·북한 통일에 대비한 관계법령 정비를 위하여 특수법령과(현 통일법무과) 신설
39	1992. 8.31.	대통령령 제13720호	〃	• 법무시설 공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시설관리담당관을 시설기획담당관과 건설관리담당관으로 확대개편 • 청송제2교도소 신설 • 서울남부·의정부·울산보호관찰지소 신설 • 서울외국인수용소와 의정부·대산출장소 신설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심사국에 조사2과, 김포·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조사과 신설
40	1993. 3.30.	대통령령 제13872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개정(출입국관리법시행령 부칙 제7조제5항)	• "외국인수용소"를 "외국인보호소"로 명칭변경 • "외국인수용장"을 "외국인보호실"로 명칭변경
41	1993. 6.28.	대통령령 제13918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개정(검사정원법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	• 법무부 기획관리실장·법무실장·검찰국장·보호국장·교정국장을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관"으로 보하던 것을 "검사장"으로, 법무실·검찰국·보호국(소년과 제외) 각 과장을 "고등검찰관 또는 검찰관"으로 보하던 것을 "검사"로, 법무실의 법무·송무·국제법무심의관을 "고등검찰관"으로 보하던 것을 "검사"로 보함 •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을 "검사장 또는 고등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검찰관"으로 보하던 것을 "검사장"으로, 기획과장 및 교관을 "고등검찰관 또는 검찰관"으로 보하던 것을 "검사"로, 연구위원 중 3인을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관"으로 보하던 것을 "검사장 또는 검사"로 보함
42	1994. 1.17.	대통령령 제1412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중앙행정기관의 중간정책관리계층을 보강하기 위하여 주요계장의 직위를 4급으로도 보할 수 있게 함(운영지원과 1, 기획예산담당관실 1, 교정과 1, 출입국기획과 1)
43	1994. 2. 5.	대통령령 제14157호	〃	• 공보관을 이사관·부이사관 2·3급 별정직 또는 검사로 보할 수 있게 함
				• 보호국의 검찰사무직중 조사과 3인(검찰사무직 또는 보도직), 관찰과 3인(검찰사무직 또는 보호관찰직)을 복수직화
				• 울산구치소 신설
44	1994. 4.30.	대통령령 제14237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법무실의 송무심의관을 송무과로 개편
				• 법무연수원의 연구위원 중 검사연구위원(3인)을 폐지하고 그 중 검사장 1인을 감축하며, 나머지 검사 2인은 교관으로 활용함
				•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관리과 및 심사과 설치
45	1994. 9.17.	대통령령 제14383호	〃	• UR협상 타결에 따른 국내법령정비의 지원 및 통상법률 관계 등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국제법무심의관실에 검사 2인을 증원
46	1995. 3.23.	대통령령 제14548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소년원법시행령 부칙 제2조)	• "소년감별소"를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명칭 변경
47	1995. 4.12.	대통령령 제1458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기능을 보강하고 실적주의에 입각한 인사관리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무부의 주요 과장 및 과장급 담당관의 직위를 3급으로도 보할 수 있도록 하고 4급 정원 중 3인(운영지원과장·교정과장·출입국기획과장)을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급으로 조정
				• 주요 기획사무를 담당하는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 정원을 확대하여 5급 정원 중 11인(공보관실·행정관리담당관실·시설기획담당관실·건설관리담당관실·법무과·검찰제1과·검찰제2과·보호과·소년과·보안제1과·출입국심사과)을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으로 조정
48	1995. 7. 8.	대통령령 제1472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출입국심사과를 입국심사과로 개편
				•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대구·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 직급 하향조정(별정직 3급상당→별정직 4급상당)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조사 3과 신설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49	1995.10.19.	대통령령 제14792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교정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하여 교정국장의 직급을 검사장에서 검사장·교정이사관 또는 교정부이사관으로 복수직화
50	1996. 6.29.	대통령령 제15064호	〃	• 보호국의 소년과를 소년제1과와 소년제2과로 개편 • 서울지방교정청에 수원구치소 및 수원구치소 평택구치지소를 각각 신설 • 대전보호관찰소에 홍성지소를 신설 • 중앙행정기관의 주요과장 및 주요계장의 복수직급화 계획에 따라 본부의 4급정원 3인을 3급 또는 4급으로, 5급정원 10인을 4급 또는 5급으로 복수직급화 하고 소속기관의 4급정원 6인을 3급 또는 4급으로, 5급정원 22인을 4급 또는 5급으로 복수직급화 • 중앙행정기관의 실무기획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6급 및 7급정원 11인을 감축하여 그중 9인을 5급으로 상향조정
51	1997. 3.20.	대통령령 제15305호	〃	• 기능직공무원 25인 감축
52	1997. 8.13.	대통령령 제15459호	〃	• 소년제1과장 직급을 3·4급 복수직급화 • 대전교도소강경구치지소를 신설하고, 인천구치소 부소장을 신설 • 대구보호관찰소에 김천지소, 대전·수원보호관찰소에 사무과·관호과 신설 • 동해출입국관리사무소를 출장소로 축소개편하고,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를 신설하며, 대구·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 관리과·심사과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과를 두고, 익산출입국관리사무소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개편 • 보호관찰, 계호, 출입국심사인력 등 222인 증원
53	1997. 8.13.	대통령령 제15462호	실무인력조정등을위한중앙행정기관등직제일부 개정	• 실무·기획인력조정 및 복수직급화로 일부 직급의 정원 조정 (6·7급 26인 감, 5급 9인 증)
54	1997. 8.23.	대통령령 제15467호	실무인력조정등을위한중앙행정기관등직제일부 개정	• 법무연수원 상임연구위원 4인(1급 2, 2급 2) 신설
55	1998. 2.28.	대통령령 제15711호 법무부령 제455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정	• 각부처의 조직운영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조직 개편방향에 따라 기존 직제의 전문개정과 함께 법무부와 그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법무부령)을 제정 • 시설기획담당관실과 건설관리담당관실을 통합하여 시설관리담당관실로 개편(정원 34인 → 26인)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 기획관리실에 여성정책담당관실(정원 7인) 신설
				• 국제법무심의관실을 국제법무과로 명칭변경하고 비상계획관을 기획관리실 소속으로 변경
				• 본부 기구개편에 따라 정원 13인 감축
				• 법무연수원 자료과를 폐지하고 분장사무를 기획과로 이관(정원 7인 감축)
				• 서울·대구·대전·광주지방교정청의 관리국·교화국 폐지
56	1998. 4. 1.	대통령령 제15765호 법무부령 제46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법무연수원에 상임연구위원 1인 증원(2급)
57	1998. 7. 1.	법무부령 제462호	〃	• 서울소년원 대덕지원 신설
58	1998.12. 7.	법무부령 제468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교정국의 교정행정 전산업무를 보안제1과 분장사무에서 교정과 분장사무로 조정
				• 출입국관리국 기록관리과를 출국심사과로 명칭변경
59	1998.12.31.	대통령령 제16006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법무연수원 기획부와 일반연수부를 기획부로 통합
		법무부령 제47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대구구치소 신설
				•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개편
				•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광양출장소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으로 조정
60	1999. 5.24.	대통령령 제16337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신설
		법무부령 제481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비상계획담당관 폐지
				• 소년분류심사원의 관호과를 교무과로 명칭변경
61	1999.12. 2.	법무부령 제488호	〃	• 출국심사과를 출국관리과로 명칭변경
				•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 도심공항 출장소 신설
62	2000. 2.28.	대통령령 제16725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규정	• 개방형임용제 실시를 위하여 교정심의관·교정연수부장·천안개방교도소장·치료감호소장·치료감호소 의료부장 및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을 계약직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함
63	2000. 3. 7.	대통령령 제16748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정보화담당관실 신설 및 보호국 조사과 폐지
		법무부령 제49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보호관찰소 서울서부·수원성남·부산서부지소 신설
				• 대덕지원을 대덕소년원으로 승격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64	2000.11.20.	대통령령 제1700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서울외국인보호소를 화성으로 이전, 화성외국인보호소로 명칭 변경
		법무부령 제499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기획검사 설치 근거규정 신설
65	2001. 3.29.	대통령령 제1716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를 인천공항으로 이전하고,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로 명칭 변경
		법무부령 제50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 도심공항출장소를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도심공항출장소로 명칭 변경
66	2001. 4.23.	대통령령 제17201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법무실에 법조인력정책과 신설
	2001. 4.24.	법무부령 제505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대구·대전·안양·광주·전주·마산·의정부·춘천교도소에출정과 신설
				•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속초출장소 신설
67	2001. 9.29.	대통령령 제1737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 및 전주보호관찰소 군산지소 신설
	2001.10.10.	법무부령 제509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수원교도소를 여주로 이전하고, 여주교도소로 명칭 변경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평택출장소 신설
68	2002. 3.25.	대통령령 제17549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규정	• 홍성교도소 서산구치지소 신설
				• 여주교도소 계호인력 29인 증원
	2002. 3.30.	법무부령 제51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홍성교도소 서산구치지소 신설에 따른 45인 증원 및 여주교도소 계호인력 29인 증원
				• 본부 공보관실 소속 촬영기사의 직급을 7급 상당에서 6급상당으로 상향조정
69	2002. 5.27. 2002. 6. 8.	대통령령 제17610호 법무부령 제52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서울소년원에 창업지원과 신설 • 보호관찰소 및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실무인력 50인 증원 • 출입국관리사무소 실무인력 16인 증원 • 광주 및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직급을 상향조정(5급 → 4급)
70	2002. 7.10. 2002. 8. 9.	대통령령 제17664호 법무부령 제52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안산의료소년원 신설 (2002. 10. 1.부)
				• 청주여자교도소를 확장함에 따라 계호인력 6인 증원
71	2002. 8.16. 2002. 8.16.	대통령령 제17715호 법무부령 제526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법무연수원 상임연구위원(관리관·이사관, 1급 또는 2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또는 검사→관리관·이사관, 1급 또는 2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고등검사장·검사장·검사)
				• 본부 교화과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과장급 직위로 정함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72	2002.11. 9.	법무부령 제527호	〃	•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 및 청주보호관찰소 충주지소 신설
73	2003. 5.15.	법무부령 제530호	〃	• 장관정책보좌관 신설 -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별정직(2급상당 또는 3급상당) 1인 -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교정감 또는 별정직 4급상당 1인
74	2003. 7.25. 2003. 8.22.	대통령령 제18054호 법무부령 제537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개정	•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감천출장소 신설 및 이에 따른 소요인력 6인 증원
75	2003. 9.29.	대통령령 제18107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법무부 개방형직위 중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직위를 출입국관리국장 직위로 대체 지정하고,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의 직업훈련교사를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함
76	2003.12. 3.	대통령령 제18148호	〃	•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2004. 1. 1.부) 및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김포출장소 신설 • 출입국심사업무에 필요한 인원 43인 증원
77	2003.12.30. 2003.12.31.	대통령령 제18195호 법무부령 제544호	〃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개정	• 충주구치소와 포항구치소 신설 및 이에 소요되는 인원 120인 증원 • 창원소년원 신설 및 이에 소요되는 인원 15인 증원
78	2004. 1.29. 2004. 2. 9.	대통령령 제18252호 법무부령 제545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개정	• 치료감호소에 약물중독재활센터 신설 및 신설에 따른 운영인력 24인 증원 • 보호관찰전담인력 45인 및 구치소·교도소의 호송·계호인력 100인 증원
79	2004. 2. 9. 2004. 2.28.	대통령령 제18275호 법무부령 제547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개정	• 법무부 본부의 정책·기획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부의 6·7급 정원 중 13명을 5급으로 조정 • 법무부 소속기관의 집행기능 강화를 위하여 7급 정원 중 58명을 6급으로 조정
80	2004. 3.22. 2004. 3.22.	대통령령 제18328호 법무부령 제548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개정	• 참여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정부혁신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44개 중앙행정기관 등에 업무혁신전담기구를 설치하게 됨에 따라, 기획관리실장 밑에 행정관리담당관을 없애는 대신 인사·조직 및 혁신업무를 담당하는 혁신인사담당관을 신설하고, 혁신인사담당관의 분장업무를 정함
81	2004. 5.24. 2004. 6.12.	대통령령 제18399호 법무부령 제55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청주외국인보호소 및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고성출장소를 신설하고, 그 실무인력 59인 증원 • 계호인력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증원된 실무인력 92인 증원
82	2004.12.31.	대통령령 제1864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 검찰에 대한 외부감찰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직속으로 감찰관을 신설하고, 일부보호감호소 및 소년교도소의 명칭을 변경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 상사실무인력 및 외국인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강화를 통하여 외국인고용 허가제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고 인천공항의 출입국심사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실무인력 보강
83	2005. 3. 2. 2005. 3.24.	대통령령 제18729호 법무부령 제56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기록연구사 6급 1인 증원 • 정책·기획업무 중심으로 실무인력구조를 재조정함으로써 정책역량의 강화와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원범위 안에서 직급조정 - 본부 : 5급 8명 증원, 6급 6명, 7급 2명 감축 - 소속기관 : 6급 49명 증원, 7급 49명 감축
84	2005. 4.15. 2005. 5. 2.	대통령령 제18876호 법무부령 제568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행정수요의 변화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 및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과단위 기구의 설치한도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는 등 관련규정 정비 • 정책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과 공보관실을 정책홍보관리실로 통합·신설하며, 홍보관리관(구 공보관) 설치 및 홍보관리관 밑에 정책홍보담당관을 설치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을 재정기획관실로 명칭변경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총 3인(4급 1인, 5급 2인)을 증원 • 성매매사범의 보호관찰실시와 외출제한명령 전면시행 등 급속한 보호관찰 영역의 확대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보호관찰소 공무원 정원 증원(2005. 7. 4.부)
85	2005. 7. 4.	법무부령 제57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성매매사범의 보호관찰실시와 외출제한명령 전면시행 등 급속한 보호관찰 영역의 확대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보호관찰소 공무원 정원 증원(150인)(2005. 8. 15.)
86	2005. 8.12. 2005. 8.12.	대통령령 제18997호 법무부령 제57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2005년도 소요정원 3인(건축주사 1, 전산주사 1, 전산주사보 1) 및 검사적격 심사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2인(검사 1, 전산주사 1) 증원하고 공무원임용령중 일부개정(2005. 5. 6.)으로 "부이사관", "기술서기관"으로 직군·직렬 통합 (검찰사무직 제외) • 포항교도소 신설, 순천교도소 소록도 지소 기관 폐지
87	2006. 2. 3. 2006. 2. 3.	대통령령 제19316호 법무부령 제581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출입국관리국 밑에 국적난민과와 외국적동포과를 신설하여 국제적 수준의 난민인정 업무와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출입국관리국의 분장사무에 이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고,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정부출장소를 의정부출입국관리사무소로 승격 • 2006년도 소요정원으로 반영된 인력 중 279인(3급 또는 4급 1, 4급 2, 5급 13, 6급 38,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7급 50, 8급 83, 9급 74, 기능직 18)과 외국국적 동포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인력 6인(4급 1, 5급 2, 6급 2, 7급 1)을 증원하는 등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과 조직을 합리적으로 조정
88	2006. 5. 3. 2006. 5. 3.	대통령령 제19465호 법무부령 제586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추진을 통하여 국제적 수준의 인권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실질적 보호·지원과 법 집행과정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법무실의 인권과를 확대 개편하여 인권국에 인권정책과등 3개과를 신설하고, 그에 따른 소요인력 13인(2·3급 1, 3·4급 1, 3·4급 또는 검사 1, 4·5급 2, 4·5급 또는 검사 1, 5급 3, 6급 2, 7급 1, 기능10급 1)을 증원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민원 폭주로 야기되는 외국인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출입국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세종로출장소를 신설하는 등 민원처리 실무인력 30인(5급 1, 6급 5, 7급 8, 8급 9, 9급 6, 기능10급 1)을 증원
89	2006. 6.12. 2006. 6.12.	대통령령 제19508호 법무부령 제588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교정공무원의 처우개선과 경비교도대원 감축에 따른 계호인력 확보 등을 위하여 2006년도 소요정원으로 반영된 교정공무원 821인(4급 4, 5급 4, 6급 85, 7급 127, 8급 303, 9급 298)을 증원하고, 7급 정원 42인을 6급으로, 8급 정원 42인을 7급으로 각각 상향 조정 • 법무연수원의 사이버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담당 인력 6인(5급 4, 7급 2)을 증원하려는 것임 •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 등의 업무를 위하여 정책홍보관리실에 성과관리팀을 신설하고, 교정국 일부 과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며, 대전교도소 논산구치지소를 대전교도소 논산지소로 하는 등 4개 구치지소의 명칭을 지소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90	2006. 6.30.	대통령령 제19596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에 따라 실·국장급 직위의 계급을 삭제하고, 실·국장급 공무원의 정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
91	2006. 8. 3.	법무부령 제59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19596호, 2006. 6. 30 공포, 2006. 7. 1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대한 직무등급 부여와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직위의 개방형 변경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92	2006.12.29.	대통령령 제19796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 총액인건비제를 전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 실시함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조직과 정원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정원을 추가로 증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계급별로 정원을 규정하는 현행 방식을 일정한 범위 안에서 총정원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일부 직급의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93	2007. 2. 1.	대통령령 제19860호	〃	• 장관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정책보좌관을 일반직·별정직공무원보다 계약직 공무원으로 우선적으로 보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전자정부 고도화 및 정보보호와 보안 등 행정수요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정보화 담당 부서의 기능 강화 및 필요인력 증원 및 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 분류체계가 개선·보완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94	2007. 5. 4. 2007. 5.10.	대통령령 제20048호 법무부령 제61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출입국관리국'을 출입국과 외국인정책에 관한 업무 총괄 수행을 위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확대개편하고, 이에 따른 소요인력 35인(고위공무원단 2, 3·4급 1, 4급 3, 4·5급 2, 5급 8, 6급 11, 7급 5, 기능직 3)을 증원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외국인보호 전담인력 28인(5급 2, 6급 6, 7급 7, 8급 8, 9급 5)을 증원하고 감사관을 폐지하여 이원화되어 있는 감찰·감사 조직을 통합하여, 감찰관 밑에 감찰기획관 및 감사기획관을 두며, 정책홍보관리실장 밑에 성과기획조정관을 설치하고, 성과기획조정관 밑에 고객만족팀을 신설하며, 여성정책담당관실의 소속과 명칭을 인권국 및 여성정책과로 바꾸며, 2007년도 소요정원으로 인정된 교정공무원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인력 400인과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승객정보사전분석시스템 관리인력 등 33인을 직제에 반영하며 교정기관의 수용규모 등을 감안하여 청송교도소와 광주교도소의 보건의료과장의 직급을 현실에 맞게 상호 조정하려는 것임
95	2007. 7.23.	대통령령 제20180호 법무부령 제615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보호국의 업무조정과 기관폐지 및 신설 및 인력재배치(광주소년분류심사원 등 7개 소년보호기관을 폐지하고 6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로 기능을 전환하고 남는 인력 213명 중 212명은 교정, 보호관찰 등에 재배정하고 1명은 감축) 등을 반영하는 한편, '07년도 3/4분기 소요정원으로 반영된 176명(보호 127, 교정 25, 출입국 16, 감사 8명)을 반영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96	2007. 8.22. 2007. 9.13.	대통령령 제20236호 법무부령 제617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대변인제 도입에 따라 홍보관리관이 대변인을 겸하고 대변인의 기능 규정
97	2007.11.30.	대통령령 제20400호 법무부령 제62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수용자의 인권신장, 새로운 교정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등 교정행정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교정사무에 관한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정국을 교정본부로 개편하고 필요 인력을 소속기관 정원에서 법무부로 재배치(고위공무원단 1, 4급 3, 5급 6, 6급 9, 7급 6, 기능10급 3) 하는 한편, 「상법」의 개정으로 전자선하증권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무실장 및 법무심의관의 소관사무를 일부 조정
98	2008. 2.29. 2008. 3. 3.	대통령령 제20674호 법무부령 제63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하기 위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을 조정하는 한편, 보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정책홍보관리관실을 기획조정실로 개편하는 등 대국(大局) 체제로 조직 및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 • 홍보관리관을 폐지하고 장관 직속 기구인 대변인으로 개편하고, 성과기획조정관을 폐지하고, 기획조정관을 신설하며, 정책홍보관리실은 기획조정실로, 총무과는 운영지원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 • 정책홍보담당관은 홍보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한 후 장관 직속 대변인 밑으로 재편하고, 재정기획관은 기획재정담당관으로, 혁신인사기획관은 창의혁신담당관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 성과관리팀과 고객만족팀을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창의혁신담당관실로 이관 •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법질서 선진화를 통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을 총괄·추진하는 법질서·규제개혁담당관실(4급·검사 1, 5급 2, 6급 2, 기능직 1)을 신설 • 교정본부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각 정책관을 정책단으로, 각 과를 팀으로 변경하고, 보호국을 범죄예방정책국으로 하는 한편, 법무실·보호국·인권국·교정국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아래의 일부 부서의 명칭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공무원 중 보호직 1명(4급)을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가능하도록 조정하고 고위공무원단 개방형직위의 수를 7개(인권국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천안개방교도소장,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치료감호소장, 치료감호소 의료부장, 서울소년원 창업지원과장)에서 4개(인권국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보안정책단장, 치료감호소장)로 조정 • 인권옹호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쉽도록 일반직(3·4급)으로 되어 있는 인권정책과장의 직급을 일반직(3·4급) 또는 검사로 복수 직급화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정책기획관(3·4급)을 폐지한 후 정책기획평가팀장의 직급을 4급에서 3·4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4급 정원 1명은 4급 또는 검사로 복수 직급화하여 신설되는 법질서·규제개혁담당관 정원으로 활용하되, 서기관 또는 교정관 정원 1명을 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변경함 • 공무원 4명(7급 1, 기능10급 3)을 감축
99	2008. 8. 7.	대통령령 제20954호 법무부령 제64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교도소의 경비업무 등을 담당하는 전투경찰·의무경찰 인력을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정규인력으로 전환함에 따라 필요한 교정공무원 118명(7급 24, 8급 47, 9급 47)을 증원하는 한편, 교정본부장의 분장사무 중 수형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교육교화팀장의 분장사무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신설된 수형자 사회복귀지원 관련 사무를 사회복귀지원팀장이 분장하도록 하는 등 교정본부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인의 접근편의성을 고려하여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등 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관할구역을 조정
100	2008.10.22.	법무부령 제648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행정직 5급 정원 중 1명을 행정·기술직 5급으로, 기술직 6급 정원 중 1명을 행정·기술직 6급으로 각각 복수직화하여 인사운영의 탄력성을 제고
101	2008.12.31.	대통령령 제21209호 법무부령 제656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이 2단계로 축소됨에 따라 해당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대한 직무등급을 재배정 • 국민들이 보다 알기 쉽도록 인권국의 구조지원과의 명칭을 인권지원과로 변경,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사무의 지휘·감독 기능을 검찰국 형사기획과에서 인권국 인권지원과로 이관 •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시스템의 운영과 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위치추적관제센터 설치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소년법」에 따른 결정전조사와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법률」에 따른 청구전조사에 관한 사항을 보호관찰과장의 분장사무로 추가 • 인권국장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보직범위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서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확대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을 인권정책과장의 분장사무로 추가 • 교정기획팀장 수행기능 중 교정행정 정보화 및 전산장비 운영·관리에 관한 기능을 수용기획팀장에게 이관 • 서울지방교정청에 교정업무 관련 전산프로그램의 개발·운영·관리 등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는 전산관리과를 신설 • 서울소년원의 하부조직 중 기능1이관 등에 따라 업무가 축소된 창업지원과를 폐지한 후 소년보호교육에 필요한 컨텐츠 개발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교육정보관리과 신설 • 보호관찰기관의 관할구역 광역화해소를 위해 안양·영월·공주·제천·상주·거창·해남 지역에 7개의 보호관찰지소를 신설 • 감찰기능 수행강화를 위해 정원 4명을 소속기관에서 본부 감찰담당관실로 이체, 치료감호소의 정보화시스템 운영을 위해 정원 1명을 본부에서 소속기관으로 이체
102	2009. 1.29.	법무부령 제658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대통령령 제21209호, 2008. 12. 31. 공포·시행)으로 인권국장의 보직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개방형 직위인 인권국장 직위를 자율 직위로 변경, 치료감호소 의료부장의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대체
103	2009. 3.18. 2009. 3.19.	대통령령 제21350호 법무부령 제66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9168호, 2008. 12. 26. 공포, 2009. 3. 27. 시행)으로 한국갱생보호공단의 명칭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변경, 관련 규정 정비,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서면의결이 가능한 경우를 가석방·임시퇴원의 취소결정, 보호관찰 가해제의 취소결정 등으로 구체화
104	2009. 5.25.	대통령령 제21502호 법무부령 제667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창의혁신담당관을 행정관리담당관으로, 법질서·규제개혁담당관을 법질서담당관으로, 시설관리담당관을 시설담당관으로 각각 명칭 변경 • 법조인력정책과를 법조인력과로 명칭 변경 • 공공형사과를 공안기획과로 명칭 변경 • 사회보호정책과를 보호법제과로, 소년보호과를 소년과로, 법문화진흥팀을 법교육팀으로 각각 명칭 변경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 여성아동과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인권정책과, 인권지원과를 인권구조과로, 인권옹호과를 인권조사과로 변경 • 교정본부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각 팀을 과로 변경, 교육교화팀 폐지, 기능을 사회복귀과로 이관, 경비정책팀 폐지, 보안과로 기능 이관, 외국적 동포팀 폐지, 기능을 사회통합과로 이관, 국제이민협력팀 폐지, 기능을 출입국 심사과로 이관, 급증하는 국적민원 업무적체 해소를 위한 실무인력 5명(5급 1, 6급 2, 7급 2) 증원 • 수형자의 사회복귀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을 소장으로 하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신설 하부조직으로 총무과 등 8개과를 설치, 운영인력 110명(3·4급 1, 5급 8, 6급 16, 7급 18, 8급 45, 9급 15, 기능 7) 증원 • 8호 처분 여자 소년원생의 교육 내실화 및 사회복귀지원 강화를 위해 청주소년원을 신설하고 전담인력 10명(6급 4, 7급 2, 8급 4) 증원 • 보호관찰기관의 관할구역 광역화 해소 및 현장 밀착 지도·감독을 위해 영덕·밀양·남원보호관찰지소를 신설,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관련 전담 수행인력 61명(6급 19, 7급 21, 8급 21) 증원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난민과를 신설하고 그 실무인력 7명(5급 1, 6급 2, 7급 2, 8급 2) 증원, 출입국관리기관의 일부 부서명칭의 변경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동향조사인력 40명(6급 7, 7급 20, 8급 13)과 출입국심사인력 37명(7급 14, 8급 16, 9급 7) 증원.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의 개정에 따라 법무부 및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정원을 계약직으로 보할 수 있게 변경
105	2009. 7. 6.	법무부령 제675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교정기관 부서명칭을 핵심업무가 부각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간결한 명칭으로 변경, 지방교정청의 5급 과장 직위와 소속기관의 3·4급 또는 4·5급 과장 직위를 상호 이체 • 외국인수형자에 대한 처우 및 1통역지원을 위해 천안소년교도소에 국제협력과를 신설 • 천안소년교도소 천안지소를 폐지 천안소년교도소에 통합, 중복인력을 전환·재배치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임 • 보호관찰기관의 관할구역 조정을 통해 현장밀착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높임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106	2009. 7.17.	법무부령 제676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위를 개방형직위에서 삭제,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
107	2009.12.31.	대통령령 제21946호 법무부령 제68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영월·해남교도소, 밀양구치소 등 3개 교정시설의 신설에 따른 운영 인력 134명과 「사회복무제도 개선계획」(2007. 7. 10 국무회의 보고)에 따른 경비교도대 대체인력 235명, 국가송무시스템 전담인력 3명 등 총 372명을 증원 • 기능직공무원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시행)됨에 따라 법무부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45명을 일반직공무원 45명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능직공무원 직렬의 명칭 변경 사항 등을 반영
108	2010. 8. 2.	대통령령 제22313호 법무부령 제712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본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및 청주보호관찰소 영동지소 등 기구 신설과 벌금 대체 사회봉사명령 집행인력 55명 등 총 109명 증원
109	2010.10.18.	대통령령 제22453호 법무부령 제72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사회복무제도 개선계획」(2007. 7. 10. 국무회의 보고)에 따른 경비교도대 대체 인력 235명과 교정시설 수용자 의료처우 인력 18명, 영월·해남교도소 및 밀양구치소 정상 운영을 위한 실무인력 78명, 출입국 안산출장소 및 천안출장소 신설에 따른 운영인력 8명 등 총 339명 증원
110	2011. 5. 4. 2011. 5.11.	대통령령 제22917호 법무부령 제74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법질서담당관실(기획조정실)과 법교육팀(범죄예방정책국) 통폐합, 법질서선진화과(범죄예방정책국) 신설(9. 1. 시행) • 행정관리담당관실 성과·고객업무 분장, 성과고객팀 신설(9. 1. 시행) • 영등포구치소·영등포교도소→서울남부구치소·서울남부교도소로 명칭변경 • 「성폭력 범죄자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2011. 4. 16.)에 따른 본부 보호관찰과 성폭력범 신상공개 인력 2명, 교정심리치료센터 운영인력 16명, 특정범죄자 전자감독 확대에 따른 실무인력 21명,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수강명령 집행인력 7명, 구미·고양 등 2개 신설 출입국 출장소 운영인력 4명 등 총 40명 증원 ※ 교정기관 전화상담원 10명 감축 •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개방형직위에서 공모형직위로 변경, 본부 홍보담당관 개방형직위 지정 •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 총액인건비제 시행(2014. 4. 30.까지)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111	2011. 5.30.	대통령령 제22937호 법무부령 제742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사이버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보안인력 3명 증원
112	2011. 8.23.	법무부령 제747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사무기능직렬 48명을 일반직으로 전환(기능9급 4, 기능10급 44 → 9급 10, 8급 37, 7급 1)
113	2011.10.10. 2011.10.13.	대통령령 제23211호 법무부령 제75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서울역출장소 신설 및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김포출장소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로 승격 • 대구보호관찰소 김천지소를 대구보호관찰소 구미지소로 명칭 변경 • 경북직업훈련교도소와 경북북부제3교도소 분류심사과를 대구구치소 및 청주여자교도소 분류심사과로 이관(2012. 1. 1. 시행) • 법조인력과 변호사시험 시행인력 4명, 국제법무과 외국법자문사 관리인력 2명, 보호관찰과 성충동약물치료 집행 등 중간관리 인력 1명, 경비교도대 대체 계호 인력 235명, 교정기관 의료처우 개선인력 16명, 성폭력 범죄자 치료·재활 인력 6명, 신설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 운영인력 9명, 성충동 약물치료 집행 전담인력 4명, 신설 서울역출입국출장소 운영인력 1명, 김포출입국출장소 사무소 승격에 따른 운영 및 심사인력 5명,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심사 인력 3명 등 총 286명 증원 • 천안개방교도소장 : 고위공무원 → 4급, 경북북부제1교도소장 : 3·4급 → 고위공무원, 창원교도소장 : 4급 → 3·4급으로 직급 조정(2012. 1. 1. 시행) • 본부 대변인실 "온라인대변인" 지정 근거 신설
114	2012. 3.26. 2012. 3.30.	대통령령 제23675호 법무부령 제768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서울서부·북부보호관찰지소 보호관찰소 승격, 울산출입국출장소 사무소 승격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4개 신설 및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 신설 • 재정업무 담당인력 2명, 전문 감사인력 1명,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운용 및 관리인력 1명, 교화방송센터 운영 인력 1명, 남북법률통합 실질화사업 추진인력 2명 등 7명 증원 • 조사인력 10명, 전자감독 확대 시행인력 11명 및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사설 인력 24명 등 45명 증원 •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인력 17명, 4부제 개편 소요 인력 28명, 교정직 직급구조 개선 인력 2명 등 47명 증원 • 지문관리점담 운영인력 6명, 울산출장소의 사무소 승격에 따른 필요 인력 3명, 복수국적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허용 심사인력 2명, 청주공항 활성화에 따른 심사인력 2명, 핵안보 정상회의 관련 심사인력 21명 등 34명 증원 • 급여인력 감축 30명 감원 • 체류조사과 → 이민조사과로 명칭변경 • 사회통합과 → 이민통합과로 명칭변경
115	2012. 6.10. 2012. 7.12.	대통령령 제23857호 법무부령 제776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제주공항 심사인력 10명 증원
116	2012. 9.10. 2012.10.22.	대통령령 제24116호 법무부령 제779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전자발찌 비상출동 전담인력 43명, 성폭력사범 지도감독 인력 19명, 재범방지를 위한 밀착 보호관찰 인력 75명, 경비교도대 대체 인력 235명 증원
117	2013. 1. 8.	법무부령 제782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사무기능직렬 28명을 일반직으로 전환(기능9급 28 → 7급 4, 8급 17, 9급 7)
118	2013. 3.23. 2013. 3.23.	대통령령 제24115호 법무부령 제787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기획조정관, 비상계획관 → 정책기획관, 비상안전기획관으로 각각 명칭 변경 • 성과고객팀 폐지 • 정보팀 → 이민정보과 변경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국 폐지 및 총무과 신설 • 공통지원부서 정원 6명 감축(5급 1, 6급 2, 7급 1, 8급 1, 기능9급 1)
119	2013. 5.22. 2013. 6.12.	대통령령 제24537호 법무부령 제79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난민과를 국적과와 난민과로 분리 •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를 신설하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위치를 경기도 과천시로 변경 • 개인정보보호 담당인력 등 본부 정원 15명 및 소속기관 정원 125명 증원
120	2013. 9.17. 2013.10. 1.	대통령령 제24732호 법무부령 제80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행정관리담당관 → 창조행정담당관으로 명칭 변경 • 여성아동인권과 신설 • 치료감호소 및 소년원 등의 하부조직 중 '서무과'를 '행정지원과'로 명칭 변경 • 춘천·전주·순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신설 • 정부3.0 전담 및 협업과제 추진 인력 등 본부 정원 11명, 소속기관 정원 26명 증원 • 사무기능직렬 16명을 일반직으로 전환(기능9급 16 → 7급 6, 8급 7, 9급 3) • 안전행정부(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로 정원 이체(기능8급 △1)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121	2013.11. 5. 2013.11.13.	대통령령 제24829호 법무부령 제801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정읍교도소, 상주교도소 신설 • 정읍·상주교도소 신설 인력 등 소속기관 정원 257명 증원
122	2013.12.12. 2013.12.12.	대통령령 제24949호 법무부령 제802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기능직공무원 폐지 및 일반직 전환 : 1,098명(7급 25, 8급 56, 9급 1,017) • 계약직공무원 폐지 및 별정직 전환 : 2명 • 별정직공무원 일반직 전환 : 160명 • 통합정원 감축 95명(5급 3, 6급 15, 7급 19, 8급 24, 9급 34) • 홍보 담당 인력 1명(4·5급) 증원
123	2014. 4. 1.	법무부령 제816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서울보호관찰소 전산실 → 범죄예방정보화센터로 개편 – 범죄예방정책국 소속기관의 정보화 관련 업무 통합에 따른 업무분장 조정 • 총액인건비제 운영 출입국관리사무관(12명) 존속기한 연장 • 관리운영직군 일반직 전환 : 9급 9명 → 7급 2명, 8급 4명, 9급 3명
124	2014. 8.27. 2014. 9. 4.	대통령령 제25565호 법무부령 제82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서울·부산·광주보호관찰소 특정범죄자관리과 신설 • 부산동부·울산·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신설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인력 등 본부 7명,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신설 인력 등 소속기관 49명 정원 증원 및 직급 상향 55명 • 별정직공무원 일반직(임기제) 전환 : 5명(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 • 통합청주시 출범에 따라 청주보호관찰소의 관할 구역에 '청원군'을 삭제
125	2015. 1. 6. 2015. 1. 6.	대통령령 제25973호 법무부령 제83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과 신설 •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당진출장소,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무안공항출장소 신설 • 출입국관리인력 22명, 치료감호소 의료인력 15명 등 소속기관 정원 37명 증원 • 소속기관 정원 본부 이체(6급 1, 7급 1) • 통합정원 감축 85명(5급 2, 6급 11, 7급 14, 8급 25, 9급 33) • 관리운영직군 일반직 전환 : 관리운영직군 119명 → 행정직군 1명, 기술직군 118명 • 개방형직위 규정 정비(국장급 2개 직위 → 실·국장급 7개 직위 범위내)
126	2015. 2.26. 2015. 2.27.	대통령령 제26117호 법무부령 제839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신설 : 대외연수과, 운영지원과 신설, 과명칭 변경(교정연수부 운영과 → 교정훈련과) 및 기구폐지(연구위원△1, 연구개발팀△1) •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관리인력 6명, 용인분원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신설 인력 13명 등 소속기관 정원 19명 증원 • 직급 상향 : 본부 5 → 4·5급 2명, 소속기관 5 → 4·5급 1명, 7 → 6급 31명 •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과 → 사범과로 변경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규정 신설
127	2015. 5.26. 2015. 5.28.	대통령령 제26263호 법무부령 제84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범죄예방정책국 특정범죄자관리과 신설 •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 조사대 신설 • 개인정보보호 인력 1명, 특정범죄자관리과 인력 6명 등 본부 정원 7명 및 교정기관 의료인력 4명, 소년보호기관 호송인력 9명, 특정범죄자 관리 인력 23명 등 소속기관 정원 57명 증원 • 직급 상향 : 본부 5 → 4·5급 2명, 소속기관 4 → 3·4급 1명, 5 → 4·5급 4명, 6 → 5급 13명, 7 → 6급 31명 • 관리운영직군 일반직 전환 : 관리운영직군 25명 → 행정직군 4명, 기술직군 21명 • 교정기관 임기제공무원 대체 정원 확대(의무직 5급 8명 → 13명)
128	2015.11.30. 2015.12. 1.	대통령령 제26675호 법무부령 제857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사이버보안 관리 역량 강화 인력 본부 정원 1명 증원(4·5급) • 소년보호기관 임기제공무원 대체 정원 확대(의무직 5급 6명 → 7명) • 과장급 개방형직위 변경(난민과장, 치료감호소 신경과장·특수치료과장 → 군산교도소 의료과장, 치료감호소 일반정신과장·사회정신과장)
129	2015.12.30. 2015.12.30.	대통령령 제26782호 법무부령 제86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전자비자센터 신설 • 국고손실 환수송무 인력 2명 등 본부 정원 2명 및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전자비자센터 인력 2명, 공항 및 크루즈터미널 심사 인력 66명,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인력 9명 등 소속기관 정원 77명 증원 • 통합정원 감축 85명(5급 3, 6급 15, 7급 9, 8급 25, 9급 33) • 관리운영직군 일반직 전환 : 관리운영직군 32명 →행정직군 2명, 기술직군 30명 •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평택출장소 → 평택항만출장소, 오산출장소 → 평택출장소로 변경
130	2016. 2.29. 2016. 3. 2.	대통령령 제27001호 법무부령 제86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지원과·교육운영과, 대전·대구보호관찰소 특정범죄자 관리과 신설 • 아동인권보호 전담 본부 정원 1명 및 치료감호소 병동 운영 인력 12명,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지원과·교육운영과 신설 인력 9명 등 소속기관 정원 21명 증원 • 기구 신설, 정책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한 직급 상향 16명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131	2016. 5.10.	대통령령 제2713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김해출장소 신설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과 신설
	2016. 5.10.	법무부령 제867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김해·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김해공항·김포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각각 명칭변경 • 감찰담당 본부 정원 2명 및 교정기관 수용자 의료개선 인력 4명,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과 신설 인력 4명 등 소속기관 정원 12명 증원
132	2016. 9. 5.	대통령령 제2748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 교정본부 심리치료과, 서울지방교정청 분류 센터 신설
	2016. 9. 5.	법무부령 제87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지방교정청 의료분류과·직업훈련과→보안과·사회복귀과로 통폐합 • 교정본부 및 교정기관 인력재배치 337명 • 직급상향 20명
133	2016.10.11.	대통령령 제2754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보안관리과 신설
	2016.10.11.	법무부령 제877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신설 인력 12명,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보안관리과 신설 인력 20명, 크루즈 심사 인력 15명 등 소속기관 정원 69명 증원
134	2016.12.27.	대통령령 제27685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 통합정원 감축 85명 • 관리운영직군 28명 일반직 전환
	2016.12.30.	법무부령 제88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치료감호소 및 외국인보호소 직렬 조정 8명
135	2017. 2.28.	대통령령 제27876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 민원 담당 본부 정원 2명 및 보호관찰소 치료명령제도 운영 인력 37명, 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인력 30명 등 소속기관 정원 96명 증원 • 정책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한 직급상향 28명 • 한시조직(법무연수원 대외연수과) 존속기한 연장(2017. 2. 28. → 2019. 2. 28., 2년) 및 정원 1명 감축
	2017. 2.28.	법무부령 제889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136	2017. 4.28.	법무부령 제90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총액인건비제 존속기한 연장(2017. 4. 30. → 2020. 4. 30., 3년)
137	2017. 5. 8.	대통령령 제28021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 한시조직(범죄예방정책국 특정범죄자관리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 존속기한 연장(2017. 5. 31. → 2019. 5. 31., 2년)
	2017. 5.24.	법무부령 제901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138	2017. 6.20.	대통령령 제28118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 소속기관 명칭 변경(성동구치소 → 서울동부구치소)
	2017. 6.20.	법무부령 제90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교정기관 수용자 관리 및 급식운영 인력 26명, 소년원 정신질환 소년원생 교육 인력 15명,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 심사 및 불법체류 외국인 조사 인력 14명 등 소속기관 정원 79명 증원 • 인력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직급 상향 1명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139	2017. 8. 1.	대통령령 제28225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 3개 실국장 직위(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의 보임범위 확대(검사 → 검사 또는 일반직고위공무원) • 본부 하부조직 명칭 변경(창조행정담당관 → 혁신행정담당관)
	2017. 8. 1.	법무부령 제905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140	2017.10.20.	대통령령 제28396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 국장급 이하 39개 직위의 보임범위 확대(검사 → 검사 또는 일반직)
	2017.10.20.	법무부령 제909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141	2017.10.31.	대통령령 제28402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2국, 입국재심2과, 심사13, 심사14, 심사15과 신설
	2017.10.31.	법무부령 제91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기구 신설(1국 4과) 인력 198명 증원
142	2017.11.16.	법무부령 제91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본부 임기제 보임범위 확대(23명 → 45명)
143	2017.12.29.	대통령령 제2852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 한시조직(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전자비자센터) 존속기한 연장(2017. 12. 31. → 2019. 12. 31., 2년)
	2017.12.29.	법무부령 제91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임기제 정원 1명 신설
144	2018. 2.20.	대통령령 제2866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 신설기구 정규화(2개 부서) 및 존속기한(2개 부서) 연장
	2018. 2.20.	법무부령 제919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정규화 : 대전 및 대구보호관찰소 특정범죄자 관리과 - 존속기한 연장 :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지원과·교육운영과(2018. 2. 28. → 2020. 2. 28., 2년)
145	2018. 3.30.	대통령령 제28736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 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 및 관찰과 신설 • 상사분야 법령 정비 등 본부 정원 11명 및 출입국기관 출입국심사 및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인력 107명, 교정기관 수용자 관리 및 급식운영 인력 98명, 소년원생 교육·관리 인력 50명 등 소속기관 정원 263명 증원 • 본부 하부조직 명칭 변경(법질서선진화과 → 보호정책과) • 소속기관 하부조직 개편 - 신설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호송과 - 폐지 :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연구개발과 • 한시조직(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과) 존속기한 연장(2018. 4. 30. → 2020. 4. 30., 2년) 등
	2018. 3.30.	법무부령 제921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146	2018. 4. 9.	법무부령 제922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규정에 감찰관 직위를 추가
147	2018. 5. 8.	대통령령 제2887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 소속기관 명칭 변경 - 19개 출입국관리사무소 → 6개 출입국·외국인청, 13개 출입국·외국인사무소
	2018. 5.10.	법무부령 제926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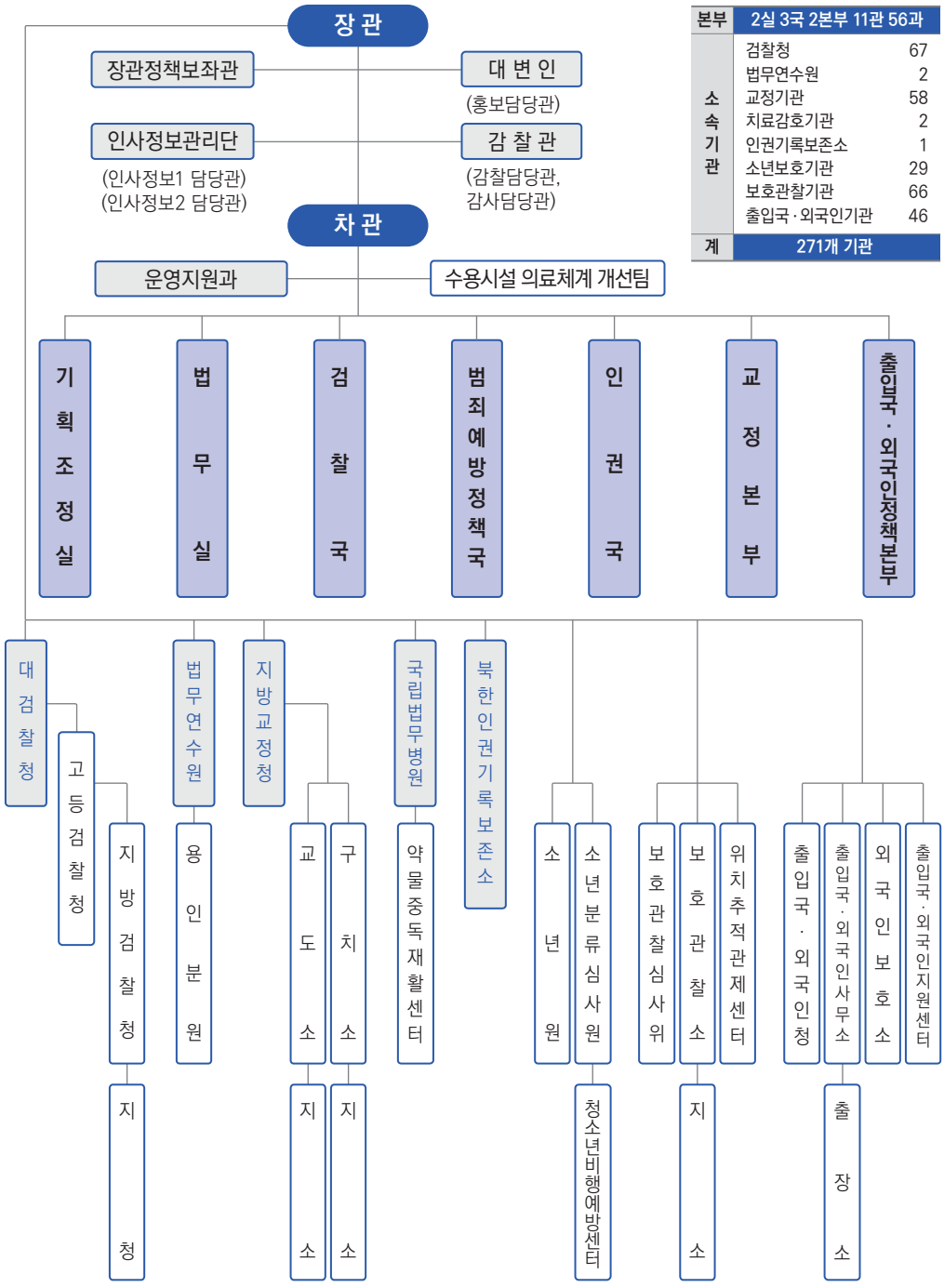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148	2018. 5.31.	법무부령 제929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규정에 법무심의관 직위를 추가
149	2018. 6.26. 2018. 6.26.	대통령령 제28994호 법무부령 제93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본부 하부조직 명칭 변경 – 보호법제과 → 치료처우과 – 소년과 → 소년보호과 • 신설기구 정규화(2개 부서) – 본부 심리치료과, 서울지방교정청 분류센터
150	2018.10. 2. 2018.10. 4.	대통령령 제29207호 법무부령 제938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교정기관 수용자 관리 인력 30명 증원 • 신설기구 정규화(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보안관리과)
151	2018.12. 4. 2018.12. 4.	대통령령 제29326호 법무부령 제941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출입국기관 출입국 체류센터 관리 인력 5명 증원
152	2018.12.31. 2018.12.31.	대통령령 제29442호 법무부령 제94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보호관찰소 전자감독 전담 인력 30명, 출입국기관 출입국심사 및 난민심사 인력 21명 등 소속기관 정원 51명 증원 • 검찰국 과장 2개 직위의 보임범위 확대(검사 → 일반직 또는 검사) • 평가대상 조직(법무연수원 대외연수과) 평가기간 연장(2019. 2. 28. → 2020. 2. 28., 1년) 등
153	2019. 2.26. 2019. 2.26.	대통령령 제29569호 법무부령 제946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청주소년원 의무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조사과 신설 • 수용자 경계강화, 야간근무교대 개선 등을 위한 인력 375명 증원 • 평가대상 정원 320명 추가
154	2019. 5. 7. 2019. 5. 7.	대통령령 제29733호 법무부령 제95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신설 및 신설기구 평가대상에 추가 •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을 신설기구 평가대상에서 제외 • 개방형직위 변경 – 치료감호소 일반정신과장 → 신경과장
155	2019. 7.29.	법무부령 제955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추가 지정 •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대외연수과를 법무교육과로 명칭변경
156	2019. 8.13. 2019. 8.13.	대통령령 제30040호 법무부령 제956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법무부 공안기획과를 공공형사과로 명칭변경 • 법무부 검찰국 내 공안사건 관련 업무내용 수정 • 소속기관 특정범죄자관리과를 전자감독과로 명칭변경 • 서울소년원 교육정보관리과 폐지, 호송과 신설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157	2019.12.24.	대통령령 제30275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전자비자센터를 신설기구평가대상에서 제외
	2019.12.31.	법무부령 제96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교정기관 의무직 4급 공무원 정원축소 및 4·5급 공무원 정원 확대
158	2020. 2.25.	대통령령 제30451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 인권침해 조사인력, 국제분쟁 대응인력 등 본부 인력 9명, 야간교대근무 인력 등 소속기관인력 519명 증원
	2020. 2.25.	법무부령 제969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강원북부교도소,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 의정부·천안보호관찰심사위원회 신설, 소속기관 하부조직 14과 신설 등
159	2020. 4.28.	대통령령 제3063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 평가대상조직으로 설치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난민과를 평가대상에서 제외
	2020. 4.28.	법무부령 제971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출입국 소속기관 총액인건비활용 관련 존속기한 3년 연장
160	2020. 6.30.	법무부령 제97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벤처형조직 '범죄예방데이터담당관' 신설
161	2020. 8. 5.	대통령령 제30911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 송무심의관 신설, 행정소송과 이체 신설 • 국제분쟁대응과 신설
		법무부령 제979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직제에 규정되어 있던 실·국장 보좌기관 관련 사항을 직제 시행규칙으로 이관
162	2020.10. 7.	대통령령 제3109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 대체복무제 시행 관련 제도 운영인력 8명 증원
		법무부령 제985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20년 3분기 소요정원으로 야간교대근무 인력 등 80명 증원
163	2020.12.29.	대통령령 제31302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 소년수용자 관리, 전자감독 관련 평가대상 정원 68명을 대상에서 제외
	2020.12.30.	법무부령 제99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체류외국인 관련 평가대상 정원 90명의 평가기간을 1년 연장 •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에 따라 '특정 범죄자 전자감독' 용어 삭제 • 부산·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하부조직 명칭변경 교육지원과 → 법체험연수과 교육운영과 → 비행예방교육과
164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 사무 기타 → 사무와 그 밖의 수발 → 접수·발송 피복 및 급양 → 의복 및 음식 제증명 → 각종 증명 기타 형사정책 → 그 밖에 형사정책 수용관리·교정·교화·교화 기타 → 수용관리·교정·교화나 그 밖의
165	2021. 2.25	대통령령 제31476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 차세대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인력 등 본부 인력 5명 증원
	2021. 3. 2..	법무부령 제1002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전자감독 전담인력 등 196명 증원, 대전소년원 직급상향(5급2→4.5급2)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 치료감호소 하부 조직 명칭 변경 특수치료과 → 정신재활치료과 • 전자감독 대응 인력 101명 등 평가대상 정원 201명 추가 •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리과, 조사과 신설 • 평가대상조직으로 설치한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체험연수과 평가대상에서 제외
166	2021. 7. 1.	법무부령 제1012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특별사법경찰관 직무사항 신설 • 벤처형조직 '외국인정보빅데이터과' 신설 • 벤처형조직 소관 이관 및 부서명칭 변경 기획조정실 범죄예방데이터담당관 →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데이터과 • 공업직 정원 조정 및 전환 배치
167	2021.11.23.	대통령령 제32139호 법무부령 제1017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대체복무요원 교육시설 운영·관리 인력 등 본부 정원 4명 증원 • 대체복무요원 복무관리 및 야간교대인력 135명 등 소속기관 정원 137명 증원 • 검찰공무원 정원 4명 법무연수원으로 이체 • 교도소 등 교대근무인력 관련 평가대상 정원 156명 평가대상에서 제외 및 정규직화 • 대전소년원 하부 조직 명칭 변경 교무과 → 의료재활과
168	2021.12.14.	대통령령 제32204호 법무부령 제1019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데이터분석 및 활용 강화를 위한 기획조정실장 분장사무 조정 • 데이터 관련 업무 전담 본부 인력 2명 증원 • 법무부 본부 평가대상 조직(양성평등정책담당관) 평가기간 연장(2021. 12. 31. → 2023. 12. 31.) 등 • 소년수용자 관리 평가대상 정원 47명을 대상에서 제외 • 전자감독, 소년보호관찰 관련 평가대상 정원 99명의 평가기간을 2년 연장 • 공업직 전환 배치
169	2022. 2.22.	대통령령 제31476호 법무부령 제102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법무부 교정시설 감염병 예방·대응 강화 인력 등 3명 증원 • 수용자 처우개선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 관리 인력 등 168명 증원 • 법무부 정원 8명을 법무부 소속기관으로 정원 이체 • 일부 보호관찰소 및 출입국·외국인관성의 구역과 위치를 현행화 등 반영
170	2022. 5. 9.	대통령령 제32629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 신설조직의 성과평가결과의 평가기간란 삭제
171	2022. 5.31.	법무부령 제1028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법무부에 설치한 범죄예방데이터과 및 직급상향으로 운영하고 있는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인력 5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 • 서울지방교정청 대체복무교육센터의 평가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 등 반영
172	2022. 6. 7.	대통령령 제32668호 법무부령 제1029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인사정보관리단장, 인사정보1담당관, 인사정보2담당관 신설 및 이에 필요한 인력 20명 증원
173	2022. 6.27.	대통령령 제32718호 법무부령 제103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법무연수원에 두는 연구위원(검사 5명) 증원 • 치료감호소의 명칭을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
174	2022. 8. 4.	법무부령 제1031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법무부에 2025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소년범죄예방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5명을 직급을 조정하여 배정 등 반영 • 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 조사과 미설치 기관 업무분장 기준 조정 • 보호관찰심사위원회 관할구역 조정 •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업무 담당 기관 확대(6개→18개)
175	2022. 9.30.	법무부령 제1035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평가대상으로 설치한 난민심의과의 평가기간을 2024년 9월 30까지 2년 연장 반영
176	2022.11. 1.	대통령령 제32969호 법무부령 제1036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거창구치소 신설 및 제주교도소 증축에 따른 필요인력 103명 증원 반영
177	2022.12.29.	대통령령 제33165호 법무부령 제104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법무부에 법률구조기구 간 연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 법무부 소속기관에 구치소·교도소 등 교정기관 수용동의 교대근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등 131명 증원과 법무부의 정원 7명과 법무부 소속기관의 정원 103명 등 각각 감축 반영 • 평가대상 정원 평가기간 연장 체류외국인 관리 등 154명→1년 연장 성인보호관찰 52명→1년 연장 소년수용자 관리 42명→2년 연장 보호외국인 관리 및 퇴거전담 50명→1년 연장 항만 국경관리 33명→2년 연장

2. 조직도



본부	2실 3국 2본부 11관 56과	
소속기관	검찰청	67
	법무연수원	2
	교정기관	58
	치료감호기관	2
	인권기록보존소	1
	소년보호기관	29
	보호관찰기관	66
	출입국·외국인기관	46
계	271개 기관	

3. 정원 변동표

구분 \ 연도	1948	1949	1950	1951	1952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총 계	4,473	4,621 (+148)	4,569 (−52)	4569	4,569	4,504 (−65)	4,504	4,474 (−30)	4,556 (+82)	4,083 (−473)	3,862 (−221)	3,862	3,952 (+90)	4,403 (+451)	4,438 (+35)	4,872 (+434)	4,976 (+104)	5,197 (+221)	5,354 (+157)	6,440 (+1,086)	6,677 (+237)	6,905 (+228)
본 부		148	148	148	148	83 (−65)	83	53 (−30)	53	68 (+15)	68	68	68	170 (+102)	177 (+7)	199 (+22)	189 (−10)	189	232 (+43)	269 (+37)	314 (+45)	318 (+4)
검찰청 검 사	163	163	163	163	163	163	163	163	190 (+27)	190	190	190	190	190	220 (+30)	220	243 (+23)	243	300 (+57)	300	300	300
검찰청 일반직등	586	586	534 (−52)	534	534	534	534	534	589 (+55)	589	589	589	589	904 (+315)	903 (−1)	996 (+93)	1,089 (+93)	1,089	1,089	1,273 (+184)	1,338 (+65)	1,388 (+50)
교도소 (구치소, 감호소 포함)	3,372	3,372	3,372	3,372	3,372	형무소 3,372	3,372	3,372	3,372	2,914 (−458)	2,790 (−124)	2,790	2,840 (+50)	2,837 (−3)	2,836 (−1)	3,089 (+253)	3,089	3,229 (+140)	3,229	3,979 (+750)	4,066 (+87)	4,216 (+150)
소년원	126	126	126	126	126	126	126	126	126	96 (−30)	96	96	136 (+40)	164 (+28)	164	181 (+17)	181	250 (+69)	250	363 (+113)	397 (+34)	397
출입국관리 사무소 (외국인보호소 포함)																49 (+49)	47 (−2)	59 (+12)	116 (+57)	118 (+2)	124 (+6)	148 (+24)
법무연수원	조선형 무관학교 226	226	226	226	226	226	226	226	226	형무관학교 226	129 (−97)	129	129	138 (+9)	138	138	교도관학교 138	138	138	138	138	138

구분 \ 연도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총계	7,035 (+130)	7,568 (+533)	7,526 (−42)	8,024 (+498)	8,257 (+233)	8,556 (+299)	9,589 (+1,033)	9,938 (+349)	10,664 (+726)	10,995 (+331)	11,538 (+543)	13,210 (+1,672)	13,431 (+221)	13,561 (+130)	13,820 (+259)	13,967 (+147)	14,255 (+288)	15,216 (+961)	15,708 (+492)	18,847 (+3,139)
본부	332 (+14)	256 (−76)	245 (−11)	248 (+3)	210 (−38)	291 (+81)	295 (+4)	295	350 (+55)	355 (+5)	360 (+5)	426 (+66)	420 (−6)	430 (+10)	429 (−1)	429	444 (+15)	444	444	444
검찰청 검사	300	343 (+43)	343	360 (+17)	377 (+17)	377	417 (+40)	417	473 (+56)	473	473	467 (−6)	497 (+30)	527 (+30)	557 (+30)	587 (+30)	587	667 (+80)	707 (+40)	747 (+40)
검찰청 일반직등	1,388	1,457 (+69)	1,457	1,473 (+16)	1,539 (+66)	1,565 (+26)	1,565	1,866 (+301)	2,024 (+158)	2,161 (+137)	2,309 (+148)	2,996 (+687)	3,165 (+169)	3,266 (+101)	3,372 (+106)	3,489 (+117)	3,647 (+158)	3,904 (+257)	4,067 (+163)	4,886 (+819)
교도소 (구치소, 감호소 포함)	4,312 (+96)	4,772 (+460)	4,753 (−19)	5,179 (+426)	5,292 (+113)	5,554 (+262)	6,474 (+920)	6,474	6,776 (+302)	6,921 (+145)	7,185 (+264)	8,076 (+891)	8,076	8,074 (−2)	8,092 (+18)	8,092	8,092	8,447 (+355)	8,574 (+127)	10,780 (+2,206)
소년원 (분류심사원, 치료감호소 포함)	397	427 (+30)	425 (−2)	425	484 (+59)	484	484	532 (+48)	625 (+93)	652 (+27)	676 (+24)	684 (+8)	695 (+11)	695	749 (+54)	749	769 (+20)	998 (+229) 치료감호소 195포함	998	1,047 (+49)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 포함)	168 (+20)	175 (+7)	166 (−9)	202 (+36)	218 (+16)	218	279 (+61)	279	340 (+61)	357 (+17)	455 (+98)	475 (+20)	492 (+17)	479 (−13)	531 (+52)	531	581 (+50)	621 (+40)	783 (+162)	795 (+12)
법무연수원	138	138	137 (−1)	137	137	67 (−70)	75 (+8)	75	76 (+1)	76	80 (+4)	86 (+6)	86	90 (+4)	90	90	135 (+45)	135	135	148 (+13)

구분 \ 연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총 계	20,270 (+1,423)	21,211 (+941)	21,795 (+584)	21,931 (+136)	22,213 (+282)	22,603 (+390)	23,161 (+558)	23,427 (+266)	23,436 (+9)	23,360 (−76)	23,736 (+376)	23,981 (+245)	24,376 (+395)	24,788 (+412)	25,334 (+546)	25,809 (+475)	27,137 (+1,328)	28,067 (+930)	28,262 (+195)	29,091 (+829)
본 부	459 (+15)	467 (+8)	498 (+31)	491 (−7)	479 (−12)	479	488 (+9)	473 (−15)	455 (−18)	446 (−9)	436 (−10)	453 (+17)	453	455 (+2)	455	479 (+24)	507 (+28)	594 (+87)	590 (−4)	605 (+15)
검찰청 검 사	787 (+40)	827 (+40)	867 (+40)	907 (+40)	947 (+40)	987 (+40)	1,037 (+50)	1,087 (+50)	1,137 (+50)	1,207 (+70)	1,287 (+80)	1,287	1,357 (+70)	1,427 (+70)	1,507 (+80)	1,587 (+80)	1,627 (+40)	1667 (+40)	1,752 (+85)	1,847 (+95)
검찰청 일반직등	5,288 (+402)	5,823 (+535)	5,984 (+161)	6,095 (+111)	6,222 (+127)	6,424 (+202)	6,575 (+151)	6,607 (+32)	6,612 (+5)	6,520 (−92)	6,689 (+169)	6,715 (+26)	6,873 (+158)	7,029 (+156)	7,175 (+146)	7,336 (+161)	7,468 (+132)	7,685 (+217)	7,681 (−4)	7,769 (+88)
교 도 소 (구치소, 감호소 포함)	11,254 (+474)	11,515 (+261)	11,784 (+269)	11,778 (−6)	11,898 (+120)	11,901 (+3)	12,165 (+264)	12,216 (+51)	12,287 (+71)	12,245 (−42)	12,245	12,308 (+63)	12,388 (+80)	12,508 (+120)	12,700 (+192)	12,751 (+51)	13,748 (+997)	14,162 (+414)	14,280 (+118)	14,757 (+477)
소 년 원 (분류심사원, 치료감호소 포함)	1,185 (+138)	1,278 (+93)	1,293 (+15)	1,293	1,293	1,354 (+61)	1,354	1,396 (+42)	1,380 (−16)	1,368 (−12)	1,371 (+3)	1,371	1,392 (+21)	1,407 (+15)	1,431 (+24)	1,299 (−132)	1,298 (−1)	1,092 (−206)	1,092	1,102 (+10)
출 입 국 관 리 사 무 소 (외국인보호소 포함)	870 (+75)	870	930 (+60)	929 (−1)	937 (+8)	1,006 (+69)	1,062 (+56)	1,099 (+37)	1,060 (−39)	1,068 (+8)	1,154 (+86)	1,266 (+112)	1,282 (+16)	1,331 (+49)	1,390 (+59)	1,476 (+86)	1,551 (+75)	1,619 (+68)	1,619	1,702 (+83)
법 무 연 수 원	148	148	150 (+2)	149 (−1)	147 (−2)	147	156 (+9)	156	99 (−57)	99	99	99	99	99	99	99	105 (+6)	105	105	105
보 호 관 찰 소 (보호관찰심사위원회 포함)	279 (+279)	283 (+4)	289 (+6)	289	290 (+1)	305 (+15)	324 (+19)	393 (+69)	406 (+13)	407 (+1)	455 (+48)	482 (+27)	532 (+50)	532	577 (+45)	782 (+205)	833 (+51)	1,143 (+310)	1,143	1,204 (+61)

구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총 계	29,738 (+647)	30,077 (+339)	30,620 (+543)	30,883 (+263)	30,968 (+85)	31,099 (+131)	31,513 (+414)	32,070 (+557)	32,607 (+537)	33,076 (+469)	33,741 (+665)	34,133 (+392)	34,427 (+294)
본 부	611 (+6)	623 (+12)	630 (+7)	647 (+17)	654 (+7)	656 (+2)	666 (+10)	668 (+2)	679 (+11)	697 (+18)	752 (+55)	763 (+11)	772 (+9)
검찰청 검 사	1,942 (+95)	1,942	1,942	1,942	1,942	2,032 (+90)	2,112 (+80)	2,182 (+70)	2,252 (+70)	2,292 (+40)	2,292	2,292	2,292
검찰청 일반직등	7,873 (+104)	7,883 (+10)	7,941 (+58)	7,870 (−71)	7,899 (+29)	7,910 (+11)	8,224 (+314)	8,337 (+113)	8,444 (+107)	8,493 (+49)	8,482 (−11)	8,480 (−2)	8,453 (−27)
교도소 (구치소, 감호소 포함)	15,088 (+331)	15,345 (+257)	15,623 (+278)	15,839 (+216)	15,850 (+11)	15,756 (−94)	15,701 (−55)	15,732 (+31)	15,860 (+128)	15,963 (+103)	16,338 (+375)	16,504 (+166)	16,668 (+164)
소년원 (분류심사원, 치료감호소 포함)	1,122 (+20)	1,128 (+6)	1,148 (+20)	1,146 (−2)	1,169 (+23)	1,181 (+12)	1,196 (+15)	1,238 (+42)	1,291 (+53)	1,339 (+48)	1,417 (+78)	1,425 (+8)	1,437 (+12)
출입국·외국인기관 (외국인보호소 포함)	1,738 (+36)	1,751 (+13)	1,789 (+38)	1,800 (+11)	1,809 (+9)	1,903 (+94)	1,946 (+43)	2,197 (+251)	2,330 (+133)	2,439 (+109)	2,551 (+112)	2,568 (+17)	2,576 (+8)
법무연수원	105	105	105	105	107 (+2)	124 (+17)	131 (+7)	130 (−1)	130	130	130	134 (+4)	138 (+4)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심사위원회 포함)	1,259 (+55)	1,300 (+41)	1,442 (+142)	1,534 (+92)	1,538 (+4)	1,537 (−1)	1,525 (−12)	1,574 (+49)	1,609 (+35)	1,711 (+102)	1,767 (+56)	1,955 (+188)	2,079 (+124)
북한인권기록보존소							12 (+12)	12	12	12	12	12	12

제2절 훈령·예규 및 주요지시

1. 훈 령

번호	일자	제 목	주 요 내 용	비 고
1399	1. 17.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	• 직원 및 이용자 등에게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및 사건처리 절차 등의 매뉴얼 마련 • 자원봉사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난민정책과
1400	1. 14.	보호소년 교육지침	• 소년원 기능별 분류인 '인성교육과정'과 교과목으로서의 '인성교육' 관련 조문이 같은 장에 혼재되어 있어, 관련 조문을 보다 쉽게 찾고 전체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편제 개편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 및 내용의 이해도와 가독성 제고를 위한 조문과 용어 정비	소년보호과
1401	1. 14.	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처우 및 교육에 관한 지침	• 감염병 등 불가피한 교육 중단으로 인한 미수료 방지 등 특수단기 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교육의 중지·재개 및 수료기한 관련 조문 신설	소년보호과
1402	1. 18.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 채용 신체검사 개선, 특별휴가 신설, 타법 개정사항 반영 등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성범죄·음주운전 징계기준 마련 등 비위 사실에 대한 제재를 강화	혁신행정담당관실
1403	2. 3.	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	• 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대해 명확하게 규율하기 위해 제명을 「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분류 및 처우지침」에서 「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으로 변경 • 보호소년등의 의료처우 향상을 위해 의무관 설명의무 및 순회진료, 외부진료 허가 절차 정비	소년보호과
1405	2. 14.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기본규정	•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자치조직 구성, 명칭 변경 등 개정	이민통합과
1406	2. 11.	법무부 미래성장을 위한 이민정책위원회 규정	• 법무부 이민정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법무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는 미래성장을 위한 이민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마련	출입국·이민관리체계개선추진단
1408	3. 1.	보호소년 처우지침	• 인권적 처우 강화를 위해 입원 시 권리·의무 고지, 회복적 생활지도를 위한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심신안정실 수용 조항 정비 • 생활실의 종류 명확화, 수용정지·재개 유형 추가, 포상에 따른 가산점 중복 부여 방지 등 개선·보완	소년보호과
1409	3. 7.	법무부 감시정 관리·운용 지침	• 승선 검색 업무에 활용할 법무부 감시정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출입국심사과
1410	3. 17.	검사장 등의 청 운영상황 보고에 관한 지침	•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이 신설(2022. 3. 1.)됨에 따라 남양주지청장의 청 운영상황 보고 시기를 정하여 반영	검찰과

번호	일자	제 목	주 요 내 용	비 고
1412	3. 30.	법무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법무부에 설치하는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혁신행정담당관실
1413	4. 13.	보호직 공무원의 조사관 자격 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 조사제도론 분야 일부 과목 변경(제2조 정의) – '판결전조사제도론', '청구전조사제도론' → '조사제도론', '범죄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 '조사 평가도구 활용' • 법령명 변경(제3조 조사관 및 전문조사관의 직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인용 조문 수정(제3조의 8 조사관 및 전문조사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조사 또는 분류심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조사 또는 분류심사 • 명칭 변경(제8조 조사관 자격 인정을 위한 교육)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 응시 자격 수정(제12조 전문조사관 응시 자격) – 제12조 제1항 제3호(조사 또는 분류심사 업무 담당자) 삭제	보호관찰과
1414	4. 14.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훈령	• 기술연수(D-3) 비자발급을 위한 한국어능력시험 지정 기준 개선 • 통역요원 자격 인정기준 완화	체류관리과
1415	4. 25.	보호직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운영지침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치료감호소' 명칭을 '국립법무병원'으로 수정(제2조) • 연간 1인 교육훈련시간을 90시간에서 '「법무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따른 연간 교육훈련시간'으로 수정(제4조) • 상반기 공무원 정기인사 이동 시기를 감안하여 '연간 교육훈련 계획' 수립 기한을 매년 '1월 20일'에서 '2월 10일'로 수정	범죄예방기획과
1416	4. 28.	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 법무행정 정보화의 효율적 추진 및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절차 등 규정	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
1417	4. 29.	법무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 원칙 및 기준 제시 등	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
1419	5. 19.	법무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2. 5. 19.자로 시행됨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감사담당관실
1420	5. 18.	범죄예방정책국 보고사무지침	• 정보보고 보고대상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 중인 중요 및 특이 사건'을 조문 13호로 신설 •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치료감호소장'을 '국립법무병원장'으로 수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수정	범죄예방기획과
1421	5. 24.	코로나19 교정시설 긴급대응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교정시설 고위험군 중점관리 체제의 안정적인 정착 등 코로나19 대응 전략의 고도화를 위해 코로나19 교정시설 긴급대응단 존속 기한을 7개월 연장하기 위해 일부개정	코로나19 긴급대응단
1422	5. 26.	교정본부 보고사무지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정비 • 신설된 심리치료 및 대체복무대원 관련 사항, 소속기관, 근로자 명칭 변경 등 사항을 반영	교정기획과

번호	일자	제 목	주 요 내 용	비 고
1423	6. 20.	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	• APEC 기업인 여행카드 발급 조건을 「ABTC 국제운영표준」에 맞도록 개정 • 회원국 방문 목적, 방문 횟수 등 개선방안 반영	출 입 국 심 사 과
1424	6. 17.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보고사무지침	• 별표 '기관장 감독보고 시기' 중 폐지기관(안산출장소) 삭제 및 신설기관(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추가	출 입 국 기 획 과
1425	6. 20.	교정직 공무원의 강사 등 자격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 강사 자격 인정 분야 확대 • 강사 명칭 변경(강사의 정의를 '교정교육 전문강사'로 변경)	사 회 복 귀 과
1426	6. 20.	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 능력·실적, 전문성 중심의 적재적소 배치를 위해 보호직 5급 직위분류표 및 보직관리 규정 개정 • '360° 역량진단' 대상인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비보직 5급 이상 피평가자에 대한 시행 근거 마련	범 죄 예 방 기 획 과
1427	7. 7.	연구업무수당 지급규칙	• 직렬에 관계없이 업무 담당 법무부 공무원에게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범위 현실화	소 년 보 호 과
1428	7. 5.	국립법무병원 의류 및 침구 제식규칙	• '치료감호소'에서 '국립법무병원'으로 기관 명칭 변경	치 료 처 우 과
1429	7. 5.	국립법무병원 주·부식 급여규칙	• '치료감호소'에서 '국립법무병원'으로 기관 명칭 변경 • 기관 명칭 변경에 따라 기존 '치료감호소장'을 '국립법무병원장'으로 변경	치 료 처 우 과
1430	7. 5.	국립법무병원 직원 지급품 규칙	• '치료감호소'에서 '국립법무병원'으로 기관 명칭 변경 • 기관 명칭 변경에 따라 기존 '치료감호소장'을 '국립법무병원장'으로 변경	치 료 처 우 과
1431	7. 5.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 준칙	• '치료감호소'에서 '국립법무병원'으로 기관 명칭 변경 • 기관 명칭 변경에 따라 기존 '치료감호소장'을 '국립법무병원장'으로 변경	치 료 처 우 과
1435	8. 1.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 외국인 등 방문조사 시 주거권자나 관계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 조사 개시 및 단속 활동 보고서에 적법절차 준수사항 기재	이 민 조 사 과
1436	7. 21.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민간위원 위촉시 성비 기준을 마련하고, 성 비위 사건 관련 징계위원회 회의 구성을 개선하는 등 「공무원징계령」 개정사항 반영	혁 신 행 정 담 당 관 실
1437	7. 22.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	• 제명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서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여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공보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규정이라는 점을 명확히 함 • 수사 종결 단계에서 '공익을 위하여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제11조) • 국민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언론의 수사기관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쟁점 다수·사안 복잡한 중요사건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차장검사 등 사건 담당자가 직접 공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제5항) •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정해진 서식의 공보자료 배포 외에 구두·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식의 공보도 허용함(안 제15조) •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의결사항을 각급 검찰청의 장(長) 승인사항으로 변경함으로써 공보지연을 방지하고	형 사 기 획 과

번호	일자	제 목	주 요 내 용	비 고
			공보에 대한 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10조 제4항, 제11조 제2항 제2호 등) • 오보에 대한 반론은 해당 언론을 통해 하도록 한 언론중재법 등 규정의 취지와 보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약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소제기 전 검찰의 공보에 대한 피의자 측의 반론이 있는 경우 검찰에서 같은 방식으로 그 반론을 공개하도록 하는 피의자의 반론권을 폐지함(안 제9조 제1항)	
1438	7. 26.	보호관찰소의 명칭 병행 사용에 관한 지침	• 2022년 8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함)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재검토 기한 재설정	보호관찰과
1439	7. 29.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 보호소년의 인권보호 및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 소환 시 검사 또는 수사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해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소년보호과
1440	8. 28.	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	•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따라 중복되는 이해충돌방지 관련 자체 규정 정비(제5조 규정 삭제)	감사담당관실
1441	9. 1.	법무부 소관 국가정보 자료관리 세부시행규칙	•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해당 규칙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는 '재검토기한' 규정	이민정보과
1442	9. 5.	공직자등록재산조사단 운영규정	• 공직자재산등록 심사결과 허위등록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어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으로부터 법무부장관이 조사를 의뢰받은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구성과 운영 및 조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	감찰담당관실
1443	9. 5.	법무·검찰공무원의 부조리 신고 등에 대한 보상 및 포상 지침	• 법무·검찰공무원의 부조리관련신고에 관한 사항의 접수·처리 및 보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	감찰담당관실
1444	9. 16.	법무부 교정시설 감염병관리 지원단 운영 규정	• 법무부 교정본부에 감염병 관련 자문위원회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의료과
1445	10. 1.	법무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국민권익위원회 이첩·송부사건의 조사결과 통보 의무 규정, 징계 및 행정처분권자의 신고자 책임감면 근거 마련,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사유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2021. 4. 20.) 및 같은 법 시행령(2021. 10. 19.)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만료 예정인 재검토기한 재설정	감사담당관실
1446	9. 28.	북한인권자료 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평가심의회 표결 관련 단서 삭제, 위원회 운영과정의 민주적 정당성 제고	북한인권기록보존소
1448	11. 4.	법무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 「법무부 성과관리 운영규정」상의 [별표2] 평가군 운영, [별표3] 평가군별 평가자에 관한 사항 및 [별표7] 상위조직 평가점수 반영 기준을 개정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맞춰 현행화 • 교도소 지소, 구치소 지소를 본소의 '과'단위로 평가하던 것을 '지소 평가군' 단위로 분리	혁신행정담당관실
1449	11. 7.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제29조의3에 따라 인구감소, 지역별·산업별 인력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등 당면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근거 마련	출입국·이민관리체계개선추진단

번호	일자	제 목	주 요 내 용	비 고
1451	12. 1.	법무부 소속 공무원 임용권 및 임용시험실시권 위임규칙	• 상위 법령 개정(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및 우리 부 직제 개정(소속기관 명칭 변경) 등을 반영	혁신행정담당관실
1453	12. 16.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법무부에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팀'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수용시설 내 의료 정책의 발전적 변화를 모색하고 마약류의약품 오남용 예방, 의료인력 부족 문제 등에 대한 실질적 개선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수용자 인권 보호 및 시민사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팀"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교정기획과
1454	12. 23.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의 운용규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혁신행정담당관실
1455	12. 28.	법무부 위임전결규정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변경사항 반영 및 일부 위임전결사항 조정	혁신행정담당관실

2. 예 규

번호	일자	제 목	주 요 내 용	비 고
1287	1. 25.	국적업무처리지침	• 천재지변 등 긴급 상황 시 별도 형식에 따른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 근거 마련 • 장애인 등 특별배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국적취득요건 완화	국 적 과
1288	2. 3.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 지침	• 수기장부 폐기에 따른 교정정보시스템 입력 사항 및 절차 변경 • 중복교육 방지를 위한 집중인성교육 면제 대상자 변경 • 교정시설 비치도서 관리 프로그램 변경 • 수용자 우송·차입 도서 반입 규정 신설 • 수용자의 봉함 편지 개봉 이유 정비 • 방송반응도 조사의 보고 일자를 연중 2회 이상으로 변경	사 회 복 귀 과
1289	2. 3.	수용자 사회복귀 지원 등에 관한 지침	• 사회적응훈련원의 기능전환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 컴퓨터·인터넷을 사용하는 중간처우대상자 확대에 따른 관련 근거 규정 변경 • 중간처우대상자 처우 확대를 위한 단계별 기간 조정 및 처우 사항 변경	사 회 복 귀 과
1290	2. 3.	교정위원 운영지침	• 교정참여 우수활동 인사의 교정위원 신규위촉시 참여활동실적 기간 예외 사유 인정 • 교정위원 재위촉시 교화활동 기간 폭넓게 인정 • 교정위원 기본교육 규정 신설	사 회 복 귀 과
1291	3.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송사무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침 • 기존 예규의 존속기한 만료 전에 그 기한을 개정하여 훈령을 계속 시행	국 가 소 송 과
1292	3. 2.	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 처리지침	• 국가배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배상업무의 신속·적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침 • 기존 예규의 존속기한 만료 전에 그 기한을 개정하여 훈령을 계속 시행	국 가 소 송 과
1293	2. 28.	보관금품 관리지침	• 보관금 월단위 검사 방식 개선, 예탁금통장 등 현금출금 시 내부통제 방식 개선 및 보관금 관리·감독 책임성 강화 내용 반영	복 지 과
1295	4. 1.	교정사고 유형별 문책기준 지침	• 낮은 수준의 도주방지시설을 갖춘 개방시설 및 중간처우시설에서 수용자의 자율적 활동이 보장된 수용처우 시행 중 발생한 도주사고와 교정시설 외부에서 실시하는 사회적 처우 과정에서 발생한 도주사고 관련 문책기준을 신설하고, 공무원 징계 관련 상위 법령에 맞게 용어 정비, 그 밖에 교정사고 문책 업무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교 정 기 획 과
1296	4. 6.	심리치료 업무지침	• 수용자 전문상담체계 전면 개편에 따른 근거 규정 마련 •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기준 등 마련 • 스토킹사범에 대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기준 등 마련 •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일부 문구 수정	심 리 치 료 과

번호	일자	제 목	주 요 내 용	비 고
1297	4. 14.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관련 업무처리지침	• 인권위 권고에 수용 의견의 이행계획에 대해서도 ①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안이 중대하거나, ②최근 1년간 유사사례가 존재하거나, ③이행계획의 제도 개선이 권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면 인권국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인 권 정 책 과
1298	6. 2.	교정시설 내 이수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규정	• 이수명령 이행지시 재불응 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과태료 결정 • 이의제기 시 관할법원 통보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 미납 시 가산금 부과 • 가산금 미납 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심 리 치 료 과
1300	6. 22.	수용자 인권업무 처리 지침	• 면전진정 신청서 및 진정취하서 양식을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 인권국에서 사용하는 양식으로 변경함 (별지 서식 변경)	분 류 심 사 과
1301	6. 22.	법무부 업무포털 운영지침	• 시스템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기본사항 규정	정보화데이터 담 당 관 실
1302	7. 5.	국립법무병원 자문위원회 규정	• '치료감호소'에서 '국립법무병'으로 기원관 명칭 변경	치 료 처 우 과
1303	6. 29.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의 법률명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개정 • 용어 정의 관련 지침은 용어별로 구분하여 규정 • 직업훈련 실장 임명 근거 명확화 • 직업훈련지도 보조원 선정 범위 확대 • 직업훈련 만족도 조사 시기 관련 규정 변경 • 기능경기 입상자의 작업점수 평가 범위를 명시하여 적정성 확보	직 업 훈 련 과
1304	7. 18.	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 민간위원 자격을 확대하고, 고충심사 결정 기한 연기 시 서면 의결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개정 사항 반영	혁신행정 담 당 관 실
1305	9. 5.	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처리지침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령」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감 찰 담 당 관 실
1306	10. 11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	•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난 민 심 의 과
1307	11. 15.	합작법무법인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 겸직허가 지침	• 합작법무법인과 합작참여자 간의 구성원 겸직 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	국 제 법 무 과
1308	11. 17.	법무부 민방위 경보 발령 전달 규정	•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 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비 상 안 전 기 획 관 실
1309	11. 22.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	•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한 서울남부·인천·수원·대구·부산지검 5개 검찰청의 필수보직기간을 2년으로 변경하고, 2023년 정기 인사부터 적용하되, 3년청 제도 시행 당시 위 5개 검찰청으로 전보된 검사들이 3년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검찰인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필수보직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도록 함	검 찰 과

번호	일자	제 목	주 요 내 용	비 고
1310	12. 22.	민영교도소 운영경비 회계 등에 관한 지침	•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관운영경비" 과 목 중 "공공요금 및 제세" 세 목 항목의 지출기준 "화재보험료, 자동차세·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화재보험료, 자동차세·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그 밖의 제세공과금"으로 개정하여 일반회계 중 공공요금 및 제세의 지출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분 류 심 사 과
1311	12. 28.	국적업무처리지침	• 종합평가 불합격시 1년내 응시기회 2회 제한 규정 폐지 • 특별귀화 신청자 중 특별배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면접심사 요건 완화	국 적 과

3. 주요지시

일자	제 목	주 요 내 용	수신처	비 고
1. 3.	2022년 순회점검 실시계획 시달	• 2022년 순회점검 실시계획 시달 및 각 지방교정청 2022년 정기 순회점검 실시계획 수립·보고 지시	무	교 정 기 획 과
1. 3.	2022년도 심리치료 주요 추진정책 알림 및 인프라 강화 지시	• 심리·상담 관련 유자격자 심리치료과(센터·팀)에 우선 배치 및 상담실·교육실 등 심리치료 전용시설·설비 조성	무	심 리 치 료 과
1. 7.	2022년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지침 개정 알림	• 컴퓨터기반평가 도입, 맞춤형교육과정 개설, 사회참여형 교육 확대, 평가응시 수수료 변경 사항 등 개정지침 시달 및 직무교육 실시	기	이 민 통 합 과
1. 12.	제20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신고 등에 관한 협조요청 시달	• 2022. 3. 9. 시행 제20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 신고 등에 관한 협조요청 시달	무	보 안 과
1. 19.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교정시설 대응 전략 등 시달	•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비 세부 대응 전략을 수립 시행	무	코로나19 긴급대응단
1. 20.	2022년 설연휴 기간 복무기강 확립 및 교정기관 운영 종합계획 시달	• 설 연휴 기간 복무기강 확립, 교정시설 운영 종합계획 시달 및 자체 세부 시행계획 수립·시행 지시	무	교 정 기 획 과
1. 21.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 철저 지시	• 개인정보 불법유출로 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 철저 지시	기	이 민 정 보 과
1. 27.	수용자 자녀지원팀 운영 계획(안) 시달	• 부모의 입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자 자녀에게 민·관 협력을 통한 신속한 지원 방안 마련 • 수용자 자녀지원팀 전국 확대 운영, 매월 정기회의	무	사 회 복 귀 과
2. 4.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재보궐선거 거소투표신고 및 투표 등 선거업무 지침 시달	• 2022년 3. 9. 시행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거소투표신고 및 선거업무 지침 시달	무	보 안 과
2. 9.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영장 집행 시 유의사항 송부	• 피의자 등을 상대로 한 각종 영장 집행 시 영장 제시 외에 사본 교부 의무화	무	보 안 과
2. 11.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재·보궐선거 거소투표신고 등 선거업무」 철저 지시	• 거소투표신고 대상자 재확인 지시 • 거소투표신고자 이송 금지(코로나19 확진자 포함) • 거소투표신고기간 후 입소자의 선거권 보장	무	보 안 과
2. 22.	제15회 세계인의 날 기본계획 알림 및 미담사례 발굴 보고 지시	• 제15회 세계인의 날(2022. 5. 20.) 기본계획 시달 및 미담사례집 발간을 위한 관내 이민자 미담사례 보고 지시	본부 각 과, 출입국· 외국인기관	이 민 통 합 과
2. 23.	빌딩형 교정시설 기계환기설비 시범운영 지시	• 빌딩형 교정시설의 감염병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기계환기설비 설치	시범운영 기관	의 료 과
2. 28.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 특별체류 조치 지시	• 우크라이나 현지 정세불안 상황을 고려,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을 대상으로 특별체류 조치 시행	기	체 류 관 리 과
3. 2.	기간제 근로자(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채용 지시	• 코로나19(오미크론) 급증에 따른 선제적 PCR검사, 감염병 예방조치 강화 및 의료인력 인력난 해소를 도모	무	교 정 기 획 과

일자	제 목	주 요 내 용	수신처	비 고
3. 4.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 개정 시달	•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수용구분 조정 내용 현행화 • 법원 등의 개원과 교정시설 신축 등으로 변경된 수용구분 반영 • 인권보호를 위한 대용감방 인수 반영	무	보 안 과
3. 7.	강풍·산불 대비 시설물 점검 및 화재예방 활동 강화 지시	• 강풍 등 대비 취약 시설물 점검 실시 • 화재예방 활동 강화 • 산불 관련 피해 상황 보고	무	보 안 과
3. 7.	고위험군 수용자 중점관리 체제 세부 시행 계획 시달	• 고위험군 수용자를 중점관리군 등으로 이원화하고 집중 관리하여 위중증 및 사망 예방 • 의심 증상 발현 등의 유증상자 중심으로 관리 • 접견 등 수용자 처우는 정상적으로 실시	무	코로나19 긴급대응단
3. 7.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교육비 지원 추천 등 업무처리 지침 제정 및 시행 알림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특별기여자 자녀 대상 교육비 지원 추천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 제정	본부 각 과, 출입국·외국인기관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정부합동지원단
3. 8.	우크라이나 동포 사증발급절차 간소화 조치 시행	•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사증발급 간소화를 통해 국내 입국 신속 지원	기, 재외공관	체 류 관 리 과
3. 17.	비상근무자 초과근무수당 확대 관련 안내	• 코로나19 대응 등 비상근무자 초과근무수당 확대 관련, 실질적인 비상근무 인원 엄선, 비상근무 수행 여부 확인 등 복무관리 철저 지시	무	교 정 기 획 과
3. 22.	음주운전 사례 전파 및 유의사항 시달	• 음주운전 사례 및 인사상 불이익 기준 등 전파를 통해 음주운전 근절 재강조	무	교 정 기 획 과
3. 28.	교정시설 내 무인비행장치(드론) 불법침투 사례 전파 및 대응 철저 지시	• 통신장비(TRS 등)을 통한 신속한 상황전파 및 순찰 강화 • 상황별 대응 요령 전파 • 전 직원 관련내용 교육 실시	무	보 안 과
4. 1.	고위험군 수용자 중점관리 체제 시행에 따른 자비구매 공급 정상화 지시	• 고위험군 수용자 중점관리 체제 '전면시행'에 따라 수용자 자비구매물품 공급 정상화 지시	무	교 정 기 획 과
4. 1.	「재입국허가 등 업무처리 지침」 개정	• 국가 방역체계 개편에 따라, '20.6.부터 중단된 '재입국허가 면제' 재개	기, 재외공관	체 류 관 리 과
4. 5.	심층면접관제도 도입 등 가석방 제도 개선방안 시달	• 선정 최저기준 완화, 심사제외 대상 최소화 등 심사기회 공정성 제고, 심층면접관 제도 등을 도입하여 가석방심사의 내실화 도모	무	분 류 심 사 과
4. 6.	교정이송전담반 선설 및 운영 계획(안) 시달	• 교정이송전담반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업무 범위 및 절차를 규정하여 원활한 운영 도모	무	보 안 과
4. 13.	대체복무요원 종교활동 개선 방안	• 복무기관 내 종교행사 및 외출을 통한 종교행사 개선 • 외부 종교활동은 외출 정원 범위(50%)를 적용하지 않되, 종교활동에 필요한 시간만 부여	무	교 정 기 획 과
4. 15.	보호장비 사용 관련 행정절차 개선방안 시달(통보)	• 「보호장비 사용 관련 개선사항('20. 7.)」 시행 이후 제도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현실적 문제에 대한 재검토로 합리적 운영방안 마련	무	보 안 과

일자	제 목	주 요 내 용	수신처	비 고
4. 18.	2022년도 제57회 경상남도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알림	• 주최 : 고용노동부, 경상남도, 경상남도 교육청 • 기간 : 2022. 8.29.(월) ~ 9.5.(월), 8일간 • 직종 : 자동차정비 등 53개 직종	무	직업훈련과
4. 2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업무 지침 시달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전국 교정시설 거소투표 신고서 및 안내문 수요 파악	무	보안과
4. 27.	의료과 중식시간 비상대기조 편성 및 숙직체계 운영 계획 시달	• 중식시간 비상대기조 편성 및 중식 수당 지급, 여성간호사 숙직 등을 통한 교정시설 내 24시간 응급의료체계 구축	무	의료과
5. 9.	교정기관과 보호관찰소 간 화상조사 전면시행 알림	• 교정기관과 보호관찰소간 화상조사 전면 시행 알림 • 시행일 : 2022. 5. 16.(월)	무	보안과
5. 11.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관련 교정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 시달	• 방역완화 조치 등이 시행됨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교정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 시달	무	교정기획과
5. 17.	교정시설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태세 특별점검 계획 시달	• 오미크론 신종 변이 등 재유행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하기 위해 교정기관 운영실태를 점검	무	코로나19긴급대응단
5. 19.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입국불허국가 및 체류지역확대허가 국가 국민 지정고시	•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제한했던 제주무사증 관련 개정 규정 법무부고시	기	출입국심사과
5. 25.	영주(거주)·귀화자 맞춤형 통합시민교육 운영 세부 지침 제정 및 시행 알림	• 영주(거주)·귀화자 맞춤형 통합시민교육 운영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 제정	출입국·외국인기관	이민통합과
5. 26.	탑승자 사전확인제도 운영지침 개정	• 탑승 부적당 승객에 대한 구체적 범위 규정	기	출입국심사과
5. 30.	작업장 유형별 안전사고 사례집 배부 알림	• 최근 5년간 교정시설 작업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책자로 발간 • 배포 : 전국 교정기관 작업장 1,000부	무	직업훈련과
5. 31.	양양공항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시행 지침 시달	•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국민으로서 양양공항으로 입출국하는 5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 제도 지침 마련	기	출입국심사과
6. 1.	단기방문(C-3) 및 전자 비자 발급 재개	• 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20. 4.부터 잠정 중단했던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방문(C-3) 및 전자 비자 발급을 재개함	기, 재외공관	체류관리과
6. 3.	겸직심사위원회 개최 등 겸직 허가 업무 철저 지시	• 겸직허가 업무 유의사항을 전파하여 인터넷 개인방송 등 겸직 허가 시 겸직심사위원회 개최 누락 방지	무	교정기획과
6. 7.	여름철 식중독 예방 등 급식관리 철저 지시	• 여름철 식중독 사고 예방 및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	무	복지과
6. 16.	교정시설 하절기 수용관리 대책(안) 시달	• 혹서기 폭염으로 인한 각종 교정사고 예방	무	보안과
6. 22.	영주(거주),귀화자 맞춤형 통합시민교육 시범 실시 지시	• 영주(거주)·귀화자 맞춤형 통합시민교육 정식운영 전, 시범교육 실시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이민통합과
6. 24.	영주(F-5-2, F-5-3) 자격 체류관리 지침 개정	• "영주·귀화자 맞춤형 통합시민교육(준법시민교육)" 참여대상 및 교육과정 등 변경사항을 지침에 반영	기	이민통합과

일자	제 목	주 요 내 용	수신처	비 고
7. 5.	머리보호장비 개선 계획(안) 시달	• 머리보호장비 사용 시 머리에 가해지는 압박 및 머리 고정 조임부 밴드의 피부 접촉 부작용 등 최소화 • 머리 고정 조임부 밴드를 2개에서 1개로 축소하여 급박한 상황에서 머리보호장비 사용상 편의 도모	무	보 안 과
7. 6.	2022년 기동순찰팀 워크숍 개최 결과 시달	• 2022년 기동순찰팀 워크숍 개최 결과 시달 • 교정 정책 수립 시, 기동순찰팀 워크숍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분임 토의 결과 및 직원 건의사항' 등 적극 반영·시행 검토	무	보 안 과
7. 11.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F-1-5) 사증 발급 및 체류관리 통합지침 개정	• 초청자 범위확대(결혼이민영주), 양육지원대상자 범위확대(국적취득 양자) 및 피초청인의 사증발급 제한 기간 등 변경사항을 지침에 반영	기	이민통합과
7. 18.	과밀수용 완화를 위한 소속기관 수용구분 조정(안) 시달	• 제주교도소 수용구분 조정 • 서울동부구치소 여자수형자 수용구분 조정	무	보 안 과
8. 17.	보안근무자 인터넷 사용 전면 시행 관련 관리·감독 철저 지시	• 보안근무자 인터넷 사용 전면 시행 관련 부적절 사례 전파 및 관리, 감독 철저 지시	무	보 안 과
9. 16.	예비군대체복무 운영 기본 계획	•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된 사람의 복무관리 등 운영 계획 수립 • (소집대상)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편입 예비역 등 • (복무기관) 천안교도소 등 대체복무기관	무	교정기획과
10. 4.	지역특화형 비자 관련 체류관리지침 제정	• '22.10.부터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시행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우수인재, 동포 및 가족에 대한 체류관리 업무기준 마련	기	체류관리과
10. 13.	대체업무 확대 및 운영 기준	• 기관 운영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업무 분야 등 선정 •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업무 추가·확대 • (지정 제한) 대체역법 상 금지업무 분야 등 제외	무	교정기획과
10. 28.	연승줄 개선 및 시범운영 계획(안) 시달	• 벨트형, 조끼형 포승과 연결부분을 버클에서 금속 고리로 변경하여 편의성 개선 및 착용시간 단축	무	보 안 과
11. 4.	수용자 의약품 지급 방법 개선(안) 시달	• 수용자 의약품 지급 방법 간소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무	의 료 과
11. 14.	보안근무 환경 개선 방안 시달	• 보안 일근자 지원 근무 개선 • 수용관리 인력 부족 개선	무	보 안 과
11. 18.	『스마트밴드를 활용한 통합수용관제시스템』 시범운영 실시 계획(안) 시달	• 스마트밴드를 활용한 통합수용관제시스템 시범 운영 실시	무	보 안 과
11. 18.	외국인 수용자 관리실태 점검 지시	• 외국인 수용자 증가 및 동일국적 수용자를 동일 기관에 수용함으로 인해 수용관리의 어려움 • 각 지방교정청별 대상 기관을 점검하고 개선방안 도출	서울지방교정청(보안과장), 대전지방교정청(보안과장), 여주교도소장, 대전교도소장, 천안교도소장	보 안 과

일자	제 목	주 요 내 용	수신처	비 고
11. 18.	수용자 감사나눔 운동 추진 기본계획(안) 시달	• 내면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실천적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수용생활 속 감사의 생활화·습관화 조성을 통해 성공적 사회복귀 도모 • 감사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단계별 업무추진 방안 등	무	사회복귀과
11. 21.	수용사고 관련 보고체계 개선(안) 시달	• 소속기관의 상급기관에 대한 보고 부담 완화 및 지방교정청의 소속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기능 강화	무	보안과
11. 21.	아프간 특별기여자 성인 여성 대상 멘토교육 등 지시	• 성년 여성 아프간 특별기여자 대상 이민자를 활용한 멘토 교육 및 이민자 네트워크 편입 지시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등 7개 출입국·외국인기관	이민통합과
11. 21.	아프간 특별기여자 대상 일일특강 개설 지시	• 아프간 특별기여자 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 2, 3단계 내용 중 실생활에 밀접한 한국어 교육을 위한 일일 특강 개설 지시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등 6개 출입국·외국인기관	이민통합과
11. 24.	보호장비 사용 관련 교정정보시스템 개선(안) 시달	• 차세대 교정정보시스템 시행 후 현장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호장비 사용 관련 교정정보 시스템 개선	무	보안과
11. 25.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선정기준 개선(안) 시달	• 「위치추적 전자장치 시범운영 전국 교정기관 확대실시 계획(안)」과 관련하여 현장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선정기준 개선	무	보안과
11. 28.	변호인 접견교통권 보장을 위한 인터넷 편지 개선(안) 알림	• 변호인의 경우 수용자 1인에게 1일 1통을 발송할 수 있도록 인터넷 편지 서비스를 개선하여 수용자 접견교통권 등 보장	무	사회복귀과
11. 29.	동절기 교정시설 화재예방 대책(안) 시달	• 교정시설 화재 사고 예방 및 대책 검토 필요	무	보안과
11. 30.	선원상륙허가 및 선박검색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 개정	• 선박 승무원 및 탑승객에 대한 심사방식 등 개선 사항 반영	기	출입국심사과
12. 5.	언론인, 수용자 취재 관련 업무개선(안) 시달	• 언론인의 수용자 취재 관련 업무에 대하여 언론인, 수용자 취재 관련 업무개선(안) 이행 철저	무	보안과
12. 6.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언론·홍보 보고방식 간소화 방안	• 언론 및 홍보와 관련한 기존 사전·사후 보고를 보고불요 또는 사후보고로 개선하여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오던 불필요한 행정업무 경감	무	교정기획과
12. 9.	수용자에 의한 직원 폭행 피해 사후조치 재강조 지시	• 폭행 수용자에 대한 원칙적 입건송치 및 양형자료 통보	무	보안과
12. 13.	음주운전 근절 등 공직기강 확립 재강조 지시	• 연말 연시, 인사 등을 앞두고 음주운전 근절 등 공직기강 확립 재강조 지시	무	교정기획과
12. 21.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알림	•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신청 시 제출 서류 변경사항 안내	기	이민정보과

일자	제 목	주 요 내 용	수신처	비 고
12. 23.	결혼이민(F-6) 사증 및 체류관리 통합지침 개정	• 법무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가구수 별 소득요건 기준을 반영한 지침 개정	기	이민통합과
12. 26.	기동순찰팀(CRPT) 운영 개선(안) 시달	• 기동순찰팀 운영에 대한 불합리한 규정을 재검토하여 기관 자율성 및 운영 재량권 부여	무	보안과
12. 26.	차세대 교정정보시스템 구축(3차) 사업 관련 수용자용 키오스크(KIOSK) 도입 및 시범운영 실시계획(안) 시달	• 차세대 교정정보시스템 구축(3차) 사업 관련 수용자용 키오스크(KIOSK) 도입 및 시범운영	무	보안과
12. 29.	4부제 보안근무 체계 개선 시범운영 계획(안) 시달	• 서울동부구치소 완전 4부제 시범 운영	무	보안과
12. 29.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및 이용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	•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대상 확대 등 자동출입국심사 활성화를 위한 규정 마련	기	출입국심사과
12. 29.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통합관리 지침 제정 알림	• 과학·기술 우수인재 거주·영주·귀화 단계별 절차 및 요건 구체화, 우수인재 특별귀화 패스트트랙 특례 신설	기, 관계부처	국적과
12. 30.	소년수형자 교정교육 등 처우 강화 계획(안) 시달	• 소년수형자의 학업 단절 방지 및 교화에 특화된 교육과정 신설 등 연령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교정교육을 통하여 소년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무	사회복귀과

제3절 장관 연설문

▣ 2022년도 법무부 장관의 주요연설 현황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설현황 |

일 자	주요 행사명	비 고
2. 7.	• 신임검사 임관식	
2. 24.	• 특별공로자 국적증서 수여식	
4. 1.	• 신임검사 임관식	
4. 13.	• 우수활동 교정위원 감사패 수여식	
4. 25.	• 제59회 법의 날 기념식 기념사	
5. 2.	• 신임검사 임관식	
5. 17.	• 제69대 법무부장관 취임식	
5. 20.	• 제15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6. 16.	• 제40회 교정대상 시상식	
7. 25.	•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기념 공동학술대회 축사	
7. 28.	• 제34기 공익법무관 임용식	
8. 1.	• 신임검사 임관식	
8. 11.	• 8·15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	
8. 29.	• 대한변협 창립 70주년 기념식 및 제30회 변호사 대회	
10. 28.	• 제77주년 교정의 날	
10. 28.	• 기업과 인권 세미나 축사	
11. 9.	• 제11회 아시아태평양 ADR 컨퍼런스 개회사	영상메세지
11. 29.	• 제15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12. 19.	• 2022년도 선진법제포럼	

• 신임검사 임관식

Ⅰ

신임검사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검사로서 귀중한 첫발을 내딛게 된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이 있기까지 여러분을 헌신적으로 뒷받침 해주신 가족분들께도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훌륭한 공직자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Ⅱ

신임검사 여러분!

무엇보다도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검사'가 되어 주기 바랍니다.

검사의 직무는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결정이 국민의 이해를 얻을 수 있을지,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독단과 아집을 극복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존의 정의'를 실천해 나갑시다. 여러분 모두가 정성을 다해 국민을 배려하는 마음가짐으로 신중하고 공정하게 업무에 임할 때 '공존의 정의'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Ⅲ

신임검사 여러분!

검찰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하에서 검찰은 '인권보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권'은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소중한 가치이자, 검찰이 탄생하게 된 이유입니다.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견고한 울타리를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인권 중심의 시각으로 다양한 입장을 배려하고 존중하여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Ⅳ

신임검사 여러분!

검사에게는 다양한 역할이 주어져 있습니다. 수사기관 간 '수사협력'을 강화하여 국가의 반부패대응 역량을 유지하는 한편, '사법통제관'으로서, 형사사법절차 전반에서 인권보호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매의 눈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공익의 대변자'로서, 검사에게 위임된 다양한 국가사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신임검사 여러분의 열정으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여 새로운 검찰상을 확립해 나갑시다.

V

마지막으로,

'실력'과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검사가 되기 위해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검사에게 주어진 다양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내기 위해서는 전문지식과 역량을 길러야 합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사회 속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됩니다. 불식촌음(不息寸陰)의 자세로 부지런히 배우고 정진하여 '스스로 빛나는 검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VI

신임검사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은 대한민국 검사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어느 청, 어느 부서에 근무하든지 어떤 업무를 수행하든지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때로는 난관에 부딪치고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각오와 의지를 마음 깊이 새기고 지켜나간다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진정한 검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또 만납시다.

2022년 2월 7일

법무부장관 박 범 계

• 특별공로자 국적증서 수여식

I

안녕하십니까? 법무부장관 박범계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추운 겨울 인고의 시간을 견뎌내고 동백꽃이 화려한 자태를 뽐내며 피어나듯 우리도 이 힘든 날들을 이겨내고 우리의 일상을 회복해 더 나은 미래로 도약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법무부는 대한민국에서 평생 봉사와 헌신을 실천하신 특별공로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들이 온전히 한국인으로 새출발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적을 드리는 "특별공로자 국적증서수여식"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여식을 빛내주시기 위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주한 루마니아 대사 체쟈 아르메누님, 조계종 해외특별교구장 정우스님, 한국글로벌사회봉사연구소장 박종삼님, 그리고 특별공로자분들의 가족과 지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II

존경하는 특별공로자와 귀빈 여러분

법무부가 2012년부터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에 헌신하신 특별공로자분들께 대한민국 국적을 드리는 제도를 도입한 이래, 올해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간 특별공로자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신 분들은 "인요한님(1대), 브라스 마리 헬렌님(2대), 엄넬리님(3대), 마르띤님(4대), 김하종 신부님(5대), 지정환 신부님(6대), 천노엘 신부님(7대), 두봉 신부님(8대), 안광훈 신부님(9대)" 이십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부는 올해로 특별공로자 국적수여 10년이 되는 해를 맞이하여 선한 영향력을 대한민국에 전파하는 숨은 유공자를 발굴하여 국적을 드리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평생을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사시고 종교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대한민국 사회에 전파하신 웬트워스 주니어 웨슬리 존 선교사님, 갈 크리스티나 에벨리나 수녀님, 설래스님 오늘 "제10대 대한민국 특별공로자"로 인정하여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드리는 역사적인 순간에 제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도 영광입니다.

Ⅲ

대한민국 특별공로자 여러분!

웨슬리 선교사님은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로 불리시며 평생을 청빈과 겸손의 삶을 실천하셨습니다. 특히, 기독교 학문과 선교활동에 공헌하였고, 한국 교육 발전과 인재양성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크리스티나 수녀님은 장기간 이주노동자, 난민 등 소외된 이웃의 보호와 인권 옹호 활동을 하셨고, 특히, 2018년부터 제주 예멘인 난민신청자의 안정적 국내 정착과 의료지원에 공헌하였습니다.

설래 스님은 템플스테이 지도법사로서 네팔근로자, 유학생 등이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심리 상담 지원과 사회통합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Ⅳ

존경하는 대한민국 특별공로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수여받게 되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를 누림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 주시고 대한민국 발전에 더욱 기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않은 분들을 발굴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분들께 한국 국적을 부여하여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Ⅴ

마지막으로 크리스티나 수녀님이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을 축하해주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체자 아르메누 주한 루마니아 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녀님은 오늘 국적증서 수여식을 통해 루마니아 국적과 대한민국 국적을 동시에 갖게 되었습니다. 수녀님은 루마니아와 한국을 잇는 가교이자 훌륭한 민간외교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공로 국적증서 수여식을 통해 국가 간 우호와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앞으로도 소통과 이해를 넓혀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특별공로자분들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2월 24일
법무부장관 박 범 계

• 신임검사 임관식

Ⅰ

신임검사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봄에, 3년간의 법무관 근무를 마치고 대한민국의 검사로서 출발하는 두 분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이 있기까지 여러분을 헌신적으로 뒷받침해주신 가족 여러분들께도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두 분 신임검사님들의 늠름하고 희망찬 모습을 보니 더 없이 기쁘고 든든합니다. 검사로서 귀중한 첫발을 내딛는 오늘, 두 분 검사님께서 훌륭한 공직자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Ⅱ

신임검사 여러분!

무엇보다도 '국민을 생각하는 검사'가 되어 주기 바랍니다. 검사의 직무는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므로, 검찰권은 국민을 위해 행사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담당할 사건에는 국민들의 인생과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의 관점에서 공평하고 균형있게 수사하여 결정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사회 곳곳의 소외된 이웃들, 장애인,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의 정의관에서 벗어나, 국민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모든 사회구성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결정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존의 정의'입니다.

Ⅲ

신임검사 두 분 여러분!

저는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한 후 검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 무엇보다, 주요 사건 중심의 보고체계를 국민과 인권 중심의 보고체계로 바꾸어, 업무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수사권 개혁 법령으로 변화된 제도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스스로 변화해 나가야 합니다.

그동안 검사는 수사의 칼날을 휘두르고 거악을 척결하는 역할만 부각해 왔습니다.

물론, 범죄를 엄단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검사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검사에게는 '수사' 뿐만 아니라 '사법통제', '공익대변', '수사협력' 등다양한 역할이

주어져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검사에게 부여된 다양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제대로 수행할 때 비로소 검찰이 '인권보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기존의 틀을 깨기 위해 새로운 검찰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하는 검사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신임검사 여러분들 또한 참신한 생각과 뜨거운 열정으로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새로운 검찰상을 만들어 나가기 바랍니다.

Ⅳ

마지막으로,

'실력'과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검사가 되기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사회 속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됩니다. 최근 일선 검찰청에서도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커뮤니티 회의를 개최하는 등 신기술과 형사사법을 연계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새로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해당 분야의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활발히 활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전문분야를 개발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 나갈 때 스스로에게 당당한 검사,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검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Ⅴ

우리 신임검사 두 분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검사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어느 청, 어느 부서에 근무하든지, 어떤 업무를 수행하든지 묵묵히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검찰의 밝은 미래는 여러분이 지금부터 만들어나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오늘의 초심을 지켜나간다면, '인품과 실력'을 겸비한 훌륭한 검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또 봅시다.

2022년 4월 1일

법무부장관 박 범 계

• 우수활동 교정위원 감사패 수여식

여러분 반갑습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입니다.

향긋한 봄, 설렘 가득한 계절 4월에 교정위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모두가 어려운 시기임에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안정적 수용생활을 위해 헌신해 주신 교정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범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뿐만 아니라 이들의 재범방지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 노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야 말로 수형자들이 우리의 건강한 이웃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숭고한 봉사 정신을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수용자들을 위해 가족만남의 날 등 각종 교화행사에서 가족을 대신해 주셨고, 종교를 통한 정서적 지지도 해주셨습니다.

다양한 의료 봉사활동을 통해 수용자 의료처우 향상에 기여해 주셨고, 출소 후 사회정착을 위한 취·창업 지원활동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시중에 마스크가 품절되는 상황에서 교정시설 수용자들을 위해 긴급히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지원해 주시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시설내 유아 양육이 어려워지자 수용자 유아의 안전을 위해 직접 보호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들의 아름답고 열정적인 활동들이 많지만 이 자리에서 일일이 소개해 드리지 못해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교정위원 여러분!

모든 사람이 외면할 때 수형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재기의 의지를 갖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교정위원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봉사와 노력은 그동안 많은 수형자들이 사회에 안착하는데 밑바탕이 되었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의미있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수형자 교육, 취업, 수용생활 안정과 같이 민관협력이 필요한 곳에 여러분의 역량을 더욱더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사회복귀를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해 오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항상 가정 내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022년 4월 13일
법무부장관 박 범 계

• 제59회 법의 날 기념식 기념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은 법의 존엄성과 법의 지배가 지니는 숭고한 의미를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의지를 다지기 위해 제정된 제59회 법의 날입니다.

먼저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기여하신 공을 인정받아 오늘 영예로운 훈장과 표창을 받으시는 수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5년을 함께한 정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마주한 이때 제59회 법의 날을 맞이하여 정의와 법치주의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됩니다.

법은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구성원 모두의 약속이자 정의실현을 위한 기본입니다. 사회를 결속시키는 것은 정의이고, 정의를 세우는 것은 법입니다. 법치주의의 확립은 정의를 보다 강하게 보장하는 길입니다.

법무부는 정의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여러 문제들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정의가 공존하는 사회, 민생이 힘을 얻는 희망찬 사회를 만들어 나가려 합니다.

법은 약자가 의지할 수 있는 공존의 기틀이 되어야 합니다. 공존은 서로 도와서 함께 살아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일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법무부는 범죄로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강력범죄로 인해 심한 충격을 입은 범죄피해자를 경제적, 심리적으로 지원하고 피해자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하기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은 시대 변화를 받아들이며 민생을 보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2년간 국민 여러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소상공인은 매출액이 감소했고 청년들은 취업난과 불투명한 미래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감염병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청년들이 창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창업 초기부터 법률지원을 받고 창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증가하는 1인 가구를 위해 법제도 개선하고 새로운 시대적 요청과 환경에 맞춰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은 생명을 지키고 보편적 인권을 수호해야 합니다. 지난 여름, 아프가니스탄에서

특별기여자 427명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은 그들의 따뜻한 품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국내에 거주 중인 우크라이나인을 위해 인도적 특별체류조치를 시행하고 우크라이나 동포의 사증 발급절차를 간소하여 신속한 입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평화와 인권 보호를 위한 일이라면 법무부는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대한민국에 진정한 법치주의를 확립하여 정의를 이룩하는 것은 우리들 모두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입니다. 우리 모두가 법의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할 때 정의가 살아 숨쉬는 법치주의가 확립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영예로운 훈장과 표창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그 가정에 화창한 봄꽃처럼 행복이 만개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4월 25일

법무부장관 박 범 계

• 신임검사 임관식

Ⅰ

신임검사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검사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된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신임검사들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 헌신적으로 뒷받침해주신 가족 여러분들께도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지와 열정이 넘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눈빛을 보니 무척 기쁘고 마음이 든든합니다. 치열한 경쟁과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발된 분들인 만큼, 훌륭한 공직자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Ⅱ

신임검사 여러분!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는 검사'가 되어 주기 바랍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에게 부여된 다양한 직무는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면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것이 검사의 직업적 소명입니다. 그렇기에 국민이 맡긴 권한과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진심으로 경청하고, 그들과 함께 공감하려는 노력이 쌓여 비로소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법무부장관으로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존의 정의'를 강조해 왔습니다. 나홀로 정의가 아니라 국민이 공감하고 납득하도록 검찰권이 행사되어야 합니다. 본질은 수사의 공정성입니다. 합법적 인권침해를 수반하는 수사는 반드시 내외부 통제를 받아야 정당성이 부여됩니다. 나의 가치와 이웃의 가치는 동시에 정당하기 때문입니다.

Ⅲ

신임검사 여러분!

인권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따뜻한 검사'가 되기 바랍니다. 검찰은 인권의 수호자로서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의지할 수 있는 보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건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들여다보고 그 속에 감춰져 있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작은 목소리를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기 바랍니다. 중국 고전 '논어(論語)'의 학이(學而)편에 '경사이신(敬事而信)'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일을 정성스럽게 처리해야 믿음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려는 정성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로 발전해 나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Ⅳ

마지막으로,

반복되는 일상에 안주하지 말고 스스로 발전해 나가는 '깨어 있는 검사'가 되기 바랍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실력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검사로서 실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 지식도 중요하지만 사회 현상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각자 관심 있는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인만의 전문분야를 개발해 나가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검사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의 실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스스로 만족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정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Ⅴ

우리 신임검사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여된 책무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에게는 치열한 고민과 쉽지 않은 결단의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초심과 각오를 새기면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 선·후배들과 어려움을 나누고 소통하면 어떤 일이든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꿈과 열정으로 검찰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에게 임명장을 받은 67명의 신임검사님들 모두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검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2022년 5월 2일

법무부장관 박 범 계

• 법무부장관 취임사

I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3만 3,400여 분의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새 정부 첫 번째 법무부장관으로 일하게 되어
저는 기쁩니다.

국민들께서 부동산, 물가,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지금,
저는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치행정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II

법무부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명칭이 한 번도 변하지 않은
두 개 부처 중 하나입니다(나머지 하나는 국방부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그 사실이,
법무부라는 이 부처가 해야 할 일,
가야 할 방향이
그만큼 단순명료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법무부의 영문명칭은
'Ministry of Justice'입니다.
잊지 맙시다.
법무부에 근무하는 우리는
항상 시스템 안에서
'정의(Justice)'에 이르는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저는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정의와 법치주의를 굳건히 하기 위해
동료 여러분과 함께,
용기와 헌신으로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들, 정당한 소신을 뒷받침하는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Ⅲ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
저는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앞으로 법무부가 나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을 펼쳐 나갑시다.

인권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인간에게
정의와 존엄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헌법상 최고 가치입니다.

인권존중이라는 우리의 목표에는
타협이나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법무부는 특히
힘없고 소외된 국민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사회가 어지러워지면
그 피해는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곱절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법률지원을 강화하고,
범죄피해자 치유를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법제 개선에 힘쓰고,
인권 가치의 존중을 위해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경청합시다.

둘째, 선진 법치행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번영을 이끌어 나갑시다.

지금 대한민국은
복잡한 국제정세와 경제상황에서
포스트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세계와 경쟁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치행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번영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범죄예방·외국인정책·교정·인권·법무·검찰 등,
우리의 모든 업무 분야에서
국민들께서
세계적인 수준의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도록
함께 전력을 다합시다.

늘 잊지 맙시다.
우리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입니다.
국민들께
수준 높은 서비스로 몇 배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법무행정과 형사사법제도를
꼼꼼하고 세밀하게 연구·검토하여
국가경쟁력 도약을 위한 기초가 되게 합시다.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하여
이민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 나갈
체제를 갖춰나갑시다.

그 동안 우선적으로 살피지 못했던
교정 업무에서의 인적, 물적 열악함을
이번에는 획기적으로 함께 개선해 봅시다.

이 밖에도, 세계를 선도할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법무부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다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셋째,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을 만듭시다.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
진짜 형사사법시스템 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는
그럴 수 있는 나라가 있고,
그럴 수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만
(사실 그럴 수 없는 나라가 더 많을 겁니다),
대한민국은 그럴 수 있는 나라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짧은 시간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위대한 사람들이고,
그런 공정한 시스템을 가질 자격이
충분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고,
형사사법체계를 바로 세우도록 최선을 다해 봅시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실력 있는 검·경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합시다.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검찰의 일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며,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물론, 인권과 절차를 지키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국민을 바라보고, 할 일을 제대로 합시다.

넷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지키고,
국민들께서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도록
도웁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헌법이 국민들께 약속한
이 나라의 근본입니다.

자유로운 경쟁은
이 사회 발전의 엔진으로서
적극 장려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경쟁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과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 두 가지 지향점이
우열 없이 공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법무부도 그 조화를
이 나라 사법시스템 안에서 뒷받침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밤길 다니기 겁나는 사회,
조폭이 설치는 사회,
서민들이 피해를 당하고도 그냥 참고 넘어가기를
선택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 법무부가 모든 힘을 다해야 합니다.

우선 당장,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발을 떼겠습니다.

서민 다중에게 피해를 주는 범법자들은
지은 죄에 맞는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룰이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을
시장참여자들에게 줄 것입니다.

앞으로,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을 위한 그동안의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전자감독제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운영해 나갑시다.

법무·검찰은 범죄피해자를 위해
법에 따라 범죄와 싸우는
공직자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Ⅳ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정의와 상식을 바탕으로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무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 약속에
동료 공직자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장에서 치열하게 경험한 동료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또한,

소신을 가지고 정당한 업무수행을 한 공직자를
부당한 외풍으로부터 지키겠습니다.

그것은 동료 여러분께서
저에게 해 주신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국민만 바라보고 우리 함께 일합시다.

동료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17일
법무부장관 한 동 훈

• 제15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입니다.

오늘은 제15회 '세계인의 날'을 맞아 여러분을 만나뵐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세계인의 날'은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함께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7년 제정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가운데 자리를 빛내 주신 볼프강 앙거홀처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님, 주한 외교사절 여러분, 그리고 바상자브 간볼드 유엔 아·태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동북아지역 대표님 등 주한 국제기구 대표분들과 참석하신 내·외빈 모든 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역대 올해의 이민자상을 받으신 분과 해당국 외교사절께서 함께 하셔서 더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Ⅱ

현재 우리나라에는 전 세계 204개 국가에서 온 약 200만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내 체류외국인 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이주배경인구가 총 인구의 4.2%로 OECD가 규정하고 있는 총 인구의 5%를 넘는 다문화국가로의 진입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급격한 인구감소와 변화된 산업구조로 외국인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변화에 따라 이민정책과 사회통합정책은 우리나라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Ⅲ

이제 대한민국은 새로운 정부를 맞이하였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누구하나 소외되지 않도록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 존중하는 사회환경 조성을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국제 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보편적 국제 규범을 적극 지지하고 수호할 것입니다.

이에 부응하여 외국인 정책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는 글로벌 리더로서 선진화된 이민 법제와 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 사회와 지역 경제에 동력이 될 수 있는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적재적소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Ⅳ

이미, 대한민국은 문화강국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섰습니다. BTS는 글로벌 스타로 부상하여 수 많은 세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세계적인 인기를 끈 드라마 오징어게임으로 골든글로브에서 조연상을 받은 배우 오영수씨는 이제 '세계 속의 우리'가 아니라 '우리 속의 세계'로 변했다고 수상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 세계 속에는 우리가 함께 해야 할 다양한 모습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 다양함을 이해하고 존중할 때 우리가 이들과 진정으로 하나가 되고,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는 아름답고 조화로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5회 '세계인의 날'을 맞아 외국인 정착지원 유공으로 수상하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20일
법무부장관 한 동 훈

• 제40회 교정대상 시상식

I

올해로 40번째를 맞은 교정대상 시상식 개최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983년에 제정된 교정대상은
수용자 교정교화에 헌신적으로 봉사해 온
여러분을 격려하고,
교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는 데
기여해 왔으며,
수상자 여러분의 노고와 숭고한 가치를 인정해 주는
매우 의미있는 상입니다.

먼저, 오늘 영예로운 교정대상을
수상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상자분들 곁에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가족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교정대상을 주관하고 후원해 주신
서울신문사 곽태헌 사장님과
KBS 한국방송 김의철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Ⅱ

교정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새 삶을 꿈꾸는 수용자들에게
어두운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고
함께 희망의 싹을 키워가는 동반자입니다.

정의롭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꿋꿋하게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시는 교정공무원 여러분과
순수한 봉사정신으로 이들을 위해
헌신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교정위원 여러분께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Ⅲ

교정가족 여러분,

저는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법무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교정행정을
펼쳐 나아가겠습니다.

수용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과밀수용을 해소하고,
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인권 친화적 수용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수용자 인권 관련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인권 중심의 수용처우를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현장 교정공무원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교정업무를 개선해 나아가겠습니다.

저는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
교정공무원 여러분의 처우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묵묵히 근무하는
현장 교정공무원 여러분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열악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아가겠습니다.

셋째, 선도적인 교정행정으로 대한민국 교정의
미래를 이끌어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적인 수준에 맞는
교정행정으로 변화를 선도해야 합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인권과 수용질서가 조화를 이루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활용해

스마트 교정환경을 조성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Ⅳ

사랑하는 교정가족 여러분,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온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교정공무원과 교정위원 여러분이 함께
수용자 교정교화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여러분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를 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6월 16일
법무부장관 한 동 훈

•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기념 공동학술대회 축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 한동훈입니다.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을 기념하는 학술대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해주신 노태악 학회장님을 비롯한 국제사법학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전하며, 행사를 위해 노력해주신 홍기태 사법정책연구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각 세션의 발제와 토론을 맡아 주신 국제사법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학술대회는 법무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내 최고의 국제거래법 전문가들께서 한데 모인 매우 드문 기회이자, 국제사법의 현재와 미래를 생각해보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국제사법은 외국과 거래가 빈번한 우리나라에 매우 중요한 법률이지만, 준거법과 달리 국제재판관할에 관해서는 하나의 원칙 규정만을 두고 상세 규정을 두지 않아 오랜 기간 동안 미완성의 상태로 있었습니다.

다행히 많은 분들, 특히 여기 계신 여러분의 노력으로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작년말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 7월 5일 시행된 덕분에 국제사법 체계가 완비되었습니다.

이번 국제사법 전부개정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었습니다. 2012년에 국제사법 개정방안 연구를 실시한 이래로, 35개 조문을 신설하고 기존 7개 조문을 정비한 개정안이 시행되기까지 1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전부개정 작업에 참여한 주역들이신 학계·법조계 전문가들께서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新국제사법의 시행은 여러분들의 노고, 우리나라 국제사법 발전에 대한 열정, 상이한 법질서의 조화와 공존을 위한 집념이 일구어낸 귀한 성과입니다.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국제사법 전부개정 시행으로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제가 가장 기대하는 변화는 일상에서의 변화입니다. 외국과 관련된 법률분쟁은 이미 우리 일상생활에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제거래가 기업들의 무역이나 수출입거래를 주로 의미했다면, 지금은 해외직접구매의 일반화로 국제거래를 안 해본 사람이 드물 정도입니다.

또한, 매년 2만여 건의 국제결혼이 이루어지고, 1만여 건의 국제이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는 입법 공백으로 인해, 외국과 관련된 법률 분쟁을 우리나라 법원에서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 전까지는 확실히 답할 수 없었으나, 이제는 우리 법원에서의 재판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新국제사법 시행으로 분쟁해결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게 되어 국민과 기업의 법률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은 국제협약, 해외 입법례 등을 적극 반영한 선도적 입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도 우리 개정법률의 영문 번역본 제공을 저희 법무부에 요청하는 등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잘 만들어진 각국의 법제는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와 같은 국제거래규범 협의체에서 국제협약 성안 시 중요한 참고자료(reference)로 활용됩니다.

이번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이 향후 국제사법에 관한 국제적 논의에 기여하고, “국제거래규범의 점진적 조화와 통일”이라는 목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확신합니다. 법무부도 우리의 입법적 성과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국제적 논의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는 국제사법의 발전, 더 나아가 우리나라 국제거래법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국제거래규범 관련 국제적 논의에 지속 참여하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국제거래법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학술대회에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들을 귀담아 듣는 것이 그 시작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활발한 참여와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주시어 오늘 학술대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7월 25일
법무부장관 한 동 훈

• 제34기 공익법무관 임용식

I

제34기 신임 공익법무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군사훈련과 직무교육을 무사히 마치고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995년 공익법무관 제도가 도입된 이래, 여러분의 수많은 선배들은 공익법무관으로서 주어진 소임을 성실히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법조인으로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들도 그 전통을 이어받아 주어진 소임을 훌륭하게 완수해 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의 막중한 소임을 잊지 말아달라는 의미로, 몇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II

첫째, 공익법무관의 역할과 사명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익법무관(公益法務官, Public Service Advocate)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법률전문가'라는 의미입니다.

공익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의와 상식의 법치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공익법무관으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직무에 전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선진 법치 확립을 위해 국가송무 등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이제 법무부 소속 공무원입니다.

공직자로서, 국민의 높은 기대와 기준에 부합하는 역량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앞으로 여러분이 마주하게 될 모든 업무는 그 경중을 떠나 우리나라 법치의 근간이 됨을 명심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선진 법치가 확립될 수 있도록 매사 주어진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법률구조 업무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는 여전히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랜 기간 배우고 익힌 법률지식으로 힘없고 소외된 국민을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 정성스런 행동 하나 하나는 우리 국민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Ⅲ

다시 한 번 임용을 축하드리며,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의 앞날에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7월 28일

법무부장관 한 동 훈

• 신임검사 임관식

Ⅰ

신임검사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3년간의 법무관 근무를 마치고 오늘 대한민국 검사로서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검사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헌신적으로 뒷받침해 주신 가족 여러분께도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임검사 여러분을 직접 만나니 매우 기쁘고, 든든합니다. 장관으로서 임명장을 전수할 수 있게 되어 저에게도 뜻깊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Ⅱ

검사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부터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여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국가와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 검사가 된 것을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검사로서 새롭게 각오를 다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두 훌륭한 검사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Ⅲ

첫째,

'정의와 상식을 지키는 검사'가 되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검찰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고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정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범법자들은 지은 죄에 맞는 책임을 지고, 피해자들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제대로 보호받는다는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의 실현은 '상식'에 기반한 것이어야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법률 해석과 결정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지를항상 고민하면서 정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맡게 될 사건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대하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이 균형감 있고 상식에 부합하는 검찰권 행사의 출발점이 될 겁니다. 부정부패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보듬으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

'전문성과 실력을 갖춘 검사'가 되기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사건 당사자에게는 초임검사든,

경력검사든 모두 똑같은 검사입니다. 국민들이 검사에게 요구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 충분한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치우침 없이 주어진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여 실체를 규명해 낼 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항상 깨어있는 자세로 새로운 법리와 전문성을 갖추고, 사회의 변화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실력을 쌓아 나가기 바랍니다.

검사로 임관하는 오늘은 여러분 여정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실력을 갖추고 발전해 나가는 검사가 되어 제대로, 즐겁게 일해 봅시다.

셋째,

창의적인 생각을 발휘해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되어 주기 바랍니다. 선배들의 조언을 경청하면서도, 앞으로 여러분이 이끌어 나갈 검찰 조직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새로운 시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검찰의 미래입니다.

내가 바로 주인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은 없는지, 검찰 업무시스템을 어떻게 수준 높게 개선할 것인지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신임검사 여러분이 직접 검찰의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나가면 좋겠습니다.

Ⅳ

검사 여러분!

검사로 근무하는 과정에서여러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의 각오와 의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께 헌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여러분과 검찰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임관을 축하하고,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8월 1일

법무부장관 한 동 훈

• 8·15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

I

안녕하십니까? 법무부장관 한동훈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주신 독립유공자 후손 및 가족 여러분, 그리고 장호권 광복회장님, 최초 대한민국 특별공로 특별귀화자이신 인요한 박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제77주년 광복절이 있는 해입니다.

하지만 광복을 맞이한지 70년 이상이 흘렀음에도 아직도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이역만리에서 고난의 생을 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조들이 오직 조국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 몸바쳐 희생하셨기에 지금의 우리가 존재하고 이 땅에서 미래의 세대들이 꿈꾸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자신의 목숨보다 나라를 귀히 여기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 분골쇄신(粉骨碎身)했던 여러분의 선조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미래 세대가 다시 한 번 나라의 소중함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독립유공자 후손을 전 세계 곳곳에서 찾아내어 대한민국 국민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기에

법무부는 국가보훈처와 함께 후손분들을 찾아내고, 대한민국 국적을 드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땅에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의 도리를 다하고자 합니다.

II

존경하는 독립유공자 후손 여러분

여러분의 선조이신 열 한 분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민족정신과 역사의식을 고취시키는 독립운동을 하셨고, 교육을 통해 우리 민족이 모국어를 잊지 않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여러분 선조들의 고귀한 희생과 애국정신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눈부신 발전과 더불어 자유와 평화가 살아 숨 쉬는 민주주의를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선열의 피와 눈물 그리고 위대한 헌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과 풍요로움을 가질 수 없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선조의 나라로 돌아와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 대한민국에서 새롭게 출발하고 함께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여러분의 선택에 감사드리며

위대한 선조들의 후손분들에게 제가 장관으로서 여러분 한분 한분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드리는 뜻깊은 순간에 함께 할 수 있어 너무도 큰 영광이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Ⅲ

독립유공자 후손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제2조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948년 12월 헌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국적법에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특별귀화허가를 받아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을 받은 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수여받게 되면 곧바로 대한민국 국민이 됩니다.

이로써 국민이 되면 헌법과 법률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되며,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부터 선조의 나라가 아닌 여러분의 나라로서 이 땅에서 대대손손 뿌리를 내리고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Ⅳ

존경하는 독립유공자 후손 그리고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니 문득 고 승병일 애국지사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승병일 선생님은 17세 때 혈맹단을 조직하여 독립운동을 하셨고, 그 활동으로 인해 일본군에 체포되어 모진 문초와 고문을 겪으셨으며 향년 96세로 금년 7월에 타계하셨습니다.

그 분께서 생전 독립운동에 대해
"본인은 후회한 적이 없다. 나라는 내 목숨보다 위다."
"나라가 없으면 우리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그 당시로 돌아간다고 해도 나는 독립운동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선조분들도 이 분의 마음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며, 독립유공자분들의 헌신과 희생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나라를 사랑하고 끝까지 애국을 실천하신 고인의 헌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독립유공자 후손과 가족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8월 11일
법무부장관 한 동 훈

• 대한변협 창립 70주년 기념식 및 제30회 변호사대회

Ⅰ

존경하는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님, 그리고 전국 3만 2천여 명의 변호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창립 70주년과 제3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한국법률문화상」을 수상하시는 김철용 명예교수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대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님, 집행위원장님,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Ⅱ

전국의 변호사 여러분!

오늘로부터 정확히 70년 전인 1952년 8월 29일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공식 출범한 날입니다.

지난 70년 동안 대한변호사협회는, 우리 국민의 인권 보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법치주의 확립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 결과 오늘 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고, 우리 사회의 정의와 상식이 바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오늘 대회의 주제는 '법의 지배와 변호사'입니다.

오늘 대회를 통해, '대한민국 인권과 법치주의의 역사'라 할 수 있는 대한변호사협회의 과거 70년을 천천히 되돌아보고, 미래사회를 대비한 변호사 본연의 역할과 사명을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Ⅲ

전국의 변호사 여러분! 법무부는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무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치행정을 위해 국경·이주·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신설 추진,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민법·상법의 정비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국민의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범죄피해자별 맞춤형 원스톱 지원체계 마련,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위해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을 설치하고, 펀드, 가상화폐, 전세사기 등 서민대상 범죄를 엄단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강화하고, 우리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 운영, 강력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수용조건부 가석방 도입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무부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변호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Ⅳ

전국의 변호사 여러분! 오늘 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변호사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8월 29일

법무부장관 한 동 훈

• 제77주년 교정의 날

전국의 동료 교정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교정위원 및 내빈 여러분!

오늘은 일흔일곱 번째 맞는 교정의 날입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묵묵히 교정현장을 지켜온 여러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리며, 함께 기념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교정행정 발전과 수형자 교화에 기여한 공적으로 영예로운 포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곁에서 격려를 보내주셨을 수상자 가족분들께도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바쁘신 중에도 교정의 날의 의미를 소중히 생각하시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교정위원 중앙협의회 회장님,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회장님을 비롯한 내외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동료 교정공직자, 그리고 교정참여인사 여러분!

우리의 교정은 지난 77년이라는 세월 동안 많은 성장과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그대로 저희는 같이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만성적 인력부족과 노후화된 시설 등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인해서 다양한 수용자 처우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교정행정이 차근차근 발전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이유는 투철한 사명감과 따뜻한 봉사 정신으로 교정교화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교정가족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저희를 도와주시는 위원님들, 그리고 저희를 지원해주시는 국민들 덕분입니다.
비록 저희가 겉으로 화려하진 않지만, 여러분은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사회 재통합의 실현이라는 국가의 대단히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계신 제복 입은 영웅들이십니다.

교정에 대한 여러분들의 숭고한 헌신과 노력은 수용자 개개인의 마음을 움직여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수용자의 재범방지와 성공적인 사회복귀에 기여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자유와 인권, 그리고 안전을 지키는 작은 희망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박수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교정동료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교정위원 여러분!

저는 취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용기와 헌신으로 일하겠습니다.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재범방지, 건전한 사회복귀라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저 또한 제가 있는 자리에서 할 일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동료 교정공직자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수용자의 인권보호와 교정교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당 현실화, 인력 증원 등 교정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그동안 사회적 무관심 속에 후순위로 밀렸던 열악한 교정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교정시설의 신축 및 리모델링을 통해서 과밀수용과 노후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한편, 수형자 재범방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과 수용자 처우 개별화를 반영한 '새로운 교정시설의 설계지침'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수용질서 확립을 통해 수용자 전체의 인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일부 문제 수용자들의 다른 수용자 및 교정공무원에 대한 폭행, 기타 수용질서 문란행위를 인권 문제라는 식으로 치부하고 방치하게 되면, 교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이 저해되고 결국, 수용자 간의 사적 제재가 증가해서, 결국, 수용자 인권은 후퇴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인권을 지키는 것입니다.
전체 수용자 인권보장에 악영향을 끼치는 이러한 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으로서

단호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수용자를 항상 사랑으로 포용하시며 교정교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교정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교정위원님들이 보람과 자부심을 가지고 봉사하실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더 갖겠습니다.

민간에서 쌓으신 위원님들의 역량이 수용자의 생활 안정과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화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 분명히 기억합시다. 우리가 열악한 교정공직자 처우를 개선하려 노력하는 것은 공무원의 후생복지 차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민께 높은 수준의 교정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몇 배로 되돌려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교정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의 교정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세계를 선도할 교정행정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사회 발전과 국민 안전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재범방지와 성공적 사회복귀라는 '교정의 완성'을 이룩할 방안을 우리 교정공직자들 동료공직자들 포함해서 같이 한번 앞으로 계속 고민해나가겠습니다.

국민들께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교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동료 교정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77주년 교정의 날을 맞아 우리 모두가 교정행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의와 상식을 바탕으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따뜻한 법치행정을 위해서 동료 교정공직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최선을 다합시다.

교정참여인사 여러분께서도 교정업무에 대해서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정공직들, 저희 법집행기관들은 최종적으로 정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 인권을 지키면서도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아까 제가 최불암 선생님 말씀드리면서 옛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해봤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교정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저희 교정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법무부장관 한 동 훈

• 기업과 인권 세미나 축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 한동훈입니다.

'기업과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오늘 세미나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날 기업의 활동이 국경을 넘어 세계화되면서, 기업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인권존중책임을 다하여야 한다는 '인권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인권실사를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등 관련 국제규범 이행에 대한 권고가 이어지고 있어, '국제 기준에 맞는 인권경영 실천'은 해외 진출 우리 기업들의 당면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 급변하는 국제 동향을 항상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에, 기업과 인권 최신 동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단계별로 실천 가능한 '기업과 인권의 국내 이행방안'을 공유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산업별 국내기업의 생생한 인권경영 실천 사례를 공유하여, 기업의 사내 변호사 등 인권경영 실무자들이 현실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경영체계 구축은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법무부는 기업이 지역사회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과 상생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께 이루어나가는 인권경영 실천을 지원하겠습니다.

함께 뜻깊은 자리를 준비해 주신 대한변호사협회 이종엽 협회장님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유연철 사무총장님을 비롯하여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의 논의가 우리 모두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인권경영 문화 정착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법무부장관 한 동 훈

• 제11회 아시아태평양 ADR 컨퍼런스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한동훈입니다.

오늘 세계 각국의 전문가 여러분을 모시고 "제11회 아시아·태평양 ADR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이번 행사 개최를 위해 함께 애써주신 UNCITRAL과 대한상사중재원 국재중제센터, ICC 측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에도 기꺼이 발제와 토론을 맡아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오늘 행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Solidarity for Recovery: Resilience, Restoration, Recalibration"을 주제로,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진행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에 있어 중재기관 간 연대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내일은 국제중재의 현 위치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 최근 중요성이 높아진 에너지 관련 분쟁에 관하여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틀에 걸쳐 진행될 이들 논의가 팬데믹 극복을 위한 전세계의 화합과 연대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팬데믹은 전세계에 위기를 불러왔지만,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는 다양한 시도와 혁신을 통해 위기를 기회 삼아 발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국제중재 분야에서는 비대면 심리, 신속중재규칙 등이 도입되었고, 싱가포르조정협약의 탄생을 배경으로 조정(mediation)이 또다른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으로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요한 분쟁해결 중심지 중 하나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국제중재 기관을 유치하는 등 대한민국을 분쟁해결절차가 진행되기에 더욱 편리한 곳으로 발전시켜나가고, 본 컨퍼런스와 같이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발전에 있어 대한민국이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태평양 ADR 컨퍼런스는 어느 덧 올해로 제11회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본 컨퍼런스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연대야말로 팬데믹을 극복하고 국제중재, 나아가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의 혁신을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9일
법무부장관 한 동 훈

• 제15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 한동훈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분야에서 그간의 노고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신 여러분들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울러,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범죄피해자분들의 상처를 함께 공감하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범죄피해자 인권대회가 올해로 제15주년을 맞이하였으나, 코로나 재유행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오늘의 행사를 간소화하여 진행하게 된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는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는 범죄가 발생한 경우 검찰, 경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의 관계자들이 사건 발생 직후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진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 뿐만 아니라 범죄피해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널리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에 대하여도 범죄피해자지원 기관·제도 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범죄피해자에게 신속하고, 빠짐없는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역량을 확대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의 구축을 위해 지난 10월 20일 관련 부처간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피해자들이 지금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것이 왜 중요한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동안 법무부는 2006년 범죄피해자보호법 제정을 시작으로 2011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마련, 전국 61개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16개의 스마일센터 설립 등 다양한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을 통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며, 그 덕분에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가의 손길이 부족한 영역에서도 범죄피해자들을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들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의 노력이 함께 있었기에 비로소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여러분의 순수한 봉사정신은 따뜻하고 좋은 향기처럼 우리 사회 구석구석 퍼져 범죄피해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오직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애써온 모든 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국가를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법무부도 현장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노력하시는 종사자분들이 보다 자긍심을 가지고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을 이행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앞으로도 범죄피해자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도록 함께 나누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갑시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그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법무부장관 한 동 훈

• 2022년 선진법제포럼

I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 한동훈입니다.

오늘 「주주총회 프로세스의 전자화」를 주제로
2022년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포럼의 사회를 맡아 주실 충북대 송종준 교수님,
주제발표를 해주실 경희대 권재열 교수님,
그리고,
지정토론자 네 분과 선진법제포럼 회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II

아시다시피, 주주총회는 주주들의 총의를 수렴할 수 있는
주식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이지만,
근래 '이사회 중심주의'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
주주총회의 기능이 점점 축소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소수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고,

주주이익(interest)의 개념을 넘어
'주주후생'(welfare)의 범위로 확대되고 있는
ESG 경영이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주주총회 프로세스를
구축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Ⅲ

2022년「OECD 기업지배구조원칙」개정안에서는
주주총회의 내실화를 위해
전자주주총회의 도입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많은 나라들이 전자주주총회를 허용하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사태 등을 계기로
생중계 형태의 온라인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온라인 주주총회는
상법상 주주총회로 인정받을 수 없어
투표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도입된 전자문서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통지도

전자문서 발송에 관한 사전동의 절차가 불명확하여
기업들이 겪는 혼란과 불편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Ⅳ

이러한 문제 등을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우리 법무부는,
발전된 IT 기술을 활용하여
주주총회의 통지, 투표, 회의 전반에 이르는
주주총회 프로세스를 전자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제도 개선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무부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상법 등 중요 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토대인
법질서 인프라를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법무부장관 한 동 훈

제4절 역대 법무·검찰 간부 명단

1. 법무부장관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이 인(李 仁)	1948. 8. 2. ~ 1949. 6. 5.	
2 대	권승렬(權承烈)	1949. 6. 6. ~ 1950. 5. 21.	
3 대	이우익(李愚益)	1950. 5. 22. ~ 1950. 11. 22.	
4 대	김준연(金俊淵)	1950. 11. 23. ~ 1951. 5. 6.	
5 대	조진만(趙鎭滿)	1951. 5. 7. ~ 1952. 3. 4.	
6 대	서상환(徐相懽)	1952. 3. 5. ~ 1954. 6. 29.	
7 대	조용순(趙容淳)	1954. 6. 30. ~ 1955. 9. 15.	
8 대	이 호(李 澔)	1955. 9. 16. ~ 1958. 2. 19.	
9 대	홍진기(洪璡基)	1958. 2. 20. ~ 1960. 3. 23.	
10 대	권승렬(權承烈)	1960. 4. 25. ~ 1960. 8. 19.	
11 대	조재천(曺在千)	1960. 8. 23. ~ 1961. 5. 2.	
12 대	이병하(李炳夏)	1961. 5. 3. ~ 1961. 5. 18.	
13 대	고원증(高元增)	1961. 5. 20. ~ 1962. 1. 8.	
14 대	조병일(趙炳日)	1962. 1. 9. ~ 1963. 1. 31.	
15 대	장영순(張榮淳)	1963. 2. 1. ~ 1963. 4. 21.	
16 ~ 18대	민복기(閔復基)	1963. 4. 22. ~ 1966. 9. 25.	
19 대	권오병(權五柄)	1966. 9. 26. ~ 1968. 5. 20.	
20 대	이 호(李 澔)	1968. 5. 21. ~ 1970. 12. 20.	
21 대	배영호(裵泳鎬)	1970. 12. 21. ~ 1971. 6. 3.	
22 대	신직수(申稙秀)	1971. 6. 4. ~ 1973. 12. 2.	
23 대	이봉성(李鳳成)	1973. 12. 3. ~ 1974. 9. 17.	
24 ~ 25대	황산덕(黃山德)	1974. 9. 18. ~ 1976. 12. 3.	
26 대	이선중(李善中)	1976. 12. 4. ~ 1978. 12. 21.	
27 대	김치열(金致烈)	1978. 12. 22. ~ 1979. 12. 13.	
28 대	백상기(白翔起)	1979. 12. 14. ~ 1980. 5. 21.	
29 ~ 30대	오탁근(吳鐸根)	1980. 5. 22. ~ 1981. 4. 9.	
31 대	이종원(李鐘元)	1981. 4. 10. ~ 1982. 5. 20.	
32 대	정치근(鄭致根)	1982. 5. 21. ~ 1982. 6. 23.	
33 대	배명인(裵命仁)	1982. 6. 24. ~ 1985. 2. 18.	
34 대	김석휘(金錫輝)	1985. 2. 19. ~ 1985. 7. 15.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35 대	김성기(金聖基)	1985. 7. 16. ~ 1987. 5. 25.	
36 ~ 37대	정해창(丁海昌)	1987. 5. 26. ~ 1988. 12. 4.	
38 대	허형구(許亨九)	1988. 12. 5. ~ 1990. 3. 18.	
39 대	이종남(李種南)	1990. 3. 19. ~ 1991. 5. 26.	
40 대	김기춘(金淇春)	1991. 5. 27. ~ 1992. 10. 8.	
41 대	이정우(李正雨)	1992. 10. 9. ~ 1993. 2. 25.	
42 대	박희태(朴熹太)	1993. 2. 26. ~ 1993. 3. 7.	
43 대	김두희(金斗喜)	1993. 3. 8. ~ 1994. 12. 23.	
44 대	안우만(安又萬)	1994. 12. 24. ~ 1997. 3. 5.	
45 대	최상엽(崔相曄)	1997. 3. 6. ~ 1997. 8. 4.	
46 대	김종구(金鍾求)	1997. 8. 5. ~ 1998. 3. 2.	
47 대	박상천(朴相千)	1998. 3. 3. ~ 1999. 5. 23.	
48 대	김태정(金泰政)	1999. 5. 24. ~ 1999. 6. 7.	
49 대	김정길(金正吉)	1999. 6. 8. ~ 2001. 5. 20.	
50 대	안동수(安東洙)	2001. 5. 21. ~ 2001. 5. 23.	
51 대	최경원(崔慶元)	2001. 5. 24. ~ 2002. 1. 28.	
52 대	송정호(宋正鎬)	2002. 1. 29. ~ 2002. 7. 10.	
53 대	김정길(金正吉)	2002. 7. 11. ~ 2002. 11. 5.	
54 대	심상명(沈相明)	2002. 11. 9. ~ 2003. 2. 26.	
55 대	강금실(康錦實)	2003. 2. 27. ~ 2004. 7. 28.	
56 대	김승규(金昇圭)	2004. 7. 29. ~ 2005. 6. 29.	
57 대	천정배(千正培)	2005. 6. 30. ~ 2006. 7. 26.	
58 대	김성호(金成浩)	2006. 8. 30. ~ 2007. 9. 3.	
59 대	정성진(鄭城鎭)	2007. 9. 4. ~ 2008. 2. 28.	
60 대	김경한(金慶漢)	2008. 2. 29. ~ 2009. 9. 29.	
61 대	이귀남(李貴男)	2009. 9. 30. ~ 2011. 8. 10.	
62 대	권재진(權在珍)	2011. 8. 11. ~ 2013. 3. 10.	
63 대	황교안(黃敎安)	2013. 3. 11. ~ 2015. 6. 18.	
64 대	김현웅(金賢雄)	2015. 7. 9. ~ 2016. 11. 29.	
65 대	박상기(朴相基)	2017. 7. 19. ~ 2019. 9. 8.	
66 대	조 국(曺 國)	2019. 9. 9. ~ 2019. 10. 14.	
67 대	추미애(秋美愛)	2020. 1. 2. ~ 2021. 1. 27.	
68 대	박범계(朴範界)	2021. 1. 28. ~ 2022. 5. 9.	
69 대	한동훈(韓東勳)	2022. 5. 17. ~	

2. 검찰총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권승렬(權承烈)	1948. 10. 31. ~ 1949. 6. 5.	임기제 (1988 ~)
2 대	김익진(金翼鎭)	1949. 6. 6. ~ 1950. 6. 21.	
3 대	서상환(徐相懽)	1950. 6. 22. ~ 1952. 3. 5.	
4 대	한격만(韓格晩)	1952. 3. 14. ~ 1955. 9. 29.	
5 대	민복기(閔復基)	1955. 9. 30. ~ 1956. 7. 5.	
6 대	정순석(鄭順錫)	1956. 7. 6. ~ 1958. 3. 10.	
7 대	박승준(朴承俊)	1958. 3. 11. ~ 1960. 5. 4.	
8 대	이태희(李太熙)	1960. 5. 5. ~ 1961. 5. 27.	
9 대	장영순(張榮淳)	1961. 5. 28. ~ 1963. 1. 31.	
10 대	정창운(鄭暢雲)	1963. 2. 1. ~ 1963. 12. 6.	
11 대	신직수(申稙秀)	1963. 12. 7. ~ 1971. 6. 3.	
12 대	이봉성(李鳳成)	1971. 6. 5. ~ 1973. 12. 2.	
13 대	김치열(金致烈)	1973. 12. 3. ~ 1975. 12. 18.	
14 대	이선중(李善中)	1975. 12. 19. ~ 1976. 12. 4.	
15 대	오탁근(吳鐸根)	1976. 12. 7. ~ 1980. 5. 21.	
16 대	김종경(金鍾卿)	1980. 5. 28. ~ 1981. 3. 9.	
17 대	허형구(許亨九)	1981. 3. 10. ~ 1981. 12. 15.	
18 대	정치근(鄭致根)	1981. 12. 16. ~ 1982. 5. 21.	
19 대	김석휘(金錫輝)	1982. 5. 24. ~ 1985. 2. 18.	
20 대	서동권(徐東權)	1985. 2. 21. ~ 1987. 5. 26.	
21 대	이종남(李種南)	1987. 5. 27. ~ 1988. 12. 5.	
22 대	김기춘(金淇春)	1988. 12. 6. ~ 1990. 12. 5.	
23 대	정구영(鄭銶永)	1990. 12. 6. ~ 1992. 12. 5.	
24 대	김두희(金斗熙)	1992. 12. 6. ~ 1993. 3. 7.	
25 대	박종철(朴鍾喆)	1993. 3. 8. ~ 1993. 9. 13.	
26 대	김도언(金道彦)	1993. 9. 16. ~ 1995. 9. 15.	
27 대	김기수(金起秀)	1995. 9. 16. ~ 1997. 8. 6.	
28 대	김태정(金泰政)	1997. 8. 7. ~ 1999. 5. 24.	
29 대	박순용(朴舜用)	1999. 5. 26. ~ 2001. 5. 25.	
30 대	신승남(愼承男)	2001. 5. 26. ~ 2002. 1. 15.	
31 대	이명재(李明載)	2002. 1. 17. ~ 2002. 11. 5.	
32 대	김각영(金珏泳)	2002. 11. 11. ~ 2003. 3. 10.	
33 대	송광수(宋光洙)	2003. 4. 3. ~ 2005. 4. 2.	
34 대	김종빈(金鍾彬)	2005. 4. 4. ~ 2005. 10. 17.	
35 대	정상명(鄭相明)	2005. 11. 24. ~ 2007. 11. 23.	
36 대	임채진(林采珍)	2007. 11. 24. ~ 2009. 6. 4.	
37 대	김준규(金畯圭)	2009. 8. 20. ~ 2011. 7. 13.	
38 대	한상대(韓相大)	2011. 8. 11. ~ 2012. 12. 2.	
39 대	채동욱(蔡東旭)	2013. 4. 4. ~ 2013. 9. 27.	
40 대	김진태(金鎭太)	2013. 12. 2. ~ 2015. 11. 30.	
41 대	김수남(金秀南)	2015. 12. 2. ~ 2017. 5. 15.	
42 대	문무일(文武一)	2017. 7. 25. ~ 2019. 7. 24.	
43 대	윤석열(尹錫悅)	2019. 7. 25. ~ 2021. 3. 4.	
44 대	김오수(金㳓洙)	2021. 6. 1. ~ 2022. 5. 6.	
45 대	이원석(李沅石)	2022. 9. 16. ~	

3. 법무부차관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권승렬(權承烈)	1948. 8. 7. ~ 1948. 10. 30.	
2 대	백한성(白漢成)	1948. 10. 31. ~ 1949. 6. 7.	
3 대	김갑수(金甲洙)	1949. 6. 8. ~ 1950. 3. 13.	
4 대	김윤근(金潤根)	1950. 3. 14. ~ 1951. 11. 29.	
5 대	민복기(閔復基)	1951. 11. 30. ~ 1952. 5. 26.	
6 대	정재환(鄭在煥)	1952. 5. 27. ~ 1954. 2. 9.	
7 대	홍진기(洪璡基)	1954. 2. 17. ~ 1955. 10. 5.	
8 대	임석무(林碩茂)	1955. 10. 12. ~ 1956. 6. 12.	
9 대	배영호(裵泳鎬)	1956. 6. 23. ~ 1958. 3. 10.	
10 대	신언한(申彦瀚)	1958. 3. 11. ~ 1960. 5. 3.	
11 대	김영천(金永千)	1960. 7. 1. ~ 1960. 9. 29.	
12 대	김영환(金英煥)	1960. 8. 23. ~ 1961. 5. 15.	
	김영천(金永千)	1960. 9. 29. ~ 1962. 3. 18.	
13 대	서일교(徐壹敎)	1962. 3. 19. ~ 1963. 8. 7.	
14 대	권오병(權五柄)	1963. 8. 8. ~ 1965. 8. 27.	
15 대	이경호(李坰鎬)	1965. 8. 28. ~ 1968. 5. 23.	
16 대	김병화(金炳華)	1968. 5. 24. ~ 1969. 7. 27.	
17 대	오탁근(吳鐸根)	1969. 7. 28. ~ 1971. 8. 23.	
18 대	이선중(李善中)	1971. 8. 24. ~ 1973. 3. 8.	
19 대	김 선(金 璿)	1973. 3. 9. ~ 1974. 7. 7.	
20 대	김종경(金鍾卿)	1974. 7. 8. ~ 1977. 2. 16.	
21 대	이종원(李鐘元)	1977. 2. 17. ~ 1979. 2. 18.	
22 대	이용훈(李龍薰)	1979. 2. 19. ~ 1980. 5. 22.	
23 대	정태균(鄭泰均)	1980. 5. 26. ~ 1981. 4. 17.	
24 대	서동권(徐東權)	1981. 4. 25. ~ 1981. 12. 16.	
25 대	이영욱(李永旭)	1981. 12. 17. ~ 1982. 6. 17.	
26 대	정해창(丁海昌)	1982. 6. 18. ~ 1985. 2. 27.	
27 대	김종건(金鍾鍵)	1985. 2. 28. ~ 1985. 10. 18.	
28 대	이종남(李種南)	1985. 10. 19. ~ 1987. 5. 26.	
29 대	한영석(韓永錫)	1987. 5. 30. ~ 1988. 3. 4.	
30 대	서정신(徐廷信)	1988. 3. 5. ~ 1989. 3. 28.	
31 대	김두희(金斗喜)	1989. 3. 29. ~ 1991. 4. 17.	
32 대	조성욱(趙成郁)	1991. 4. 18. ~ 1993. 3. 3.	
33 대	신 건(辛 建)	1993. 3. 4. ~ 1993. 5. 27.	
34 대	김기석(金基錫)	1993. 5. 31. ~ 1994. 9. 15.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35 대	김종구(金鍾求)	1994. 9. 16. ~ 1995. 9. 19.	
36 대	김태정(金泰政)	1995. 9. 20. ~ 1997. 8. 6.	
37 대	원정일(元正一)	1997. 8. 8. ~ 1998. 3. 18.	
38 대	최경원(崔慶元)	1998. 3. 19. ~ 1999. 6. 8.	
39 대	김경한(金慶漢)	1999. 6. 9. ~ 2001. 5. 30.	
40 대	김학재(金鶴在)	2001. 5. 31. ~ 2001. 9. 11.	
41 대	신광옥(辛光玉)	2001. 9. 12. ~ 2001. 12. 13.	
42 대	김승규(金昇圭)	2001. 12. 18. ~ 2002. 2. 7.	
43 대	한부환(韓富煥)	2002. 2. 8. ~ 2002. 8. 18.	
44 대	김각영(金珏泳)	2002. 8. 19. ~ 2002. 11. 10.	
45 대	명로승(明魯昇)	2002. 11. 18. ~ 2003. 3. 11.	
46 대	정상명(鄭相明)	2003. 3. 13. ~ 2004. 5. 31.	
47 대	김상희(金相喜)	2004. 6. 1. ~ 2005. 8. 26.	
48 대	김희옥(金熙玉)	2005. 9. 8. ~ 2006. 8. 25.	
49 대	정동기(鄭東基)	2006. 8. 25. ~ 2007. 3. 4.	
50 대	정진호(鄭振昊)	2007. 3. 5. ~ 2008. 3. 9.	
51 대	문성우(文晟祐)	2008. 3. 10. ~ 2009. 1. 18.	
52 대	이귀남(李貴男)	2009. 1. 19. ~ 2009. 7. 11.	
53 대	황희철(黃希哲)	2009. 8. 12. ~ 2011. 8. 12.	
54 대	길태기(吉兌基)	2011. 8. 22. ~ 2013. 12. 23.	
55 대	김학의(金學義)	2013. 3. 14. ~ 2013. 3. 22.	
56 대	국민수(鞠敏秀)	2013. 4. 10. ~ 2013. 12. 23.	
57 대	김현웅(金賢雄)	2013. 12. 24. ~ 2015. 2. 10.	
58 대	김주현(金周賢)	2015. 2. 11. ~ 2015. 12. 23.	
59 대	이창재(李昌宰)	2015. 12. 24. ~ 2017. 5. 21.	
60 대	이금로(李今魯)	2017. 5. 22. ~ 2018. 6. 21.	
61 대	김오수(金伍洙)	2018. 6. 22. ~ 2020. 4. 27.	
62 대	고기영(高基榮)	2020. 4. 28. ~ 2020. 12. 2.	
63 대	이용구(李容九)	2020. 12. 3. ~ 2021. 6. 3.	
64 대	강성국(姜聲國)	2021. 7. 14. ~ 2022. 5. 12.	
65 대	이노공(李魯公)	2022. 5. 13. ~	

4. 대검찰청 차장검사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박승준(朴承俊)	1949. 11. 14. ~ 1952. 4. 6.	
2 대	정창운(鄭暢雲)	1952. 4. 7. ~ 1955. 10. 25.	
3 대	정순석(鄭順錫)	1955. 10. 26. ~ 1956. 7. 6.	
4 대	박천일(朴天一)	1956. 7. 25. ~ 1958. 2. 28.	
5 대	소진섭(蘇鎭燮)	1959. 4. 22. ~ 1960. 5. 20.	
6 대	주운화(朱雲化)	1962. 4. 11. ~ 1963. 5. 8.	
7 대	김영천(金永千)	1963. 5. 9. ~ 1963. 12. 30.	
8 대	주운화(朱雲化)	1963. 12. 31. ~ 1964. 3. 2.	
9 대	김병화(金炳華)	1964. 3. 16. ~ 1968. 5. 31.	
10 대	이봉성(李鳳成)	1968. 6. 1. ~ 1971. 6. 4.	
11 대	김영천(金永千)	1971. 8. 24. ~ 1973. 3. 19.	
12 대	이영환(李永煥)	1973. 4. 6. ~ 1977. 2. 16.	
13 대	김일두(金一斗)	1977. 2. 17. ~ 1980. 7. 9.	
14 대	허형구(許亨九)	1980. 7. 28. ~ 1981. 3. 9.	
15 대	배명인(裵命仁)	1981. 4. 27. ~ 1981. 12. 16.	
16 대	서동권(徐東權)	1981. 12. 17. ~ 1982. 5. 23.	
17 대	이명희(李明熙)	1982. 6. 18. ~ 1985. 3. 4.	
18 대	이중근(李重根)	1985. 3. 5. ~ 1985. 3. 11.	
19 대	김세권(金世權)	1985. 5. 25. ~ 1986. 5. 1.	
20 대	정해창(丁海昌)	1986. 5. 2. ~ 1987. 5. 25.	
21 대	최상엽(崔相曄)	1987. 5. 30. ~ 1990. 3. 19.	
22 대	서정신(徐廷信)	1990. 3. 27. ~ 1991. 4. 17.	
23 대	김두희(金斗喜)	1991. 4. 18. ~ 1992. 12. 5.	
24 대	박종철(朴鍾喆)	1992. 12. 12. ~ 1993. 3. 8.	
25 대	김도언(金道彦)	1993. 3. 17. ~ 1993. 9. 15.	
26 대	송종의(宋宗義)	1993. 9. 21. ~ 1995. 9. 14.	
27 대	최명선(崔明善)	1995. 9. 20. ~ 1997. 8. 9.	
28 대	이원성(李源性)	1997. 8. 11. ~ 1999. 6. 3.	
29 대	신승남(愼承男)	1999. 6. 9. ~ 2001. 5. 25.	
30 대	김각영(金珏泳)	2001. 5. 31. ~ 2002. 2. 7.	
31 대	김승규(金昇圭)	2002. 2. 8. ~ 2002. 8. 18.	
32 대	김학재(金鶴在)	2002. 8. 19. ~ 2003. 3. 13.	
33 대	김종빈(金鍾彬)	2003. 3. 13. ~ 2004. 5. 31.	
34 대	이정수(李廷洙)	2004. 6. 1. ~ 2005. 3. 31.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35 대	정상명(鄭相明)	2005. 4. 8. ~ 2005. 11. 23.	
36 대	임승관(林承寬)	2005. 11. 28. ~ 2007. 3. 4.	
37 대	정동기(鄭東基)	2007. 3. 5. ~ 2007. 11. 23.	
38 대	권재진(權在珍)	2007. 11. 26. ~ 2009. 1. 18.	
39 대	문성우(文晟祐)	2009. 1. 19. ~ 2009. 7. 13.	
40 대	차동민(車東旻)	2009. 7. 20. ~ 2011. 8. 3.	
41 대	채동욱(蔡東旭)	2011. 8. 22. ~ 2012. 12. 5.	
42 대	김진태(金鎭太)	2012. 12. 6. ~ 2013. 4. 4.	
43 대	길태기(吉兌基)	2013. 4. 10. ~ 2013. 12. 4.	
44 대	임정혁(任正赫)	2013. 12. 5. ~ 2015. 2. 10.	
45 대	김수남(金秀南)	2015. 2. 11. ~ 2015. 12. 1.	
46 대	김주현(金周賢)	2015. 12. 24. ~ 2017. 5. 21.	
47 대	봉 욱(奉 旭)	2017. 5. 22. ~ 2019. 6. 27.	
48 대	강남일(姜南一)	2019. 7. 31. ~ 2020. 1. 12.	
50 대	구본선(具本善)	2020. 1. 13. ~ 2020. 8. 10.	
51 대	조남관(趙南寬)	2020. 8. 11. ~ 2021. 6. 10.	
52 대	박성진(朴成鎭)	2021. 6. 11. ~ 2022. 5. 22.	
53 대	이원석(李沅秳)	2022. 5. 23. ~ 2022. 9. 15.	

5. 법무부 실·국·본부장

• 기획조정실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김락윤(金洛潤)	1961. 9. 25. ~ 1962. 3. 8.	
2 대	이두성(李斗成)	1962. 8. 14. ~ 1966. 11. 18.	
3 대	나길조(羅吉祚)	1966. 11. 19. ~ 1969. 1. 9.	
4 대	윤두식(尹斗植)	1969. 1. 20. ~ 1972. 11. 21.	
5 대	정익원(鄭益源)	1972. 11. 22. ~ 1974. 8. 31.	
6 대	설동훈(薛東勳)	1974. 9. 1. ~ 1976. 2. 28.	
7 대	강우영(姜友永)	1976. 3. 1. ~ 1978. 2. 10.	
8 대	안경열(安慶烈)	1978. 2. 11. ~ 1981. 4. 26.	
9 대	송병철(宋炳喆)	1981. 4. 27. ~ 1981. 12. 16.	
10 대	김세권(金世權)	1981. 12. 17. ~ 1982. 6. 17.	
11 대	김양균(金亮均)	1982. 6. 18. ~ 1983. 7. 31.	
12 대	김유후(金有厚)	1983. 8. 1. ~ 1985. 3. 4.	
13 대	신 건(辛 建)	1985. 3. 5. ~ 1987. 6. 7.	
14 대	송종의(宋宗義)	1987. 6. 8. ~ 1989. 3. 28.	
15 대	지헌범(池憲範)	1989. 3. 29. ~ 1991. 4. 17.	
16 대	정성진(鄭城鎭)	1991. 4. 18. ~ 1991. 7. 31.	
17 대	김종구(金鍾求)	1991. 8. 1. ~ 1992. 7. 28.	
18 대	김태정(金泰政)	1992. 7. 29. ~ 1993. 3. 16.	
19 대	김상수(金相洙)	1993. 3. 17. ~ 1993. 9. 20.	
20 대	최경원(崔慶元)	1993. 9. 21. ~ 1994. 9. 15.	
21 대	최병국(崔炳國)	1994. 9. 16. ~ 1995. 9. 19.	
22 대	김경한(金慶漢)	1995. 9. 20. ~ 1997. 1. 22.	
23 대	신승남(愼承男)	1997. 1. 23. ~ 1997. 8. 13.	
24 대	윤동민(尹東旻)	1997. 8. 14. ~ 1998. 3. 22.	
25 대	신광옥(辛光玉)	1998. 3. 23. ~ 1999. 2. 21.	
26 대	김각영(金珏泳)	1999. 2. 22. ~ 1999. 6. 8.	
27 대	이범관(李範觀)	1999. 6. 9. ~ 2000. 7. 14.	
28 대	장윤석(張倫碩)	2000. 7. 15. ~ 2001. 5. 30.	
29 대	채수철(蔡秀哲)	2001. 5. 31. ~ 2002. 2. 7.	
30 대	정상명(鄭相明)	2002. 2. 8. ~ 2003. 3. 12.	
31 대	박상길(朴相吉)	2003. 3. 13. ~ 2004. 5. 31.	
32 대	김회선(金會瑄)	2004. 6. 1. ~ 2005. 4. 4.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33 대	이귀남(李貴男)	2005. 4. 8. ~ 2006. 2. 5.	2005. 5. 2.
34 대	황희철(黃希哲)	2006. 2. 6. ~ 2006. 3. 15.	정책홍보
35 대	박한철(朴漢徹)	2006. 3. 16. ~ 2007. 3. 4.	관리실로
36 대	박영렬(朴永烈)	2007. 3. 5. ~ 2008. 3. 10.	개편
37 대	소병철(蘇秉哲)	2008. 3. 11. ~ 2009. 1. 18.	2008. 2. 29.
38 대	김수남(金秀南)	2009. 1. 19. ~ 2009. 8. 11.	기획조정실로
39 대	최재경(崔在卿)	2009. 8. 12. ~ 2010. 7. 14.	개편
40 대	김희관(金熙官)	2010. 7. 15. ~ 2011. 8. 21.	
41 대	조성욱(曺成旭)	2011. 8. 22. ~ 2012. 7. 17.	
42 대	김주현(金周賢)	2012. 7. 18. ~ 2013. 4. 9.	
43 대	봉 욱(奉 旭)	2013. 4. 10. ~ 2013. 12. 23.	
44 대	안태근(安兌根)	2013. 12. 24. ~ 2015. 2. 10.	
45 대	진경준(陳炅準)	2015. 2. 11. ~ 2015. 12. 23.	
46 대	권익환(權益煥)	2015. 12. 24. ~ 2017. 7. 31.	
47 대	조상철(趙商喆)	2017. 8. 1. ~ 2018. 6. 21.	
48 대	강남일(姜南一)	2018. 6. 22. ~ 2019. 7. 30.	
49 대	김후곤(金煦坤)	2019. 7. 31. ~ 2020. 1. 12.	
50 대	심우정(沈雨廷)	2020. 1. 13. ~ 2021. 6. 10.	
51 대	주영환(朱映奐)	2021. 6. 11. ~ 2022. 5. 22.	
52 대	권순정(權純汀)	2022. 5. 23. ~	

• 법무실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김갑수(金甲洙)	1948. 11. 4. ~ 1949. 7. 1.	1948. 11. 4.
2 대	민복기(閔復基)	1949. 7. 2. ~ 1949. 12. 31.	법무국 신설
3 대	홍진기(洪璡基)	1950. 4. 1. ~ 1954. 2. 17.	
4 대	배영호(裵泳鎬)	1954. 4. 6. ~ 1956. 6. 22.	
5 대	김영천(金永千)	1956. 6. 23. ~ 1960. 6. 30.	
6 대	이경호(李坰鎬)	1960. 7. 1. ~ 1965. 8. 27.	
7 대	김 선(金 璿)	1965. 10. 1. ~ 1966. 11. 18.	
8 대	이선중(李善中)	1966. 11. 19. ~ 1971. 8. 23.	1967. 4. 10.
9 대	김종경(金鍾卿)	1971. 8. 26. ~ 1974. 7. 7.	법무실로
10 대	주문기(朱文基)	1974. 9. 1. ~ 1978. 2. 10.	개편
11 대	변무관(卞務寬)	1978. 2. 11. ~ 1979. 8. 31.	
12 대	강우영(姜友永)	1979. 9. 1. ~ 1980. 6. 8.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13 대	이길주(李桔柱)	1980. 6. 9. ~ 1981. 4. 26.	
14 대	백광현(白光鉉)	1981. 4. 27. ~ 1981. 12. 16.	
15 대	이준승(李準昇)	1981. 12. 17. ~ 1982. 6. 17.	
16 대	한영석(韓永錫)	1982. 6. 18. ~ 1985. 3. 4.	
17 대	김유후(金有厚)	1985. 3. 5. ~ 1987. 6. 7.	
18 대	임상현(任尙鉉)	1987. 6. 8. ~ 1989. 3. 28.	
19 대	황길수(黃吉秀)	1989. 3. 29. ~ 1991. 7. 31.	
20 대	정성진(鄭城鎭)	1991. 8. 1. ~ 1992. 7. 28.	
21 대	문종수(文鍾洙)	1992. 7. 29. ~ 1993. 3. 16.	
22 대	신창언(申昌彦)	1993. 3. 17. ~ 1993. 9. 20.	
23 대	주광일(朱光逸)	1993. 9. 21. ~ 1994. 9. 15.	
24 대	김수장(金壽長)	1994. 9. 16. ~ 1995. 9. 19.	
25 대	김상수(金相洙)	1995. 9. 20. ~ 1995. 9. 26.	
26 대	신승남(愼承男)	1995. 9. 27. ~ 1997. 1. 22.	
27 대	공영규(孔永規)	1997. 1. 23. ~ 1997. 8. 13.	
28 대	강신욱(姜信旭)	1997. 8. 14. ~ 1998. 3. 22.	
29 대	김영철(金永喆)	1998. 3. 23. ~ 1999. 6. 8.	
30 대	송광수(宋光洙)	1999. 6. 9. ~ 1999. 8. 23.	
31 대	정충수(鄭忠秀)	1999. 8. 24. ~ 2000. 7. 14.	
32 대	명로승(明魯昇)	2000. 7. 15. ~ 2001. 5. 30.	
33 대	김영진(金永珍)	2001. 5. 31. ~ 2002. 2. 7.	
34 대	장윤석(張倫碩)	2002. 2. 8. ~ 2002. 8. 18.	
35 대	유창종(柳昌宗)	2002. 8. 19. ~ 2002. 11. 17.	
36 대	박종열(朴淙烈)	2002. 11. 18. ~ 2003. 3. 12.	
37 대	홍경식(洪景植)	2003. 3. 13. ~ 2003. 8. 4.	
38 대	이기배(李棋培)	2003. 8. 5. ~ 2004. 5. 31.	
39 대	안영욱(安永昱)	2004. 6. 1. ~ 2005. 4. 7.	
40 대	김준규(金畯圭)	2005. 4. 8. ~ 2007. 3. 4.	
41 대	한상대(韓相大)	2007. 3. 5. ~ 2009. 1. 18.	
42 대	채동욱(蔡東旭)	2009. 1. 19. ~ 2009. 8. 11.	
43 대	성영훈(成永薰)	2009. 8. 12. ~ 2010. 7. 14.	
44 대	한명관(韓明官)	2010. 7. 15. ~ 2011. 8. 21.	
45 대	정병두(鄭炳斗)	2011. 8. 22. ~ 2012. 7. 17.	
46 대	황윤성(黃允成)	2012. 7. 18. ~ 2013. 4. 9.	
47 대	강찬우(姜燦佑)	2013. 4. 10. ~ 2013. 12. 23.	
48 대	정인창(鄭仁昌)	2013. 12. 24. ~ 2015. 2. 10.	
49 대	봉 욱(奉 旭)	2015. 2. 11. ~ 2015. 12. 23	
50 대	김호철(金浩徹)	2015. 12. 24. ~ 2017. 7. 31.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51 대	이용구(李容九)	2017. 8. 22. ~ 2020. 5. 18.	
52 대	강성국(姜聲國)	2020. 7. 6. ~ 2021. 7. 13.	
53 대	이상갑(李尙甲)	2021. 8. 6. ~ 2022. 9. 8.	

• 검찰국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민복기(閔復基)	1948. 11. 4. ~ 1949. 7. 1.	1948. 11. 4.
2 대	이태희(李太熙)	1949. 7. 2. ~ 1949. 9. 22.	신설
3 대	최병석(崔秉錫)	1949. 11. 8. ~ 1950. 4. 20.	
4 대	신언한(申彦瀚)	1950. 6. 8. ~ 1952. 7. 17.	
5 대	권오병(權五柄)	1952. 7. 18. ~ 1953. 11. 6.	
6 대	김장섭(金長涉)	1953. 11. 23. ~ 1954. 3. 23.	
7 대	박천일(朴天一)	1954. 4. 3. ~ 1956. 7. 24.	
8 대	김치열(金致烈)	1956. 9. 17. ~ 1958. 3. 13.	
9 대	김장섭(金長涉)	1958. 3. 14. ~ 1958. 8. 30.	
10 대	주운화(朱雲化)	1958. 9. 10. ~ 1960. 9. 23.	
11 대	김찬수(金纘洙)	1960. 9. 24. ~ 1961. 7. 19.	
12 대	위청용(韋靑龍)	1961. 7. 20. ~ 1961. 12. 22.	
13 대	김용제(金龍濟)	1962. 1. 26. ~ 1963. 5. 30.	
14 대	윤두식(尹斗植)	1963. 5. 31. ~ 1964. 10. 16.	
15 대	윤운영(尹雲永)	1964. 10. 17. ~ 1966. 11. 18.	
16 대	김일두(金一斗)	1966. 11. 19. ~ 1968. 5. 31.	
17 대	김성재(金聖在)	1968. 6. 1. ~ 1969. 8. 1.	
18 대	박원호(朴元鎬)	1969. 8. 2. ~ 1971. 8. 25.	
19 대	이종원(李鐘元)	1971. 8. 26. ~ 1973. 4. 5.	
20 대	서정각(徐廷覺)	1973. 4. 6. ~ 1975. 9. 30.	
21 대	허형구(許亨九)	1975. 10. 1. ~ 1979. 2. 18.	
22 대	문상익(文相翼)	1979. 2. 19. ~ 1980. 6. 8.	
23 대	배명인(裵命仁)	1980. 6. 9. ~ 1981. 4. 26.	
24 대	정해창(丁海昌)	1981. 4. 27. ~ 1981. 12. 16.	
25 대	김기춘(金淇春)	1981. 12. 17. ~ 1982. 6. 17.	
26 대	정구영(鄭銶永)	1982. 6. 18. ~ 1985. 3. 4.	
27 대	김두희(金斗喜)	1985. 3. 5. ~ 1987. 6. 7.	
28 대	김유후(金有厚)	1987. 6. 8. ~ 1989. 3. 28.	
29 대	박종철(朴鍾喆)	1989. 3. 29. ~ 1990. 3. 26.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30 대	김도언(金道彦)	1990. 3. 27. ~ 1991. 4. 17.	
31 대	최명부(崔明夫)	1991. 4. 18. ~ 1993. 3. 16.	
32 대	김종구(金鍾求)	1993. 3. 17. ~ 1993. 9. 20.	
33 대	최영광(崔永光)	1993. 9. 21. ~ 1994. 9. 15.	
34 대	최 환(崔 桓)	1994. 9. 16. ~ 1995. 9. 19.	
35 대	김진세(金鎭世)	1995. 9. 20. ~ 1997. 1. 22.	
36 대	박순용(朴舜用)	1997. 1. 23. ~ 1997. 8. 13.	
37 대	최경원(崔慶元)	1997. 8. 14. ~ 1998. 3. 18.	
38 대	신승남(愼承男)	1998. 3. 23. ~ 1999. 6. 8.	
39 대	한부환(韓富煥)	1999. 6. 9. ~ 2000. 7. 14.	
40 대	김학재(金鶴在)	2000. 7. 15. ~ 2001. 5. 30.	
41 대	송광수(宋光洙)	2001. 5. 31. ~ 2002. 2. 7.	
42 대	김진환(金振煥)	2002. 2. 8. ~ 2002. 8. 18.	
43 대	장윤석(張倫碩)	2002. 8. 19. ~ 2003. 3. 12.	
44 대	홍석조(洪錫肇)	2003. 3. 13. ~ 2003. 8. 4.	
45 대	이종백(李鍾伯)	2003. 8. 5. ~ 2004. 5. 31.	
46 대	임채진(林采珍)	2004. 6. 1. ~ 2006. 2. 5.	
47 대	문성우(文晟祐)	2006. 2. 6. ~ 2008. 3. 9.	
48 대	차동민(車東珉)	2008. 3. 11. ~ 2009. 1. 18.	
49 대	한상대(韓相大)	2009. 1. 19. ~ 2009. 8. 11.	
50 대	최교일(崔敎一)	2009. 8. 12. ~ 2011. 8. 21.	
51 대	국민수(鞠敏秀)	2011. 8. 22. ~ 2013. 4. 9.	
52 대	김주현(金周賢)	2013. 4. 10. ~ 2015. 2. 10.	
53 대	안태근(安兌根)	2015. 2. 11. ~ 2017. 5. 21.	
54 대	박균택(朴均澤)	2017. 5. 22. ~ 2018. 6. 18	
55 대	윤대진(尹大鎭)	2018. 6. 19. ~ 2019. 7. 30.	
56 대	이성윤(李盛潤)	2019. 7. 31. ~ 2020. 1. 12.	
57 대	조남관(趙南寬)	2020. 1. 13. ~ 2020. 8. 10.	
58 대	심재철(沈載哲)	2020. 8. 11. ~ 2021. 2. 8.	
59 대	이정수(李正洙)	2021. 2. 9. ~ 2021. 6. 10.	
60 대	구자현(具滋賢)	2021. 6. 11. ~ 2022. 5. 22.	
61 대	신자용(申子容)	2022. 5. 23. ~	

• 보호국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서동권(徐東權)	1981. 1. 26. ~ 1981. 4. 26.	1981. 1. 19.
2 대	박일흠(朴一欽)	1981. 4. 27. ~ 1982. 6. 20.	신설
3 대	이병근(李秉根)	1982. 6. 21. ~ 1983. 7. 31.	
4 대	김도언(金道彦)	1983. 8. 17. ~ 1985. 3. 5.	
5 ~ 6대	임상현(任尙鉉)	1985. 3. 12. ~ 1987. 6. 7.	
7 대	변재일(卞在日)	1987. 6. 8. ~ 1989. 3. 28.	
8 대	장응수(張應水)	1989. 3. 29. ~ 1991. 4. 17.	
9 대	지헌범(池憲範)	1991. 4. 18. ~ 1992. 7. 28.	
10 대	김기수(金起秀)	1992. 7. 29. ~ 1993. 3. 16.	
11 대	김태정(金泰政)	1993. 3. 17. ~ 1993. 4. 2.	
12 대	원정일(元正一)	1993. 4. 3. ~ 1993. 9. 20.	
13 대	김수장(金壽長)	1993. 9. 21. ~ 1994. 9. 15.	
14 대	김병학(金秉學)	1994. 9. 16. ~ 1995. 9. 19.	
15 대	이재신(李載侁)	1995. 9. 20. ~ 1997. 1. 22.	
16 대	송정호(宋正鎬)	1997. 1. 23. ~ 1997. 8. 13.	
17 대	김영철(金永喆)	1997. 8. 14. ~ 1998. 3. 22.	
18 대	윤동민(尹東旻)	1998. 3. 23. ~ 1999. 2. 3.	
19 대	신광옥(辛光玉)	1999. 2. 22. ~ 1999. 6. 8.	
20 대	정충수(鄭忠秀)	1999. 6. 9. ~ 1999. 8. 23.	
21 대	박종열(朴淙烈)	1999. 8. 24. ~ 2001. 5. 30.	
22 대	김종빈(金鍾彬)	2001. 5. 31. ~ 2002. 2. 7.	
23 대	조규정(趙圭政)	2002. 2. 8. ~ 2002. 11. 17.	
24 대	윤종남(尹鍾南)	2002. 11. 18. ~ 2003. 3. 12.	
25 대	정동기(鄭東基)	2003. 3. 13. ~ 2004. 5. 31.	
26 대	정진호(鄭振昊)	2004. 6. 1. ~ 2005. 4. 7.	
27 대	이승구(李承玖)	2005. 4. 8. ~ 2005. 9. 11.	
28 대	김수민(金秀敏)	2005. 9. 12. ~ 2007. 3. 4.	
29 대	이상도(李相燾)	2007. 3. 5. ~ 2008. 3. 10.	

• 범죄예방정책국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박기준(朴基俊)	2008. 3. 11. ~ 2009. 1. 18.	
2 대	소병철(蘇秉哲)	2009. 1. 19. ~ 2009. 8. 11.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3 대	주철현(朱哲鉉)	2009. 8. 12. ~ 2010. 7. 14.	
4 대	김수남(金秀南)	2010. 7. 15. ~ 2011. 8. 21.	
5 대	김희관(金熙官)	2011. 8. 22. ~ 2012. 7. 17.	
6 대	이건주(李健周)	2012. 7. 18. ~ 2013. 4. 9.	
7 대	문무일(文武一)	2013. 4. 10. ~ 2013. 12. 23.	
8 대	황철규(黃喆奎)	2013. 12. 24. ~ 2015. 2. 10.	
9 대	오광수(吳桄洙)	2015. 2. 11. ~ 2015. 12. 23.	
10 대	이상호(李相虎)	2015. 12. 24. ~ 2017. 7. 31.	
11 대	고기영(高基榮)	2017. 8. 1. ~ 2018. 2. 27.	
12 대	강호성(姜鎬成)	2018. 4. 2. ~ 2021. 6. 29.	
13 대	윤웅장(尹雄章)	2021. 8. 6. ~	

• 인권국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김준규(金畯圭)	2006. 5. 3. ~ 2006. 8. 6.	2006. 5. 3.신설
2 대	김종훈(金鍾勳)	2006. 8. 7. ~ 2009. 2. 15.	개 방 직
3 대	조영곤(曺永昆)	2009. 2. 28. ~ 2009. 8. 11.	검 사
4 대	송찬엽(宋讚燁)	2009. 8. 31. ~ 2010. 7. 14.	검 사
5 대	박민표(朴珉豹)	2010. 8. 2. ~ 2011. 9. 4.	검 사
6 대	이명재(李明宰)	2011. 9. 5. ~ 2012. 7. 17.	검 사
7 대	봉 욱(奉 旭)	2012. 7. 26. ~ 2013. 4. 9.	검 사
8 대	안태근(安兌根)	2013. 4. 23. ~ 2013. 12. 23.	검 사
9 대	한찬식(韓璨湜)	2014. 1. 16. ~ 2015. 2. 10.	검 사
10 대	차경환(車京煥)	2015. 2. 25. ~ 2015. 12. 23.	검 사
11 대	권정훈(權政勳)	2016. 1. 13. ~ 2017. 8. 16.	검 사
12 대	황희석(黃希錫)	2017. 9. 29. ~ 2020. 1. 14.	개 방 직
13 대	이상갑(李尙甲)	2020. 8. 28. ~ 2021. 8. 5.	개 방 직
14 대	위은진(魏銀鎭)	2022. 1. 3. ~	개 방 직

• 감찰관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임채진(林采珍)	2005. 2. 1. ~ 2005. 4. 7.	직무대리
2 대	선우영(鮮于泳)	2005. 4. 8. ~ 2005. 9. 11.	
3 대	이승구(李承玖)	2005. 9. 12. ~ 2006. 2. 5.	
4 대	안종택(安鍾澤)	2006. 2. 6. ~ 2007. 3. 4.	
5 대	이복태(李福泰)	2007. 3. 5. ~ 2008. 3. 10.	
6 대	곽상욱(郭相煜)	2008. 4. 15. ~ 2009. 8. 11.	
7 대	이경재(李慶在)	2009. 9. 10. ~ 2010. 7. 14.	
8 대	안장근(安章根)	2010. 9. 1. ~ 2012. 8. 31.	개 방 직
9 대	안장근(安章根)	2012. 9. 1. ~ 2014. 8. 31.	개 방 직
10 대	김주현(金周賢)	2014. 9. 1. ~ 2015. 2. 10.	직무대리
11 대	안태근(安兌根)	2015. 2. 11. ~ 2015. 3. 15.	직무대리
12 대	장인종(張仁鍾)	2015. 3. 16. ~ 2017. 3. 15.	개 방 직
13 대	장인종(張仁鍾)	2017. 3. 16. ~ 2018. 4. 19.	개 방 직
14 대	송규종(宋奎鍾)	2018. 4. 20. ~ 2018. 7. 18.	직무대리
15 대	이정현(李定炫)	2018. 7. 19. ~ 2019. 4. 28.	직무대리
16 대	마광열(馬光烈)	2019. 4. 29. ~ 2020. 5. 10.	개 방 직
17 대	박은정(朴恩貞)	2020. 5. 11. ~ 2020. 7. 5.	직무대리
18 대	류 혁(柳 赫)	2020. 7. 6. ~	개 방 직

• 교정국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윤용섭(尹用燮)	1948. 11. 8. ~ 1949. 11. 8.	1948. 11. 4.
2 대	원탁연(元鐸淵)	1949. 11. 8. ~ 1951. 8. 28.	형정국 신설
3 대	최세황(崔世璜)	1951. 8. 29. ~ 1952. 7. 18.	
4 대	신언한(申彦瀚)	1952. 7. 19. ~ 1958. 3. 11.	
5 대	이병호(李丙浩)	1958. 3. 12. ~ 1960. 9. 23.	
6 대	이홍규(李弘圭)	1960. 9. 24. ~ 1961. 6. 21.	
7 대	서일교(徐壹敎)	1961. 6. 22. ~ 1962. 3. 18.	1962. 5. 21.
8 대	이봉성(李鳳成)	1962. 3. 19. ~ 1964. 10. 16.	교정국으로
9 대	윤두식(尹斗植)	1964. 10. 17. ~ 1966. 11. 18.	개편
10 대	윤운영(尹雲永)	1966. 11. 19. ~ 1968. 12. 1.	
11 대	김덕문(金德文)	1968. 12. 2. ~ 1971. 8. 25.	
12 대	김일두(金一斗)	1971. 8. 26. ~ 1973. 4. 5.	
13 대	이종원(李鐘元)	1973. 4. 6. ~ 1975. 9. 30.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14 대	김윤근(金潤槿)	1975. 10. 1. ~ 1977. 2. 16.	
15 대	송종진(宋鍾辰)	1977. 2. 17. ~ 1979. 2. 18.	
16 대	김석휘(金錫輝)	1979. 2. 19. ~ 1981. 4. 26.	
17 대	안경상(安景相)	1981. 4. 27. ~ 1981. 12. 16.	
18 대	김종건(金鐘鍵)	1981. 12. 17. ~ 1983. 7. 31.	
19 대	이병근(李秉根)	1983. 8. 1. ~ 1986. 5. 2.	
20 대	허은도(許殷道)	1986. 5. 3. ~ 1987. 6. 7.	
21 대	김동철(金東哲)	1987. 6. 8. ~ 1988. 8. 24.	
22 대	신 건(辛 建)	1988. 8. 25. ~ 1991. 4. 17.	
23 대	유순석(柳淳錫)	1991. 4. 18. ~ 1993. 3. 16.	
24 대	김기수(金起秀)	1993. 3. 17. ~ 1993. 5. 31.	직무대리
25 대	원정일(元正一)	1993. 6. 1. ~ 1993. 9. 20.	
26 대	김택수(金澤秀)	1993. 9. 21. ~ 1994. 9. 15.	
27 대	원정일(元正一)	1994. 9. 16. ~ 1995. 9. 19.	검사장급
28 대	박순용(朴舜用)	1995. 9. 20. ~ 1997. 1. 22.	
29 대	유재성(柳在成)	1997. 1. 23. ~ 1997. 8. 13.	
30 대	김수장(金壽長)	1997. 8. 14. ~ 1998. 3. 22.	
31 대	김경한(金慶漢)	1998. 3. 23. ~ 1999. 6. 8.	
32 대	이순길(李淳吉)	1999. 6. 9. ~ 2001. 6. 30.	일반직
33 대	김명환(金明煥)	2001. 7. 1. ~ 2002. 12. 31.	
34 대	하근수(河根洙)	2003. 1. 1. ~ 2003. 12. 31.	
35 대	양봉태(梁奉泰)	2004. 1. 19. ~ 2005. 12. 31.	
36 대	이인순(李仁焞)	2006. 1. 1. ~ 2006. 6. 25.	
37 대	승성신(承聖信)	2006. 6. 26. ~ 2007. 11. 29.	

• 교정본부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승성신(承聖信)	2007. 11. 30. ~ 2008. 6. 29.	
2 대	이태희(李台熙)	2008. 6. 30. ~ 2010. 6. 29.	
3 대	안동주(安東珠)	2010. 6. 30. ~ 2012. 6. 30.	
4 대	김태훈(金兌勳)	2012. 7. 1. ~ 2014. 6. 30.	
5 대	윤경식(尹慶植)	2014. 7. 16. ~ 2016. 6. 30.	일반직
6 대	김학성(金學成)	2016. 7. 1. ~ 2018. 6. 30.	
7 대	최강주(崔康柱)	2018. 7. 1. ~ 2020. 6. 30.	
8 대	이영희(李英姬)	2020. 7. 6. ~ 2021. 6. 30.	
9 대	유병철(柳炳喆)	2021. 7. 1. ~ 2022. 9. 1.	
10 대	신용해(愼鏞海)	2022. 9. 1. ~	

• 출입국관리국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이영환(李永煥)	1970. 9. 1. ~ 1971. 8. 25.	1970. 8. 20.
2 대	정익원(鄭益源)	1971. 8. 26. ~ 1972. 11. 21.	신설
3 대	안경열(安慶烈)	1972. 11. 22. ~ 1976. 6. 20.	
4 대	이길주(李桔柱)	1976. 6. 21. ~ 1978. 2. 10.	검사장급
5 대	정명래(鄭明來)	1978. 2. 11. ~ 1980. 6. 8.	
6 대	김용인(金用璘)	1980. 6. 9. ~ 1981. 4. 26.	
7 대	김기춘(金淇春)	1981. 4. 27. ~ 1981. 12. 16.	
8 대	정구영(鄭銶永)	1981. 12. 17. ~ 1982. 6. 17.	
9 대	박희태(朴熹太)	1982. 6. 18. ~ 1983. 7. 31.	
10 대	안태현(安泰鉉)	1983. 8. 1. ~ 1987. 2. 28.	일반직
11 대	조기현(曺麒鉉)	1987. 3. 2. ~ 1989. 4. 14.	
12 대	김우진(金宇鎭)	1989. 4. 15. ~ 1991. 6. 30.	
13 대	김시평(金時評)	1991. 7. 1. ~ 1993. 9. 30.	
14 대	홍석종(洪錫宗)	1993. 10. 1. ~ 1995. 3. 31.	
15 대	유병랑(兪炳郎)	1995. 4. 1. ~ 1997. 5. 31.	
16 대	구창덕(具昌德)	1997. 6. 1. ~ 1999. 4. 1.	
17 대	김수영(金秀永)	1999. 4. 2. ~ 2001. 6. 30.	
18 대	최수근(崔洙根)	2001. 7. 1. ~ 2003. 11. 21.	
19 대	이민희(李珉熙)	2003. 12. 5. ~ 2005. 12. 4.	계약직
20 대	강명득(姜命得)	2005. 12. 5. ~ 2007. 4. 15.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추규호(秋圭昊)	2007. 7. 10. ~ 2009. 7. 10.	계약직
2 대	석동현(石東炫)	2009. 8. 12. ~ 2011. 8. 21.	검사장
3 대	이창세(李昌世)	2011. 8. 22. ~ 2013. 4. 3.	검사장
4 대	정동민(鄭東敏)	2013. 4. 10. ~ 2013. 12. 23.	검사장
5 대	한무근(韓武根)	2013. 12. 24. ~ 2015. 2. 10.	검사장
6 대	김영준(金英晙)	2015. 2. 11. ~ 2015. 12. 23.	검사장
7 대	진경준(陳炅準)	2015. 12. 24. ~ 2016. 5. 22.	검사장
8 대	김우현(金宇鉉)	2016. 5. 23. ~ 2017. 7. 31.	검사장
9 대	차규근(車圭根)	2017. 9. 4. ~ 2021. 7. 1.	일반직
10 대	이재유(李在兪)	2021. 7. 2. ~	일반직

• 인사정보관리단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박행열(朴幸烈)	2022. 6. 7. ~	2022. 6. 7. 인사정보 관리단 신설

제5절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 명단

1. 본 부(5급 이상)

(2022. 12. 31. 기준)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장 관	**한동훈**	**2022. 5. 17.**
차 관	**이노공**	**2022. 5. 13.**
장관정책보좌관	김명철	2022. 5. 23.
감 찰 관	**류 혁**	**2020. 7. 6.**
감찰담당관	김도완	2022. 5. 23.
검 사	박대환	2022. 7. 4.
검 사	조 철	2022. 7. 4.
검 사	장려미	2022. 7. 4.
검찰사무관	이기용	2019. 1. 28.
〃	남호현	2019. 12. 23.
〃	김승남	2020. 2. 10.
〃	최병휘	2022. 7. 18.
교 정 관	김충원	2022. 9. 26.
보호사무관	박우근	2019. 1. 28.
출입국관리사무관	김관영	2022. 11. 14.
감사담당관	천정훈	2022. 7. 1.
서 기 관	김경수	2022. 2. 7.
〃	권창모	2022. 1. 24.
〃	김근한	2022. 9. 19.
행정사무관	이승항	2022. 7. 1.
	이상영	2018. 1. 15.
	백영준	2020. 2. 10.
〃	이준서	2019. 7. 1.
공업사무관	최해규	2018. 7. 1.
운영지원과장	김정열	2020. 7. 1.
서 기 관	김정복	2022. 2. 7.
〃	김진섭	2022. 6. 21.
행정사무관	권태성	2021. 1. 25.
〃	한제오	2020. 2. 10.
〃	김현우	2021. 1. 25.
〃	이준석	2022. 2. 22.
시설사무관	김 송	2021. 1. 3.
〃	이윤교	2022. 1. 3.
교 정 관	김이수	2022. 6. 18.
대 변 인	신동원	2022. 5. 23.
부대변인	김종욱	2022. 7. 4.

직 위	성 명	발 령 일
홍보담당관	한정진	2013. 9. 1.
홍보기획팀장	최상혁	2022. 12. 7.
검찰사무관	이상우	2014. 5. 1.
출입국관리사무관	주태길	2022. 8. 29.
보호사무관	주경일	2022. 9. 19.
교 정 관	이성수	2022. 9. 26.
행정사무관	지상균	2020. 2. 10.
전문임기제나급	김혜빈	2021. 7. 1.
기획조정실장	**권순정**	**2022. 5. 23.**
정책기획관	최정석	2020. 7. 1.
검 사	김대현	2022. 2. 7.
검 사	양찬규	2022. 2. 7.
행정사무관	이동주	2022. 9. 19.
교 정 관	임용희	2021. 8. 30.
비상안전기획관	정 일	2019. 1. 1.
행정사무관	하 헌	2022. 10. 18.
정책기획단장	김승호	2022. 7. 4.
검 사	김준선	2022. 7. 4.
〃	이수창	2021. 8. 2.
〃	이지영	2022. 7. 4.
검찰사무관	김도연	2021. 2. 22.
기획재정담당관	유지중	2022. 7. 1.
서 기 관	임성훈	2020. 8. 25.
〃	김에오	2022. 2. 7.
행정사무관	김용갑	2019. 4. 22.
〃	서혜주	2022. 2. 22.
혁신행정담당관	김상권	2019. 7. 1.
행정사무관	김승권	2021. 2. 22.
〃	김효민	2020. 2. 10.
시설담당관	배성용	2019. 1. 1.
기술서기관	강동헌	2019. 7. 1.
시설사무관	이인환	2019. 9. 9.
〃	박주선	2022. 3. 21.
〃	정민수	2022. 5. 9.
〃	유영종	2022. 12. 21.
공업사무관	장동선	2019. 12. 2.

직 위	성 명	발 령 일
〃	방승구	2022. 3. 21.
보 호 사 무 관	이희창	2022. 4. 1.
정보화데이터담당관	유상동	2022. 7. 1.
기 술 서 기 관	조용찬	2022. 9. 19.
〃	정혜찬	2022. 9. 19.
전 산 사 무 관	김시은	2021. 1. 25.
〃	정성훈	2018. 10. 11.
〃	유재두	2021. 9. 6.
〃	배재민	2022. 5. 9.
〃	박상영	2022. 10. 31.
〃	김창용	2022. 10. 31.
전산사무관(일반임기제)	김종철	2019. 12. 2.
정책성과관리팀장	김종관	2022. 6. 21.
행 정 사 무 관	이강채	2020. 3. 30.
〃	유재륜	2021. 8. 16.
행복민원센터장	조상민	2021. 1. 18.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윤전	2019. 11. 20.
행 정 사 무 관	김유호	2019. 5. 7.
〃	김정원	2021. 4. 6.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원지애	2022. 7. 4.
검 사	김석순	2022. 7. 4.
전 산 사 무 관	윤정희	2021. 8. 9.
〃	오은정	2021. 3. 2.
〃	조윤주	2022. 2. 21.
보 호 사 무 관	홍성원	2022. 1. 24.
법 무 실 장	공 석	
법 무 심 의 관	정재민	2020. 11. 2.
검 사	석수민	2022. 7. 4.
검 사	홍현준	2022. 7. 4.
서기관(일반임기제)	임성택	2019. 2. 11.
〃	김상이	2021. 3. 15.
〃	윤지원	2022. 6. 13.
행 정 사 무 관	김범영	2021. 1. 25
송 무 심 의 관	공 석	
법 무 과 장	최재아	2022. 7. 4.
검찰수사서기관	송 희	2021. 7. 1.
〃	소진호	2022. 1. 24.
서기관(일반임기제)	설기석	2021. 3. 15.
검 찰 사 무 관	고동재	2021. 8. 9.

직 위	성 명	발 령 일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유희원	2020. 5. 13.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김홍정	2021. 6. 1.
국 제 법 무 과 장	박정현	2020. 12. 7.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최승은	2019. 8. 7.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김하영	2020. 12. 28.
국제분쟁대응과장	한창완	2020. 8. 5.
검 사	오흥세	2020. 8. 5.
검 사	이성직	2022. 7. 4.
서기관(일반임기제)	이현송	2020. 8. 5.
〃	엄영신	2020. 8. 5.
행 정 사 무 관	권호연	2021. 8. 16.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조규현	2020. 8. 5.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문희조	2022. 1. 24.
국 가 소 송 과 장	김기수	2019. 8.19.
검 사	김영준	2022. 7. 4.
검 찰 사 무 관	유영걸	2021. 8. 9.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윤경식	2019. 8. 6.
〃	서 려	2021. 1. 11.
행 정 사 무 관	강형광	2021. 4. 21.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배정범	2021. 8. 9.
〃	이선민	2022. 9. 5.
행 정 소 송 과 장	공 석	
검찰수사서기관	배수용	2022. 7. 18.
검 찰 사 무 관	신경준	2022. 7. 18.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차유진	2022. 7. 4.
〃	허창환	2022. 9. 28.
〃	신재우	2020. 12. 28.
〃	장혜명	2021. 5. 24.
〃	최신아	2021. 11. 8.
통 일 법 무 과 장	김태헌	2022. 7. 4.
서기관(일반임기제)	한경태	2019. 2. 11.
검 찰 사 무 관	이해형	2019. 9. 30.
〃	이응현	2021. 2. 22.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김태희	2019. 10. 14.
〃	이예은	2021. 4. 5.
행 정 사 무 관	장윤정	2021. 8. 16.
상 사 법 무 과 장	임철현	2020. 10. 26.
검 사	정성두	2022. 7. 4.
서기관(일반임기제)	강신형	2021. 12. 17.

직 위	성 명	발 령 일
〃	김진원	2022. 7. 25.
행 정 사 무 관	김경모	2022. 5. 1.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김택현	2022. 12. 1.
법 조 인 력 과 장	이준호	2022. 7. 4.
서 기 관	이한식	2019. 2. 11.
〃	유경남	2019. 12. 23.
검 찰 사 무 관	권정근	2021. 2. 22.
행 정 사 무 관	최영만	2016. 5. 24.
〃	홍진희	2022. 2. 22.
〃	양동규	2020. 2. 10.
검 찰 국 장	**신자용**	**2022. 5. 23.**
사법연수원부원장	윤대진	2020. 1. 13.
검 찰 과 장	김창진	2022. 5. 23.
검 사	최수봉	2022. 7. 4.
〃	오상연	2020. 2. 3.
〃	김봉경	2021. 2. 1.
〃	이승주	2022. 2. 7.
검찰수사서기관	정영운	2021. 2. 22.
〃	오은택	2022. 1. 24.
〃	서상국	2022. 2. 24.
검 찰 사 무 관	허종욱	2021. 2. 22.
형 사 기 획 과 장	용성진	2022. 7. 4.
검 사	윤석환	2022. 2. 7.
〃	문종배	2022. 7. 4.
검찰수사서기관	김원석	2022. 7. 18.
검 찰 사 무 관	권영한	2019. 1. 28.
〃	김형오	2022. 4. 11.
공 공 형 사 과 장	박규형	2022. 7. 4.
검 사	조현웅	2022. 2. 7.
〃	진세언	2022. 7. 4.
검 찰 사 무 관	안대현	2019. 1. 28.
〃	이정재	2022. 1. 24.
국 제 형 사 과 장	이지형	2022. 7. 4.
검 사	이진희	2022. 2. 7.
〃	임하나	2021. 2. 1.
검 찰 사 무 관	최제웅	2021. 2. 22.
〃	김철민	2022. 1. 24.
형 사 법 제 과 장	윤원기	2022. 7. 4.
검 사	김진우	2021. 2. 1.
〃	장태형	2022. 2. 7.

직 위	성 명	발 령 일
검 찰 사 무 관	임상현	2019. 9. 30.
〃	정태규	2021. 2. 22.
〃	박상우	2021. 8. 9.
범죄예방정책국장	**윤웅장**	**2021. 8. 6.**
범죄예방기획과장	이법호	2022. 1. 23.
서 기 관	이경주	2022. 1. 23.
〃	윤현봉	2020. 1. 13.
보 호 사 무 관	지원근	2022. 9. 19.
〃	김종갑	2022. 9. 19.
〃	박종석	2022. 9. 19.
보 호 정 책 과 장	오상섭	2022. 1. 4.
보 호 사 무 관	이춘희	2022. 1. 24.
〃	이은주	2022. 1. 24.
〃	이태윤	2022. 1. 24.
행 정 사 무 관	김영남	2021. 1. 25.
〃	정혜정	2022. 1. 1.
치 료 처 우 과 장	민덕희	2022. 7. 1.
서 기 관	권은아	2022. 9. 19.
보 호 사 무 관	임합격	2020. 8. 21.
검 찰 사 무 관	박두길	2020. 8. 21.
보 호 사 무 관	김형식	2020. 7. 13.
보 호 관 찰 과 장	송중일	2022. 9. 19.
서 기 관	강신원	2022. 9. 19.
보 호 사 무 관	정광수	2022. 1. 24.
보 호 사 무 관	정명훈	2022. 1. 24.
보 호 사 무 관	이상기	2022. 1. 24.
소 년 보 호 과 장	이용호	2022. 1. 24.
서 기 관	김지수	2021. 3. 29.
행 정 사 무 관	허태구	2021. 1. 25.
보 호 사 무 관	김인수	2021. 8. 30.
보 호 사 무 관	이 혁	2021. 8. 30.
전 자 감 독 과 장	심선옥	2021. 8. 30.
보 호 사 무 관	김충원	2021. 1. 29.
〃	한상경	2022. 1. 24.
〃	김용권	2022. 1. 24
소년범죄예방팀장	조연호	2022. 7. 5.
보 호 사 무 관	장윤정	2022. 1. 24.
〃	장선영	2022. 9. 19.
범죄예방데이터과장	노일석	2022. 1. 24.
보 호 사 무 관	정진경	2020. 7. 13.

직 위	성 명	발 령 일
〃	조윤식	2022. 9. 19.
인 권 국 장	**위은진**	**2022. 1. 3.**
인권정책과장	공 석	–
검 사	최지예	2022. 7. 4.
서 기 관	강의곤	2022. 12. 19.
검찰사무관	여혜진	2022. 1. 24.
행정사무관	이동훈	2021. 1. 25.
〃	이정환	2021. 2. 22.
인권구조과장	이유선	2022. 11. 14.
서 기 관	김홍준	2022. 2. 7.
검찰수사서기관	반준성	2022. 1. 24.
검찰사무관	김향권	2022. 4. 11.
행정사무관	홍찬주	2020. 1. 10.
〃	손장혁	2022. 7. 4.
인권조사과장	손찬오	2022. 11. 14.
검 사	최현주	2022. 2.. 7.
검찰사무관	박정순	2022. 7. 18.
〃	박용철	2022. 7. 18.
여성아동인권과장	공 석	–
검 사	서혜선	2022. 2. 22.
검찰수사서기관	김건수	2020. 8. 21.
검찰사무관	조병기	2021. 2. 22.
행정사무관	박상열	2022. 2. 22.
교 정 본 부 장	**신용해**	**2022. 9. 1.**
교정정책단장	최제영	2022. 1. 1.
보안정책단장	김승만	2022. 1. 1.
교정기획과장	남준락	2022. 1. 24.
서 기 관	오선호	2022. 9. 26.
교 정 관	박지영	2021. 8. 30.
〃	권혁규	2021. 8. 30.
〃	박천성	2022. 1. 24.
〃	승영근	2022. 9. 26.
〃	이민희	2022. 1. 24.
〃	이형직	2022. 9. 26.
직업훈련과장	김현우	2022. 9. 26.
교 정 관	박성현	2021. 8. 30.
〃	권익광	2021. 8. 30.
행정사무관	이두형	2019. 7. 1.
사회복귀과장	한태환	2020. 9. 21.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서 기 관	박승률	2022. 9. 26.
교 정 관	정희동	2021. 8. 30.
〃	오원종	2022. 9. 26.
〃	김도균	2021. 8. 30.
복지과장	이희정	2022. 9. 26.
교 정 관	위종진	2022. 1. 24.
행정사무관	신한헌	2021. 1. 25.
시설사무관	최명근	2022. 3. 21.
보안과장	박삼재	2022. 7. 4.
서 기 관	장귀남	2022. 9. 26.
교 정 관	김세정	2022. 9. 26.
〃	김유신	2021. 8. 30.
〃	이동근	2022. 9. 26.
〃	유동윤	2021. 8. 30.
분류심사과장	양원동	2022. 9. 26.
서 기 관	정혜리	2022. 1. 1.
교 정 관	고재익	2020. 9. 21.
〃	정세락	2022. 9. 26.
의 료 과 장	서호성	2022. 9. 26.
교 정 관	임종오	2021. 1. 25.
〃	최장훈	2020. 9. 21.
심리치료과장	박경선	2021. 8. 9.
교 정 관	박경식	2020. 9. 21.
〃	김상훈	2022. 9. 26.
행정사무관	이현진	2022. 1. 13.
코로나19긴급대응단 반장	이민열	2021. 4. 5.
교 정 관	문준영	2021. 8. 30.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재유**	**2021. 7. 2.**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장	나현웅	2022. 11. 14.
출입국관리사무관	김민기	2022. 11. 14.
〃	손흥기	2022. 11. 14.
〃	이향숙	2022. 11. 14.
출입국정책단장	김정도	2022. 9. 19.
국적·통합정책단장	유복렬	2020. 6. 26.
출입국기획과장	반재열	2022. 9. 19.
출입국관리사무관	박주현	2019. 1. 7.
〃	이한태	2019. 1. 7.
〃	고동중	2020. 8. 27.

직 위	성 명	발 령 일
〃	옥효재	2022. 1. 24.
출입국심사과장	박제성	2022. 9. 19.
서 기 관	최병철	2022. 9. 19.
출입국관리사무관	김영오	2022. 1. 24.
〃	최재원	2022. 7. 20.
체류관리과장	이승현	2021. 8. 9.
출입국관리사무관	이주호	2022. 7. 20.
〃	배덕환	2021. 8. 9.
〃	박지원	2021. 9. 30.
〃	최준호	2021. 1. 1.
이민조사과장	박재완	2021. 8. 9.
출입국관리사무관	임용성	2021. 8. 9.
〃	전동균	2022. 1. 24.
〃	이성호	2022. 3. 21.
〃	김관영	2022. 11. 14.
이민정보과장	이대우	2020. 12. 14.
출입국관리사무관	윤철민	2019. 1. 7.
〃	서제선	2022. 1. 24.
외국인정보빅데이터과장	장희정	2021. 8. 9.
전산사무관	이수천	2021. 8. 2.
출입국관리사무관	신하균	2022. 1. 24.
〃	김경아	2022. 1. 24.
외국인정책과장	하용국	2022. 1. 24.
서 기 관	고영석	2022. 2. 7.
출입국관리사무관	홍인표	2022. 1. 24.
〃	서석주	2018. 7. 23.
〃	이동용	2022. 1. 24.
국적과장	이재형	2021. 9. 17.
출입국관리사무관	정금심	2020. 1. 1.
〃	김종승	2022. 7. 20.
〃	홍창기	2021. 9. 24.
이민통합과장	강성록	2022. 1. 24.
출입국관리사무관	전강섭	2021. 5. 1.
〃	홍동우	2022. 11. 14.
〃	최민수	2022. 7. 20.
〃	김은호	2022. 1. 24.
난민정책과장	이기흠	2021. 1. 1.
출입국관리사무관	이청훈	2022. 8. 24.
〃	김정욱	2021. 1. 1.

직 위	성 명	발 령 일
난민심의과장	이정미	2020. 4. 13.
출입국관리사무관	최은숙	2022. 7. 20.
〃	안재필	2021. 1. 1.
부이사관	김현채	2021. 9. 17.
부이사관	송소영	2022. 1. 24.
서 기 관	김태형	2022. 12. 14.

2. 법무연수원(4급 이상)

직 위	직 급	성 명	발 령 일
원 장	고 등 검 사 장	-	-
기 획 부 장	검 사 장	-	-
용 인 분 원 장	검 사	명 점 식	2022. 7. 4..
교 정 연 수 부 장	고 위 공 무 원	박 호 서	2022. 9. 26.
연 구 위 원	고 등 검 사 장	이 성 윤	2022. 5. 23.
	검 사 장	심 재 철	2022. 5. 23.
	검 사 장	이 정 현	2022. 5. 23.
	검 사 장	신 성 식	2022. 6. 27.
	검 사 장	이 종 근	2022. 6. 27.
	검 사 장	고 경 순	2022. 6. 27.
	이 사 관	정 경 윤	2022. 1. 17.
	비 상 임	수 잔 박	2022. 8. 8.
검 사 교 수	검 사	김 남 순	2022. 7. 4..
		이 태 일	2022. 7. 4..
		정 명 원	2022. 3. 1.
		김 지 영	2021. 2. 1.
		최 유 리	2022. 7. 4.
		김 준 섭	2022. 7. 4.
		김 중	2022. 7. 4.
		박 성 민	2022. 7. 4.
		박 혜 란	2022. 7. 4.
		정 희 선	2022. 7. 4.
		장 진 영	2022. 7. 4.
		장 진 성	2022. 7. 4.
		윤 효 선	2022. 7. 4.
		장 송 이	2022. 7. 4.
로 스 쿨 검 사 교 수	검 사	장 유 강	2021. 2. 1.
		김 영 신	2022. 7. 4.
		김 재 환	2021. 7. 2.
		유 종 건	2021. 2. 1.
		이 윤 구	2022. 2. 7.
		김 치 훈	2022. 7. 4.
		김 도 형	2022. 7. 4.
기 획 과 장	검 사	김 영 미	2022. 7. 4.
법 무 교 육 과 장	검 사	윤 경 원	2022. 8. 9.
총 무 과 장	서 기 관	이 천 재	2022. 2. 7.
일 반 연 수 과 장	검 찰 수 사 서 기 관	송 재 동	2022. 8. 18.
교 정 연 수 과 장	서 기 관	-	-
교 정 훈 련 과 장	서 기 관	이 영 일	2021. 1. 28.
운 영 지 원 과 장	검 찰 수 사 서 기 관	편 영 길	2022. 1. 24.

3. 검 찰 청

직 위	성명	발령일
(대 검 찰 청)		
검찰총장	이원석	2022. 9.16
차장검사	·	·
반부패강력부장	신봉수	2022. 6.27
형사부장	황병주	2022. 6.27
공공수사부장	김유철	2022. 5.23
공판송무부장	김선화	2022. 6.27
과학수사부장	정진우	2022. 6.27
감찰부장	이성희	2022.11. 9
기획조정부장	송 강	2022. 6.27
대변인	박현철	2022. 7. 4
정보관리담당관	최재훈	2022. 7. 4
인권정책관	박억수	2022. 7. 4
인권기획담당관	정수진	2022. 7. 4
인권감독담당관	곽영환	2022. 7. 4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박명희	2022. 7. 4
국제협력담당관	조주연	2022. 7. 4
형사정책담당관	김종현	2022. 7. 4
정책기획과장	김종우	2022. 7. 4
정보통신과장	백수진	2022. 7. 4
수사지휘지원과장	윤병준	2022. 7. 4
범죄수익환수과장	박건욱	2022. 7. 4
마약조직범죄과장	김보성	2022. 7. 4
형사제1과장	임일수	2022. 7. 4
형사제2과장	임선화	2022. 7. 4
형사제3과장	김도연	2022. 7. 4
형사제4과장	원신혜	2022. 7. 4
공안수사지원과장	차범준	2022. 7. 4
선거수사지원과장	이찬규	2022. 7. 4
노동수사지원과장	조민우	2022. 7. 4
공판제1과장	조아라	2022. 7. 4
공판제2과장	김상민	2022. 7. 4
법과학분석과장	이 춘	2022. 7. 4
디엔에이화학분석과장	정 현	2022. 7. 4
디지털수사과장	김익수	2022. 7. 4
사이버수사과장	안동건	2022. 7. 4
감찰1과장	정희도	2022. 5.23
감찰2과장	장재완	2022. 7. 4
감찰3과장	배문기	2022. 5.23
양형정책관	강선주	2022. 7. 4
검찰연구관	김수홍	2022. 2. 7
〃	김윤용	2022. 7. 4
〃	김명옥	2022. 7. 4
〃	국 진	2022. 7. 4
〃	김수민	2022. 7. 4
〃	고영하	2022. 2. 7
〃	김동율	2022. 2. 7
〃	김현우	2021. 7. 2
〃	소재환	2021. 7. 2
〃	이한울	2022. 2. 7
〃	조아라	2022. 2. 7
〃	한대웅	2022. 2. 7
〃	김 건	2021. 7. 2
〃	오지석	2021. 7. 2
〃	유병국	2021. 7. 2
〃	이윤환	2022. 2. 7
〃	김해밝은	2022. 7. 4
〃	양진선	2022. 2. 7
〃	전혜현	2022. 2. 7
〃	김한울	2022. 7. 4
〃	서소희	2022. 7. 4
〃	이주형	2021. 7. 2
〃	정종원	2022. 7. 4
〃	김희동	2022. 7. 4
〃	박찬영	2022. 7. 4

직 위	성명	발령일
〃	장영준	2022. 7. 4
〃	문재웅	2022. 7. 4
〃	임수민	2022. 7. 4
사무국장	박공우	2021.10.15
운영지원과장	황세일	2022. 1.24
집행과장	이운연	2022. 1.24
검찰총장실	전태선	2022. 9.16
정보관리담당관실	나상필	2021. 8. 9
수사지휘·지원과	이재수	2022. 7.18
디지털수사과	이인수	2020. 2.10
법과학분석과	고영호	2022. 1.24
운영지원과	박치활	2020. 8.21
운영지원과	이은상	2019. 1.28
운영지원과	정복영	2022. 1.24
공안수사지원과	고영록	2022. 1.24
복지후생과장	최수종	2022. 1.24
감찰제1과	이승희	2022. 1.24
감찰제2과	조순남	2022. 7.18
비상안전담당관	박정호	2018. 3.28
정보통신서기관	원민정	2020. 8.21
정보통신서기관	김봉우	2021. 8. 9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	·
차장검사	노만석	2022. 6.27
부장검사	박세현	2022. 7. 4
부장검사	박지영	2022. 7. 4
부장검사	손준성	2022. 7. 4
부장검사	최호영	2022. 7. 4
인권보호관	이은강	2022. 7. 4
검사	양보승	2021. 7. 2
〃	이승영	2022. 7. 4
〃	고석홍	2020. 9. 3
〃	서정식	2022. 7. 4
〃	정의식	2022. 7. 4

직 위	성명	발령일
〃	이선훈	2021. 7. 2
〃	이재구	2022. 7. 4
〃	방봉혁	2022. 7. 4
〃	류원근	2022. 7. 4
〃	김기준	2022. 7. 4
〃	김현채	2020. 2. 3
〃	박규은	2022. 7. 4
〃	임용규	2021. 7. 2
〃	하충헌	2022. 7. 4
〃	김충한	2022. 7. 4
〃	윤영준	2021. 7. 2
〃	최용석	2022.10.30
〃	백재명	2022. 7. 4
〃	김석우	2021. 7. 2
〃	박소영	2022. 7. 4
〃	양요안	2022. 2. 7
〃	김춘수	2021. 7. 2
〃	강종헌	2022. 2. 7
〃	김형근	2022. 7. 4
〃	박윤석	2022. 7. 4
〃	손석천	2022. 7. 4
〃	신교임	2021. 7. 2
〃	이준엽	2022. 7. 4
〃	강수산나	2022. 7. 4
〃	전미화	2022. 7. 4
〃	오세영	2022. 7. 4
〃	정경진	2022. 7. 4
〃	김정헌	2022. 7. 4
〃	송지용	2022. 7. 4
사무국장	이갑수	2022. 1.24
총무과장	권영갑	2022. 1.24
사건과장	조경익	2022. 1.24
관리과장	한생일	2022. 7.18

직 위	성명	발령일
소송사무과장	김흥철	2022.10. 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송경호	2022. 5.23
차장검사	성상헌	2022. 7. 4
차장검사	박영진	2022. 5.23
차장검사	박기동	2022. 5.23
차장검사	고형곤	2022. 5.23
인권보호관	이환기	2022. 7. 4
공보담당관	박승환	2022. 7. 4
기획담당관	장준호	2022. 7. 4
중요경제범죄조사1단장	위성운	2021. 7. 2
중요경제범죄조사1단부장	박동진	2020. 9. 3
중요경제범죄조사1단부장	김정호	2022. 7. 4
중요경제범죄조사1단부장	김명수	2021. 7. 2
중요경제범죄조사1단부장	이현정	2021. 7. 2
중요경제범죄조사1단부장	반종욱	2022. 7. 4
중요경제범죄조사2단장	김영태	2022. 2. 7
중요경제범죄조사2단부장	박홍규	2021. 7. 2
중요경제범죄조사2단부장	이세진	2022. 7. 4
중요경제범죄조사2단부장	채수양	2022. 7. 4
인권보호부	유도윤	2022. 7. 4
형사제1부장검사	박혁수	2022. 7. 4
형사제2부장검사	권유식	2022. 7. 4
형사제3부장검사	김수민	2022. 7. 4
형사제4부장검사	신대경	2022. 7. 4
형사제5부장검사	최우영	2022. 7. 4
형사제6부장검사	공봉숙	2022. 7. 4
형사제7부장검사	성상욱	2022. 7. 4
형사제8부장검사	김형석	2022. 7. 4
형사제9부장검사	구태연	2022. 7. 4
공정거래조사부장	이정섭	2022. 7. 4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	김은미	2022. 7. 4
공판제1부장검사	김현아	2022. 7. 4
공판제2부장검사	김윤선	2022. 7. 4
공판제3부장검사	이정렬	2022. 7. 4
공판제4부장검사	최대건	2022. 7. 4
공판제5부장검사	김민아	2022. 7. 4
공공수사제1부장검사	이희동	2022. 7. 4
공공수사제2부장검사	이상현	2022. 7. 4
공공수사제3부장검사	이준범	2022. 7. 4
약식부장검사	임세호	2022. 7. 4
반부패수사제1부장검사	엄희준	2022. 7. 4
반부패수사제2부장검사	김영철	2022. 7. 4
반부패수사제3부장검사	강백신	2022. 7. 4
범죄수익환수부장	임세진	2022. 7. 4
(부부장)검사	김호준	2022. 7. 4
〃	유지연	2022. 7. 4
〃	유진승	2022. 7. 4
〃	한진희	2022. 7. 4
〃	조영찬	2022. 7. 4
〃	고은별	2022. 7. 4
〃	김정훈	2021. 7. 2
〃	소정수	2021. 7. 2
〃	송준구	2021. 7. 2
〃	윤원일	2022. 7. 4
〃	이상훈	2022. 2.26
〃	이유현	2022. 7. 4
〃	이윤희	2022. 7. 4
〃	정재신	2021. 7. 2
〃	강성기	2022. 7. 4
〃	강용묵	2022. 7. 4
〃	곽금희	2022. 7. 4
〃	권재호	2022. 7. 4
〃	김민구	2022. 7. 4
〃	김병철	2022. 7. 4
〃	김상문	2022. 7. 4
〃	김용제	2022. 7. 4

직 위	성명	발령일
〃	김정화	2022. 7. 4
〃	김지숙	2022. 7. 4
〃	김창섭	2022. 7. 4
〃	김호경	2022. 7. 4
〃	김희영	2022. 7. 4
〃	나영욱	2022. 7. 4
〃	나희석	2022. 7. 4
〃	남대주	2022. 7. 4
〃	남철우	2022. 7. 4
〃	반 지	2022. 7. 4
〃	손명지	2022. 7. 4
〃	신기련	2022. 7. 4
〃	신희영	2022. 7. 4
〃	윤국권	2022. 7. 4
〃	이대성	2022. 7. 4
〃	이승희	2022. 7. 4
〃	이주현	2022. 7. 4
〃	이지연	2022. 7. 4
〃	인 훈	2022. 7. 4
〃	장욱환	2022. 7. 4
〃	장진성	2022. 7. 4
〃	정대희	2022. 7. 4
〃	정미란	2022. 7. 4
〃	정수정	2022. 7. 4
〃	정영서	2022. 7. 4
〃	정일권	2022. 7. 4
〃	최두헌	2022. 7. 4
〃	최소연	2022. 7. 4
〃	최용보	2022. 7. 4
〃	최재순	2022. 7. 4
〃	최정민	2022. 7. 4
〃	하준호	2022. 7. 4
〃	호승진	2022. 7. 4
검 사	고아라	2022. 2. 7

직 위	성명	발령일
〃	권영필	2021. 2. 1
〃	김민정	2021. 2. 1
〃	김지은	2022. 2. 7
〃	박상희	2022. 2. 7
〃	박성진	2022. 2. 7
〃	방준성	2020. 2. 3
〃	서민석	2021. 2. 1
〃	오민재	2020. 2. 3
〃	이정훈	2022. 7. 4
〃	이주희	2021. 2. 1
〃	차경자	2020. 2. 3
〃	홍상철	2021. 2. 1
〃	황진아	2021. 8. 2
〃	구진미	2022. 2. 7
〃	김민정	2022. 2. 7
〃	김희연	2022. 2. 7
〃	문승태	2019. 2.11
〃	박상선	2020. 9. 3
〃	박일규	2021. 2. 1
〃	박현규	2022. 2. 7
〃	선현숙	2022. 2. 7
〃	손수진	2020. 2. 3
〃	신현만	2020. 2. 3
〃	오진세	2021. 2. 1
〃	이현주	2019. 2.11
〃	임아랑	2022. 2. 7
〃	임지수	2020. 2. 3
〃	정정욱	2022. 7. 4
〃	조미경	2021. 2. 1
〃	조재철	2021. 2. 1
〃	최수지	2021. 2. 1
〃	허정은	2021. 2. 1
〃	황성아	2022. 2. 7
〃	황영섭	2020. 2. 3

직 위	성명	발령일
〃	권경호	2022. 2. 7
〃	권영주	2022. 2. 7
〃	김동규	2022. 2. 7
〃	김민석	2020. 2. 3
〃	김민정	2020. 2. 3
〃	김방글	2019. 2.11
〃	김성현	2021. 2. 1
〃	김영식	2022. 2. 7
〃	김현서	2021. 2. 1
〃	김형섭	2021. 2. 1
〃	문정신	2021. 2. 1
〃	박경화	2022. 2. 7
〃	박재훈	2021. 2. 1
〃	서성광	2021. 2. 1
〃	성기범	2020. 2. 3
〃	윤성호	2020. 2. 3
〃	이주현	2021. 8. 2
〃	이주현	2022. 2. 7
〃	전효곤	2020. 2. 3
〃	최명수	2022. 2. 7
〃	황보영	2021. 2. 1
〃	강현욱	2022. 2. 7
〃	김우중	2021. 2. 1
〃	김정훈	2020. 2. 3
〃	김춘성	2022. 2. 7
〃	김태호	2022. 2. 7
〃	박금빛	2021. 2. 1
〃	윤효정	2020. 2. 3
〃	은종욱	2022. 2. 7
〃	이선영	2020. 2. 3
〃	이소연	2018. 2. 5
〃	이승필	2020. 2. 3
〃	이종원	2021. 2. 1
〃	이한종	2021. 2. 1

직 위	성명	발령일
〃	정정화	2022. 2. 7
〃	조범진	2021. 2. 1
〃	허 정	2022. 2. 7
〃	허태훈	2022. 2. 7
〃	황재동	2022. 2. 7
〃	황호석	2022. 2. 7
〃	김경완	2021. 2. 1
〃	김경태	2020. 2. 3
〃	김대철	2022. 2. 7
〃	김영석	2021. 2. 1
〃	남재현	2022. 2. 7
〃	박기웅	2022. 2. 7
〃	배관성	2020. 2. 3
〃	서강원	2022. 7. 4
〃	송정범	2021. 2. 1
〃	양근욱	2020. 2. 3
〃	유재근	2021. 2. 1
〃	이재표	2020. 2. 3
〃	이종광	2022. 2. 7
〃	이호재	2021. 2. 1
〃	김수겸	2021. 2. 1
〃	김수길	2022. 2. 7
〃	남상오	2020. 2. 3
〃	송민주	2022. 2. 7
〃	신기창	2022. 2. 7
〃	임진철	2020. 2. 3
〃	임찬미	2022. 2. 7
〃	임현철	2022. 2. 7
〃	장지영	2020. 2. 3
〃	김동현	2021. 2. 1
〃	김세현	2022. 2. 7
〃	김형철	2022. 2. 7
〃	민은식	2022. 2. 7
〃	박경세	2020. 2. 3

직 위	성명	발령일
〃	송윤상	2020. 2. 3
〃	양귀호	2020. 2. 3
〃	이용정	2022. 2. 7
〃	정거장	2021. 2. 1
〃	문태권	2022. 2. 7
〃	박병인	2021. 2. 1
〃	박성현	2022. 2. 7
〃	송성광	2022. 2. 7
〃	이동훈	2021. 2. 1
〃	이정규	2022. 2. 7
〃	조지현	2022. 2. 7
〃	최주원	2020. 2. 3
〃	최준환	2021. 2. 1
〃	허윤행	2022. 2. 7
〃	고기철	2022. 2. 7
〃	고재린	2021. 2. 1
〃	김아연	2022. 2. 7
〃	김주혜	2021. 2. 1
〃	김현경	2022. 2. 7
〃	송보형	2022. 2. 7
〃	원세정	2021. 2. 1
〃	김선진	2021. 2. 1
〃	임동민	2022.11. 1
〃	유승재	2021. 2. 1
〃	정한균	2021. 2. 1
〃	경기수	2022. 2. 7
〃	윤재희	2022. 2. 7
〃	이종욱	2022.11. 1
〃	허은지	2022.11. 1
사무국장	윤진웅	2022. 1.24
총무과장	김용관	2022. 1.24
사건과장	정연철	2022. 1.24
집행제1과장	조동규	2022. 1.24
집행제2과장	김상우	2021. 8. 9

직 위	성명	발령일
기록관리과장	허철안	2022. 7.18
형사증거과장	이대열	2022. 1.24
피해자지원과장	김동욱	2022. 1.24
공공수사지원과장	강순석	2022. 7.18
수사제1과장	이영일	2022. 7.18
수사정보과장	배은호	2022. 1.24
수사제2과장	조현곤	2022. 1.24
수사지원과장	김혜경	2022. 7.18
조사과장	이택근	2022. 1.24
조직범죄수사과장	도춘성	2022. 1.24
마약수사과장	김용권	2021. 2.22
공판과장	김창옥	2022. 1.24
검사직무대리	이창영	2020. 8.21
검사직무대리	박순주	2021. 2.22
검사직무대리	양기용	2022. 2.23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임관혁	2022. 6.27
차장검사	전무곤	2022. 7. 4
인권보호관	김종철	2022. 7. 4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이중제	2020. 9. 3
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	전계광	2022. 7. 4
〃	김원학	2022. 7. 4
〃	변수량	2022. 7. 4
형사제1부장	김남훈	2022. 7. 4
형사제2부장	이용균	2022. 7. 4
형사제3부장	황현아	2022. 7. 4
형사제4부장	강민정	2022. 7. 4
형사제5부장	김해경	2022. 7. 4
형사제6부장	서현욱	2022. 7. 4
사이버범죄수사부장	이희찬	2022. 7. 4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장혜영	2022. 7. 4
공판부장	조영희	2022. 7. 4
(부부장)검사	이재만	2022. 7. 4

직위	성명	발령일
〃	김영주	2022. 7. 4
〃	임두환	2022. 7. 4
〃	전수진	2022. 7. 4
〃	추창현	2022. 7. 4
검사	윤효선	2022. 2. 7
〃	최수경	2022. 2. 7
〃	김유나	2021. 2. 1
〃	송명진	2022. 2. 7
〃	이선기	2021. 2. 1
〃	이정민	2020. 2. 3
〃	하일수	2021. 2. 1
〃	송혜숙	2020. 2. 3
〃	정윤식	2022. 2. 7
〃	조종민	2020. 2. 3
〃	황경원	2021. 2. 1
〃	김은정	2022. 2. 7
〃	백상준	2020. 2. 3
〃	서지원	2022. 2. 7
〃	남지민	2021. 2. 1
〃	박선영	2020. 2. 3
〃	연제혁	2021. 2. 1
〃	이수행	2022. 2. 7
〃	이승우	2021. 2. 1
〃	조소인	2021. 2. 1
〃	김현곤	2022. 2. 7
〃	송가형	2020. 2. 3
〃	유주현	2021. 8. 2
〃	김상범	2021. 2. 1
〃	박민지	2020. 2. 3
〃	문동기	2021. 2. 1
〃	박예진	2020. 2. 3
〃	박진덕	2021. 2. 1
〃	안인수	2021. 8. 2
〃	송현탁	2022. 2. 7

직위	성명	발령일
〃	조영주	2022. 2. 7
〃	조재익	2022. 2. 7
〃	김지혜	2022. 2. 7
〃	성용진	2021. 2. 1
〃	김마로	2022. 2. 7
〃	서민욱	2022. 2. 7
〃	이희동	2021. 4. 1
〃	신용섭	2022. 2. 7
〃	김기웅	2022. 4. 1
〃	민경준	2022.11. 1
〃	권예슬	2021. 2. 1
〃	박준웅	2021. 2. 1
〃	이현정	2022. 2. 7
〃	김언영	2022.11. 1
〃	이상원	2022.11. 1
〃	이예림	2022.11. 1
사무국장	곽명규	2022. 8.18
총무과장	김권태	2022. 1.24
사건과장	이정국	2022. 7.18
집행과장	소상은	2022. 7.18
공판과장	박민규	2022. 7.18
조사과장	김종훈	2022. 7.18
수사과장	이동영	2022. 7.18
검사직무대리	최창환	2022. 1.24
검사직무대리	오명섭	2022. 7.18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양석조	2022. 5.23
제1차장검사	구상엽	2022. 7. 4
제2차장검사	허 정	2022. 7. 4
인권보호관	김희경	2022. 7. 4
인권보호부장	최영아	2022. 7. 4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박철완	2021. 7. 2
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	박재영	2022. 7. 4
〃	손영배	2021. 7. 2

직 위	성명	발령일
〃	박영준	2021. 7. 2
〃	윤철민	2022. 7. 4
〃	김은심	2021. 7. 2
〃	이성일	2021. 7. 2
형사제1부장검사	이응철	2022. 7. 4
형사제2부장검사	권방문	2022. 7. 4
형사제3부장검사	권현유	2022. 7. 4
형사제4부장검사	조만래	2022. 7. 4
형사제5부장검사	박은혜	2022. 7. 4
형사제6부장검사	이준동	2022. 7. 4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안성희	2022. 7. 4
공판부장	공준혁	2022. 7. 4
금융조사제1부장검사	이승형	2022. 7. 4
금융조사제2부장검사	채희만	2022. 7. 4
(부부장)검사	신혜진	2022. 7. 4
〃	기노성	2022. 7. 4
〃	박건영	2022. 7. 4
〃	이승학	2022. 2. 7
〃	이치현	2022. 7. 4
〃	김정환	2022. 7. 4
〃	김형걸	2022. 7. 4
〃	박선민	2022. 7. 4
〃	송규영	2022. 7. 4
〃	이수창	2022. 7. 4
〃	장대규	2022. 7. 4
〃	최근영	2022. 7. 4
〃	한연규	2022. 7. 4
검사	이세종	2019. 2.11
〃	이자경	2022. 2. 7
〃	장송이	2022. 2. 7
〃	조상규	2020. 2. 3
〃	이승민	2021. 2. 1
〃	이환우	2022. 2. 7
〃	정성헌	2019. 2.11

직 위	성명	발령일
〃	최재현	2021. 2. 1
〃	고명아	2022. 2. 7
〃	문지연	2021. 2. 1
〃	신헌섭	2020. 2. 3
〃	진종규	2020. 2. 3
〃	김미선	2020. 2. 3
〃	김재우	2020. 2. 3
〃	김준엽	2021. 2. 1
〃	김지훈	2021. 2. 1
〃	신지나	2022. 2. 7
〃	이부용	2022. 2. 7
〃	정동현	2019. 2.11
〃	차동호	2021. 2. 1
〃	금명원	2020. 2. 3
〃	남경우	2021. 2. 1
〃	임상규	2019. 2.11
〃	허세진	2020. 2. 3
〃	황진선	2020. 2. 3
〃	나상돈	2021. 2. 1
〃	박진섭	2020. 2. 3
〃	반영기	2022. 2. 7
〃	이은우	2021. 8. 2
〃	이재원	2020. 2. 3
〃	김현웅	2020. 2. 3
〃	박규남	2021. 8. 2
〃	조윤경	2022. 2. 7
〃	현승록	2022. 2. 7
〃	김하영	2020. 2. 3
〃	조혜민	2020. 2. 3
〃	최대호	2020. 2. 3
〃	최영준	2022. 2. 7
〃	김연희	2019. 2.11
〃	이선미	2021. 2. 1
〃	정종헌	2021. 2. 1

직 위	성명	발령일
〃	조 혁	2022. 2. 7
〃	김예은	2021. 2. 1
〃	류수헌	2022. 2. 7
〃	신의호	2022. 2. 7
〃	오정헌	2022. 2. 7
〃	주용하	2021. 2. 1
〃	김원재	2022. 2. 7
〃	임지은	2022. 2. 7
〃	김대훈	2022.11. 1
〃	김성수	2021. 2. 1
〃	서세영	2021. 2. 1
〃	이하은	2021. 2. 1
〃	강윤제	2022. 2. 7
〃	이경민	2022. 2. 7
〃	전해창	2022. 2. 7
〃	송원우	2022.11. 1
〃	한우현	2022.11. 1
사무국장		
총무과장	이 헌	2022. 8.18
사건과장	이동영	2022. 7.18
집행과장	이재호	2022. 1.24
조사과장	조병웅	2022. 7.18
수사과장	고병훈	2021. 2.22
공판과장	강중원	2022. 7.18
검사직무대리	윤희창	2022. 7.18
검사직무대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정영학	2022. 6.27
차장검사	김형수	2022. 7. 4
인권보호관	서인선	2022. 7. 4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권도욱	2021. 7. 2
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	김태광	2020. 2. 3
〃	최영의	2022. 7. 4
〃	정효삼	2021. 7. 2

직 위	성명	발령일
〃	최성국	2022. 7. 4
〃	공태구	2019. 8. 6
형사제1부장	이종민	2022. 7. 4
형사제2부장	이영화	2022. 7. 4
형사제3부장	이장우	2022. 7. 4
형사제4부장	이완희	2022. 7. 4
형사제5부장	박경섭	2022. 7. 4
조세범죄형사부장	정유리	2022. 7. 4
공판부장	김재화	2022. 7. 4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이선녀	2022. 7. 4
(부부장)검사	정진용	2022. 7. 4
〃	정성현	2022. 7. 4
〃	조희영	2022. 7. 4
〃	유효제	2022. 7. 4
〃	곽계령	2022. 7. 4
〃	김가람	2022. 7. 4
〃	최혜경	2022. 7. 4
검사	강은선	2017. 2.20
〃	이기영	2019. 2.11
〃	이정호	2022. 2. 7
〃	안준석	2021. 2. 1
〃	김미혜	2021. 2. 1
〃	김유나	2021. 2. 1
〃	양재영	2022. 2. 7
〃	우옥영	2022. 2. 7
〃	유제민	2021. 2. 1
〃	조정복	2021. 2. 1
〃	최은영	2022. 2. 7
〃	최한얼	2020. 2. 3
〃	김수희	2021. 2. 1
〃	김정연	2021. 2. 1
〃	오재준	2022. 2. 7
〃	임기웅	2021. 2. 1
〃	한승훈	2021. 2. 1

직 위	성명	발령일
〃	김승곤	2022. 2. 7
〃	이성화	2022. 2. 7
〃	이승훈	2020. 2. 3
〃	이종민	2021. 2. 1
〃	이채훈	2022. 2. 7
〃	이하영	2020. 2. 3
〃	박동준	2022. 2. 7
〃	박원영	2021. 2. 1
〃	함덕훈	2021. 2. 1
〃	윤지윤	2021. 2. 1
〃	김용선	2022. 2. 7
〃	이준태	2021. 2. 1
〃	김가연	2022. 2. 7
〃	이정성	2021. 4. 1
〃	조승우	2022. 2. 7
〃	홍광범	2022. 4. 1
〃	윤상운	2022.11. 1
〃	박지현	2021. 2. 1
〃	손은선	2021. 2. 1
〃	전인수	2021. 2. 1
〃	정용진	2021. 2. 1
〃	정하은	2021. 2. 1
〃	박달재	2022. 2. 7
〃	심지원	2022. 2. 7
〃	유제일	2022. 2. 7
〃	서형우	2022.11. 1
〃	양혜민	2022.11. 1
사무국장		
총무과장	이일남	2022. 1.24
사건과장		
집행과장	윤석인	2022. 7.18
조사과장	강재성	2021. 8. 9
수사과장	하종찬	2021. 8. 9
공판과장	조 호	2021. 8. 9

직 위	성명	발령일
검사직무대리	장영표	2021. 8. 9
검사직무대리	장지섭	2022. 1.24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한석리	2022. 5.23
차장검사	변필건	2022. 7. 4
인권보호관	김민형	2022. 7. 4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정성윤	2022. 2. 7
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	유종완	2021. 7. 2
〃	변창범	2021. 7. 2
〃	서종혁	2022. 7. 4
〃	배창대	2022. 7. 4
〃	황성연	2022. 7. 4
형사제1부장검사	김상현	2022. 7. 4
형사제2부장검사	장소영	2022. 7. 4
형사제3부장검사	김창수	2022. 7. 4
형사제4부장검사	주혜진	2022. 7. 4
형사제5부장검사	이병주	2022. 7. 4
공판부장	이세희	2022. 7. 4
식품의약범죄조사부장	박혜영	2022. 7. 4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박종민	2022. 7. 4
(부부장)검사	유정현	2022. 7. 4
검사	이주훈	2022. 2. 7
〃	최유리	2022. 2. 7
〃	강현정	2021. 2. 1
〃	김연주	2020. 2. 3
〃	진경섭	2021. 2. 1
〃	조동훈	2022. 2. 7
〃	김나리	2022. 2. 7
〃	김영민	2021. 2. 1
〃	김은혜	2020. 2. 3
〃	장준혁	2022. 2. 7
〃	박경남	2022. 2. 7
〃	최종경	2019. 2.11
〃	홍해숙	2021. 2. 1

직 위	성명	발령일
〃	박철량	2022. 2. 7
〃	정윤정	2021. 2. 1
〃	차대영	2021. 2. 1
〃	김자은	2019. 2.11
〃	장지철	2022. 2. 7
〃	전형준	2021. 2. 1
〃	하언욱	2022. 2. 7
〃	김지수	2022. 2. 7
〃	장기영	2022. 2. 7
〃	전유경	2022. 2. 7
〃	김동민	2022. 2. 7
〃	오광일	2022. 2. 7
〃	유승진	2022. 2. 7
〃	최예원	2022. 2. 7
〃	하보람	2022. 2. 7
〃	홍등불	2022. 2. 7
〃	오세진	2020. 2. 3
〃	오슬기	2021. 2. 1
〃	박원석	2021. 2. 1
〃	김경회	2022. 2. 7
〃	이상돈	2021. 2. 1
〃	이아람	2022. 2. 7
〃	허강녕	2022. 7. 4
〃	왕규호	2022. 2. 7
〃	조성운	2022.11. 1
〃	권은비	2021. 2. 1
〃	권태환	2021. 2. 1
〃	구민하	2022. 2. 7
〃	류미래	2022. 2. 7
〃	박성원	2022. 2. 7
〃	홍준기	2022. 2. 7
〃	변민후	2022.11. 1
사무국장	이영호	2021. 8. 9
총무과장	최성규	2022. 7.18

직 위	성명	발령일
사건과장	신현미	2021. 8. 9
집행과장	최대진	2022. 7.18
조사과장		
수사과장	박현섭	2022. 7.18
공판과장	김용덕	2022. 7.18
검사직무대리	홍석표	2021. 2.22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신응석	2022. 6.27
차장검사	차순길	2022. 7. 4
인권보호관	강범구	2022. 7. 4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김기정	2021. 7. 2
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	김대룡	2021. 7. 2
〃	박병규	2021. 7. 2
〃	양성필	2022. 7. 4
〃	이동원	2022. 7. 4
형사제1부장검사	원형문	2022. 7. 4
형사제2부장검사	최재봉	2022. 7. 4
형사제3부장검사	유욱근	2022. 7. 4
형사제4부장검사	홍용화	2022. 7. 4
환경범죄조사부	어인성	2022. 7. 4
공판송무부장	남계식	2022. 7. 4
(부부장)검사	김희주	2020. 9. 3
〃	김정옥	2022. 7. 4
〃	이호석	2021. 7. 2
검사	윤 경	2022. 2. 7
〃	이지혜	2020. 2. 3
〃	최하연	2021. 2. 1
〃	박수정	2022. 2. 7
〃	안재욱	2022. 2. 7
〃	이승철	2022. 2. 7
〃	황수희	2019. 2.11
〃	문민영	2021. 2. 1
〃	이선미	2018. 7.19
〃	나민영	2019. 2.11

직 위	성명	발령일
〃	석동현	2020. 2. 3
〃	손현진	2022. 2. 7
〃	양재헌	2021. 2. 1
〃	도윤지	2020. 2. 3
〃	정지희	2021. 2. 1
〃	강민욱	2021. 2. 1
〃	김태훈	2021. 2. 1
〃	박광현	2021. 2. 1
〃	신명은	2022. 2. 7
〃	유용훈	2021. 4. 1
〃	유지혜	2022. 2. 7
〃	홍성표	2022. 2. 7
〃	김영중	2022.11. 1
〃	신종식	2022. 2. 7
〃	김민호	2021. 2. 1
〃	박소미	2021. 2. 1
〃	박은혜	2021. 2. 1
〃	최인혁	2021. 2. 1
〃	김혜원	2022. 2. 7
〃	박진우	2022. 2. 7
〃	이현철	2022. 2. 7
〃	김동현	2022.11. 1
〃	나효정	2022.11. 1
사무국장	박순우	2022. 1.24
총무과장		
사건과장	김윤애	2021. 8. 9
집행과장	윤성훈	2022. 1.24
수사과장	이상남	2022. 1.24
공판송무과장	정한석	2022. 7.18
검사직무대리		
(고양지청)		
지청장	장동철	2022. 7. 4
차장검사	안병수	2022. 7. 4
인권보호관	김성동	2022. 7. 4

직 위	성명	발령일
형사제1부장	최명규	2022. 7. 4
형사제2부장	정보영	2022. 7. 4
형사제3부장	황수연	2022. 7. 4
공판부장	장혜영	2022. 7. 4
(부부장)검사	박성민	2022. 7. 4
〃	용태호	2022. 7. 4
〃	정희선	2022. 7. 4
〃	조윤철	2022. 7. 4
검사	김지영	2018. 2. 5
〃	이근정	2022. 2. 7
〃	이종혁	2021. 2. 1
〃	임지연	2020. 2. 3
〃	김미영	2021. 2. 1
〃	이소연	2019. 2.11
〃	임재웅	2021. 2. 1
〃	박대웅	2021. 2. 1
〃	유상우	2019. 2.11
〃	권민정	2022. 7. 4
〃	김다현	2021. 2. 1
〃	김정현	2021. 2. 1
〃	박선하	2022. 2. 7
〃	이혜원	2021. 2. 1
〃	정지원	2020. 2. 3
〃	김주성	2021. 2. 1
〃	김지혜	2022. 2. 7
〃	김현중	2022. 2. 7
〃	정제훈	2021. 2. 1
〃	허성준	2022.11. 1
〃	김소연	2021. 2. 1
〃	윤가희	2021. 2. 1
〃	최종환	2021. 2. 1
〃	김명섭	2022. 2. 7
〃	김수영	2022. 2. 7
〃	민애리	2022. 2. 7

직 위	성명	발령일
〃	김보라	2022.11. 1
〃	송민정	2022.11. 1
사무국장	김승현	2022. 1.24
총무과장	설우용	2022. 7.18
사건과장	김승면	2022. 1.24
집행과장	김동섭	2022. 7.18
수사과장	박찬근	2022. 7.18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심우정	2022. 6.27
제1차장검사	박영빈	2022. 7. 4
제2차장검사	서정식	2022. 7. 4
인권보호관	김 현	2022. 7. 4
인권보호부장	김지완	2022. 7. 4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이종대	2021. 7. 2
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	김영익	2021. 7. 2
〃	윤원상	2022. 7. 4
〃	장성철	2022. 7. 4
〃	김종호	2022. 7. 4
〃	이영준	2022. 7. 4
형사제1부장	주민철	2022. 5.23
형사제2부장	위수현	2022. 7. 4
형사제3부장	손정현	2022. 7. 4
형사제4부장	김형원	2022. 7. 4
형사제5부장	박성민	2022. 7. 4
형사제6부장	손상욱	2022. 7. 4
국제범죄형사부장	김태형	2022. 7. 4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구미옥	2022. 7. 4
강력범죄수사부	김연실	2022. 7. 4
공판송무1부장	김재남	2022. 7. 4
공판송무2부장	장형수	2022. 7. 4
(부부장)검사	김용규	2022. 7. 4
〃	강석철	2021. 2.23
〃	김진남	2022. 7. 4
〃	유광렬	2022. 7. 4

직 위	성명	발령일
〃	하동우	2022. 7. 4
〃	박준영	2022. 2. 2
〃	문지석	2022. 7. 4
〃	이주희	2022. 7. 4
〃	조영성	2022. 7. 4
〃	김상현	2022. 7. 4
〃	김준선	2022. 7. 4
〃	박수민	2022. 7. 4
〃	정원석	2022. 7. 4
검사	김정은	2022. 2. 7
〃	김한민	2020. 2. 3
〃	성두경	2019. 2.11
〃	이건표	2021. 2. 1
〃	임홍주	2022. 2. 7
〃	김민정	2022. 2. 7
〃	이영진	2020. 2. 3
〃	홍성기	2022. 2. 7
〃	양찬규	2022. 2. 7
〃	오보미	2022. 2. 7
〃	오승환	2021. 2. 1
〃	우재훈	2021. 2. 1
〃	이지륜	2019. 2.11
〃	김동직	2022. 2. 7
〃	김영준	2020. 2. 3
〃	박중화	2022. 2. 7
〃	이재인	2020. 2. 3
〃	채필규	2020. 2. 3
〃	김남엽	2021. 2. 1
〃	김지웅	2021. 2. 1
〃	김지혜	2022. 2. 7
〃	박세혁	2021. 2. 1
〃	신지원	2020. 2. 3
〃	장성훈	2021. 2. 1
〃	정성욱	2021. 2. 1

직 위	성명	발령일
〃	홍석원	2022. 2. 7
〃	성인욱	2022. 7. 4
〃	원선아	2019. 2.11
〃	이기명	2021. 2. 1
〃	진아름	2020. 2. 3
〃	최진우	2022. 2. 7
〃	김민희	2021. 2. 1
〃	김준성	2019. 2.11
〃	도용민	2021. 2. 1
〃	안동찬	2022. 2. 7
〃	윤장훈	2022. 2. 7
〃	황두평	2019. 2.11
〃	박영우	2020. 2. 3
〃	박윤상	2020. 2. 3
〃	우세호	2020. 2. 3
〃	최세윤	2021. 2. 1
〃	최희선	2022. 2. 7
〃	김현창	2020. 2. 3
〃	정주희	2020. 2. 3
〃	나상현	2021. 2. 1
〃	오정은	2021. 2. 1
〃	오재완	2021. 2. 1
〃	이명희	2022. 2. 7
〃	황용범	2021. 2. 1
〃	황종현	2022. 2. 7
〃	박신우	2021. 4. 1
〃	유소영	2022. 2. 7
〃	이로운	2022. 2. 7
〃	박연주	2022. 2. 7
〃	한 항	2022.11. 1
〃	김윤정	2021. 2. 1
〃	김지윤	2021. 2. 1
〃	윤지훈	2021. 2. 1
〃	이현민	2021. 2. 1

직 위	성명	발령일
〃	서원준	2022. 2. 7
〃	신승재	2022. 2. 7
〃	전다솜	2022. 2. 7
〃	최소영	2022. 2. 7
〃	남상지	2022.11. 1
〃	박수진	2022.11. 1
〃	이형민	2022.11. 1
〃	조현희	2022.11. 1
〃	한태희	2022.11. 1
사무국장	윤권호	2021. 8. 9
총무과장	장문기	2022. 1.24
사건과장	임승철	2021. 8. 9
집행과장	정 기	2021. 8. 9
조사과장	김수호	2022. 1.24
수사과장	김철곤	2021. 8. 9
마약수사과장	안경석	2022. 1.24
공판송무과장	신광섭	2022. 7.18
검사직무대리	이형근	2021. 8. 9
검사직무대리	장종철	2021. 2.22
검사직무대리	백충영	2022. 7.18
(부천지청)		
지청장	주상용	2022. 7. 4
차장검사	김용자	2022. 7. 4
인권보호관	김원호	2022. 7. 4
형사제1부장검사	백승주	2022. 7. 4
형사제2부장검사	허 준	2022. 7. 4
형사제3부장검사	김해중	2022. 7. 4
공판부장	홍승현	2022. 7. 4
(부부장)검사	김지언	2021. 7. 2
〃	방지형	2022. 7. 4
검사	박 수	2022. 2. 7
〃	이지은	2019. 2.11
〃	신비나	2022. 2. 7
〃	이정아	2022. 2. 7

직 위	성명	발령일
〃	정용수	2022. 2. 7
〃	김용승	2022. 7. 4
〃	이수철	2022. 7. 4
〃	고병민	2021. 7. 2
〃	이현철	2022. 7. 4
〃	배용찬	2022. 7. 4
〃	김지헌	2021. 7. 2
〃	정희원	2022. 7. 4
〃	강형민	2022. 7. 4
〃	배성효	2022. 2. 7
〃	한윤경	2021. 7. 2
사무국장	윤득영	2022. 1.24
총무과장	조현철	2022. 8.18
사건과장	조병민	2022. 1.24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홍승욱	2022. 5.23
제1차장검사	박찬록	2022. 7. 4
제2차장검사	김형록	2022. 7. 4
인권보호관	박광현	2022. 7 4
인권보호부장	장윤태	2022. 7. 4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이용민	2022. 7. 4
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	박찬일	2022. 7. 4
〃	김종칠	2021. 7. 2
〃	최헌만	2021. 7. 2
〃	하신욱	2021. 7. 2
〃	이주영	2022. 7. 4
〃	조남철	2022. 7. 4
형사제1부장	손진욱	2022. 7. 4
형사제2부장	양선순	2022. 7. 4
형사제3부장	김성원	2022. 7. 4
형사제4부장	국상우	2022. 7. 4
형사제5부장	장윤영	2022. 7. 4
형사제6부장	김영남	2022. 7. 4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김봉준	2022. 7. 4

직 위	성명	발령일
〃	이정환	2021. 2. 1
〃	강형윤	2020. 2. 3
〃	박종호	2021. 2. 1
〃	고현욱	2022. 2. 7
〃	유희경	2020. 2. 3
〃	조한이	2021. 2. 1
〃	이원창	2021. 2. 1
〃	정다미	2022. 2. 7
〃	신가현	2022. 2. 7
〃	조윤정	2022. 2. 7
〃	장우진	2022. 2. 7
〃	정영지	2021. 2. 1
〃	이인원	2022. 2. 7
〃	유한실	2020. 2. 3
〃	김동욱	2021. 2. 1
〃	백희진	2021. 2. 1
〃	신수민	2021. 2. 1
〃	유재승	2021. 2. 1
〃	김효진	2022. 2. 7
〃	임 송	2022. 2. 7
〃	권다아	2022.11. 1
〃	전승조	2022.11. 1
〃	지수민	2022.11. 1
〃	최윤정	2022.11. 1
사무국장	백종동	2022. 5.10
총무과장	이정용	2022. 1.24
사건과장	최정인	2022. 1.24
집행과장	박희권	2022. 7.18
수사과장	신상성	2021. 8. 9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	이주형	2022. 6.27
차장검사	문성인	2022. 6.27
인권보호관	박기종	2022. 7. 4
검사	오규진	2022. 7. 4

직 위	성명	발령일
공공수사부장	정원두	2022. 7. 4
공판부장	최나영	2022. 7. 4
방위사업범죄수사부장	박진성	2022. 7. 4
(부부장)검사	김제성	2022. 7. 4
〃	김진호	2022. 7. 4
〃	윤재슬	2022. 7. 4
〃	나의엽	2022. 7. 4
〃	권내건	2022. 7. 4
〃	김재성	2022. 7. 4
〃	여경진	2022. 7. 4
〃	이시전	2022. 7. 4
〃	장영일	2022. 7. 4
〃	최용락	2021. 7. 2
〃	최희정	2022. 7. 4
〃	송민경	2022. 7. 4
〃	조정호	2022. 7. 4
검사	박상용	2021. 2. 1
〃	신상우	2022. 2. 7
〃	전세정	2021. 8. 2
〃	홍정연	2021. 2. 1
〃	김성훈	2021. 2. 1
〃	김지은	2022. 2. 7
〃	서혜선	2019. 2.11
〃	천재인	2021. 2. 1
〃	한강일	2022. 2. 7
〃	고유진	2022. 2. 7
〃	설수현	2022. 2. 7
〃	이상미	2022. 2. 7
〃	최성규	2022. 2. 7
〃	함재원	2021. 2. 1
〃	현동길	2019. 2.11
〃	신병우	2019. 2.11
〃	안성민	2021. 2. 1
〃	조도준	2022. 7. 4

직 위	성명	발령일
〃	구승기	2020. 2. 3
〃	한은지	2020. 2. 3
〃	김보경	2021. 2. 1
〃	박광호	2020. 2. 3
〃	오신환	2022. 2. 7
〃	윤기형	2020. 2. 3
〃	임성수	2020. 2. 3
〃	권인표	2020. 2. 3
〃	박영수	2022. 2. 7
〃	장영롱	2022. 2. 7
〃	전종택	2021. 2. 1
〃	고건영	2022. 2. 7
〃	박성현	2021. 2. 1
〃	손재용	2022. 2. 7
〃	안화연	2021. 2. 1
〃	주영선	2019. 2.11
〃	하지수	2019. 2.11
〃	김유완	2022. 2. 7
〃	이동우	2021. 2. 1
〃	이수영	2022. 2. 7
〃	전우진	2021. 2. 1
〃	고두성	2022. 2. 7
〃	노영진	2022. 2. 7
〃	박형건	2020. 2. 3
〃	양서원	2020. 2. 3
〃	김인선	2020. 2. 3
〃	민경재	2020. 2. 3
〃	윤오연	2020. 2. 3
〃	최선희	2022. 2. 7
〃	박성종	2021. 2. 1
〃	진동화	2021. 2. 1
〃	김태영	2022. 2. 7
〃	안덕중	2022. 2. 7
〃	신재욱	2022. 2. 7

직 위	성명	발령일
〃	정은경	2022. 2. 7
〃	김대영	2022.11. 1
〃	공민진	2021. 2. 1
〃	김지훈	2021. 2. 1
〃	박소영	2021. 2. 1
〃	유재덕	2021. 2. 1
〃	김동영	2022. 2. 7
〃	김민정	2022. 2. 7
〃	남정하	2022. 2. 7
〃	채용욱	2022. 2. 7
〃	정수호	2022.11. 1
〃	조은정	2022.11. 1
〃	최예인	2022.11. 1
사무국장	양우덕	2022. 1.24
총무과장	박영범	2022. 1.24
사건과장	손주근	2022. 1.24
집행과장	김지홍	2022. 7.18
조사과장	권선기	2022. 1.24
수사과장	장정호	2022. 7.18
공판과장	이재종	2022. 7.18
검사직무대리	안태성	2022. 1.24
검사직무대리	이재규	2022. 7.18
검사직무대리	황성철	2022. 7.18
(성남지청)		
지청장	이창수	2022. 7. 4
차장검사	조상원	2022. 7. 4
인권보호관	김명운	2022. 7. 4
형사제1부장	김영오	2022. 7. 4
형사제2부장	송정은	2022. 7. 4
형사제3부장	유민종	2022. 7. 4
공판부장	한상훈	2022. 7. 4
(부부장)검사	김형원	2021. 7. 2
〃	임연진	2022. 7. 4
검사	김지연	2022. 2. 7

직 위	성명	발령일
〃	박채원	2022. 2. 7
〃	손아지	2019. 2.11
〃	전영우	2021. 2. 1
〃	정승원	2021. 2. 1
〃	윤기선	2022. 2. 7
〃	이수정	2021. 8. 2
〃	허수진	2021. 8. 2
〃	김벼리	2021. 2. 1
〃	장재정	2021. 2. 1
〃	김민아	2018. 2. 5
〃	정민희	2018. 2. 5
〃	최지은	2019. 2.11
〃	김광락	2020. 2. 3
〃	이병래	2021. 2. 1
〃	박종현	2022. 2. 7
〃	신주희	2021. 2. 1
〃	김지혜	2020. 2. 3
〃	심기하	2021. 2. 1
〃	정재연	2022. 2. 7
〃	이지은	2022. 2. 7
〃	차민형	2022. 2. 7
〃	이재원	2021. 2. 1
〃	정지수	2021. 2. 1
〃	한경우	2022. 2. 7
〃	정수진	2020. 3. 1
〃	김정호	2021. 2. 1
〃	정아름	2021. 2. 1
〃	정연우	2021. 2. 1
〃	김보민	2022. 2. 7
〃	박재형	2022. 2. 7
〃	변형기	2022. 2. 7
〃	박지은	2022.11. 1
〃	이근호	2022.11. 1
〃	최원희	2022.11. 1

직위	성명	발령일
사무국장	서진학	2022. 8.18
총무과장	김연천	2022. 1.24
사건과장	유봉선	2022. 7.18
집행과장	남기주	2022. 7.18
수사과장	이용건	2022. 1.24
검사직무대리	김수연	2022. 1.24
(여주지청)		
지청장	이형관	2022. 7. 4
부장검사	이정화	2022. 7. 4
검사	우만우	2020. 2. 3
〃	김상직	2021. 2. 1
〃	이영준	2021. 2. 1
〃	이권석	2021. 2. 1
〃	조현욱	2022. 2. 7
〃	김미리	2021. 2. 1
〃	배상아	2021. 2. 1
〃	박강일	2021. 2. 1
〃	박지환	2022. 2. 7
〃	최예지	2022. 2. 7
〃	임주연	2022. 2. 7
사무과장	김도석	2022. 1.24
수사과장	하기헌	2022. 7.18
(평택지청)		
지청장	김영일	2022. 7. 4
형사제1부장검사	김희영	2022. 7. 4
형사제2부장검사	김윤정	2022. 7. 4
형사제3부장검사	김봉진	2022. 7. 4
검사	곽중욱	2022. 2. 7
〃	심기호	2021. 2. 1
〃	정경진	2022. 2. 7
〃	이재희	2021. 2. 1
〃	김진규	2021. 2. 1
〃	이상윤	2021. 2. 1
〃	김효준	2022. 2. 7
〃	전원영	2022. 2. 7
〃	이호진	2022. 2. 7
〃	서지혜	2021. 2. 1
〃	임여은	2021. 2. 1
〃	김윤환	2021. 2. 1
〃	함석욱	2021. 2. 1
〃	신석규	2022. 2. 7
〃	안창보	2022. 2. 7
〃	조진희	2022. 2. 7
사무과장	윤재원	2022. 1.24
수사과장	송학수	2022. 7.18
(안산지청)		
지청장	이종혁	2022. 7. 4
차장검사	박상진	2022. 7. 4
인권보호관	최인상	2022. 7. 4
형사1부장검사	허성환	2022. 7. 4
형사2부장검사	김재혁	2022. 7. 4
형사3부장검사	박석용	2022. 7. 4
형사4부장검사	김일권	2022. 7. 4
공판부장	송명섭	2022. 7. 4
(부부장)검사	김승호	2022. 7. 4
〃	김용식	2022. 2. 7
〃	오미경	2022. 7. 4
〃	신도욱	2022. 7. 4
〃	윤나라	2022. 7. 4
〃	김종욱	2022. 7. 4
〃	문하경	2022. 7. 4
검사	황선옥	2022. 2. 7
〃	정우성	2021. 2. 1
〃	송선민	2018. 2. 5
〃	송수연	2017. 2.20
〃	이경선	2020. 2. 3
〃	황윤선	2022. 2. 7
〃	이종민	2022. 2. 7

직 위	성명	발령일
〃	강정욱	2021. 2. 1
〃	고려진	2022. 2. 7
〃	김슬아	2022. 2. 7
〃	박기태	2021. 2. 1
〃	박예주	2022. 2. 7
〃	오연택	2022. 2. 7
〃	김정선	2021. 2. 1
〃	박진아	2022. 2. 7
〃	이자희	2022. 2. 7
〃	이안나	2021. 2. 1
〃	고은진	2021. 2. 1
〃	임병일	2022. 2. 7
〃	강인선	2020. 2. 3
〃	김종민	2021. 2. 1
〃	정혜라	2022. 2. 7
〃	박상희	2022. 2. 7
〃	이영광	2021. 2. 1
〃	이재연	2022. 2. 7
〃	정재훈	2022. 2. 7
〃	김민영	2021. 2. 1
〃	김성훈	2022. 2. 7
〃	박조민	2021. 2. 1
〃	김병기	2022.11. 1
〃	정지선	2022. 2. 7
〃	김나경	2021. 2. 1
〃	김수진	2021. 2. 1
〃	류범선	2021. 2. 1
〃	조진희	2021. 2. 1
〃	전진우	2022. 2. 7
〃	조아영	2022. 2. 7
〃	홍혁기	2022. 2. 7
〃	박광근	2022.11. 1
〃	장유정	2022.11. 1
사무국장	이상돈	2022. 8.18

직 위	성명	발령일
총무과장	강영일	2022. 7.18
사건과장	서문석	2021. 8. 9
집행과장	임영필	2021. 8. 9
수사과장	정재권	2021. 8. 9
검사직무대리	유대식	2022. 1.24
(안양지청)		
지청장	김성훈	2022. 7. 4
차장검사	안동완	2022. 7. 4
인권보호관	김정진	2022. 7. 4
형사제1부장검사	최재준	2022. 7. 4
형사제2부장검사	박진석	2022. 7. 4
형사제3부장검사	이진용	2022. 7. 4
(부부장)검사	남수연	2022. 7. 4
〃	류주태	2022. 7. 4
〃	이동근	2022. 7. 4
검사	김석훈	2022. 2. 7
〃	서정화	2020. 2. 3
〃	조성윤	2022. 2. 7
〃	성대웅	2022. 2. 7
〃	이혜현	2021. 2. 1
〃	이지은	2021. 2. 1
〃	황근주	2022. 2. 7
〃	안상현	2021. 2. 1
〃	이선화	2021. 2. 1
〃	이주연	2020. 2. 3
〃	박지영	2020. 2. 3
〃	장 진	2021. 2. 1
〃	홍현준	2021. 2. 1
〃	박민희	2020. 2. 3
〃	전영경	2022. 2. 7
〃	이평화	2022. 2. 7
〃	김승연	2021. 2. 1
〃	심요한	2021. 2. 1
〃	최종윤	2022. 2. 7

직위	성명	발령일
〃	양정훈	2022. 2. 7
〃	강다롱	2022. 2. 7
〃	이혜진	2021. 2. 1
〃	윤세희	2022. 2. 7
〃	윤치호	2022.11. 1
〃	조영진	2022.11. 1
사무국장	김동규	2022. 1.24
총무과장	정해영	2022. 1.24
사건과장		
집행과장		
수사과장	설용원	2022. 1.24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예세민	2022. 6.27
차장검사	진정길	2022. 7. 4
인권보호관	유현정	2022. 7. 4
형사제1부장검사	추혜윤	2022. 7. 4
형사제2부장검사	김상균	2022. 7.18
(부부장)검사	김창희	2022. 7. 4
〃	이규원	2022. 2. 7
〃	박상범	2022. 7. 4
검사	이경화	2022. 2. 7
〃	최성겸	2022. 2. 7
〃	허용준	2020. 2. 3
〃	김형아	2021. 2. 1
〃	김진희	2022. 2. 7
〃	신영민	2021. 2. 1
〃	홍지예	2021. 8. 2
〃	송미루	2021. 2. 1
〃	진인동	2022. 2. 7
〃	이지은	2021. 2. 1
〃	유수미	2022. 2. 7
〃	박병훈	2022.11. 1
〃	최재우	2022.11. 1
사무국장		

직위	성명	발령일
총무과장	홍승모	2021. 8. 9
사건과장	이승호	2022. 1.24
수사과장	김승호	2022. 7.18
집행과장	권기원	2022. 1.24
(강릉지청)		
지청장	서정민	2022. 7. 4
형사부장검사	이재연	2022. 7. 4
검사	안현선	2022. 2. 7
〃	김병채	2022. 2. 7
〃	김병진	2021. 2. 1
〃	이지영	2021. 2. 1
〃	황인혜	2022. 2. 7
〃	조아영	2022. 2. 7
〃	황호용	2022. 2. 7
사무과장	최병선	2022. 7.18
수사과장	임경석	2022. 1.24
(원주지청)		
지청장	이정봉	2022. 7. 4
형사제1부장검사	황성민	2022. 7. 4
형사제2부장검사	정가진	2022. 7. 4
검사	박형수	2022. 2. 7
〃	전성환	2019. 2.11
〃	황익진	2020. 2. 3
〃	한윤석	2020. 2. 3
〃	박제연	2021. 2. 1
〃	김진영	2021. 2. 1
〃	이동현	2022. 2. 7
〃	장혜수	2020. 2. 3
〃	김은성	2021. 2. 1
〃	홍철의	2021. 2. 1
〃	박유나	2022. 2. 7
〃	이수경	2022. 2. 7
〃	정성용	2022. 2. 7
사무과장	장병철	2022. 7.18

직 위	성명	발령일
수 사 과 장	이인국	2022. 1.24
(속 초 지 청)		
지 청 장	오종렬	2022. 7. 4
검 사	김상순	2021. 2. 1
〃	모형민	2022. 2. 7
〃	조영민	2021. 2. 1
〃	김종훈	2022. 2. 7
사 무 과 장	이태영	2022. 1.24
(영 월 지 청)		
지 청 장	신태훈	2022. 7. 4
검 사	남도현	2021. 2. 1
〃	이동헌	2022. 2. 7
〃	정기하	2021. 2. 1
〃	강가람	2022. 2. 7
사 무 과 장	정병옥	2022. 1.24
(대 전 고 등 검 찰 청)		
검 사 장	구자현	2022. 5.23
인 권 보 호 관	이병대	2022. 7. 4
검 사	송승섭	2020. 9. 3
〃	최상훈	2022. 7. 4
〃	위성국	2022. 7. 4
〃	서성호	2022. 7. 4
〃	정진웅	2022. 5.23
〃	김경우	2021. 7. 2
〃	남상관	2022. 7. 4
〃	양건수	2022. 7. 4
〃	이종찬	2022. 7. 4
사 무 국 장	정동진	2022. 1. 1
총 무 과 장	박상락	2021. 2.22
사 건 과 장		
(대 전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이진동	2022. 6.27
차 장 검 사	김경수	2022. 7. 4
인 권 보 호 관	이준식	2022. 7. 4

직 위	성명	발령일
인 권 보 호 부 장	이동언	2022. 7. 4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박문수	2021. 7. 2
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	김찬중	2022. 7. 4
〃	박재현	2022. 7. 4
〃	김성훈	2021. 7. 2
〃	정연헌	2022. 7. 4
〃	김원지	2022. 7. 4
〃	김지연	2022. 7. 4
〃	이광우	2022. 7. 4
형 사 제 1 부 장	황우진	2022. 7. 4
형 사 제 2 부 장	유정호	2022. 7. 4
형 사 제 3 부 장	조석규	2022. 7. 4
형 사 제 4 부 장	김태훈	2022. 7. 4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김지혜	2022. 7. 4
특 허 범 죄 조 사 부 장	정지은	2022. 7. 4
공 판 부 장	권성희	2022. 7. 4
(부 부 장) 검 사	김향연	2022. 7. 4
〃	한기식	2022. 7. 4
〃	신동환	2022. 7. 4
〃	정유선	2021. 7. 2
〃	황정임	2022. 7. 4
〃	김금이	2022. 7. 4
〃	김진혁	2022. 7. 4
검 사	김승우	2022. 2. 7
〃	김진용	2021. 2. 1
〃	단정려	2021. 2. 1
〃	정우준	2020. 2. 3
〃	조수영	2020. 2. 3
〃	최형규	2022. 2. 7
〃	김병욱	2021. 2. 1
〃	박영식	2022. 2. 7
〃	송찬우	2022. 7. 4
〃	오대건	2022. 2. 7
〃	오창명	2022. 7. 4

직위	성명	발령일
〃	유시동	2021. 2. 1
〃	이수현	2020. 2. 3
〃	이은주	2022. 2. 7
〃	강화연	2020. 2. 3
〃	박신영	2022. 2. 7
〃	김희송	2021. 8. 2
〃	박한나	2022. 2. 7
〃	이라영	2021. 2. 1
〃	최은미	2020. 2. 3
〃	김혜주	2022. 2. 7
〃	심재신	2021. 2. 1
〃	정경영	2021. 8. 2
〃	홍동기	2020. 2. 3
〃	박준석	2021. 2. 1
〃	박정선	2020. 2. 3
〃	손성민	2022. 2. 7
〃	오흥식	2021. 2. 1
〃	장현구	2022. 2. 7
〃	서민우	2020. 2. 3
〃	최지윤	2021. 2. 1
〃	조하림	2022. 2. 7
〃	최 웅	2021. 2. 1
〃	홍영기	2022. 2. 7
〃	서정효	2022. 2. 7
〃	안형진	2022.11. 1
〃	송혜경	2021. 2. 1
〃	권민정	2022. 2. 7
〃	이수호	2022. 2. 7
〃	전옥길	2022. 2. 7
〃	강성학	2022.11. 1
〃	김주영	2022.11. 1
사무국장	오만옥	2022. 8.18
총무과장	김원철	2022. 1.24
사건과장	김봉석	2022. 7.18

직위	성명	발령일
집행과장	김재영	2022. 7.18
조사과장	박종길	2022. 7.18
수사과장	이은승	2022. 7.18
검사직무대리	김병준	2022. 7.18
(홍성지청)		
지청장	정종화	2022. 7. 4
형사부장검사	박 철	2022. 7. 4
검사	이성호	2021. 2. 1
〃	신승헌	2022. 2. 7
〃	전종현	2022. 2. 7
〃	김태현	2021. 2. 1
〃	오영민	2021. 2. 1
〃	김은영	2022. 2. 7
〃	김한솔	2022. 2. 7
사무과장	장종효	2022. 7.18
수사과장	박관흠	2022. 1.24
(공주지청)		
지청장	김지용	2022. 7. 4
검사	이재영	2020. 2. 3
〃	유호원	2022. 2. 7
〃	박영웅	2021. 2. 1
〃	김태환	2022. 2. 7
사무과장	오후균	2021. 8. 9
(논산지청)		
지청장	이준호	2021. 7. 2
검사	김가연	2020. 2. 3
〃	손현진	2020. 2. 3
〃	박상준	2021. 2. 1
〃	이성직	2019. 2.11
〃	최우석	2021. 2. 1
사무과장	박수완	2022. 1.24
(서산지청)		
지청장	박주현	2022. 7. 4
형사부장검사	박경택	2022. 7. 4

직 위	성명	발령일
검 사	천재영	2021. 2. 1
〃	한웅세	2021. 2. 1
〃	김봉수	2021. 2. 1
〃	김구열	2022. 2. 7
〃	박보영	2021. 2. 1
〃	김병준	2021. 2. 1
〃	백가영	2021. 2. 1
〃	서수정	2022. 2. 7
사 무 과 장		
수 사 과 장	배의봉	2021. 8. 9
(천 안 지 청)		
지 청 장	정유미	2022. 7. 4
차 장 검 사	김 우	2022. 7. 4
인 권 보 호 관	민영현	2022. 7.18
형사제1부장검사	이상록	2022. 7. 4
형사제2부장검사	손상희	2022. 7. 4
형사제3부장검사	윤수정	2022. 7. 4
(부 부 장) 검 사	서효원	2020. 9. 3
〃	정우석	2022. 7. 4
검 사	유종건	2019. 2.11
〃	이재원	2021. 2. 1
〃	정효민	2021. 2. 1
〃	최한나	2022. 7. 4
〃	김미경	2020. 2. 3
〃	노경은	2020. 2. 3
〃	송새봄	2022. 2. 7
〃	손정아	2021. 2. 1
〃	김녹원	2021. 2. 1
〃	정다은	2021. 2. 1
〃	김찬우	2021. 2. 1
〃	김선태	2021. 2. 1
〃	임명환	2021. 2. 1
〃	한두현	2021. 2. 1
〃	유선문	2022. 2. 7

직 위	성명	발령일
〃	탁광진	2021. 2. 1
〃	김지원	2021. 2. 1
〃	박숙영	2021. 2. 1
〃	박자영	2021. 2. 1
〃	임현진	2021. 2. 1
〃	황수이	2021. 2. 1
〃	정민영	2022.11. 1
〃	주이레	2022.11. 1
사 무 국 장	강형규	2022. 1.24
총 무 과 장	이승열	2022. 7.18
사 건 과 장	박보성	2022. 1.24
집 행 과 장	어성국	2021. 8. 9
수 사 과 장	김두빈	2021. 8. 9
(청 주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배용원	2022. 6.27
차 장 검 사	이영림	2022. 7. 4
인 권 보 호 관	정재훈	2022. 7. 4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김석우	2021. 7. 2
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	윤춘구	2022. 7. 4
〃	양재혁	2022. 7. 4
〃	정광일	2022. 7. 4
〃	최현철	2022. 7. 4
형사제1부장검사	이곤호	2022. 7. 4
형사제2부장검사	신건호	2022. 7. 4
형사제3부장검사	안창주	2022. 7. 4
(부 부 장) 검 사	소창범	2021. 7. 2
〃	정선제	2022. 7. 4
〃	최성수	2022. 7. 4
검 사	김성태	2021. 2. 1
〃	최혜경	2020. 2. 3
〃	강명훈	2022. 2. 7
〃	김민정	2021. 2. 1
〃	임은정	2022. 2. 7
〃	최상훈	2021. 2. 1

직 위	성명	발령일
〃	류승진	2022. 7. 4
〃	이상민	2021. 2. 1
〃	최진혁	2021. 2. 1
〃	이경환	2021. 2. 1
〃	안제홍	2022. 2. 7
〃	안희경	2021. 2. 1
〃	강민정	2020. 2. 3
〃	박은석	2022. 2. 7
〃	김기왕	2021. 2. 1
〃	구지훈	2021. 2. 1
〃	전은석	2022. 2. 7
〃	김성현	2022.11. 1
〃	하경준	2021. 2. 1
〃	김동현	2022. 2. 7
〃	오소영	2022. 2. 7
〃	백승봉	2022.11. 1
〃	주해인	2022.11. 1
사무국장	이영철	2022. 1.24
총무과장	노진철	2022. 7.18
사건과장	전명관	2022. 7.18
집행과장	박 준	2022. 7.18
수사과장	홍흥표	2022. 7.18
검사직무대리	이종철	2022. 1.24
(충주지청)		
지청장	최임열	2022. 7. 4
형사부장검사	나하나	2022. 7. 4
검사	김진혁	2021. 2. 1
〃	신건수	2022. 2. 7
〃	이수경	2021. 2. 1
〃	임헌준	2022. 2. 7
〃	정초롱	2022. 2. 7
사무과장	이규승	2022. 1.24
(제천지청)		
지청장	박양호	2022. 7. 4

직 위	성명	발령일
검사	박종환	2021. 2. 1
〃	박민지	2021. 2. 1
〃	신종화	2021. 2. 1
사무과장	소병수	2022. 7.18
(영동지청)		
지청장	박윤희	2022. 7. 4
검사	김성진	2021. 2. 1
〃	원현호	2022. 2. 7
사무과장	김남혁	2022. 7.18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최경규	2022. 6.27
차장검사	홍종희	2022. 6.27
인권보호관	이계한	2022. 7. 4
검사	백찬하	2021. 7. 2
〃	심재계	2022. 2. 7
〃	이종구	2022. 7. 4
〃	박봉희	2021. 7. 2
〃	박철우	2022. 5.23
〃	진재선	2022. 5.23
〃	서창원	2022. 2. 7
사무국장		
총무과장	김태현	2022. 1.24
사건과장	금광식	2022. 7.18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주영환	2022. 5.23
제1차장검사	조대호	2022. 7. 4
제2차장검사	최지석	2022. 7. 4
인권보호관	정우식	2022. 7. 4
인권보호부장	천기홍	2022. 7. 4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노상길	2021. 7. 2
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	송연규	2022. 7. 4
〃	임은정	2022. 5.23
〃	김봉현	2022. 7. 4
〃	김공주	2022. 7. 4

직 위	성명	발령일
〃	이준석	2020. 2. 3
〃	김서영	2019. 2.11
〃	김소정	2021. 8. 2
〃	박대한	2021. 2. 1
〃	구재연	2019. 2.11
〃	이윤석	2022. 2. 7
〃	김승미	2020. 2. 3
〃	나혜윤	2019. 2.11
〃	이희욱	2022. 2. 7
〃	김정화	2020. 2. 3
〃	최혜민	2020. 2. 3
〃	하용만	2020. 2. 3
〃	김다락	2020. 2. 3
〃	김동휘	2020. 2. 3
〃	박형철	2021. 2. 1
〃	양효승	2021. 2. 1
〃	정수희	2021. 2. 1
〃	김윤식	2021. 2. 1
〃	박민규	2021. 2. 1
〃	권예리	2022. 2. 7
〃	최영권	2022. 2. 7
〃	김명호	2022.11. 1
〃	공도운	2021. 2. 1
〃	박세빈	2022. 2. 7
〃	유수빈	2022. 2. 7
〃	홍찬양	2022. 2. 7
〃	고신관	2022.11. 1
〃	남현규	2022.11. 1
〃	유화경	2022.11. 1
〃	최원재	2022.11. 1
사무국장		
총무과장	박용선	2022. 7.18
사건과장	이창균	2022. 7.18
집행과장	김종철	2022. 1.24

직 위	성명	발령일
〃	유상민	2022. 7. 4
형사제1부장검사	조홍용	2022. 7. 4
형사제2부장검사	신종곤	2022. 7. 4
형사제3부장검사	조용우	2022. 7. 4
형사제4부장검사	서경원	2022. 7. 4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	장일희	2022. 7. 4
반부패수사부장	이일규	2022. 7. 4
강력범죄수사부장	홍완희	2022. 7. 4
공판제1부장	이정민	2022. 7. 4
공판제2부장	정화준	2022. 7. 4
(부부장)검사	문영권	2022. 7. 4
〃	이덕진	2022. 7. 4
〃	하재무	2022. 7. 4
〃	이상민	2022. 7. 4
〃	조재철	2022. 7. 4
〃	최종혁	2022. 7. 4
〃	서성목	2022. 7. 4
〃	손지혜	2022. 7. 4
검사	김재환	2021. 7. 2
〃	이주용	2022. 2. 7
〃	차호동	2020. 2. 3
〃	김도형	2019. 2.11
〃	김은정	2022. 2. 7
〃	이건웅	2020. 2. 3
〃	이현석	2020. 2. 3
〃	최여련	2020. 9. 3
〃	이현진	2020. 2. 3
〃	권오장	2020. 2. 3
〃	김한준	2020. 2. 3
〃	이소현	2021. 2. 1
〃	차병곤	2020. 2. 3
〃	배석희	2018. 2. 5
〃	이경아	2019. 2.11
〃	이웅희	2021. 2. 1

직위	성명	발령일
수사과장	이창우	2022. 1.24
조사과장	이준호	2022. 1.24
공판과장	윤흥규	2022. 1.24
검사직무대리	박기랑	2022. 7.18
검사직무대리	이동진	2022.10.18
(대구서부지청)		
지청장	한제희	2022. 7. 4
차장검사	박주성	2022. 7. 4
인권보호관	신지선	2022. 7. 4
형사제1부장검사	조용후	2022. 7. 4
형사제2부장검사	강호준	2022. 7. 4
형사제3부장검사	서영배	2022. 7. 4
(부부장)검사	최 혁	2022. 7. 4
〃	허성규	2022. 7. 4
검사	김준호	2017. 2.20
〃	김동진	2021. 2. 1
〃	박은혜	2019. 2.11
〃	신영삼	2020. 2. 3
〃	이재연	2022. 2. 7
〃	탁동완	2021. 2. 1
〃	유광선	2022. 2. 7
〃	염호영	2022. 2. 7
〃	권영우	2021. 2. 1
〃	최정훈	2022. 2. 7
〃	원상환	2020. 2. 3
〃	김소영	2020. 9. 3
〃	최자윤	2021. 2. 1
〃	공현진	2021. 2. 1
〃	오승식	2022. 2. 7
〃	이상범	2022. 2. 7
〃	주은혜	2022. 2. 7
〃	이승재	2022. 2. 7
〃	김도환	2021. 2. 1
〃	석초롱	2021. 2. 1
〃	임영하	2021. 2. 1
〃	오나영	2022. 2. 7
〃	최문석	2022. 2. 7
〃	최은민	2022. 2. 7
〃	김소정	2022.11. 1
〃	서제원	2022.11. 1
사무국장	김기성	2022. 1.24
총무과장	박승주	2022. 7.18
사건과장	차한우	2022. 1.24
집행과장	이상화	2021. 8. 9
수사과장	이길우	2022. 7.18
(안동지청)		
지청장	홍승표	2022. 7. 4
검사	류재현	2021. 2. 1
〃	김용석	2022. 2. 7
〃	조예림	2021. 2. 1
〃	김태헌	2021. 2. 1
〃	허정훈	2022. 2. 7
사무과장	권재영	2022. 1.24
수사과장	권기창	2022. 1.24
(경주지청)		
지청장	문현철	2022. 7. 4
형사부장검사	장은희	2022. 7. 4
검사	이태훈	2021. 2. 1
〃	문성은	2022. 2. 7
〃	이영주	2020. 2. 3
〃	김혜리	2021. 2. 1
〃	남연진	2022. 2. 7
사무과장	김진룡	2022. 1.24
수사과장	이성수	2022. 1.24
(포항지청)		
지청장	이성식	2022. 7. 4
형사제1부장검사	신금재	2022. 7. 4
형사제2부장검사	박향철	2022. 7. 4

직위	성명	발령일
검사	이해영	2021. 2. 1
〃	고형근	2022. 2. 7
〃	어원중	2022. 2. 7
〃	이경문	2022. 2. 7
〃	윤지언	2021. 2. 1
〃	조운형	2021. 2. 1
〃	김대성	2022. 2. 7
〃	이경준	2022. 2. 7
〃	이윤정	2022. 2. 7
〃	최진석	2022. 2. 7
사무과장	주도경	2022. 1.24
집행과장	강동배	2021. 8. 9
수사과장	김욱환	2022. 1.24
(김천지청)		
지청장	고필형	2022. 7. 4
형사제1부장검사	최준호	2022. 7.18
형사제2부장검사	김진호	2022. 7. 4
검사	양준열	2019. 2.11
〃	유경준	2021. 2. 1
〃	김용휘	2021. 2. 1
〃	노우석	2022. 2. 7
〃	심동선	2021. 2. 1
〃	왕은진	2020. 2. 3
〃	배성재	2021. 2. 1
〃	정세연	2021. 2. 1
〃	한채란	2021. 2. 1
〃	이섬연	2022. 2. 7
〃	이준명	2022. 2. 7
사무과장	임상업	2022. 7.18
수사과장	이광호	2021. 8. 9
(상주지청)		
지청장	김은미	2022. 7. 4
검사	정주미	2020. 2. 3
〃	이형우	2021. 2. 1

직위	성명	발령일
〃	황성규	2021. 2. 1
사무과장	황재화	2021. 8. 9
(의성지청)		
지청장	이상혁	2022. 7. 4
검사	박상환	2021. 2. 1
〃	정민섭	2022. 2. 7
사무과장	이호종	2022. 7.18
(영덕지청)		
지청장	최종필	2022. 7. 4
검사	박 현	2021. 2. 1
〃	양경문	2022. 2. 7
사무과장	한상수	2022. 1.24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노정연	2022. 6.27
차장검사	이철희	2022. 6.27
인권보호관	김도형	2022. 7. 4
검사	하종철	2021. 2.26
〃	신은철	2022. 7. 4
〃	김 훈	2021. 2.26
〃	유일석	2021. 7. 2
〃	윤중기	2022. 7. 4
〃	김도균	2022. 7. 4
〃	전영준	2022. 7. 4
〃	채석현	2022. 7. 4
〃	권기환	2021. 7. 2
〃	김태훈	2022. 5.23
〃	최두천	2022. 7. 4
사무국장	김정호	2022. 1.24
총무과장	박형석	2022. 1.24
사건과장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박종근	2022. 6.27
제1차장검사	최재민	2022. 7. 4
제2차장검사	임승철	2022. 7. 4

직 위	성명	발령일
인권보호관	이영규	2022. 7. 4
인권보호부장	이만흠	2022. 7. 4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정지영	2022. 7. 4
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	류지열	2021. 7. 2
〃	박혜경	2021.11. 1
〃	김덕곤	2022. 5.23
〃	홍보가	2020. 9. 3
〃	정재현	2022. 7. 4
형사제1부장검사	박대범	2022. 7. 4
형사제2부장검사	최형원	2022. 7. 4
형사제3부장검사	송영인	2022. 7. 4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	최미화	2022. 7. 4
공공국제범죄수사부장검사	임길섭	2022. 7. 4
반부패강력수사부장검사	박현규	2022. 7. 4
공판제1부장검사	박성민	2022. 7. 4
공판제2부장검사	박종선	2022. 7. 4
(부부장)검사	류장만	2013. 4.23
〃	조용한	2022. 7. 4
〃	장준희	2022. 7. 4
〃	조두현	2022. 7. 4
〃	박지용	2022. 7. 4
〃	진혜원	2022. 7. 4
〃	류남경	2022. 7. 4
〃	박종선	2022. 7. 4
〃	박인우	2022. 7. 4
〃	박지훈	2022. 7. 4
〃	신미량	2022. 7. 4
〃	심형석	2022. 7. 4
	홍정연	2022. 7. 4
검사	김경목	2021. 2. 1
〃	김영신	2022. 7. 4
〃	김태겸	2021. 2. 1
〃	엄영욱	2020. 2. 3
〃	유관모	2022. 2. 7

직 위	성명	발령일
〃	이경민	2019. 2.11
〃	이지영	2019. 2.11
〃	최수은	2022. 2. 7
〃	한지혁	2020. 9. 3
〃	강진욱	2022. 2. 7
〃	김세희	2019. 2.11
〃	양익준	2021. 2. 1
〃	황나영	2021. 2. 1
〃	이승현	2020. 2. 3
〃	이자영	2018. 2. 5
〃	정선철	2020. 2. 3
〃	이희준	2021. 2. 1
〃	신정수	2021. 8. 2
〃	이형석	2020. 2. 3
〃	박건태	2020. 2. 3
〃	송형진	2020. 2. 3
〃	안홍균	2020. 2. 3
〃	이홍석	2022. 2. 7
〃	조재학	2020. 2. 3
〃	최지예	2019. 2.11
〃	손유빈	2020. 2. 3
〃	권준택	2021. 2. 1
〃	김민수	2021. 2. 1
〃	김수지	2020. 2. 3
〃	이거량	2022. 2. 7
〃	박가희	2020. 2. 3
〃	김나영	2017. 3. 1
〃	곽병수	2021. 2. 1
〃	김민주	2021. 2. 1
〃	최완영	2021. 2. 1
〃	김진호	2022. 2. 7
〃	박슬기	2021. 2. 1
〃	이승호	2022. 2. 7
〃	황보관범	2022.11. 1

직 위	성명	발령일
〃	김진혁	2021. 2. 1
〃	박보경	2021. 2. 1
〃	김도윤	2022. 2. 7
〃	김민수	2022. 2. 7
〃	박상현	2022. 2. 7
〃	박덕승	2022.11. 1
〃	진주환	2022.11. 1
〃	최신영	2022.11. 1
사무국장	박상욱	2022. 1.24
총무과장	권경원	2022. 1.24
사건과장	이동희	2022. 7.18
집행과장		
조사과장	이태언	2022. 7.18
수사과장	서맹웅	2022. 1.24
조직범죄수사과장	김대성	2022. 7.18
마약수사과장	김태현	2022. 1.24
공판과장	정상훈	2022. 7.18
검사직무대리	김순덕	2022. 7.18
〃	강병철	2022. 7.18
〃	김문규	2022. 7.18
(부산동부지청)		
지청장	이진수	2022. 7. 4
차장검사	하담미	2022. 7. 4
인권보호관	김형주	2022. 7. 4
형사제1부장검사	김병문	2022. 7. 4
형사제2부장검사	박기환	2022. 7. 4
형사제3부장검사	송봉준	2022. 7. 4
(부부장)검사	허지훈	2020. 9. 3
〃	천헌주	2021. 7. 2
〃	구민기	2022. 7. 4
검사	이준희	2022. 2. 7
〃	장려미	2020. 2. 3
〃	김태엽	2021. 2. 1
〃	문선주	2022. 2. 7

직 위	성명	발령일
〃	민경원	2022. 2. 7
〃	이한별	2021. 2. 1
〃	김필수	2020. 2. 3
〃	정인혜	2021. 2. 1
〃	최혜진	2021. 2. 1
〃	강지원	2022. 2. 7
〃	김필수	2022. 2. 7
〃	이선균	2021. 2. 1
〃	성혜진	2022. 2. 7
〃	신충섭	2022. 2. 7
〃	전제희	2022. 2. 7
〃	김선형	2022. 2. 7
〃	박윤협	2022. 2. 7
〃	오희원	2022. 2. 7
〃	고유정	2022.11. 1
〃	정다완	2022.11. 1
사무국장	강갑진	2022. 1.24
총무과장	양근석	2021. 8. 9
사건과장	이상만	2022. 1.24
집행과장	류충일	2022. 1.24
수사과장	이종흔	2022. 7.18
(부산서부지청)		
지청장	강지성	2022. 7. 4
차장검사	유태석	2022. 7. 4
인권보호관	황정현	2022. 7. 4
형사제1부장검사	강상묵	2022. 7. 4
형사제2부장검사	정혁준	2022. 7. 4
형사제3부장검사	김종필	2022. 7. 4
(부부장)검사	장준호	2022. 7. 4
〃	김지영	2022. 7. 4
〃	손은영	2022. 7. 4
〃	이상목	2022. 7. 4
검사	김소현	2021. 2. 1
〃	김희영	2022. 2. 7

직 위	성명	발령일
〃	김지아	2020. 2. 3
〃	김태희	2020. 9. 3
〃	이강우	2022. 2. 7
〃	이수진	2022. 2. 7
〃	이정현	2022. 2. 7
〃	김정선	2021. 2. 1
〃	문지원	2021. 2. 1
〃	박상훈	2021. 2. 1
〃	임성환	2021. 2. 1
〃	김연재	2022. 2. 7
〃	김해슬	2020. 2. 3
〃	안세영	2022. 2. 7
〃	안태민	2021. 2. 1
〃	박세미	2021. 2. 1
〃	장정윤	2021. 2. 1
〃	이승민	2022. 2. 7
〃	장진우	2022. 2. 7
〃	홍기영	2022. 2. 7
〃	구승완	2022.11. 1
〃	배국희	2022.11. 1
사무과장	왕선중	2022. 1.24
수사과장	배정도	2022. 1.24
집행과장	이경두	2022. 1.24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	노정환	2022. 6.27
차장검사	양동훈	2022. 7. 4
인권보호관	진철민	2022. 7. 4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박석재	2022. 7. 4
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	김재호	2021. 7. 2
〃	도상범	2021. 7. 2
〃	김기윤	2022. 7. 4
〃	박정의	2022. 7. 4
형사제1부장검사	김승언	2022. 7. 4
형사제2부장검사	임유경	2022. 7. 4

직 위	성명	발령일
형사제3부장검사	이정배	2022. 7. 4
형사제4부장검사	황보현희	2022. 7. 4
형사제5부장검사	노선균	2022. 7. 4
공판송무부장검사	서원익	2022. 7. 4
(부부장)검사	김미수	2022. 7. 4
검사	김윤정	2022. 2. 7
〃	신은식	2022. 2. 7
〃	이은윤	2022. 2. 7
〃	김미지	2020. 2. 3
〃	최윤희	2021. 2. 1
〃	김승기	2021. 2. 1
〃	김현우	2020. 2. 3
〃	유새롬	2022. 2. 7
〃	최우혁	2022. 2. 7
〃	한주동	2022. 2. 7
〃	양준석	2022. 2. 7
〃	정성두	2021. 2. 1
〃	김석순	2021. 2. 1
〃	남소정	2021. 2. 1
〃	박민경	2021. 2. 1
〃	길선미	2021. 2. 1
〃	김희진	2019. 2.11
〃	최정훈	2022. 2. 7
〃	김범준	2021. 2. 1
〃	허성호	2021. 2. 1
〃	김미선	2021. 2. 1
〃	김정원	2021. 2. 1
〃	김청아	2022. 2. 7
〃	박지향	2022. 2. 7
〃	이창헌	2021. 2. 1
〃	박선영	2022. 2. 7
〃	정고운	2022. 2. 7
〃	안도은	2021. 2. 1
〃	안주원	2021. 2. 1

직 위	성명	발령일
〃	우경진	2021. 2. 1
〃	도예진	2022. 2. 7
〃	임대현	2022. 2. 7
〃	정현혁	2022. 2. 7
〃	연선모	2022.11. 1
〃	이지수	2022.11. 1
〃	최나현	2022.11. 1
사무국장	노희동	2022. 1.24
총무과장	성주경	2022. 7.18
사건과장	김진희	2022. 7.18
집행과장	이범재	2022. 1.24
공공수사지원과장	김재섭	2022.10. 7
수사과장	전정규	2022. 1.24
검사직무대리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박재억	2022. 6.27
차장검사	박현준	2022. 7. 4
인권보호관	박태호	2022. 7. 4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박승환	2022. 7. 4
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	김정훈	2021. 7. 2
〃	허정수	2022. 7. 4
형사제1부장검사	임종필	2022. 7. 4
형사제2부장검사	정현승	2022. 7. 4
형사제3부장검사	윤동환	2022. 7. 4
형사제4부장검사	엄재상	2022. 7. 4
공판송무부장검사	이동원	2022. 7. 4
(부부장)검사	김동희	2022. 7. 4
〃	김미은	2021. 7. 2
〃	배상윤	2022. 7. 4
검사	김진희	2022. 2. 7
〃	류경환	2021. 2. 1
〃	장아량	2020. 2. 3
〃	송민하	2021. 2. 1
〃	임홍석	2022. 2. 7

직 위	성명	발령일
〃	김경년	2020. 2. 3
〃	김대근	2021. 2. 1
〃	신은정	2022. 2. 7
〃	정일두	2019. 2.11
〃	김대양	2021. 2. 1
〃	류정인	2021. 2. 1
〃	박혜진	2021. 2. 1
〃	임성열	2022. 2. 7
〃	장우혁	2021. 2. 1
〃	최인성	2021. 2. 1
〃	김나연	2022. 2. 7
〃	안창인	2022. 2. 7
〃	이영훈	2022. 2. 7
〃	반동호	2022. 2. 7
〃	강상혁	2021. 2. 1
〃	김현지	2021. 2. 1
〃	이리원	2021. 2. 1
〃	강희윤	2022. 2. 7
〃	손세희	2022. 2. 7
〃	송채은	2022. 2. 7
〃	한지현	2022. 2. 7
〃	장예솔	2022.11. 1
〃	최승훈	2022.11. 1
사무국장	정순철	2022. 1.24
총무과장	정성길	2022. 1.24
사건과장	김재곤	2022. 1.24
집행과장	박진성	2022. 1.24
조사과장	박준형	2022. 7.18
수사과장	조승래	2021. 8. 9
검사직무대리	유효상	2022. 1.24
(마산지청)		
지청장	박용호	2022. 7. 4
형사제1부장검사	김은하	2022. 7. 4
형사제2부장검사	김상준	2022. 7. 4

직위	성명	발령일
검사	김동욱	2021. 2. 1
〃	금성호	2021. 2. 1
〃	김문주	2020. 2. 3
〃	오종혁	2021. 2. 1
〃	이대희	2021. 2. 1
〃	하연지	2021. 2. 1
〃	김홍도	2021. 2. 1
〃	조경민	2021. 2. 1
〃	우희준	2022. 2. 7
〃	이희진	2022. 2. 7
사무과장	정영호	2022. 7.18
수사과장	문명룡	2022. 7.18
(진주지청)		
지청장	박현주	2022. 5.23
형사제1부장검사	이동현	2022. 7. 4
형사제2부장검사	정영주	2022. 7. 4
검사	고병무	2019. 2.11
〃	정기훈	2021. 2. 1
〃	이정훈	2021. 2. 1
〃	김수현	2021. 2. 1
〃	박동진	2021. 2. 1
〃	최형욱	2021. 2. 1
〃	설제민	2021. 2. 1
〃	김다혜	2022. 2. 7
〃	염준범	2022. 2. 7
〃	이종옥	2022. 2. 7
사무과장	조형식	2021. 8. 9
집행과장		
수사과장	정대웅	2022. 7.18
(통영지청)		
지청장	최성완	2022. 7. 4
형사제1부장검사	노정옥	2022. 7. 4
형사제2부장검사	배철성	2022. 7. 4
검사	성진영	2020. 2. 3

직위	성명	발령일
〃	장근보	2021. 2. 1
〃	김병희	2021. 2. 1
〃	박진형	2021. 2. 1
〃	라 혁	2022. 2. 7
〃	정종일	2021. 2. 1
〃	홍유정	2021. 2. 1
〃	김한나	2021. 2. 1
〃	박효정	2022. 2. 7
〃	전여민	2022. 2. 7
사무과장	채상훈	2021. 8. 9
수사과장	강복만	2022. 7.18
(밀양지청)		
지청장	허 훈	2022. 7. 4
검사	문승철	2021. 2. 1
〃	최건호	2021. 2. 1
〃	정유정	2022. 2. 7
사무과장	백종군	2022. 1.24
(거창지청)		
지청장	최재만	2022. 7. 4
검사	손성훈	2022. 2. 7
〃	김태완	2021. 2. 1
〃	박진현	2022. 2. 7
사무과장	정부영	2022. 1.24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조종태	2021. 6.11
차장검사	김지용	2022. 6.27
인권보호관	신형힉	2022. 7. 4
검사	강여찬	2021. 7. 2
〃	이제관	2022. 7. 4
〃	이주일	2021. 7. 2
〃	유두열	2021. 7. 2
〃	최현기	2022. 7. 4
〃	황의수	2021. 7. 2
〃	김재호	2022. 7. 4

직 위	성명	발령일
〃	김석담	2022. 7. 4
〃	윤중현	2022. 7. 4
사무국장		
총무과장	김근모	2022. 1.24
사건과장	명관호	2021. 8. 9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이수권	2022. 6.27
차장검사	이영남	2022. 7. 4
인권보호관	노진영	2022. 7. 4
인권보호부장	정용환	2022. 7. 4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강길주	2021. 7. 2
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	김 환	2021. 7. 2
〃	박은정	2022. 7. 4
〃	강남수	2021. 7. 2
형사제1부장검사	정태원	2022. 7. 4
형사제2부장검사	이영창	2022. 7. 4
형사제3부장검사	정영수	2022. 7. 4
형사제4부장검사	임삼빈	2022. 7. 4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	강정영	2022. 7. 4
반부패강력수사부장검사	최순호	2022. 7. 4
공판부장검사	권나원	2022. 7. 4
(부부장)검사	이방현	2022. 7. 4
〃	정광수	2021. 7. 2
〃	신승희	2022. 7. 4
〃	최태은	2020. 9. 3
〃	김영준	2022. 7. 4
〃	김은경	2022. 7. 4
〃	박상수	2022. 7. 4
〃	박지나	2022. 7. 4
〃	이경석	2022. 7. 4
〃	장유강	2022. 7. 4
검사	유지연	2021. 2. 1
〃	이주현	2020. 2. 3
〃	홍희영	2020. 9. 3

직 위	성명	발령일
〃	김지윤	2021. 2. 1
〃	정혜승	2022. 2. 7
〃	강일민	2022. 2. 7
〃	박지영	2021. 2. 1
〃	조현일	2022. 2. 7
〃	홍석기	2022. 2. 7
〃	김보미	2022. 2. 7
〃	윤신명	2022. 2. 7
〃	홍민유	2022. 2. 7
〃	강 현	2022. 2. 7
〃	박재성	2022. 2. 7
〃	안지영	2020. 2. 3
〃	오승은	2022. 7. 4
〃	문호섭	2021. 2. 1
〃	이정우	2021. 2. 1
〃	허창환	2021. 2. 1
〃	원민영	2022. 2. 7
〃	원경희	2022. 2. 7
〃	김규완	2021. 2. 1
〃	김도희	2021. 2. 1
〃	박혜진	2022. 2. 7
〃	신철민	2021. 2. 1
〃	이혜진	2021. 2. 1
〃	고승우	2021. 2. 1
〃	공소정	2022. 2. 7
〃	김정화	2020. 2. 3
〃	김주현	2022. 2. 7
〃	정성욱	2022. 2. 7
〃	최정수	2022. 2. 7
〃	박종현	2022. 2. 7
〃	심우석	2022. 2. 7
〃	김성천	2022.11. 1
〃	강송훈	2021. 2. 1
〃	임지혜	2021. 2. 1

직 위	성명	발령일
〃	김가현	2022. 2. 7
〃	노현선	2022. 2. 7
〃	조인태	2022. 2. 7
〃	연미현	2022.11. 1
사무국장		
총무과장	고재훈	2022. 7.18
사건과장	김영석	2022. 7.18
집행과장	서영욱	2022. 7.18
조사과장	김재정	2022. 7.18
수사과장	최이석	2022. 1.24
공판과장	안호현	2022. 7.18
검사직무대리		
(목포지청)		
지청장	권기대	2022. 7. 4
형사제1부장검사	김정국	2022. 7. 4
형사제2부장검사	이태순	2022. 7. 4
검사	봉진수	2020. 2. 3
〃	신재성	2021. 2. 1
〃	이영호	2021. 2. 1
〃	윤용석	2022. 2. 7
〃	이광세	2022. 2. 7
〃	가혜리	2021. 2. 1
〃	김시현	2021. 2. 1
〃	백지은	2021. 2. 1
〃	양현세	2021. 2. 1
〃	송동민	2022. 2. 7
〃	오혜림	2022. 2. 7
사무과장	박춘광	2022. 1.24
수사과장	서용기	2021. 8. 9
(장흥지청)		
지청장	장인호	2022. 7. 4
검사	천안문	2021. 2. 1
〃	주재현	2022. 2. 7
사무과장	전경진	2022. 1.24

직 위	성명	발령일
(순천지청)		
지청장	김윤섭	2022. 7. 4
차장검사	김훈영	2022. 7. 4
인권보호관	정지영	2022. 7. 4
형사제1부장검사	이승훈	2022. 7. 4
형사제2부장검사	최선경	2022. 7. 4
형사제3부장검사	조은수	2022. 7. 4
(부부장)검사	박건영	2022. 7. 4
검사	신승호	2022. 2. 7
〃	이세원	2022. 7. 4
〃	이윤구	2022. 2. 7
〃	허윤희	2020. 9. 3
〃	황윤재	2022. 2. 7
〃	김현수	2022. 2. 7
〃	박성욱	2022. 2. 7
〃	이진순	2021. 2. 1
〃	이수환	2021. 2. 1
〃	이동원	2022. 2. 7
〃	이휘소	2022. 2. 7
〃	최서준	2022. 2. 7
〃	이가은	2022. 2. 7
〃	이동욱	2022. 2. 7
〃	김연중	2022. 2. 7
〃	박현우	2022. 2. 7
〃	김세윤	2022. 2. 7
〃	정재인	2021. 2. 1
〃	채원재	2021. 2. 1
〃	홍준현	2021. 2. 1
〃	권하늘	2022. 2. 7
〃	박창구	2022. 2. 7
〃	김예진	2022.11. 1
〃	이선엽	2022.11. 1
〃	정우채	2022.11. 1
사무국장	성찬오	2022. 1.24

직위	성명	발령일
총무과장	이정배	2021. 8. 9
사건과장	남정화	2022. 1.24
집행과장	조형호	2022. 7.18
수사과장	이혜영	2022. 1.24
(해남지청)		
지청장	김승걸	2022. 7. 4
검사	장민수	2021. 2. 1
〃	김한민	2022. 2. 7
〃	우승민	2022. 2. 7
사무과장	장순복	2022. 7.18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문홍성	2022. 6.27
차장검사	황금천	2022. 7. 4
인권보호관	최원석	2022. 7.18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안성수	2022. 7. 4
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	정규영	2022. 7. 4
〃	정은혜	2022. 7. 4
형사제1부장검사	이정우	2022. 7. 4
형사제2부장검사	문지선	2022. 7. 4
형사제3부장검사	권찬혁	2022. 7. 4
(부부장)검사	정지영	2022. 7. 4
검사	임풍성	2022. 2. 7
〃	김지혜	2021. 2. 1
〃	박재호	2021. 2. 1
〃	안미현	2020. 2. 3
〃	박동주	2019. 2.11
〃	박노산	2022. 2. 7
〃	온정훈	2021. 2. 1
〃	구자원	2022. 2. 7
〃	이은정	2021. 2. 1
〃	강재하	2021. 2. 1
〃	조윤영	2021. 2. 1
〃	박근영	2022. 2. 7
〃	손용기	2022.11. 1
〃	이인영	2020. 3. 1
〃	김민정	2021. 2. 1
〃	김힘찬	2021. 2. 1
〃	신혜원	2021. 2. 1
〃	안형균	2022. 2. 7
〃	김민재	2022.11. 1
〃	김성호	2022.11. 1
〃	조원하	2022.11. 1
사무국장	장병인	2022. 8.18
총무과장	김상훈	2022. 7.18
사건과장	김성곤	2022. 7.18
집행과장	김금숙	2022. 7.18
수사과장	배영철	2022. 1.24
검사직무대리	신익수	2022. 1.24
(군산지청)		
지청장	손우창	2022. 7. 4
형사제1부장검사	오세문	2022. 7. 4
형사제2부장검사	정현주	2022. 7. 4
검사	김준소	2021. 2. 1
〃	류광환	2022. 2. 7
〃	구재훈	2022. 2. 7
〃	박수영	2021. 2. 1
〃	천대우	2021. 2. 1
〃	김호중	2021. 2. 1
〃	고영인	2022. 2. 7
〃	김광제	2022. 2. 7
〃	김태훈	2022. 2. 7
〃	전정우	2022. 2. 7
〃	정윤경	2022. 2. 7
〃	황지홍	2022. 2. 7
사무과장	이창희	2022. 7.18
집행과장	노시탁	2022. 1.24
수사과장	전희	2021. 8. 9

직 위	성명	발령일
(정 읍 지 청)		
지 청 장	국 원	2022. 7. 4
검 사	황준성	2021. 2. 1
〃	목찬수	2022. 2. 7
〃	박상우	2021. 2. 1
사 무 과 장	박종섭	2022. 7.18
(남 원 지 청)		
지 청 장	천대원	2022. 7. 4
검 사	최윤영	2021. 2. 1
〃	김종원	2022. 2. 7
사 무 과 장	최병주	2022. 7.18
(제 주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이근수	2022. 6.27
차 장 검 사	강대권	2022. 7. 4
인 권 보 호 관	김선문	2022. 7. 4
형 사 제 1 부 장 검 사	강세현	2022. 7. 4
형 사 제 2 부 장 검 사	오기찬	2022. 7. 4
형 사 제 3 부 장 검 사	신재홍	2022. 7. 4
(부 부 장) 검 사	한상형	2021. 7. 2
〃	이태협	2022. 7. 4
검 사	김효진	2021. 2. 1
〃	변진환	2022. 2. 7
〃	왕선주	2021. 2. 1
〃	윤인식	2022. 7. 4
〃	장세진	2022. 2. 7
〃	김진영	2022. 2. 7
〃	전철호	2021. 2. 1
〃	고은실	2021. 8. 2
〃	권동욱	2022. 2. 7
〃	한승진	2019. 2.11
〃	정 혁	2022. 2. 7
〃	정덕채	2022. 2. 7
〃	정소영	2022. 2. 7
〃	장태원	2021. 2. 1
〃	최민혁	2022. 2. 7
〃	권다송이	2021. 2. 1
〃	정세연	2022. 2. 7
〃	김남용	2022. 2. 7
〃	송민석	2022.11. 1
〃	문승기	2021. 2. 1
〃	송진민	2022. 2. 7
〃	천의진	2022. 2. 7
〃	손아령	2022.11. 1
사 무 국 장	정연익	2022. 1.24
총 무 과 장	안병훈	2022. 7.18
사 건 과 장	이승환	2022. 1.24
집 행 과 장	김중근	2022. 1.24
수 사 과 장	장석경	2022. 1.24
(사 법 연 수 원)		
부 원 장		

4. 보호관찰·소년보호기관

• 보호관찰소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고위공무원)	성우제	2022. 1. 24.	서울북부보호관찰소 소장	최종철	2022. 9. 19.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임기제 4급)	김정근	2022. 2. 4.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소장	김용수	2022. 1. 24.
대구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임기제 4급)	김준성	2022. 9. 19.	의정부보호관찰소 소장	김행석	2022. 9. 19.
부산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고위공무원)	고영종	2021. 8. 30.	인천보호관찰소 소장	김태호	2022. 1. 24.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임기제 4급)	이승원	2022. 9. 19.	수원보호관찰소 소장	정성수	2022. 9. 19.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임기제 4급)	문주남	2022. 7. 6.	춘천보호관찰소 소장	송인선	2022. 9. 19.
서울보호관찰소 소장 관찰과장 행정지원과장	윤태영 조동기 안종우	2022. 7. 1. 2022. 9. 19. 2022. 1. 24.	대전보호관찰소 소장 행정지원과장 관찰과장	이형섭 공석 문승주	2022. 1. 24. – 2022. 9. 19.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소장	김용현	2022. 9. 19.	청주보호관찰소 소장	배점호	2022. 9. 19.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소장	김시종	2022. 9. 19.	대구보호관찰소 소장 행정지원과장 관찰과장	이영면 홍정원 조태진	2022. 1. 24. 2020. 7. 6. 2022. 1. 24.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직 위	성 명	발 령 일
부산보호관찰소 소장 행정지원과장 관찰과장	이정민 박종균 정영식	2022. 12. 5. 2022. 9. 19. 2022. 9. 19.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지소장	정기조	2022. 1. 24.
울산보호관찰소 소장	김기환	2022. 1. 24.	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 지소장	김택준	2022. 1. 24.
창원보호관찰소 소장	김정렬	2022. 1. 24.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 지소장	김종말	2022. 1. 13.
광주보호관찰소 소장 행정지원과장 관찰과장	안병경 김양곤 김경렬	2022. 1. 24. 2020. 8. 18. 2022. 7. 6.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 지소장	박종국	2022. 1. 24.
전주보호관찰소 소장	황남례	2022. 1. 24.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 지소장	김남중	2022. 9. 19.
제주보호관찰소 소장	유정호	2022. 1. 24.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지소장	황철주	2022. 9. 19.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센터장	문희갑	2021. 8. 30.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 지소장	김원진	2022. 9. 19.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 센터장	최 걸	2022. 1. 24.	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지소장	권을식	2022. 1. 24.
의정부보호관찰소 고양지소 지소장	이승욱	2022. 1. 24.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 지소장	우종한	2022. 9. 19.

•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국립법무병원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서울소년원		
원장	이영호	2022. 1. 24.
행정지원과장	조상민	2022. 12 7.
교무과장	김대요	2022. 9. 19.
분류보호과장	공석	
호송과장	차영환	2022. 9. 19.
의무과장	공석	
부산소년원		
원장	전상호	2021. 8. 30.
행정지원과장	문익권	2022. 1. 24.
교무과장	김동민	2022. 9. 19.
분류보호과장	박해영	2021. 1. 18.
의무과장	시현욱	2019. 2. 18.
대구소년원		
원장	이헌구	2022. 1. 24.
행정지원과장	김기근	2022. 9. 19.
교무과장	김기선	2022. 1. 24.
분류보호과장	김송수	2022. 9. 19.
의무과장	조태욱	2018. 1. 1.
광주소년원		
원장	윤일중	2021. 8. 30.
행정지원과장	김철수	2022. 1. 24.
교무과장	곽칠선	2022. 9. 19.
분류보호과장	공석	
의무과장	김재휴	2022. 10. 31.
전주소년원		
원장	장재원	2021. 8. 30.
행정지원과장	정태권	2022. 9. 19.
교무과장	배성희	2022. 9. 19.
분류보호과장	공석	
의무과장	김학성	2019. 7. 1.
대전소년원		
원장	염정훈	2021. 8. 30.
행정지원과장	임충섭	2022. 1. 24.
교무과장	양병곤	2022. 9. 19.
분류보호과장	신달수	2022. 9. 19.
의무과장	장재호	2012. 11. 1.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청주소년원		
원장	유상운	2021. 8. 30.
행정지원과장	김동진	2022. 1. 24.
교무과장	김종준	2020. 7. 13.
의무과장	전승화	2015. 10. 26.
안양소년원		
원장	김태섭	2021. 8. 30.
행정지원과장	손세국	2022. 9. 19.
교무과장	정태근	2022. 9. 19.
의무과장	최원석	2015. 7. 30.
춘천소년원		
원장	배종상	2021. 1. 18.
행정지원과장	송명호	2022. 1. 24.
교무과장	안덕배	2020. 7. 13.
분류보호과장	박병렬	2022. 1. 24.
의무과장	공석	
제주소년원		
원장	민명식	2022. 1. 24.
행정지원과장	김도연	2021. 8. 30.
교무과장	남철호	2022. 9. 19.
의무과장	최병선	2018. 10. 19.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원장	권기한	2022. 9 19.
행정지원과장	천영민	2019. 8. 13.
교무과장	김충섭	2022. 9. 19.
분류심사과장	박현배	2022. 9. 19.
호송과장	김원수	2021. 8. 30.
의무과장	박정환	2011. 4. 8.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권용목	2022. 9. 19.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이영미	2022. 9. 19.
센터장	신원식	2022. 1. 24.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국립법무병원		
원장	조성남	2019. 2. 11.
의료부장	박재상	2022. 9. 19.
행정지원과장	오유진	2021. 7. 12.
감호과장	최배근	2022. 9. 19.

5. 북한인권기록보존소(4급 이상)

직 위	성 명	발 령 일
보 존 소 장	심 경 보	2020. 07. 01.
검 찰 수 사 서 기 관	최 은 숙	2022. 01. 24.

6.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서울지방교정청		
청장	정병헌	2022. 9. 26.
총무과장	최진규	2022. 9. 26.
보안과장	정 진	2022. 9. 26.
사회복귀과장	이효선	2022. 9. 26.
분류센터장	조진호	2022. 1. 24.
대구지방교정청		
청장	우희경	2022. 9. 26.
총무과장	주정민	2022. 9. 26.
보안과장	고상길	2022. 9. 26.
사회복귀과장	윤영주	2022. 9. 26.
분류센터장	박정민	2022. 9. 26.
대전지방교정청		
청장	유태오	2022. 9. 26.
총무과장	안영삼	2022. 9. 26.
보안과장	육근우	2022. 9. 26.
사회복귀과장	박진홍	2022. 9. 26.
분류센터장	최창호	2022. 9. 26.
광주지방교정청		
청장	김동현	2022. 9. 26.
총무과장	김종곤	2022. 9. 26.
보안과장	지경선	2022. 9. 26.
사회복귀과장	오우정	2022. 9. 26.
분류센터장	심성일	2022. 9. 26.
서울구치소		
소장	민낙기	2022. 9. 26.
부소장	배경석	2022. 9. 26.
총무과장	김찬우	2022. 1. 24.
보안과장	김 승	2022. 9. 26.
의료과장	이병연	2019. 8. 1.

직 위	성 명	발 령 일
대구교도소		
소장	김남주	2022. 9. 26
부소장	이현주	2022. 9. 26
총무과장	손은경	2022. 9. 26
보안과장	김홍대	2022. 9. 26
의료과장	정원석	2022. 9. 26
대전교도소		
소장	류기현	2022. 1. 1.
부소장	허영열	2022. 9. 26.
총무과장	최세림	2022. 9. 26.
보안과장	박원규	2022. 1. 24.
의료과장	이준호	2009. 2. 17.
논산지소장	김용국	2022. 9. 26.
광주교도소		
소장	최규철	2022. 9. 26.
부소장	조관성	2022. 9. 26.
총무과장	김남진	2022. 9. 26.
보안과장	이성하	2022. 9. 26.
의료과장	강기영	2022. 9. 26.
안양교도소		
소장	오광운	2022. 9. 26.
부소장	정인식	2022. 1. 24.
총무과장	김수철	2020. 11. 7.
보안과장	김봉영	2022. 9. 26.
의료과장		
부산구치소		
소장	박수연	2022. 9. 26.
부소장	조형근	2022. 9. 26.
총무과장	박은옥	2022. 9. 26.
보안과장	김태훈	2022. 9. 26.
의료과장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수 원 구 치 소		
소 장	서호영	2022. 1. 1.
부 소 장	윤상륜	2022. 9. 26.
총 무 과 장	한희도	2022. 1. 1.
보 안 과 장	김성열	2022. 9. 26.
의 료 과 장	조재관	2020. 2. 24.
평 택 지 소 장	이규성	2022. 9. 26.
서 울 동 부 구 치 소		
소 장	김영식	2022. 1. 1.
부 소 장	장승구	2022. 7. 4.
총 무 과 장	이성호	2022. 9. 26.
보 안 과 장	정영모	2022. 9. 26.
의 료 과 장	강승원	2021. 9. 13.
인 천 구 치 소		
소 장	오세홍	2022. 9. 26.
부 소 장	윤양호	2022. 1. 24.
총 무 과 장	김수희	2022. 1.. 24.
보 안 과 장	이일환	2022. 9. 26.
의 료 과 장	김찬성	2022. 1. 24.
서 울 남 부 구 치 소		
소 장	하영훈	2022. 1. 1.
부 소 장	남창식	2022. 9. 26.
총 무 과 장	김선희	2022. 1. 24.
보 안 과 장	송재열	2022. 9. 26.
의 료 과 장	박종민	2016. 9. 26.
천 안 개 방 교 도 소		
소 장	김성호	2022. 1. 1.
의 료 과 장		
화 성 직 업 훈 련 교 도 소		
소 장	윤창식	2022. 9. 26.
총 무 과 장	김지명	2022. 1. 24.
의 료 과 장	곽연우	2016. 10. 5.
경 북 북 부 제 1 교 도 소		
소 장	장종선	2021. 8. 30.
부 소 장	안경수	2022. 9. 26.
총 무 과 장	김석홍	2022. 9. 26.
보 안 과 장	김정학	2022. 9. 26.
의 료 과 장	한주섭	2002. 1. 21.
시 설 과 장	손영조	2022. 3. 21.
전 주 교 도 소		
소 장	신동윤	2022. 7. 4.
총 무 과 장	이영성	2022. 1. 24.
보 안 과 장	조항덕	2022. 9. 26.
의 료 과 장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여 주 교 도 소		
소 장	류동수	2022. 9. 26.
의 료 과 장	윤완중	2022. 7. 25.
부 산 교 도 소		
소 장	이홍연	2022. 9. 26.
총 무 과 장	정진우	2022. 1. 24.
의 료 과 장	윤종철	2015. 7. 14.
의 정 부 교 도 소		
소 장	김재술	2022. 7. 4.
총 무 과 장	김희곤	2022. 9. 26.
의 료 과 장	주재호	2021. 9. 13.
창 원 교 도 소		
소 장	김학봉	2022. 9. 26.
의 료 과 장		
순 천 교 도 소		
소 장	백금태	2022. 1. 24.
의 료 과 장	박경철	1996. 9. 1.
서 울 남 부 교 도 소		
소 장	강군오	2022. 1. 24.
의 료 과 장	김신욱	2021. 8. 2.
포 항 교 도 소		
소 장	장원재	2022. 7. 4.
의 료 과 장	우재택	2019. 8. 7.
진 주 교 도 소		
소 장	김철민	2022. 7. 4.
의 료 과 장	이진철	2007. 12. 13.
목 포 교 도 소		
소 장	최국진	2022. 1. 1.
의 료 과 장	강 철	1990. 6. 26.
대 구 구 치 소		
소 장	한천용	2022. 9. 26.
의 료 과 장	이재광	2005. 11. 7.
군 산 교 도 소		
소 장	이남구	2022. 7. 4.
의 료 과 장	장성용	2006. 4. 17.
청 주 교 도 소		
소 장	유기용	2022. 9. 26.
의 료 과 장	박현우	2018. 8. 27.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천 안 교 도 소		
소 장	김일환	2022. 9. 26.
의 료 과 장	신준식	2016. 9. 12.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소 장	김광희	2022. 1. 24.
의 료 과 장	최창학	2011. 1. 1.
춘 천 교 도 소		
소 장	황진석	2022. 9. 26
의 료 과 장	이중구	2007. 5. 28
원 주 교 도 소		
소 장	서 민	2022. 9. 26.
의 료 과 장	김영진	2015. 6. 28..
안 동 교 도 소		
소 장	박상용	2022. 9. 26.
의 료 과 장	이석균	2017. 9. 18.
경북북부제2교도소		
소 장	강성헌	2022. 9. 26.
의 료 과 장	계영남	2019. 7. 22.
청 주 여 자 교 도 소		
소 장	강기천	2022. 1. 1.
의 료 과 장	박병철	2018. 3. 13.
김 천 소 년 교 도 소		
소 장	허덕환	2022. 7. 4.
의 료 과 장	최인환	2008. 1. 24.
공 주 교 도 소		
소 장	윤대하	2022 2. 21.
의 료 과 장	송혜정	2021. 3. 24.
경북북부제3교도소		
소 장	송진수	2022. 9. 26.
의 료 과 장		
울 산 구 치 소		
소 장	김영광	2022. 7. 4.
의 료 과 장	서보균	2020. 3. 9.
정 읍 교 도 소		
소 장	박기주	2022. 1. 24.
의 료 과 장	김득종	2021. 1. 4.
거 창 구 치 소		
소 장		
의 료 과 장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제 주 교 도 소		
소 장	김병호	2022. 9. 26.
의 료 과 장	박재홍	2018. 8. 20.
홍 성 교 도 소		
소 장	박석규	2022. 7. 4.
의 료 과 장	윤성로	1994. 11. 12.
서 산 지 소 장	제환국	2022. 9. 26.
경 주 교 도 소		
소 장	최재우	2022. 7. 4.
의 료 과 장	조윤철	2012. 1. 9.
통 영 구 치 소		
소 장	김진아	2022. 1. 1.
의 료 과 장		
밀 양 구 치 소		
소 장	정원수	2022. 9. 26.
의 료 과 장	전윤식	2014. 5. 12.
상 주 교 도 소		
소 장	홍순철	2022. 1. 24.
의 료 과 장	박현우	2022. 10. 4.
강 릉 교 도 소		
소 장	박대철	2022. 9. 26.
의 료 과 장	김일환	2017. 1. 1.
영 월 교 도 소		
소 장	손용대	2022. 1. 24.
의 료 과 장	김건도	2015. 6. 23.
장 흥 교 도 소		
소 장	조병주	2022. 7. 4.
의 료 과 장	김규정	2020. 2. 17.
해 남 교 도 소		
소 장	최종일	2022. 4. 5.
의 료 과 장	최영기	2017. 4. 10.
충 주 구 치 소		
소 장	주기남	2022. 7. 4.
의 료 과 장		
강 원 북 부 교 도 소		
소 장	허만혁	2022. 1. 24.
의 료 과 장	손승재	2021. 12. 20.

7. 출입국·외국인청/출입국·외국인사무소/외국인보호소/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청장	김종민	2022. 1. 1.
지원국장	권택성	2022. 2. 12.
심사1국장	김용규	2022. 1. 1.
심사2국장	이호원	2022. 7. 20.
총무과장	김홍규	2022. 1. 1.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청장	배상업	2022. 9. 19.
총무과장	임홍헌	2022. 2. 1.
관리과장	김세진	2022. 8. 21.
이민특수조사대장	공 석	
출입국정보화센터장	김희성	2022. 7. 1.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청장	이동휘	2022. 3. 8.
관리과장	정희정	2022. 1. 24.
이민특수조사대장	구병모	2022. 8. 22.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청장	이규홍	2021. 9. 17.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청장	박상욱	2022. 3. 21.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청장	김진영	2022. 1. 24.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장	공 석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장	이문한	2022. 3. 21.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장	문수용	2022. 8. 24.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장	김종복	2022. 1. 1.

직 위	성 명	발 령 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장	임은진	2022. 1. 24.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장	임선봉	2022. 7. 20.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장	강수근	2022. 1. 1.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장	강대열	2022. 1. 1.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장	김진성	2021. 8. 9.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장	오점근	2022. 7. 20.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장	안숙열	2022. 7. 25.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장	이종철	2022. 1. 1.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장	구본준	2021. 1. 1.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장	강성환	2021. 3. 1.
화성외국인보호소		
소장	박찬순	2022. 7. 25.
청주외국인보호소		
소장	김기락	2021. 8. 9.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센터장	류인성	2021. 1. 1.

제6절 인사

• 총 괄

(2022. 1 ~ 12월)

구 분		계	승 진	전 보	신규임용	면 직
계		15,163	2,899	8,811	1,784	1,570
검 사		1,639	-	1,404	89	146
일반직	소 계	13,524	2,899	7,407	1,695	1,424
	본부 (연수원)	384 (65)	111 (1)	192 (54)	24 (2)	57 (8)
	검찰청	4,383	856	2,880	318	329
	보호기관 (보호관찰소, 소년원, 국립법무병원)	1,837	359	1,082	261	135
	지방교정청 (구치소, 교도소)	5,446	1,379	2,214	1,027	826
	출입국·외국인기관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1,409	193	985	63	69

제 7 절 국외훈련·출장

• 검 사

(2022. 1 ~ 12월)

기 간 / 직 급	계	장 기 (6월 이상)	단 기 (6월 이하)	출장·연수
계	122	57	21	44
검 찰 총 장	-	-	-	-
검 사	122	57	21	44

• 일반직

(2022. 1 ~ 12월)

기 간 / 기 관	계	장 기 (6월 이상)	단 기 (6월 이하)	출장·연수
계	168	8	5	155
본 부	49	1	1	47
검 찰 청	65	4	1	60
교 정 기 관	16	-	1	15
보 호 관 찰 소 소 년 원 국 립 법 무 병 원	12	1	-	11
출 입 국·외 국 인 기 관	26	2	2	22
법 무 연 수 원	-	-	-	-

제8절 국제교류 현황

1. 외국 주요인사 법무부 방문 현황

(2022. 1. 1.~12. 31.)

예방일	국 명	직책	성 명	예방목적	비 고
1. 7.	인도네시아	주한 인도네시아대사관 이민국주재관	조나단 카벤	• 신임영사 부임인사차 본부장 예방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1. 21.	몽골	주한 몽골대사관 참사관	테눈	• 신임영사 부임인사차 본부장 예방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1. 24.	UNHCR (유엔난민기구)	UNHCR 한국사무소 대표	제임스 린치	• 난민관련 현안 논의 및 협력방안 모색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 18.	UN 대테러실	UN 대테러센터장	자항기르 칸	• 협력관계 구축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5. 19.	우즈베키스탄	주한 대사관 공관차석	사이도프 조키르	• 협력관계 구축 및 현안 논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6. 13.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	파비앙 살비올리 등 3명	• 차관 주재 한국의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에 관한 면담 실시	인 권 국
6. 28.	몽골	몽골 이민청장	우간바야르 네르구이	• 한-몽골 출입국관리 고위급회의 개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7. 12.	필리핀	주한 필리핀대사관 총영사	이스라엘 로물로 빅토르	• 계절근로제도 등 주요 정책 관련 의견 교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7. 13.	중국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과장	당 량	• 출입국업무 관련 현안 논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예방일	국 명	직책	성 명	예방목적	비 고
7. 25.	영국	주한영국대사	콜린 제임스 크룩스	• 한-영 법무협력 교류 강화 방안 논의	법 무 실
7. 25.	영국	영국 사무변호사 협회장	스테파니 보이스	• 한-영 법무협력 교류 강화 방안 논의	법 무 실
7. 28.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외교부 차관	파블로 안셀모 대타만띠	• 양국 간 인적교류 활성화 방안 모색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10. 12.	IOM (국제이주기구)	IOM 부사무총장	에이미 포프	• 법무부 - IOM간 협력관계 강화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11. 11.	UNHCR (유엔난민기구)	UNHCR 최고대표 (난민고등판무관)	필리포 그란디	• 난민정책관련 상호 의견 교환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11. 16.	유엔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	토마스 앤드류스 등 2명	• 미얀마 인권 상황에 관한 면담 실시	인 권 국
11. 28.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아크바르 타쉬쿨로프, 노짐 후사노프	• 현안 논의 및 협력 방안 모색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12. 6.	미국	국무부 아동문제관련특별 보좌관	미셸 버니어 토스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 관련 협력 및 현황 파악	법 무 실
12. 13.	중국	주한중국대사	싱하이밍	• 신년 인사	법 무 실

2. 중요 국제회의 참가 현황

(2022. 1. 1. ~ 12. 31)

기 간	국 가	회 의 명	참가자	비 고
1. 12. ~ 1. 13.	서울 (외교부)	• 한-멕시코 투자보장협정 제4차 회담 참석	서기관 이현송	법 무 실
2. 7. ~ 2. 11.	화상회의	•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6실무작업반(선박경매) 제73차 회의	국제법무과장 외 2명	법 무 실
2. 7.	화상회의	• UNCAC 이행평가 준비를 위한 화상회의	검사 이진희	검 찰 국
2. 8.	화상회의	• 제8차 한-EU IP 다이알로그	법무관 공보영	법 무 실
2. 10.	화상회의	• UNTOC(초국가범죄방지협약) 그리스 이행평가 준비를 위한 화상회의	검사 이진희	검 찰 국
2. 14. ~ 2. 18.	화상회의	•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관할권 작업반	사무관 최승은	법 무 실
2. 14. ~ 2. 18.	화상회의	• UNCITRAL 제3실무작업반 제42차 공식회의 참석	서기관 엄영신 외 1명	법 무 실
2. 14. ~ 2. 15.	화상회의	• 일본 도쿄 아태지역 형사사법포럼(Crime-AP) 창립총회	국제형사과장 검사 임하나	검 찰 국
2. 18.	화상회의	• 2022년 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 계기 산하 실무그룹(BMG) 회의	서명규 주무관 외 3명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 21.	서울 (외교부)	• 한-조지아 투자보장협정 제3차 회담 참석	서기관 이현송 외 1명	법 무 실
3. 1. ~ 3. 2.	화상회의	•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4실무작업반(전자상거래) 비공식회의	국제법무과장 외 1명	법 무 실
3. 2. ~ 3. 3.	화상회의	• 제1회 도쿄 출입국포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3명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기 간	국 가	회 의 명	참가자	비 고
3. 3.	화상회의	• 제6차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당사자 총회	검사 임하나	검 찰 국
3. 7. ~ 3. 11.	화상회의	• OECD 뇌물방지작업반 1분기 정례회의	검사 이진희	검 찰 국
3. 16. ~ 3. 21.	이탈리아	•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VENICE COMMISSION) 제130차 정기총회 참석	법무부차관 강성국 외 1명	법 무 실
3. 16.	화상회의	• UNTOC 한국 이행평가 준비를 위한 화상회의	검사 이진희	검 찰 국
3. 21. ~ 3. 25.	화상회의	• 제109차 국제해사기구(IMO) 법률위원회(LEG)	국제법무과장 외 2명	법 무 실
3. 28. ~ 4. 1.	미국 뉴욕	•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2실무작업반(분쟁해결) 제75차 회의	국제법무과장 외 2명	법 무 실
4. 4. ~ 4. 8.	미국 뉴욕	•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4실무작업반(전자상거래) 제63차 회의	국제법무과장 외 2명	법 무 실
4. 6.	화상회의	•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제3차 가입작업반 협상	사무관 임세영	법 무 실
4. 7.	화상회의	• 태국 중앙기관과 형사사법공조 화상회의	검사 이진희	검 찰 국
4. 16. ~ 4. 23.	미국 뉴욕	•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 도산법 실무작업반 제60회 회의	사무관 김효선	법 무 실
4. 18. ~ 4. 21.	미국 뉴욕	•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5실무작업반(도산) 제60차 회의	국제법무과장 외 2명	법 무 실
4. 37. ~ 4. 28.	서울 (외교부)	• 한-투르크메니스탄 BIT 회담 참석	사무관 조규현	법 무 실
5. 9. ~ 5. 13.	미국 뉴욕	•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1실무작업반(소규모기업) 제37차 회의	국제법무과장 외 2명	법 무 실

기 간	국 가	회 의 명	참가자	비 고
5. 16. ~ 5. 20.	화상회의	• 범죄예방·형사사법위원회(CCPCJ) 제31차 정례회의	검사 이진희	검 찰 국
5. 17. ~ 5. 20.	네덜란드 헤이그	•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특별위원회	사무관 최승은	법 무 실
5. 30. ~ 6. 10.	화상회의	• 유엔 사이버범죄 협약 성안을 위한 임시회의	검사 임하나	검 찰 국
5. 31.	서울 (외교부)	• 한-멕시코 투자보장협정 제5차 회담 참석	서기관 이현송	법 무 실
6. 6. ~ 6. 11.	프랑스	• 제43차 OECD 기업지배구조위원회 정례 회의	사무관 윤화섭	법 무 실
6. 12. ~ 6. 17.	화상회의	• 2분기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당사자 총회	검사 임하나	검 찰 국
6. 13. ~ 6. 17.	프랑스	• OECD 뇌물방지작업반 2분기 정례회의	국제형사과장 검사 임하나 검사 윤기선	검 찰 국
6. 20. ~ 6. 24.	화상회의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국제법무과장 외 3명	법 무 실
6. 25. ~ 7. 2.	프랑스	• OECD 이주작업반 회의	이동용 출입국관리사무관 등 2명	출입국· 외 국 인 정책본부
6. 27. ~ 7. 15.	미국 뉴욕	•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본회의	국제법무과장 외 4명	법 무 실
7. 11, 7. 13. ~ 7. 14.	화상회의	• UNCITRAL 본회의 참석	서기관 엄영신 외 1명	법 무 실
7. 12.	에콰도르	• 한-에콰도르 SECA 제6차 협상(서울) (기업인의 일시입국 분야)	배덕환 출입국관리사무관 등 2명	출입국· 외 국 인 정책본부
7. 20.	화상회의	• ASEAN 초국가적범죄 관련 고의급회의(SOMTC)	검사 윤기선	검 찰 국

기 간	국 가	회 의 명	참가자	비 고
7. 27.	화상회의	•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급 회의	국제법무과장 외 1명	법 무 실
8. 7. ~ 8. 13.	미국 하와이	• '확산방지구상'(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국제훈련 참석	서기관 한경태 외 1명	법 무 실
8. 18.	스위스 제네바	•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수석대표 회의	국제법무과장 외 1명	법 무 실
8. 18.	화상회의	• 한-걸프협력회의(GCC) FTA 협상 지식재산권 분과	전문위원 김희은	법 무 실
8. 19. ~ 8. 24.	태국	• APEC 제2차 산하 실무그룹 회의	최효주 출입국관리서기 등 2명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8. 22. ~ 8.28.	스위스	• 제2,3차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심의	정소연 인권정책과장 등 2명	인 권 국
8. 24. ~ 8. 26.	싱가포르	• 제1회 APT 이민청장 회의	이정미 서기관 등 2명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8. 29. ~ 9. 2.	스위스 제네바	• 제15차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집행자문위원회(ACE)	국제법무과장 외 3명	법 무 실
9. 4. ~ 9. 17.	오스트리아	• UNCITRAL 제3실무작업반 제43차 공식회의 참석	서기관 엄영신 외 2명	법 무 실
9. 5. ~ 9. 8.	화상회의	• 유엔반부패협약(UNCAC) 당사국 총회 회기간 회의	검사 이진희	검 찰 국
9. 15. ~ 9. 16.	싱가포르	• 한-싱가포르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 위한 협상 회의	검사 윤기선	검 찰 국
9. 19. ~ 9. 23.	오스트리아 비엔나	•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1실무작업반(소규모기업) 제38차 회의	국제법무과장 외 2명	법 무 실
9. 19. ~ 9. 23	싱가포르 (가상회의)	• 제40회 APCCA 아시아·태평양 교정본부장회의	신용해 교정본부장 외 2명	교정본부

기 간	국 가	회 의 명	참가자	비 고
9. 20. ~ 9. 22.	화상회의	• ASEAN 초국가범죄 장관급 회의(AMMTC) 및 고위급 준비회의(Prep SOMTC)	검사 윤기선	검 찰 국
9. 22. ~ 9. 23.	멕시코	• 한-멕시코 투자보장협정 제6차 회담 참석	서기관 이현송	법 무 실
9. 25. ~ 9. 30.	프랑스	• 형사사법분야 협력을 위한 유럽평의회 전문가 회의(PCOC)	국제형사과장 검사 임하나	검 찰 국
9. 27.	화상회의	•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협상 지식재산권 분과	전문위원 김희은	법 무 실
9. 27. ~ 10. 3.	캐나다	• 제5회 세계보호관찰회의	범죄예방데이터과장 외 3명	범죄예방정책국
9. 30.	에콰도르	• 한-에콰도르 SECA 제7차 협상(세종) (기업인의 일시입국 분야)	배덕환 출입국관리사무관 등 2명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10. 9. ~ 10. 15.	스위스	• 제73차 UNHCR 집행이사회	신미선 출입국관리주사 등 2명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10. 10. ~ 10. 14.	오스트리아 비엔나	•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2실무작업반(분쟁해결) 제76차 회의	사무관 임세영	법 무 실
10. 10. ~ 10. 14.	프랑스	• OECD 뇌물방지작업반 3분기 정례회의	검사 윤기선	검 찰 국
10. 12. ~ 10.16.	미국	• 제2차 한미민주주의 거버넌스 협의체 회의	검사 최지예	인 권 국
10. 17. ~ 10. 21.	오스트리아	• UNTOC(초국가범죄방지협약) 제11차 당사국 총회	검사 이진희	검 찰 국
10. 19. ~ 10. 23.	이탈리아	•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VENICE COMMISSION) 제132차 정기총회 참석	사무관 김태희 외 1명	법 무 실
10. 19. ~ 10. 21.	프랑스	• 제33기 제1차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총회 및 실무그룹 회의	검사 임하나	검 찰 국

기 간	국 가	회 의 명	참가자	비 고
10. 23. ~ 10. 28.	미국	• 제24차 ICPA 국제교정협회 회의	고위 김동현 외 3명	교정본부
10. 24.	화상회의	• 한-걸프협력회의(GCC) FTA 협상 지식재산권 분과	전문위원 김희은	법 무 실
10. 27.	GCC	• 한-GCC(걸프협력회의) FTA 제6차 협상(서울) (기업인의 일시입국 분야)	배덕환 출입국관리사무관 등 2명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10. 31. ~ 11. 4.	오스트리아 비엔나	•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4실무작업반(전자상거래) 제64차 회의	사무관 최승은	법 무 실
11. 3.	인도	• 한-인도 CEPA 제9차 개선협상(서울) (기업인의 일시입국 분야)	배덕환 출입국관리사무관 등 2명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11. 7. ~ 11. 11.	오스트리아	• 유엔반부패협약(UNCAC) 전문가회의	검사 윤기선	검 찰 국
11. 13. ~ 11. 19.	미국 워싱턴	• 세계은행 기업환경지수 개선사업 관련 국제세미나	검사 정성두 외 3명	법 무 실
11. 20. ~ 11. 24.	프랑스 파리	• 제44차 OECD지배구조위원회 회의	검사 조재철	법 무 실
11. 23. ~ 11. 26.	스위스	• 제4차 유엔 인권 민주주의 법치 포럼 참석	주무관 유환희 외 3명	인 권 국
11. 27. ~ 12 . 2.	스위스	• 유엔 기업과 인권 포럼, UPR 제 42회기 대한민국 프리세션 참석	사무관 여혜진 외 1명	인 권 국
11. 28. ~ 12. 2.	오스트리아 비엔나	•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6실무작업반(유통성 복합운송증권) 제61차 회의	전문위원 김희은 외 1명	법 무 실
11. 28. ~ 11. 29.	케냐	• 제3차 UNODC 자산회복 전문가회의 참석	국제형사과장 검사 이진희	검 찰 국
11.28. ~ 12. 3.	스위스	• IOM 총회 참석	박지원 출입국관리사무관 등 2명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기 간	국 가	회 의 명	참가자	비 고
11. 28. ~ 12. 2.	프랑스	• OECD 경쟁위원회 정기 본회의 및 작업반 회의	검사 윤기선	검 찰 국
11. 29. ~ 11. 30.	서울 (외교부)	• 한-조지아 투자보장협정 제4차 회담 참석	검사 오흥세 외 1명	법 무 실
12. 5. ~ 12. 9.	프랑스	• OECD 뇌물방지작업반 3분기 정례회의	검사 윤기선	검 찰 국
12. 5. ~ 12. 9.	태국	• ICAO 워킹그럽휘의 및 IOM 국경관리 회의	부승용 출입국관리주사 등 2명	출입국· 외 국 인 정책본부
12. 12. ~ 12. 16.	오스트리아	•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5실무작업반(도산) 제61차 회의	서기관 김진원, 사무관 임세영	법 무 실
12. 11. ~ 12. 14.	일본	• 제2회 도쿄 출입국포럼 및 한일 출입국관리 고위급 회담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 등 4명	출입국· 외 국 인 정책본부
12. 18. ~ 12. 22.	스리랑카	• 한-스리랑카 형사사법공조 등 실무 협의	국제형사과장 검사 임하나	검 찰 국

제9절 상훈

1. 총 괄

• 검사 및 일반직

(2022. 1 ~ 12월)

직급 / 상훈	계	정무직(등)	검사	고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2,173	19	62	14	33	67	397	592	747	219	23
청조근정훈장	0	-	-	-	-	-	-	-	-	-	-
황조근정훈장	2	-	2	-	-	-	-	-	-	-	-
홍조근정훈장	36	-	5	7	24	-	-	-	-	-	-
녹조근정훈장	252	-	-	-	-	35	217	-	-	-	-
옥조근정훈장	231	4	-	-	-	-	-	194	33	-	-
근 정 포 장	218	1	3	4	8	15	126	53	8	-	-
대통령표창	36	-	4	1	-	7	11	8	5	-	-
국무총리표창	41	1	6	1	-	5	13	9	6	-	-
모범공무원	189	-	-	-	-	-	-	181	8	-	-
법무부장관표창	1,168	13	42	1	1	5	30	147	687	219	23
유관기관표창	-	-	-	-	-	-	-	-	-	-	-

• 기 관

(2022. 1 ~ 12월)

기관 / 상훈	계	법무부	검찰청	보호관찰소	소년원	교정기관	출입국·외국인기관
법무부장관표창	64	-	24	9	9	14	8

2. 훈장·포장·표창자 명단

• 법무부소속 공무원(훈장 이상)

(2022. 1 ~ 12월)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황조근정훈장	대검찰청	검사	박성진	2022.2.28.	검찰업무 수행 유공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김후곤	2022.4.25.	법의 날 기념 유공
홍조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정진우	2022.2.28.	검찰업무 수행 유공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김형수	2022.4.25.	법의 날 기념 유공
	대구보호관찰소	부이사관	손세헌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구소년원	부이사관	김달곤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전지방검찰청	일반직고위공무원	신범수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법무부	부이사관	이진곤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법무부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진구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부산고등검찰청	검찰부이사관	정의곤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부산고등검찰청	일반직고위공무원	정병옥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찰부이사관	최정철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고등검찰청	검찰부이사관	유성희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일반직고위공무원	이연성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부이사관	이형봉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수원지방검찰청	검찰부이사관	김한영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찰부이사관	이창환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인천지방검찰청	검찰부이사관	양인식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찰부이사관	전병후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제주지방검찰청	검찰부이사관	송재영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창원지방검찰청	검찰부이사관	김천교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부이사관	이언담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지방교정청	일반직고위공무원	정병헌	2022.10.28.	교정의 날 기념 유공
	광주보호관찰소	부이사관	이동환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검찰청	검찰부이사관	김광수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대구고등검찰청	검찰부이사관	구영한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구지방검찰청	검찰부이사관	송난화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정병대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법무부	부이사관	주양근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법무연수원	일반직고위공무원	강진구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부산지방검찰청	검찰부이사관	성원석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김호영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신배식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일반직고위공무원	최우철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소년원	부이사관	권혁귀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부이사관	진우석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수원지방검찰청	검찰부이사관	백상홍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수원지방검찰청	검찰부이사관	최현태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녹조근정훈장	경북북부제3교도소	교정관	류상길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경북북부제3교도소	교정관	이등철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경북북부제3교도소	교정관	정영진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교정관	김상근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교정관	오순택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공주교도소	교정관	박용화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공주교도소	교정관	윤광식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광주고등검찰청	검찰사무관	김은열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광주교도소	교정관	배해규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광주보호관찰소	서기관	정훈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광주보호관찰소 목포지소	보호사무관	주옥한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	검찰수사서기관	임을빈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입국관리사무관	신상원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군산교도소	교정관	김형섭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군산교도소	교정관	이용해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군산교도소	교정관	최연석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김천소년교도소	교정관	김제원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검찰청	기술서기관	윤미숙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대검찰청	사서사무관	이명숙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구교도소	교정관	이성래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구지방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김정호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구지방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나성훈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구지방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노한열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구지방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이태득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구지방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최홍찬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찰수사서기관	김재복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검찰사무관	권오성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교정관	최용원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목포교도소	서기관	정봉수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목포교도소	교정관	송현삼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법무부	기술서기관	임맹원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법무부	시설사무관	임영탁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부산교도소	교정관	문정열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부산소년원	보호사무관	차효석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찰사무관	정인석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구치소	교정관	김미경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구치소	교정관	김병태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구치소	교정관	김원숙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구치소	교정관	허필선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교도소	교정관	부상호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교도소	교정관	이재열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교도소	교정관	이형구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동부구치소	교정관	박태영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동부구치소	교정관	윤규한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동부구치소	교정관	정유경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소년원	보호사무관	최오수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관리사무관	곽준태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수원구치소	서기관	김형준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수원구치소	교정관	설민한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수원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박웅권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순천교도소	교정관	임경애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순천교도소	교정관	차중관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안양교도소	교정관	이평섭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여주교도소	교정관	김진성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여주교도소	공업사무관	서범석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여주교도소	교정관	손현웅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여주교도소	교정관	조윤현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여주교도소	교정관	홍순욱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울산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성도경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원주교도소	교정관	허도영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의정부교도소	교정관	길경섭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관리사무관	김성식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인천지방검찰청	마약수사사무관	노희권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인천지방검찰청	마약수사사무관	이승재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장흥교도소	교정관	강춘희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장흥교도소	교정관	김호국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전주교도소	교정관	공원일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전주소년원	보호사무관	최봉범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찰수사서기관	유청수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제주교도소	교정관	강한용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제주교도소	교정관	윤평식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진주교도소	서기관	도재덕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진주교도소	교정관	양훈석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창원교도소	교정관	김덕수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천안개방교도소	교정관	엄태봉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천안개방교도소	교정관	임재일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청주교도소	교정관	정상희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청주교도소	교정관	진기범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춘천교도소	교정관	김기동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춘천교도소	교정관	원두연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춘천소년원	서기관	최철한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서기관	정성경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통영구치소	서기관	김광주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포항교도소	서기관	김태수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해남교도소	교정관	민경섭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홍성교도소	서기관	김진석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정관	김진후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정관	장재학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강원북부교도소	교정관	신석철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경북북부제3교도소	교정관	이동석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경북북부제3교도소	교정관	이재호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교정관	김중현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교정관	조창제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공주교도소	교정관	문병관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공주교도소	교정관	이종현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광주교도소	교정관	권부섭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광주교도소	교정관	박중언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광주교도소	교정관	서동열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광주교도소	교정관	한명철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서기관	임채임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군산교도소	교정관	김재철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김천소년교도소	교정관	김종배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김천소년교도소	교정관	나중갑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김천소년교도소	교정관	문덕연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김천소년교도소	교정관	이성민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김천소년교도소	교정관	임환옥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서기관	이춘용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검찰청	전산사무관	김종훈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구교도소	교정관	김완식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구교도소	교정관	신일호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구구치소	교정관	권세직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대구구치소	교정관	남상웅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구구치소	교정관	민명숙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구구치소	교정관	박순정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구구치소	교정관	윤기준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구보호관찰소	서기관	용진욱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구보호관찰소	서기관	한장수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구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권기창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	검찰사무관	석동옥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전교도소	교정관	손주환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전교도소	교정관	이대희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전교도소	교정관	이영미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전교도소	교정관	임범수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전교도소	교정관	한대선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전교도소	교정관	황인환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교정관	박병규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찰사무관	김선진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목포교도소	서기관	한성주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목포교도소	교정관	김정수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목포교도소	교정관	문정임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밀양구치소	교정관	곽동백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밀양구치소	교정관	박재훈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법무부	서기관	공존행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법무연수원	검찰수사서기관	곽강순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부산고등검찰청	검찰사무관	노한석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부산교도소	교정관	윤기영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부산교도소	교정관	이우열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부산지방검찰청	마약수사사무관	김세현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부산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유원욱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부산지방검찰청	마약수사사무관	정주실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부산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조용욱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부산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한동훈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찰사무관	이동규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상주교도소	교정관	김학균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상주교도소	교정관	윤여홍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고등검찰청	시설사무관	조계채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고등검찰청	검찰사무관	최병관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구치소	교정관	강동훈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구치소	교정관	김용군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구치소	교정관	김중한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구치소	교정관	김진호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교도소	교정관	김병덕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교도소	교정관	박양석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교도소	교정관	송동윤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교도소	교정관	홍덕표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교도소	교정관	황금철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구치소	교정관	김정권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보호관찰소	보호사무관	한정호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강신영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동부구치소	교정관	김길성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동부구치소	교정관	서영준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동부구치소	교정관	안만근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박영일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함종민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곽대선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김영오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방송통신사무관	신정섭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이성배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이익희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관리사무관	구창모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수원구치소	교정관	길덕선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수원구치소	교정관	김진영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수원구치소	교정관	손영남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수원구치소	교정관	이선용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수원구치소	교정관	최순주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교정관	송상화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교정관	이재명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	서기관	이국희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찰사무관	이재성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찰사무관	채희수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순천교도소	교정관	박성욱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순천교도소	교정관	임종훈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순천교도소	교정관	진호언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순천교도소	교정관	채충근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안동교도소	교정관	김중섭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안동교도소	교정관	변이성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안양교도소	교정관	김성태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안양교도소	교정관	박상기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안양교도소	교정관	이상익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안양교도소	교정관	이재현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안양교도소	교정관	황길영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입국관리사무관	김호중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여주교도소	교정관	금중덕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여주교도소	교정관	정해종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여주교도소	교정관	황금엽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울산구치소	교정관	고재덕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울산구치소	교정관	박영석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울산구치소	교정관	이우근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울산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김시영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원주교도소	교정관	김동기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원주교도소	교정관	이재연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의정부교도소	교정관	김선식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의정부교도소	교정관	이숙녀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의정부교도소	교정관	조문희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의정부보호관찰소	서기관	조한경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의정부보호관찰소	보호사무관	이승열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관리사무관	송은옥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관리사무관	오승석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관리사무관	정병모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관리사무관	최규주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인천구치소	교정관	박승호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인천구치소	교정관	서순덕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인천구치소	교정관	조민규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서기관	변병귀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인천지방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주웅일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장흥교도소	교정관	신광호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전주교도소	교정관	김영현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전주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김봉구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제주교도소	교정관	김선욱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진주교도소	교정관	김태현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진주교도소	교정관	김현수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진주교도소	교정관	박봉제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진주교도소	교정관	송관영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진주교도소	교정관	이근지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진주교도소	교정관	황현부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창원교도소	교정관	김재완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창원교도소	교정관	한기문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창원보호관찰소통영지소	보호사무관	권순평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창원지방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전영배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찰사무관	동훈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입국관리사무관	윤양원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천안개방교도소	서기관	인동희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천안개방교도소	교정관	김현수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천안교도소	교정관	구보회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천안교도소	교정관	기인호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천안교도소	교정관	문재석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천안교도소	교정관	염영식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천안교도소	교정관	한재호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청주교도소	교정관	박창수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청주교도소	교정관	심홍섭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청주보호관찰소	보호사무관	이덕호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청주여자교도소	서기관	서수원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청주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박장규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청주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이송희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춘천교도소	교정관	최승철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춘천교도소	교정관	한준수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통영구치소	서기관	차광식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통영구치소	교정관	엄성섭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통영구치소	교정관	이승래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포항교도소	교정관	박대구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정관	이순재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정관	조용호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옥조근정훈장	강릉교도소	교감	남기식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강릉교도소	교감	손무용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경북북부제3교도소	교감	이무진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교감	김종학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경주교도소	교감	김동린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경주교도소	교감	김철우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공주교도소	교감	박관희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공주교도소	교감	이상덕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공주교도소	교감	이진성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공주교도소	교감	한순철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광주소년원	전문경력관 나군	최은식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광주지방검찰청	사무운영주사보	박혜정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광주지방검찰청	사무운영주사보	심성덕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사무운영주사	조혜심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찰주사	김종남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찰주사	오왕석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군산교도소	교감	임연석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구교도소	전기운영주사	배종환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구교도소	교감	이광호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구교도소	교감	임순웅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구교도소	교감	한상덕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구구치소	교감	구의모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구구치소	교감	김선동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구구치소	교감	김종호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구구치소	교감	이호경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구구치소	교감	정해길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구지방검찰청	검찰주사	김병태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구지방검찰청	검찰주사	배희동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운전주사보	권영복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검찰주사	이동욱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전교도소	교감	강기식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전교도소	기계운영주사	김준겸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전교도소	교감	서남교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전교도소	교감	오장균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전교도소	운전주사보	류재웅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전교도소	교위	최재림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	보호주사	한은숙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목포교도소	교감	문홍석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부산교도소	공업주사	김기정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부산교도소	교감	나진천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부산구치소	교감	김도언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부산구치소	교감	김순옥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부산구치소	교감	박민규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부산구치소	교감	최길락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찰주사	심재권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상주교도소	교감	김태만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고등검찰청	전기운영주사보	이도희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구치소	교감	김종욱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구치소	교감	김평례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구치소	교감	박승송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구치소	교감	진교시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구치소	교감	한대봉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구치소	전화상담운영주사보	김성심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교도소	교감	서상호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구치소	교감	신중무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구치소	교감	황의선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찰주사	신윤식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운전주사보	김종규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동부구치소	교감	이미자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동부구치소	교감	이오식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동부구치소	교감	황영일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무운영주사보	장소희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주사	고완석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주사	문정수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화상담운영주사보	오영희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무운영주사보	정영선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관리주사	허형도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교감	현종승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찰주사	한희철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운전주사보	장경철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사무운영주사보	강희연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사무운영주사보	윤미영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순천교도소	교감	송한철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안동교도소	교감	남종환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안양교도소	교감	방생규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여주교도소	교감	최중삼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영월교도소	교감	김종덕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울산구치소	교감	김경훈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울산구치소	교감	김준겸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원주교도소	교감	민재기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원주교도소	교감	이동기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방호주사	김영현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관리주사	박규철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관리주사	오우석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인천구치소	교감	이재원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인천구치소	교감	정경진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전주교도소	교감	이항희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전화상담운영주사보	류선희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운전주사보	조인희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제주교도소	교감	송기춘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제주지방검찰청	운전주사보	이종훈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진주교도소	교감	신승균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진주교도소	교감	이정현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진주교도소	교감	장평식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창원교도소	교감	김영도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창원교도소	교감	김인철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창원교도소	교감	하철호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창원지방검찰청	공업주사보	박재동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천안개방교도소	교감	노윤선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천안교도소	교감	김희진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청주교도소	교감	고대환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청주교도소	교감	박갑용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청주교도소	교감	신승덕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청주교도소	교감	이상길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검찰주사	심윤근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춘천교도소	교감	김진석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충주구치소	교감	이준철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치료감호소	간호주사	한미정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치료감호소	간호조무주사보	이용섭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치료감호소	전문경력관 나군	이나겸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치료감호소	간호조무주사보	송용덕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홍성교도소	교감	주정빈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화성외국인보호소	출입국관리주사	양시우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감	박정찬	2022.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강릉교도소	교감	배동열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경주교도소	교감	김을중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경주교도소	교감	황병걸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경주교도소	교위	이광삼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경주교도소	교위	이일걸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공주교도소	교감	김영길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공주교도소	교감	최석환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광주교도소	교감	김보연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광주교도소	교감	김영신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광주교도소	교감	문정인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광주교도소	교감	박미순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광주교도소	교감	박종민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광주교도소	교감	박천영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광주교도소	교감	오병모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광주교도소	교감	오일균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광주교도소	교감	정훈수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광주소년원	전문경력관 나군	심상효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광주지방검찰청	검찰주사	문선중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광주지방검찰청	검찰주사	정광필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군산교도소	교감	김성완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군산교도소	교감	김용일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군산교도소	교감	오천섭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군산교도소	교감	이성수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군산교도소	교감	표영근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대구교도소	교감	구본철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구교도소	교감	김흥락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구교도소	교감	홍성일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구구치소	교감	이승현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구구치소	교감	최경석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전고등검찰청	사무운영주사	송영란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전교도소	교감	김용운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전교도소	의료기술주사	노수곤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전교도소	교감	성민영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전교도소	교감	손동문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교감	나영환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전소년원	열관리운영주사보	양정상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전지방검찰청	사무운영주사보	명선자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운전주사보	유만동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운전주사	이요영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목포교도소	교감	백남권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목포교도소	교위	서명현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밀양구치소	교감	백현종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밀양구치소	교감	최기덕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부산교도소	교감	김찬수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부산교도소	교감	어현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부산교도소	교감	이효준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부산구치소	교감	김명해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부산구치소	교감	서길홍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부산지방검찰청	검찰주사	곽영세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구치소	교감	우종화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교도소	교감	황태희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구치소	교감	김백곤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구치소	교감	허송욱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동부구치소	교감	김영열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무운영주사보	이영희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사무운영주사보	김연순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전화상담운영주사보	최영순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주사	김석빈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주사	김환순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주사	정국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무운영주사보	김사경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찰주사	송낙관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순천교도소	교감	김봉휘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순천교도소	교감	서갑연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순천교도소	교감	장세일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안동교도소	교감	김창현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안동교도소	교감	사공경옥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안양교도소	교감	김구권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안양교도소	교감	박중근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안양교도소	교감	오영호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안양교도소	교감	이논수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안양교도소	교감	조성경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입국관리주사	윤용식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여주교도소	교감	계영상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여주교도소	교감	신경섭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여주교도소	교감	이계강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여주교도소	교감	최현철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울산구치소	교감	김승겸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원주교도소	교감	박원규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의정부교도소	교감	배은덕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의정부교도소	교감	이범재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의정부교도소	교감	조봉란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사무운영주사보	조미애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관리주사	장재운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관리주사보	강옥경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인천구치소	교감	임경철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인천지방검찰청	검찰주사	신중원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전주교도소	교감	김종운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전주교도소	교감	신동백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전주보호관찰소	보호주사	김영우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검찰주사	송대석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정읍교도소	교감	강정구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정읍교도소	교감	김두수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제주교도소	교감	강문수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진주교도소	교감	강태영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진주교도소	교감	문호산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진주교도소	교감	임오혁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창원지방검찰청	검찰주사	오언택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검찰주사	임광옥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천안개방교도소	교감	고병규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천안교도소	교감	박기정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천안교도소	교감	전남희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천안교도소	교감	한정선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청주교도소	교감	강만희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청주교도소	교감	이호희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춘천교도소	교감	한상권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춘천지방검찰청	마약수사주사	최영민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방송통신주사	전민배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충주구치소	교감	박기식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포항교도소	교감	조철제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포항교도소	교감	최덕순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홍성교도소	교감	양학규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홍성교도소	교감	황치의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화성외국인보호소	출입국관리주사	심혁보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화성외국인보호소	사무운영주사보	이영신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감	강신욱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전문경력관 나군	김태성	2022.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 외부인사 및 단체

(2022. 1 ~ 12월)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국민훈장 무궁화장	대구지방변호사회	변호사	허노목	2022.4.25.	법의 날 기념 유공
국민훈장 모란장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청주지역협의회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성낙전	2022.7.11.	범죄예방 유공
국민훈장 동백장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구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위원	강신탁	2022.11.17.	보호관찰 및 법질서 유공
국민훈장 동백장	대전교도소	교정위원	황우종	2022.10.28.	교정의 날 기념 유공
국민훈장 동백장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수원지역협의회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이세용	2022.7.11.	범죄예방 유공
국민훈장 동백장	사단법인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이사장	이용우	2022.4.25.	법의 날 기념 유공
국민훈장 동백장	인천지방법무사회	법무사	홍석정	2022.4.25.	법의 날 기념 유공
국민훈장 목련장	법무보호위원 경기지부협의회	법무보호위원	김형균	2022.11.17.	갱생보호지원 유공
홍조 근정훈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도균	2022.4.25.	법의 날 기념 유공
홍조 근정훈장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효신	2022.4.25.	법의 날 기념 유공
국민포장	부산사상구 주례3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김경자	2022.11.29.	범죄피해자보호지원 유공
국민포장	법무보호위원 제주지부협의회	법무보호위원	김신희	2022.11.17.	갱생보호지원 유공
국민포장	소년보호위원 서울소년원협의회	소년보호위원	김원균	2022.11.17.	보호관찰 및 법질서 유공
국민포장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인천지부협의회	법무보호위원	황준철	2022.11.17.	보호관찰 및 법질서 유공
국민포장	청주교도소	교정위원	나호견	2022.10.28.	교정의 날 기념 유공
국민포장	전주교도소	교정위원	양현섭	2022.10.28.	교정의 날 기념 유공
국민포장	서울구치소	교정위원	함웅	2022.10.28.	교정의 날 기념 유공
국민포장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안양지역협의회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안성철	2022.7.11.	범죄예방 유공
국민포장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서울동부지역협의회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임금옥	2022.7.11.	범죄예방 유공
국민포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	기술교육원장	박승익	2022.4.25.	법의 날 기념 유공
대통령표창	천주교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2022.5.20.	세계인의 날 기념 유공
대통령표창	(사)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문귀례	2022.11.29.	범죄피해자보호지원 유공
대통령표창	(사)영덕울진영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주중호	2022.11.29.	범죄피해자보호지원 유공
대통령표창	법무보호위원 광주전남지부협의회	법무보호위원	안병열	2022.11.17.	갱생보호지원 유공
대통령표창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순천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위원	안창환	2022.11.17.	보호관찰 및 법질서 유공
대통령표창	인하대학교	교수	원혜욱	2022.11.17.	보호관찰 및 법질서 유공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대통령표창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양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위원	조성묵	2022.11.17.	보호관찰 및 법질서 유공
대통령표창	법무보호위원 전북지부협의회	법무보호위원	한명옥	2022.11.17.	갱생보호지원 유공
대통령표창	경북북부제2교도소	교정위원	유희숙	2022.10.28.	교정의 날 기념 유공
대통령표창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윤병수	2022.10.28.	교정의 날 기념 유공
대통령표창	진주교도소	교정위원	이재설	2022.10.28.	교정의 날 기념 유공
대통령표창	청주여자교도소	교정위원	조성근	2022.10.28.	교정의 날 기념 유공
대통령표창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전주지역협의회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문무양	2022.7.11.	범죄예방 유공
대통령표창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목포지역협의회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문용희	2022.7.11.	범죄예방 유공
대통령표창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통영지역협의회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문종열	2022.7.11.	범죄예방 유공
대통령표창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박인환	2022.7.11.	범죄예방 유공
대통령표창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여주지역협의회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이덕배	2022.7.11.	범죄예방 유공
대통령표창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서울중앙지역협의회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황승헌	2022.7.11.	범죄예방 유공
대통령표창	사단법인 릴리회	명예회장	엠마 프라이싱거	2022.5.20.	세계인의 날 기념 유공
대통령표창	사단법인 꿈을이루는사람들	대표이사	장영기	2022.5.20.	세계인의 날 기념 유공
대통령표창	의정부교도소 교정협의회	교정위원	김성군	2022.4.25.	법의 날 기념 유공
대통령표창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승현	2022.4.25.	법의 날 기념 유공
국무총리표창	KRX국민행복재단			2022.11.17.	보호관찰 및 법질서 유공
국무총리표창	사단법인 무지개뜨는언덕			2022.5.20.	세계인의 날 기념 유공
국무총리표창	서산시가족센터			2022.5.20.	세계인의 날 기념 유공
국무총리표창	제주글로벌센터			2022.5.20.	세계인의 날 기념 유공
국무총리표창	(사)거창합천함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강택섭	2022.11.29.	범죄피해자보호지원 유공
국무총리표창	(사)속초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부이사장	안성학	2022.11.29.	범죄피해자보호지원 유공
국무총리표창	(사)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이상국	2022.11.29.	범죄피해자보호지원 유공
국무총리표창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석화	2022.11.29.	범죄피해자보호지원 유공
국무총리표창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제주소년원협의회	소년보호위원	고철원	2022.11.17.	보호관찰 및 법질서 유공
국무총리표창	한국건강관리협회	부회장	김성대	2022.11.17.	보호관찰 및 법질서 유공
국무총리표창	법무보호위원 광주남부지소협의회	법무보호위원	김용권	2022.11.17.	갱생보호지원 유공
국무총리표창	한국나눔연맹	사회복지부장	김정숙	2022.11.17.	보호관찰 및 법질서 유공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국무총리표창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울산보호관찰소 협의회	보호관찰위원	성춘분	2022.11.17.	보호관찰 및 법질서 유공
국무총리표창	수가이앤씨건축사사무소	이사	장경이	2022.11.17.	보호관찰 및 법질서 유공
국무총리표창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	법무보호위원	장수철	2022.11.17.	갱생보호지원 유공
국무총리표창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국민재단	책임연구원	정용현	2022.11.17.	보호관찰 및 법질서 유공
국무총리표창	울산구치소	교정위원	권창규	2022.10.28.	교정의 날 기념 유공
국무총리표창	강릉교도소	교정위원	백금례	2022.10.28.	교정의 날 기념 유공
국무총리표창	창원교도소	교정위원	이석범	2022.10.28.	교정의 날 기념 유공
국무총리표창	군산교도소	교정위원	이성재	2022.10.28.	교정의 날 기념 유공
국무총리표창	춘천교도소	교정위원	홍명표	2022.10.28.	교정의 날 기념 유공
국무총리표창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제주지역협의회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김성배	2022.7.11.	범죄예방 유공
국무총리표창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홍성지역협의회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김성창	2022.7.11.	범죄예방 유공
국무총리표창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서울서부지역협의회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김영훈	2022.7.11.	범죄예방 유공
국무총리표창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대구서부지역협의회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박영자	2022.7.11.	범죄예방 유공
국무총리표창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창원지역협의회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배경남	2022.7.11.	범죄예방 유공
국무총리표창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울산지역협의회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한용숙	2022.7.11.	범죄예방 유공
국무총리표창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서울남부지역협의회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홍기영	2022.7.11.	범죄예방 유공
국무총리표창	한국이민재단	국장	김찬기	2022.5.20.	세계인의 날 기념 유공
국무총리표창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사회통합지역협의회	회장	조창섭	2022.5.20.	세계인의 날 기념 유공
국무총리표창	고려인마을가족카페	대표	텐 올가 발레레 브나	2022.5.20.	세계인의 날 기념 유공

제10절 위원회 현황

1. 총 괄

(2022. 12월 현재)

소 관 별	계	총리 소속	기 획 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 예방 정책국	감찰관실	인권국	교정 본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운 영 지원과
위원회 수	74	1	24	13	12	3	1	6	4	6	4

2. 위원회 개요

연번	위 원 회 명	근 거	설 치 목 적	구 성		소관 부서	비고
				위원장	위원수		
1	법무부정책위원회 (분과위 : 법무시설건축협위, 중앙급식관리위, 외국인인권보호및권익증진협위)	법무부정책위원회규정 (훈령 제1361호)	법무행정운영에 관한 장관 자문	공석	공석	정책 기획단	기획조정실
2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법무·검찰개혁위원회규정 (훈령 제1114호)	법무·검찰의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제안	공석	17명		
3	법무부 직장방위협의회	예비군법 14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3조	대비정규전 작전활동 및 예비군 법무부 직장분대 운영의 유기적 협조 조정	법무부 장관	13명	비상 안전	
4	법무부 예산집행 심의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규정 (훈령 제1096호)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기획 조정 실장	11명	기획 재정	
5	법무부 정책연구 심의위원회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380호), 법무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훈령 1357호)	법무부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	기획 조정 실장	17명	기획 재정	

연번	위원회명	근거	설치목적	구성		소관부서	비고
				위원장	위원수		
6	법무부 공적심사 위원회	상훈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정부포상 및 장관 표창 추천 심사	법무부 차관	9명	혁신행정	기획조정실
7	법무부 보통징계 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제81조, 공무원징계령 제5조	공무원에 대한 징계 심의·의결	법무부 차관	14명		
8	법무부 근무성적 평가위원회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8조, 법무부소속공무원평가 등 업무처리지침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 조정	장관이 임명	5명 이상		
9	법무부 보통고충 심사위원회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공무원고충처리규정(대통령령) 제3조	공무원의 고충 심사	혁신행정 담당관	9명		
10	법무부 보통승진 심사위원회	국가공무원법제40조의3, 공무원임용령제34조의3	공무원의 승진 심사	장관이 임명	3명 이상		
11	법무부 성과급 심사위원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7조의2	성과급 심사	장관이 임명	3~7명		
12	법무부 교육훈련 심의위원회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대통령령) 제32조의3	위탁교육 훈련대상자 선발, 심의 등	법무부 차관	5명 이상		
13	법무부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1조, 법무부 갈등관리 규정(훈령 1077호)	법무정책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장관 자문	정정화(교수)	12명		
14	법무부 적극행정 위원회	법무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법무부 훈령 제1388호)	법무부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	법무부 차관	17명		
15	법무부 자체규제 심사위원회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및 제19조 법무부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훈령 1296호)	규제신설(강화)에 대한 규제범위·대상·존속기한 등에 대한 심사 및 입안부서(각 실·국·본부)에서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의 타당성 심사	법무부 차관, 전용일(교수)	8~15명	행복민원	
16	법무부 공무원제안심사 위원회	법무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법무부 훈령 제1346호)	법무부 공무원제안 재심사 및 채택제안의 등급결정 등 심의·의결	기획조정실장	9명		
17	법무부 청원심의회	청원법 제8조, 법무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훈령 제1412호)	법무부 청원 심의·의결 등	기획조정실장	5명		
18	법무부 민원조정 위원회	법무부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법무부 예규 제1269호)	민원인 폭언·폭행·협박 등 법질서 위반행위 근절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대책 등에 대한	기획조정실장	9명		

연번	위원회명	근거	설치목적	구성		소관부서	비고
				위원장	위원수		
			심의				
19	법무부 자체평가 위원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평가계획·평가결과 그밖에 당해 기관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윤종설 (연구위원)	24명	정책성과	
20	법무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심의	기획조정실장	6명		
21	법무정보화 추진 위원회	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6조 (훈령 1416호)	법무정보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 및 주요사항을 심의	기획조정실장	3명 이상	정보화데이터	
22	법무정보화 자문 위원회	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7조 (훈령 1416호)	정보화 의견수렴 및 정보기술을 활용한 발전방향 등 자문	신용태 (교수)	8명		
23	법무부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법무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지침(훈령 1360호)제14조	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한 심의·의결	기획조정실장	5명	양성평등	
24	법무부 양성평등 정책위원회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훈령 1390호)	법무부 내 양성평등 실현 및 성인지적 업무 수행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자문	법무부 차관, 문유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12명		
25	법무자문위원회(특별분과위 :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남북법령연구, 국제법무자문, 채무회생및파산에관한 법률개정)	법무자문위원회규정 제1조, 제2조	법무관계법령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국내외의 법률학설 및 판례를 조사·연구하여 법무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함	권영준 (교수)	21명	법무심의관실	법무실
26	주택임대차위원회 (주택임대차실무위원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우선변제를 받는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 심의	법무부 차관	15명 이하		
27	국가송무자문위원회	국가송무 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1조(법무부훈령 제1398호)	국가송무의 수행·지휘 과정에 외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	한인섭 (교수)	16명	행정소송과	
28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	변호사법 제92조, 제94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변호사 징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심의	법무부 장관	8명	법무과	
29	공증인징계위원회	공증인법 제85조	공증인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	법무부 차관	6명		

연번	위원회명	근거	설치목적	구성		소관부서	비고
				위원장	위원수		
30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외국법자문사법 제38조, 제40조	비위 행위를 저지른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징계	법무부 장관	8명	국제법무과	
31	외국법자문사법개정위원회	외국법자문사법개정위원회 운영지침 제2조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사항 등 심의		10명		
32	국제사법개정위원회	국제사법개정위원회 운영지침 제2조	국제사법 개정 사항 등 심의		10명		
33	본부배상심의회	국가배상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결정	법무부 차관	6명	국가소송과	
34	공익신탁자문위원회	법무부 공익신탁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법무부 훈령 제1258호)	공익신탁에 관한 업무와 제도의 개선 자문	박준 (교수)	6명	상사법무과	
35	상법특별위원회	법무부 상법 특별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법무부 훈령 제816호)	상사법의 연구 및 제·개정등의 수행	심영 (교수)	11명		
36	회계자문위원회	법무부 회계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호(법무부 훈령 제858호)	회계원칙의 지정 및 회계관련 업무에 관한 자문	외부 위원 중 위촉	10명 이하		
37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변호사시험법 제14조	변호사시험시행 관련 주요사항 심의	법무부 차관	14명	법조인력과	
38	검사 징계위원회	검사징계법 제4조, 제5조	검사에 대한 징계 사건 심의 및 의결	법무부 장관	8명	검찰과	검찰국
39	검찰인사위원회	검찰청법 제35조 검찰인사위원회규정 제2조	검찰인사 등에 대한 중요사항 심의	변호사	10명		
40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검찰청법 제39조 검사적격심사위원회규정 (대통령령)제2조, 제3조, 제4조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에 대한 적격심사	변호사	8명		
41	검사직무성과금 심의위원회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10	직무성과금 지급등급·지급인원·지급액 심의	법무부 차관	4명		
42	마약류보상금지급 심의위원회	마약류보상금지급규칙 제6조	마약류보상금지급 신청인의 자격, 지급액, 기타 보상금지급에 관한 사항 등 심의	검찰 국장	4명	형사기획과	
43	사면심사위원회	사면법 제10조의 2	법무부 장관의 사면 상신권 행사의 적정성 심사·자문	법무부 장관	8명		

연번	위원회명	근거	설치목적	구성		소관부서	비고
				위원장	위원수		
44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규정 (법무부 훈령 제1384호)	특정경제사범의 관리 업무에 관한 심의·자문	법무부 차관	10명		
45	국가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	국가보안법 제24조,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4조	상금·보로금지급 및 보상 대상자 심의·결정	검찰 국장	6명	공공 형사과	
46	보안관찰처분심의 위원회	보안관찰법 제12조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안 심의·의결	법무부 차관	6명	공공 형사과	
47	공안사범자료관리 협의회	공안사범자료관리규정 (대통령훈령 제271호) 제3조	공안사범에 관한 자료관리	검찰 국장	10명		
48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부령 제603호) 제8조	선거범죄 신고에 대한 포상으로 신고·제보 활성화 유도	검찰 국장	4명		
49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 심의 위원회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운영 규정 (훈령 제947호)	범죄수익 환수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심의	검찰 국장	4명	국제 형사과	
50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	고검 차장 검사	각 9명	보호 관찰과	범죄예방정책국
51	법교육위원회	법교육지원법 제4조	법교육에 관한 주요사업 추진 실적 및 차후 정책 방향 등에 관한 사항 심의	손종학 (교수)	14명	보호 정책과	
52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치료감호 종료·가종료 및 보호감호 가출소·취소 등 심사·결정	법무부 차관	8명	치료 처우과	
53	법무부감찰위원회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1조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감사 업무수행과 관련된 법무부 장관의 자문	이우영 (교수)	9명	감찰 관실	감찰관실
54	인권정책자문단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운영지침 (훈령 제1152호)	법무행정 및 국가인권 정책에 관한 자문	인권 국장 (주재)	28명	인권 정책과	인권국
55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범죄피해자 보호실무위원회)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5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주요정책의 수립·조정	법무부 장관	18명	인권 구조과	

연번	위원회명	근거	설치목적	구성		소관부서	비고
				위원장	위원수		
56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심의	법무부 차관	14명		
57	범죄피해구조본부 심의회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지구심의회에서 구조금 지급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사건에 대한 재심 신청사건 심의·의결	법무부 차관	6명		
58	장애인차별시정 심의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장애인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을 심의	법무부 차관	7명	여성아동인권과	
59	법무부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훈령 제1076호)	법무행정분야의 여성, 아동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및 조정	정익중 (교수)	14명		
60	가석방심사위원회	형집행법 제119조	모범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여부 심사 등	법무부 차관	8명	분류심사과	교정본부
61	교화방송 자문단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48조 1호(예규 1288호)	교화방송 전문성강화 및 외부 전문가의 자문 등	강재형 (방송인)	8명	사회복귀과	
62	교정개혁위원회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 규정 제1조(훈령 1307호)	교정행정 정책에 관한 심의 및 자문 등	이수정 (교수)	15명	교정혁신추진단	
63	심리치료중앙자문위원회	심리치료 업무지침(법무부 예규 제1296호) 제8조	심리치료에 관한 사항 자문 등	이수정 (교수)	12명	심리치료과	
64	법무부 투자이민협의회	투자이민협의회규정 (훈령 제1239호) 제1조	투자이민제도 운영관련 법무부장관 자문	법무부 차관	10명	체류관리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65	이민정책위원회	법무부 미래성장을 위한 이민정책 위원회 규정 제1조(훈령 제1406호)	법무부 이민정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관련 법무부장관 자문	정인섭 (교수)	20명	출입국·이민정책개선추진단	
66	외국인정책위원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8조	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조정	국무총리	28명	외국인정책과	
67	국적심의위원회	국적법 제22조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및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대한민국 국적 상실 결정에 관한 사항 등 심의	법무부 차관	30명	국적과	
68	법무부 사회통합 자문위원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4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 관련 법무부장관 자문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	14명	이민통합과	

연번	위원회명	근거	설치목적	구성		소관부서	비고
				위원장	위원수		
69	난민위원회	난민법 제25조 및 난민법 시행규칙 제12조	난민불인정결정 및 취소·철회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법무부 차관	14명	난민심의과	
70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출국금지심의위원회 규정 제1조(훈령 제1447호)	출국금지·정지 및 그 연장 결정과, 그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에 앞서 그 적정성을 심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5명	출입국심사과	
71	법무부 보안심사위원회	법무부보안업무시행세칙 제3조(훈령 제1348호)	제반 보안대책의 수립 및 제규정 제정	법무부 차관	8명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
72	법무부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 관한규정(산자부 고시 제2020-197호)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과 이용효율 향상	법무부 차관	5명		
73	법무부 정보공개심의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법무부 행정정보 공개지침(예규 제1213호) 제14조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및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등	기획조정실장	5명		
74	법무부 기록물평가심의회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법무부 기록물평가 심의회운영지침	폐기 대상 기록물에 대한 폐기의 적정 여부 평가, 기타 보존기록물의 폐기와 관련하여 보존기간 재책정 등 필요한 사항을 평가 심의	기획조정실장	10명		

제11절 소속기관 및 단체 현황

• 소속기관

(2022. 12. 31. 현재)

구 분	기 관	정 원
계	271개 기관(본부 1, 소속 270)	34,427
법무부	2실 3국 2본부	772
검찰청	대검찰청 1, 고등검찰청 6, 지방검찰청 18, 지청 42	10,745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1, 용인분원 1	138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보호관찰심사위원회 6	42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소 18, 지소 40, 위치추적관제센터 2	2,037
국립법무병원	국립법무병원 1, 약물중독재활센터 1	453
소년원	소년원 10, 소년분류심사원 1, 청소년비행예방센터 18	984
교정기관	지방교정청 4, 구치소 12, 교도소 39, 지소 3	16,668
출입국·외국인기관	출입국·외국인청 6, 출입국·외국인사무소 14, 출장소 23, 외국인보호소 2,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1	2,576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북한인권기록보존소 1	12

• 소속단체

(2022. 12. 31. 현재)

구 분	기 관	정 원
계	3개 단체	1,342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1, 지부 18, 출장소 42, 지소 74, 법문화교육센터 1	830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본부 1, 지부 19, 지소 7, 교육원 1	388
정부법무공단	본부 1	124

法務年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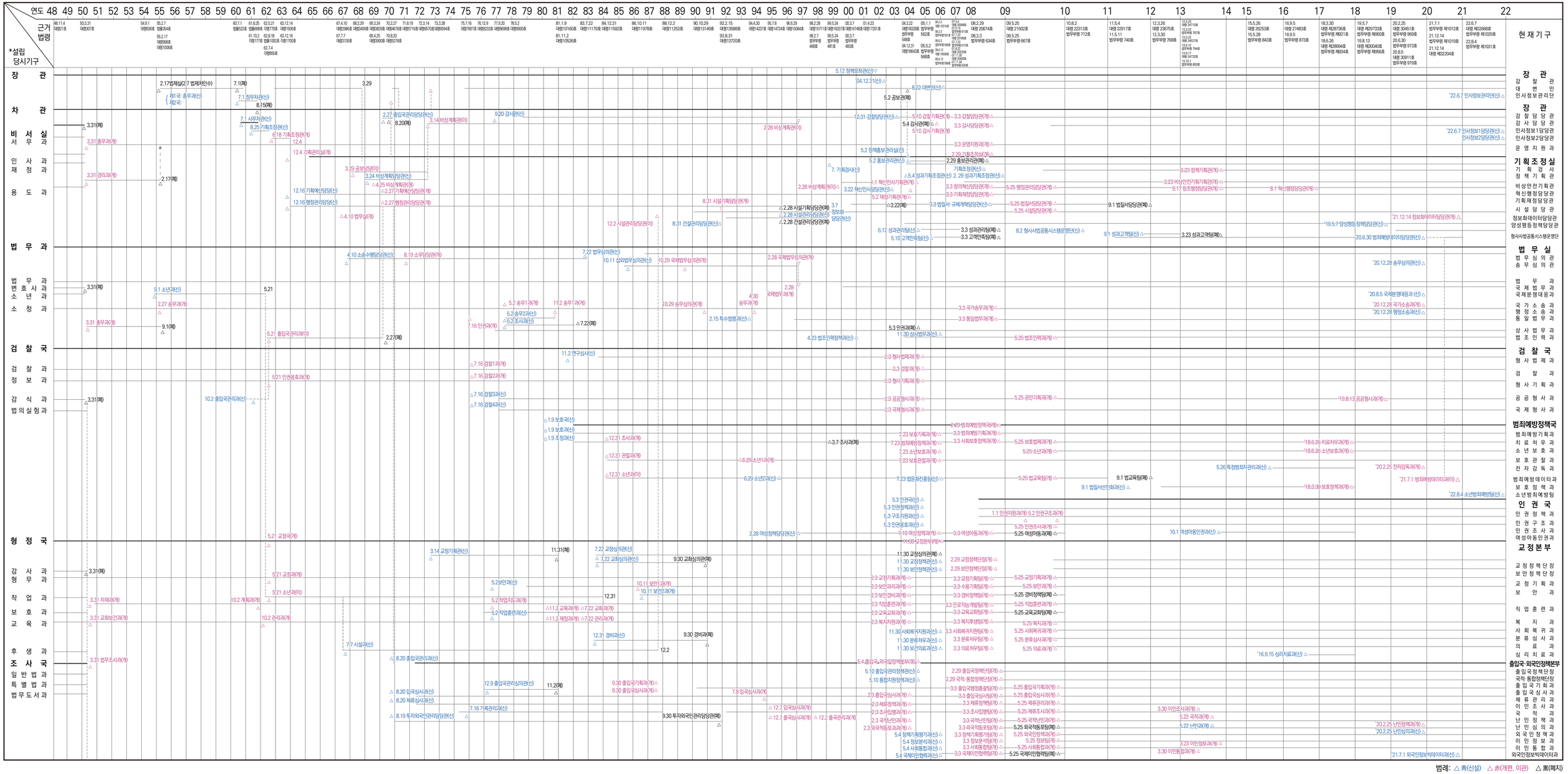


부 록

법무부 본부 기구 변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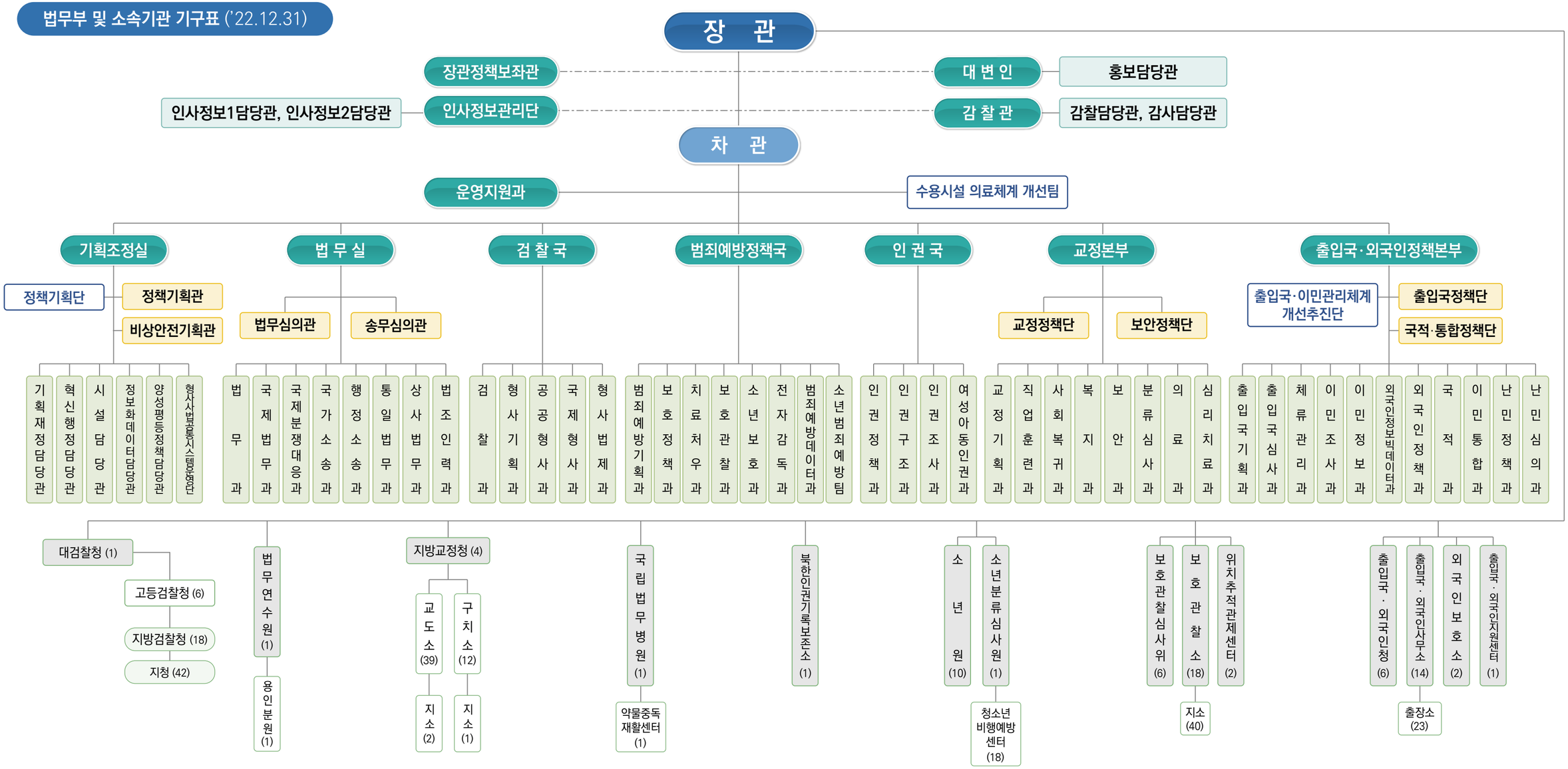
법무부 및 소속기관 기구표

법무부 본부 기구 변천표



범례: △靑(산설) △赤(개편, 이관) △黑(폐지)

법무부 및 소속기관 기구표 ('22.12.31)



법무연감 편집위원

편 집 위 원 장

기획조정실장	검사장	권순정

편 집 위 원

기획조정실	부이사관	유지중
법무실	검사	최재아
검찰국	검사	이승주
범죄예방정책국	부이사관	이법호
감찰관실	검사	안광현
인권국	부이사관	박진열
교정본부	부이사관	한태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부이사관	반재열
장관정책보좌관	검사	양선순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한정진
운영지원과	부이사관	김정열
법무연수원	검사	김영미
정책기획단	검사	김승호

편 집 실 무 위 원

기획조정실	사무관	홍주영
법무실	검사	석동현
검찰국	사무관	허종욱
범죄예방정책국	사무관	배성준
감찰관실	사무관	이기용
인권국	서기관	서혜주
교정본부	교정관	승영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무관	홍창기
대변인실	서기관	최성우
운영지원과	서기관	김정복
법무연수원	사무관	이병흔
정책기획단	사무관	김남철

法 務 年 鑑

발 행 일 2023년 6월

발행기관 법무부 기획재정담당관실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TEL : (02) 2110-3765
FAX : (02) 2110-0314

인 쇄 경성문화사
TEL : (02) 786-2999

〈비매품〉

발간등록번호
11-1270000-000012-10

2022

법무연감

법무부